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 (中)

1994. 12.

金 瑩 允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諸 成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朴 德 圭	(韓國教育開發院 企劃處長)
朴 秀 赫	(서울市立大 教授)
李 基 秀	(高麗大 教授)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和解·協力을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구현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統一方案에 따라 향후 추진해나아갈 통일은 남북한의 相異한 法體系를 自由民主主義에 기반한 법체계로 統合·再編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독의 법체계로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法制 統合過程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통일대비 연구에 꼭 필요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 연구원은 法制的인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基礎資料開發을 위하여 독일통일조약 및 법령의 翻譯書를 시리즈로 발간한다는 계획하에 지난해에는 『독일통일조약 비준법률』을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 그 후속 시리즈로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을 翻譯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翻譯書가 남북한 統一問題를 연구하시는 사계의 전문가들과 統一政策 입안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研究調整室

목 차

〈경제통합부문〉

I. 경쟁제한 방지법	3
II. 상 법	81
III. 유한회사법	256
IV. 주식회사법	292
V. 조직변경법	506
VI. 독일협동조합법	547

〈사회통합부문〉

I. 철·강철, 석탄 산업체 공동결정법	619
II. 철·강철, 석탄 산업체 공동결정법의 보충법률	626
III. 피고용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	641
IV. 경영조직법(舊)	662
V. 경영조직법(新)	665
VI. 경영조직법 1차 시행규정(선거규정 1972)	733
VII. 단체협약법	749
VIII. 해고보호법	755

경 제 통 합 부 문

빈 면

I. 競争制限防止法

제1장 경쟁제한

제1절 카르텔계약 및 카르텔결의

제1조 원칙적 카르텔금지

- (1)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및 결의는 그것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위한 생산이나 시장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무효이다. 그러나 本法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2) 법인의 사원총회의 결의도 그 사원이 기업인 때에는 사업자단체의 결의로 본다.

제2조 조건카르텔

- (1) 할인을 포함한 거래, 공급 및 지급 등에 관한 일반적 조건¹⁾의 통일적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결의에 대해서는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 규정이 가격 또는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2)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할 때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또는 결의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그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표시된 성질의 계약 및 결의는 카르텔청의 신고서접수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이의 제기는 제1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가능하다.

1) 약관(번역자)

제 3 조 할인카르텔

- (1) 물품을 공급할 때에 할인에 관한 계약 및 결의에 대해서는, 이 할인이 급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경제단계상의 부당한 차별대우 또는 상품구매시 공급자에 대해 동일한 급부를 제공하는 동일한 경제단계의 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초래하지 않을 때에 한해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할인규정이 적용될 경제단계의 거래당사자들에게 알렸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그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규정된 계약 및 결의는 카르텔청이 신고서의 접수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만 유효하다. 카르텔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존재하고 할인규정이 적용될 경제단계의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고지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또는 결의가 생산이나 유통의 과정에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공급과정에 명백히 해로운 효과를 갖는 경우, 특히 경제단계에서의 영업활동개시를 저해하는 경우
 3. 신고의 공고(제10조 제1항)후 1개월 이내에 시장참여자가 계약이나 결의를 통해 부당하게 차별 취급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 (4)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존재할 경우 카르텔청은 제3항 제1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계약 및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4 조 구조조정카르텔

카르텔청은 지속적 수요변동에 따라 판매가 감소할 경우 제1조에 규정된 계약 또는 결의가 수요에 대한 생산능력의 계획적 조정에 필요하고 이러한 조정이 국민경제 및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청에 의해 제1항에 규정된 계약 또는 결의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기업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

제 5 조 합리화카르텔

- (1) 제1조의 규정은 단지 규격 또는 유형의 통일적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결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합리화단체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본법에서 의미하는 합리화단체란 규격화계획과 유형화계약의 실행 또는 검사,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공급자 및 수요자의 적절한 참가를 단체의 정관상의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 (2) 카르텔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결의가 경제활동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기술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참가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수요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인가한다. 합리화의 효과는 그것과 관련된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상당하여야 한다.
- (3) 계약 또는 결의가 가격결의와 관련하여 또는 공동의 구매조직이나 판매조직(신디케이트)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화를 실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계약 또는 결의는 합리화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합리화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가될 수 있다. 합리화의 효과는 그것과 관련된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상당하여야 한다.
- (4) 다음의 제2문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급부의 특정이나 가격분석을 위한 통일적인 방법을 확립하는 계약과 결의가 가격 또는 가격구성요소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계약체결시 품질검사가 불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권유가 변제제공의 유인에 따라 오직 표시에 근거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경제영역에 적용된다.

제 5의 a조 전문화카르텔

- (1) 제1조는 전문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결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장에서의 본질적인 경쟁을 존속시키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제1문은 계약이나 결의가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와 관련하여 전문화를 실현해야 하고 또 전문화의 시행을 위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는 카르텔청이 신고서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유효하다. 카르텔청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때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결의의 변경이나 보충을 신고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보충을 통해 참가기업의 범위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상품이나 용역으로 전문화가 확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문에서 규정한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 5의 b조 중소기업의 협력

- (1) 제1조의 규정은 제5의 a조에 규정된 공동활동 이외의 기업간의 공동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결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또 그 계약과 결의가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2) 제5의 a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 5의 c조 구매강요없는 공동구매

제1조의 규정은 참가기업에 대한 구매강요없이 상품의 공동구매 또는 용역의 공동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결의에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이 침해를 받지 않고 그 계약과 결의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수출카르텔

- (1) 제1조의 규정은 수출의 안전과 촉진에 기여하는 계약과 결의에 대하여는, 그것本法의 적용범위 이외의 시장에서 경쟁규칙을 제한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2) 카르텔청은 제1항의 규칙이本法의 범위내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까지도 포함할 경우에는, 그 규칙이 본법의 적용범위 밖의 시장에서 추구된 경쟁규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청에 따라 제1조에 의한 계약 또는 결의를 인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제15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청서에는 이 규정에는 관련되는 국내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 (3) 카르텔청은 계약 또는 결의나 그 시행방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독일연방공화국이 승인한 국제조약상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또는
 2.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경쟁유지에 따른 이익을 배제할 경우
- (4) 카르텔청은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2항의 적용을 받을 규칙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수입카르텔

- (1) 카르텔청은 규칙이 본법의 적용범위내에서의 수입만을 규율하고, 독일의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해 전혀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비본질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한 신청에 따라 제1조의 계약 또는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 (2) 제6조 제2항 제3문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특별카르텔

- (1) 연방카르텔청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경제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제한이 불가피한 때에는 신청에 따라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 (2) 어떤 경제분야의 대다수 기업이 존속하는 데 시급한 위험이 발생하여 다른 법적 또는 경제정책적인 조치가 행해질 수 없거나 적시에 행해질 수 없고, 또한 경쟁의 제한이 위험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경우에 한해 제1항에 따른 인가는 허용될 수 있다.
- (3) 제6조 제2항 제3문을 준용한다.

제 9 조 카르텔청에 신청

- (1)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5의 a조 제1항, 제5의 b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 및 그 보충과 변경은 카르텔청에 신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한 합리화협회의 의견을 첨부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는 카르텔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2) 제1항 제1문과 제3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의 신고 및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에 관한 인가신청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기타의 표시와 지점의 소재지 및 참가기업의 소재지
 2. 카르텔의 범형식과 주소
 3. 카르텔의 선명된 대표자(제36조) 또는 기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카르텔의 법률상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3) 제2조 내지 제8조의 계약 또는 결의가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이를 카르텔청에 신고해야 한다.
- (4) 카르텔청은 제2조 내지 제5의 b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의 규

정에 의해 허용된 카르텔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
2. 계약과 결의의 주요내용, 특히 당해 상품이나 용역, 목적, 의도하는 조치와 적용기간, 해약(종료), 해제 및 탈퇴에 관한 상세한 내용
3. 카르텔청에 의해 부과된 기한, 제한, 조건 및 부담

제 10 조 공 고

(1) 연방관보에 다음을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에 대한 인가신청
2.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과 제4항, 제5의 a조 제1항 및 제5의 b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의 신고
3. 제38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제출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결합 및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의 인가 신청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제2호와 제4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하며, 특히 증명서를 제출한 자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고내용에 관해서는 제23조 제5항 제1문 및 제2문 제1호와 제2호를 준용한다.

(2) 신고된 계약과 결의가 공고된 대로 유효하거나 또는 계약과 결의가 신청된 대로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효력발생이나 인가의 수여를 공고할 것은 신고와 신청의 공고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 11 조 인가와 철회의 허용

(1)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보통 3년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2) 인가는 신청이 있으면 제1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그 연장은 카르텔청에 대해 서면으로 그에 대한 동의를 통지한 참가기업에게만 허용되며, 그 동의통지는 각 개별기업이 스스로 해야 하고, 인가가 만료하기전 최초의 3개월 이내에는 할 수 없다.
- (3) 인가는 제한,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4) 인가는 다음의 경우에 철회하거나 제한 또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변경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1. 인가결정과 관련된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2. 카르텔 또는 그 참가기업이 인가에 붙여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5) 인가는 다음의 경우에 철회하거나 제한 또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변경하거나 또는 부담을 붙여야 한다.
 - 1. 인가가 신청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과 같은 위법한 수단으로 야기된 경우
 - 2. 카르텔 또는 그 참가기업이 인가에 의해 얻은 제1조의 예외조치를 남용하는 경우
 - 3. 계약 또는 결의 및 그 시행방법이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조약상 승인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경우
 - 4. 카르텔이 제25조 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26조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제 12 조 카르텔청의 조치

- (1)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과 제4항, 제5의 a조 제1항, 제5의 b조 제1항과 제5의 c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에 있어서 카르텔청은 다음의 경우에 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1. 계약과 결의 또는 그 시행방법이 제1조의 예외조치를 통해 얻은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 2. 계약 또는 결의 및 그 시행방법이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조약상 승인

- 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경우
-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나 결의에 있어서 카르텔청은 다음의 경우에 제3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건이 존재할 경우
 2. 계약 또는 결의의 시행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요한 대외무역과 국제수지를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 (3) 카르텔청은 다음을 행할 수 있다.
1. 참가기업에게 이의가 제기된 남용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
 2. 참가기업에게 계약 또는 결의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
 3. 계약 또는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

제 13 조 카르텔의 해약고지와 철회

- (1) 각 관계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계약과 결의를 즉시 서면으로 해약할(종료시킬)²⁾ 수 있다. 그 중대한 사유란 특히 해약고지자(종료시키는 자)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기타 관계자와 비교할 때 부당한 차별대우를 통해서 침해될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사유의 흠결로 인한 해약고지의 무효(Unwirksamkeit)³⁾는 단지 해약(종료)고지의 접수후 4주 이내에 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2) 카르텔청이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에 대하여 인가하지 않는 한, 각 관계자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이를 준용한다.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미 카르텔청에 인가신청을 한 때에는 철회하였음을 카르텔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해약고지(종료)권이나 철회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2) Kündigung

3) 상대적 무효(역자 주)

제 14 조 담보물의 환가

- (1) 담보물은 카르텔청이 카르텔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만 제 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결의를 근거로 환가될 수 있다. 인가는 환가로 인해 관계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기타의 관계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통해서 그 관계자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2) 인가는 기한부로 할 수 있고 또한 제한, 조건 및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 2 절 기타의 계약

제 15 조 가격결정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계약의 무효

本法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시장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기업 간의 계약은, 그 계약이 공급된 상품, 다른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일방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할 계약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 16 조 출판물예의 가격구속 허용

제15조는 출판업자가 그들의 수요자들에게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구속하거나 자신의 수요자들에게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7 조 카르텔청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 (1) 카르텔청은 직권으로 그리고 제16조에 규정된 수요자의 신청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즉시 또는 카르텔청에 의한 결정된 일정시점 이후에 무효로 선언할 수 있고, 신규의 유사한 재판매가격제도의 적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남용될 경우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또는 다른 경쟁제한과 결합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국민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해 상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거나 그 가격하락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생산이나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카르텔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재판매가격 유지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러한 남용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18 조 경쟁제한의 금지

- (1) 카르텔청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기업간의 계약을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또는 카르텔청이 정한 일정시점 이후에 무효선언을 할 수 있고, 신규의 유사한 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급된 상품,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2.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3. 공급된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4. 사실상 또는 상관습상 계약과 무관한 상품 또는 용역을 인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 그리고
 - a) 계약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기업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속을 받고 그들의 경쟁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 b) 계약으로 인해 다른 기업에 의한 시장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될 경우
 - c)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상품이나 다른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장경쟁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경우
- (2) 다른 기업에 개방되어 있는 공급가능성 또는 수요가능성과 관련하여 비본질적인 제한은 제1항 b에 규정된 의미에서의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 19 조 기타 계약요소의 효력

- (1) 카르텔청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제18조에 규정된 종류의 제한을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와 결합된 계약상의 기타 합의의 유효성은 일반규정에 따른다.
- (2) 카르텔청은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처분을 할 때 선언한 무효가 계약상의 기타 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그 처분과 함께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카르텔청은 이러한 명이 계약당사자의 부당한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데 필요하고, 다른 계약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경우에 가격구속이나 기타 제한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약고지권이나 철회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계약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킬 권리, 특히 상대방의 의무를 증가시킬 권리를 주는 합의가 존재할 때는 그 합의에 기인한 권리는 카르텔청이 신청에 따라 인가한 경우에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인가는 이러한 권리행사가 계약상대방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인가에는 제한, 기한, 조건 및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 20 조 특허계약

- (1) 특허권, 실용신안의장권, 상표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취득이나 실시에 관한 계약은 특허권취득자 또는 특허실시권자에게 보호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활동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단 종류, 범위, 수량, 지역 또는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한 제한은 권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2) 제1항은, 다음의 제한이 취득되거나 실시권으로 인수된 보호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득자나 실시권자가 보호권대상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양도인 또는 실시권 수여자의 이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그리

- 고 그러한 동안의 취득자 또는 실시권자에 대한 제한
2. 보호권대상의 가격에 대하여 취득자 또는 실시권자의 의무
 3. 다음의 의무들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 수여자의 동일한 의무에 상응하는 한, 발명품의 개량 및 적용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게 하거나 그 실시권을 보존하게 하는 취득자나 실시권자의 의무
 4. 보호권의 불가침에 대한 취득자 또는 실시권자의 의무
 5. 本法의 적용범위 외의 시장에서의 경쟁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취득자 또는 실시권자의 의무
- (3) 카르텔청은 신청에 따라 취득자나 실시권자 또는 다른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 제한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인가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4) 제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위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1 조 보호되지 않은 행위와 증묘에 대한 계약

- (1) 제20조는 법률상 보호되지 아니한 발명행위, 제조과정, 구조, 기타의 기술개발 및 보급되지 못한 식물재배기술의 양도 또는 이용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그것이 경영비밀을 내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2) 제20조는 재배자와 緊植者 또는 緊植企業간의 증묘거래법에 따라 허가된 품종의 증묘에 관한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시장지배적 기업

제 22 조 시장지배적 기업; 카르텔청의 권한

- (1) 어떤 기업이 특정한 종류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本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인 것으로 본다.
 1. 경쟁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2.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시장지위를 가진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 그의 시장점유율, 자금력, 공급시장이나 판매시장으로의 접근, 다른 기업과의 관계,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벽, 타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변경능력 및 다른 기업과 교섭하는 시장상대방의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 사이에 그들의 특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에 관해 일반적 또는 특정한 시장에서 사실상의 이유로 볼 때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인 것으로 본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1. 기업이 특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최소한 1/3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 시장지배적이지만, 그 기업의 최종영업연도 매출액이 2억 5천만 마르크 이하인 때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2.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된다.
 - a) 셋 또는 그 이하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합하여 50/100 또는 그 이상인 경우
 - b) 다섯 또는 그 이하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합하여 2/3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은 최종영업연도의 매출액이 1억 마르크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23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10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카르텔청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이 이러한⁴⁾ 또는 다른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가진다. 제1항에서의 남용이라 함은 특히 시장

4) 전조의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

지배적 기업이 특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적인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경쟁에 중대한 방법으로 다른 기업의 경쟁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2. 유효경쟁적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대가나 기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 유효경쟁이 이루어지는 비교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
 3. 다음의 차별이 실질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시장지배적 기업이 비교시장의 유사수요자에 비해 더 불리한 대가나 기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5) 카르텔청은 제4항의 요건이 충족한 때에는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 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전에 카르텔청은 관계자에게 당해 남용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해야 한다.
- (6) 주식법 제18조의 콘체른기업(계열기업)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할 때에는 카르텔청은 각 콘체른기업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기업결합시 신고의무

- (1) 참가기업들의 매출액이 합하여 결합전 최종영업연도에 최소 5억 마르크인 경우에는 카르텔청에 기업결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한 참가기업이 주식법 제17조의 종속 또는 지배기업이거나 주식법 제18조의 콘체른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의 계산에 있어서 결합기업을 단일기업으로 보며, 수개의 기업이 합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참가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행하는 경우 그 각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간주한다. 매출액의 산정에는 상법 제277조 제1항이 적용되며, 제2문의 결합기업간의 상품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익(내부수익) 및 소비세는 산정되지 않으며, 외국

통화로 표시된 매출액은 공정환율에 따라 마르크로 환산해야 한다. 신용기관과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10, 보험기업의 경우에는 최종영업연도의 보험료수입을 매출액으로 한다. 총자산은 제2문에 결합기업에 대해 투자액을 대차대조표상에서 공제하며, 보험료수입은 재보험자에게 양도한 지분, 제1차 보험 및 재보험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품판매업인 경우에는 단지 매출액의 3/4만을 산정해야 한다.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문이나 잡지 또는 그 요소의 출판, 제작 또는 판매인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배를 산정해야 하며, 제6문은 이에 영향받지 않는다.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의 재산을 인수한 경우 매각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단지 매각된 재산 부분만을 산정해야 한다. 지분의 25/100이하가 매각자에게 남아 있고 기업결합이 제2항 제2문, 제3문, 제5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분의 인수에 대해서는 제8문을 준용한다. 기업이 아닌 자연인 또는 사단이 기업에 대해 다수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本法의 목적을 위해 그를 기업으로 간주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本法의 규정에 의해 기업결합으로 본다.

1. 다른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합병, 조직변경 (Umwandlung) 기타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2. 인수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이미 소유한 지분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 a) 다른 기업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5/100
 - b) 다른 기업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50/100
 - c) 기업에 주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참가를 보장해주는 경우

제1항 제2문의 결합기업에 속하거나 또는 이들 기업들중 하나의 계산으로 그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이나 기업의 소유자가 단독소유자일 경우 그 소유자의 기타 지분도 그 기업에 속하는 지분에 포함된다. 수개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위의 범위까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에 관계하는 참가기업 상호간의 결합(공동기업)으로 간주한다. 취득자에게 계약, 정관, 조합계약이나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이 있는 자본의 25/10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할 경우에 그 지분의 취득을 기업결합으로 본다.

3. 다음 사항에 의한 다른 기업과의 계약
 - a) 주식법 제18조의 콘체른을 조직하거나 또는 콘체른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 b) 다른 기업이 그 기업의 재산으로 자기의 영업을 수행하거나 자기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지거나
 - c) 그 기업에 다른 기업의 영업을 전부 또는 본질적 부분을 임대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것
 4. 기업의 감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인적 동일성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의 기업결합(Verbindung von Unternehmen)으로서, 그 결합을 통해 한 개 또는 수개의 기업이 직간접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6. 제2호 제1의 a)에서 규정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취득하고, 제2호 제4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제4호에 따른 동일인의 범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5호의 의미에서 지배적인 영향의 행사가 불가능한 제2호, 제4호, 제5호의 모든 기업결합으로서 한 개 또는 수개의 기업이 직간접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결합을 통해 경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 (3) 참가기업이 제2항의 의미에서 이미 결합이 된 경우도, 그 결합이 기존의 기업결합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지 않는 한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 신용기관이 기업설립이나 자본증가시 또는 기타 그 영업경영의 범위내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시장에서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이 지분에서 기인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도가 행해지는 때에는 결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기업설립의 경우

에 설립후 최초의 총회에서 하는 의결권의 행사는 결합의 성립과 무관하다. 결합에 참가하는 기업이 제1항 제2문의 결합기업인 경우에는 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을 지배하는 기업도 결합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에는 그 결합은 그들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들의 결합으로도 간주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1. 합병이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존속기업 또는 신설기업의 소유자나 대표자, 법인과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2. 기타의 경우에는
 - a) 결합에 참여한 기업의 소유자
 - b)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그 대표자, 법인 및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이 경우에는 제3항 제3문을 준용한다.

(5) 신고서에는 결합의 형태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는 각 참가기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점이나 본점의 상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소재지
2. 영업의 종류
3. 시장점유율이 本法의 적용범위내 또는 본법의 적용범위의 중요한 부분에서 참가기업과 합하여 최소한 25/100에 달하는 경우 그 계산이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매출액, 신용기관과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갈음하여 총자산,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보험료수입
4.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 및 보유된 총지분의 규모 참가기업이 제1항 제2문에 따른 결합기업일 경우 그 결합기업에 관해 제2문 제1 호와 제2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결합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관해 제2항 제3호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또한 결합기업간의 콘체른관계, 종속관계와 자본참가관계도 표시해야 한다.

- (6) 연방카르텔청은 계산이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및 특정한 종류의 상품 또는 용역의 경우 그 기업이 결합전 최종영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참가기업이 제1항 제2문의 결합기업인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은 그 결합기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합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 제5항과 제9항이 준용된다. 연방카르텔청은 정보제공에 대한 적당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 제46조에 따른 연방카르텔청의 권한은 위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3의 a조 수직적·집단적 결합의 추정

- (1)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규제를 위해 결합을 통해 우월한 시장지위가 발생 또는 강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1. 결합전의 최종영업연도의 매출액이 20억 독일마르크인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과 결합을 하는 경우
 - a)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합하여 최소한 2/3 이상이고 그 결합에 관계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합하여 최소한 5/100인 시장에서 영업을 행하는 기업 또는
 - b) 최종 1년간 1개 또는 수개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고 그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합하여 최소한 1억 5천만 마르크 이상인 기업 또는
 2. 기업결합전 최종영업연도 매출액의 합계가 최소한 120억 마르크인 참가기업들과 각 기업의 매출액이 최소 10억 마르크인 기업결합시의 둘 이상의 참가기업들, 이 추정은 기업결합이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문에 부합하고 공동기업(Gemeinschaftsunternehmen)이 최종 1년간 매출액이 최소 7억 5천만 마르크인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결합규제의 목적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기업을 시장지배적인 것으로 본다.

1. 3개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한 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합하여 50/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2. 5개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한 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합하여 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단
 결합후에도 경쟁조건이 그들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예기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우월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음을 기업들이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참가기업들의 최종영업연도 매출액이 1억 5천만 마르크 이하이거나 결합에 참가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합하여 15/10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밖에 제22조 제2항과 제3항 제1문 제2호는 위 규정에 영향받지 않는다.
- (3) 제23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6문과 제8문내지 제10문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의 산정을 위하여 준용한다.

제 24 조 결합감독

- (1) 결합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발생이나 그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 카르텔관청은 이하에 규정된 권한이 있지만, 참여기업이 결합을 통해 경쟁조건이 개선된다는 점과 이러한 개선이 시장지배로 인한 손실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연방카르텔관청은 결합을 금지한다. 연방카르텔관청은 결합계획을 알게 되는 즉시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미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방카르텔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완전한 신고접수 후 1년의 기간내에서만 금지할 수 있고, 제24의 a조 제2항 제2문 제1호 및 제5호, 제6호를 준용한다. 금지에 앞서 참여기업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최고기관에게 입장표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연방카르텔관청이 제1문에 따른 처분을 행한 경우, 연방경제장관의 허가없이 결합을 실행하거나 결합의 실행에 협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 규정은 기업의

합병, 조직변경, 흡수 또는 설립에 관한 계약 및 주식법 제291조, 제292에 규정된 기업계약이 상업등기부나 조합등기부에 등재됨으로써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미 실행된 결합에 대해 연방카르텔관청이 금지처분을 내린 경우 연방경제장관의 결합인가가 없는 한 해체되어야 한다.

- (3) 연방경제장관은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결합에 따른 전체경제적인 이익이 경쟁제한을 상쇄하거나 우월적인 일반의 이익에 의해 결합이 정당화되는 때에는 결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여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인가는 경쟁제한의 범위로 인해 시장경제질서가 위태로와지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인가에는 제한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참여기업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22조는 이에 방해받지 않는다.
- (4) 결합에 대한 인가신청은 1개월내에 연방경제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2항 1문에 규정된 연방카르텔관청의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개시되며, 제65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의 기간내에 연방카르텔관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허가신청을 위한 기간은 연방카르텔관청의 처분이 확정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연방경제장관은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허가신청기간의 경과후 4개월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 앞서 참여기업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최고기관에 입장표명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5) 연방경제장관은 참여기업들이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인가를 철회하거나 제한규정을 통해 변경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방경제장관은 참여기업이 기망, 협박, 수뢰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기재를 통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6) 완료된 결합의 해체는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도 있다. 연방카르텔관청은 이

하 각호의 경우에 결합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1. 제2항 제1문의 처분이 확정된 때
2. 참여기업이 연방경제장관에게 결합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제5항의 경우 철회 또는 취소가 확정된 때

이 때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비용과 부담을 주면서 목적에 이를 수 있는 조치가 명해져야 한다.

(7) 연방카르텔관청은 그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특히 이하 각호의 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

1. 지체없이 명령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위해서 결합을 해체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1만 내지 100만 마르크의 과징금의 일회 또는 수회에 걸친 부과
2.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에 속하거나 또는 그에게 산입되어야 할 지분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금지 또는 의결권의 행사 또는 행사의 방법에 대한 연방카르텔관청의 인가
3. 제23조 2항 1호 및 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행해진 결합계약의 무효 선언, 이 규정은 기업의 합병, 조직변경, 흡수 또는 설립에 관한 계약 및 주식법 제291조 및 제292조에 따른 기업계약이 상업등기부나 조합등기부에 등재됨으로써 법적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결합을 해체할 의무가 있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사표시를 행하고 필요한 사실상의 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관리인과 의무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64조 및 제666 내지 제670조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의무자에 대해 적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8) 이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참가기업 전체가 최종 회계연도에 5억 마르크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한 경우, 또는

2. 종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종 회계연도에 5천만 마르크 이하의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한 기업이 최소한 4백만 마르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다른 기업이 최소한 10억 마르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3. 최소한 5년간 상품과 용역이 공급된 시장으로서 최종 1년간 1천만 마르크 미만의 매출액이 기록된 시장에 관한 경우
매출액의 산정을 위해 제23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10문을 적용한다.
- (9) 제8항 1문 2호는 결합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신문이나 잡지 또는 그 일부의 출판, 제작 혹은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의 a 조 결합계획에 대한 신고

- (1) 결합계획은 연방카르텔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하 각호의 경우에는 연방카르텔관청에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합에 참가한 기업들 중 한 기업이 최종 회계연도에서 최소한 20억 마르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경우, 또는
 2. 결합에 참가한 기업들 중 최소한 두 기업이 최종 회계연도에서 각각 10억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경우, 또는
 3. 결합이 州法에 따라 법률 또는 그 밖의 공권력작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신고에 대해서는 제23조가 준용되며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6항에 의한 신고의 경우 신고시점이 결합시점을 대신하고 합병이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결합에 참여한 기업의 소유자, 대표자 또는 대표권있는 자가 신고의 의무를 진다. 신고는 제2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46조 제9항은 신고시에 요구되는 정보나 자료에 대하여 준용된다.
- (2) 결합계획이 연방카르텔관청에 신고된 경우, 연방카르텔관청은 결합계

획에 대한 심사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해 통지한 경우 및 신고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만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연방카르텔관청은 이하 각호의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결합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결합에 참가한 기업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또는
 2. 제1문에 규정된 1개월의 기간이나 또는 연방카르텔관청이 제1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 규정된 4개월의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이 실행된 경우, 또는
 3. 결합이 신고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또는
 4. 결합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고 연방카르텔관청이 제1문에 따른 통지나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결합금지를 행하지 않았던 상황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5. 연방카르텔관청이 결합에 참여한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행한 부당한 또는 불완전한 신고로 인해 제1문의 통지 또는 제24조 제2항 제1문의 결합금지처분을 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6. 제23조 제6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기간내에 행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연방카르텔관청이 제5호에 규정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경우.
- (3) 결합계획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결합신고의 의무는 존속하며, 제23조에 따른 신고시에는 결합계획의 신고시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 (4) 제1항 제2문에 따라 결합계획이 신고되어야 하는 경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연방카르텔관청이 제2항 제1문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혹은 합의 연장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결합을 실행하거나 결합실행에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규정은 연방카르텔관청이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결합계획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 규정은 기업의 합병, 조직변경, 흡수 또는 설립에 관한 계약 및 주식법 제291조와 제292조에 따른 기업계약이 상업등기부나 조합등기부에 등재됨으로써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의 b조 독점위원회

- (1)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기업집중의 추세 및 제22조 내지 제24의 a조의 적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위해서 독점위원회를 설치한다. 독점위원회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정책, 공학 또는 상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독점위원회의 위원은 대학교수나 사회과학연구소의 직원 이외에 정부 또는 연방이나 주의 입법단체나 연방, 주 또는 기타 공법인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독점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단체 또는 고용주와 피공용자의 조직의 대표자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 기구의 상근직이나 고정된 영업관리직에 있을 수 없다. 독점위원회의 위원은 독점위원회의 위원으로 취임하기 직전 1년 동안에도 상기 종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 (3) 독점위원회는 조사시에 기업집중의 현황 및 경제정책적 특히 경쟁정책적 관계에서 기업집중상태의 가능한 추세를 판단하고 제22조 내지 제24의 a조의 적용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독점위원회는 이 법률의 해당조항의 필요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독점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만 구속되며, 그 활동에 있어서는 독립적이다. 의견서의 작성시에 소수인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 (5) 독점위원회는 매3년마다 최근 2년간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이를 연방정부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입법기관에 즉시 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독점

위원회에 의해 발간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적당한 기간내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독점위원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추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독점위원회에 추가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독점위원회는 제4문과 제5문에 따른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다. 연방경제장관은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그가 결정해야 할 구체적 사안에 대해 독점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 (6) 독점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항 제1문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 매년 7월 1일에 위원중 1인은 퇴임한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그 때마다 4년 임기의 새로운 위원을 명명한다. 재임명은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위원을 제청하기 전에 독점위원회의 위원에게 청문한다. 위원은 연방대통령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의 직을 퇴임할 권리가 있다. 위원이 임기중에 퇴임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퇴임한 위원의 잔여임기동안 임명된다. 제4문 내지 제6문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 (7) 독점위원회의 의결은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독점위원회는 그들 중 1인의 의장을 선출한다. 독점위원회는 업무규칙을 제정한다.
- (8) 독점위원회는 업무과를 둔다. 그 업무과의 활동은 자료의 조사와 작성, 독점위원회의 합의의 기술적인 준비, 보고서의 인쇄 및 공고와 보충, 갑작스런 행정임무의 해결을 맡는다.
- (9) 독점위원회의 위원과 업무과의 직원은 심의와 독점위원회가 비밀이라고 표시한 심의자료에 대해 묵비할 의무가 있다. 그 묵비의 의무는 독점위원회에 제공된 비밀로 표시되어 있는 정보와도 관련된다.
- (10) 독점위원회의 위원은 보수와 여비의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연방경제장관이 연방내무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독점위원회의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제 24의 c조 독점위원회에 요약보고서 제출

- (1) 기업집중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방통계청과 주통계청은 독점위원회에 중요한 경영통계(상생산업통계, 수공업통계, 해외무역통계, 세금통계, 운송통계, 거래통계와 출판통계)가 수록된 요약보고서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제분야의 3,610개의 대기업 또는 공장의 수많은 지분에 대한 개별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 a) 판매를 위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
 - b) 매출액
 - c) 종업원의 수
 - d) 보수와 봉급금액
 - e) 투자
 - f) 부가가치
 - g) 기업수
 - h) 신문과 잡지의 종류에 따른 발행부수와 실제매출액
- 주통계청은 이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연방통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요약보고서를 얻은 자는 그들이 공무원이나 특히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달전에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1974년 8월 15일의 이 법률 제1조 제4호를 통해(BGBl,IS. 1942) 변경된 1974년 3월 2일의 공무원의무법 제1조 제2항, 제3항과 제4항 제2호(BGBl,IS. 469, 547 - 제42항)가 준용된다. 특히 제1항에 따른 의무자는 사적 비밀(제20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204조, 제205조)과 공무비밀(제353의 b조 제1항)의 침해에 관한 형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특히 공무에 대한 의무자와 동일하다.
- (3) 요약보고서는 전달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이 실현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 (4) 독점위원회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직원, 특히 공무에 대한 의무자 또는 제2항 제1문에 따른 의무자만이 요약보고서의 수령

자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5) 보고서는 연방통계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초소한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6) 제1항에 따른 경영통계가 수집될 때 조사된 기업에게 제1항에 의한 요약보고서가 독점위원회에 전달되었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 4 절 경쟁제한 및 차별행위

제 25 조 경쟁제한조치의 금지

- (1)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는 本法에 의하여 계약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는 다른 기업에 대해 本法이나 本法에 기인하여 행해지는 카르텔청의 처분에 의해 계약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손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부여해서도 안된다.
- (3)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는 다른 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
 - 1. 제2조 내지 제8조, 제29조,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항과 제7항, 제102조와 제103조에 규정된 계약과 결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 2. 제23조에 따라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것
 - 3. 경쟁을 제한할 의도에서 시장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제 26 조 공급거절 또는 구매거절의 금지; 배제금지

- (1) 기업과 사업자 단체는 특정한 기업을 부당하게 침해할 의도로 다른 기업이나 사업자단체에 공급거절 또는 구매거절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 (2) 제2조 내지 제8조,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 제100조 제1항 및 제7항, 제102조 내지 제103조 등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기업 및 사업자단체와, 제16조, 제100조 제3항 또는 제103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기업은 동종의 기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다른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동종의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간접적으로 차별취급을 할 수 없다. 제1문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다른 기업으로 거래선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과 사업자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과 사업자단체에게도 적용된다. 거래에 있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서 통상적인 가격이하 또는 기타 급부보상에 덧붙여서 동종의 수요자가 받지 못한 규칙적인 특혜를 받을 경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제2문의 규정에 있어 수요자에 예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 (3) 제2항 제1문의 의미에서 시장지배적 기업과 사업자단체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문의 규정은 제2항 제2문에 따라 그들에게 종속된 기업과 관련된 기업과 사업자단체에게도 적용된다.
- (4) 중소기업의 경쟁자들에 비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그 경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
- (5) 일정한 사실과 일반적 경험에 근거하여 볼 때 기업이 제4항에 규정된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한 외관이 발생한 경우, 그 기업은 그 외관에 대해 반증하고,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황에 대해, 제35조 제3항의 당해 경쟁자나 단체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피청구자인 기업으로서는 쉽게 할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제 27 조 경제협회나 전문단체에의 가입거절

- (1) 경제협회나 전문단체에 대한 기업의 가입이 거절될 때에는 카르텔성은 그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뜻하고 또한 경쟁

에 있어서 기업에 부당한 손해가 될 경우에는 참가기업의 신청에 따라 가입허용을 명할 수 있다. 本法의 의미에서 경제협회에는 품질표시단체가 포함된다.

- (2) 처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제11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 5 절 경쟁규칙

제 28 조 의 의

- (1) 경제협회나 전문단체는 그들의 영역범위내에서 경쟁규칙을 정할 수 있다.
- (2) 本法에서 경쟁규칙이란 경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원리나 공정한 경쟁활동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하고 또 경쟁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에 합치하는 경쟁행위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기업의 행위를 규정을 말한다.
- (3) 경제협회나 전문단체는 경쟁규칙에 관한 승인을 카르텔청에 신청할 수 있다.
- (4) 경쟁규칙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경제협회 또는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3. 경쟁규칙의 물적·지역적 적용범위의 표시
 - 4. 경쟁규칙의 취지
 신청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 1. 경제협회 또는 전문기관의 정관
 - 2. 경쟁규칙을 정관에 따라 정했다는 증명서
 - 3. 동일한 경제단계에서의 局外의 경제협회 또는 전문기관 및 기업과, 당해 경제분야의 관련 경제단계의 공급자협회와 수요자협회 그리고 연방조직들의 목록

(5) 승인된 경쟁규칙의 변경과 보충은 카르텔청에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경쟁규칙준수에 관한 합의의 허용

참가자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합의는 本法 제1조의 계약 또는 결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 30 조 승인신청서의 절차

카르텔청은 경쟁규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해의 동일한 경제단계의 비참가기업, 공급자와 구입자의 경제협회 또는 전문기관 및 당해 경제단계의 연방조직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카르텔청은 승인에 대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신청에 관한 공개적인 구두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1 조 승인신청의 거절: 철회 또는 취소

- (1) 카르텔청은 그러한 규칙이나 제29조의 의미에서 그에 관한 합의가 本法, 부정경쟁방지법, 가격할인법 또는 판결이나 기타 법률상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정한 경제보호령 제1편(경품법)의 규정 - 연방법률공보 제 3편에 분류번호 43-4-1로 공고, 1987년 10월 22일에 제정된 本法의 제18조를 통해 개정(BGBI.IS.2294) - 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쟁규칙의 승인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2) 경제협회 또는 전문기관은 자신이 제출하여 승인된 경쟁규칙을 취소할 경우 카르텔청에 신고해야 한다.
- (3) 카르텔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의 거절을 위한 조건이 존재함을 사후에 확인한 때에는 그 승인을 철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32 조 공고의무

- (1) 연방공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신고
 2. 제30조 제2문에 따른 구두공청회의 기일지정
 3. 경쟁규칙 및 그 변경과 보충에 관한 승인
 4. 제31조 제3항에 따른 경쟁규칙의 폐기
-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을 공고할 때에는 승인을 신청한 경쟁규칙이 공개열람을 위해 카르텔청에 비치되어 있다는 취지가 언급되어야 한다.
- (3) 승인을 위해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이 행해지는 경우 승인공고를 위해서는 신청의 공고를 인용함으로써 족하다.

제 33 조 정 보

카르텔청은 신청이 있는 경우 제28조 제4항 제1문에 따른 신고사항이 통지되는 동안, 승인된 경쟁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절 일반규정

제 34 조 서면형식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제2조 내지 제8조) 및 제16조, 제18조,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된 제한을 포함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에는 민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된 결의, 정관 또는 가격표를 인용하는 증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때에는 민법전 제1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손해배상: 부작위청구권

-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本法의 규정 또는 本法을 근거로 카르텔청이나 항고법원이 행하는 처분을 위반한 자는 그 규정 또는 처분이 다른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반이 제27조를 근거로 행해지는 처분에 대한 것일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르텔청이나 항고법원이 행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제70조 제3항에 의한 처분이나 확인이 분명한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3) 제1항의 경우에는 단체 자체가 민사분쟁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 영업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에 의해서도 부작위청구권이 주장될 수 있다.

제 36 조 대리인의 선임

- (1) 카르텔 및 권리능력이 없는 경제협회와 전문기관은 본법에 따라 규율되는 카르텔청을 상대로 한 모든 사항 및 항고절차(제62조 내지 제72조)와 법률항고절차(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정관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카르텔청에 통지해야 한다.
- (2) 제1항에 상당하는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카르텔청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⁵⁾이 그 대리인을 임명한다. 카르텔청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신청으로 신청한다. 지방법원은 흠결이 제거된 때에는 그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제 37 조 카르텔회원의 연대책임

권리능력이 없는 카르텔의 구성원은 카르텔의 수인인이 그에게 속하는 직무의 집행시에 本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5) 地區法院(Amtsgericht)

제 7 절 금지절차, 추가수입징수

제 37의 a 조 금지대상

- (1) 카르텔청은 제1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00조 제1항 제3문 또는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 계약 또는 결의의 시행을 금지할 수 있다.
- (2) 카르텔청은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제25조, 제26조와 제38조 제1항 제11조 또는 제21조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 37의 b 조 추가수입징수

- (1) 기업이 제22조 제5항, 제103조 제6항에 따른 처분과 함께 카르텔청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카르텔청의 처분통지후에 추가적 수입을 얻은 경우 카르텔청은 제70조 제3항에 따라 처분 또는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기업으로 하여금 카르텔청에 그 추가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추가수입징수). 제1문의 규정은 추가수입이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또는 벌금과 같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수입의 과징명령은 제70조 제3항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해야 한다.
- (2) 추가수입징수의 실행으로 과도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을 일정금액으로 한정하거나 전혀 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추가수입징수는 추가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도 발하지 않는다.
- (3) 추가수입의 정도는 추정될 수 있다. 추가수입의 지급금액은 숫자로 추산한다.
- (4) 추가수입지급명령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남용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되는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카르텔청에 제시하면 카르텔청은 추가수입지급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추가수입이 카르텔청에 이미 납부되었고,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카르텔청은 입증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지급받은 추가수입

을 그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제 2 장 질서위반

제 38 조 질서위반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질서위반에 해당한다.

1. 제1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00조 제1항 제3문, 제103조 제2항 또는 제106조에 따라 무효⁶⁾인 계약이나 협정의 무효를 무시하는 자
2. 카르텔청이 제102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7항 제3호, 제102의 c조 제2항, 제103조 제6항 제3호, 제103의 a조 제3항 또는 제104조 제2항 제3호와 함께 제3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통해 무효로 선언한 계약과 협정의 무효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무시한 자
3. 허가없이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담보물을 환가하는 자
4. 명백히 과태료에 해당하는 한 제47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 제38의 a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02의 a조 제2항, 제103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104조 제2항 제1호와 함께 제102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7항 제2호, 제27조, 제37의 a조와 함께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분명하고 엄격한 과태료를 명한 제56조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제63의 a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38의 a조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른 집행력 있는 처분을 위반한 자
6. 조건이 붙은 처분을 발하고 그 처분에 과태료의 부과를 명시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카르텔청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자

6) Unwirksamkeit와 Nichtikeit

7.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本法의 인가 또는 경쟁규칙의 승인을 사취하거나 또는 카르텔청으로 하여금 제2조, 제3조, 제5의 a조 제3항, 제5의 b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의제기나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대한 금지와 제24의 a조 제2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금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자
 8. 제24조 제2항 제4문의 금지에 위반하거나 또는 이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에 협력하거나 제25조와 제26조의 금지에 위반하는 자
 9. 타인이 카르텔청의 규제를 신청 또는 유도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한 자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질서위반을 범하는 데 대하여 권고를 통해 협력한 자
 11. 本法에 규정된 금지 또는 本法을 근거로 카르텔청이 행한 처분을 동일한 행위를 통해 회피하도록 권고한 자
 12. 상품의 구매자에게 제3자에 대한 재판매시 일정한 가격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일정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가격결정시에 정해진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자
- (2) 제1항 제11호와 제1호가 적용될 때의 제1항 제12호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중소기업단체가 그 구성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다음의 권고
 - a) 대기업 및 대기업적 기업형태의 참가자들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쟁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경우, 그리고
 - b) 권고수락자에 대해서 비구속적임이 명시되고, 권고의 실행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술적 압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표준 및 유형의 통일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한 다음의 권고
 - a) 제1호 b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 b) 권고자가 카르텔청에 권고를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합리화단체의 의견을 첨부한 경우, 이 때의 신고는 신고서에 합리화단체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합리화단체의 의견에는 비구속적임을 명시할 필요도 없으며, 그 의견을 카르텔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3. 제2조 제1항의 할인을 포함한 거래, 공급 및 지급 등에 관한 일반적 조건(보통거래약관)의 통일적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회와 전문기관의 권고, 이 경우 제1호 b와 제2호 b가 준용되며, 후자는 신고서에 당해 경제협회와 전문기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3) 제2항의 요건이 전혀 또는 더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그 권고가 제1항 제11호나 제12호의 적용제외를 남용하는 것으로 카르텔청이 확정할 경우 카르텔청은 제2항에 규정된 권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유사한 권고를 금지할 수 있다.
- (4) 질서위반은 100만 독일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를 초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추가수입의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추가수입의 규모는 추정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질서위반에 대한 소추의 소멸시효는 인쇄물 유포를 통해 그 위반이 유포되었을 경우에도 질서위반에 관한 법⁷⁾에 따른다.

제 38의 a조 비구속적 가격권고

- (1)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는 다른 생산자의 유사한 상품과 가격경쟁 상태에 있는 자신의 상표품의 재판매를 위해 하는 기업의 비구속적인 가격권고에는 그 권고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1. 비구속적으로 명시되고, 오직 일정가격을 유지하고, 그 실행에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압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권고된 가격이 권고를 받은 다수에 의해 요구된 가격에 상응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권고가 행해진 경우
- (2) 제1항에서 상표품이라 함은 가격권고기업이 언제나 동일한 또는 개선된 품질로 공급이 보증되고,

7) Gesetz über Ordnungsgewirdigkeiten

1. 생산품 자체 또는
2.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정해진 포장 또는 장식 또는
3. 판매될 생산품의 용기에

출처에 관한 표시(商標, 語標, 像標)가 제공되는 생산품이다. 제1문은 생산품의 성질에 기인하고, 또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조치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생산품의 미미한 품질상의 편차가 고려되지 않는 한에서 농산물에 적용된다.

- (3) 카르텔청은 권고가 제38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의 적용제외의 남용으로 확정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유사한 권고를 금지할 수 있다. 특히 남용은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1. 권고가 단독으로 또는 경쟁제한과 함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상품의 가격하락을 방해하거나 상품생산 또는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2. 권고가 다수의 권고수락자로부터 요구된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데 적합한 경우
 3. 다수의 경우에 권고된 가격이 본법의 모든 적용범위 또는 그 중의 중요한 부분에서 실제 요구된 가격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
 4. 권고기업의 판매규정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기업 또는 특정소비단체를 상품판매로부터 제외시키는 경우
- (4) 카르텔청은 정보가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업에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 제5항 및 제9항이 준용된다. 카르텔청은 정보제출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46조에 따른 카르텔청의 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5)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전에 카르텔청은 가격권고기업에 대해 문제가 된 남용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6) 카르텔청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받거나 질서위반이나 남용을 구성하는 권고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기업에 대해 제1항에 규정된 권고의 적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두가지 처분
2. 제38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확정된 두가지의 과태료 처분
3.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처분 및 제38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확정된 과태료처분

카르텔청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규정된 새로운 남용이나 제38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새로운 질서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할 경우 당해 기업의 신청으로 금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9 조 정보제출기간 및 신고기간의 위반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는 질서위반에 해당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47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을 포함하여 제23조 제6항, 제38조 제4항 또는 제46조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게 또는 시기에 부적당하게 정보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47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을 포함하여 제46조에 반하여 사업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또는 시기에 부적당하게 제출하거나 또는 조사의 허용을 거부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9조 제1항 제3문, 제100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고시를 즉각 하지 않거나 또는 아울러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보고를 하는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의 a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보고를 하는 자

(2)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만 독일마르크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0조~제43 조 삭 제

제 3 장 행정관청

제 1 절 카르텔청

제 44 조 관할권

- (1) 본법에서 카르텔청에 위임된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담당한다.
1. 연방카르텔청(제48조)
 - a) 제4조, 제6조와 제7조의 임무와 권한이 연방경제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한,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카르텔에 관한 사항
 - b) 제16조에서 규정한 계약과 제38의 a조에 규정된 권고
 - c) 제23조 내지 제24의 a조의 임무와 권한이 연방경제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한, 제23조 내지 제24의 a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 d) 시장영향력 또는 경쟁제한적 또는 차별적인 행위의 효과 또는 경쟁규제의 효력이 1개주의 영역을 넘어 미치는 경우
 - e) 독일 연방우편과 독일 연방철도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을 포함한 제8조, 제12조 제2항과 제3항 내지 제5항을 포함한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의 연방경제장관
 3. 기타 관련된 주법에 따라 관할권 있는 주상급관청
- (2) 보험회사, 건축저축금고, 또는 금융업무 또는 저축은행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 사업자의 단체에 대하여 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과할 경우, 카르텔청은 전문적인 관할감독관청과 과태료결정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카르텔청은 이러한 협의를 대신하는 연방경제장관의 지시를 받기 위해 그 문제를 연방경제장관에게 제출한다. 전문적인 관할감독관청이 주관청일 경우, 카르텔청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제 45 조 쌍무적 보고의무 및 절차의 이송

- (1) 연방카르텔청이 기업, 카르텔, 경제단체 또는 전문협회에 대하여 행정 절차(제51조 내지 제58조) 또는 과태료부과절차(제81조 내지 제85조)를 개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동시에 지역관할권이 있는 주상급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2) 주상급관청이 기업, 카르텔, 경제단체 또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협회에 대하여 행정절차나 과태료부과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동시에 이를 연방카르텔청에 보고한다.
- (3) 주상급관청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사건을 연방카르텔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방카르텔청은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상급관청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사건을 주상급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46 조 카르텔청의 권한

- (1) 본법이 카르텔청에 위임한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카르텔청은 다음 각호를 행할 수 있다.
 1.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한 그들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정보의 요구
 2.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한 일상업무시간내에 업무상의 자료들에 대한 열람 및 조사
 3. 경제단체 또는 전문협회에 대한 정관, 협정에 관한 정보 및 그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회원의 수와 성명에 관한 정보의 요구.
- (2) 기업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법인, 조합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대표로 임명된 자 및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대표자는 요구된 정보를 알리고, 업무상의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상의 자료조사 및 사무실과 사업장의 출입을 승인할 의무를 진다.
- (3) 카르텔청에 의하여 조사계획을 위임받은 자들은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 기본법 제13조의 기본권은 이 한도에서 제

한된다.

- (4) 수색은 수색이 행해져야 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만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내지 제310조와 제311의 a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지체에 따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자들이 업무시간 중에 판사의 명령없이도 필요한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색과 그 중요한 결과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사의 명령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에 따른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도 조사서에 밝혀야 한다.
- (5)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답변으로 인해 그 자신이나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친족들 중의 한 사람을 형법상의 소추 또는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6) 연방경제장관 또는 주상급관청은 서면상의 개별조치를 통해 그리고 연방카르텔청은 결정을 통해 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 대상 및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 (7) 연방경제장관 또는 주상급관청은 서면상의 개별조치를 통해 조사를 처리하며 연방카르텔청은 청장의 동의를 얻은 결정을 통해 이를 처리한다. 이러한 조치나 결정에는 조사의 시기, 법적 근거, 대상과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8) (폐지)
- (9)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의하여 취득된 지식과 자료는 조세질서위반이나 외국환규제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절차 또는 과태료절차와, 조세범이나 외국환범을 원인으로 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조세법 제105조 제1항과 제116조 제1항과 함께 제93조, 제97조, 제105조 제1항, 제111조 제5항의 규정들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문의 규정은 조세범을 원인으로 하는 절차 및 그와 관련된 과세절

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시행에 대해 부득이 공공의 이익이 존재할 때, 또는 신고의무자나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의 고의적인 허위 기재가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연방카르텔청의 권한

- (1) 유럽경제공동체설립에 관한 조약 제88조와 제89조 및 동 조약 제87조의 규칙, 그리고 동조약의 기타 수권근거에 의해 구성국의 관청에 위임된 임무는 연방카르텔청에 의해 행해진다.
- (2) 이 임무수행을 위해 연방카르텔청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연방카르텔청은 유럽공동체법이 금지하는 협정, 결의, 동조행위 및 지배적 지위의 금지된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더욱이 유럽공동체의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에 사건이 해당되더라도 연방카르텔청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법의 절차규정도 적용된다. 행정비용을 전보하는 수수료는 신청되지 않는다.

제 2 절 연방카르텔청

제 48 조 조 직

- (1) 연방카르텔청은 독립적인 연방상급관청으로서 베를린에 본부를 둔다. 연방카르텔청은 연방경제장관의 관할기관이다.
- (2)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은 연방경제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구성되는 심결부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밖의 경우에 청장은 업무규칙에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의 업무의 분배와 처리를 결정한다. 업무규칙은 연방경제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 (3) 심결부는 1인의 심리장과 2인의 심리관으로 구성한다.
- (4) 심결부의 심리장과 심리관들의 임기는 종신제이다. 심리장과 심리관들은 판사 또는 상급행정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심리장은 원칙적으로 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5) 연방카르텔청의 직원은 기업, 카르텔 또는 경제단체나 전문협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사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 49 조 연방경제장관의 일반지시의 공고

연방경제장관이 연방카르텔청에 본법에 따라 처분의 허가 또는 중지에 대한 일반적 지시를 내리는 경우 이러한 지시는 연방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 50 조 직무보고

- (1) 연방카르텔청은 독점위원회가 제24의 b조 제5항 제1문에 따라 감정을 해야 하는 과거 2년간의 실적과 관련업무에 있어서의 상태 및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그때 그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제49조에 따른 연방경제장관의 일반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연방카르텔청은 그의 행정원칙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 (2)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카르텔청의 보고서를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절 차

제 1 절 행정사건

I. 카르텔청의 절차

제 51 조 절차의 참가인

- (1) 카르텔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절차를 개시한다.
- (2) 카르텔청의 절차에 대한 참가인은 다음과 같다.
1.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

2. 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카르텔, 기업, 경제단체 또는 전문협회
 3. 제14조, 제19조, 제105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사업자단체
 4. 결정으로 그 이익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카르텔청이 신청에 의하여 당해 절차에의 참가를 허가한 사람과 인적 단체
 5. 제2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양도인
- (3) 연방카르텔청도 주상급행정관청의 절차상의 참가인이다.

제 52 조 비관할권의 항변

- (1) 참가인이 카르텔청의 지역적 또는 물적 비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카르텔청은 사전에 그 관할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연기적 효력을 갖는다.
- (2) 참가인이 카르텔청의 지역적 또는 물적 비관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르텔청이 그 관할권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제 53 조 청문: 구두심리

- (1) 카르텔청은 참가인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참가인들의 신청에 의해 그들을 구두심리에 참가시켜야 한다.
- (2) 카르텔청은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제단체의 대표자들에게 적당한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3) 제22조의 경우에 카르텔청은 공개적인 구두심리를 토대로 결정하지 만, 참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심리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심리의 공개가 공공질서, 특히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거나 중대한 사업상 또는 업무상 비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4조와 제24의 a조의 경우에는 연방경제장관의 절차상에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4 조 증거조사

- (1) 카르텔청은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검증할 수 있다.
- (2) 목격자, 증인 및 감정인을 통한 증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1항, 제376조, 제377조, 제380조 내지 제387조, 제390조, 제395조 내지 제397조, 제398조 제1항, 제401조, 제402조, 제404조, 제406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 내지 제414조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항고에 대한 결정은 주상급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 (3)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카르텔청의 조사원과, 법원서기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서기도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심리의 장소와 일자 및 작성자와 참가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 (4) 조서는 증인에게 그의 동의를 위하여 낭독되어야 하고, 교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승인된 동의는 기입되어야 하고, 증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증인이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 (5) 감정인의 심문의 경우에도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6) 카르텔청은 진실한 증언을 유도해내기 위해 증인의 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선서를 지방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선서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한다.

제 55 조 압 류

- (1) 카르텔청은 조사를 위한 증거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그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2) 카르텔청은 압류시 그 당사자 또는 성인인 친족이 없거나 또는 그 당사자나 그의 성인인 친족이 당해 압류에 대해 명백히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행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확인을 3일 이내에 청원해야 한다.

- (3) 당사자는 압류에 대해 언제나 법원의 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참가인은 이러한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 청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 (4)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내지 제310조, 제311의 a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56 조 임시명령⁸⁾

카르텔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 상태의 규제를 위하여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20조 제3항, 제21조 또는 제24조 제3항의 인가, 제11조 제2항의 인가연기, 제11조 제4항과 제5항의 인가취소 또는 변경
2. 제14조의 인가
3. 제3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제1문과, 제5항 내지 제7항, 제27조, 제31조 제3항, 제37의 a조, 제38조 제3항, 제38의 a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02의 a조 제2항 또는 제104조 제2항의 처분

제 57 조 카르텔청의 처분

- (1) 카르텔청은 처분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당해 처분은 1976년 12월 14일 + 공포된 법률 제39호(BGBl. I. S. 3341)에 근거하여 최근 개정되어 연방법률공보 제3권 201-3에 공고된 수정판상의 행정송달법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그 처분의 근거 및 가능한 법률구제수단에 대한 명시와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카르텔청은 본법의 적용범위 밖에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제22조 내지 제24의 a조에 따

8) 가명명(역자)

른 절차에서 행해지는 처분을, 그 기업이 연방카르텔청에 송달수입자로 지명한 자에게 송달한다. 기업이 송달수입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카르텔청은 연방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그 처분을 송달한다.

- (2) 절차가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에 따라 참가인에게 송달될 처분으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 58 조 처분의 공고

다음과 같은 카르텔청의 처분은 연방관보에 그리고 주상급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의 관보에도 공고되어야 한다.

1.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결의의 인가 또는 경쟁규칙의 승인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
2.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 제5의 a조 제3항 또는 제5의 b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르텔청의 이의신청을 포함하는 처분
3.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된 금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가, 그에 대한 각하, 변경, 취소 또는 철회를 포함하는 처분 또는 제24조 제6항 또는 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4.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2조 제5항, 제27조, 제38조 제3항, 제38의 a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02의 a조, 제103조 제6항, 제103의 a조 제3항 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2조 제5항, 제27조, 제38조 제3항, 제38의 a조 또는 제6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02의 a조, 제103조 제6항, 제103의 a조 제3항 또는 제104의 a조 제2항에 의한 처분

제 59 조~제 61 조 삭 제

II. 항 고

제 62 조 항고의 허용

- (1) 카르텔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할 수도 있다.
- (2) 카르텔청의 절차상의 참가인(제51조 제2항과 제3항)은 누구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3) 항고는 카르텔청이 신청된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자신이 신청한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다. 카르텔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충분한 이유없이 처분신청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경우도 카르텔청의 불이행으로 본다. 그 불이행은 신청을 각하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 (4) 항고에 대하여는 카르텔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의 상급법원이 전속적으로 결정하며, 제24조와 제24의 a조의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의 상급법원이 전속적으로 결정하며, 연방경제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 63 조 항고의 연기적 효력

- (1) 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항고는 연기적 효력을 갖는다.
 1. 제11조 제4항과 제5항 또는 제24조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의 경우
 2. 제3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3항 제2문, 제22조 제5항, 제27조, 제31조 제333항, 제37의 a조, 제37의 b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02의 a조 제2항, 제103조 제6항, 제103의 a조 제33항 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인가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시명령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항고의 종료 또는 담보의 제공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은 언제나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항고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 63의 a 조 즉각적 이행명령

- (1) 카르텔청은 제63조 제1항의 경우 공익상 또는 관계인의 중대한 이익상 필요한 때에는 처분의 즉각적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명령은 항고제기 이전에 발할 수 있다.
- (3) 다음 각호의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효력의 연기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명령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이의신청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3. 처분의 이행이 당사자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항고가 연기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카르텔청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 연기는 제1항 제3호의 요건들이 존재하는 경우 행해져야 한다. 항고법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 (4)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신청은 항고가 제기되기 이전에 허용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이 근거한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었을 때 처분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이행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연기적 효력의 갱신과 명령은 담보의 제공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 (5) 제3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

다. 그 결정들에 의해 신청이 허용된 때에는, 그 결정들은 취소할 수 없다.

제 64 조 손해배상

제14조에 따라 인가를 허용하는 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이의신청된 처분에 근거한 조치를 취한 관계인들은 이해관계인에게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에게 확정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제 65 조 기간과 형식

- (1) 항고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처분을 내린 카르텔청에 대해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은 카르텔청의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24조 제2항의 규정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연방카르텔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기간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경제장관이 내린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항고는 위 기간내에 항고법원에 제기될 때 유효하다.
- (2)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제62조 제3항 제2문)에는 항고는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3) 항고에는 이유서가 있어야 한다. 항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1월로서, 기간은 항고가 제기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항고법원의 재판장의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 (4) 항고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범위, 그 처분 중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부분 등에 대한 설명
 2. 항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진술
- (5)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에는 독일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의 서명이 있

어야 하지만, 카르텔청의 항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6 조 항고절차의 관계인

- (1) 항고법원의 절차상 관계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1. 항고인
 2. 이의신청된 처분을 내린 카르텔청
 3. 판결로 인해 그의 이익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신청에 의하여 카르텔청이 절차참가 인정한 사람과 인적 단체
- (2) 주의 상급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도 절차상의 관계인이 된다.

제 67 조 대리인의 의무

- (1) 관계인은 항고법원에서 독일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를 통해 그의 이익을 주장하여야 한다. 카르텔청은 청의 직원을 통하여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 (2)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전문인에게도 발언권이 부여된다. 그 범위내에서 민사소송법 제 157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68 조 구두심리

- (1) 항고법원은 구두심리를 근거로 항고에 대해 결정하지만, 관계인의 동의에 의하여 구두심리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
- (2) 관계인이 적시의 통지를 받고도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두심리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사건은 심리되고 결정될 수 있다.

제 69 조 판사의 직무

- (1) 항고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2) 재판장은 형식상의 하자가 제거되고 불분명한 신청이 분명해지고, 적절한 신청이 제기되고, 불충분한 사건진술을 보충되고, 나아가 기타 사실의 확인과 판정을 위해 중요한 설명이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항고법원은 관계인들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해명을 요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서류 및 다른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간을 지체했을 때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첨부되지 않은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70 조 항고법원의 사후조사영역

- (1) 항고법원은 모든 절차의 진행 결과 얻어진 자유로운 논증에 기초한 결론에 기초하여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결정은 단지 관계인이 진술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에만 근거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로 인해 특히 제작상,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서류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서류내용이 역시 공개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항고법원은 절차를 달리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그 판결이 피소환자(Beigeladene)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정도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참가하는 피소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항고법원은 카르텔청의 처분이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카르텔청의 처분이 이미 취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카르텔청의 처분이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없는 것으로 판결할 수 있다.
- (3) 제22조 제5항 또는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사실상의 관계의 사후변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인해 폐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에 의

해서 어느 범위에서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처분이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 (4) 항고법원이 처분의 각하 또는 불이행이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없다고 볼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된 처분을 하는 것이 카르텔청의 의무임을 밝힌다.
- (5) 카르텔청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였을 때, 특히 재량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결정을 통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그 처분은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없는 것으로 된다. 국민경제적 사정과 추세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재심사항이 아니다.
- (6) 판결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관계인에게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 71 조 서류열람

- (1)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의 관계인은 법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자기의 비용으로 그 서류의 정본, 초본 및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3항이 준용된다.
- (2) 사전심리서류, 본안심리서류, 감정서류, 조회서류 등에 대한 열람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서류상의 진술을 청취한 판청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 카르텔청은 중요한 이유로, 특히 제작상,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는 증거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열람이 거부되거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료는 단지 그 내용이 항고를 위해 사용되는 한에서 판결의 이유로 이용될 수 있다. 항고법원은 결정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비밀보전이 제작상,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판결할 수 있다. 판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4문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통해 변호될 필요는 없다. 항고법원은 정보공개에 대한 당사자

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중요한 이유로 특히 제작상,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로 인해 비밀보전이 요구된 사실 또는 증거의 공개를, 판결이 이러한 사실 또는 증거에 좌우되고, 사건설명의 다른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경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경쟁의 보호가 비밀보전에 대한 관계인의 이익에 앞서는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 (3) 항고법원은 제66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처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와 동일한 범위에서 서류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2 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의 준용

항고법원의 절차상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재판공개, 법정질서유지, 법정용어, 심리, 표결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69조 내지 제197조
2. 법관의 제척과 기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 직권에 의한 신청, 소환, 기간 및 기한, 당사자의 개인적인 출두명령, 소송의 병합, 증인과 전문가의 증거제출 및 증거절차의 기타 방법, 기간의 경과로 인한 원상복구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규정

Ⅲ. 재항고

제 73 조 허 가

- (1) 상급법원이 재항고를 허가하는 경우 재항고는 상급법원의 본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연방법원에서 행해진다.
- (2) 다음 각호의 경우 재항고는 허가된다.
 1. 원칙적인 의미의 법률문제가 결정되어야 하거나
 2. 법률의 개선 또는 통일적 판결의 보장이 연방법원의 판결으로 행해져야 하는 경우

- (3) 재항고의 허가 또는 불허가는 상급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불허가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 (4) 절차상 다음 각호의 하자가 제기되는 경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 1. 결정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2.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되었거나 결과에 대한 편견의 우려 때문에 기피된 판사가 결정에 관여한 경우
 - 3. 관계인의 적법한 청문이 거부된 경우
 - 4. 관계인이 절차의 진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가 절차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되지 못한 경우
 - 5. 절차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구두심리를 이유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6. 결정이 이유가 없는 경우

제 74 조 불허가항고

- (1) 재항고의 불허가는 불허가항고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의신청될 수 있다.
- (2) 불허가항고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이유를 밝힌 판결을 통해 결정한다. 판결은 구두심리없이 선고될 수 있다.
- (3) 불허가항고는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주의 상급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 (4) 불허가항고에 대하여는 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2항, 제65조 제3항,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71조 그리고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심리와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192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항고법원은 임시명령(가명령)의 발할 권한이 있다.
- (5) 재항고가 불허된 경우 항고법원의 판결은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재항고가 허가된 경우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 75 조 소송권리인: 형식과 기간

- (1) 재항고는 카르텔청과 소송의 관계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
- (2) 재항고는 판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50조, 제551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가 준용된다. 재항고는 카르텔청이 제44조를 위반하여 그의 관할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제기될 수 없다.
- (3) 재항고는 1개월 내에 서면으로 항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 (4) 연방법원은 이의신청된 결정에서 행해진 사실확인에 구속되지만, 단 이러한 사실확인을 함에 있어서 허용되고 이유있는 재항고의 이유가 제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밖에 재항고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과 제2항, 제65조 제3항,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가 준용된다. 항고법원은 임시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IV. 공통규정

제 76 조 관계인의 범위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률상 능력없는 사단도 카르텔청의 절차, 항고 및 재항고상의 관계인이 될 수 있다.

제 77 조 비용결정

항고 및 재항고 법원은 소송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들이 정당한 경우에 관계인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관계인이 이유없는 항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비용을 발생시

킨 경우에 그 비용은 그 관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그밖에 비용확인절차와 확인된 비용의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제 78 조 비용산출

- (1) 항고 및 재항고절차상의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항고의 수수료는 항고법원에 대한 규정을 표준으로 하며, 재항고절차상의 수수료는 상고법원에 대한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 (2) 소송참가인의 항고 또는 재항고를 근거로 한 절차(제51조 제2항 제4호)에 있어서 소송가액은 소송참가인의 신청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소송가액은 50만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79 조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

(변호사에 대한 연방수수료령의 개정)

제 80 조 수권규정: 수수료납부의무행위

- (1) 카르텔청의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 명령(Rechtsverordnung)을 통해 연방정부가 규정한다.
- (2) 카르텔청의 절차에 있어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수료가 징수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행위가 된다.
 1. 제103조 제3항과 제103의 a조 제1항 제3문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 제24의 a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2문, 제102조 제1항 및 제102의 a조 제1항 제1문을 포함하여 제3문에 따른 신고
 2.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과 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4의 a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7의 a조, 제38조 제3항, 제38의 a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56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의 a조 제2항, 제103조, 제103의 a조, 제104조, 제105조를 근거로 한 직무행위

3. 제24조 제8항의 경우가 제기되거나 합병이 제24의 a조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고시

4. 카르텔청의 서류에 대한 사본의 발급

그밖에 공개고시비용이 징수된다. 카르텔청이 계약 또는 판결에 대해 이미 제6조 제4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직무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제11조 제4항 제1호를 포함한 제27조 제3항의 경우 수수료는 단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징수된다. 제24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합병의 금지에 대한 수수료에 있어서는 제24의 a조 제1항에 따른 합병계획의 신고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합병고시에 대한 수수료가 계산되어야 한다.

(3) 수수료의 가액은 수수료의 지급의무행위의 대상이 갖는 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카르텔청의 인적 물적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수료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3조, 제24조와 제24의 a조의 경우에는 10만 마르크
2. 제4조, 제5조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22조 제5항 및 제102조 제1항 - 또한 제3항을 포함하여 - 의 경우에는 5만 마르크
3. 제2조와 제4조의 경우에는 3만 마르크
4. 제5의 a조와 제5의 b조의 경우에는 1만 5천 마르크
5.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28조 제3항, 제38조 제3항, 제38의 a조 제3항과 제6항, 제102조 제2항 - 또한 제3항을 포함하여 - 제102의 a조 제2항, 제103조 제6항, 제103의 a조 제3항과 제10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만 마르크
6.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의 a조, 제99조 제2항, 제100조

- 제1항 제2문, 제102의 a조 제1항 제3문, 제103조 제3항과 제103의 a조 제1항 제3문의 경우에는 5천 마르크
7. 제38조 제2항 제2호가 제3호의 경우에는 2천 5백 마르크
 8. 제17조 제1항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이 가격에 관한 것일 경우에 한해 2천 마르크
 9. 제5조 제4항, 제91조 제1항의 경우에는 1천 마르크
 10.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백 마르크
 11. 인증사본의 발급(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35 마르크
 12. a) 제6조 제4항, 제11조 및 제27조 제3항의 경우에는 인가 또는 서류 작성의 정리에 대한 금액(제2호와 제6호)
 - b) 제12조 제102조 제4항과 제104조의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금액(제2호 내지 제6호), 제5의 c조에 규정된 계약 또는 판결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1만 5천 마르크 그리고 제100조 제1항과 제7항에 규정된 계약 또는 판결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는 5백 마르크
 - c) 제14조, 제105조의 경우에는 담보가격의 2/100
 - d) 제31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제5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금액
 - e) 제56조의 경우에는 총수수료의 1/5
- 특별한 경우에 카르텔청의 인적 또는 물적 비용이 수수료의 지급의 무행위의 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저히 높아질 때 그 수수료는 최고 두배까지 높일 수 있다. 정당성을 근거로 제1문 내지 제3문을 고려하여 조사된 수수료는 1/10까지 감해될 수 있다.
- (4) 수수료납입의무자의 수개의 동종의 직무행위 또는 동종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납입을 위해 행정비용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려한 총수수료율이 미리 고려될 수 있다.
 - (5)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징수될 수 없다.
 1. 구두 및 서면상의 정보 및 제안의 경우
 2. 사건을 정당히 처리했다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 제24조 제3항의 경우에 제24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연방카르텔청의 기존 처분이 취소될 때
- (6) 신청이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 철회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여야 한다. 카르텔청이 결정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 (7) 다음 각호의 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자이다.
1. 제2항 제2문 제1호의 경우의 신청한 자
 2. 제2항 제2문 제2호의 경우 신청을 통하여 카르텔청의 행위를 유발한 자, 또는 그에 대해 카르텔청의 처분을 받은 자
 3. 제2항 제2문 제3호의 경우 신고를 마친 자
 4. 제2항 제2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등본의 발부를 유발한 자
 5. 제11조 제5항 제1호를 포함한 제27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카르텔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기업.
- 또한 수수료납부의무자는 카르텔청에서 교부하거나 고시한 명세서를 통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청구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납부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수인의 수수료납부의무자는 연대책무자로 본다.
- (8) 수수료의 지급청구권은 수수료가 확정된 후 4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한다.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후 4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 (9)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통해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수료납부의무자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 징수 및 제10조, 제32조 그리고 제58조에 언급된 공고의 비용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 경우에 연방정부는 공법상의 법인에 대한 비용면제와 소멸시효 및 비용징수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 (10)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을 통해 제77조의 원칙에 따라 카르텔청의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한다.

제 2 절 과태료 부과절차

제 81 조 질서위반시 관할권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질서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관할카르텔청
2. 그밖에 제47조에 따른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

제 82 조 사법절차상 고등법원의 관할권

- (1)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카르텔청이 소재하는 지구의 고등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고등법원은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2문과 제69조 제1항 제2문의 경우 법원판결의 신청(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고등법원은 재판장을 포함한 3인의 판사로 구성한다.

제 83 조 연방법원의 재항고

재항고(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결정한다. 연방법원이 사건 자체를 판결하지 않고 이의신청된 판결을 파기한 경우, 연방법원은 파기된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그 사건을 반송한다.

제 84 조 과태료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카르텔청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항)에 있어서는 제82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 85 조 집행시 법원의 결정

과태료 부과에서 필요한 법원의 결정(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104조)은 제82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 86 조 및 제 86의 a 조 삭제

제 3 절 민사소송

제 87 조 지방법원의 전속적 관할권

- (1) 본법 또는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소송사건의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
- (2) 소송은 법원조직법 제93조 내지 제114조의 상사사건이다.

제 88 조 소송의 병합

본법 또는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에 의한 소송(제87조)은 그것이 제87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정한 청구와 법률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상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를 위한 소송과 병합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청구를 위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적 관할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같다.

제 89 조 여러 개의 법원관할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관할권

- (1) 주정부는 카르텔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 특히 통일적인 판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규명령을 통해 제87조에 따라 수개의 지방법원들이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을 일개의 지방법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수권할 수 있다. 주정부는 주의 사법부서에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2) 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주사이의 조약을 통하여 여러 주들의 개별적인 구역들 또는 전체 구역에 대해 그 근거를 둘 수 있다.
- (3) 당사자들은 또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법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없었다면 그 소송의 관할이 되었을 법원에서 허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제 90 조 연방카르텔청의 지위

- (1) 법원은 본법 또는 카르텔계약과 카르텔결의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연방카르텔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요청에 따라 모든 답변서, 조서, 처분 및 결정의 사본을 연방카르텔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연방카르텔청의 장은 그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리고 연방카르텔청의 직원들을 선임하거나 소송이 제102조에 규정된 기업들 중 어떤 기업에 관계된 경우에는 관할감독관청의 직원중에서 자격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서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며, 사실과 증거를 참조하게 하고, 개정일에 입회하게 하며,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증인·전문가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법원에서 관계자에게 전달된다.
- (3) 소송의 범위가 한 주의 영역을 뛰어넘지 않을 경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의 범위내에서 주의 상급법원이 연방카르텔청을 대신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정해진 구매자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의 준수를 그 대상으로 삼는 소송에 준용된다.

제 91 조 중재재판협정의 무효

- (1) 제1조 내지 제5의 c조, 제7조, 제8조,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 제102조, 제102의 a조 및 제103조에 언급된 형태의 계약 또는 결의에 의한 또는 제35조의 규정된 신청에 의한 장래의 소송에 대한

중재재판협정들은 그 재판협정들이 모든 관계인에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중재법원을 통한 결정 대신에 통상의 법원을 통한 판결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무효이다. 제6조에 규정된 계약 또는 결의에 의하여 제기되는 장래의 소송에 대한 중재재판협정들 즉 모든 관계인에게 중재법원을 통한 결정 대신에 정식법원을 통한 결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중재재판협정들은 카르텔청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서 이미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중재재판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7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1965년 9월 9일에 시행된 저작권 및 그에 준하는 보호권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문(연방법률공보 제1권 제1294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 절 공통규정

제 92 조 고등법원내의 카르텔특별부

- ① 고등법원내에 카르텔특별부를 설치한다.
- ② 고등법원은 제54조 제2항 제2문, 제62조 제4항,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그에 지정된 법률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확정판결에 대한 상고 및 제87조, 제89조에 따른 관할지방법원의 기타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93 조 주고등법원의 지정

- (1) 하나의 주에 여러 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54조 제2항 제2문, 제62조 제4항,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가디는 법률사건은 카르텔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소송의 병합이 특히 체계있는 판결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경우

주정부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통해 고등법원들 중의 하나 또는 수개의 법원 또는 주의 최고법원에 할당될 수 있다.

② 주정부는 그 권한을 주의 사법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주 사이의 조약을 통하여 고등법원 또는 주의 최고법원의 관할권은 몇몇 구역 또는 여러 주의 전체 구역에 대하여 근거를 둘 수 있다.

제 94 조 항소 및 항고에 대한 관할권

① 제93조 제1항과 제2항은 판결에 이의신청하는 항소, 그리고 제87조, 제89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상급법원의 기타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항고에 대한 결정에 준용된다.

② 제89조 제3항이 이에 준용된다.

제 95 조 연방법원내의 카르텔특별부

(1) 연방법원내에 카르텔특별부가 설치된다. 카르텔특별부는 다음 각호의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1. 행정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제73조, 제75조) 및 허가거부소송에 대하여
2. 과태료부과절차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
3. 본법 또는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계약 및 결의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 a)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 b) 민사소송법 제566의 a조의 경우에 있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 c)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및 제568의 a조를 포함한 제519의 b조 제2항, 제542조 제3항의 경우에 있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2) 카르텔특별부는 법원조직법 제132조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문제에 대하여는 벌칙위원회로 그밖의 문제에 대하여는 민사위원회

로 유효하다.

제 96 조 전속적인 관할권: 절차의 연기

- (1) 본법에 따라 결정의 자격이 있는 법원의 관할권은 전속적이다.
- (2) ① 소송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법에 의한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에 법원은 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관청이나 법원을 통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배제해야 한다.
- ② 상기 소송에 관계있는 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들을 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제의할 수 있다.

제 97 조 민사소송

유럽경제권 설립조약 제85조 또는 제86조에 의해 생겨난 민사소송의 경우 제7조 내지 제90조 및 제92조 내지 제96조 제1항이 준용된다. 소송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약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적용에 좌우되는 경우 제96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5 장 법률의 적용범위

제 98 조 물적·장소적 효력범위

- (1) 본법은 제99조 내지 제103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재산에 속해 있거나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고 운영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 (2) 본법은 비록 경쟁제한이 본법의 적용범위 밖에서 유발되었더라도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쟁제한에 적용된다. 본법은 기업들이 본법의 적용범위내에 소재지를 두고 제6조 제1항의 수출카르텔에 참가하는 한, 수출카르텔에도 적용된다.

제 99 조 적용제외: 운송

(1) 제1조 및 제38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항공운송기업과 내수운송기업들의 계약 및 이들 기업의 사업자단체의 결의와 권고로서, 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계약 및 사업자단체의 결의와 권고로서, 이들이 여객운송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공중교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설비와 충분한 서비스 및 교통망의 확대 또는 변경에 기여하는 경우. 그 계약 및 결의와 권고는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인관청은 신고서를 카르텔청에 전달해야 하며, 본법에 의한 계약, 결의 또는 권고에 대한 처분은 당해 승인관청의 동의를 얻어 행해진다.
3. 상호간의 보수나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는 철도기업 상호간 또는 다른 운송기업들과 철도기업의 계약 및 이에 상응하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와 권고로서, 이들이 국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승인된 경우

(2) 제38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 각호 해당자들의 사업자단체의 가격권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철도 및 자동차 운송에 의한 운송주선의 집합화물운송에 관련된 운송주선업자들
2. 물품의 포장, 물품운송 및 물품보관 그리고 독일 항공, 항구 및 내항에서의 그에 관한 부수업무 및 그 업무의 주선, 선적의 주선 및 예선을 포함한 항구와 내항에서의 수하물발송을 대상으로 삼는 기업들
이러한 가격권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 a) 상기 사업자단체에 의해 카르텔청에 경쟁제한에 관련된 경제단체의 입장이 첨가되어 신고된 경우
 - b) 권고수락인에 대하여 명확히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 및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압력

도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제 100 조 적용제외: 농·림업

- (1) 제1조는 그 계약과 결의가 가격구속 없이 농산물의 생산, 판매 또는 농산물의 보축 및 가공을 위한 공동설비의 이용에 관계되는 경우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연합의 계약과 결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기 생산자단체연합의 계약과 결의는 카르텔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과 결의는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2) 제15조는 농산물에 대한 계약이 분류, 표지 또는 포장에 관계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15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종묘거래법의 규정에 따른 종묘의 구입자를 또는
 2. 1989년 12월 22일의 가축사육법(연방법률공보 제1권 2493면)에 따라 승인된 사육기업 또는 사육단체들이 증식을 위해 다단계 사육과정 중 가축구입자를재양도할 때 일정한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최종구매자들에게 재양도될 때까지 동일한 구속을 부과하려고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구속하는 경우
- (4) 제18조는 계약이 농산물의 생산, 보관, 가공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경우 한편으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다른 한편으로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사이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본법에 있어서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소·과일·정원·포도의 재배와 양봉과 같은 농업생산물 및 어업에 의하여 획득된 생산물
 2. 제1호에 언급된 생산품의 가공을 통하여 획득된 물품으로 이 물품의 가공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방정부가 연방회의의 동의를 얻어 발한 법규명령내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 (6) 본법에 있어서 생산자단체는 제5항 제1호에 언급된 생산물을 생산 또는 획득하는 기업이다. 식물재배, 가축사육기업 또는 동일한 범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또한 생산자단체로 본다.
- (7) 제1조는 임업생산자단체의 결의에 대하여 그것이 가격통제없이 임업 생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활동영역이 아니거나 본질적으로 그 활동역역이 촌락경계내 또는 공동체의 범위를 넘지 않고 공동체적 수행을 위한 임업활동이 형성되거나 형성된 삼림협동단체, 삼림조합, 임업단체, 소유지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임업생산자단체로 본다.
- (8) 본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이 제1장에 따라 금지된 경쟁제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1977년 8월 3일자 공고판(연방법률공보 제1권 1521면) 양곡법
 2. 1976년 12월 14일자 법률 제96조 제25항 (연방법률공보 제1권 33~41면)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권 7844-1로 공고된 수정판의 사탕법
 3. 1976년 12월 14일자 법률 제95조(연방법률공보 제1권 33~41면)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권 7842-1로 공고된 수정판의 우유와 기름법
 4. 최근 1989년 12월 11일자 법률(연방법률공보 제1권 2134면)에 의해 개정된 1977년 3월 21일자 고시판(연방법률공보 제1권 477면)의 가축과 육류법

제 101 조 적용제외: 연방은행, 국가독점, 석탄과 철강연맹

본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독일연방은행과 재건신용기관의 경우
2. 급부와 보수가 최근 1988년 12월 9일자 법령 제2조(연방법률공보 제1권 2231면)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권 612-7로 공고된 수정판의 브랜드(화주) 전매에 관한 법률과 본법에 의하여 내려진 법

규명령을 근거로 규제되는 경우

3. 1951년 4월 18일자 석탄과 철강에 관한 유럽연맹의 설립에 대한 계약이 특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 102 조 신용기관 및 보험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1) 다음의 경우 제1조, 제15조 및 제38조 제1항 제11호는 신용기관 또는 보험회사의 계약과 권고 및 이들 기업의 사업자단체의 결의와 권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러한 조항들이 법률에 근거해 신용기관과 보험회사에 대해서 연방 감독청 또는 주의 보험감독청에 의한 승인 및 감독에 따르게 되는 요건과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2. 참가기업의 효율성을 기술적, 경영적 또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 상호간의 공동작업이나 계약조건의 통일을 통해 증진 또는 유지시키고 수요충족을 개선하는 데 적당하고 필요한 경우, 이 때 기대되는 결과는 이와 관련된 경쟁제한과 상당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1문에 규정된 계약, 결의 및 권고 등은 카르텔청에 신고해야 하며 카르텔청은 작성된 신고서를 관할 감독관청에 전달한다. 신고할 때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함을 밝혀야 한다. 제1문에 규정된 계약, 결의 및 권고 등은 카르텔청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거나 또는 허용될 수 있다.

- 신고서의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 기간만료 전에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카르텔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경우

제4문에 따른 기간내에 카르텔청은 경쟁제한에 관계된 경제계에 입장표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제15조는 특수한 경우에 관한 계약들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조 및 제15조는 공동보험업과 재보험업 및 시농기관의 인수조합행위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를 위해 합의된 개개의 위험들을 공동인수하

- 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12조가 준용된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감독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기업에도 적용된다.
- (4)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8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카르텔청은 보호할 만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카르텔청은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명백히 경미한 경쟁제한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5) 카르텔청은 관할 감독관청의 협조하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내린다. 감독관청이 그 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선언을 표명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경쟁적인 면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의 시행전에 효력이 발생한 계약, 결의 및 권고 등은 그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카르텔청은 계약, 결의 및 권고 등이 제1항 제1문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것들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시행후 3년 이내에 무효 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해야 한다. 제5항이 적용된다.

제 102의 a 조 저작권협회

- (1) 제1조와 제15조는 그 계약 또는 결의가 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보호권의 도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감독관청에 신고되는 경우, 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보호권의 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 저작권협회의 협정 및 그러한 저작권협회의 경쟁제한적인 계약 또는 결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감독관청은 신고내용에 관해 상세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감독관청은 연방카르텔청에 신고서를 전달한다.
- (2) 연방카르텔청은 저작권협회가 제1조와 제15조의 적용제외의 결과로

언은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러한 계약이나 결의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보호권의 도용에 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방송기업과의 집단계약 또는 일개의 계약의 내용이 중재에 의하여 구속력있게 확정될 때, 그 계약에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규정이 내포되거나 그 계약이 남용될 경우에 한해 본법에 따른 권한이 연방카르텔청에 부여된다. 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보호권의 도용에 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고등법원에 의하여 확정될 때 그 계약이 불법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본법에 따른 권한이 연방카르텔청에 부여된다.

- (3) 저작권협회의 활동에 대한 본법에 따른 처분은 감독관청의 협조를 받아 연방카르텔청이 내린다.

제 103 조 적용제외: 공기업

(1) 제1조, 제15조 및 제18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또는 물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공기업들)과 다른 공기업들 또는 지방단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본관을 통한 전기, 가스 또는 물 등의 공공재 공급을 중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의 계약
2. 계약에 의해 지방단체가 그 지역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해 현존하는 또는 의도했던 직접적인 전기, 가스 또는 물 등의 공급을 위해 공공도로의 지면 위 또는 지면 아래 도관의 이전 및 작업을 할 권리를 하나의 공기업에만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기업과 지방단체의 계약
3. 계약에 의해 어느 공기업이 비교가능한 구입자들에게 부여한 것보다 분배단계의 공기업이 자신의 구입자들에게 부당하지 않은 가격 또는 조건으로 일정한 도관을 통해 전기, 가스 또는 물 등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기업과 분배단계에 있는 공기업의 계약
4.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 오로지 일개 또는 수개의 공기업에만

일정한 도관방식을 통해 일정한 공적급부를 제공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체결되는 경우, 공기업과 다른 공기업의 계약

- (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계약이 에너지류 또는 물 등의 공공재 공급을 제외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제1항은 그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9조가 준용된다.
- (4) 일정한 도관방식을 통한 전기, 가스 또는 물 등의 공공재공급과 관련된 본법에 따른 처분은 관할 감독관청의 협조하에서 카르텔청에 의하여 행사된다.
- (5) 제1항의 경우 카르텔청은 적용제외, 특히 가능한 한 안전하고 저렴한 공급의 목표설정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제6항에 규정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방식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를 통해 얻어진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2. 계약이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국제적인 협정으로 인정된 물품거래 또는 용역거래에 대한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 제1문 제1호의 남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 공기업의 시장행태가 유효경쟁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행태를 규정하는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2. 공기업이 같은 부류의 공기업보다 더 불리한 가격 또는 영업조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단 그 공기업이 그 차이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호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 또는 그밖의 기업에 대해 자신의 시설로 발전해낸 에너지의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4.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 또는 기타 기업에 대해 자신의 공급망 또는 그에 결합된 구매(유통)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계약을 적당한 조건으로 맺기를 거부함으로써 전기 또는 가스(에너지)의 판매와 구

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부당성의 판단시 유통의 성과는 시장 관계 특히 유통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기업의 구매인에 대한 공급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카르텔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참가기업에 대해 이의제기된 남용의 중지명령
2. 참가기업에 대해 계약 또는 결의의 수정명령
3. 계약 또는 결의의 무효선언

(7) 제5항은 제22조 제5항에 따른 공기업에 대한 남용절차에 준용된다.

제 103의 a조 공기업의 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의 제한

(1)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용제외는 합의된 계약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요건하에서만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계약에 적용된다.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에 대해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합의는, 그 합의가 참가인들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범위에 관하여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계약기간말에 직접적인 공공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제3자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맡는 경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급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연장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이 합의될 경우에는 갱신의 신청(연장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는 제9조가 준용된다.

(2) 제10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계약에 대한 연장신청시 그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에너지의 판매 또는 구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계약을 받거나 그 계약이 이와 유사한 공기업에 있어서보다 감지할 수 있는 불리한 공급조건을 초래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카르텔청은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에 대한 조사가 시행됨을 통지한다. 이 경우 카르텔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연방관보에 그 신청을 공고해야 한다.
2. 관계자 및 이들의 관할 업무감독청에 의견질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카르텔청은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또는 카르텔청이 그러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적용제외는 20년이 더 연장된다. 계약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카르텔청은 3개월이 경과 후에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3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카르텔청의 권한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 (3) (계약의) 연장신청의 경우 카르텔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그 계약을 통해 하나의 계약범위에서 또는 그 일부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공급계약이 방해받게 될 경우 제10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2. 계약의 무효를 통해 시장관계 특히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구매인에 대한 공급조건들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손상받거나 필수적인 공급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을 경우
- (4) 본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신청되었던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에 대한 계약(구계약)에 있어서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용제외는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1979년 1월 1일에 계약의 만료일로 확정된 시점에 그러나 늦어도 1995년 1월 1일에 종결된다. 1995년 1월 1일에도 아직 구계약의 신고이래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적용제외는 합의된 계약만료시까지 연장되지만, 이 때 연장기간은 신고후 20년의 경과를 최고한도로 한다.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계약이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라 종결될 경우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구계약의 경우 동일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연장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합의될 경우 제1항 제3문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이 적용된다.

제 104 조 남용감독

- (1) 제9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항 및 제100조의 경우 카르텔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2항에 명시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계약, 결의 및 권고 또는 그것들의 이행형태가 본법에 의한 적용제외를 통해 얻어진 시장지위의 남용을 나타내는 경우
 2. 그것들(계약, 결의 또는 권고)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한 국제적 협정에 있어서 승인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일반원칙들을 위반할 경우 제99조 제2항의 경우 특히 권고가 당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남용이 존재하며, 이 경우 제38의 a조 제3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3호가 준용된다.
- (2) 카르텔청은 제1항의 요건하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참가기업에 대한 이의된 남용행위의 중지명령
 2. 참가기업에 대한 계약 또는 결의의 수정명령
 3. 계약 및 결의의 무효선언

제 104의 a조 에너지산업법 규정

최근 1977년 12월 19일자 법률(연방법률공보 제1권 2750면) 제3조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권 752-1호에 의해 공고된 수정판의 에너지산업법의 규정들은 그 시행령을 포함하여 제22조와 제2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05 조 기타 준용규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0조, 제102조, 제102의 a조 및 제103조의 경우 제13조, 제14조 및 제13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6 장 경과 및 종결규정

제 106 조 본법시행 전의 계약 및 결의

- (1)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제15조에 위반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가 된다.

- (2)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료된 제1조 내지 제5조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9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10조,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정된 계약과 결의는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법의 시행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무효가 된다.
1.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계약 및 결의가 카르텔청에 신고된 때, 이 때에는 제1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2. 제4조 제5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의 경우 카르텔청에 인가신청이 접수된 때
 3. 제9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르텔청에 계약과 결의가 신고된 때, 이 때에는 제99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제102조의 경우 관할감독관청에 계약 및 결의가 신고된 때, 이 때에는 제99조 제3항을 준용한다.
- (3) 제5조 제4항 및 제100조에 규정된 본법의 시행전에 성립된 계약 및 결의는 카르텔청에 즉시 신고되어야 하며, 이 때 제5조 제4항에 따른 계약 및 결의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가 준용된다.
- (4)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고, 제1조에 규정된 결정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내포한 중재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중재과정에서 시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한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7 조 베를린조항

(적용대상이 없어짐)

제 108 조 (적용대상이 없어짐)

제 109 조 (효력발생)

Ⅱ. 상 법

1897년 5월 10일 제정 (최근 1993년 7월 22일 개정)

제1편 상인 및 상업사용인

제1장 상인

제1조 당연상인

- (1) 본법에서 상인이라ں 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2) 다음의 각 행위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영업은 상업으로 본다.
 1. 동산(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재양도, 단 상품은 원상태 그대로거나 가공 또는 제조 후에 재양도되든 관계없다.
 2. 수공업적으로 경영되는 영업이 아닌, 타인을 위한 상품의 가공 또는 제조의 인수
 3.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보험의 인수
 4. 은행거래 및 환금거래
 5. 물건 또는 여객의 해상운송의 인수, 운송인 또는 육상이나 내수상의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조물 및 예선업자의 거래
 6.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또는 창고업자의 거래
 7. 대리상 또는 상사중개인의 거래
 8. 출판거래 및 기타 書籍商 또는 美術品商의 거래
 9. 수공업적으로 경영되는 영업이 아닌 인쇄업자의 거래

제2조 의제상인¹⁾

수공업적이거나 기타 영업적 기업으로서 그 영업경영이 이미 제1조 제2

1) 우리 상법상 의제상인은 상호가 등기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보아 우리나라의 의제상인과는 차이가 있다.

항에 의하여 상업으로 볼 수 없더라도 방법 및 범위에서 보아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을 경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상호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때에 비로소 본법상의 상업으로 본다. 기업가는 상인의 상호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농림업 - 능력상인

- (1) 제1조의 규정은 농업 및 임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기업자가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권리는 가지나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제2조가 농업 또는 임업 기업에 적용된다. 등기를 한 때에는 상호의 말소는 상이내 상호의 말소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 (3) 농업 또는 임업의 경영에 부수된 영업에 불과함이 명백한 기업이 농업 또는 임업의 경영과 결합된 때에는 부수영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4 조 소상인

- (1) 상호·상업장부 및 지배권에 관한 규정은 영업경영이 방법이나 범위로 보아 상인적 방법으로 설비된 영업경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경영하기 위한 합의에 의하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제 5 조 表見商人

상업등기부에 상호가 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하에 경영된 영업이 상업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경영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제 6 조 상사회사 - 사단

- (1) 상인에 관한 규정은 상사회사에도 적용된다.
- (2) 본법이 기업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인자격을 부여한 사단의 권리 및 의무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 공법 규정

영업경영에 대한 권한을 배제하거나 일정한 전제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공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상의 상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상업등기

제 8 조 등기의 실행

상업등기는 법원에서 취급한다.

제 8의 a 조 Aufbewahrung von Datenträgern

- (1) 상업등기의 부속서류는 주법무부의 세칙(nähere Anordnung)에 따라 원본에 같음하여, 재현 또는 자료가 상당한 시간내에 읽을 수 있음이 보장될 경우, Bildträger Datenträger에의 Wiedergabe로도 보관될 수 있다. Bild Daten의 생산에 있어서 이들의 원본과의 내용상의 합치에 관한 문서상의 통고가 작성되어야 한다.
- (2) 법원은 주법무부의 세칙에 따라 상업등기에 부속되는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 결산서 그리고 이에 속하는 증거를 제1항 제1문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9 조 열람, 등본, 증명

- (1) 상업등기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은 누구에게든지 허용된다.
- (2) 등기 및 상업등기의 부속서류에 관하여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의 a조 제1항에 따라 부속서류가 보관될 경우, 등본은 재현된 것에 대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상업등기의 부속서류에 관하여 정당하게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도 같다. 등본에는 청구에 의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등본은 공증이 포기되지 않는 한 서기과에 의해서 공증될 수 있다.
- (3)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개인상인의 상호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청에 대한 통고는 등기에 관한 법원의 증명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인상인 또는 상사회사의 대리권의 통고에 관하여도 같다.
- (4) 법원은 청구에 따라 등기사항에 관하여 기타의 등기가 없다는 것 또는 일정사항의 등기가 필요없다는 것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등기사항의 공고

- (1) 법원은 연방관보 또는 적어도 다른 하나의 신문에 상업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의 모든 내용을 공고한다.
- (2) 공고는 이를 게재한 최종의 신문의 발행이 있는 날의 경과와 동시에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 11 조 공고할 신문의 선정

- (1) 법원은 매년 12월에 익년간에 제10조에 정한 공고를 할 신문을 정하여야 한다.
- (2) 법원에서 수인의 판사가 상업등기부에 관여하여 일간신문의 선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급에 있어 하급지방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이 지방법원에 상사부가 있을 때에는 민사부에 같음

한다.

제 12 조 등기신청

- (1) 상업등기부에 할 등기의 신청과 법원에 보관하기 위해 하는 서명은 공증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신청할 권한의 수권에 관하여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승계인은 가급적 공정증서로써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점

- (1) 지점의 설치는 개인상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사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점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신청이 오로지 다른 영업소의 관계사항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등기의 공증된 등본과 함께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 법정된 서명은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보관할 목적으로 자서되어야 한다; 지배권이 오로지 다른 영업소의 경영만에 속한 것이 아닌 한 지배인의 서명에 대하여도 같다.
- (3)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은 지점이 설치되었는가 또 제30조의 규정에 따랐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때에는 법원은 지점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본점 또는 주소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것에 한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등기에는 지점의 장소도 기재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을 때에는 부가문자도 기재하여야 한다.
- (4) 지점의 등기는 직권으로 본점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업등기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기재

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 (5) 지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점의 폐지에 준용한다.

제 13의 a조 국내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지점

- (1) 주식회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2) 이사회가 지점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된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등기에는 주식법 제39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등기의 공고에는 그밖에 주식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문의 사항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가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에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지점의 설치가 등기된 경우 주식법 제40조에 따른 모든 사항이 공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교부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공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주식회사의 지점에 관한 규정은 주식법 제278조 내지 제290조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원에 의해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식합자회사의 지점에 준용된다.

제 13의 b조 외국에 주소를 둔 유한회사의 지점

- (1) 유한회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2) 이사가 지점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된 정관의 사본 및 사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등기는 유한회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등기의 공고에는 그밖에 유한회사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등기가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내에 행해진 경우에 한해 제5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 13의 c조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의 현존하는 지점

- (1) 상업등기부에 지점이 등기된 경우 본점 또는 회사의 소재지의 영업소 또는 등기된 지점에 관한 일체의 신청은 본점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영업소가 존재하는 수만큼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2)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연방관보에 하는 등기의 공고에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점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가 행해짐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본점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즉시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공고된 연방관보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등기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은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그 상업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지점의 등기부에 한 등기의 공고중에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것 및 공고된 연방관보의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업등기부에 한 등기는 연방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한다.
- (4) 신청이 단지 각 지점에 관한 사항일 경우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 외에 지점의 수만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그 관계사항에 관계있는 법원에 대해서만 등기사항을 통지한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소재지의 등기부에 한 등기는 연방관보에만 공고한다.
-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서류의 제출 및 서명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 13의 d조 외국에 있는 본점의 소재지

- (1) 개인상인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상사회사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을 때

에는 국내의 지점에 관한 신청·서명·제출 및 등기사항은 모두 지점이 있는 지방의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2) 지점설치의 등기에는 지점소재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을 때에는 이것도 등기하여야 한다.
- (3) 기타 외국법이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주식회사과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를 제외한 개인상인·상사회사 또는 법인의 지점에 관한 신청·서명·제출·등기 및 공고에 대하여는 본점 또는 회사의 소재지의 영업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의 e 조 외국에 소재하는 자본회사의 지점

- (1) 외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제13의 d 조 외에 다음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2)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이사가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그러한 회사의 존재 및 기업의 목적 또는 국내의 영업허가 또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증명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수신인의 주소·성명 그리고 지점의 대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밖에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이 등기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행할 등기 및 등기신청번호;
 2. 회사의 범형태;
 3. 지점의 활동에 대한 상시적 대표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표시하여 재판상 재판외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4. 회사가 유럽공동체의 구성국의 법률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가 준수할 국가의 법률
- (3) 제2항 제4문 제3호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대표권의 변경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 (4) 제2항 제4문 제4호에 규정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신고되지 않은 경

우에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파산절차, 화해절차 기타 회사재산에 대한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거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 (5) 회사가 수개의 지점을 국내에 설치할 경우 정관 및 회사의 선택에 의한 정관변경은 당해 지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문의 등기신고의무자는 나머지 지점의 상업등기부에 회사가 택한 등기부와 당해 지점이 등기된 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 13의 f 조 외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지점

- (1) 외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제13의 d조 외에 다음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2) 신고서에는 공증된 정관의 등본과, 정관이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공증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37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문의 사항 및 이사회에의 구성에 관한 정관의 규정과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에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발기인의 직업을 제외한 주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회사의 소재지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공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지점의 설치에 관한 등기는 주식법 제39조 및 제13의 e조 제2항 제4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그밖에 등기의 공고에는 발기인의 직업을 제외한 주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도, 그것이 위 규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할 경우 기재되어야 한다.
- (5) 외국회사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법 제181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 (6) 그밖에 외국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법 제81조 제1항, 제2

항 및 제4항, 제263조 제1문, 제26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73조 제1항 제1문이 준용된다.

- (7) 지점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8) 외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 관한 규정은 주식법 제278조 내지 제290조 또는 이사회결원의 결원으로 인해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국에 소재하는 주식합자회사의 지점에 대해 준용한다.

제 13의 g 조 외국에 소재하는 유한회사의 지점

- (1) 외국에 소재하는 유한회사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2) 신고서에는 공증된 정관의 등본과, 정관이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공증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에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유한회사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지점의 설치에 관한 등기는 유한회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의 e 조 제2항 제4문에 규정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 (4) 그밖에 등기의 공고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 내에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한해 유한회사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5) 외국회사의 정관 변경은 이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 (6) 그밖에 외국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65조 제1항 제1문, 제67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4조 제1항 제1문이 준용된다.
- (7) 지점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 13의 h 조 국내에 있는 본점의 소재지이전

- (1) 국내에서 개인상인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상사회사의 소재지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은 종래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새로운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그 이전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종래의 본점 또는 소재지에 대하여 존재하는 등기사항과 종래의 관할법원에 보관하는 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새로운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본점 또는 소재지의 이전이 적법하게 되었는가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랐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이전을 등기하고 이와 함께 다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사항을 상업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등기는 종래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종전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본점 또는 소재지가 이전될 경우에는 법원은 본점 또는 소재지의 이전이 적법하게 되었는가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랐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이전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과태료

상업등기를 할 목적으로 신청·서명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기법원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로써 그 의무를 강요받는다. 각 과태료는 1만 마르크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등기의 효력

- (1) 상업등기부에 등기사항으로서 등기 및 공고가 없는 동안은 등기의무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제3자가 이를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항으로서 등기 및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3자는 그 사항으로서 자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또 알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지점과의 영업거래에 대하여는 본조의 의미에서는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의한 등기 및 공고로써 결정한다.

제 16 조 수소법원의 판결

- (1) 수소법원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상업등기를 위하여 하는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1인에 대하여 등기를 할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등기에 대하여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족하다. 이 등기의 원인인 판결이 취소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1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그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2) 수소법원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선고한 때에는 송소한 자의 이의에 반하여 등기할 수 없다.

제 3 장 상 호

제 17 조 의 의

- (1) 상인의 상호란 그 명칭하에서 상행위를 하고 또 서명을 하는 명칭을 말한다.
- (2) 상인은 자신의 상호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18 조 개인상인의 상호

- (1) 조합원없이 또는 단순하게 익명조합원과 함께 영업을 경영하는 상인은 자기의姓과 함께 적어도 생략되지 않은 前名(Vorname)을 상호로

- 서 사용하여야 한다.
- (2) 상호에는 조합관계를 표시하거나 기타 영업의 방법 또는 범위 또는 영업주의 제관계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부가문자를 부가할 수 없다. 사람 또는 영업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가문자는 허용된다.

제 19 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상호

- (1) 합명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가문자와 함께 적어도 사원 중의 1인의 성명 또는 총사원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가문자와 함께 적어도 무한책임사원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前名은 부가할 필요가 없다.
- (4) 무한책임사원 이외의 타인의 성명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상호에 채택할 수 없다.
- (5)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상호가 제21조, 제22조 제24조 또는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속용되더라도, 그 상호는 책임제한을 표시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0 조 삭 제

제 21 조 姓變更時의 商號續用

사람의 변경없이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중에 포함된 한 사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종래의 상호를 속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영업양수시의 상호속용

- (1) 생전행위 또는 사인처분으로 인하여 현존한 영업을 양수한 자는 종전

의 영업주 또는 그 상속인이 상호의 속용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한 때에는 그 상호에 관하여 계승관계를 표시하는 부가문자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상호를 속용할 수 있다.

- (2) 용의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영업을 인수한 때에는 본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상호의 양도금지

상호는 이를 이용하는 영업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제 24 조 영업주의 일부교체시의 상호의 속용

- (1) 현존하는 영업에 사원으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사원이 상사회사에 입사하거나 회사로부터 사원 1인이 퇴사한 때에는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속용할 수 있다.
- (2) 상호에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 상호는 퇴사한 사원 또는 그 상속인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만 속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상호속용시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 (1) 생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에 관하여 계승관계를 표시하는 부가문자를 부가하거나 이를 부가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상호를 속용한 자는 전영업주의 영업경영중에 성립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영 중에 성립된 채권은 전영업주 또는 그 상속인이 상호의 속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취득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2) 이와 상이한 합의는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하고 공고하거나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의무부담의 원

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히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자가 채무의 인수를 공고한 경우에 한하여 종래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전영업주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 (1) 영업양수인이 상호속용 또는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공고에 의하여 책임을 질 때에는 전영업주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은 일반규정에 따라 이미 그 이전에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의 경과로써 시효에 걸린다.
- (2) 소멸시효는 제25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호의 새로운 소유자가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날의 종료와 동시에, 제25조 제3항의 경우에는 인수의 공고를 한 날의 종료와 동시에 개시된다. 채권자가 그 이후의 일시에 비로소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시효는 그 시점에 개시된다.

제 27 조 상속인의 책임

- (1) 상속인이 유산에 속하는 영업을 계속 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은 전영업주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한 상속인의 책임에 준용한다.
-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알게 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영업을 속영을 중지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에 의한 무한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06조의 시효에 적용될 규정은 기간의 경과에 준용한다. 3월의 경과중에 상속의 포기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간은 포기기간의 경과 전에 종료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개인상인의 영업에 가입하는 경우의 책임

- (1) 개인상인의 영업에 인적책임사원으로서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입한 경우, 그 회사는 종전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영업주의 영업경영 중에 성립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이 영업경영 중에 발생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 (2) 이와 다른 합의는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하고 또 공고한 때 또는 한 사원이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 29 조 상호의 등기신청

상인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그 상호 및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상인은 법원의 상호보존을 위해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 동일상호의 배척

- (1) 새로운 상호는 동일한 소재지 또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현재 존재하고 상호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상호와 명백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 (2) 상인이 현재 등기된 상인과 동일한 성 및 동일한 前名을 가진 때 또 이 성명을 자기의 상호로서 사용할 의사를 가진 때에는 현재 등기된 상호와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가문자를 그 상호에 부가하여야 한다.
- (3) 지점설치의 소재지 또는 시·읍·면에 현재 동일한 등기상호가 있는 때에는 지점의 상호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문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 (4) 주정부는 인접한 소재지 또는 시·읍·면을 본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소재지 또는 시·읍·면으로 볼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변경의 신청

- (1) 상호 또는 그 소유자의 변경과 타지에의 영업소의 이전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상호가 소멸된 때에도 같다. 등기된 상호의 말소신청을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신청자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파산개시의 등기

상인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이 개시된 때에는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파산개시결정의 취소와 파산의 휴지 및 폐지에 대하여도 같다. 등기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법인의 등기

- (1) 영업의 목적 또는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할 법인은 이사전원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등기신청에는 법인의 정관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증서의 원본 또는 공증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에는 법인의 상호 및 주소, 기업의 목적 및 이사의 각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권한 또는 기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정관의 특별규정도 등기하여야 한다.
- (3) 지점의 설치는 공증된 등본을 첨부하여 이사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정관의 변경

- (1) 제33조 제3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 또는 정관의 변경, 파산개시로 인하지 아니한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인 및 그 대표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은 상업등기부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정관변경의 등기에는 그 변경이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변경에 관하여 먼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함으로써 충분하다.
- (3) 신청은 이사, 또는 등기를 최초의 청산인의 신청 후에 비로소 하여야

할 때에는 청산인이 하여야 한다.

- (4) 법원이 선임한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는 직권으로 행한다.
- (5) 파산의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5 조 서 명

법인의 이사 및 청산인은 법원에 보존할 목적으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6 조 국가 및 공기업

제국·연방 또는 내국자치단체의 기업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는 상호와 기업의 소재지 및 목적의 기재로 제한된다.

제 37 조 상호보호

- (1) 본장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 속하지 아니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등기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상호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2) 타인이 권리없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상호사용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상업장부

제 38 조~제 47의 b 조 삭제

제 5 장 지배권 및 당사대리권

제 48 조 지배권의 수여

- (1) 지배권은 영업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해

- 서만 수여할 수 있다.
- (2) 공동으로 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공동지배권)

제 49 조 지배권의 범위

- (1) 지배권은 상업의 경영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다.
- (2) 토지의 양도 및 물권설정의 경우 지배인은 특히 그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 50 조 지배권의 제한

- (1) 지배권의 제한은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 (2) 특히 지배권이 일정한 거래 또는 거래의 일정한 종류에 한하여 또는 특정한 사정 또는 일정한 시기 또는 개별 장소에 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때에도 같다.
- (3) 영업주의 수개의 영업소 경영에 관한 지배권의 제한은 각 영업소별로 다른 상호로써 경영되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상호의 차별성은 한 지점에 관하여 상호에 지점의 상호임을 표시하는 부가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제 51 조 지배인의 서명

지배인은 지배권을 표시하는 부가문자와 함께 자기의 성명을 상호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 영업주의 지배권의 수여철회

- (1) 지배권은 수권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의 보수청구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2) 지배권은 양도할 수 없다.

(3) 지배권은 영업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53 조 지배권과 등기

- (1) 영업주는 상업등기부에 지배권의 수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배권이 공동지배권으로서 부여된 때에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지배인은 법원에서 하는 보존을 위하여 서명과 함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지배권의 소멸은 수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54 조 상사대리권

- (1) 지배권의 수여없이 상업의 경영에 대하여 또는 상업에 속하는 개개의 거래를 함에 대하여 수권이 있을 때에는 상사대리권은 그러한 상업의 경영 또는 그러한 거래의 기도에 통상 수반될 일체의 거래 및 법적 행위에 미친다.
- (2) 토지의 양도 또는 물권설정, 어음채무의 부담, 소비대차에 의한 차입 및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상사대리권자에게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3) 상사대리권에 대한 기타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 55 조 계약대리권

- (1) 제54조의 규정은 상사대리인으로서의 대리상 또는 상업사용인으로서 본인의 경영의 외부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것을 위탁받는 상사대리인에도 적용한다.
- (2) 이들에게 부여된 거래체결대리권에는 체결된 계약의 변경, 특히 지급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
- (3) 이들은 지급수령의 권한을 수권받은 때에 한하여 지급을 수령할 수 있다.

(4) 이들은 상품의 하자에 대한 통지, 상품을 처분할 뜻의 표시와 제3자가 하자 있는 급여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유보할 뜻의 동일한 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본인에게 귀속될 증거보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 56 조 점포사용인의 권한

점포 또는 공개된 상품판매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이들 점포 또는 상품판매소에서 통상 발생하는 판매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 57 조 상사대리인의 서명

상사대리인은 서명의 경우에 지배권을 표시하는 부가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대리관계를 표시하는 부가문자로써 서명하여야 한다.

제 58 조 상사대리권의 양도

상사대리인은 본인의 동의없이 상사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장 상업사용인 및 상업도제

제 59 조 상업사용인

상업에 있어서 상인적 노무의 급부를 위하여 보수를 받아 고용된 자(상업사용인)는 노무급부의 방법 및 범위 또는 이에 의하여 받는 보수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지방관습에 따라 상응하는 급부를 하고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지방관습이 없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상당한 급부를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 60 조 법률상의 경업금지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동의 없이는 상업을 경영하거나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 (2) 영업주가 사용인을 선임할 당시에 그 자가 상업을 경영하는 것을 알았거나 그 경영의 폐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업의 경영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 61 조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 (1) 상업사용인이 제60조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주는 이에 갈음하여 상업사용인이 자기의 계산에서 한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에서 한 것으로 보고, 타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로 인해 얻은 보수를 인도하게 하거나 그 보수청구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은 영업주가 거래의 체결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에 관계없이 거래체결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한다.

제 62 조 영업주의 주의의무

- (1) 영업주는 경영의 성질상 허용되는 한 상업사용인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 및 의례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사무실 및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한 장치 또는 설비를 구비·유지하고 업무수행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 (2) 상업사용인이 가족과 함께 동서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거실 및 침실 급양과 근무 및 휴양의 시간에 관하여는 상업사용인의 건강·덕성 및 종교를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 (3)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842조 내지 제846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손해배상책임에 준용한다.
- (4) 전항에 의하여 영업주가 부담하는 책임은 미리 계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 63 조 勤務障礙時의 給料請求權

- (1)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업사용인의 노무급부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은 급료 및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6주를 초과할 수 없다. 합법적인 불임 및 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노무급부의 귀책사유 없는 장애로 본다. 상업사용인은 사용자가 귀책사유 없는 노무급부장애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의 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상업사용인이 해지기간(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대한 사유로 해지(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용인에 의해 주장되는 사유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2) 상업사용인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질병보험 또는 재해보험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을 계산 중에 계상할 의무가 없다. 이 규정과 다른 합의는 무효이다.

제 64 조 급료의 지급

상업사용인이 받는 급료의 지급은 매월말에 하여야 한다. 이보다 뒤에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제 65 조 보수청구권

상업사용인이 체결하거나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및 제3항, 제87의 a조 내지 제87의 c조의 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내지 제 72 조 폐 지

제 73 조 근무증명

- (1) 고용관계의 종료시에 상업사용인은 근무의 종류 및 기간에 관한 증명

서를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상업사용인의 청구에 의하여 품행 및 업적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제 74 조 경업금지

- (1) 고용관계의 종료후 일정한 기간 동안 상업사용인이었던 자의 영업상의 활동을 금지(경업금지)하기로 하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합의는 서면에 의한 방식을 요하고 영업주가 서명하여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보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경업금지에는 영업주가 금지의 존속기간 중 매년 적어도 상업사용인의 계약상의 최후의 보수의 2분의 1에 달하는 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때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74의 a 조 경업금지의 무효

- (1) 경업금지에는 영업주의 정당한 거래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또한 급여의 배상이 장소, 시기 또는 대상에 비추어 사용인의 생계를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이 없다. 경업금지에는 고용관계의 종료후 2년 이상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 경업금지에는 사용인에게 귀속할 계약상의 年給付가 15,000 마르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사용인이 계약체결시에 미성년자인 때 또는 영업주가 명예를 건 誓言으로써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으로써 약속을 하게 된 때에도 같다. 사용인이 고용관계의 종료후에 자기의 영업상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사용인에 대신하여 인수하는 합의도 무효이다.
- (3)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규정의 적용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 74의 b조 배상액의 지급 및 산정

- (1)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상업사용인에게 지급될 배상은 매월말에 지급되어야 한다.
- (2) 상업사용인에게 귀속될 계약상의 급부가 보수 또는 기타의 유동적 보수에 기인하는 때에 한하여 그 급부는 배상액의 산정시 최후 3년의 평균액으로 계산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고용관계의 종료시에 보수의 기준이 될 계약내용이 아직 3년에 미달한 때에는 그 계약내용이 유효하였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3) 보수가 노무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비용의 전보에 충당될 범위 내에서는 이를 계산항목에서 제외한다.

제 74의 c조 별도 취득액의 공제

- (1) 상업사용인은 배상의 지급을 받는 기간내에 자기의 노동력을 전용함으로써 취득하거나 악의로 취득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 금액을 합하여 배상액이 상업사용인이 최종으로 지급을 받을 계약상의 급부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는 배상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로 인하여 자기의 주소를 이전해야만 할 경우에는 10분의 1의 금액에 같음하여 4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자유형복역기간 중 사용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사용인은 청구에 의하여 자기의 취득액을 영업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 75 조 경쟁금지의 무효²⁾

- (1)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계약위반 행위에 의하여 제70조, 제71조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해지후 1월의 경과전에 서면으로 자신이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때에는 경업금

2) Unwirksamwerden

지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2) 영업주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고지한 때에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경업금지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단, 그 고지에 대하여 상업사용인의 신상에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또는 영업주가 고지함에 있어서 미리 제한이 존속하는 동안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사용인이 최종적으로 소득한 계약상의 급부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에는 제74조의 b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계약위반행위에 의하여 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 상업사용인은 배상청구권이 없다.

제 75의 a조 경업금지의 포기

영업주는 고용관계의 종료전에 서면행위를 통해 경업금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주는 서면행위후 1년의 경과에 의하여 배상액지급의무를 면한다.

제 75의 b조 배상액지급의무의 예외

상업사용인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고용된 때에는 경업금지의 의무는 영업주가 제74조 제2항에 정해진 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사용인에게 귀속될 계약상의 급부액이 1년간에 8천 마르크를 초과하는 때에도 같다; 지급액의 총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제74의 b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5의 c조 위약금

- (1) 상업사용인이 합의를 통해 인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때에는 영업주는 민법 제340조의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도하게 다액인 위약금의 감액에 관한 민법 규정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 (2) 합의의 구속성이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배상지급의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업사용인이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당해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 또는 기타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제 75의 d조 고용관계 존속중의 약속

영업주는 제74조 내지 제75의 c조의 규정과 다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를 주는 합의를 주장할 수 없다.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배상액의 최저한도에 관한 법률규정을 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하여도 같다.

제 75의 e조 삭제

제 75의 f조 경업비밀합의

영업주가 다른 영업주에 대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또는 근무한 상업사용인을 고용하지 아니할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은 자유로이 해약할 수 있다. 이 합의에 의하여 소권 또는 항변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75의 g조 하자통지, 상품처분의 의사표시

제55조 제4항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영업주의 경영의 외부에서 그 자를 위하여 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위탁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권리의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주장할 수 있다.

제 75의 h조 대리권의 흠결

- (1) 영업의 외부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것만을 위탁받은 상업사용인이 영

업주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또 제3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 영업주가 상업사용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체결 및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당해 거래를 제3자에 대해 거절하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는 영업주에 의하여 추인된 것으로 본다.

- (2) 거래의 체결을 위탁받은 상업사용인이 자기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거래를 영업주의 이름으로 체결한 때에도 같다.

제 76 조 내지 제 82 조 삭제

제 82의 a 조 수습자의 경업금지

도제로서 고용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인적 노무에 종사하는 자(수습자)에 대한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업사용인에 귀속되는 보수와 관계없는 한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83 조 기타 노동자

상업의 경영중에 상인적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이 조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시행되는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대리상

제 84 조 의 의

- (1) 대리상이란 독립한 영업경영자로서 다른 기업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기업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할 것을 상시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독립한 자라 함은 본질에 있어서 자유로이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독립성이 없이 기업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하거나

기업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일을 상시 위탁받은 자는 피용자로 본다.

(3) 기업자는 대리상이라도 무방하다.

제 85 조 계약서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과 계약에 관한 그 후의 합의가 상대방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으로 작성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배제할 수 없다.

제 86 조 대리상의 의무

- (1) 대리상은 거래의 중개 또는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에 대리상은 기업자의 이익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대리상은 기업자에게 필요한 통지, 특히 각 거래의 중개 및 체결에 관한 통지를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3) 대리상은 통상의 상인의 주의로써 자기의 의무에 유의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과 다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제 86의 a 조 기업자의 의무

- (1) 기업자는 대리상에 대하여 견본·도안·가격표·선전용인쇄물·거래약관과 같은 대리상이 활동을 함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기업자는 대리상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대리상에 의해 중개되거나 대리권 없이 체결된 거래의 승낙 또는 거절, 대리상에 의해 중개되거나 체결된 거래의 불이행(Nichtausführung)을 대리상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대리상이 통상의 사정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소범위에서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리상에 알려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다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제 86의 b조 지급보증료

- (1) 대리상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리상은 특별한 보수(지급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미리 배제할 수 없다. 이 의무는 특정한 거래 또는 특정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대리상이 중개 또는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이 인수는 서면형식을 필요로 한다.
- (2) 지급보증료청구권은 거래의 체결과 동시에 성립한다.
- (3) 제1항은 기업자 또는 제3자가 그의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그의 주소를 외국에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항은 체결 및 이행에 대하여 대리상이 무제한으로 대리권을 가진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보수청구권

- (1) 대리상은 계약관계 존속중에 체결된 모든 거래로서 대리상의 활동에 기인한 것 또는 동종의 거래를 위하여 대리상이 고객으로서 권유한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 전부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보수가 제3항에 의하여 퇴임대리상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리상을 위하여는 보수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대리상에게 일정한 구역 또는 일정한 고객범위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 대리상은 자기의 협력없이 자기의 구역 또는 고객범역에 속한 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 존속중에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도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퇴임대리상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계약관계의 종료후에 비로소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 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1. 대리상이 그 거래를 중개하였거나 또는 그 거래를 개시하고 또 그 체

결이 주로 대리상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정도로 준비하였고, 그 거래가 계약관계의 종료후 상당한 기간내에 체결된 경우

2. 계약관계의 종료전에 대리상이 제1항 제1문 또는 제2항 제1문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래의 체결을 위한 제3자의 제공을 대리상 또는 기업자가 수령한 경우 제1문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보수의 분배가 타당한 경우, 후임대리상에게 안분비례에 따라 귀속된다.

- (4) 대리상은 체결된 거래를 위한 보수청구권과 아울러 위탁에 의거하여 자기가 추심한 금액에 대하여 추심수수료청구권을 가진다.

제 87의 a 조 보수청구권의 전제조건

- (1) 대리상은 기업자가 거래를 이행하는 즉시 또 그 한도에서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이와 상이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대리상은 기업자가 거래를 이행함과 동시에 늦어도 익월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당한 선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대리상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거래를 실행하는 즉시 또 그 한도에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일부만이 실행된 거래에 대한 일부 보수청구권은 기업자가 대리상에게 거래가 일정한 범위에서 실행되는 즉시 전 거래에 대하여 보수를 부여할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2) 제3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보수청구권은 상실된다. 이미 수령한 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3) 대리상은 기업자가 거래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체결된 대로 실행하지 아니함이 확정된 경우에도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기업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래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실행되지 아니한 중대한 사유가 제3자의 일신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자에게 실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보수청구권은 제87의 c 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청구권에 대하여 결산될

월의 말일에 만기로 된다.

-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과 다른 합의로서 대리상에게 불이익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 87의 b조 보수의 산정

- (1) 보수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행상의 비율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 (2) 보수는 제3자 또는 기업자가 급부할 대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현금지급의 경우의 할인은 공제할 수 없다. 잡비 특히 운임·포장재료·관세 기타 諸稅에 대하여도 같다; 단 잡비가 별개로 제3자와의 계산에 귀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정기간의 사용허가계약 및 이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그 계약기간을 위한 대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보수는 제3자에 의하여 비로소 해약고지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대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또한 이에 준하여 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제 87의 c조 결산

- (1) 기업자는 대리상이 청구권을 가지는 보수에 대하여 매월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결산은 지체없이 늦어도 익월의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2) 대리상은 결산에 있어서 제87조에 의하여 자기에게 보수가 귀속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장부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3) 그밖에 대리상은 보수청구권, 그 변제기 및 그 산정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 (4) 장부사본의 청구가 거절되거나 산정 내지 장부사본의 정당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 이유있는 의심이 존재할 경우, 대리상은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대리상 또는 대리상이 지정한 經濟監査士 또는 선서한 장부전

문가에게, 산정이나 장부사본의 정당성 내지 완전성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업장부 또는 기타의 서류의 열람을 허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리상의 이 권리는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 87의 d조 비용의 상환

대리상은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통상의 영업경영 중에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8 조 소멸시효

계약관계에 의한 청구권은 4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시효는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진행한다.

제 88의 a조 대리상의 유치권

- (1) 대리상은 법정유치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2) 계약관계의 종료후 대리상은 자기에게 제공된 수단(제86의 a조 제1항)에 대하여 일반규정에 따라 성립된 유치권을 자기의 변제기가 도래한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해서만 가진다.

제 89 조 해약의 고지

- (1) 계약관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계약이 지속되는 최초의 1년간에는 1월의 기간으로, 두번째 연도에는 2월의 기간으로, 세번째 연도에서 다섯번째 연도까지는 3월의 기간으로 계약관계의 해약을 고지할 수 있다. 5년간 계약이 지속된 후 계약관계는 6월의 기간으로 고지될 수 있다. 어떤 고지기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해약의 고지는 曆月の 종료에만 할 수 있다.
- (2)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고지기간은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

다; 그 기간은 대리상에 대해서보다 기업자에 대해 더 짧아서는 아니 된다. 기업자에 대해서 더 짧은 기간이 합의된 경우 대리상에 대해 합의된 기간을 적용한다.

- (3) 일정한 기간 존속하는 계약관계로서,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계약기간의 경과후에 계속되는 계약관계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고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계약관계 전체의 존속에 기준이 된다.

제 89의 a조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약의 고지

- (1) 계약관계는 각 당사자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해약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
- (2) 해약고지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될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관계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 89의 b조 보상청구권

- (1) 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한도에서 계약관계의 종료후에 기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업자가 대리상이 권유한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의거하여 계약관계의 종료후에도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2. 대리상이 계약관계의 종료의 결과로 그가 계속하고 있었으면 자기가 권유한 고객과의 사이에 이미 체결된 또는 장래 성립될 거래에 의거하여 가졌을 보수청구권을 상실할 때
 3.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상의 지급이 공평할 때 대리상이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경제적으로 새로운 고객의 권유에 상당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확대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객의 권유도 마찬가지이다.
- (2) 보상은 대리상의 활동의 최후 5년간의 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1년분의 보수 또는 기타 1년분의 보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관계

의 계속이 이보다 짧은 때에는 활동계속중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상청구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대리상이 계약관계의 해약고지를 한 경우, 단 그에 관하여 기업자의 행위에 이유있는 원인이 존재하거나, 대리상에게 그의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활동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자가 계약관계의 해약고지를 하고 또 그 고지에 관하여 대리상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에 의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기업자와 대리상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대리상에 갈음하여 제33자가 계약관계에 들어간 경우; 합의는 계약관계의 종료 전에 할 수 없다.

(4) 이 청구권은 미리 배제할 수 없다. 이 청구권은 계약관계의 종료후 1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보험대리상이 현존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을 경제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개에 상응할 정도로 본질적으로 확장시킨 경우 대리상이 권유한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약정에 갈음하여 보험대리상에 의해 새로운 보험계약들의 중개가 행해지고 동시에 하나의 보험계약의 중개가 병존하는 한도에서는 보험대리상에도 적용된다. 보험대리상의 보상액은 제2항과 달리 최고 3년의 수수료 또는 보수에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저축금고대리상에 준용된다.

제 90 조 거래 및 영업비밀

대리상은 자기에게 통지되거나 대리상으로서 기업자를 위한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래 및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관계의 종료후에도 전체의 사정으로 보아 통상의 상인의 직업관념에 반하는 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 90의 a 조 경업약정

(1) 계약관계의 종료후에 대리상이었던 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합의

(경업약정)는 서면에 의한 형식을 요하고 기업자는 약정을 기재한 증서에 서명하여 이를 대리상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약정은 계약관계의 종료로부터 최장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만 할 수 있다; 약정은 대리상에게 할당된 구역 또는 고객범위 그리고 대리상이 기업자를 위해 거래의 중개 또는 체결에 노력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기업자는 경업제한의 계속중에 상당한 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기업자는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경업제한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자는 서면행위후 6월의 경과로 배상지급의무를 면한다. 기업자가 계약관계를 대리상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에 의한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해약고지하는 때에는 대리상은 배상청구권이 없다.
- (3) 대리상이 계약관계를 기업자에게 책임 있는 행위에 의한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해약고지하는 때에는 대리상은 서면행위에 의하여 고지후 1월 이내에 경업약정을 폐기할 수 있다.
- (4) 대리상에게 불리한 다른 합의는 할 수 없다.

제 91 조 대리상의 권한

- (1) 제55조는 상인이 아닌 기업자에 의하여 거래체결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상에도 적용한다.
- (2) 대리상은 거래체결의 대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품의 하자에 대한 통지, 상품을 처분할 표시와 같은 표시로서 제3자가 하자 있는 급부에 의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 내지 유보하는 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본다. 대리상은 기업자가 가지는 증거보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제한은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이 자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제 91의 a 조 대리권의 흠결

- (1) 거래의 중개만을 위탁받은 대리상이 기업자의 이름으로 거래의 체결

- 을 하고 또 제3자에 의하여 체결한 것 및 그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거래는 기업자에 의하여 추인된 것으로 본다.
- (2) 거래의 체결을 위탁받은 대리상이 자기가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거래를 기업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때에도 같다.

제 92 조 보험대리상

- (1) 보험대리상이란 대리상으로서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체결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2) 보험대리상과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대리상과 기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위한 제규정이 적용된다.
- (3) 제87조 제1항 제1문과 달리 보험대리상은 자기의 활동에 기인한 거래에 대해서만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제87조 제2항은 보험대리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보험대리상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즉시 보수청구권(제87의 a조 제1항)을 취득한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은 건설저축금고대리상에 준용한다.

제 92의 a 조 최저노동조건

- (1) 대리상으로서 계약상 다른 기업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에게 요구되는 활동의 방법 및 범위로 보아 이것이 불가능한 자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법무장관은 경제장관 및 노동장관과 협의하고 또 대리상 및 기업자의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에 연방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대리상 또는 대리상의 일정한 집단의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자의 계약상의 급부의 하한선을 확정할 수 있다. 확정된 급부는 계약에 의하여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다.

- (2) 제1항은 한 계약 또는 복수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보험콘체른 또는 보험자간에 속하는 동일한 조직단체에 속하는 복수의 보험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 또는 체결하는 것을 위탁받고 있는 보험대리상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도, 이러한 보험자의 1인과의 계약관계의 종료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다른 보험자와의 계약관계의 종료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또한 확정된 급부가 전보험자에 의하여 연대채무로서 부담되거나 분할하여 부담되거나 또는 보험자의 1인에 의해서만 부담되거나 보험자간의 구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연방의 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규명령에 정할 수 있다.

제 92의 b조 부업대리상

- (1) 부업대리상에는 제89조 제89의 b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관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1월의 기간으로써 역월의 말에 해야고지할 수 있다; 다른 고지기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양당사자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제87의 a조 제1항 제2문에 상당한 선급 청구권은 배제될 수 있다.
- (2) 제1항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대리상에게 부업대리상임을 명시하여 거래의 중개 또는 체결을 위탁한 기업자에 한한다.
- (3) 대리상이 부업대리상으로서만 활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결정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상 및 건축저축은행대리상에도 준용한다.

제 92의 c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대리상

- (1) 대리상이 계약에 의해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의 다른 계약국의 지역내에서 기업자를 위한 활동해서는 안될 경우, 본장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 (2) 대리상이 선적 통관절차 완료 또는 선박의 의장 또는 도선등록을 목적

으로 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체결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 8 장 상사중개인

제 93 조 의 의

- (1) 계약관계에 의하여 상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공급 또는 양도, 보험, 물품의 운송, 모험대차, 선박의 임대차 또는 기타의 상거래의 목적물에 관한 계약의 중개를 영업적으로 인수하는 자는 상사중개인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 (2) 전항에 규정된 거래 이외의 거래의 중개 특히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중개에는 그 중개가 상사중개인에 의하여 되는 경우에도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4 조 결약서의 작성

- (1) 상사중개인은 당사자가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관습이 상품의 종류에 관하여 면제하는 일이 없는 한 거래의 종료후 지체없이 당사자, 목적물 및 거래조건 특히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의 경우에는 그 종류, 분량, 대금 및 공급의 시기를 기재한 결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즉시 이행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결약서를 서명을 위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이 서명한 결약서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 또는 서명을 거부한 경우 상사중개인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95 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기재에 대하여 상사중개인이 유보한 결약

서를 수령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후 기재를 한 당사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구속을 받는다; 단, 이에 대하여 이유있는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상대방의 기재는 지방관행상의 기간내에, 이것이 없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재자 또는 상호에 대하여 이유있는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당사자는 상사중개인에 대하여 거래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상사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이행청구의 여부에 관하여 지체없이 상사중개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6 조 견품보관에 관한 의무

상사중개인은 당사자가 면제하지 아니 하거나 상품의 종류에 관하여 지방관습이 면제하지 아니하는 한 중개로 인하여 견품에 좇아 매각된 상품이 있어서 견품을 받은 경우, 상품이 그 품질에 관하여 이의없이 인수되거나 그 거래가 기타의 방법으로 완료되기까지 그 견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상사중개인은 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97 조 급여수령대리권

상사중개인은 지급 또는 기타 계약상 정해진 급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98 조 상사중개인의 당사자 쌍방에 대한 책임

상사중개인은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99 조 중개료의 부담자 및 부담액

당사자간에 중개료를 지급할 자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다른 지방관습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균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0 조 중개인의 일기장

- (1) 상사중개인은 일기장을 비치하고 또 체결된 일체의 거래를 날마다 기재할 의무를 진다. 기재는 일시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기재에는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상사중개인이 날마다 서명하여야 한다.
- (2) 상업장부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제239조 제257조의 규정은 상사중개인의 일기장에 적용한다.

제 101 조 일기장등본의 교부의무

상사중개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중개한 거래에 관하여 기입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한 일기장의 등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제 102 조 명령에 의한 제시의무

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의 증거방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일기장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103 조 벌 칙

- (1) 상사중개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으로 취급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체결된 거래에 관하여 일기장에 기재하지 않거나 제1000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일기장을 작성한 경우
 2.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일기장을 폐기한 경우

(2) 위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천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4 조 소액거래 중개인

소액거래인 상품거래의 중개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일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 또는 건설저축계약의 중개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편 회사 및 익명조합

제 1 장 합명회사

제 1 절 회사의 설립

제 105 조 합명회사의 의의

- (1) 공동체적 상호로써 상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각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이를 합명회사라 한다.
- (2) 합명회사에 대하여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6 조 설립등기

- (1) 회사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사원의 성명·신분 및 주소
 2.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회사가 개업을 한 시점

제 107 조 변경등기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거나 신입사원의 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신청의무자

- (1) 신청은 총사원이 하여야 한다.
- (2) 회사를 대표할 사원은 법원에서의 보존을 위하여 상호 및 자기의 서명을 자서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원상호간의 법률관계

제 109 조 정 관

사원상호간의 법률관계는 먼저 정관에 의하여 정한다; 제110조 내지 제 122조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10 조 비용 및 손실의 배상

- (1) 사원이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직접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불가분하게 결합된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 (2) 회사는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1 조 지체된 출자 또는 지체된 회사금전의 인도, 무권한의 인출

- (1) 사원은 금전출자를 정당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수취한 회사의 금전을 정당한 시기에 회사의 금고에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회사의 금고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금전을 인출한 때에는 납입 또는

인도를 하여야 할 날 또는 금전을 인출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그밖의 손해에 대한 주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12 조 사원의 경업금지

- (1)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종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2)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사원이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가한 것을 나머지 사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가의 포기가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참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13 조 경업금지위반

- (1) 사원이 제112조에 의하여 부담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에 갈음하여 사원에 대하여 사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행위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을 청구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한 행위에 의하여 수취한 보수를 인도하거나 그 보수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의 행사는 나머지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 (3) 전항의 청구권은 나머지 사원이 거래의 체결 또는 사원이 다른 회사에 참가한 것을 안 때로부터 3월로 시효소멸한다; 이를 안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립시로부터 5년으로 시효소멸한다.
- (4)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사원의 권리는 본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는다.

제 114 조 업무집행

- (1)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2)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의 사원은 업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제 115 조 수인의 업무집행사원

- (1) 총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우 각 사원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단, 다른 한 업무집행사원이 그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2) 정관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원이 공동으로만 행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하여 업무집행사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6 조 업무집행권의 범위

- (1) 업무집행권은 회사의 통상의 상업경영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동에 미친다.
- (2) 전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동을 함에는 총사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3) 지배인을 선임할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배권의 철회는 이를 수여하거나 그 수여에 협력할 권한이 있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제 117 조 업무집행권의 박탈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나머지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사원의 업무집행권을 박탈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업무집행을 할 능력을 결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18 조 업무집행에 대한 사원의 감시권

- (1) 사원은 업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회사의 사무를

검사하고 회사의 상업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또 이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전항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주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사원의 결의

- (1) 사원이 하는 결의는 결의에 참가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2)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의 다수로 결정할 경우에 의심스러운 경우 다수는 사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120 조 이익 및 손실의 조사

- (1) 매영업연도말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그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각 사원이 받을 배당분을 산정한다.
- (2) 각 사원에게 귀속될 이익은 그 사원의 자본지분에 증액기입된다; 각 사원이 분담할 손실과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자본지분으로부터 인출된 금액은 자본지분에서 감액기입된다.

제 121 조 이익 및 손실의 분배

- (1) 연도이익은 먼저 각 사원에 대하여 그 자본지분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배당한다. 연도이익이 이 배당을 함에 부족한 때에는 배당은 이에 따라 감소된 비율로 한다.
- (2) 전항에 의한 사원이 받을 이익배당분의 산정에 있어서 사원이 당해 영업연도중에 출자로서 한 급부는 급부후에 경과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고려된다. 사원이 영업연도 중에 그 자본지분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은 그 인출시까지의 경과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고려된다.

- (3) 연도이익 중에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이익배당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영업연도의 손실은 사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제 122 조 인출

- (1) 각 사원은 前營業年度에 대하여 확정된 각자의 자본지분의 100분의 4에 달하기까지 자기의 부담으로 회사의 금고로부터 금액을 인출하고 또 회사에 명백한 손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전영업연도의 이익배당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자본지분을 감소시킬 수 없다.

제 3 절 사원과 제3자의 법률관계

제 123 조 합명회사의 효력발생시기

- (1) 합명회사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회사가 등기전에 이미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제2조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개시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 (3) 회사가 전2항의 시점보다 후에 비로소 영업을 개시한다는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24 조 합명회사의 권리의무

- (1) 합명회사는 그 상호하에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기타의 물권을 취득하고 또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필요하다.

제 125 조 회사의 대표

- (1) 각 사원은 정관에 의해 대표권이 배제되지 않는 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 (2) 정관에 총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공동대표). 공동대표의 권한을 가진 사원은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함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사원의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충분하다.
- (3) 정관에 사원이 수인이 공동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배인과 공동으로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2문 및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한 사원에 대한 회사대표로부터의 배제, 공동대표의 규정 또는 제3항 제1문에 의한 규정 및 사원의 대표권에 대한 일체의 변경은 총사원이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5의 a 조 업무상의 서신의 기재사항

- (1) 자연인인 사원이 전혀 없는 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수령자에게 보내는 모든 업무상의 서신에는 회사의 법형태 및 소재지, 회사의 소재지의 등기법원,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회사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사원에 대한 회사의 영업상의 서신에는 유한회사법 제35의 a조 또는 주식법 제80조에 따라 업무상의 서신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들 기재사항은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회사의 회사들에 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 (2) 견본쇄 및 주문서에 대해서는 유한회사법 제35의 a조 제2항 및 제3항,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및 청산인의 기관회사로서의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유한회사법 제79조 제1항이 준용된다.

제 126 조 대표권의 범위

- (1) 사원의 대표권은 토지의 양도 및 그 부담의 설정과 지배권의 수여 및 철회를 포함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법률행위 및 법적 행위에 미친다.
- (2) 대표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특히 대표를 일정한 행위 또는 일정한 종류의 행위에만 제한하는 것 또는 개별 장소에서만 대표하도록 하는 제한에 대하여도 같다.
- (3) 대표권을 회사가 수개의 영업소 중 1개의 영업소의 영업에 제한한 때에는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7 조 대표권의 박탈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른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사원의 대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특히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또는 정상적인 회사대표의 능력을 결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것이다.

제 128 조 사원의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채무자로서 무한책임을 진다. 이에 반하는 합의는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29 조 사원의 항변

- (1)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원은 자기의 일신에 의하지 아니한 항변은, 그것이 회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2) 회사가 그 채무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사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 (3) 채권자가 변제기에 있는 회사의 채권에 대한 상계에 의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도 같다.

- (4)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제 129의 a 조 자본보충적 소비대차

자연인인 사원이 전혀 없는 합명회사에 있어서 유한회사법 제32의 a 조 제32의 b 조는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사원의 구성원이 유한회사의 사원인 한에서 준용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다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합명회사의 사원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0 조 신입사원의 책임

- (1) 기존의 회사에 가입한 자는 상호변경유무를 불문하고 그의 입사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같이 제128조 및 제129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30의 a 조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시의 의무

- (1) 자연인인 사원이 전혀 없는 회사가 지급불능이거나 회사재산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파산절차 또는 법률상의 화해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다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합명회사의 사원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으로서 기관회사인 대표 및 청산인은 이러한 개시의 신청의무가 있다. 신청은 책임있는 지체없이 늦어도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발생한 후 3주에 해야 한다. 신청의무자가 보통의 성실한 업무집행자의 주의로써 법률상의 화해절차의 개시를 한 경우 신청은 책임있는 지체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 (2)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초과발생이 발생한 후,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으로서 기관회사인 대표 및 청산인은 회사를 위하여 지급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이는 보통의 성실한 업무집행자의 주의로써 이 시점 후에도 할 수 있는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반하여 파산절차 또는 법률상의 화해절차의 개시가 행해지지 않거나 법정기간내에 신청되지 않거나, 제2항에 반하여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경우,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으로서 기관회사인 대표 및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보통의 성실한 업무집행자의 주의로써 하였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배상의무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회사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배상이 필요한 경우 배상의무는 회사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소멸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사원의 결의에 기인한다는 이유로도 소멸하지 않는다. 강제화해 또는 화해절차에서 결정된 화해는 회사채권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채권에 반해서 효력이 있다. 위 규정들로 인한 청구권은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4) 이들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관회사인 대표가 자연인인 사원이 없는 회사이거나 이러한 종류의 회사들의 결합이 진행되는 경우에 준용된다.

제 130의 b조 별 칙

- (1) 기관회사인 대표 또는 청산인이 제130의 a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반하여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있어서 파산절차 또는 법률상의 화해절차의 개시에 대한 신청을 게을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4 절 회사의 해산 및 사원의 퇴사

제 131 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시기의 만료
2. 사원의 결의
3. 회사재산에 대한 파산개시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 사원의 사망
5.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한 파산개시
6. 해약고지 및 법원의 판결

제 132 조 사원의 해약고지

회사에 존립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의 해약고지에 의한 해산은 영업연도의 종료시에만 할 수 있다. 고지는 이 시점의 적어도 6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33 조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산

- (1)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은 한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존립시기의 만료전에 또는 존립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회사에 있어서는 해약고지없이 법원의 판결로써 그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 (2) 특히 다른 한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에 위반한 때 또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는 전항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
- (3)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사원의 권리는 배제하거나 본조의 규정에 반하여 이에 제한을 가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제 134 조 사원의 종신, 회사의 계속

회사가 한 사원의 생존 동안 존속하거나 존속기간만료후에 여전히 묵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그 회사는 제132조 및 제133조에 규정된 존립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회사와 동일하다.

제 135 조 사원개인의 채권자를 위한 해약고지권

사원개인에 대한 채권자가 최근 6월 내에 그 사원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후 단순히 가집행할 수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 사원이 회사의 청산시에 받을 것에 대한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전부를 받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존립시기가 정해진 여부에 불구하고 영업연도말에 해산할 뜻의 고지를 6월전에 할 수 있다.

제 136 조 사원의 업무집행권

회사가 해약고지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사원의 업무집행권은 그 사원이 해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그 사원을 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7 조 사원의 사망 또는 파산

- (1) 회사가 한 사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사망한 사원의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사망을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원이 자기와 공동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피상속인이 처리할 것이었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른 사원도 또한 같이 자기가 처리할 업무를 일시 계속할 의무를 진다. 이 범위안에서는 회사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2) 전항 제2문의 규정은 회사가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한 파산개시로 인하여 해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138 조 사원의 퇴사

정관에서 한 사원이 해약고지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경우 다른 사원들로 회사를 계속시킬 것을 정한 때에는 자기의 일신상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원은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에 퇴사한다.

제 139 조 상속인과의 계속

- (1) 정관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함께 회사를 계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상속인은 종전의 이익지분을 거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가 부여되고 피상속인의 출자 중에서 자기에게 속할 부분을 그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출자로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 머무를 수 있다.
- (2) 다른 사원이 상속인의 이러한 신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해약고지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3) 전항의 권리는 피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때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한하여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월을 경과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포기기간의 만료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 (4) 전항의 기간내에 상속인이 퇴사하거나 이 기간내에 회사가 해산하거나 상속인에게 유한책임사원의 지위가 부여된 때에는 상속인은 이미 발생한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유산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책임을 진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익지분과 상이한 상속인의 이익지분을 정할 수 있다.

제 140 조 사원의 제명

- (1) 한 사원의 신상에 제133조에 의하여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해산을 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다른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에 갈음하여 그 사원의 제명을 선고할 수 있다.
- (2) 제명된 사원과 회사간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행한다.

제 141 조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해약고지 또는 파산시의 계속

- (1) 사원 개인의 채권자가 제135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다른 사원은 그 결의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사원이 회사를 계속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영업연도의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
- (2) 의사표시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고 파산채무자가 파산이 개시된 때에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도에서, 전항의 규정은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한 파산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 142 조 영업의 인수

- (1) 2인의 사원만이 존재하는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사원이 3인 이상이었다면 그 자를 제명할 것을 허용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다른 사원에 대하여 그 다른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영업을 인수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2) 2인의 사원으로 성립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가 제135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때 또는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때에는 다른 사원은 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 (3) 계산에 대하여는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3 조 해산 및 퇴사의 등기

- (1) 회사의 재산에 대한 파산의 개시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총사원은 회사의 해산에 대한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사원의 퇴사에 대해서도 같다.
- (3) 해산 또는 퇴사가 한 사원의 사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청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특별한 장애로 인하여 가담할 수 없는 한 등기할 수 있다.

제 144 조 파산후의 계속

- (1) 회사가 그 재산에 대한 파산개시로 인하여 해산하였으나 강제화해의 성립으로 인하여 파산이 종결되거나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이 정지된 때에는 사원은 회사의 계속을 결의할 수 있다.
- (2) 회사의 계속에 대해서는 총사원이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절 회사의 청산

제 145 조 청 산

- (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사원이 합의에 의하여 달리 청산방법을 정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청산을 한다.
- (2) 회사가 한 사원 개인의 채권자의 해약고지로 인하여 또는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한 파산개시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의의 얻은 때에 한하여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6 조 청산인

- (1) 청산은 사원의 결의 또는 정관에서 일부의 사원 또는 사원 이외의 자에

- 계 위임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원을 청산인으로 하여 행한다. 한 사원에게 수인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1인의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2)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원이 아닌 자를 청산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35조의 경우에는 사원 외에 해약고지를 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 (3) 한 사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그 사원에 갈음한다.

제 147 조 청산인의 해임

청산인의 해임은 제146조 제2항및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만장일치로 행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 148 조 청산인에 대한 등기

- (1) 총사원은 청산인에 대한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변경 또는 그 대표권에 관한 변경에 대하여도 같다. 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신청이 사실에 합치함을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특별한 장애로 인하여 협력할 수 없는 한 등기를 할 수 있다.
- (2)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와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의 등기는 직권으로 행한다.
- (3) 청산인은 법원에서의 보존을 위하여 상호 및 자기의 서명을 자서하여야 한다.

제 149 조 청산인의 권리의무

청산인은 현존 업무의 종료, 채권의 추심, 잔여재산의 환가 및 채무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완료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래도 할 수 있다.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안에서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제 150 조 수인의 청산인

- (1) 수인의 청산인이 있는 경우 청산인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는 한, 공동으로만 청산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청산인이 그 각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125조 제2항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1 조 권한 제한의 무효

청산인의 권한의 범위에 가한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52 조 청산사무집행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자도 또한 제1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전원의 일치로 결의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3 조 청산인의 서명방식

청산인은 청산상호로서 표시될 종전의 상호에 자기의 성명을 붙여 서명하여야 한다.

제 154 조 청산대차대조표작성의무

청산인은 청산의 개시시 및 종료시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5 조 전여재산의 분배

- (1) 채무의 변제후에 잔존하는 회사재산은 청산종료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본지분의 비율에 따라 청산인이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2) 청산중에 불필요한 금전은 가분배한다. 아직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무 또는 계쟁중의 채무의 변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최후의 분배에서 사원에게 귀속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유보하여야 한다.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은 청산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회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사원간에 다툼이 생긴 때에는 청산인은 그 다툼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분배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 156 조 청산중의 법적 지위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사원상호간 및 회사와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절에 의하여 또는 청산의 목적에 의하여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57 조 청산 종료후의 상호의 폐지

- (1) 청산이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상호의 폐지에 대한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해산한 회사의 장부 및 서류는 사원의 1인 또는 제3자에게 보관된다. 그 자를 정함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정한다.
- (3) 사원 및 그 상속인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용권을 가진다.

제 158 조 임의청산

사원이 법정청산에 갈음하여 다른 청산방법을 합의한 때에는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회사재산이 존재하는 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절 소멸시효

제 159 조 소멸시효의 기간

- (1) 사원에 대한 회사의 채무에 의한 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해산후 또는 사원의 퇴사후 5년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2) 전항의 소멸시효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해산 또는 사원의 퇴사를 등기한 날의 종료와 함께 진행한다.
- (3)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이 등기후에 비로소 변제기에 달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 160 조 소멸시효의 중단

해산한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해산시에 회사에 속하였던 사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합자회사

제 161 조 합자회사의 의의 및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1) 공동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사원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일정한 재산출자의 가액으로 제한되고(유한책임사원) 기타의 사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제한이 없는(무한책임사원) 회사는 합자회사이다.
- (2)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2 조 합자회사의 등기신청

- (1)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한책임사원의 표시 및 각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등기의 공고에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그 수만을 기재한다;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신분 및 주소와 그 출자가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3) 본조의 규정은 기존의 상사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이 입사한 경우 및 합자회사로부터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 163 조 사원상호간의 관계

사원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164조 내지 제169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제 164 조 회사의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상업의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방해받지 아니하다.

제 165 조 경업금지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66 조 유한책임사원의 권한

- (1) 유한책임사원은 연도대차대조표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고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여 그 대차대조표의 정부를 심사할 수 있다.
- (2)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 사원이 가지는 그

이상의 권리를 유한책임사원은 가지지 아니하다.

- (3)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한책임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대차대조표 또는 기타의 설명의 제공과 장부 및 서류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제 167 조 이익 및 손실의 산정

- (1) 손익의 산정에 관한 제120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에도 준용한다.
 (2)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에게 귀속될 이익은 그 사원의 자본지분이 약정한 출자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그의 자본지분에 산입한다.
 (3) 유한책임사원은 그의 자본지분 및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손실을 분담한다.

제 168 조 이익분배

- (1) 사원이 받을 이익배당분은 이익이 자본 지분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2) 전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사정에 따라 상당한 지분비율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제 169 조 이익의 지급

- (1) 제122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기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을 가진다; 단, 그의 자본지분이 손실로 인하여 약정한 출자에 대하여 급부된 금액 이하로 감소하였거나 그 지급으로 인하여 그 금액 이하로 감소될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유한책임사원은 이미 수취한 이익을 후에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다.

제 170 조 합사의 대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제 171 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1)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단, 이미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 (2)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경우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속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제 172 조 책임의 범위

- (1)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에는 그 등기된 가액에 의하여 정해진다.
- (2)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출자의 증가로서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상관습적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 한하여 채권자가 원용할 수 있다.
- (3)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사원의 합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4)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를 환급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환급한 한도에서 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이 손실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배당분을 인출한 때 또는 인출로 인하여 자본지분이 그 금액 이하로 감소한 때에도 같다.
- (5) 유한책임사원은 선의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선의로 이익을 수취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다.
- (6) 자연인인 무한책임사원이 전혀 없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

임사원의 출자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지분에 있어서의 출자가 행해지는 한에서는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자연인이 무한책임사원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72의 a조 자본보충적 소비대차

자연인인 사원이 전혀 없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회사법 제32의 a조 제32의 b조는 합자회사의 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구성원 및 유한책임사원이 유한회사의 사원인 한에서 준용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73 조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의 책임

- (1) 기존의 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한 자는 상호의 변경유무를 불문하고 입사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74 조 출자의 감소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의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등기시에 이미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감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제 175 조 출자액의 변경

출자의 증가 또는 감소는 총사원이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의 공고는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 176 조 등기전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1)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 그 영업을 개시에 대하여 동의한 유한책임사원은 등기시까지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단,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참가한 것을 채권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서 다른 결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존의 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이 입사한 경우 제1항 제1문의 규정은 그의 입사시로부터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한 때까지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177 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산되지 아니한다.

제 177의 a조 제 125의 a조, 제130의 a조, 제130의 b조의 효력)

제125의 a조, 제130의 a조, 제130의 b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제130의 a조는 제172조 제6항 제2문이 제1항 제1문의 중문에 같음하여 적용되는 한에서 적용된다. 제125의 a조에 사원에 대해 기재되는 사항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회사에 요구된다.

제 178 조 내지 제 229 조 삭 제

제 3 장 익명조합

제 230 조 출자의 이행

- (1) 익명조합원으로서 타인의 상업에 재산출자로서 참가한 자는 그 출자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를 영업자의 재산으로 인전하여야 한다.
- (2) 영업자는 그의 영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 231 조 이익, 손실

- (1) 익명조합원이 받을 손익분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상당한 배당분을 정한 것으로 본다.
- (2) 조합계약에서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을 배제할 수 없다.

제 232 조 손익산정

- (1) 매영업연도말에 손익을 산정하고 익명조합원에게 속하는 이익을 지급한다.
- (2) 익명조합원은 그가 이미 이행하였거나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한다. 익명조합원은 이미 수령한 이익을 후에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손실로 인하여 그 출자가 감소된 경우에는 연도이익은 그 손실의 전보에 충당된다.
- (3) 익명조합원이 지급을 받지 아니한 이익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의 출자를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제 233 조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 (1) 익명조합원은 연도대차대조표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고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여 그 대차대조표의 정부를 심사할 수 있다.

- (2) 익명조합원은 민법 제716조에 의해 업무집행이 배제된 사원에게 부여된 전항의 권리가 없다.
- (3)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익명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대차대조표 또는 기타 설명과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234 조 익명조합의 해약고지

- (1) 조합원의 일방 또는 익명조합원의 채권자의 해약고지로 인한 조합의 해약고지에는 제132조,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조합의 해약고지를 할 권리에 관한 민법 제723조의 적용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 (2) 조합은 익명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산되지 아니한다.

제 235 조 청 산

- (1) 조합의 해산 후 영업자는 익명조합원과 청산을 하고 익명조합원에게 귀속될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해산시에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거래는 영업자가 완료한다. 익명조합원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받는다.
- (3) 익명조합원은 매영업연도말에 당해 연도내에 완료한 거래에 관한 계산, 자기에게 귀속될 금액의 지급 및 아직 완료하지 아니한 거래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36 조 영업자의 파산

- (1) 영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된 경우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분담할 손실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익명조합원은 그 초과한 출자 부분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가 있을 경우 익명조합원은 자신이 분담할

손실의 전보를 위하여 필요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37 조 부인권

- (1) 익명조합원이 파산개시전 그 전년도에 영업자와의 사이에 성립된 합의에 의하여 그의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받거나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그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면제를 얻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반환 또는 면제를 부인할 수 있다. 그 반환 또는 면제가 조합이 해산하는 경에 되었는가는 묻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부인권은 파산이 반환 또는 면제의 합의가 있는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에 의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 (3) 부인권의 행사 및 그 효과에 관한 파산법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편 상업장부

제 1 장 모든 商人에 대한 규정

제 1 절 장부작성, 재산목록

제 238 조 장부작성(기장) 의무

- (1) 모든 상인은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장부에 자기의 상거래 및 재산상태를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장은 그 기장이 전문적 자격이 있는 제3자에 대해 상당 기간 이내에 거래와 회사상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래는 그 발생 및 종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상인은 발송한 상용서신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카피, 복사, 轉寫 또는 문자매체, 영상보존장치 기타 자료보존장치 원본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39 조 商業帳簿의 記帳

- (1) 상업장부의 기장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할 때 상인은 현행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약어, 수자, 알파벳 내지 도형기호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2) 장부의 기장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적정시기에,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 (3) 기장 또는 기록은 원래의 내용이 전혀 확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그 변경이 최초에 행해졌는지 또는 후에 비로소 행해졌는지에 대해 그 상태가 불명확한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 (4) 상업장부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은 장부기장의 형식이 그 당시 적용된 절차를 포함하여 정규의 부기원칙에 합치하는 한에서, 증거서류를 정연하게 한 파일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상업장부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을 데이터매체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보존기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하며, 더욱이 상당 기간 이내인 경우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도 동시에 적용된다.

제 240 조 財産目錄

- (1) 모든 상인은 영업을 개시할 때 자기의 부동산, 채권 및 부채, 현금의 액수 및 기타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각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모든 상인은 영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영업년도기간은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산목록은 정규의 회계처리기간중에 작성하여야 한다.
- (3) 유형고정자산인 자산과 원재료, 보조재료 및 고장소모품은, 규칙적으로 보충되고 동시에 그 총액이 기업에 중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해 고

정된 수량 및 고정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그 재고의 수량 가치 및 구성에 극히 일부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3년마다 재고자산의 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 (4) 재고자산 가운데 동종의 자산 및 기타 동종 또는 거의 가치가 같은 것은 단일계정항목으로, 그 평가액은 이들 자산의 평균가액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제 241 조 略式財産目錄

- (1) 재산목록의 작성시 종류, 수량 및 가치에 따른 재고자산은 표본채취후 수학적,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공정한 장부작성원칙에 일치하여야 한다. 이 방법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의 표시가액은 실제재고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산목록의 표시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2) 영업년도말에 재고자산의 기재없이도 정규의 부기원칙에 일치하는 기타의 처리규정에 의해 종류, 수량 및 가치에 따른 재고자산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년도말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에 연도말 당시의 재고자산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3) 영업년도 종료시의 재산목록에서 다음 자산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 영업년도 종료전 3월 또는 종료후 2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특별한 재산목록에 상인이 재고자산을 기재하거나 제2항에 인정된 다른 방법에 기초하여 종류, 수량 및 가치를 기재한 때.
 2. 정규의 부기원칙에 일치하는 계속기장 또는 검산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영업년도말의 재고자산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특별재산목록이 작성된 때.

제 2 절 개업대차대조표, 연도계산서

제 1 관 일반규정

제 242 조 작성의무

- (1) 상인은 영업개시시와에 매 영업년도의 종료시 재산과 부채를 표시한 결산서(개업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업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에 관련되는 한 연도결산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2) 상인은 매 영업년도의 종료시 당해 연도의 비용과 수익의 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연도결산서를 구성한다.

제 243 조 작성원칙

- (1) 연도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2) 연도결산서는 명료하고도 개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 연도결산서는 영업년도중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244 조 언어, 통화단위

연도결산서는 독일어와 독일마르크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245 조 서 명

상인은 연도결산서에 날짜를 기재한 뒤 서명하여야 한다.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2 관 계산규정

제 246 조 완전성의 원칙과 차감계산의 금지

- (1) 연도결산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자산, 부채, 계산구분항목, 비용 및 수익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차변항목과 대변항목, 비용과 수익, 부동산 물권과 부동산 채무는 서로 차감해서는 안 된다.

제 247 조 대차대조표의 내용

- (1) 대차대조표에서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및 이연항목을 독립항목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2) 고정자산에는 계속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예정된 자산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소득세 및 수익세의 목적상 허용가능한 대변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대변항목은 준비금의 특별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세법규정에 따라 환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안에서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제 248 조 대차대조표 계상금지

- (1) 창업비와 자기자본조달비용은 대차대조표에 차변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다.
- (2)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은 무형고정자산은 대차대조표차변에 계상할 수 없다.

제 249 조 충당금

- (1) 불확정채무 및 미결거래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다음의 경우에도 충당금이 설정되

어야 한다.

1. 당해 영업년도에 행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영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지출 또는 다음 영업년도에 보충하여 이루어지는 폐기물제거지출

2. 법적 의무없이 제공되는 보증금부

충당금은 유지보수가 제2문 1호에 의한 기한경과 후 그 영업년도 이내에 보충되는 경우에 한해 실행되지 않은 유지보수지출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2) 충당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가운데 당해 영업년도 또는 경과 영업년도에 귀속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결산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이 확실하지만 그 금액 또는 비용발생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설정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한 목적 이외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충당금은 그 근거가 소멸한 경우에 한해 환입된다.

제 250 조 이연항목

(1) 결산일 이전의 지출로 그것이 결산일 이후의 일정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지출은 이연항목으로서 차변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1.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관세 및 소비세로서, 결산일 당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2. 비용으로 볼 수 있는 賣出額稅로서 결산일에 표시해야 할 先給分 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공제된 선급분.

(2) 결산일 이전의 수입으로서, 결산일 이후의 일정기간에 대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연항목으로 대변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채권의 상환금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차변의 계산구분항목(이연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그 차액은 매년의 계획적

감가상각액에 의해 상각되어야 하며 그 감가상각액은 채무의 계속기간에 걸쳐 배분될 수 있다.

제 251 조 채무보증관계

채무보증관계가 대변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한 대차대조표의 欄外에는 어음의 교부와 배서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일반 보증, 어음보증, 수표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그리고 하자담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보증관계가 注記되어야 한다. 이는 금액으로 기재될 수 있으며, 특히 同額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관 평가규정

제 252 조 일반적 평가원칙

- (1) 연도결산서에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할 때에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1. 당해 영업년도의 개시대차대조표의 계상가액은 경과 영업년도의 기말 대차대조표의 경우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이 없는 한 계속기업의 견지에서 영업의 계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산 및 부채는 결산일에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즉 결산일까지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실은, 비록 결산일과 연도결산서 작성일 사이에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利益은 결산일에 실현된 경우에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영업년도의 비용과 수익은 그에 대응하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시점과 독립하여 연도결산서에 고려하여야 한다.
 6. 前期의 연도결산서에 적용된 평가방법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원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 253 조 자산 및 부채의 계상가액

- (1) 資産은 取得原價 또는 製造原價를 최고한도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채무는 그의 상환금액으로, 반대급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定期金債務는 그 현재가치로, 尙當금은 상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금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2) 그의 이용이 시간적으로 유한한 고정자산은 그의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에서 계획적인 감가상각액을 해야 한다. 그 계획은 그 자산이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영업년도에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이용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고정자산은 결산일에 이를 부기해야 하며, 저가로 평가하기 위해 계획외의 상각을 할 수 있다. 계속된 가치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획외의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3) 流動資産으로서 결산일의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저가인 경우 이를 저가로 평가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확정할 수 없고 동시에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가 결산일 당시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금액까지 감액하여야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그 자산의 평가액을 기치변동의 이유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 (4) 減價償却은 상인의 합리적 판단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 (5) 제2항 제3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저가계상은 상기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254 조 세법상의 감가상각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을 세법에서만 인정되는 저가로 평가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53조 제5항도 준용할 수 있다.

제 255 조 취득원가 및 제조원가

- (1)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하여 이것을 바로 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지출비용으로서, 이때 그 지출은 자산에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원가에는 부대비용 및 추가적 취득원가도 포함된다. 취득원가가 하락한 때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2) 제조원가란 자산의 제조, 확장, 또는 개량을 위해 물품의 소비 및 용역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료비, 가공비 및 특별가공비가 포함된다. 제조원가의 계산시 필요한 간접재료비, 간접가공비 및 제조로 인한 고정자산의 소모분 등을 산입할 수 있다. 일반관리비 및 기업단체부담금, 임의의 사회적 급부부담금, 영업연금분담금은 산입할 필요가 없다. 제3문 및 제4문에서 말하는 지출비용은 그 비용이 제작중에 소요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판매비는 제조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
- (3) 他人資本의 利子は 제조원가에서 제외한다. 자산제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는 제조기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자산의 제조원가로 볼 수 있다.
- (4) 營業讓受時에 지급한 반대급부가 負債를 제외한 기업의 各 資産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差額은 營業權 또는 商號權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차액은 4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영업권 또는 상호권은 이용이 예정된 영업년도에 나누어 계획적으로 상각할 수도 있다.

제 256 조 略式評價方法

정규의 부기원칙에 일치하는 한 같은 종류의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는 최초 또는 최후에 취득 또는 제작한 자산은 최초 또는 일정한 방법으로

소비 또는 판매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240조 제3항 및 제4항은 연도 결산서에도 준용한다.

제3절 保存 및 提出

제 257 조 證據書類의 보존과 보존기간

- (1) 모든 商人은 다음의 증거서류를 일정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상업장부, 재산목록, 개업대차대조표, 연도결산서, 상황보고서, 콘체른결산서, 콘체른상황보고서, 이들 증거서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안내서 기타 조직상의 증거서류
 2. 수령한 商用書信
 3. 발송한 상용서신의 사본
 4. 제238조 제1항에 의해 상인이 기장할 장부에서 기장에 관한 증빙서류(기장증)
- (2) 商用書信은 상거래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 (3) 제1항에서 열거한 증거서류 가운데 개업대차대조표,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결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일치하고 동시에 복사 또는 데이터가 다음에 열거하는 바를 보장할 때 영상보존장치 또는 기타 자료보존장치상의 사본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
1. 수령한 상용서신 및 증빙서류가 그 형태에 있어서 일치하거나 사본 또는 자료가 판독이 가능할 때 증거서류와 내용상 일치할 것
 2. 보존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언제라도 상당기간안에 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가 제239조 제4항 제1문에 기초하여 자료보관장치에 보관한 경우에도 자료를 보관장치에서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인쇄된 증거서류도 제1문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
- (4)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증거서류는 10년간, 제1항에서 열거하는 기타 증거서류는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5) 보존기간은 장부에 최근 기재하였던 曆年, 콘체른결산서가 작성된 曆年, 상용서신이 수령되거나 발송된 曆年, 또는 증거서류가 작성된 曆年の 종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 258 조 법률분쟁중 상업장부의 제출

- (1) 법률분쟁중 法院은 職權으로 당사자의 일방에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 소송상대방의 서류제출의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도 적용된다.

제 259 조 법률분쟁중 발췌서류의 제출

법률분쟁중 상업장부를 제출할 때에는 쟁점에 관한 부분에 한해 당사자 쌍방의 입회하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발췌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타 내용은 그 記帳의 정규성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0 조 財産分割時 帳簿의 제출

상속재산, 재산공동체상의 재산 및 회사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사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261 조 영상보존장치 또는 자료보존장치에 의한 證據書類의 제출

보존의무가 있는 證據書類를 영상보존장치 또는 자료보존장치에 寫本의 형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증거서류의 판독을 위해 필요한 보조수단을 自己費用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비용으로 증거서류를 인쇄하거나 보조수단에 의하지 않고 판독이 가능한 複製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登記에 의한 商人, 州法

제 262 조 등기에 의한 상인에 대한 적용

제2조에 의해 商業登記所에 會社登記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本章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63 조 州法規定의 유보

組合 또는 目的團體와 같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과 다른 주법상의 규정도 적용된다.

제 2 장 자본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보완규정

제 1 절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 및 상황보고서

제 1 관 총 칙

제 264 조 作成義務

- (1)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연도결산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와 통일적 관계에 있는 부속명세서 및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는 또한 경과 영업년도에 관한 연도결산서 및 상황보고서를 당해 영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소규모자본회사(제267조 제1항)는 정규의 회계처리에 일치하는 가운데 이보다 늦게 연도결산서 및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 할 수는 없다.
- (2)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원칙을 준수하면서 자본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 및 수익상태의 실질적 관계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연도결산서가 제1문에서 말하는 실질적 관계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속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65 조 항목분류에 관한 일반원칙

- (1) 연속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형식, 특히 항목구분의 형식은 특별한 사정에 고려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와 함께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에는 직전 영업년도의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금액을 비교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와 함께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전년도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특정 資産이나 負債가 대차대조표의 複數項目에 해당하는 경우, 명료하고도 개괄적인 연도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항목에도 속한다는 뜻을 註記하거나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自己持分은 그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流動자산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수개의 營業部門이 존재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항목분류규정에 따른 연도결산서의 항목분류를 해야 할 경우, 연도결산서는 특정 영업부문에 고유한 항목분류에 따라 이를 작성하고, 기타 영업부문을 위한 분류도 보충하여야 한다. 이 보충은 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이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5) 項目은 小分類도 가능하며, 이때 상기 項目分類原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항목은 그 내용이 기존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다.
- (6)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項目區分과 表示는 자본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명료하고 개괄적인 연도결산서를 작

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 (7)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 項目은 특별한 樣式規定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統合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동 항목의 금액이 제26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항목의 통합에 의해 표시의 명료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합된 항목은 부속명세서에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8) 금액표시가 없는 대차대조표항목이나 손익계산서항목은 전년도에 당해 항목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 2 관 貸借對照表

제 266 조 貸借對照表의 項目分類

- (1) 대차대조표는 計定形式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대규모 및 중규모의 자본회사 (제267조 제3항, 제2항)는 제2항에 열거한 항목을 차변에, 제3항에 열거한 항목을 대변에 구별하고 동시에 규정된 배열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소자본회사(제267조 제1항)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알파벳 및 로마숫자를 붙인 항목만을 배열방법에 따라 표시한 略式貸借對照表를 작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2) 借 邊

A. 固定資產

I. 無形固定資產

1. 허가, 영업상의 보호권 및 이에 유사한 권리 및 제가치와 당해 권리 및 제가치에 대한 라이선스
2. 영업권 또는 상호권
3. 先給金

II. 有形固定資產

1. 부동산, 부동산 유사권리 및 타인의 부동산상의 건물을 포함하는 건물
2. 기술적 설비 및 기계
3. 기타 설비, 공장용 및 영업용기계
4. 先給金 및 건설중의 설비

Ⅲ. 財務固定資産

1. 結合企業에 대한 持分
2. 결합기업에 대한 대출금
3. 資本參加
4. 자본참가관계기업에 대한 대출금
5. 고정자산인 有價證券
6. 기타 대출금

B. 流動資産

I. 재고자산

1. 원재료, 보조재료 및 고장소모품
2. 미완성품, 미완성금부
3. 제품 및 상품
4. 선금금

Ⅱ. 채권 및 기타 자산

1. 공급 및 금부에 의한 채권
2. 결합기업에 대한 채권
3. 자본참가기업에 대한 채권
4. 기타 자산

Ⅲ. 유가증권

1. 결합기업에 대한 지분
2. 자기지분
3. 기타 유가증권

Ⅳ. 수표, 현금제고, 연방은행예금, 우편이체저금, 신용기관에 대한 예금

C. 계산구분항목(이연자산)

(3) 貸邊

A. 自己資本

I. 引許資本金

II. 자본준비금

III. 이익준비금

1. 법정준비금

2. 자기지분준비금

3. 정관에 기초하는 준비금

4. 기타 이익준비금

IV. 이월이익/이월손실

V. 연도잉여액/연도결손액

B. 充當金

1. 연금충당금 및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한 충당금

2. 납세충당금

3. 기타 충당금

C. 負債

1. 사채(전환사채)

2.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 수주先受金

4. 공급 및 급부에 의한 채무

5. 환어음의 引受 및 약속어음의 發行으로 인한 채무

6. 結合企業에 대한 채무

7. 자본참가 관계기업에 대한 채무

8. 기타 채무

(조세채무)

(사회보장 관련채무)

D. 재산구분항목(이연부채)

제 267 조 規模別分類

- (1) 小規模 資本會社는 다음 세가지 기준 가운데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차변의 결손액(제268조 제3항)을 차감한 후의 대차대조표총액이 390만 독일마르크
 2. 결산일 전 12개월간의 賣出總額이 800만 독일마르크
 3. 연평균 종업원 수가 50인
- (2) 中規模 資本會社란 제1항에 열거한 세가지의 기준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거나 다음 세가지 기준 가운데 두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차변에 표시된 결손액(268조 3항)을 차감한 후의 대차대조표총액이 1,550만 독일마르크
 2. 결산일 전 12개월간의 賣出總額이 3,200만 독일마르크
 3. 연평균 종업원 수가 250명
- (3) 大規模 資本會社란 제2항의 기준 가운데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자신의 株式과 기타 有價證券을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서 正式去來나 규제하의 自由去來를 허가받은 경우 또는 정식거래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대규모자본회사로 본다.
-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基準의 법적효력은 연속하는 두 영업년도의 결산일 현재 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나 合併, 組織變更 또는 新規設立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이 합병, 조직변경 또는 신규설립 후의 최초의 결산일 현재 충족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그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 (5) 평균 從業員數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합한 수의 1/4로 한다. 이때 종업원수에는 외국에 근무하는 자는 포함되지만 직업훈련중의 자는 제외된다.
- (6) 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從業員 代表의 정보청구권 및 설명요구권도 존속한다.

제 268 조 대차대조표 개별항목에 관한 諸規定, 貸借對照表 註記

- (1) 貸借對照表는 연도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年度利益의 일부의 처분을 고려한 가운데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는 「연도잉여금/연도결손금」 및 「이월이익/이월손실」 항목에 갈음하여 「대차대조표이익/대차대조표손실」항목을 사용한다. 이월이익 또는 이월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차대조표이익/대차대조표손실」항목에 삽입하고 동시에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는 고정자산의 개별항목 및 「영업의 개업비 및 확장비」항목의 변동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취득원가 및 제조원가의 총액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당해 영업년도의 증가액, 감소액, 이체액 및 증액기입과 함께 감가상각의 총액을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영업년도의 감가상각액은 대차대조표 당해 항목에 주기하거나 고정자산의 항목분류에 따른 분류에 따라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自己資本이 營業損失에 의해 소모되고, 대변항목이 차변항목을 초과한 때 이 차액은 「자기자본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缺損金」이라는 명칭으로 대차대조표의 차변 말미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辨濟期間이 1년을 초과하는 債務額은 별도로 표시된 항목에 이를 주기하여야 한다. 법률상 결산일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기타 자산」항목에 표시할 때 그 주된 金額은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채무는 별도로 표시된 항목으로 표시하고 이에 대해 註記하여야 한다. 수주선수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선수금이 「재고자산」항목으로부터 명시하여 공제되지 않는 한, 채무로서 따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결산일 이후에 법률상 발생하는 채무액을 「채무」항목에 기입할 경우에 그 주된 금액은 부속명세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6) 제250조 제3항에 의해 차변의 이연항목에 기입된 차액은 대차대조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또는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7) 제251조에 열거한 채무보증관계는 대차대조표의 난외에 주기하거나 부속명세서에 質權 및 기타 擔保를 구별하여 기재함으로써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무가 결합기업에 대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별하여 기재해야 한다.

제 269 조 영업경영의 개입비 및 확장비

영업경영의 개입비 및 확장비는 대차대조표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차대조표 보조항목으로 차변에 표시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영업경영의 개입비 및 확장비」라는 명칭으로 고정자산의 앞에 표시하고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경우, 분배 후에 잔존하고, 환입이 가능한 이익준비금에 이월이익을 더하거나 이월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적어도 그 계상액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익분배가 허용된다.

제 270 조 특별항목의 설정

- (1) 자본준비금으로의 추가 및 환입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먼저 하여야 한다. 제1문은 준비금 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으로 추가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 271 조 자본참가, 결합기업

- (1) 자본참가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당해기업과의 계속적 결합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업경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분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하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그 액면가액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5을 초과하는 것은 자본참가가 된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등록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제3편에서 말하는 자본참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2) 제3편에서 의미하는 결합기업이란 전부연결에 대한 규정에 의해 지배 회사의 콘체른 결산서에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제290조)로 포함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또는 그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2절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콘체른결산서를 최상위의 지배회사로 하여 작성하거나 제291조 또는 제292조에 기한 법규명령에 따라 작성을 면제시킬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제295조 또는 제296조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 종속회사도 결합기업이다.

제 272 조 자기자본

- (1) 인허자본은 자본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사원의 채무이행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자본금이다. 인허자본에 대한 미납입출자금은 차변의 고정자산의 앞에 구별하여 표시하고 적당한 명칭을 붙여야 한다. 그 가운데 납입최고가 행해진 출자액은 이를 註記하여야 한다. 납입최고가 행해지지 않은 미납입출자액은 「인허자본」항목에서 명시하여 공제할 수도 있다. 이 때 공제 후의 잔액은 「납입최고제자본금」항목으로서 대변의 중앙란에 표시하고 납입최고가 이루어졌으나 미납입된 금액은 채권 아래에 구별하여 표시하고 적당한 명칭을 붙여야 한다.
- (2)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은 자본준비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지분을 포함하는 지분의 발생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취득된 금액
 2.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轉換權附社債 및 選擇權附社債의 발행시 취득한 금액
 3. 사원이 그 지분을 위한 우선권부여에 대해 지급한 가산액
 4. 사원이 자기자본에 대해 지급한 기타 가산액
- (3) 당해 영업년도 또는 경과 영업년도의 이익으로부터 설정된 금액만을

이익준비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에는 이익으로 설정해야 할 법정준비금 또는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 기초하는 준비금 및 기타 이익준비금이 포함된다.

- (4) 대차대조표 차변상의 자기지분에 대해 계상할 금액에 합치하는 금액은 이를 자기지분준비금에 추가해야 한다. 자기지분을 발행, 매각 또는 회수할 경우, 또는 제253조 제3항에 의해 차변에 보다 낮은 금액을 부여할 경우에 한해 자기지분 준비금은 환입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작성시 이미 설정해야 할 자기지분준비금은 이미 설정된 이익준비금이 임의로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익준비금에서 설정할 수 있다. 제1문에 의한 준비금은 지배회사 또는 다수의 자본참가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하여야 한다.

제 273 조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

세법이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을 상사대차대조표에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세법상의 이익산정시 계상가액을 승인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제247조 3항)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항목을 설정하는 근거규정은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74 조 조세의 이연

- (1) 세법의 규정들에 의해 과세될 이익이 상법상의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당해 영업년도와 경과 영업년도에 귀속될 조세비용이 과소하게 된 때, 당해영업년도와 경과 영업년도의 과소 조세비용이 당해 연도 이후의 각 영업년도에 배분될 것이 예측될 때는 다음 영업년도의 예측되는 조세부담액으로 제249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총당금을 설정하며, 이를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총당금은 조세부담이 생긴 때 또는 과도한 조세부담이 예측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 (2) 세법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소득이 상법상의 이익보다 많아 당해 영

업년도와 경과 영업년도의 납부세액이 과도하여 당해 연도 이후의 각 영업년도에 상쇄될 것이 예측될 때는 다음 영업년도의 예측되는 조세 경감액으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대차대조표 보조항목으로 이연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연항목은 적당한 명칭을 붙여 구별하여 표시하고 부속명세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때는 이익배당 후 남은, 처분가능한 이익준비금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전기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이 계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경감이 이루어지거나 보다 많은 조세부담이 예측되지 않을 때에는 총당금을 환입하여야 한다.

제 3 관 손익계산서

제 275 조 항목분류

- (1) 손익계산서는 총원가법 또는 매출원가법에 의해 보고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열거하는 항목은 소정의 순서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총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1. 매출액
 2. 완성품 및 반제품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
 3. 차변에 표시된 기타 자기급부
 4. 기타 영업수익
 5. 재료비
 - a)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공장소모품비 및 매입부품비
 - b) 매입급부비용
 6. 노무비
 - a) 임금 및 급료
 - b) 사회보장부과금, 노령연금비, 공제부조비(내)노령연금비

7. 감가상각액

- a) 무형고정자산 및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 차변에 표시된 영업경영의 개업비 및 확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액
- b) 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 단 이는 자본회사의 통상의 감가상각액을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경영비용

9. 투자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10. 채무고정자산인 기타 유가증권과 대부금에 의한 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11. 기타 수입이자 및 이에 유사한 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12. 유동자산인 채무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13.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비용(내)결합기업에 대한 것

14. 경상손익

15. 특별이익

16. 특별손실

17. 특별손익

18. 소득세 및 수익세

19. 기타 조세

20. 연도잉여금액/연도결손금

(3) 매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2. 매출액을 얻기 위해 제공한 급부의 제조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

5. 일반관리비

6. 기타 영업수익

7. 기타 영업비용

8. 자본참가에 의한 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9. 재무고정자산인 기타 유가증권과 대여금에 의한 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10. 기타 수입이자 및 이에 유사한 수익(내)결합기업으로 부터의 것
 11. 유동자산인 채무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12.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비용(내)결합기업에 대한 것
 13. 경상손익
 14. 특별이익
 15. 특별손실
 16. 특별손익
 17. 소득세 및 수익세
 18. 기타 조세
 19. 연도잉여금/연도결손금
- (4)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증감액은 손익계산서상의 항목 「연도잉여금/연도결손금」의 뒤에 비로소 표시할 수 있다.

제 276 조 규모에 기초한 약식절차

소규모 및 중규모의 자본회사(제267조 제1항, 제2항)는 제27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 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항목을 「元利益」이라는 명칭의 항목에 통일시킬 수 있다.

제 277 조 손익계산서의 개별항목에 관한 규정

- (1) 자본회사의 통상의 영업활동에 고유한 제품과 상품의 판매 및 사용임대 또는 용역임대에 의한 수익과 자본회사의 통상의 영업활동에 고유한 용역제공에 의한 총매출액으로부터 매출에누리와 매출액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수량의 증감과 함께 가치의 증감도 재고변동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단 감가상각액은 자본회사의 통상의 감가상각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3) 제253조 제2항 제3문에 기초하는 특별감가상각액과 제253조 제3항 제3문에 기초하는 감가상각은 각각 구별하여 표시하거나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손실인수로 인한 수익과 비용 및 이익공동계약, 이익이전계약 또는 부분이익이전계약에 기초하여 수취한 이익 또는 지급한 이익은 각각 구별하여 적절한 명칭을 붙여 표시하여야 한다.
- (4) 자본회사의 통상의 영업활동 외에서 얻은 수익과 비용은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항목 아래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시된 금액이 수익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이들 항목은 그 금액과 종류를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문은 다른 영업년도에 귀속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278 조 조세

소득세 및 수익세는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연도결산서작성시에 없는 때에는 이익처분에 관한 의안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익처분에 관한 결의가 의안과 다를 때에는 연도결산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제 4 관 평가규정

제 279 조 규정적용의 예외, 감가상각

- (1) 제253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제253조 제2항 제3문은 예측되는 계속적 가치감소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고정자산인 자산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2) 제254조에 기초하는 감가상각액이 대차대조표로부터 명확히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세법이 과세소득산정방법으로 이를 승인할 경우에 한해 제254조에 기초하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 280 조 가치회복명령

- (1) 자산에 대해 제253조 제2항 제3문, 제3항 또는 제254조 제1문에 의한 감가상각이 실시되고 차기 영업년도에 감가상각을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실시할 감가상각액을 고려한 가치인상의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액을 증가기재하여야 한다. 제253조 제5항, 제254조 제2문은 이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없다.
- (2) 세법상의 과세소득산정시 저가의 계상액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및 대차대조표에서도 저가의 계상액을 유지하는 것이 평가액유지의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액기재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 (3) 세법상의 이유로 당해 영업년도에 인정되는 감가상각액은 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동시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1 조 세법규정의 고려

- (1) 제279조와 관련된 제253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평가와 제254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평가차액을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에 추가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제254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가치수정항목의 근거규정은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치수정항목의 설정대상인 자산을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또는 세법상의 가치수정을 상법상의 감가상각에 갈음할 경우에 한해 환입에 관한 세법규정을 저해하지 않고 이 가치수정항목을 환입하여야 한다.
- (2) 당해 영업년도에 세법규정에만 기초하여 실시된 감가상각액이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부터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액을 부속명세서에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마다 구별하여 기재하고, 동시에 그 이유도 명시하여야 한다.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의 환입에 따른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기타 영업수익」항목에 표시하고 준비금부분을 갖는 특별항목에 대한 추가액은 손익계산서의 「기타 영업비용」항목에 각각 구별하여 표시하거나 부속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 282 조 영업경영의 개업비 및 사업확장비의 감가상각

영업경영의 개업 및 사업확장비의 표시금액은 설립후의 각 영업년도에 적어도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 283 조 자기자본의 계상가액

인허자본액은 액면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 5 관 부속명세서

제 284 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설명

- (1) 부속명세서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개별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또는 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부속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부속명세서에는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개별항목에 대해 적용된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및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2.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었던 금액에 의한 항목이 연도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독일 마르크화로의 전환기준을 기재하며
 3.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및 평가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때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재산상태, 재무상태, 수익상태에 미칠 영향은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40조 제4항, 제256조 제1문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평가가 결산일 전에 확인된 최후의 거래소상장 또는 시장가격에 기초하는 평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때에는 차액을 그룹별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원가에 타인자본이자를 산입한데 대한 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5 조 기타 기재의무

나아가 부속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채무에 대해
 - a) 반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의 총액
 - b) 담보의 종류 및 형태를 기재하고 또한 질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를 통해 보증되는 채무의 총액
2. 제1호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대차대조표상으로 명확하지 않는 한, 법규상의 구분기준에 따른 채무의 각항목에 대해 제1호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구별
3. 기재사항이 재무상황의 판단에 중요한 경우에 한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고 제251조에 의해서도 기재할 필요가 없는 다른 재무상의 채무의 총액, 그러나 그중 결합기업에 대한 채무는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자본회사의 통상의 영업활동에 고유한 제품의 판매 및 자본회사의 통상의 영업활동에 고유한 용역제공의 조직을 고려하여 활동범위와 지리적으로 정해진 시장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 한해 활동범위별 및 지리적으로 정해진 시장별 매출액의 구별
5. 자산에 대해 당해 영업년도 또는 경과 영업년도에 제254조, 세법규정에 기초하여 제280조 제2항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또는 구가액을 유지함으로써 또는 제273에 기초하는 특별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연도손익이 영향을 받은 범위. 나아가 이러한 평가로부터 생긴 장래의 명백한 부담의 범위
6.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이 부담할 소득세와 수익세의 범위
7. 영업년도중에 고용한 피용자의 집단별 평균수
8. 매출원가법 (제275조 3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 a) 제27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분류한 영업년도의 재료비

- b) 제275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분류한 영업년도의 재료비
9. 업무집행기관, 감사회, 고문회 또는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인원구성별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
- a) 영업년도의 활동에 대해 부여된 급여총액(급여, 이익분배액, 경비보상액, 보험료, 수수료 및 각종의 부수적 급부). 급여총액에는 현금에 의한 지급뿐만 아니라 다른 청구권으로 전환된 급여 또는 다른 청구권의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급여도 산입한다. 영업년도에 대한 급여 외에, 영업년도에 부여되는 기타 급여로 종래 연도결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급여도 기재하여야 한다.
- b) 위 기관의 구구성원 및 그 유족에 대한 급여총액(퇴직일시금, 은급, 유족에 대한 급여 및 이와 유사한 급부). a)의 제2문 및 제3문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 인적 집단에 대해 설정된 당기의 연금 및 연금기대권에 대한 총당금과 이 채무에 대해 설정되지 않았던 총당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 c) 이자율, 중요조건 및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년도에 반환된 금액을 명시하고 제공한 선급금과 신용 및 채무보증관계.
10. 영업년도 또는 그 후 퇴직한 경우에도 업무집행기관 및 감사회의 전 구성원의 성과 최소한의 성명은 줄이지 않고 명기한다. 감사회회장, 동 회장대리 및 경우에 따라 업무집행기관의 장은 직위 자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자본회사 또는 자본회사의 회계에 관계하는 자가 적어도 지분의 1/5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그밖에 당해기업의 연도결산서가 제출된 최근의 영업년도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의 금액, 자기자본 및 손익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분의 계산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2. 대차대조표의 「기타 총당금」항목 아래에 구별하여 표시하지 않은 총당금은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13. 제255조 제4항 제3문을 적용할 경우에는 영업권 또는 상호권의 계획적 감가상각의 이유

14. 각기업의 최대범위에 대해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는 자본회사인 지배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및 각기업의 최소범위에 대해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는 자본회사인 지배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이들 지배회사가 작성한 콘체른결산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

제 286 조 기재의 중지

- (1)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를 중지하여야 한다.
- (2) 상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구별이 자본회사 또는 자본회사가 적어도 지분의 1/5을 소유하는 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경우에 한해 제 285조 제4호에 기초하는 매출액의 구별을 중지할 수 있다.
- (3) 제285조 제11호에 의한 기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지할 수 있다.
 1. 제264조 제2항에 의한 자본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 수익상태의 표시에 중요성이 적은 경우 또는
 2. 상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기재가 자본회사 또는 기타 기업에 두드러진 불이익을 줄 경우
 자기자본과 연도손익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기업이 연도결산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보고를 할 자본회사가 당해 기업의 1/2에 미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및 연도이익의 기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문 제2호에 의한 예외규정의 적용은 이를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7 조 소유지분명세서

제285조 제11호에서 요구되는 기재는 이를 당해 부속명세서에 기재하는 대신에 소유지분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당해 명세서는 부속명세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특수한 소유지분명세서 및 그 보관장소도 부속명세

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 288 조 규모에 따른 약식절차

제267조 제1항의 자본회사는 제28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a 및 b, 제12호에 기초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제267조 제2항의 중규모자본회사는 제285조 제4호에 따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제 6 관 상태보고서

제 289 조

- (1) 상태보고서에서는 실질적 관계들에 합치하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적어도 자본회사의 영업경과 및 상태가 기재되어야 한다.
- (2) 상태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영업년도의 종료후에 생긴 특히 중요한 사상
 2. 자본회사의 발전전망
 3. 연구 및 개발의 영역

제 2 절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

제 1 관 적용영역

제 290 조 작성의무

-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본회사(지배회사)의 통일적 지휘하에 있는 기업이 콘체른내에 존재하고, 이 통일적 지휘하에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기업(종속회사)에 대하여 제271조 제1항에 의한 자본참가가 지배회사에 귀속하는 경우에 지배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콘체른영업년도의 최초 5개월 이내에 경과 콘체른영업년도에 관한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본회사(지배회사)가 일정한 기업(종속회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나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2. 관리기관, 업무집행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 동시에 당해 자본회사가 동시에 사원일 때
 3. 이 기업과 체결한 지배계약 또는 이 기업의 정관규정에 기초하여 지배적 영향을 행사할 권리가 있을 때
- (3)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권리 및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도 제2항에 의한 지배회사에 속하는 권리로 본다. 지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당해 기업의 다른 사원과의 협정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권리는 제외한다.
1.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분에 따른 권리
 2. 담보로 보유하는 지분에 부속하는 권리로서, 당해 권리가 담보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거나 신용기관이 대출의 담보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 갈음하여 행사되는 권리
- (4)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반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기업에 속하는 의결권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지분에 기초하는 의결권으로 종속회사 그 자체에 속하는 것, 이 종속회사의 종속회사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기업의 계산으로 타인에 속하는 것은 의결권총수에서 제외한다.

제 291 조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면제

- (1)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지배회사에 대해 종속회사이기도 한 지배회사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면제규정

에 따라 확인의 부기 또는 그 거절에 관한 부기를 포함하여,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 지배회사의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가 독일어로 공시되는 경우에는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는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자본회사인 기업이,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회사 및 그의 종속회사까지도 편입한 콘체른 결산서의 작성의무를 질 때에는 그 법률형태 및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기업이라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 (2)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지배회사의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작성이 면제된다.
1.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회사 및 그 종속회사이 제295조 및 제296조에 저촉하지 않고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된 때
 2.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가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에 기준이 되고, 연결결산서에 관한 1983년 6월 13일자 이사회지침 83/349/EWG(유럽공동체공보 제 L 193호 1항)의 요건에 일치하는 법률에 적합하고 또한 당해 법률에 따라 회계서류의 의무감사를 위임한 자의 인가에 관한 1984년 4월 10일자 이사회지침 84/253/EWG(유럽공동체공보 제 L 126호 20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결산검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때
 3.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인 부속명세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때
 - a)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명칭 및 주소
 - b)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면제한다는 지시
- (3) 제1항에 따른 작성면제는 제2항에 열거한 전제조건 존재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에서는 작성이 면제된 지배회사의 적어도 지분의 10/100을 소유하거나, 유한회사에서는 적어도 그 지분의 20/100을 소유하는 사원이 늦어도 콘체른영업년도의 종료전 6개월

이내에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을 청구한 경우에 지배회사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당해 지배회사에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회사의 지분이 적어도 90/100이 속하는 때에는 그밖의 사원이 작성면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92 조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적성면제에 관한 법규명령

- (1) 연방법무장관은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결산서 및 작성이 면제되는 콘체른상태보고서가 지침 83/349/EWG의 요건에 일치하는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 또는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의 당해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의 조건을 붙여 제291조가 유럽경제공동체의 비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지배회사의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연방재무장관 및 연방경제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참의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명령에 따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단 유럽경제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의 법률이 작성을 면제하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기초가 되거나 동일성의 확보를 위해 원용될 수 있는 것은 당해서류가 다른 회원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따로 규정된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에 같음하여 公示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절에 따라 작성되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가 지배회사가 주소를 둔 국가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법률형태 및 업종의 기업에 대해 규정되고 있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조건으로 제1문에 의한 법규명령에 따른다.
- (2) 제1항에 의해 인가되는 콘체른결산서는 그것이 지침 84/253/EWG에 따라 인가된 결산검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은 때, 결산검사인이 당해 지침이 요구하는 바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동시에 콘체른결산서가 제3절의 요건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감사된 때에 한해 작성이 면제된다.

- (3) 또한 제1항에 의한 법규명령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동등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 유럽경제공동체의 비회원국내에 주소를 둔 지배회사의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가 각각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 및 제2항에 따라 동등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 결산검사인이 구비할 자격을 규정할 수도 있다. 단 이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와 본질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기타 회원국의 법률에 의한 것과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4) 법규명령은 공포전에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연방의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 또는 거부될 수도 있다. 연방의회의 결의는 연방법무장관에 전달된다. 법규명령을 공포할 때 연방법무장관은 이 결의에 구속된다. 연방의회가 법규명령을 수리한 후 회기의 3주 이내에 이를 심의하지 않은 때는 당해 법규명령은 변경되지 않으며, 연방법무장관에게 환송되어 공포된다. 연방의회는 필요한 수의 연방의회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하여 법규명령을 심의한다.

제 293 조 규모에 기초한 작성면제

- (1) 지배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면제된다.
1. 그 연도결산서의 결산일 현재 및 종전 결산일 현재 다음의 세가지 기준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때
 - a) 지배회사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대차대조표총액이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표시되는 결손액을 공제한 후 총액이 4,68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b) 지배회사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의 매출액이 결산일 전 12개월간 9,6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c) 지배회사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가 결산일 전 12개월간에 연평균 50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2. 지배회사가 작성해야 할 콘체른결산서의 결산일 현재 및 경과 연도의

결산일 현재 다음의 세가지 기준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할 때

- a) 대차대조표총액이 차변에 표시되는 결손액을 공제한 후 3,900만 독일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b) 매출액이 결산일 전 12개월간 8,0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c) 지배회사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에 결산일 전 12개월간에 연간평균 50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피용자의 평균수의 산출에 대해서는 제267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신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면제된다.

- 1. 그 연도결산서의 결산일 현재 및 종전 결산일 현재 그 대차대조표상의 대차대조표총액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대차대조표총액에 모든 기업의 신용차입금에 의해 결제되는 유통중의 자기앞어음, 배서에 의한 어음채무 및 보증채무, 은행어음보증, 수표보증 및 연대보증채무액을 가산한 금액이 총액으로 1억 3,2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때
- 2. 그것이 작성해야 할 콘체른결산서의 결산일 현재 및 종전 결산일 현재 콘체른대차대조표총액에 신용차입금에 의해 결제되는 유통중의 자기앞어음, 배서에 의한 어음채무 및 보증채무, 은행어음보증, 수표보증 및 연대보증채무액을 가산한 금액이 총액으로 1억 1,0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때

(3)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 1. 보험업무 전체로부터의 보험료수입총액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의 보험료수입총액이 결산일 전 및 종전 결산일 전 12개월간 각각 4,32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때
- 2. 보험회사가 작성해야 할 콘체른결산서에 보험업무 전체로부터의 보험

료수입총액 및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의 보험료수입총액이 결산일 전 및 전결산일 전 12개월간 각각 3,60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때.

보험업무 전체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총액이란 보험인수업무 및 재보험분담부분을 포함하는 재보험업무로부터의 보험료수입을 말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외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전제조건이 결산일 현재 또는 종전 결산일 현재에만 충족되고 동시에 지배회사가 전결산일 현재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된 때 지배회사는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 (5) 결산일 현재 주식 또는 지배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이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내의 증권거래소에서 정식거래를 허가받거나 규제하의 자유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식거래의 인가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 2 관 연결의 범위

제 294 조 편입되는 기업, 제시 및 설명의무

- (1) 지배회사와 모든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소에 관계없이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단 당해 편입이 제295조 및 제296조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구성이 영업년도중에 두드러지게 변화한 때에는 연속하는 콘체른결산서의 효율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재사항이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전년도의 콘체른결산서의 당해 금액을 그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부과할 수 있다.
- (3)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대해 당해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콘체른결

산서, 콘체른상태보고서 및 그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가 검사가 허용되는 때에는 감사보고서, 또한 중간결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때에는 콘체른 결산일에 작성된 결산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배회사는 각 종속회사에 대해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설명 및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95 조 편입금지

- (1) 종속회사로써 콘체른결산서의 편입이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의 전달의무에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그 활동이 기타 편입대상기업의 활동과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할 수 없다. 단 관계기업의 편입에 관한 제311조는 적용할 수 있다.
- (2)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이 공업, 상업 및 용역제공을 부분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당해기업이 다른 제품을 제조, 거래를 하거나 다른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 (3) 제1항의 적용은 이를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편입되지 않는 기업의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가 본법의 적용영역에서 公示되지 않을 때는 이를 콘체른결산서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6 조 편입의 포기

- (1) 종속회사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 중대하고 지속적인 제약이 당해 기업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지배회사의 권리행사를 장기에 걸쳐 저해할 때
 2.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지연을 수반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을 때
 3. 당해 종속회사의 지분이 주로 전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 (2) 종속회사로써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의 전달의무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할 필요가 없다. 복수의 종속회사가 제1문의 요건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기업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 때에는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관 콘체른결산서의 내용 및 형식

제 297 조 내 용

- (1) 콘체른결산서는 콘체른대차대조표, 콘체른손익계산서 및 콘체른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2) 콘체른결산서는 명료하고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동 결산서의 작성은 정규의 부기원칙을 준수하면서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제2문의 실질상태를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콘체른부속명세서에 추가기재를 한다.
- (3) 콘체른결산서에는 편입대상기업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당해 기업 전체가 단일기업인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경과 영업연도의 콘체른결산서에 적용한 연결방법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문과 다른 처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처리방법은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98 조 적용가능규정, 간편조치

- (1) 콘체른결산서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처리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음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도결산서에 관한 제244조 내지 제256조, 제265조, 제266조, 제268조 내지 제

275조, 제277조 내지 제283조 및 대규모자본회사에 적용되는 한, 본 법의 적용영역내에 주소를 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법률 형태 및 업종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 (2) 콘체른대차대조표의 항목분류 가운데 채고자산에 대해 그 소분류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때에는 이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 (3) 콘체른부속명세서와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인 부속명세서도 통합할 수 있다. 이때 콘체른결산서와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를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제1문의 적용시 감사보고서와 확인의 부기도 통합할 수 있다.

제 299 조 作成基準日

- (1) 콘체른결산서는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의 작성기준일, 또는 지배회사와 작성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또는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기준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단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다른 때에는 이를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는 콘체른결산서의 일부에 작성되는 것으로 한다. 기업의 결산일이 콘체른결산서의 기준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은 콘체른결산서 기준일 및 기간에 작성되는 중간결산서에 기초하여 콘체른결산서에 편입하여야 한다.
- (3) 결산일이 다른 기업이 콘체른결산서의 기준일 및 기간에 작성되는 중간결산서에 기초하여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지 않을 때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에 특히 중요한 사건으로 당해 기업의 결산일이 콘체른결산서의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것은 이를 콘체른대차대조표 및 콘체른손익계산서 또는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4 관 전부연결

제 300 조 연결원칙, 완전성명령

- (1)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는 콘체른결산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도결산서와 통합하여야 한다. 지배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대차대조표 계상 능력이 있고, 콘체른결산서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음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편입대상기업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에 갈음하여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이연항목, 대차대조표 보조항목 및 특별항목이 열거된다.
- (2)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이연항목과 수익 및 비용은 당해 기업의 연도결산서상의 그것들에 대한 고려에 관계없이 완전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단 지배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대차대조표 계상금지 또는 대차대조표 계상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지배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대차대조표 계상선택권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상의 행사에 관계없이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행사할 수 있다.

제 301 조 자본연결

- (1)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에 속하는 것의 계상가액은 종속회사의 자기자본 가운데 당해 지분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상쇄한다. 당해 자기자본은 다음의 어느 금액에 해당하든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1. 콘체른결산서에 수용할 자산, 부채, 이연항목, 대차대조표 보조항목 및 특별항목의 장부가액에 일치하는 금액
 2. 콘체른결산서에 수용할 자산, 부채, 이연항목, 대차대조표 보조항목 및 특별항목의 가치에 해당하고 제2항에 의한 상쇄계산을 위해 선택한 당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
- 제2문 제1호에 의한 장부가치로 계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각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계상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계상가액이 종전의 계상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문 제2호에 의한 가치로 계상할 경우에 당해 자기자본지분은 편입된 종속회사의 지분에 대한 지배회사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러한 적용방법은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상계제거는 계상가액 가운데 지분의 취득시점 또는 종속회사가 콘체른결산서에 최초로 編入되는 시점 또는 지분이 다른 시점에 취득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종속회사가 된 시점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선택시기는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 제2문 제2호에 의한 상계제거로 인한 차액 또는 제1항 제3문에 의한 증가기재 또는 상계제거 후의 잔액이 콘체른대차대조표 차변에 발생한 때에는 營業權 또는 商號權으로, 대변에 발생한 때에는 資本連結差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 항목 및 경과 영업연도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는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변의 차액을 차변의 차액과 상계할 경우에 상계액은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지배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 또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지분은 콘체른 대차대조표의 流動資產下에 自己持分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302 조 지분통합에 의한 자본연결

- (1) 지배회사로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분의 상계제거를 종속회사의 인허자본에 한정할 수 있다.
 1. 상계할 지분이 종속회사의 지분으로서 자기지분이 아닌 것의 액면금액의 90/100 이상이거나 액면금액이 없을 때에는 그 계산가치의 90/100 이상일 것
 2. 당해 지분이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지분발행을 정하고 있

는 협정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일 것

3. 당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지급액이 발행지분의 액면금액의 10/100을 초과하거나 액면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계산가치의 10/1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제1항의 차액으로 차변에 발생한 것은 이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대변에 발생한 것은 준비금에 가산한다.
- (3) 제1항에 의한 방법의 적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준비금의 변동과 기업의 명칭 및 주소는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303 조 채권채무연결

- (1)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간의 대여금 및 기타 채권, 총당금 및 채무와 이에 대응하는 이연항목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2) 제거할 금액이 콘체른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 304 조 내부성과의 처리

- (1) 콘체른결산서에 인계될 자산으로서 콘체른기업간에 이루어진 인도 또는 급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초하고 있는 것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이 법적으로 단일기업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콘체른결산일에 작성되는 당해 기업의 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는 기업에 의해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당해 인도 또는 급부가 통상의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상가액의 산출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1문의 적용은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콘체른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때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의한 내부성과의 처리가 콘체른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 305 조 비용수익연결

- (1) 콘체른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익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상계하여야 한다.
1. 매출액에 대해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간의 인도 및 급부로부터의 수입. 단 제품 및 미완성품 재고의 가격인상 또는 차변에 계상되는 기타 자기급부로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간의 인도 및 급부로부터의 기타 수익. 단 차변에 계상되는 기타 자기급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거되는 금액이 콘체른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때에는 비용 및 수익을 제1항에 따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제 306 조 조세의 기간구분

본법에 따른 조치에 기초하여 콘체른결산서에 표시되는 연도성과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개별성과의 총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영업년도 및 경과 영업년도에 발생하는 조세비용이 당해 연도성과에 비해 과도한 때에는 차변의 移延項目의 설정에 의하여, 또한 당해 연도성과에 비해 과소한 때에는 제249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총당금의 설정에 의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단 과도하거나 과소한 租稅費用이 장래의 영업년도에 평균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목은 콘체른 대차대조표 또는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274조에 의한 항목과 통합할 수도 있다.

제 307 조 기타 사원의 지분

- (1) 콘체른 대차대조표에서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 사원의 지분에 대한 조정항목이 자기자본에 대한 당해 지분의 크기로 적당한 명칭을 붙여 자기자본내에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조정항목에는

제301조 제1항 제2문 제2호에 의한 자본연결방법의 적용에 따라 자기자본에 대한 기타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산입하여야 한다.

- (2) 콘체른 손익계산서에서는 연도성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 사원에 귀속하는 이익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적당한 명칭을 붙여 「연도잉여액/연도결손액」항목 후단에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관 평가규정

제 308 조 통일적 평가

- (1)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제300조 제2항에 의해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되는 것은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에 적용가능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배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평가선택권은 콘체른결산서에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에서 선택권을 행사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지배회사의 연도결산서에 적용한 평가방법과 다른 처리방법은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로 콘체른결산서에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해 기업의 연도결산서에 있어 콘체른결산서에 적용하여야 하는 방법 또는 지배회사의 법정대표자에 의한 평가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콘체른결산서에 적용되는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경우에 이 다른 평가를 받은 자산 또는 부채는 콘체른결산서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새로이 평가하고, 이 새로운 평가액으로 콘체른결산서에 기재한다.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용기관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에 기초하는 평가액은 계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단 당해 예외의 적용에 기초하는 평가액은 계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단 당해 예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문에 의한 통일적 평가로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기

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콘체른결산서에 포함할 자산 또는 부채는,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연도결산서에 세법상의 과세소득 산정시 세법에서만 인정하는 가치를 계상하지 않으면 계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가치로 계산된 경우 또는 그로 인해 대변에 특별항목이 설정된 경우에 당해 계상가액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승계할 수 있다. 제1문에 의해 연도결산서 상의 당해 영업년도의 감가상각, 가치수정 및 특별항목편입의 금액과 장부가액의 인상증지액은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조치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309 조 차액처리

- (1) 제301조 제3항에 의해 표시할 영업권 또는 상호권은 다음 연도 이후의 각 영업년도에 적어도 그 1/4을 상각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영업권 또는 상호권의 감가상각액은 그 이용이 예상되는 영업년도에 걸쳐 이를 계획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영업권 또는 상호권은 이를 대차대조표에 명시하여 준비금과 상계할 수도 있다.
- (2) 제301조 제3항에 의해 대변에 표시할 차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還入할 수 있다.
1. 지분의 취득 또는 최초의 연결시점에 예상된 기업의 장래수익상태가 악화된 때 또는 당해 시점에서 예상비용이 인식되어야 하는 때
 2. 실현이익에 대응하고 있음이 결산일 현재 확정된 때

제 6 관 비례연결

제 310 조

- (1)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지 않는 하나 또는 수개의 기업과 공동으로 다른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타기업을 지배회사에 속하는 자본금지분비율에 따라 콘체른결산서에 편입할 수 있다.

- (2) 이 지분비율에 따른 연결에 대해서는 제297조 내지 제301조, 제303조 내지 제306조, 제308조, 제30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 7 관 관계기업

제 311 조 정의, 적용면제

- (1) 콘체른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이 제271조 제1항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있는 편입 대상기업의 영업 및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관계기업), 당해 자본참가는 콘체른대차대조표에 적당한 명칭을 붙인 별도항목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한 때에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관계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로 당해 자본참가가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 및 제312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 312 조 자본참가의 계상가액 및 차액처리

- (1) 관계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의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장부가액
 2. 당해 관계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비율상당액

제1문 제1호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때, 당해 장부가액과 최초적용시의 관계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과의 차액은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註記하거나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문 제2호에 의한 自己資本의 지분비율상당액으로 계상할 경우

에 자기자본은 관계기업의 자산, 부채, 이연항목, 대차대조표 보조항목 및 특별항목을 제3항에 따라 선택한 시점의 가치로 계상할 때 발생하는 금액에 의해 계상하여야 한다. 단 이 금액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당해 계상가액과 자본참가시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최초 적용시에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구별하여 표시하거나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용방법은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 제2문에 의한 차액이 종래 계상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는 관계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계상가액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1문에 의해 배부되는 금액, 또는 제1항 제1문 제2호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은 관계기업의 연도결산서상의 당해 자산 및 당해 부채의 계상가액처리에 일치하여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移越하고 감가상각을 하거나 還入하여야 한다. 제1문에 의한 배부 후의 차액 및 제1항 제3문 후단에 의한 차액에 대해서는 제30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 (3) 당해 자본참가의 계상가액 및 당해 투자제거차액은 지분의 취득 또는 관계기업의 콘체른결산서에 최초 편입시점의 계상가액 또는 다른 시점에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기업이 관계기업이 된 시점의 계상가액에 기초하여 이를 산출한다. 이때 선택한 시점은 콘체른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의해 산출된 자본참가의 계상가액은 다음 연도 이후에 관계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에 속하는 지분에 따른 자기 자본변동액만큼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자본참가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는 콘체른 손익계산서에 별개의 항목 아래 표시하여야 한다.
- (5) 관계기업이 콘체른결산서와 다른 평가방법을 그 연도결산서에 적용할 경우에 그에 기초하여 평가한 자산 또는 부채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목적을 위해 콘체른결산서에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당해 평가를 적절히 수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뜻을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내부성과의 처리에 관한 제304조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당해 내부성과는 관계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지배회사에 속하는 지분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제거할 수 있다.

- (6) 관계기업의 최근 연도결산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기업이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그의 개별결산서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제 8 관 콘체른부속명세서

제 313 조 콘체른 대차대조표 및 콘체른 손익계산서의 설명, 자본참가소유에 관한 기재

- (1) 콘체른 부속명세서에는 콘체른 대차대조표 또는 콘체른 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콘체른 대차대조표 또는 콘체른 손익계산서에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콘체른 부속명세서에는
1. 콘체른 대차대조표 및 콘체른 손익계산서의 항목에 적용한 대차대조표계상방법 및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2. 콘체른결산서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 또는 당초 외국통화로 표시한 금액을 기초로 하는 항목을 포함할 경우에 한하며, 독일 마르크貨로의 환산기초를 기재하며
 3. 대차대조표 계상방법, 평가방법 및 연결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콘체른의 재산, 채무 및 손익상태에 미칠 영향은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2) 그리고 콘체른 부속명세서에는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종속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 및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종속회사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기업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해야 할 사항으로 당해 편입이 자본참가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에 기초하지 않는 것. 제295조 및 제296조에 따라 비편입 종속회사도 이러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2. 관계기업의 명칭 및 주소, 종속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 및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종속회사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기업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것. 제31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10조에 의해 지분비율에 따라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기업의 명칭 및 주소, 당해 규정을 적용하게 한 사유 및 당해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 및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종속회사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기업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열거하는 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지배회사, 종속회사 또는 이들 기업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가 그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작성한 최근 영업년도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과 자기자본 및 성과액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명칭 및 주소.

당해 사항이 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피투자기업이 그 연도결산서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 또한 그 지배회사, 종속회사 또는 그 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의 1/2 미만을 소유할 때에는 자기자본 및 성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3) 제2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그 기재에 의해 지배회사, 종속회사 또는 제2항에서 열거하는 기타 기업에 대해 상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뜻을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당해 부속명세서 대신 소유지분명세서에 구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명세서는 부속명세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때 소유지분명세서를 작성한 뜻 및 그 보관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 314 조 기타 기재의무

- (1) 콘체른 부속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총액. 콘체른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채무로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에 의해 質權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를 통하여 담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담보의 종류, 형태 및 총액.
2. 기타 금전채무로 콘체른 대차대조표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 또는 제 251조와의 관련에서 제298조 제1항에 의한 비기재채무 가운데 당해 사항의 기재가 콘체른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경우에 그 총액.
단 그 중 및 제251조에 의한 채무관계 가운데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는 각각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활동영역별 및 지리적을 한정된 시장별 매출액으로 통상의 콘체른의 영업활동에 전형적인 제품 및 용역에 관한 판매조직을 고려한 때, 활동영역과 지리적으로 한정된 시장이 서로 명백하게 다른 것에 한해 그 분류.
4.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영업년도중 집단별 평균 종업원수, 콘체른 손익계산서에 구별되어 표시되지 않는 한 영업년도중에 발생한 인건비. 단 제310조에 의해 지분비율만으로 편입된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자산에 대해 당해 또는 경과 영업년도에 제254조, 제280조 제2항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여 세법규정에 기초한 감가상각을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거나 제273조에 따라 또는 이를 준용하여 특별항목을 설정

함으로써 콘체른의 연도성과가 영향을 받은 정도. 나아가 당해 평가로부터 콘체른에 대해 발생하는 장래의 현저한 부담.

6. 지배회사의 업무집행기관, 감사회, 고문회 또는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인원구성별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
 - a) 영업년도내에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서 그 직무수행에 대해 부여된 급여총액(급료, 이익분배액, 경비보상액, 보험급부액, 수수료 및 각종의 부수되는 급부). 당해 급여총액에는拂出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청구권으로 변환되는 것 또는 다른 청구권을 증액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산입하여야 한다. 영업년도에 관한 급여 외에 영업년도 중에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체른 결산서에는 종래 기재되지 않았던 기타 급부도 역시 기재하여야 한다.
 - b)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서 그 직무수행에 대해 상기 기관의 舊구성원 및 그 유족에 제공된 급여총액(퇴직일시금, 은급, 유족에 대한 급여 및 이에 유사한 급부). 이 경우에는 a) 제2문 및 제3문이 준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기의 연금 및 연금기대권에 대한 총당금으로 당해 단체를 위해 설정한 금액 및 당해 채무를 위해 총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c)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의해 제공된 선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주요조건 및 영업년도중의 변제예상액의 기재, 그리고 당해 단체를 위해 인수한 채무보증관계.
 7. 지배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 또는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의 계산으로 기타의 자가 취득하거나 질취한 것의 보유. 단 이 경우에는 당해 지분의 수 및 액면금액과 자본금에서 점하는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 (2) 매출액은 그 세분류에 의해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되는 기업에 대해 상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예외적용에 대해서는 그 뜻을 콘체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관 콘체른 상태보고서

제 315 조

- (1) 콘체른 상태보고서에는 실질적 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 콘체른의 영업경과 및 상태가 기재되어야 한다.
- (2) 콘체른 상태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콘체른 영업년도의 종료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
 2. 콘체른의 발전전망
 3. 콘체른의 연구 및 개발의 영역
- (3) 콘체른 부속명세서와 부속명세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298조 제3항이 준용되어야 한다.

제 3 절 감 사

제 316 조 감사의 의무

- (1) 제267조 제1항의 소규모자본회사가 아닌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는 결산검사인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가 없으면 연도결산서를 확정할 수 없다.
- (2) 자본회사의 콘체른결산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는 결산검사인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보고서의 제출후 연도결산서, 콘체른 결산서, 상태보고서 또는 콘체른 상태보고서를 변경한 경우에 결산검사인은 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이들 증거서류를 다시 감사하여서는 안된다. 결산검사인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확인의 부기에서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17 조 감사의 대상 및 범위

- (1) 연도결산서의 감사에는 장부기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 결산서의 감사는 법률규정 및 이를 보완하는 회사계약 또는 정관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 상태보고서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는 상태보고서가 연도결산서와 일치하고, 콘체른 상태보고서가 콘체른 결산서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또한 상태보고서의 기타 기재사항이 기업상태에 대해 콘체른 상태보고서의 기타 기재사항이 콘체른 상태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하여야 한다.
- (2) 콘체른 결산서의 결산검사인은 콘체른 결산서에 통합된 각 연도결산서가 정규의 부기원칙에 일치하는가와 각 연도결산서를 콘체른 결산서에 이전하는데 기준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이는 본장에 기초하여 감사된 연도결산서 또는 법률상의 의무없이 본장의 원칙에 따라 감사된 연도결산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외국에 주소를 두고있는 종속회사의 연도결산서에 대하여 제2문을 준용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결산서가 유럽경제공동체지침 제84/253호의 규정과 일치함으로써 인가된 결산검사인에 의해 감사되지 않았을 때 이 결산검사인이 유럽경제공동체지침의 요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연도결산서가 본장의 요건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감사된 경우에 한해 제2문이 적용된다.

제 318 조 결산검사인의 선임과 해임

- (1) 연도결산서의 결산검사인은 社員에 의해 선출된다. 콘체른 결산서의 결산검사인은 지배회사의 사원이 선출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회사계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결산검사인은 그 감사활동이 미치는 영업년도가 종료하기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선임된 법정대표자는 지체없이 감사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다른 검사인이 선임될 경우에만 감사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 (2) 다른 검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된 지배 회사의 연도결산서의 감사를 위해 선임된 검사인이 콘체른 결산서의 결산검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중간결산서에 기초하여 연도결산서를 콘체른 결산서에 편입할 때 다른 검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콘체른 결산일 전에 작성된 지배회사의 최근 연도결산서의 감사를 위해 선임된 검사인이 중간결산서에 기초하는 콘체른 결산서의 검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3) 법정대표자, 감사회, 또는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지분이 원천자본금의 1/10 또는 액면금액이 2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경우에 사원의 신청에 의해 선출된 검사인의 인격을 연유로 하여 다른 결산검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때 법원은 관계인 및 선출된 검사인을 심문한 후 다른 결산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사원의 신청은 결산검사인의 선출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한다. 주주는 의결시 결산검사인의 선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주주에 의한 신청시 주주는 적어도 총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명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선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회사가 국가의 감독하에 있을 때는 감독관청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4) 결산검사인이 영업년도 종료시까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대표자, 감사회 또는 사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산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출된 검사인이 감사의 위임승락을 거부한 때, 감사불능이 된 때, 또는 적정한 기간의 감사이행이 저해되고 다른 결산검사인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동일하다. 법정대표자는 선임신청의무를 지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결산검사인의 선임은 취소할 수 없다.
- (5)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인은 활동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법원도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재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력을 갖는 결정으로 민사소송

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6) 결산검사인에 의해 승락된 감사의 위임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약고지를 할 수 있다. 확인 부기의 내용에 관한 의견의 상위, 확인의 부기에 대한 한정 또는 거절의견은 중대한 이유로 볼 수 없다. 해약고지는 서면에 의해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그때까지 한 감사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제321조가 준용된다.
- (7) 결산검사인이 제6항에 의해 감사의 위임을 해약고지할 경우에 법정대표자는 감사회, 총회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에 대해 해약고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는 해약고지를 한 결산검사인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회의 구성원은 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회가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고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 319 조 결산검사인의 선출

- (1) 결산검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경제검사인 및 경제감사회사이다. 선서장부검사인과 장부감사회사도 중규모의 유한회사(제267조 제2항)의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의 결산검사인이 될 수 있다.
- (2) 경제검사인 또는 선서장부 검사인은 자신 또는 자신과 그 직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다.
1. 피감사 자본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2. 피감사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 감사회 구성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선임전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 재임하였던 때
 3. 법인, 인적회사, 개인기업이 피감사 자본회사와 결합하고 있을 경우, 또는 당해 법인, 인적회사, 개인기업이 피감사 자본회사의 20/100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당해 법인의 법정대표자 또는 감사회 구성원, 당해 인적회사의 사원, 당해 개인기업의 소유자일 때
 4. 피감사 자본회사와 결합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 또는 피감사 자본회

사의 20/100을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 또는 피감사 자본회사의 20/100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의 피용자일 때

5. 피감사 자본회사의 장부기장 또는 연도결산서의 작성시 감사활동을 넘어서 협력한 때
6. 법인, 자연인, 인적회사, 인적회사의 사원 가운데 1인, 또는 개인기업이 제5호에 의해 피감사 자본회사의 결산검사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당해 법인, 자연인, 인적회사의 법정대표자, 종업원, 감사회 구성원 또는 사원이거나 당해 개인기업의 소유주일 때
7. 감사시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해 결산검사인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
8. 최근 5년간 각 연도에 피감사 자본회사와 피감사 자본회사가 20/100을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와 자문수입이 그 직무로 인한 수입총액의 1/2를 초과하고, 그 계속이 예상되는때. 단 불이익이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경제검사인회의소는 기한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다.

1.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가 피감사 자본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감사 자본회사의 피감사 자본회사와 결합하고 있을 때, 또는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와 결합관계에 있는 기업이 피감사 자본회사의 20/100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감사 자본회사와 결합하고 있을 때
2.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가 제2항 제6호에 의한 법인 또는 인적회사의 사원이거나 제2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해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을 때
3.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정대표자의 1인 또는 사원이 가지는 의결권의 50/100 또는 이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사원의 1인 또는 기타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

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1인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해 결산
검사인이 될 수 없을 때

4.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의 법정대표자의 1인 또는 사원 가운데
1인이 제2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해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을 때

5. 경제감사회사 또는 장부감사회사의 감사회 구성원 중 1인이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해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을 때

(4) 제2항 및 제3항은 콘체른 결산서의 결산검사인에 준용한다.

제 320 조 제시의무, 설명청구권

(1)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
체없이 결산검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결
산검사인이 자본회사의 장부 및 서류 및 자산 및 부채, 특히 현금과
유가증권 및 상품의 재고를 감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결산검사인은 면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설명 및 증빙서류를 법
정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산감사의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산검사인은 연도결산서의 작성전이라도 제1항 제2문 및 제1문에 의
한 권리가 있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산검사인
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제1문 및 제2문에 의한 권리가
있다.

(3) 콘체른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콘체른
결산서의 결산검사인에게 콘체른 결산서, 콘체른 상태보고서, 연도결
산서, 상태보고서, 및 감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의 감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지배회사 및 종속회
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2문 및 제2항에 의해 또한 지배회사 및 종속
회사의 결산검사인에 대해서도 제2항에 의한 권리가 있다.

제 321 조 감사보고서

(1) 결산검사인은 감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

고서에 장부기장,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콘체른 결산서 및 콘체른 상태보고서가 법률규정에 일치하는가의 여부 및 법정대표자가 청구한 설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의 항목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경과 영업연도에 대한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의 불리한 변경과 연도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손실은 이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2) 결산검사인이 직무수행시 피감사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 또는 그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만 한 사실, 또는 법률,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 대한 법정대표자의 중대한 위반을 인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결산검사인은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결산검사인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법정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2 조 確認의 附記

- (1) 감사의 최종결과에 기초하여 이의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결산검사인은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 결산서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우리의 의무에 기초한 감사에 따르면 이 장부기장 및 연도결산서/콘체른 결산서는 법률규정에 일치하고 있다. 이 연도결산서/콘체른 결산서는 정규의 부기원칙을 준수하면서 자본회사/콘체른의 재산, 재무 및 손익상태를 전달하고 있다. 상태보고서/콘체른 상태보고서는 연도결산서/콘체른 결산서와 일치하고 있다.」

- (2) 감사의 내용 및 확인의 부기의 효력에 대한 오인을 피하기 위해 보충적인 주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때 확인의 부기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계약 또는 정관이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 결산서에서 인정한 방법으로 보충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계약 또는 정관과의 일치가 지시되어야 한다.
- (3) 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때 결산검사인은 한정 또는 거절에 대한 확인

의 부기를 하여야 한다. 거절은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 결산서에 부기함으로써 표시하며, 한정 및 거절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한정의견은 그 효력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확인의 부기의 보충은 한정의견으로 볼 수 없다.

- (4) 결산검사인은 確認의 附記 또는 그 거절에 관한 附記에 場所 및 日字를 명기한 뒤 서명하여야 한다. 확인의 부기 또는 그 거절에 관한 부기는 감사보고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23 조 決算檢查人の 책임

- (1) 결산검사인, 그의 보조인 및 감사시 협력의무를 지는 감사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양심적이고 공평한 감사와 묵비의무를 진다. 이들은 감사활동중 지득한 영업 및 경영상의 秘密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故意 또는 過失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자본회사에 대해, 결합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합기업에 대해 損害賠償義務를 진다. 복수의 자는 連帶責任을 진다.
- (2) 過失行爲者の 賠償義務는 1건의 감사에 대해 50만 독일 마르크로 한정된다. 복수의 자가 감사를 한 때 또는 배상의무가 있는 수개의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하다. 다른 관계인이 故意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3) 監査會社가 결산검사인인 때 監査會社の 監事會와 그 구성원도 묵비의무를 부담한다.
- (4) 이상의 賠償義務는 계약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5) 위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5년의 時效로 소멸한다.

제 324 조 자본회사와 결산검사인의 의견 상위

- (1) 결산검사인과 자본회사 사이에 연도결산서, 상대보고서, 콘체른 결산서 또는 콘체른 상대보고서에 관한 법률규정과 회사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 결산검사인 또는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신청으로 地方法院이 결정한다.

- (2) 이 절차에는 非訟事件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은 이 유를 붙인 決定으로 재판한다. 지방법원은 그에 의해 중요한 법률문제 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即時抗告를 허가하여야 한다. 抗告는 辯護士가 서명한 抗告帳의 제출에 의한다. 上級地方法院이 이 抗告에 대해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再抗告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州政府는 통일적 재판을 보장하는데 유용한 법규명령에 의해 복수의 상급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 대한 항고에 관한 決定을 상급지방법원 또는 주최고법원중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해 수권을 州法務省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절차비용에 대해서는 費用法이 적용된다. 제1심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총액의 2배를 징수하며, 제2심에서도 동액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抗告가 인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판 전에 申請 또는 抗告가 철회된 경우에는 手數料를 반액으로 감액한다. 수수료 가액은 職權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수료 가액은 費用法 제30조 제2항에 기초하여 정한다. 결산검사인은 費用의 先給義務를 지며, 그 부담은 자본회사가 한다. 단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決算檢査人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4 절 公示(등기소에 대한 제출, 聯邦公報에 의한 공고), 公表 및 複製, 등기법원에 의한 검사

제 325 조 公 示

- (1)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연도결산서를 社員에 제시한 후 지체없이, 늦어도 결산일에 계속되는 영업년도가 9개월을 경과하기 전 확인의 부기 또는 거절에 관한 부기를 붙여 자본회사의 주소지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태보고서, 감사회의 보고서 및 성과처분에 관한 의안과 그 처분에 관한 결의가 제출된 연도결산서로부터 명확하

지 않는 한, 성과처분에 관한 의안과 결의를 연도잉여액 또는 연도결손액을 기재한 뒤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는 제1문에서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지체없이 당해 서류를 제출한 商業登記所와 登錄番號를 연방공보에 公告하여야 한다. 제1문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에 보고서 및 의안은 그 제시 후, 결의는 의결 후, 부기는 교부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제출후의 감사사나 확정시 변경될 경우에 이 변경도 또한 제1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 (2) 제1항은 대자본회사(제26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가 연방공보에 공고되어야 하고, 이어 공고가 상기 서류를 첨부한 뒤에 당해 자본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1항 제2문에 의한 公告는 필요하지 않다. 所有持分明細書(제287조)는 연방공보에 공고할 필요가 없다.
- (3) 콘체른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본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콘체른 결산서를 사원에 제시한 후 지체없이, 늦어도 콘체른 결산일에 계속되는 영업년도가 9월을 경과하기 전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附記를 붙여 콘체른상태보고서와 함께 연방공보에 公告하고, 그 공고를 상기서류를 첨부한 뒤 당해 자본회사의 주소지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所有持分明細書(제313조 제4항)는 연방공보에 공고할 필요가 없다. 이때 제1항 제3문이 준용된다.
- (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 제1문 및 제3항 제1문에 의한 기간의 준수에 대해서는 당해 서류를 연방공보에 제출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 (5) 법률,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 기초하여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콘체른결산서 또는 콘체른상태보고서를 다른 방법으로 공고, 제출 또는 일반의 열람해야 하는 會社의 義務는 계속된다.

제 326 조 공시에 있어서 소규모자본회사에 대한 규모에 따른 약식절차

소규모자본회사(제267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정대표자가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만을 늦어도 대차대조표일 이후 계속되는 영업년도가 12월을 경과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32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연도성과, 성과처분에 관한 의안, 그 처분에 관한 결의가 제출된 대차대조표 또는 제출된 부속명세서로부터 명확하지 않는 한에서 성과의 처분에 관한 議案과 기타 處分에 관한 결의도 또한 연도성과를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附屬明細書는 손익계산서에 관계되는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제 327 조 공시에 있어서 중규모자본회사에 대한 규모에 따른 약식절차

중규모자본회사(제267조 제2항)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붙여 제325조 제1항이 적용된다.

1. 법정대표자는 제266조 제1항 제3문에 의해 소규모자본회사에 대해 규정한 형식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의 항목 가운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은 특히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차별

A I 2 영업권 또는 상호권

A II 1 부동산, 부동산에 유사한 권리 및 타인의 부동산상의 건물을 포함하는 건물

A II 2 기술적 설비 및 기계

A II 3 기타 설비, 공장용 및 영업용기계

A II 4 선급금 및 건설중의 설비

A III 1 결합기업에 대한 지분

A III 2 결합기업에 대한 대부금

A III 3 자본참가

A III 4 자본참가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여금

BII2 결합기업에 대한 채권
 BII3 자본참가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
 BIII1 결합기업에 대한 지부
 BIII2 자기지분

대변

C1 사채

(내) 전환사채

C2 신용기관에 대한 채무

C6 결합기업에 대한 채무

C7 자본참가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채무

2. 법정대표자는 제285조 제2호, 제5호 및 제8호 a), 제12호에 의한 기재사항을 제외한 부속명세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28 조 공시, 공표 및 복제시 書類의 형식 및 내용

- (1)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결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시시 또는 회사계약이나 정관에 기초하는 다른 형식으로 공표 또는 복제시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결산서 및 콘체른결산서는 제326조, 제327조에 의한 略式節次가 이용되지 않는 한 그 작성에 기준이 되는 규정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결산검사인이 법규정에 기초하여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를 감사한 때에는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附記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연도결산서의 일부만 공시되거나 확인의 부기가 완전한 연도결산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한 그 공시에 관한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監査 또는 確認에 앞서 공시되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수반하지 않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

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2)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가 법률, 회사계약 또는 정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공표 및 복제에 있어 제1항에 따라 기술되지 않은 때에는 법률상의 형식에 일치하는 공표가 아니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하며, 확인의 부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법률상의 규정에 기초하여 결산검사인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결산검사인은 법률상의 형식으로 작성된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에 대해 확인한 뜻 또는 그 확인을 한정 또는 거절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 후 공시가 이루어진 상업등기소와 연방공보번호 및 공시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제1항 제1호는 상태보고서, 콘체른상태보고서, 성과처분에 관한 의안 및 그 처분에 관한 결의와 함께 所有持分明細書에 준용된다. 제1문에서 열거하는 서류가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에 동시에 公示되지 않은 경우 사후 공시시의 관련 결산서 및 공시수단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絕에 관한 附記의 사후적 공시에도 적용된다.

제 329 조 登記法院의 檢査義務

- (1) 등기법원은 상업등기소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출할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규정이 있는 경우 공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의해 자본회사의 규모에 기초하는 약식절차를 이용하는데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본 법원은 적당한 기간내에 매출액(제277조 제1항) 및 평균종업원수(제267조 제5항)에 관한 報告를 당해 자본회사가 통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자본회사가 이 기간내에 보고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약식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 5 절 양식규정 및 기타 규정에 관한 法規命令授權

제 330 조

연방법무장관은 연방재무장관 및 연방경제장관과 협의한 뒤 연방참의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명령에 의해 자본회사에 대해 연도결산서의 양식을 규정할 권한, 또는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의 항목분류, 부속명세서의 내용, 콘체른부속명세서의 내용, 상태보고서의 내용 또는 콘체른상태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기타 규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다. 단, 업종이 제266조, 제275조와 다른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의 항목분류를 필요로 하거나 제1장과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한다. 이 다른 규정에 의해 생기는 요구로 제1문에서 열거하는 서류에 대한 것은 대자본회사(제267조 제3항)에 대해 제1장, 제21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과 당해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상기는 요구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현행법을 넘어서는 요구는 그것이 구주공동체이사회에 법조항에 기초하는 한 이를 할 수 있다.

제 6 절 형벌과 과태료

제 331 조 허위기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자본회사의 理事 또는 監事로서 자본회사의 개업대차대조표,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에 회사의 제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은닉한 자.
2. 자본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콘체른관계를 콘체른결산서 또는 콘체른상태보고서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은닉한 자
3. 자본회사의 理事로서 제291조 또는 제292조에 의한 콘체른규정의 면제를 목적으로 콘체른결산서 또는 콘체른상태보고서에 故意 또는 過失로 콘체른의 제관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닉한 자
4. 자본회사의 이사 또는 그의 종속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서 상법 제320조에 따라 자본회사 또는 결합기업 또는 콘체른의 결산검사인에게 해야 하는 說明 또는 證明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은닉한 자

제 332 조 報告義務違反

- (1) 결산검사인 또는 그의 보조인으로 자본회사의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콘체른결산서 또는 콘체른상태보고서의 감사결과에 대해 허위의 보고를 하고 감사보고서(제321조)에 중요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내용의 확인의 부기(제322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위 행위를 報酬를 받고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 이익 또는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333 조 黙秘義務違反

- (1)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의 감사시 결산검사인 또는 결산검사인의 보조인으로서의 자격에서 알게 된 자본회사, 종속회사(제290조 제1항, 제2항), 공동경영기업(제310조) 또는 관계기업(제311조)의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없이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위 행위를 보수를 받고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 이익 또는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없이 換價한 자도 같다.
- (3) 이상의 행위에 대한 訴追는 자본회사의 告訴에 의한다.

제 334 조 過怠料規定

- (1) 자본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질서

위반으로 본다.

1. 연도결산서의 작성 또는 확정시

- a) 형식 또는 내용에 관한 제24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3항, 제250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항, 제251조 또는 제264조 제2항,
- b) 평가에 관한 제25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 제2문 또는 제2문과 결합한 제253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항 제1문, 제2문 또는 제3문, 제253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2문, 제280조 제1항, 제282조 또는 제283조,
- c) 항목분류에 관한 제26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 제266조, 제26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1항, 제275조 또는 제277조,
- d)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명세서에 해야 하는 기재에 관한 제280조 제3항, 제281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3문 또는 제2항 제1문, 제284조 또는 제285조의 규정,

2.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시

- a) 연결범위에 관한 제294조 제1항,
- b) 내용 또는 형식에 관한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3항, 제250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항 또는 제251조와 결합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298조 제1항,
- c) 연결원칙 또는 완전성명령에 관한 제300조,
- d) 평가에 관한 제1호 b)에서 열거하는 규정과 관련한 제308조 제1항 제1문 또는 308조 제2항,
- e) 관계기업에 대한 제312조 및 제311조 제1항 제1문,
- f) 부속명세서에 해야 하는 기재에 고가한 제308조 제1항 제3문, 제313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

3. 상태보고서 작성시 상태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제289조 제1항의 규정,

4.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시 콘체른상태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제315조 제1항의 규정,
 5. 공시, 공표 또는 복제시 형식 또는 내용에 관한 제328조의 규정,
 6. 제330조 제1문에 기초하여 발한 법규명령. 단 그것이 특정 사실에 대해 당해 과태료규정의 적용을 지시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 (2) 법률규정에 따른 감사의무대상인 연도결산서 또는 콘체른결산서에 대해 제319조 제2항에서 정한 자 또는 제319조 제3항에 의해 그가 근무하고 있는 경제감사회사나 장부감사회사가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22조에 의한 부기를 한 자도 질서위반으로 본다.
- (3) 질서위반은 50,000 독일 마르크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335 조 強制金の 확정

자본회사의 이사로 다음 각호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登記法院이 非訟事件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에 의한 강제금의 확정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1.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에 관한 제242조 제1항 및 제2항, 제264조 제1항
2.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에 관한 제290조 제1항 및 제2항
3. 신속한 監査委任狀의 교부의무에 관한 제318조 제1항 제4문
4. 법원에 의한 결산검사인 임명신청의무에 관한 제318조 제4항 제3문
5. 결산검사인의 의무에 대한 제320조
6.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콘체른결산서, 콘체른상태보고서 및 기타 계산서류의 公示義務에 관한 제325조

단 登記法院이 제소하는 때는 사원, 채권자 또는 전체 事業場委員會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자본회사의 사업장위원회가 제1문에 관한 고소를 한 때 한한다. 이때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체른결산서 및 콘체른상태보고서에 관한 의무가 없을 때는 종속회

사의 사원, 채권자 및 콘체른 事業場委員會도 제2문에 의한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권은 소명되어야 하며, 告訴는 取下할 수 없다. 법원은 강제금의 경고 및 확정외 반복을 보류할 수 있다. 각각의 강제금은 10.000 독일 마르크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登記協同組合에 관한 보충규정

제 336 조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의 작성의무

- (1)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附屬明細書를 추가함으로써 연도결산서(제242조)를 확정하고,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표와 일체를 이룬다. 경과 영업년도에 관한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는 영업년도의 최초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 (2) 다음 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264조 제2항, 제265조 내지 제289조가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에 준용된다. 단, 제277조 제3항 제1문,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항 제1문, 제285조 제5호, 제6호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 (3) 이때 法規命令에 관한 제330조가 준용된다.

제 337 조 貸借對照表에 관한 규정

- (1) 인허자본금에 갈음하여 조합원지분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때 영업년도의 종료와 함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금액은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조합원지분에 대한 미납입금이 대차대조표에 조합원지분으로 표시될 경우에 당해 금액은 「조합원지분에 대한 미납입금」이라는 명칭으로 차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미납입금이 조합원지분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금액은 「조합원지분」항목 아래 註記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상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2) 이익준비금에 갈음하여 성과준비금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1. 법정준비금
 2. 기타 성과준비금, 단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기초하는 성과준비금 및 탈퇴조합원에 대해 당해 성과준비금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주기하여야 한다.
- (3) 성과준비금에 대해 다음 금액은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가 前年度의 대차대조표이익으로부터 계상한 금액
 2. 당해 영업년도의 연도잉여액으로부터 계상되는 금액
 3. 당해 영업년도에 대해 인출되는 금액

제 338 조 附屬明細書에 관한 규정

- (1) 부속명세서에는 영업년도중 가입 또는 탈퇴한 組舍員과 당해 영업년도에 협동조합의 組舍員數에 관한 기재도 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해연도의 組舍員持分과 책임금액의 증감총액 및 영업연도말 현재 조합원 전원이 부담하는 책임금액도 기재하여야 한다.
- (2) 부속명세서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이 소속하는 소관 監查團體의 명칭과 주소
 2. 모든 이사 및 감사 가운데 영업년도중이나 후에 퇴임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의 성 및 최소한의 이름, 감사회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 (3) 협동조합은 제285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機關의 구성원에 대해 주어진 報酬, 선급금 및 대여금에 관한 기재사항에 같음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채권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당해 채권금액은 각 기관에 대해 합계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39 조 公 示

- (1) 이사회는 결산총회 후 지체없이 확정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협동조합의 주소지 관할 협동조합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의 부기의 교부가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해 규

- 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연도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단체가 연도결산서의 확인을 거절한 때는 제출되는 연도결산서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감사단체는 이 부기에 대해 서명한다. 연도결산서의 감사가 제1문에 의한 서류제출시까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附記는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되어야 한다. 연도결산서 또는 상태보고서가 제출 후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267조 제3항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연도결산에 관한 총회 후 지체없이 확정 연도결산서를 확인의 부기와 함께 공고하고, 그 공고를 당해 협동조합의 주소지관할 협동조합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의 감사가 총회종료시까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 제1문에 의한 公告는 감사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한다.
- (3) 제326조 내지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는 公示에 있어서는 규모에 기초한 略式節次規定, 공시·공표 및 복제에 있어서 서류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및 登記法院의 檢査義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칙

제 343 조 상행위의 의의

- (1) 상행위라 함은 상인의 행위로서 그의 상업의 경영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2)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는 상인이 통상 다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의 경영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도 상행위이다.

제 344 조 상행위의 추정

- (1) 상인이 한 법률행위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영업의 경영에 속하

는 것으로 본다.

- (2) 상인이 서명한 채무증서는 그 증서에 의한 다른 정함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그의 상업의 경영에서 서명된 것으로 본다.

제 345 조 일방적 상행위

양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상행위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6 조 상관습

상인간에는 행위 및 부작위의 의의 및 효과에 관하여는 상거래에서 행해지는 관습 및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47 조 보통의 상인의 주의의무

- (1) 자기를 위하여 상행위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보통의 상인으로서의 주의를 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채무자가 일정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거나 자기의 사무에 대하여 하는 주의를 하는 데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의 규정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 348 조 위약금

상인이 그의 상업의 경영에 있어서 약속한 위약금은 민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수 없다.

제 349 조 검색의 항변

보증인 보증인에 대해서 상행위인 때에는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신용의 위임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도 같다.

제 350 조 방식의 자유

보증, 채무의 약속 또는 채무의 승인에는 그 보증이 보증인에 대하여 또 그 약속 또는 승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상행위인 한 민법 제766조 제1문, 제780조 및 781조 제1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51 조 소상인

제348조 내지 제350조의 규정은 제4조에 규정된 영업경영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2 조 법정이율

- (1) 지연이자를 포함한 법정이자의 액수는 쌍방적 상행위에 있어서는 연 5분으로 한다.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이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약정한 때에도 같다.
- (2) 본법에서 이자의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의 의무를 규정할 때에는 그 이자는 연 5분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 353 조 이자청구권

상인 상호간에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이자의 청구를 할 권한을 가진다. 복리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 354 조 수수료, 창고료, 임금이자

- (1) 자기의 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의 처리 또는 노무

의 급부를 한 자는 약속이 없는 때에도 이에 관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보관에 관한 경우에는 그 지방의 관행에 따른 이율에 의한 창고료를 청구할 수 있다.

- (2) 대금·선금·지출비 및 기타의 비용에 관하여는 급부일로부터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제 355 조 상호계산

- (1) 상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청구권 및 급부와 이자를 계산에 두고 차감계산 및 당사자의 일방 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잔액의 확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시기에 결제하는 때에는 (계속계산, 상호계산) 계산폐쇄에 있어서 잔액을 받을 자는 계산중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2) 계산폐쇄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 1회 행한다.
- (3) 계속계산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계산기간의 계속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지의 경우 계산후에 잔액을 받을 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56 조 담 보

- (1) 질권·보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담보된 채권이 상호계산중에 계상된 때에는 계산폐쇄의 승인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상호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의 잔액채권과 상기한 채권이 같은 한도에서 담보물로부터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2) 제3자가 상호계산으로 계입된 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제 357 조 잔액의 압류

일방당사자의 채권자가 상호계산으로부터 발생한 잔액으로서 자기의 채

무자에게 귀속할 것에 대한 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은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압류후에 새로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항목은 계산될 수 없다. 압류전에 이미 발생한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하여 또는 그 시점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의하여 한 행위는 본조에 있어서의 새로운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 358 조 급부의 시기

상행위인 경우 통상의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급부를 하거나 그 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59 조 부정확한 급부시기규정

- (1) 급부의 시기를 춘·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시점을 합의한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이행지의 상관습에 따라 결정한다.
- (2) 8일의 기간을 합의한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만 8일로 보아야 한다.

제 360 조 종류채무

종류만으로 정하여진 상품을 부담한 때에는 중등의 종류 및 품질을 가진 상품을 급부하여야 한다.

제 361 조 용적·중량·화폐·시간·거리

용적·중량·화폐·시간 및 거리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계약이 이행될 장소에서 유효한 것을 계약상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 362 조 청약에 대한 침묵

- (1) 영업상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상인에 대하여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러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청약이 도달한 때에는

그 상인은 지체없이 회답할 의무가 있다; 그의 침묵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본다. 사무의 처리를 제의한 상인이 그 제의를 받은 자의 이러한 처리에 관한 청약을 받은 때에도 같다.

- (2) 상인은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상인이 다음의 손해방지비용을 상환받게 되고 상인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는 한, 청약과 함께 송부된 상품에 대하여는 청약자의 비용으로 당분간 그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 363 조 지시증권

- (1) 금전·유가증권 또는 다른 대체물의 급부에 관하여 상인에게 그 급부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지시증권은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상기 종류의 목적물에 관하여 상인이 그 급부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시식으로 발행한 채무부담증서에 대해서도 같다.
- (2) 전항외에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상환증 국가가 그 증권의 발행을 수권한 시설이 발행한 창고증권 및 운송보험 증권도 지시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제 364 조 배서의 효력

- (1) 배서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 (2) 증권의 정당한 점유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증권상의 자기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항변 또는 그 증권의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또는 자기가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항변에 의해서만 대항할 수 있다.
- (3) 채무자는 수령의 뜻을 기재한 증권과의 상환으로만 급부를 할 의무가 있다.

제 365 조 어음법의 적용 - 공시최고절차

- (1) 배서의 방식, 점유자의 자격 및 자격의 검사와 점유자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19조·제14조·제16조·제40조를 준용한다.
- (2) 증권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증권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실효선고에 따른다. 공시최고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권리자가 실효선고시까지의 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권리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증권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66 조 동산의 선의취득

- (1) 상인이 그의 상업의 경영에 있어서 자기에 속하지 아니한 동산을 양도하거나 입질한 때에는 취득자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민법의 규정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 (2) 물건에 제3자의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자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가 권리의 유보없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민법의 규정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 (3) 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 및 운송인의 법정질권은 선의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질권과 같다.

제 367 조 무기명증권의 선의취득

- (1) 도난 또는 유실되거나 기타 분실된 무기명증권이 은행업 또는 환금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양도 또는 입질된 경우에 그 증권이 상실이 양도 또는 입질시에 연방관보에 공고되고 공고된 연도의 종료시로부터 아직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인의 선의는 배제된다. 지시식 債券, 기명주권, 假株券(Zwischenschein) 및 연방은행지분권은 백지식배서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무기명증권과 같다.

- (2) 취득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는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득자의 선의는 연방관보상의 공고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 (3) 양도 또는 입질후의 최초의 소각기간내에 변제기에 달하는 利券·정기금증권 및 이익배당증권, 일람출급의 무이자기명증권, 그리고 은행권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8 조 질권매각

- (1) 질권매각의 경우에 그 입질이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상행위인 때에는 민법 제1234조에 규정된 1월의 기간에 갈음하여 1주에 기간으로 한다.
- (2) 본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 및 운송인의 법정질권에 준용한다.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질권에 대하여는 운송주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에 대해서만 상행위인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369 조 상사유치권

- (1) 상인이 다른 상인에 대하여 그 다른 상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쌍방적상행위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가진 때에는 그 상인은 이 채권에 의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의 점유에 귀속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한, 유치권을 가진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이것이 제3자로부터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이것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때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2)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존립한다.
- (3) 목적물의 유치가 채무자가 인도전 또는 인도시에 부여한 지시 또는 채

권자가 인수한 의무로서 일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반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행사를 면할 수 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써 담보의 제공으로 할 수 없다.

제 370 조 예외적 유치권

- (1) 다음 각호의 경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권에 의한 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이 개시되거나 채무자가 그의 지급을 정지한 때.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때.

- (2) 일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의무의 인수는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실이 목적물의 인도후에 또는 의무의 인수후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자가 알게된 때에 한하여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71 조 변제권

- (1)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인하여 유치한 목적물로부터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3자가 제36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때에는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받을 변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 (2) 변제는 질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1234조에 규정된 1월의 기간에 갈음하여 1주의 기간으로 한다.
- (3) 변제가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또는 목적물이 채권자 자신에 속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의 변제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집행명의를 얻은 후에 비로소 변제가 허용된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변제에 관해 소유자에 적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채무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집

행명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다.

- (4) 변제인용의 소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영업소의 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372 조 채권자를 위한 소유권추정

- (1) 유치한 목적물로부터 받은 변제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점유취득시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때에 한하여 또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미 소유자가 아닌 것을 모른 때에 한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 (2) 채권자의 점유취득후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訴訟系屬時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미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제3자는 채권자가 채무자간에 변제의 인용에 관하여 패소한 소송으로 얻은 확정판결을 인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상사매매

제 373 조 수령지체시의 공탁, 자조매각

- (1)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그 상품을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으로 공적 창고 또는 기타의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
- (2) 전항 외에 매도인은 예고를 한 후에 상품을 공적 경매를 할 수 있다; 상품에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예고를 한 후 이러한 매각에 대하여 관청의 수권이 있는 상사중개인 또는 관청의 경매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 상품에 훼손의 염려가 있고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유로 인하여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 (3) 자조매각은 지체한 매수인의 비용으로 행한다.
- (4) 매도인 및 매수인은 공적 경매의 경우에 입찰할 수 있다.

- (5) 관청의 경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미리 경매의 때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어떤 매각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매각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74 조 민법에 따른 권한

매수인이 수령지체에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민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는 제3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 375 조 지정매각

- (1)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형식·용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정에 관한 상세한 지정이 유보된 경우 매수인은 유보된 지정을 할 의무가 진다.
- (2) 매수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갈음하여 지정을 하거나 민법 제326조에 따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한 지정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그에게 다른 지정을 할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매수인이 그 기간내에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이 한 지정에 따른다.

제 376 조 정기상사매매

- (1)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확정된 시기 또는 확정된 기간내에 정확히 실행되도록 약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급부가 없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가 지체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자기가 이행을 주장한다는 것을 그 시기 또는 기간의 경과후에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상품에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대금과 부담한 급부를 할 시기 또는 장소에서의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 상품에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있는 경우 달리 행해진 매도 또는 매수의 결과는 그 매도 또는 매수가 약정된 이행기 또는 이행기간의 경과후에 즉시 실행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매도 또는 매수는 공적 경매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매도 또는 매수에 관하여 관청의 수권이 있는 당사 중개인 또는 공적 공매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시가로 행해져야 한다.
- (4) 공적 경매에 의한 매도에 관하여는 제37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377 조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 (1) 매매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인 경우 매수인은 통상의 영업활동상 할 수 있는 한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상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매수인이 전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그 상품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검사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검사후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 하자에 관하여도 그 상품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4) 매수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제때의 통지의 발송으로 충분하다.
- (5) 매도인이 악의로 하자를 묵비한 때에는 매도인은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 378 조 합의와 다른 상품의 인도

제377조의 규정은 약정된 상품과 다른 상품 또는 약정된 수량과 다른 수량의 상품이 인도된 때에도 그 인도된 상품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주문과 현저하게 상위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79 조 일시보관의무, 긴급매각권

- (1) 매매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인 경우 매수인이 타지로부터 송부받은 상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 매수인은 일시보관할 의무가 있다.
- (2) 상품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지체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37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을 매각할 수 있다.

제 380 조 포장중량의 공제

- (1) 상품의 중량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할 경우 계약 또는 매도인이 이행할 지역의 상관습이 이와 다른 정함이 있는 한, 포장의 중량은 공제한다.
- (2) 포장의 중량은 정확한 査定에 같음하여 일정한 비율 또는 비례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공제 규모의 여하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중량으로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산정 규모의 여하 또는 파손 또는 사용불능한 부분의 보상(파손할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여부 및 그 양의 여하는 계약 또는 매도인이 이행할 장소의 상관습으로 정한다.

제 381 조 유가증권의 매매

- (1) 본장의 상품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불대체물인 동산이 도급인이 제공할 재료에 의하여 제

작성될 때에도 적용된다.

제 382 조 가축의 하자

가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하자담보에 관한 민법 제481조 내지 제492조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 3 장 위탁매매업

제 383 조 의 의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를 인수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84 조 위탁매매인의 의무

- (1) 위탁매매인은 보통의 상인의 주의로써 그가 인수한 거래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고 특히 주선의 실행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그의 거래에 관하여 전말을 보고하고 거래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3) 위탁매매인은 주선실행의 통지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그 거래를 체결한 상대방인 제3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거래의 이행에 관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85 조 위탁매매인의 손해배상책임

- (1)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위탁자는 그 거래가 자

기의 계산으로 한 것임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 (2) 민법 제665조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86 조 지정가액

- (1) 위탁매매인이 자기에게 지정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 또는 자기에게 매수하도록 지정된 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한 경우, 위탁자가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그 거래의 실행의 통지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가격과의 상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 (2) 위탁매매인이 거래실행의 통지와 동시에 가격의 차액을 전보하기로 한 경우 위탁자는 부인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위탁자의 가액의 차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 387 조 유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

- (1)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정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매매인이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의 이익이 된다.
- (2) 전항은 특히 위탁매매인의 매도가액이 위탁자가 정한 최저가액을 초과한 때 또는 위탁매매인의 매수가액이 위탁자가 정한 최고가액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한다.

제 388 조 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시의 위탁매매인의 의무

- (1) 위탁매매인에게 송부한 물건이 인도당시에 훼손되거나 하자있는 상태에 있고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운송인 또는 선장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그 상태를 증명하고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2) 물건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후에 물건의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는 변동이 발생될 경우에 위탁자의 처분을 청구할 시간이 없거나 위탁자가 처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제37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매각을 행할 수 있다.

제 389 조 공탁, 자조매각

위탁자가 사정상 처분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물건의 처분을 게을리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제379조 의하여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를 가진다.

제 390 조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 (1)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보관하에 있는 물품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통상의 상인의 주의로써는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탁매매인은 물건의 付保를 게을리한 데에 대해서는 위탁자로부터 보험에 들 지시를 받은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 391 조 매수위탁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인 매수주선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물품을 검사하고 위탁매매인에게 발견한 하자를 통지할 의무와 이익있는 물건의 보관에 관한 주의 및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매각에 관하여는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제377조 내지 제3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3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는 위탁자의 청구권은 하자통지의 지체로 인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 392 조 실행행위에 의한 채권

- (1) 위탁자는 채무자에 대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비로소 위탁매매인이

체결한 거래에 의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전항의 채권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제 393 조 선급, 신용매도

- (1)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선급을 하거나 신용을 부여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위험으로 행위한 것이다.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지의 상관습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때에는 위탁자의 다른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위탁매매인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
- (3) 위탁매매인이 권한없이 신용매도를 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매매대금의 채무자로서 위탁자에게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금매도를 하면 대금이 저렴하였을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 저렴한 대금만을 보상하며 이것이 자기에게 지정된 대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제386조에 의한 차액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 394 조 책임인수, 지급보증료

- (1)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채무를 자기가 인수한 때 또는 그에 대한 그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의 상관습이 있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 (2) 제3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해 계약관계로부터 이행이 청구될 수 있을 때에 한해 변제기에 직접 이행에 대해 위탁자에게 책임을 진다. 위탁매매인은 특별한 보수(지급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95 조 어음매수

어음의 매수를 인수한 위탁매매인은 어음에 배서할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또 유보를 붙이지 아니한 배서를 할 의무가 있다.

제 396 조 보수청구권, 비용의 배상

- (1) 거래가 실행에 이른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실행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인은 당해 지역의 관습상 인도수수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역시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위탁매매인이 체결한 거래의 실행이 위탁자의 일신상에 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지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위탁매매인의 비용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 제675조에 의하여 위탁자가 할 배상에는 위탁매매인의 창고 및 운송수단의 이용에 대한 보상도 이에 속한다.

제 397 조 위탁매매인의 질권

위탁매매인은 자기가 위탁물을 점유한 때 특히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물건에 대하여 사용한 비용, 보수, 그 물건에 대하여 지출한 선금 및 대금, 그 물건에 관하여 서명한 어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담한 채무에 의하여 또 주선행위에 있어서의 상호계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에 의하여 그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가진다.

제 398 조 위탁물에서 변제를 받을 권리

위탁매매인은 자기가 위탁물의 소유자인 때에도 제397조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그 물건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99 조 위탁매매인의 우선권

위탁매매인은 제397조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체결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서 위탁자 및 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400 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1) 거래소가격이 있는 상품과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公定된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의 주선은 위탁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자기가 매수하는 상품을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인도하고 자기가 매도하는 상품을 자신이 매수인으로 인수함으로써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2) 전항에 의한 주선의 실행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체결에 관하여 전말을 보고할 위탁매매인의 의무는 그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주선의 실행시의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따랐음을 증명함에 그친다. 위탁매매인이 실행의 통지를 위탁자에게 발송한 때를 실행의 시기로 본다.
- (3) 거래소의 영업시간 또는 시장의 영업시간중에 주선을 실행한 경우에 거래소 또는 시장의 폐쇄후에 비로소 실행의 통지를 한 때에는 산정된 가격은 위탁자를 위하여 거래소 또는 시장의 폐쇄시에 존재한 가격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일정한 시세(최초시세·중간시세·최종시세)로 주선을 실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실행통지의 발송시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탁자에 대하여 그 시세로 산정하여야 한다.
- (5) 유가증권 및 상품에 대하여 거래소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公定된 경우에 개입에 의한 주선의 실행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公定價格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산정하지 못한다.

제 401 조 개입권

- (1) 개입에 의한 주선의 실행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이 의무에 따른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400조에 의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그 주선을 실행할 수 있었을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그 유리한 가격을 계상하여야 한다.
- (2) 위탁매매인이 부여된 주선을 기록으로 실행통지의 발신전에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제3자와 거래를 체결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그 때에 합의된 가격보다 불리한 계상할 수 없다.

제 402 조 강행규정

제400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1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제 403 조 개입시의 수수료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서 인수한 위탁매매인은 통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선행위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는 통상 발생할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 404 조 질 권

제397조·제398조의 규정은 개입에 의한 주선의 실행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405 조 실행통지 및 개입권

- (1) 위탁매매인이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주선의 실행을 통지한 경우 이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3자와의 거래의 체결에 의하여 실행하라는 의사표시로 본다.

- (2) 주선의 실행이 개입에 의하는가 또는 제3자와의 체결에 의하는가에 관한 의사표시를 실행통지의 날보다 후에 할 수 있다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 (3) 위탁자가 실행통지의 발송에 앞서 매매위탁을 철회하고 또 그 철회가 위탁매매인에게 도달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후 개입할 권리가 없다.

제 406 조 본장의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장

- (1) 본장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그 영업의 경영에 있어서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제383조에 규정된 종류 이외의 종류의 거래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탁매매인이 아닌 상인이 그 상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할 것을 인수하는 때에도 같다.
- (2) 수급인이 제공할 재료로 제작될 불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도 이를 본장의 의미의 매수위탁 및 매도위탁으로 본다.

제 4 장 운송주선업

제 407 조 의 의

- (1) 운송주선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한 물건운송의 처리를 인수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本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특히 물건의 수령·보존 및 보험에 관한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08 조

- (1) 운송주선인은 보통의 상인의 주의로써 운송 특히 운송인·해상운송인

및 중간운송주선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을 행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운송주선인은 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과 약정한 운임보다 다액의 운임을 위탁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 409 조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 410 조

운송주선인은 자기가 물건을 점유한 때 특히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운임 보수 채당금 및 비용과 그 물건에 대하여 지출한 先貸金을 근거로 그 물건에 대한 질권을 가진다.

제 411 조

- (1) 운송주선인이 중간운송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운송인은 그 前者가 가지는 권리 특히 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 전자가 그의 채권에 의하여 후자로부터 변제를 얻은 때에는 전자의 채권 및 질권은 후자에게 이전된다. 중간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채권에 대하여도 같다.

제 412 조

- (1) 운송주선인은 달리 약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물건의 운송을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
- (2) 운송주선인이 전항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은 동시에 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보수, 운송주선업에 있

어서 통상 발생하는 기타 비용과 통상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13 조

- (1)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와 일정액의 운송비용에 대하여 합의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은 오로지 운송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보수를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2) 운송주선인이 공동적하에 관하여 자기 계산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하여 다른 위탁자의 물건과 공동으로 물건을 운송한 때에는 일정액의 운송비용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운송주선인은 사정에 따라 상당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각 물건의 운송에 대하여 통상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14 조

- (1) 운송물의 멸실 감소·훼손 또는 연착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 (2) 훼손 또는 감소의 경우 인도한 날의 경과와 동시에, 또 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의 경과와 동시에 시효가 개시된다.
- (3) 제1항에 규정된 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 후에도 이에 앞서 멸실·감소·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주선인에게 통지된 때 또는 통지가 운송주선인에게 발송된 때에 한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증거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때 또는 멸실·감소·훼손 또는 연착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 및 수하인 또는 그 후의 취득자간에 係屬中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이 운송주선인에게 고지된 때에 이를 운송주선인에 대한 통지로 본다.
- (4) 본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 고의로 물품의 멸실 감소 훼손 또는 연착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15 조

本章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 아닌 상인이 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인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한 물건운송의 처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5 장 창고업**제 416 조**

창고업자라 함은 물건의 임치 및 보관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17 조

- (1) 물건의 수령·보관 및 보험에 관한 창고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물건의 가격하락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창고업자가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18 조

창고업자는 영업기간중에는 임치인이 물건의 검사, 견품의 摘取 및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419 조

- (1) 대체물의 임치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자기에게 명시적인 허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와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을 가진 다른 물건과 혼합할 권한을 가진다.

- (2) 창고업자는 전항의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창고업자는 각 임치인에게 혼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貯藏物 중에서 그 자에게 귀속될 부분을 인도할 수 있다. 창고업자는 이에 대하여 기타의 관계자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3)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임치한 때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20 조

- (1) 창고업자는, 계약 또는 당해 지역의 관습상 보관료의 청구권, 그리고 운임 및 관세의 체당금과 기타의 임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창고업자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 (2) 전항에 의하여 창고업자가 부담하는 금액(보관료) 중에서 현금체당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기타의 보관비용은 인도시로부터 매 3월을 경과한 후 또는 이 기간중에 임치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임치물을 일부 반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창고에 잔존한 임치물이 창고업자가 지급받을 금액을 담보함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21 조

창고업자는 자기가 임치물을 점유한 때 특히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으로써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료에 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질권을 가진다.

제 422 조

- (1) 창고업자는 약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또는 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시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이전에 임치인이 임

치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보관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또는 창고업자가 약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임치물을 창고에 보관한 경우 창고업자는 미리 1월의 고지기간을 두고 해약고지를 한 후에 한 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창고업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관기간경과 전에 또는 보관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 423 조

임치물의 멸실·감소·훼손 또는 연착에 의해서 창고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멸시효는 창고업자가 임치인에 대하여 그 멸실에 관하여 통지를 한 날을 경과한 동시에 개시된다.

제 424 조

창고업자가 배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창고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게 창고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제 6 장 운송업

제 425 조

운송인이라 함은 육상 또는 湖川 또는 기타의 內水에서의 물건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26 조

- (1) 운송인은 운송장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운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지 및 발행일
2. 운송인의 성명 및 居所
3. 운송물을 인도받을 자(수하인)의 성명
4. 인도지
5. 물건의 성질·수량 및 記號의 표시
6. 세관 또는 세무서의 조치 또는 경찰서의 검사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표시
7. 운임에 관한 규정과 운임의 先給의 경우에는 그 선급에 관한 附記
8. 운송을 실시할 기간,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및 운송물을 담보로 하는 着給에 관하여 당사자가 한 특별한 합의
9. 송하인의 서명; 기계적 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작출된 서명으로 족하다.

(3) 송하인은 운송장의 기재사항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27 조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관세법규·조세법규 또는 경찰법규의 준수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송하인은 그 서류의 하자·불충분 또는 부정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에 관한 책임을 운송인에 대하여 부담한다. 다만,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28 조

- (1) 운송인은 운송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운송을 개시하고 완료할 기간은 당해 지역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당해 지역의 관습이 없는 때에는 사정에 맞는 상당한 기간내에 운송하여야 한다.
- (2) 운송의 개시 또는 계속이 송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하고 일시 방해된 때에는 송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준비·再荷役 및 이미 진행된 운송부분에 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액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당해 지역의 관습이 없는 때에는 사정에 합당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429 조

- (1)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에서 인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통상의 운송인의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高價物·미술품 및 유가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운송을 위하여 인도를 받을 때에 운송물의 성질 또는 가격이 자기에게 표시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 430 조

- (1)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의하여 배상을 할 때에는 동일한 종류 및 성질을 가진 운송물이 인도되었을 시점에 인도장소에서 가지는 보통의 거래가격 또는 이러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보통의 가격을 배상하여야 한다; 멸실로 인하여 관세 및 기타의 비용 또는 운임에 관하여 지출을 면한 액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
- (2)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상태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매도가액과, 그 운송물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면 인도장소 및 그 인도시기에 가졌을 보통의 거래가격 또는 보통가격과의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훼손으로 인하여 관세 및 기타의 비용과 운임에 관하여 지출을 면한 액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
- (3) 손해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31 조

운송인은, 자기의 사용인 및 기타 그 운송의 실행에 있어서 이용한 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자기의 고의 과실과 동일한 범위로 책임을 진다.

제 432 조

- (1) 운송인이 자기가 인수한 운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송의 실행에 관하여 수하인에게 운송물이 인도되기까지 책임을 진다.
- (2) 후속의 운송인은 原運送狀과 함께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그 운송장에 따라 운송을 실행할 독립된 의무를 인수한다.
- (3) 관계운송인 중의 1인이 本條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후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계운송인은 운임에 대한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3 조

- (1) 송하인은 운송물의 압류 반환 또는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가비용은 운송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2) 송하인의 처분권은 운송물이 인도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에게 운송장을 인도한 경우 또는 수하인이 제335조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경우에는 운송인은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송인이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34 조

수하인은 운송물이 인도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운송인에게 부여할 권리가 있다. 수하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인도를 위임한 때에 한하여 운송물이 인도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35 조

운송물이 인도장소에 도착한 후 수하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든 타인의 이익을 위하든 불문하고 운송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장의 인도 및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본조의 권리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제433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이와 반대의 지시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 436 조

수하인은 운송물 및 운송장의 수령으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장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437 조

- (1)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기타의 인도 장애가 있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의 지시를 求하여야 한다.
- (2) 사정상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송하인이 지시를 게을리한 때 또는 지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적 창고 또는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운송물에 훼손의 염려가 있고 또 지체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제37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 (3) 운송인은 지체없이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제 438 조

- (1) 운임 및 기타의 운송물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고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한 계약상의 일체의 청구권은 소멸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운송물의 훼손 또는 감소가 그 수령전에 官選의 鑑定人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수령시에 외부로부터 알 수 없었던 운송물의 훼손 또는 감소에 관하여는 그 하자가 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 사이에 발생하고 발견 후 지체없이 또 늦어도 수령 후 1주 이내에 관선의 감정인에 의한 하자의 확정을 신청한 때에는 운송물의 수령 및 운임의 지급 후에도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발견 후 지체없이 또 소정의 기간내에 운송인에게 하자를 통지한 때에는 통상의 사정하에서는 그 시점까지 운송인의 답변의 도달을 예기할 수 있는 시점 후 지체없이 확정을 신청함으로써 족하다.
- (4) 운송인이 배상하여야 할 멸실 또는 훼손이 확정된 경우 수령권자가 신청한 확정의 비용은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5) 운송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운송인은 본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 439 조

운송물의 멸실, 감소, 훼손 또는 연착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의 규정은 제432조 제3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40 조

- (1) 운송인은 운송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 특히 운임, 정박료, 관세 및 기타의 체당금과 운송물에 대하여 給付한 先金에 의거하여 운송물상에 질권을 가진다.
- (2) 질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한 때 특히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존재한다.
- (3) 질권은 운송물의 인도후에도 운송인이 인도후 3일 이내에 재판상 질권을 주장하고 운송물이 수하인의 점유하에 있는 한 존속한다.
- (4) 수하인에 대하여, 민법 제1234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물매각의 豫告와 민법 제1237조, 제1241조에 규정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수하인을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하인에게 예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441 조

- (1) 최후의 운송인은 운송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에 있어서 전자의 채권과 운송물을 담보로 하는 선금도 추심하고 전자의 권리 특히 질권도 행사하여야 한다. 전자의 질권은 최후의 운송인의 질권이 있는 동안 존재한다.
- (2) 先行의 운송인이 후속의 운송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때에는 전자의 채권 및 질권은 후자에게 이전된다.
- (3) 운송주선인의 채권 및 질권은 전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후속의 운송주선인 및 후속의 운송인에게 이전된다.

제 442 조

운임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고 인도후 3일 이내에 재판상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운송인은 前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운송인은 선행의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과 같이 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상실

한다.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은 효력이 있다.

제 443 조

- (1) 동일운송물에 대하여 제397조, 제410조, 제421조 및 제440조에 의하여 설정된 수개의 질권이 있는 때에는 운송물의 송부 또는 운송으로 인하여 나타난 질권자간에는 후에 발생한 질권이 전에 발생한 질권에 우선한다.
- (2) 전항의 질권은 모두, 위탁매매인 및 창고영업자의 질권으로서 송부로 인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것, 선급에 관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질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제 444 조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화물상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445 조

- (1) 화물상환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물상환증의 발행지 및 발행일,
 2. 운송인의 성명 및 居所,
 3. 송하인의 성명,
 4.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자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인도를 받을 자의 성명; 단, 화물상환증은 단순히 지시식으로 발행한 때에는 송하인을 지시인으로 본다.
 5. 인도지,
 6. 운송물의 성질, 수량 및 기호의 표시,
 7. 운임, 운송물을 담보로한 후급에 관한 규정과 운임의 先給의 경우에는 선급에 관한 기재,
- (2) 화물상환증에는 운송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3)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의 등본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446 조

- (1) 운송인과 수하인의 법률관계는 화물상환증으로 이를 결정한다. 화물상환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운송계약의 규정은 수하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단, 화물상환증에 명시적으로 引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운송인과 송하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역시 운송계약에 의한다.

제 447 조

- (1) 화물상환증에 따라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자 또는 화물상환증이 지시된 경우에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받은 자는 운송물의 수령에 관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다.
- (2) 운송물의 수령에 관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가진다.
- (3) 운송인은 자기에게 화물상환증이 반환된 때에 한하여 운송물을 계속 보유하거나, 반환하거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라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운송인이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 448 조

운송인은 운송인의 인도를 증명하는 화물상환증의 반환과 相換으로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449 조

제432조 제1항의 경우에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後續의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의 문언에 따라 그 의무가 있다.

제 450 조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화물상환증의 인도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51 조

제426조 내지 제450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아닌 상인이 그의 영업을 행함에 있어 육상 또는 하천 또는 기타의 內水에서 물건운송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452 조

聯邦 및 州의 郵便官廳에 의한 물건의 운송에 대하여는 本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에 규정된 郵便官廳은 本法에서는 상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 7 장 公共交通鐵道에 의한 物件 및 旅客의 運送

제 453 조

- (1) 공공교통철도는 다음의 경우에는 독일국내에서의 일체의 정거장 및 화물취급소를 발착지로 하는 화물운송의무를 부담한다.
1. 송하인이 철도의 현행의 운송약관 및 기타의 일반 규칙의 受範者인 때,
 2. 그 운송이 법률의 규정상 또는 공공질서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때,
 3. 그 화물이 鐵道運送規程上 또는 동운송규정에 의하여 발효된 規程上 운송에 적합한 때 및 이들 規程에 의거하여 달리 규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철도의 사정 및 경영상 운송에 적합한 때,

4. 그 운송이 통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가능한 때,
 5. 그 운송이 철도에서 피할 수 없고 또 救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 때.
- (2) 철도는 즉시 운송을 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철도가 즉시 운송을 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의무를 지는 범위는 鐵道運送規程으로 정한다.
- (3) 鐵道運送規程에 의하여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화물인 경우에 그 운송은 운송을 위하여 수령한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단, 철도의 경영 또는 공공복지 등의 강행적 이유로 인해 다른 순서로 함이 적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고의 또는 과실로 본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제 454 조

철도는 운송을 위한 수령으로부터 인도까지 사이에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가 처분권자의 고의 과실 또는 철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처분권자의 지시, 불가항력, 포장의 하자 또는 화물의 특별한 하자 특히 내부적 훼손, 마모, 통상의 누출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5 조

철도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연착이 철도에서 야기되지 아니한 事故 또는 철도에서 이를 피할 수 없었던 事故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6 조

철도는 그 피용자 및 기타 자기가 인수한 운송의 실행에 있어서 이용한

자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57 조

제440조 내지 제443조가 준용된다.

제 458 조

- (1) 교통부장관은 鐵道運送規程으로 철도물건운송에 관한 기타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 (2) 同規程에는 법무부장관과 協議하여 제454조, 제455조와 상이한 철도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고의·과실로 인한 철도의 책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459 조

본장에서 말하는 화물에는 手荷物도 포함된다.

제 460 조

철도에 의한 여객의 운송에 관한 規定은 교통부장관이 鐵道運送規程으로 정한다.

제 461 조 내지 제 473 조 폐 지

Ⅲ. 有限會社法

1892.4.20. 制定(RGB1. S.477) 1985.5.20(RGB1. S.846)
(BGB1. Ⅲ 4123-1)

1985.12.19. 貸借對照表指針法(BGH1. I S.2355) 및 1986.5.15. 經濟犯罪防止를 위한 第二法律(BGH1. I S.721) 제8조에 의한 改正을 포함한 그 후의 모든 改正을 포함

제1장 會社の設立

제1조 目的

유한회사는 이 법 규정의 기준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제2조 會社契約의 形式

- (1) 회사계약은 공증형식을 필요로 한다. 회사계약에는 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 (2)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 또는 인증된 대리권부여에 근거하고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제3조 會社契約 內容

- (1) 회사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회사의 상호와 주소
 - 2. 기업의 목적
 - 3. 원천자본의 금액

4. 각 사원이 원천자본으로 이행할 출자의 금액(원천출자)
- (2) 기업이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거나 사원에게 회사에 대한 자본출자의 이행 이외에 다른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이 규정도 회사계약에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제 4 조 商 號

- (1) 회사의 상호는 기업의 목적에서 차용하거나 회사관계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가어와 함께 사원의 이름 또는 최소한 사원 중 1인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사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상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회사로 이전되는 영업의 상호를 보유하는 것(상법 제22조)은 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 (2) 회사의 상호는 모든 경우에 “유한책임”이라는 부가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 5 조 源泉資本; 源泉出資

- (1) 회사의 원천자본은 최소한 5만 독일 마르크, 각 사원의 원천출자는 최소한 5백 독일 마르크가 되어야 한다.
- (2) 어떤 사원도 회사 설립시에 복수의 원천출자를 인수할 수 없다.
- (3) 원천출자의 금액은 각 사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것은 독일 마르크로 표시되어 100으로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원천출자의 총액은 원천자본과 일치해야 한다.
- (4)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면, 현물출자의 대상과 현물출자될 원천출자의 금액이 회사계약에 확정되어야 한다. 사원은 현물출자보고서에 현물출자를 위한 급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밝히고, 회사에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2개 영업년도의 연도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理事

- (1) 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 (2) 이사는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d조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자는 판결의 확정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이사가 될 수 없다; 범법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청의 집행가능한 결정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의 수행이 금지된 자는 그 금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 그 기업목적의 금지의 목적과 전부 또는 일부 일치하는 회사에서 이사가 될 수 없다.
- (3)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선임은 회사계약에 따라 또는 제3장 규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회사계약상 사원 모두가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작성할 때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만을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7조 申請

- (1) 회사는 그 지역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법원에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 현물출자가 약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천출자 각각에 대하여 1/4이 납입된 때 비로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천자본 총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납입된 현금출자의 총액이 현물출자로 이행되어야 할 원천출자의 총액을 포함하여 2만 5천 독일 마르크에 달하도록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가 1인만에 의하여 성립된다면, 최소한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규정된 출자가 이행되고 그 사원이 현금출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때 비로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3) 현물출자는 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전에 중국적으로 이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제 8 조 申請의 內容

- (1)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회사계약 및 제2조 2항의 경우에는 회사계약에 서명한 대리인의 대리권증서 또는 이 증서의 공증된 사본
 2. 이사가 회사계약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
 3. 이사의 성명, 지위와 출생지 및 이사에 의하여 인수된 원천출자의 금액이 나타나는, 신청자에 의하여 서명된 이사명부
 4. 제5조 4항의 경우에는 확정된 사항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의 실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 및 현물설립보고서
 5. 현물출자가 합의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가치가 그것을 위하여 인수된 원천출자의 금액에 상응한다는 증거서류
 6. 기업의 목적이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증서
- (2) 신청에는 제7조 2항과 3항에 표시된 급부가 원천출자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급부의 대상이 종국적으로 사원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증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가 1인만에 의하여 설립되고 현금출자가 전액 납입되지 않았다면, 제7조 2항 3문에 의하여 요구되는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보증도 있어야 한다.
- (3) 신청에서는 이사가 제6조 2항 2문과 3문에 의하여 그 선임에 반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에 대한 무제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교시받았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중앙등기부와 교육등기부에 관한 법률 (1976.7.22 공포) 제51조 2항에 의한 교시는 공증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 (4) 신청서에는 그 밖에 이사가 어떤 대표권을 갖는지 기재되어야 한다.
- (5) 이사는 법원에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서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現物出資 대신 現金出資

- (1) 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할 시점에 현물출자의 가치가 그것을 위하여 인수된 원천자본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원은 결손액만큼 현금으로 출자를 이행해야 한다.
- (2) 회사의 청구권은 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 9a 조 會社의 賠償請求權

- (1) 회사 설립의 목적으로 허위기재를 한 경우 사원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결손된 출자를 이행해야 하고,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를 보상해야 하고, 기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2)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출자 또는 설립비용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면 모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배상의무를 진다.
- (3) 사원 또는 이사가 배상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상인의 주의를 했더라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이 의무를 면한다.
- (4) 사원 이외에 사원이 그 사람의 계산으로 원천출자를 인수한 사람은 똑같은 책임을 진다. 그는 자기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사원이 알았거나 정상적인 상인의 주의를 했더라면 알았어야 했을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不知를 원용할 수 없다.

제 9b 조 賠償請求權의 拋棄

- (1) 회사가 제9a조에 의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 청구권에 관하여 화해하는 것은 그 배상이 회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한 효력이 없다. 이것은 배상의무자가 지급불능이고 파산절차를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권자와 화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제9a조에 의한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5년으로 시효소멸한다. 소멸시효 기간은 회사의 상업등기부예의 등기에 의하여 또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나중에 실행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실행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 9c 조 登記의 拒否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등기를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10 조 商業登記簿에의 登記

- (1) 상업등기부예의 등기시에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기업의 목적, 원천자본의 액수, 회사계약을 체결한 날 및 이사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사가 어떤 대표권을 갖는지 등기되어야 한다.
- (2) 회사계약이 회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규정도 등기되어야 한다.
- (3) 등기가 공고되는 간행물에는 등기의 내용 이외에 제5조 4항 1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 및 회사계약이 회사의 공개적 공고가 이루어지는 형식에 관한 특별규정을 갖고 있다면 그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登記 以前의 法狀態

- (1) 회사 주소의 상업등기부예 등기하기 전에는 유한회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 (2) 등기 이전에 회사의 이름으로 행위했다면 행위자가 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2 조 支 店

- (1) 지점 설치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8조 1항과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신청에는 회사계약의 사본과 사원의 명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주소지의 법원은 신청을 넘겨주기 전에 제출된 회사계약 사본과 사원의 명부를 인증해야 한다.

- (2) 등기는 제10조 1항과 2항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등기가 공고되는 간행물에는 제10조 3항에 언급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제5조 4항 1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확정은 회사 주소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최초 2년 이내에 등기되는 경우에만 그렇다.

제 2 장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제 13 조 法人; 商事會社

- (1) 유한회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유한회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의 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될 수 있다.
- (2) 회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진다.
- (3) 회사는 상법에서 의미하는 상사회사로 간주된다.

제 14 조 持 分

각 사원의 지분은 그에 의하여 인수된 원천출자의 금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제 15 조 持分의 讓渡

- (1) 지분은 양도, 상속할 수 있다.
- (2) 사원이 자신의 원래의 지분에 추가하여 또 다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것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 (3) 사원에 의하여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증형식으로 체결된 계약

이 필요하다.

- (4) 사원으로 하여금 지분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도 공증형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형식에 의하지 않고 한 약정은 前項의 기준에 따라 체결된 양도계약에 의하여 유효하다.
- (5) 지분의 양도는 회사계약에 의하여 그 이외의 요건, 특히 회사의 동의에 구속될 수 있다.

제 16 조 讓渡人과 讓受人의 法的 地位

- (1)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는 그 경과를 증명하여 회사에 그 취득을 신고한 자만이 취득자로 간주된다.
- (2) 취득자는 신고전에 회사에 의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또는 양도인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회사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법적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
- (3) 신고할 당시에 지분에 대하여 미납된 금부에 대해서는 양도인 이외에 취득자가 책임을 진다.

제 17 조 持分の 一部讓渡

- (1) 지분의 일부양도는 회사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동의는 서면에 의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동의는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분할되지 않은 지분의 원천출자로부터 분할에 의하여 생기는 각 지분에 할당되는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3) 회사계약에는 다른 사원에 대한 지분의 일부양도 및 사망한 사원의 지분의 상속인간의 분할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 (4) 원천출자의 금액에 관한 제5조 1항과 3항의 규정은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 (5) 1인의 사원이 갖고 있는 지분의 여러 부분을 동일한 취득자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6) 양도와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지분의 분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지분의 분할이 배제될 수 있다.

제 18 조 持分에 대한 共同權限

- (1) 하나의 지분이 분할되지 않고서 다수의 공동권리자에게 속한다면 공동권리자는 지분상의 권리를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2) 공동권리자는 지분에 대하여 행해져야 할 급부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회사가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법적행위는 공동권리자의 공동대표가 없는 한 1인의 공동권리자에 대해서만 취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 규정은 1인의 사원의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취해지는 법적행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제 19 조 源泉出資의 納入

- (1) 원천출자에 대한 납입은 금전출자의 비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 (2) 사원은 출자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회사의 청구에 대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관련되지 않은 채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3) 자본감소에 의하여 사원은 최대한 원천자본이 감소된 금액만큼 출자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4)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 전부가 사원 1인 또는 그 이외에 회사의 수중에 집중된다면 그 사원은 지분의 지분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전출자 전부를 전액 납입하거나 아직 미납된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분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사는 지분의 집중을 지체없이 상업등기소에 신고해야 한다.
- (5) 금전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재산의 양도를 위하여 제공될 대가의 상계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너천출자에 대한 급부는 그것이 제5조 4항 1문에 따라 작성된 규정의 실행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원을 그 의무에서 면제시킨다.

제 20 조 遲延利子

원천출자에 관하여 요구된 금액을 적시에 납입하지 않는 사원은 법률상 당연히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 21 조 失 權

- (1)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하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지분에 대한 失權의 예고와 함께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동기우편으로 이루어진다. 유예기간은 최소한 1개월은 되어야 한다.
- (2) 이 기간이 아무런 효과없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하는 사원이 그의 지분과 이행된 부분지급을 회사를 위하여 상실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 선언은 동기우편으로 이루어진다.
- (3) 실권된 사원은 회사가 원천출자에서 미납된 금액 또는 나중에 지분에 대하여 요구된 금액에 대하여 입은 결손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前權利者の 責任

- (1) 실권된 사원의 회사에 신고된 마지막 前권리자와 그 이전의 前권리자는 실권된 사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은 원천출자의 금액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前권리자는 그의 권리승계자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권리승계자에 대한 지급최고와 前권리자에 대한 이러한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권리승계자가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런 것으로

인정된다.

- (3) 前권리자의 책임은 5년의 기간 이내에 원천출자를 위하여 요구된 납입에 한정된다. 이 기간은 권리승계자에 대한 지분의 양도가 적법하게 신고된 날에 개시한다.
- (4) 前권리자는 미납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권된 사원의 지분을 취득한다.

제 23 조 持分の 競賣

미납된 금액이 前권리자에 의하여 지급될 수 없다면 회사는 公賣(공적 경매)의 방법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매각은 실권한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제 24 조 缺員額의 調達

원천출자가 지급의무자로부터 수취되거나 지분의 매각에 의하여 보상될 수 없다면 나머지 사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결손액을 조달해야 한다. 각 사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표시된 비율에 따라 나머지 사원에게 할당된다.

제 25 조 強行規定

사원은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법률효과에서 면제될 수 없다.

제 26 조 追加支給義務

- (1) 회사계약에서는 사원이 원천출자의 금액을 넘어서 그 이외의 지급(추가지급금)의 요구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 (2) 추가지급금의 지급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3) 추가지급의무는 회사계약에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 확정될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 27 조 無制限的 追加支給義務

- (1) 추가지급의무가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각 사원은 원천출자를 전액 납입한 경우 납입최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분을 회사가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분에 대해 요구된 추가지급금의 지급에서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원이 제시된 기간 이내에 이 권한을 이용하지도 않고 지급을 이행하지도 않는다면 회사는 마찬가지로 사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그 지분이 회사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본다고 선언할 수 있다.
- (2) 회사는 사원 또는 회사의 선언 이후 1개월 이내에 公賣의 방법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매각은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매각비용과 미납된 추가지급금을 보상하고 남는 것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 (3) 매각에 의하여 회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지분은 회사에 귀속된다. 회사는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
- (4) 회사계약에서는 앞의 규정의 적용을 지분을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지급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제 28 조 制限的 追加支給義務

- (1) 추가지급의무가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면 회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추가지급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원천출자의 지급에 관한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7조 4항의 경우에 무제한적 추가 지급의무를 질 때에도 추가지급금이 회사계약상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 회사계약에서는 그 지급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추가지급금의 요구가 원천출자의 전액 요구 이전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 29 조 利益處分

- (1) 연도잉여금에 이익이월금을 합하고 손실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 법률 또는 회사계약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결의에 의하여 또는 결과의 처분에 관한 결의에 근거한 추가적 비용으로서 사원에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한 사원은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대차대조표가 부분적인 결과의 처분을 고려하여 작성되거나 준비금이 사용된다면 사원은 제1문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 (2) 회사계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과의 처분에 관한 결의에서 사원은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이익으로 이월할 수 있다.
- (3) 배당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사계약에서는 배당의 다른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
- (4)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2문에 의한 다른 이익처분약정과 관계없이 이사는 감사회 또는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설비재산과 유동재산의 재산대상에서의 가치회복 및 특별항목에서 준비금지분으로 표시될 수 없는 세법상의 이윤산출시에 형성된 차변항목 중에서 자기자본지분을 다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준비금의 금액은 대차대조표에 특별히 명시되거나 부속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 30 조 還 給

- (1) 원천자본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회사의 재산은 사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 (2) 지급된 추가지급금은 그것이 원천자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사원에게 환급될 수 있다. 환급결의가 회사계약상 회사의 공고를 위하여 정해진 공적 간행물에 의하여 공고되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위하여 상업등기소에서 정한 공적 간행물에 의하여 공고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환급될 수 없다. 제28조 2항의 경우에 원천자본을 전액 납입하기 전에는 추가지급금의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급된 추가지급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

제 31 조 禁止된 還給의 返還

- (1) 제30조의 규정에 반하여 지급된 것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환급받은 자가 선의였다면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3) 환급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다면 반환될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회사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머지 사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각 사원에게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위에 표시된 비율에 따라 나머지 사원에게 할당된다.
- (4) 반환의무자는 앞의 규정에 근거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 (5) 회사의 청구권은 5년으로 시효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반환이 청구되는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경과로 개시한다. 반환의무자에게 악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6) 제3항의 경우에 이루어진 반환에 관해서는 지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가 사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32 조 利益의 還給

제31조 1항에 언급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사원은 어떤 경우에도 선의로 이익의 일부로서 수령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 32a 조 消費貸借의 回收

- (1) 사원이 정상적인 상인으로서 회사에 자기자본을 제공했을 시점에 그 대신에 회사에 소비대차를 제공했다면 그 사원은 회사 재산에 관한 파산에 있어서 또는 파산을 면하기 위한 화의절차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화의 또는 화의절차에서 체결된 화해는 사원의 채권에 대하여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한다.

- (2) 사원이 정상적인 상인으로서 회사에 자기자본을 제공했을 시점에 제3자가 그 대신에 회사에 소비대차를 제공하고 사원이 소비대차의 회수를 위하여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했다면 그 제3자는 회사 재산에 관한 파산절차 또는 파산을 면하기 위한 화의절차에서 그가 담보 또는 보증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례적 만족을 요구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소비대차제공에 상응하는 사원 또는 제3자의 다른 법적행위에 대하여 유추적용된다.

제 33 조 自己持分の 取得

- (1) 회사는 출자가 아직 전부 이행되지 않은 자기지분을 취득하거나 質取할 수 없다.
- (2) 회사는 자기지분의 취득이 원천자본의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재산으로 이루어지고, 회사가 원천자본 또는 사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회사계약에 의하여 형성될 준비금을 감소하지 않고서 자기지분을 위하여 상법 제272조 4항에 의하여 규정된 준비금을 형성할 수 있는 때에만 출자가 전부 이행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자기지분의 質取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총액 또는 質取되는 지분의 가치가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원천자본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재산보다 많지 않은 때에만 자기지분을 質取할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의 위반은 지분의 취득 또는 質取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에 반하는 취득 또는 금지에 반하는 質取에 관한 채권법상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 34 조 消 却

- (1) 지분의 소각은 회사계약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 (2) 지분의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권리자가 지분을 취득한 시점 이전에 회사계약상 소각의 요건이 정해져 있던 때에만 지분을 소각할 수

있다.

- (3) 제30조 1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代表와 業務執行

제 35 조 理事에 의한 代表

- (1) 회사는 이사에 의하여 재판상 그리고 재판외에서 대표된다.
- (2) 이사는 회사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형식으로 그 의사표시를 공표하고 회사를 위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의사표시와 서명은 이사 전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면 그 의사표시가 이사 중의 1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 (3) 서명은 서명자가 회사의 상호에 자기의 이름서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4) 회사의 지분 전부가 사원 1인의 수중에 또는 그 이외에 회사의 수중에 있고 그가 동시에 회사의 유일한 이사라면 그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5a 조 營業書翰에의 記載

- (1) 특정한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營業書翰에는 회사의 법형태와 주소, 회사 주소지의 등기법원과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및 이사 전원과 회사가 감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감사회가 의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 의장의 성과 최소한 이름의 첫글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의 자본에 관한 기재는 한다면 어떤 경우든 원천자본 및 금전으로 이행될 모든 출자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미납된 출자의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 (2)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특별한 기재가 삽입될 필요가 있는 통상의 인쇄된 형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 통지 또는 보고에 있어서는 제1항 1문에 의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
- (3) 주문서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營業書翰으로 간주된다. 제2항은 주문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36 조 代表의 效力

회사는 그 이름으로 이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 행위가 명문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든 또는 상황이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든 상관없다.

제 37 조 代表權限의 制限

- (1)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회사계약에 의하여 또는 회사계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제한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권한의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은 특히 대표가 일정한 행위 또는 종류에만 한정되거나 일정한 사정하에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개별적 장소에서만 행해지도록 되어있는 경우에 대하여 또는 개별적 행위에 관하여 사원 또는 회사의 기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38 조 先任의 撤回

- (1) 이사의 선임은 기존의 계약상의 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2) 회사계약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철회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철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할 능력의 부재를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제 39 조 理事의 申告

- (1) 이사의 인적사항의 변경 및 이사의 대표권한의 소멸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 (2) 신고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또는 대표권한의 소멸에 관한 증서가 원본으로 또는 공적으로 인증된 사본으로 회사의 주소지의 법원을 위하여 첨부되어야 한다.
- (3) 새로운 이사는 신고에서 제6조 2항 2문과 3문에 의한 자신의 선임에 반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법원에 대한 무제한적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교시받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8조 3항 2문이 적용된다.
- (4) 이사는 법원에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社員名簿

이사는 매년 연도결산서가 상업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사원의 성, 이름, 지위와 거주지 및 그의 워천출자를 알 수 있는 그에 의하여 서명된 사원명부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후의 명부를 제출한 이후에 사원의 인적사항과 그 참가의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없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언의 제출로 충분하다.

제 41 조 帳簿作成

- (1) 이사는 회사의 적법한 장부작성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2) - (4) (삭제)

제 42 조 貸借對照表

- (1) 상법 제242조와 제264조에 의하여 작성될 연도결산서의 대차대조표에는 워천자본이 인수된 자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2) 회사가 사원의 추가지급금을 수령할 권한은 그 수령이 이미 결의되어

있고 사원에게 지분을 지시함으로써 추가지급금의 지급을 면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대차대조표에 현실화되어야 한다. 추가지급될 금액은 지급을 예상할 수 있는 한 대변에 “요구된 추가지급금”이라는 표시하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변항목에 상응하는 금액이 차변항목에서 자본준비금 항목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 (3) 사원에 대한 대출, 채권과 채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각각 별도로 표시되거나 부속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항목에 표시된다면 그 성질이 기입되어야 한다.

제 42a 조 年度決算書와 狀態報告書의 提出

- (1) 이사는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작성후 지체없이 연도결산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면 이사는 그것을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의 도착후 지체없이 상태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 감사회가 있다면 그 검사결과에 관한 감사회의 보고서도 역시 지체없이 제출되어야 한다.
- (2) 사원은 최소한 영업년도의 처음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소규모 회사라면(상법 제267조 1항) 처음 1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도결산서의 확정과 결과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회사계약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연도결산서에 관해서는 그것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 작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 (3) 결산검사인이 연도결산서를 검사했다면 결산검사인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 (4) 회사가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면 제 1항은 그것이 콘체른결산서의 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상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 43 조 理事의 責任

- (1)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 상인의 주의를 해야 한다.
- (2) 그 책무를 위반하는 이사는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특히 이사는 제30조의 규정에 반하여 원천자본의 유지에 필요한 회사의 재산에서 지급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반하여 회사의 자기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배상할 의무를 진다. 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제9b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이 회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가 사원의 결의를 따라서 행위했다는 것으로써 이사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 (4) 앞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권은 5년으로 시효소멸한다.

제 43a 조 會社財産으로부터의 信用

이사, 기타의 법률상의 대표, 지배인 또는 영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원천자본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회사재산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없다. 제1문에 반하여 제공된 신용은 그에 반하는 약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반환되어야 한다.

제 44 조 理事의 代理人

이사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45 조 社員의 權利 一般

- (1) 회사의 업무, 특히 영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원에게 귀속되는 권리 및 그 권리의 행사는 법률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 (2) 회사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6 조 社員의 任務範圍

다음의 사항은 사원의 결정에 따른다.

1. 연도결산서의 확정과 결과의 처분
2. 원천출자의 납입요구
3. 추가지급금의 반환
4. 지분의 분할 및 소각
5. 사원의 선임과 해임 및 면책
6. 업무집행의 검사와 감독을 위한 조치
7. 지배인과 영업 전반을 위한 대리인의 선임
8. 설립 또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갖는 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회사기 이사를 상대로 수행해야 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제 47 조 表決

- (1)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 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결정은 표결에 참가한 의결권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 (2) 100 독일 마르크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1개의 의결권이 있다.
- (3) 대리권 부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형식이 필요하다.
- (4) 결의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원은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원에 대한 법률행위의 수행 또는 법률쟁송의 개시 또는 종료에 관한 결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48 조 社員總會

- (1) 사원의 결의는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 (2) 사원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될 결정 또는 의결권의 서면에 의한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선언한다면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 (3) 회사의 지분 전부가 사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수중에 있다면 그는 결의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總會의 召集

- (1) 사원총회는 이사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사원총회는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때 소집할 수 있다.
 (3) 연도대차대조표 또는 영업년도의 도중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서 원천자본의 절반이 상실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50 조 少數權

- (1) 그 지분을 합하여 최소한 원천자본의 1/10이 되는 사원은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2) 똑같은 방식으로 사원은 총회의 결의를 위한 목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3)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요구를 할 사람이 없다면 제1항에 표시된 사원은 사안을 통지하여 소집 또는 고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총회는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한다.

제 51 조 召集의 形態

- (1) 총회의 소집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원을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최소한 1주일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2) 총회의 목적은 언제나 소집시에 고지되어야 한다.
 (3)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면 사원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결의를 할 수 있다.
 (4) 최소한 총회의 3일 이전에 소집에 관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목적사항에 관한 결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51a 조 情報要求權과 閱覽權

- (1) 사원은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모든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 (2) 사원이 정보요구와 열람을 회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회사 또는 결합기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우려된다면, 이사는 정보제공과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는 사원의 결의를 요한다.
- (3) 회사계약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제 51b 조 情報要求權과 閱覽權에 관한 法源의 決定

정보요구권과 열람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132조 1항, 3항 내지 5항이 준용된다. 정보요구 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모든 사원은 신청권한이 있다.

제 52 조 監事會

- (1) 회사계약에 의하여 감사회가 선임되어야 한다면 회사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식법 제90조 3항, 4항, 5항 1문과 2문, 제95조 1문, 제100조 1항과 2항 2호, 제101조 1항 1문, 제103조 1항 1문과 2문, 제93조 제1항과 2항과 결부된 제105조, 제110조 내지 제114조, 제116조, 제170조, 제171조, 제337조가 준용된다.
- (2)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감사가 선임된다면 주식법 제37조 4항 3호, 제40조 1항 4호가 준용된다. 그 이후의 감사의 선임과 변경은 모두 지체없이 연방공보와 회사계약에서 회사의 공고를 위하여 정해진 다른 公報에 공고하고, 그 공고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의 책무위반으로 인한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으로 시효소멸한다.

제 4 장 會社契約의 變更

제 53 조 定款變更의 形式

- (1) 회사계약의 변경은 사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결의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하고, 표결에 참여한 의결권의 3/4의 다수를 요한다. 회사계약은 다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3) 회사계약에 의하여 사원이 부담하는 급부의 증가는 참가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결의할 수 있다.

제 54 조 申請과 登記

- (1) 회사계약의 변경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에는 회사계약의 全文이 첨부되어야 한다; 회사계약에는 회사계약의 변경된 규정이 회사계약의 변경에 관한 결의와 일치하고 변경전의 규정이 마지막으로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회사계약의 全文과 일치한다는 공증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이 제10조 1항과 2항에 표시된 기재와 관련이 없는 한 법원에 제출된 변경에 관한 증서를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적인 공고는 제10조 3항과 제12조에 규정된 공개와 관련되는 모든 규정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3) 변경은 회사 주소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 55 조 源泉資本의 增加

- (1) 원천자본의 증가가 결의된 때에는 증가된 자본으로 이행될 원천출자

- 를 인수하기 위하여 공증 또는 인증된 인수인의 선언이 필요하다.
- (2) 회사는 이제까지의 사원 또는 인수에 의하여 회사에의 입사를 선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원천출자의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천출자의 금액 이외에 입사하는 자가 회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타의 급부도 제1항에 표시된 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3) 이미 회사에 속해 있는 사원이 증가된 자본에 대한 원천출자를 인수한다면 그 사원은 또 다른 지분을 취득한다.
 - (4) 원천출자의 금액에 관한 제5조 1항과 3항의 규정 및 다수의 원천출자 인수의 부적법성에 관한 제5조 2항의 규정은 증가된 자본으로 이행될 원천출자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 56 조 現物出資에 관한 資本增加

- (1)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현물출자에 관한 원천출자의 대상과 금액이 원천자본의 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 확정은 제55조 1항에 표시된 인수인의 선언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9조와 제19조 5항이 준용된다.

제 56a 조 새로운 源泉資本에의 履行

새로운 원천자본에의 출자의 이행과 담보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7조 2항 1문과 3문 및 3항이 준용된다.

제 57 조 增加의 申請

- (1) 증가된 자본이 원천출자의 인수에 의하여 보충된 이후에 결의된 원천자본의 증가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 (2) 신청에는 새로운 원천자본에의 출자가 제7조 2항 1문과 3문, 3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행의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이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놓여 있다는 보증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에 관하여는 그 밖에

제8조 2항 2문이 준용된다.

(3) 신청에는 다음의 것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제55조 1항에 표시된 선언 또는 그것의 인증된 등본
2. 신청자에 의하여 서명된, 새로운 원천출자를 인수한 사람의 목록, 그 목록에서 인수된 각각의 출자 금액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3. 현물출자를 포함하는 자본증가에 있어서는 제56조에 의한 확정이 근거하고 있거나 그 실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

(4)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자본증가를 신청한 이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제9a조 1항과 3항, 제9b조가 준용된다.

제 57a 조 登記의 拒否

법원에 의한 등기의 거부에 대해서는 제9c조가 준용된다.

제 57b 조 資本增加 登記의 公告

자본증가 등기의 공고에 있어서는 그 내용 이외의 현물출자를 포함하는 자본증가에 있어서 규정된 확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확정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서를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58 조 源泉資本의 減少

(1) 원천자본의 감소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고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 원천자본의 감소결의는 이사에 의하여 세 번에 걸쳐 제30조 2항에 표시된 간행물에 공고되어야 한다. 이 공고에서는 동시에 회사 채권자에게 회사에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회사의 상업장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통지에 의하여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2.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감소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는 청구권 주장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거나 그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한 감소결의의 신청은 채권자의 최고가 公報에 세번째 이루어진 날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신청과 함께 결의의 공고가 제출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사는 회사에 신청하고 감소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그에게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보증을 기재해야 한다.
- (2) 제5조 1항의 원천자본의 최저금액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소가 원천출자를 반환할 목적으로 또는 원천자본에 대하여 채무로 부담하는 납입을 면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천출자의 나머지 금액은 제5조 1항과 3항에 표시된 금액 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제 59 조 支 店

제57조 2항에 의한 보증은 회사 주소지의 법원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제57조 3항 1문과 제58조 1항 4호에 의한 증서는 회사 주소지의 법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제 5 장 會社의 解散과 無效

제 60 조 解散事由

- (1) 유한회사는 다음에 경우에 해산된다.
1. 회사계약에 정해진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2.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것은 회사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표결에 참여한 의결권의 3/4의 다수를 요한다.
 3. 제61조와 제62조의 경우에 행정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4.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강제화회의 체결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공동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지된다면 사원은 회사의 계

속을 결의할 수 있다.

5. 비송사건절차법 제144a조와 제144b조에 의하여 회사계약의 하자가 확정되거나 또는 이 법 제19조 4항 1문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확정된 등기법원의 처분의 확정력에 의하여
- (2) 회사계약에서는 또 다른 해산사유가 정해질 수 있다.

제 61 조 判決에 의한 解散

- (1) 회사는 회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회사의 관계에 기초하는 중대한 해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 (2) 解散의 訴는 회사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지분을 합하여 최소한 원천자본의 1/10에 달하는 사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3) 이 訴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한다.

제 62 조 行政官廳에 의한 解散

- (1) 사원이 법률에 반하는 결의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이사의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발생시킴으로써 회사가 공익을 해친다면, 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고서 회사가 해산될 수 있다.
- (2) 절차와 관청의 권한은 다름이 있는 행정사안에 대하여 州法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제 63 조 破産節次

- (1)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의 경우 이외에 채무초과의 경우에도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 (2)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관한 파산법 제207조 2항과 제2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 64 조 破産申請義務

- (1) 회사가 지급불능으로 되면 이사는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없이, 적어도 지급불능 발생후 3주 이내에 파산절차의 개시 또는 재판상 화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것이 유추적용된다. 이사가 재판상 화의절차의 개시를 정상적 상인의 주의로 수행한다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신청을 지체한 것이 아니다.
-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불능의 발생 이후에 또는 그 채무초과의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이시점 이후에도 정상적 상인의 주의로 합의된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제43조 3항과 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65 조 解散의 申請

- (1) 회사의 해산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이것은 파산절차의 경우와 회사계약의 하자의 법원에 의한 확정 또는 제 19조 4항 1문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법원은 해산과 그 사유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 (2) 해산은 청산인에 의하여 세번에 걸쳐서 제30조 2항에 표시된 공보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한다. 이 공고에 의하여 동시에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에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제 66 조 清算人

- (1) 해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이 회사계약 또는 사원결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은 한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2)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하여 최소한 원천자본의 1

- /10에 달하는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의 선임이 법원(제7조 1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3) 청산인의 해임은 선임과 동일한 요건하에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지명되지 않은 청산인은 그 임기의 경과전에 사원결의에 의해서도 해임될 수 있다.
- (4) 청산인의 선출에 관해서는 제6조 2항 2문과 3문이 준용된다.

제 67 조 清算人의 申請

- (1) 최초의 청산인 및 그 대표권한은 이사에 의하여, 청산인의 교체와 그 대표권한의 변경은 청산인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 (2) 신청에는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또는 청산인의 인적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거가 원본으로 또는 공적으로 인증된 등본에 의하여 회사 주소지의 법원을 위하여 첨부되어야 한다.
- (3) 신청에서는 청산인의 제66조 4항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반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에 대한 무제한적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교시받았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제8조 3항 2문이 적용된다.
- (4) 청산인의 법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의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5) 청산인은 법원에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의 서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 68 조 清算人의 表示

- (1) 청산인은 그 선임시에 정해진 형식으로 그 의사표시를 공표하고 회사를 위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의사표시와 서명은 청산인 전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 (2) 서명은 청산인이 이제는 청산상호로 표시될 이제까지의 상호에 자기의 이름서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 69 조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 (1)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의 해산과 관계없이 회사와 사원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과 청산의 성질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한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회사가 해산시에 갖고 있는 재판적은 재산을 완전히 분할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 70 조 清算人의 任務

청산인은 통상업무를 종료하고, 해산된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그 채권을 추심하고,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청산인은 재판상과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 유동적인 거래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청산인은 새로운 거래도 할 수 있다.

제 71 조 貸借對照表; 權利와 義務

- (1) 청산인은 청산의 개시를 위하여 대차대조표(개시대차대조표)와 개시대차대조표를 설명하는 보고서 및 매년의 마감을 위하여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원은 개시대차대조표와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하여 그리고 청산인의 면책에 관하여 결의한다. 개시대차대조표와 설명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도결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설비재산의 대상은 예견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것을 양도할 의도가 있거나 그것이 더이상 영업에 이용되지 않는 한 유동재산과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연도결산서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 (3) 법원은 회사의 관계가 채권자와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요청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분명하다면 결산검사인에 의한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 (4) 그 밖에 청산인은 제36조, 제37조, 제41조 1항, 제43조 1항, 2항과 4항, 제49조 1항과 2항, 제64조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5) 특정한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營業書翰에는 회사의 법형태와 주소, 회사가 청산중에 있다는 사실, 회사 주소지의 등기법원과 상업 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및 청산인 전원과 회사가 감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감사회가 의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 의장의 성과 최소한 이름의 첫글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의 자본에 관한 기재를 한다면 어떤 경우든 원천자본 및 금전으로 이행될 모든 출자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미납된 출자의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특별한 기재가 삽입될 필요가 있는 통상의 인쇄된 형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지 또는 보고에 있어서는 제1문에 의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 주문서는 1문에서 의미하는 營業書翰으로 간주된다. 3문은 주문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72 조 財産分配

회사의 재산은 사원 사이에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회사계약에 의하여 다른 분배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

제 72 조 禁止年

- (1) 회사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 이전에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제65조 2항)가 公報에 세번째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하기 전에는 분배를 할 수 없다.
- (2) 알려져 있는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공탁할 권한이 있는 한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로 부담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현재 채무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또는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때에만 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
- (3) 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청산인은 분배된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할 의무를 진다. 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제43조 2항과 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74 조 帳簿와 書類

- (1) 청산의 종료 이후에 회사의 장부와 서류는 10년의 기간 동안 사원 또는 제3자에게 보관되어야 한다. 그 사원 또는 제3자는 회사계약 또는 사원 결의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원(제7조 1항)에 의하여 결정된다.
- (2) 사원과 그의 권리승계자는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회사의 채권자는 법원(제7조 1항)으로부터 열람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 75 조 無效의 訴

- (1) 회사계약이 원천자본의 액수에 관하여 또는 기업의 목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기업의 목적에 관한 회사계약의 규정이 무효라면, 모든 사원, 모든 이사 그리고 감사회가 선임된 경우에는 모든 감사가 訴의 방법으로 회사가 무효로 선언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상법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76 조 社員決意의 瑕疵治癒

기업의 목적에 관한 규정에 관련되는 하자는 사원의 전원일치 결의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

제 77 조 無效의 效力

- (1) 회사의 무효가 상업등기부에登記된다면 그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해산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

- (2) 회사의 이름으로 제3자와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사원은 그것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 약속한 납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終 結 規 定

제 78 조 申 請 義 務 者

이 법에 규정된 상업등기소에의 신청은 이사 또는 청산인에 의하여, 제7조 1항, 제57조 1항, 제58조 1항 3호에 규정된 신청은 이사 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79 조 強 制 金

- (1) 제35a조, 제71조 5항을 따르지 않은 이사 또는 청산인은 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등기법원으로부터 강제된다. 상법 제14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번의 강제금은 1만 독일 마르크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회사 주소지의 상업등기소에의 신청이 문제되는 한 제7조, 제54조, 제57조 1항, 제58조 1항 3호에 표시된 상업등기소에의 신청을 고려하여 상법 제14조에 의한 강제금의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80 조 - 제 81a 조 削 除

- (1) 다음의 허위기재를 하는 자는 3년까지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1. 사원 또는 이사로서 회사를 등기할 목적으로 원천자본의 인수, 출자의 이행, 납입된 금액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이익, 설립비용, 현물출자와 전액 납입되지 않은 현금출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 2. 사원으로서 현물설립보고서에서,

3. 이사로서 원천자본의 증가를 동기할 목적으로 새로운 자본의 인수 또는 납입에 관하여 또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또는
 4. 사원으로서 제8조 3항 1문 또는 제39조 3항 1문에 의하여 해야 할 보증에서 또는 청산인으로서 제67조 3항 1문에서 해야 할 보증에서 허위 기재를 하는 자.
- (2) 다음의 자는 그 행위가 상법 제331조 1호에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1. 이사로서 원천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만족 또는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거짓된 보증을 하거나
 2. 이사, 청산인, 감사 또는 유사한 기관으로서 공적인 통지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은폐하는 자.

제 84 조 損失, 支給不能 또는 債務超過에 있어서의 義務違反

- (1) 다음의 자는 3년까지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1. 이사로서 사원에게 원천자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손실을 통지하지 않은 자 또는
 2. 이사로서 제64조 1항에 반하여 또는 청산인으로서 제71조 2항에 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경우에 파산절차 또는 재판상 화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자.
- (2) 범법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것이라면 형벌은 1년까지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제 85 조 秘密維持義務의 違反

- (1) 회사의 비밀, 특히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자격으로 알게 된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없이 공개하는 자는 1년까지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2) 범법행위자가 대가를 받고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로 행위한 것이라면 형벌은 2년까지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1항에 표시된 종류의 비밀, 특히 1항의 요건하에 알게 된 경영상의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권한없이 이용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 (3) 범법행위는 회사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소추된다. 이사 또는 청산인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이사회가, 그리고 이사회가 없다면 사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고소권한을 갖는다. 감사가 범법행위를 했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고소권한을 갖는다.

IV. 株式會社法

제 1 편 株式會社

제 1 장 總 則

제 1 조 株式會社의 本質

- (1) 주식회사는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는 회사재산만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2)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진다.

제 2 조 發起人의 數

회사계약(정관)을 확정함에는 출자를 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가 적어도 5인 참가하여야 한다.

제 3 조 商事會社로서의 株式會社

주식회사는 기업의 목적이 상업의 경영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상사회사로 본다.

제 4 조 商 號

- (1)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목적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그 상호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주식회사는 그가 취득한 상업의 상호를 續用하는 때에는 (상법 제22조) 그 상호중에 주식회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住 所

- (1) 회사의 주소는 정관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 (2) 정관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영업소를 가지는 장소 또는 영업의 지휘가 존재하거나 관리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주소로서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資 本

자본과 주식은 도이취 마르크로의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基本資本의 最低金額

자본의 최저금액은 10만 도이취 마르크로 한다.

제 8 조 株式의 最低券面額

- (1) 주식의 최저권면액은 50 도이취 마르크로 한다. 이 보다 낮은 권면액의 주식은 무효로 한다. 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2) 보다 많은 주식권면액은 滿 100 도이취 마르크로 되어야 한다.(3) 주식은 분할하지 못한다.
- (3) 이 규정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에게 교부되는 持分證券(假株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 株式의 發行價額

- (1) 주식은 권면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 (2) 권면액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10 조 株式과 假株券

- (1) 주식은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2) 주식은 권면액 또는 권면액 이상의 발행가액의 전액납입 이전에 발행하는 때에는 기명식이어야 한다. 분할납입의 금액은 이를 주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假株券은 기명식이어야 한다.
- (4) 무기명식 假株券은 무효이다.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발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1 조 特別한 種類의 株式

주식에서 다른 종류의 권리, 특히 이익과 회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다른 종류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식은 한 종류로 한다.

제 12 조 議決權, 複數議決權의 禁止

- (1) 각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優先株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2) 복수의의결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주소가 있는 州의 경제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최고관청은 주요한 전체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3 조 株式의 署名

주식과 假株券의 서명은 복제된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서명의 효력은 특별한 방식의 준수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방식규정은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管 轄

이 법률에서 법원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소의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結合企業

법률상 독립한 기업으로서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被多數參加企業과 多數參加企業 (제16조), 從屬企業과 支配企業 (제17조), 콘체른企業 (제18조), 相互參加企業 (제19조) 또는 企業契約의 계약당사자 (제291조, 제292조)로 되어 있는 것은 결합기업으로 한다.

제 16 조 被多數參加企業과 多數參加企業

- (1) 법률상 독립한 기업의 지분의 다수가 다른 기업에 속하거나 또는 의결권의 다수가 다른 기업에 속하는 경우(多數參加)에는 그 기업은 被多數參加企業이며, 다른 기업은 그에 대한 多數參加企業이 된다.
- (2) 持分の 어느 정도가 한 기업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資本會社에 있어서는 그 기업에 속하는 지분의 총권면액의 명목자본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정하고, 또 鑛山法上的 鑛山會社에 있어서는 鑛業持分の 수에 따라서 정한다. 自己持分은 資本會社에서는 명목자본에서 공제하고, 鑛山法上的 鑛山會社에 있어서는 鑛業持分の 수에서 공제한다. 기업의 계산으로 타인에 속하는 지분은 그 기업의 自己持分과 동일시된다.
- (3) 의결권의 어느 정도가 한 기업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자기에 속하는 지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의 의결권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정한다. 자기지분에 의한 의결권과 제2항 제3문에 의하여 자기지분과 동일시되는 지분에 의한 의결권을 의결권총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4) 한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에 속하거나 기업 또는 그에 종속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다른 기업에 속하는 지분 및 기업의 소지인이 개인상인인 때에는 소지인의 그 밖의 재산인 지분도 그 기업에 속하는 지분으로 본다.

제 17 조 從屬企業과 支配企業

- (1) 법률상 독립한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지배기업)이 이에 대하여 직접 또

- 는 간접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종속기업으로 한다.
- (2) 被多數參加企業은 多數參加企業에 종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8 조 콘체른과 콘체른企業

- (1) 하나의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통일적 지휘 하에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업들은 하나의 콘체른을 형성하며, 개개의 기업은 콘체른기업이 된다. 그들 사이에 지배계약(제291조)이 있거나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은(제319조) 통일적 지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과 콘체른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법률상 독립한 수개의 기업이 그 중 하나가 다른 기업에 종속하지 아니하고 통일적 지휘하에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수개의 기업도 콘체른을 형성하며, 그 각 기업은 콘체른기업이 된다.

제 19 조 相互參加企業

- (1) 자본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의 형태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으로서 그 각 기업에 다른 기업의 지분의 4분의 1 이상이 속함으로써 결합되어 있는 것은 상호참가기업으로 한다. 한 기업에 다른 기업의 지분의 4분의 1 이상이 속하고 있는가의 여부의 결정은 제16조 제 2항 제1문과 제4항에 의한다.
- (2) 상호참가기업의 하나가 다른 기업에 다수참가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업은 지배기업으로 보고, 그 다른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본다.
- (3) 상호참가기업의 각 기업이 다른 기업에 다수참가를 하거나 또는 그 각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兩企業을 지배적이고 뜬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배 또는 종속기업으로 보는 기업에는

제32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通知義務

-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주식회사의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한 기업에 속하는 때에는 그 기업은 지체없이 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그 기업에 속하는가의 여부의 결정은 제16조 제2항 제1문 및 제4항에 의한다.
- (2) 제1항에 의한 통지의무에 있어서 기업에 속하는 주식에는 다음의 주식을 산입한다.
 1. 그 기업,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 또는 다른 자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그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주식,
 2. 그 기업,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 또는 다른 자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수수할 의무가 있는 주식
- (3) 그 기업이 자본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인 경우 제2항에 의한 주식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그 기업에 속하는 때에는 그 기업은 이것도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그 기업에 다수참가(제16조 제1항)가 속하는 때에는 이것도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그 참가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한 참가의 존재를 지체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공고에는 동시에 참가가 속하는 기업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게 되었음이 회사에 통지된 때에는 이것도 지체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7)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 속하는 주식으로 인한 권리는 그 기업이 통지를 하지 아니 하는 동안은 그 기업,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 또는 다른 자에 의하여 그 기업이나 그 기업에 종속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제 21 조 會社의 通知義務

- (1) 국내에 주소가 있는 다른 자본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의 지분의 4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소유하는 때에 그 회사는 참가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분의 4분의 1 이상이 회사에 속하는가의 여부의 결정은 제16조 제2항 제1문 및 제4항에 의한다.
- (2) 회사가 다른 기업에 다수참가(제16조 제1항)를 하는 때에는 다수참가가 존재하는 그 기업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참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 정도에 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다른 기업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 회사에 속하는 지분으로 인한 권리는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22 조 通知된 參加의 證明

제20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은 언제든지 참가의 존재가 자기에게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會社의 設立

제 23 조 定款의 確定

- (1)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공증인이 인증한 대리권의 수여가 있어야 한다.

(2) 이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기인
2. 권면액, 발행가액 및 수종의株式이 있는 때에는 각 발기인이 인수하는株式의 종류
3. 납입된 기본자본의 액

(3) 정관은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주소
2. 회사의 목적; 특히 공업과 상업인 경우에는 생산되고 거래될 제품과 상품의 종류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기본자본의 액
- 4.株式의 권면액과 각 권면액의株式의 수 및 수종의株式이 있는 때에는 각株式의 종류와 각 종류의株式의 수
- 5.株式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지 아니면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지의 여부
6. 이사의 수 또는 그 수를 결정하는 규칙

(4) 그밖에 정관은 회사의 공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정관은 명백하게 허용된 경우에만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관을 보충하는 규정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법률이 한정적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24 조 株式의 轉換

정관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株式을 기명株式으로 또는 기명株式을 무기명株式으로 전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會社의 公告

이 법률 또는 정관이 회사의 공고를 회사공고지에 의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공고는 聯邦官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정관은 다른 紙面을 회사공고지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特別利益, 設立費用

- (1) 개개의 주주에게 또는 제3자에게 부여된 특별이익은 정관에 그 권리자를 표시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2) 회사설립 또는 그 준비를 위한 보상 또는 보수로서 회사의 부담으로 주주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총비용은 정관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3) 정관에 이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를 한 후에는 이 무효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치유되지 아니한다.
- (4) 위의 정함은 회사가 5년간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비로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5) 本條의 정관상의 정함은 회사가 30년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고,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적어도 5년전에 종료한 때에 비로소 정관변경에 의하여 없앨 수 있다.

제 27 조 現物出資. 財産引受

- (1) 주주가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의 납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자를 할 때(현물출자) 또는 회사가 현존하거나 창설될 시설 기타 재산을 인수할 때(재산인수)에는 정관에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물,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는 상대방 및 현물출자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주어지는 주식의 권면액, 재산인수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상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재산을 인수하면서 보상을 부여하고, 그것이 주주의 출자로 계산된다면 이는 현물출자로 간주된다.
- (2)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재산만을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할 수 있다; 용역을 제공할 의무는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할 수 없다.
- (3) 제1항의 정함이 없다면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한 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가 등기되어 있

는 때에는 정관의 효력은 이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 물출자의 합의가 무효인 때에는 주주는 주식의 액면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 (4) 상업등기부에 회사가 등기된 후에 이 무효는 정관변경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 (5) 법률상 유효하게 이루어진 정함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제26조 제4항을 적용하고, 정관규정의 제거에 대해서는 제26조 제5항을 적용한다.

제 28 조 發起人

정관을 확정된 주주는 회사의 발기인이다.

제 29 조 會社의 創立

발기인에 의한 총주식의 인수로서 회사는 창립된다.

제 30 조 監事會, 理事會, 決算檢查人의 選任

- (1) 발기인은 최초의 감사회와 최초의 쏘영업년도 또는 中間영업년도를 위한 결산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한다.
- (2) 최초의 감사회의 구성과 선임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감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최초의 감사회의 구성원은 최초의 쏘영업년도 또는 中間영업년도에 대한 면책을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 이상의 장기간을 위하여 선임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최초의 감사회의 임기가 끝나기에 앞서 상당한 시기에 그의 의견에 의하면 차기 감사회가 어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내지 제99조를 적용한다.

(4) 감사회는 최초의 이사회를 선임한다.

제 31 조 現物出資의 경우의 監事會의 選任

- (1)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으로서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출자 또는 인수가 정관에 정하여진 때에는 발기인은 그들의 의견에 의하여 출자 또는 인수후 감사회의 구성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들은 선출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고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러나 감사가 2인만인 때에는 발기인은 3인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회는 半數, 그러나 적어도 3인의 감사가 결의에 참가한 때에는 결의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출자 또는 인수가 있는 후 지체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7조 내지 제99조를 준용한다. 감사회가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되는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할 때 또는 발기인이 3인의 감사를 선임하였으나 감사회가 종업원의 감사들로도 구성되어야 할 때에만 종전의 감사의 직무가 종료한다.
- (4) 제3항의 규정은 제30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이사회의 공고가 있는 후에 비로소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가 출자 또는 인수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30조 제3항 제1문은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 32 조 設立報告書

- (1) 발기인은 설립의 경과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보고서).

- (2) 보고서에는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급부가 상당한가의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설명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에 의한 취득을 목적으로 한 先行 법률행위
 2. 최종의 2년간의 취득 및 제작비
 3. 회사에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종의 2년간의 경영수익
- (3) 설립보고서에는 이 밖에 설립에 있어서 이사 또는 감사가 받을 특별이익 또는 설립이나 그 준비를 위한 보상 또는 보수를 약속하였는가의 여부와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3 조 設立檢査·總則

- (1) 이사 및 감사는 설립의 경과를 검사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이 밖에 1인 이상의 검사인(설립검사인)에 의한 검사가 있어야 한다.
1.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인 때 또는
 2. 설립에 있어서 이사 또는 감사의 계산으로 주식이 인수되었을 때 또는
 3.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구성원이 특별이익 또는 설립이나 그 준비를 위한 보상이나 보수를 약속한 때 또는
 4.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가 있는 설립인 때
- (3) 설립검사인은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선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 (4) 검사에 다른 지식을 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검사인은 다음의 자로써 선정하여야 한다.
1. 簿記에 관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그 법률상 대표의 적어도 1인이 부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검사 회사
- (5) 제14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특별검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설

립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발기인 또는 발기인이 그 사람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및 검사회사에 대하여서도 같다.

제 34 조 設立檢査의 範圍

-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검사 및 설립검사인에 의한 검사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식의 인수, 기본자본에의 납입 및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정함에 관한 발기인의 기재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여부.
 2.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가액이 그에 대하여 부여될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에 대하여 부여될 급부의 가액에 달하는지 여부.
- (2) 모든 검사에 관하여는 전항의 상황을 설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물과 그 가치평가에 어떤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기재하여야 한다.
- (3) 설립검사인의 보고서의 1통은 법원, 이사회 및 상공회의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누구든지 법원과 상공회의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 35 조 發起人과 設立檢査人과의 意見의 相違, 設立檢査人의 報酬 및 替當金

- (1) 설립검사인은 발기인에게 면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명과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 (2) 발기인이 할 설명과 증명의 범위에 관하여 발기인과 설립검사인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취소하지 못한다. 발기인이 이 결정에 따를 것을 거절하는 동안은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3) 설립검사인은 상당한 현금체당금의 보상과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이 있다. 체당금과 보수는 법원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하지 못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다.

제 36 조 會社의 申告

- (1) 회사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모든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에 의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는 현물출자의 합의가 없는 한 각 주식에 대하여 최고된 금액이 적법하게 납입되고 (제54조 제3항), 또 설립에 있어 부과된 조세와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지 않는 한 중국적으로 이사회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 때 비로소 할 수 있다.

제 36a 조 出資의 履行

- (1) 현금출자에 있어서는 최고되는 금액(제36조 제2항)이 권면액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권면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도 포함해야 한다.
- (2) 현물출자는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재산을 회사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현물출자에 있어서는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5년 이내에 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치는 권면액에 상응해야 하며, 권면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도 상응해야 한다.

제 37 조 申告의 內容

- (1) 신고에는 제36조 제2항과 제36a조의 전제가 이행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동시에 주식을 발행한 가액과 이에 대하여 납입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납입된 금액을 중국적으로 이사회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금액이 독일 연방은행 또는 신용기관(제54조 제3항)에서 회사 또는 이사회에 계정으로 대변기재

- 에 의하여 납입된 때에는 그 증명은 그 기관의 증명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정확성에 관하여는 그 기관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납입된 금액에서 조세와 수수료가 지급된 때에는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2) 신고에는 제76조 제3항 제2문과 제3문에 의한 이사의 선임에 반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사가 법원에 대하여 무제한의 정보 제공의무를 진다는 설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1976년 7월 22일 공포된 등기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한 설명은 공증인도 할 수 있다.
- (3) 신고에는 그 밖에 이사가 어떤 대표권을 갖는지 표시하여야 한다.
- (4) 신고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정관을 확정된 서면 및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서면;
 2. 제26조와 제27조의 경우에는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회사가 부담하는 설립비용의 계산서; 계산서에는 보수를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또 수령인을 각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선임에 관한 서류;
 4. 이사회, 감사회 및 설립검사인의 설립보고서와 검사보고서 및 그 서면자료; 이 밖에 설립검사인의 보고서가 상공회의소에 제출되었다는 증명서;
 5. 기업의 목적 또는 다른 정관규정이 국가의 인가를 요하는 때에는 그 인가서.
- (5) 이사는 법원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6)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법원에서 보존한다.

제 38 조 法院에 의한 檢査

- (1) 법원은 회사가 적법하게 창립되고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등기를 거절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설립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법률규정에 위반한 것을 설립검사인이 지적한 때 또는 그것이 명백한 때에도 법원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가액이 이에 대하여 부여될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에 대하여 부여될 급부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미달함을 설립검사인이 지적하거나 또는 법원이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9 조 登記의 公告

- (1) 회사의 등기에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기업의 목적, 기본자본의 액, 정관의 확정일 및 이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밖에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 (2) 정관에 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認許資本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 40 조 登記의 公告

- (1) 등기의 공고에는 등기의 내용 이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3항,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정함 및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정관의 규정;
 2. 주식의 발행가액;
 3. 발기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4. 최초의 감사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2) 동시에 신고할 때 제출된 서류, 특히 이사, 감사 및 설립검사인의 검사보고서는 법원에서 또 설립검사인의 검사보고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또 열람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登記前의 會社名義의 行爲. 株式發行의 禁止

- (1)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전에는 주식회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 등기전에 회사의 명의로 행위한 자는 그 자신이 책임을 진다. 수인이 행위한 때에는 그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2) 회사가 그 등기전에 그 명의로 부담한 채무를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고 회사가 종전의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된 경우에 그 채무 인수가 회사의 등기후 3개월내에 합의되고, 회사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통지한 때에는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이익, 설립비용,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는 회사가 인수하지 못한다.
- (4) 회사의 등기전에는 持分權을 양도하지 못하며, 주식 또는 假株券을 발행하지 못한다. 등기전에 발행된 주식 또는 假株券은 효력이 없다.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발행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 42 조 支店의 設置

- (1) 지점의 설치는 이사회가 지점소재지의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회사주소 소재지의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정관의 공적으로 인증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주소 소재지의 법원은 그 신고서가 오로지 다른 지점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지체없이 그 신고서에 그 등기의 인증된 등본을 첨부하여 지점 소재지의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 이사 및 오로지 다른 지점의 영업에 지배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지배인은 지점 소재지의 법원에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지배인은 상호도 서명하여야 한다.
- (3) 지점 소재지의 법원은 지점이 설치되었는가의 여부와 상법 제30조를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정한 때에는 법원은 지점을 등기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지된 사실로서 주소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것은 검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에는 제39조에

의한 사항과 지점의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등기하여야 한다.

- (4) 등기의 공고에는 그 등기의 내용 이외에 제23조 제3항과 제4항, 제24조 및 제25조 제2문의 정함 및 이사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그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 최초의 2년내에 지점 소재지의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지점의 설치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의 공고에는 제40조에 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소의 법원은 신고서의 이송에 있어서 회사의 주소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원의 공고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지점의 등기는 주소의 법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통지되고,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기재되어야 한다. 이 기재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6) 본조의 규정은 지점의 폐지에 준용한다.

제 43 조 既存支店の取扱

- (1) 상업등기부에 지점이 등기된 때에는 회사 주소지의 영업소 또는 등기된 지점에 관한 신고는 주소지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영업소가 있는 수와 같은 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소지의 법원은 연방관보에 하는 그 등기의 공고에 그 지점에 관한 동일한 등기를 특히 표시한 지점의 법원에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가문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주소지의 법원은 다시 등기를 공고한 연방관보의 호수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지점의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신청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의 법원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를 상업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지점의 등기부에 한 등기의 공고에는 주소지의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였다는 것과 그 등기가 공고된 연방관보의 호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연방관보에는 지점의 상업등

기부에 한 등기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 (4) 신고가 오로지 개개의 지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주소지의 법원을 위하여 정하여진 서류 이외에 관계되는 지점 수대로의 서류가 되출되어야 한다. 주소지의 법원은 관계되는 지점의 법원에 대하여서만 그 등기를 통지한다. 주소지의 등기부에 한 등기는 이 경우에는 연방관보에만 공고한다.
-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서류의 제출 및 서명에 준용한다.

제 44 조 外國에 住所가 있는 會社의 支店

- (1) 외국에 회사의 주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는 지점이 있는 地의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공증된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로서의 성립 및 기업의 목적 또는 국내에서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법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신고에 있어서는 제23조 제3항과 제4항, 제24조 및 제25조 제2항에 의한 정함,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및 회사가 그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를 한 후 2년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제40조 제1항에 의한 그 밖의 사항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에 관하여 행하여진 법원의 공고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등기는 제39조에 의한 사항 및 지점의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 부가문자가 있는 때에는 이 부가문자도 등기하여야 한다.
- (4) 등기의 공고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내용 이외에 제40조 제1항에 의한 사항도 그것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5) 이 밖에 신고, 서명 및 등기에 관하여는 외국법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주소에서의 지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 조 住所移轉

- (1) 회사의 주소를 국내에서 이전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소의 법원에 그 이전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주소를 종전의 주소의 법원의 관할구역의 밖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그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새로운 주소의 법원에 그 이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종전의 주소에 관한 등기 및 종전의 관할법원에 보존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새로운 주소의 법원은 이전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법 제30조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정한 때에는 법원은 주소이전을 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통지받은 등기를 심사하지 않고 그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주소이전은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종전의 주소의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말소를 하여야 한다.
- (3) 원주소의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를 한 후, 2년내에 종전의 주소의 법원의 관할구역의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의 공고에는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모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주소를 종전의 주소의 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때에는 그 법원은 그 주소이전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 및 상법 제30조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주소이전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주소이전은 그 효력이 생긴다.

제 46 조 發起人의 責任

- (1)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주식의 인수, 주식에 대한 납입, 납입된 금액의 사용, 특별이익, 설립비용,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관한 기재사항의 정확하고 완전한 것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발기인은 이 밖에 기본자본에 대한 납입을 수령할 장소(제54조 제3항)가 그에 적당한 것과 납입된 금액을 이사회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발기인은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설립비용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보수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이외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회사가 발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출자, 재산인수 또는 설립비용을 통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모든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3) 발기인이 배상 의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통상의 거래인의 주의로서도 이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4) 주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물출자의 이행능력이 없음으로써 회사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주주의 그 지급능력의 결여 또는 이행능력의 결여를 알면서 그 주주의 참가를 받아 들인 발기인은 연대책무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5) 발기인 이외에 발기인이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그 타인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그 자는 그의 계산에서 행위하는 발기인이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그 자신의 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 47 조 發起人 이외의 者의 責任

발기인과 발기인이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의 그 타인과 더불어 다음의 자는 연대책무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1. 규정에 위반하여 설립비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보수를 수령함에 있어서 그 은닉을 기도하였거나 은닉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자 또는 알고 있어야 할 상황하에 있었던 자 또는 그 은닉을 알면서 협력한 자;
2. 출자 또는 재산인수를 통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알면서 그 손해발생에 협력한 자;
3.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기재사항(제46조 제1항)의 부정확이나 불완전을 또는 출자나 재산인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알면서 또는 통상의

거래인의 주의로써 알 수 있었을 경우 주식의 유통을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회사가 등기하기 전 또는 등기후 2년내에 주식을 공고한 자

제 48 조 理事會 및 監事會의 責任

이사와 감사로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의무에 위반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의무가 있다; 이사와 감사는 특히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인수에 관하여 정하여진 장소(제 54조 제3항)가 적합한 것과 납입된 금액을 이사회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밖에 이사와 감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93조 제4항 제3문, 제4문 및 제6항을 제외하고 제93조와 제116조를 적용한다.

제 49 조 設立檢査人의 責任

설립검사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23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 50 조 拋棄와 和解

회사는 발기인, 발기인과 더불어 책임이 있는 자 및 이사와 감사(제46조 내지 제48조)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가 있은 후 3년이 지나서 비로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고, 지분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의사록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를 포기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기간의 제한은 배상의무자의 지급능력이 없어지고 파산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그의 채권자와 화해를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賠償請求權의 時效

제46조 내지 제49조에 의한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5년으로써 시효가 완

성한다. 시효기간은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를 한 때 또는 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그 보다 늦게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실행한 때부터 개시한다.

제 52 조 事後設立

- (1) 회사가 현존하거나 설치될 시설 또는 기타의 재산을 기본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대가로 취득할 계약이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가 있는 후 2년내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있고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만 그 효력이 있다. 주주총회의 동의 또는 상업등기부에의 등기가 없으면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도 그 효력이 없다.
- (2) 제1항에 의한 계약에는 다른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서면방식을 요한다. 계약서는 동의를 결의할 주주총회의 소집의 때로부터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주주총회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의사를 개시할 때 그 계약서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 계약서는 의사록에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3) 감사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앞서 그 계약서를 검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후설립보고서). 사후설립보고서에 대하여는 설립보고서에 관한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4) 이 밖에 결의에 앞서 1인 또는 수인의 설립검사인에 의한 검사가 있어야 한다. 설립검사에 관한 제3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5)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결의에 있어서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결을 요한다. 그 계약이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가 있는 후 최초의 1년내에 체결된 때에는 이 밖에 동의한 다수주주의 지분은 적어도 총기본자본의 4분의 1에 달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이 다수결 대신에 보다 많은 자본다수결 및 그 밖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6)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이사회는 그 계약을 상업등기부에 등

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계약원본, 정본 또 공증된 등본을 서면상의 증거를 붙인 사후설립보고서 및 설립검사인의 보고서와 더불어 첨부하여야 한다.

- (7) 사후설립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 또는 법률규정에 위반되었다는 것 또는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설립검사인이 설명하거나 또는 명백함으로써 등기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등기를 기각할 수 있다.
- (8) 등기에 있어서는 제출된 서류를 인용함으로써 충분하다. 등기의 공고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주주총회가 동의한 날, 취득할 재산, 회사가 그 재산을 취득한 상대방 및 부여하는 대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9) 본조의 규정은 재산의 취득이 기업의 목적을 구성할 때 또는 그것이 강제집행에서 취득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제1항에 의한 계약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한 발기인의 계약이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잃음으로써,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가 있는 후 2년내 또는 그 후에 체결되었든 관계없이,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 53 조 事後設立에서의 賠償請求

사후설립에 대하여는 회사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제46조,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를 준용한다. 발기인 대신에 이사와 감사로 한다. 이들은 통상의 그리고 성실한 업무집행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이 상업등기부에 회사의 등기를 함으로써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후설립에 관한 계약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제 53a 조 株主의 平等取扱

주주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 54 조 株主의 主된 義務

- (1) 주주의 출자이행 의무는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으로 제한된다.
- (2) 정관에 현물출자의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신고 이전에 납입이 최고된 금액은 법률상의 지급수단으로서만, 독일 연방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표로, 독일 연방은행 또는 신용기관의 국내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또는 회사나 이사회가 우편수표계좌로 이사회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납입할 수 있다. 이 납입으로 인한 이사회가 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본다.

제 55 조 株主의 從된 義務

- (1) 주식의 양도에 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기본자본에 대한 출자 이외에 금전 이외의 반복적 급부를 할 의무를 주주에게 부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급부가 유상으로 하여지는가 또는 무상으로 하여지는가 하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 이 의무와 급부의 범위는 주권과 假株券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정관으로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自己株式의 引受禁止. 會社의 計算으로 하는 株式의 引受 또는 從屬企業이나 被多數參加企業에 의한 株式引受

- (1) 회사는 자기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 (2) 발기인이나 인수인으로서 또는 조건부 자본증가에서 부여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있어서 종속기업은 지배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며, 피다수참가기업은 다수참가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한다. 이상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그 주식인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3) 발기인이나 인수인으로서 또는 조건부 자본증가에서 부여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있어서 회사의 계산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피다수참가기업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 자는 회사 또는 종속회사나 피다수참가회사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전액을 출자할 책임이 있다. 이 자가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는 주식으로 인한 권리가 그에게 귀속하지 아니한다.
- (4) 자본증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이 인수된 때에는 회사의 이사도 모두 전액 납입할 책임을 진다. 이것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이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 出資의 返還禁止, 利子禁止

- (1) 출자는 주주에게 반환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 경우의 취득가액의 지급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주주에 대하여는 이자를 약속하거나 지급하지 못한다.

제 58 조 年度剩餘金の 處分

- (1) 정관에는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만 연도잉여금으로부터 임의준비금으로 금액을 적립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최고액 연도잉여금의 2분의 1을 임의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과 결손이월금은 연도잉여금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2) 이사회와 감사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하는 때에는 연도잉여금의 일부를 최고액 그 2분의 1까지 임의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정관으로 이사회와 감사회에 연도잉여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준비금이 기본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또는 임의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그 금액이 기본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인 때에는 이사회와 감사회는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임의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다. 제1항 제3문을 이에 준용한다.

- (2a)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는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가치상승으로부터 그리고 세법상의 이익산출에서 형성된, 특별항목에서 준비금으로 표시될 수 없는 소극항목으로부터 자기자본지분을 임의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준비금의 금액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되거나 부속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3) 주주총회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이익으로 이월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또 정관에 수권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문에 의한 처분 이외의 다른 처분 또는 주주에의 배당 이외의 다른 처분도 결의할 수 있다.
- (4) 주주는 그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이익처분결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서 주주에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
- (5) 회사의 해산전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만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 59 조 貸借對照表利益의 假配當

- (1) 정관으로 영업년도 경과 후 예상되는 대차대조표이익에서 주주에게 假支給을 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過營業年度에 관한 假決算에서 연도잉여금이 생기는 때에만 假支給을 할 수 있다. 假支給으로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연도잉여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최고 2분의 1이 지급될 수 있다. 이 밖에 假支給은 前年度 대차대조표이익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假支給에는 감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 60 조 利益配當

- (1) 이익에 대한 주주의 지분은 주식의 권면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2) 기본자본에 대한 출자가 모든 주식에 관하여 동일한 비율로 이행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이행한 출자의 100분의 4의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부터 먼저 받는다. 이익이 이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은 그에 상응한 낮은 액에 따라서 정한다. 영업년도의 도중에 이행한 출자는 그 출자이행을 한 후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고려한다.
- (3) 정관으로 이익배당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 61 조 從된 給付의 報償

주주가 정관에 의하여 자본에 대한 출자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반복적 급부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이익이 나타나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급부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2 조 禁止된 給付를 수령한 경우의 株主의 責任

- (1) 주주는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주주가 이익배당 또는 이자로서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반환의무가 있다.
- (2)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면 회사채권자도 회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은 파산관재인이 주주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 (3) 본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급부를 수령한 때로부터 5년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제 63 조 정당한 時期에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의 效果

- (1) 주주는 이사회 의 최고에 따라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최고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최고받은 금액을 정당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연 5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손해의 주장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3) 정당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하여 정관으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제 64 조 納入을 지체한 株主의 失權

- (1) 최고된 금액을 정당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주주의 주식과 이행한 출자를 상실한다는 예고를 붙여서 한다.
- (2) 유예기간은 회사공고지에 3회 공고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적어도 3월전에 하여야 하고, 최후의 공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적어도 1월전에 하여야 한다. 매회의 공고 사이에는 적어도 3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식의 양도에 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때에는 공고대신에 출자를 지체한 주주에 대한 1회의 개별적인 최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그 최고의 수령후 적어도 1월이 되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
- (3) 최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회사공고지에 공고를 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주식과 납입된 출자를 상실함을 선언한다. 공고에는 상실되는 것으로 선언된 주식을 그 구별표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 (4) 舊株券에 대신하여 新株券을 교부한다; 주권에는 분납된 출자액 이외에 체납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금액 또는 그 후에 최고된 금

액에 대한 회사의 결손액에 관하여는 실권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 65 조 前者의 納入義務

- (1) 실권된 주주의 전자로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체납된 금액이 그 후자에 의하여 납입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납입의 의무가 있다. 회사는 종전의 주주에 대한 납입최고에 관하여 그 직접의 전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최고 및 전자의 통지가 있을 후 1월내에 납입이 없는 때에는 납입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체납금액의 납입에 대하여는 新證券이 교부된다.
- (2) 모든 전자는 2년내에 최고된 금액의 납입에 대하여서만 의무가 있다. 그 기간은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신고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3) 전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주식을 시장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소가격으로 또 거래소가격이 없으면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에서의 경매에 의하여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식을 적당한 곳에서 매각하여야 한다. 경매의 시기, 장소 및 대상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실권된 주주와 그 전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공고와 통지는 적어도 경매의 2주간전에 하여야 한다.

제 66 조 株主의 給付義務의 免除禁止

- (1) 주주와 그의 전자는 제54조와 제65조에 의한 급부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제54조와 제65조에 의한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2) 제1항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령한 급부의 반환의무, 실권한 주주의 결손액에 관한 책임 및 현물출자의 부당한 급부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 (3) 주주는 통상의 자본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으로 하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출자이행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자본감소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고 기본자본이 감소된 금액만큼 면제될 수 있다.

제 67 조 株主名簿에 하는 登錄

- (1) 기명주식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지인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2)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주주가 된다.
- (3) 회사의 의견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불법으로 주주로서 등록된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관계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소를 통지하고, 이의를 주장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이 기간내에 이의를 한 때에는 말소는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본조의 규정은 假株券에 대하여 준용한다.
- (5) 모든 주주는 주주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8 조 記名株式의 讓渡, 株主名簿의 名義改書

- (1) 기명주식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의 방식, 소지인의 권리증명 및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어음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2)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동의는 이사회가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감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동의를 결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 있다.
- (3) 기명주식을 타인에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권을 제시하고 양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 (4) 회사는 배서의 연속의 정부와 양도의 의사표시를 검사할 의무는 있지만, 서명을 검사할 의무는 없다.
- (5) 본조의 규정은 假株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69 조 株式에 관한 權利의 共有

- (1) 하나의 주식이 수인의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주식에서 생기는 권리는 1인의 공동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2) 주식에 대한 급부에 관하여는 그 수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3)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 권리자가 회사에 대하여 공동의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인의 권리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1인의 주주에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1월이 경과하여 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제 70 조 株式占有期間의 計算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행사에 주주가 일정기간 주권의 소지인임을 요하는 때에는 신용기관에 대한 이전청구권은 소유권과 동일시한다.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그의 수탁자로부터 포괄승계인으로서 합유공동체의 청산에 있어서 취득하였거나 또는 보험감독법 제14조과 건축금고법 제14조에 의한 영업양도에 있어서 취득한 때에는 前권리자의 소유기간은 주주의 소유기간에 가산한다.

제 71 조 自己株式의 取得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목전의 현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취득이 필요한 때,
 2. 주식이 회사 또는 회사와 결합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취득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때,

3. 제305조 제2항 또는 제320조 제5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代償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된 때,
 4.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신용기관이 그 취득으로서 매수위탁을 실행하는 때,
 5. 포괄적 권리승계에 의할 때 또는 6.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가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한 때.
-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의 권면액 총액은 회사가 이미 취득하고 아직 점유하는 회사의 다른 주식의 금액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회사가 상법 제272조 제4항에 의하여 규정된 준비금을 기본자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적립할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준비금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자기주식을 위하여 형성할 수 있는 때에만 그 취득이 가능하다.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하여 권면액 또는 권면액 이상의 발행액이 전액 납입된 때에만 취득할 수 있다.
- (3)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주주총회에 취득의 이유와 목적, 취득한 주식의 수와 권면액, 기본자본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및 주식의 현재가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은 자기주식의 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채권법적 행위는 무효이다.

제 71a조 脫法行爲

- (1)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선금금 또는 소비대차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해주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는 신용기관의 통상적 업무범위에서의 법률행위 및 회사 또는 회사와 결합된 기업의 근로자가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선금금이나 소비대차의 제공 또

는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기본자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적립해야 할,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처분해서는 안되는 준비금을 감소하지 않고서는 상법 제272조 제4항에 의하여 규정된 자기주식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 또한 제3자가 회사 또는 종속기업 또는 피다수참가기업의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회사에 의한 취득이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 무효이다.

제 71b조 自己株式으로 인한 權利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인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71c조 自己株式의 讓渡 및 消却

- (1)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 (2)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여 아직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기본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 (3) 자기주식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7조에 의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제 71d조 제3자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

자기명의로, 그러나 회사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는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종속기업 또는 피다수참가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및 자기명의로, 그러나

종속기업 또는 피다수참가기업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71조 제2항 제1문 및 제71c조 제2항에 의한 액면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은 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그 밖에 제71조 제3항과 제4항, 제71a조 내지 제71c조가 준용된다. 제3자 또는 기업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식의 시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71e 조 自己株式의 質取

- (1) 자기주식을 질물로서 취득한 때에는 제71조 제1항과 제2항, 제71d조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신용기관은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액면총액까지 자기주식을 질물로서 취득할 수 있다. 제71a조가 준용된다.
- (2) 제1항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질취는 그 주식에 대하여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효력이 없다. 자기주식의 질취에 관한 채권법적 행위는 그 취득이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무효이다.

제 72 조 公示催告節次에 의한 株券의 失效宣言

- (1) 주권 또는 假株券을 분실하거나 또는 멸실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시최고절차에 따라서 그 증권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민법 제799조 제2항과 제800조가 준용된다.
- (2) 무기명식 이익배당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주권 또는 假株券의 무효선언과 더불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익배당증권상의 청구권도 소멸한다.
- (3) 제73조 또는 제226조에 의한 주권의 무효선언은 제1항에 의한 증권의 무효선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3 조 會社에 의한 株券의 失效宣言

- (1) 주권의 내용이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정 또는 교환을 위하여 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한 주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실효를 선언할 수 있다. 그 부정확이 주식의 권면액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권면액을 감소한 때에만 실효를 선언할 수 있다. 기명주식은 주주의 기재가 부정확함을 이유로 실효를 선언하지 못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허가하는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 (2) 주권의 제출을 최고함에는 실효선언을 예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인용하여야 한다. 실효선언은 제64조 제2항에서 유예기간에 관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최고를 공고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실효선언은 회사공고지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공고는 주식이 실효선언되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선언되는 주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실효선언된 주권 대신에 新株券을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공탁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교부 또는 공탁은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기본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때에는 제226조를 적용한다.

제 74 조 손상 또는 훼손된 株券 또는 假株券을 대신하는 新證券

주권 또는 假株券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그 증권이 유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그 증권의 중요한 내용과 구별의 표준이 아직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때에는 권리자는 舊證券의 인도와 상환하여 新證券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하고 선납하여야 한다.

제 75 조 新利益配當證券

주권 또는 가주권의 점유자가 신이익배당증권의 발행에 이의를 하는 때

에는 갱신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신이익배당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신이익배당증권은 본증권을 제시하는 주권 또는 가주권의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株式會社の組織

제 1 절 理事會

제 76 조 株式會社の指揮

- (1) 이사회는 자기책임하에 회사를 지휘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1인 또는 수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0만 도이취 마르크 이상의 자본액을 가진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1인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정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는 적어도 2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노무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이사회 구성원은 자연인이며,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만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83조 내지 제283d조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의 확정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이사가 될 수 없다;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시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집행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어떤 직업 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금지가 효력을 갖는 동안에는 기업의 목적이 금지의 대상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 77 조 業務執行

- (1) 이사회가 수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 전원은 공동으로써만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정관 또는 이사회 업무규정은 이와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또는 수인의 이사가 이사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회 의견의 차이를 결정할 것을 정하지 못한다.

- (2) 정관으로 업무규정의 제정을 감사회에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회가 이사회를 위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는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관은 업무규정의 개개의 문제를 구속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업무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은 전원 일치로써 하여야 한다.

제 78 조 代 表

- (1) 이사회는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 (2) 이사회가 수인으로 구성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3) 정관으로 각 이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배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감사회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때에는 감사회는 동일하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2문을 준용한다.
- (4)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이사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특정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의 이사가 지배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79 조 理事에 의한 署名

이사는 회사의 상호 또는 이사회의 명칭에 그의 서명을 부기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서명한다.

제 80 조 營業書類에의 記載

- (1) 특정한 수령인 앞으로의 모든 영업서류에는 회사의 형태와 주소,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및 모

든 이사와 감사회의 의장의 성과 적어도 하나의 생략되지 아니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그 자체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기재해야 하고, 주식에 대하여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출자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기존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개개의 경우에 요구되는 특별한 기재가 단순히 부가될 필요가 있는 인쇄지를 사용하는 통지와 보고에는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의한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주문서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서류로 본다. 제2항은 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1 조 이사회와 변경과 이사의 대표권한의 변경

- (1) 이사회 의 변경 또는 이사의 대표권한의 변경은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위하여 이사회가 신고하여야 한다.
- (2) 그 신고서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의 원본 또는 공증된 등본을 회사 주소지의 법원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3) 신고서에서 새로운 이사는 그 선임에 제76조 제3항 제2문과 제3문에 반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과 법원에 대하여 무제한적 정보제공의무를 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제37조 제2항 제2문을 적용한다.
- (4) 새로운 이사는 법원에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82 조 代表權限과 業務執行權限의 制限

- (1) 이사회 의 대표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
- (2)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정관, 감사회, 주주총회 및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규정이 업무 집행권에 관하여 정한 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83 조 株主總會決議의 準備와 實行

- (1)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준비와 체결에 관해서도 같다.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그 사항 또는 계약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다수결을 요한다.
- (2)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 84 조 理事의 選任과 解任

- (1) 이사는 최장 5년을 임기로 하여 감사회가 선임한다. 중임 또는 임기의 연장은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중임 또는 임기의 연장에는 종전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 가장 빨라도 1년에 하여지는 새로운 감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5년 이하의 임기의 선임의 경우에는 쏘임기가 5년을 넘지 아니하면 새로운 감사회의 결의없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임용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계속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2) 수인이 이사로 선임된 때에는 감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 (3)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회는 이사의 선임과 이사회 의장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라 함은 중대한 의무위반, 통상의 업무집행에 관한 능력의 결여 또는 주주총회에 의한 신임의 박탈을 말한다. 그러나 그 신임이 명백하게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박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최초의 감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철회는 그 무효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임용계약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 (4) 1951년 5월 21일 광산기업과 철강생산산업의 감사회와 이사회에서의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광산공동결정법)에서 노무이사의 선

임 또는 그 선임의 철회에 관한 감사회 결의의 특별다수결요건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5 조 法院에 의한 選任

- (1) 필요한 이사를 결한 때에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는 어떤 경우에도 그 결원이 제거된 때에 소멸한다.
- (3)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상당한 현금에 의한 체당금의 배상 및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이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회사가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그 체당금과 보수를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확정력있는 판결에 따라서 한다.

제 86 조 理事의 利益參加

- (1) 이사에게 그 활동에 대하여 이익의 참가를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연도이익의 배당분이어야 한다.
- (2)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연도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부터의 손실이월금과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연도잉여금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연도잉여금에 의하여 배당분을 계산한다. 이에 반한 정함은 효력이 없다.

제 87 조 理事의 收入에 관한 原則

- (1) 감사회는 개개의 이사의 총수입(급료, 이익참가, 비용보상, 보험료, 수수료 및 각종의 부수적 급부)의 확정에 있어서는 그 총수입이 그 이사의 직무와 회사의 사정에 상당한가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것은 퇴직금, 유가족부조수당 및 유사한 종류의 급부에 준용한다.

- (2) 이사의 총수입의 확정후 회사의 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제1항 제1문에 의한 수입의 계속적인 급여가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공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또 제85조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사회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감액을 할 권한을 가진다. 임용계약은 기타의 점에서는 이 감액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사는 다음의 4분의 1 曆年の末을 終期로 하여 6주간의 고지기간으로써 그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파산관재인이 이사의 임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이사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 고용관계의 종료후 2년동안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 재판상의 화의절차가 개시되고, 회사가 임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같다.

제 88 조 競業禁止

- (1) 이사는 감사회의 동의를 없으면 상업을 하거나 그 자신 또는 타인의 계산에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사는 또 감사회의 동의를 없으면 다른 상사회사의 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감사회의 동의는 특정한 상업, 상사회사 또는 회사의 특정한 부류의 영업에 관하여서만 할 수 있다.
- (2) 이사가 이 금지에 위반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에 갈음하여 이사가 자기의 계산에서 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고 또 타인의 계산으로 한 거래로 인하여 생긴 보수를 인도하든가 또는 그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회사의 청구권은 다른 이사와 감사가 그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안 때로부터 3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청구권은 그 행위가 성립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제 89 조 理事에 대한 信用提供

- (1) 회사는 감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그 이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감사회의 결의는 특정한 신용행위 또는 특정한 종류의 신용행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하지 못한다. 그 결의는 이자지급 및 신용의 반환도 규율하여야 한다. 이사가 받을 급여를 초과하는 지출의 허락, 특히 급여에 대한 先給支出의 허락도 신용의 제공과 같다. 이는 1월의 봉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그 지배인과 전체영업경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감사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배회사는 그 감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종속기업의 법률상의 대표, 지배인 또는 전체영업경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감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 지배기업의 법률상의 대표, 지배인 또는 전체영업경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 내지 제5문이 준용된다.
- (3) 제2항은 이사, 다른 법률상의 대표, 지배인 또는 전체영업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또 이러한 자의 계산으로 또는 이사, 다른 법률상의 대표, 지배인이나 전체영업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의 계산으로 행위한 제3자에 대한 신용에도 적용한다.
- (4) 이사, 지배인 또는 전체영업경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사대리인이 동시에 다른 법인의 법률상의 대표 또는 감사이거나 또는 인적상사회사의 사원인 때에는 그 회사는 감사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그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이것은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가 그 회사와 결

합되어 있는 때 또는 회사가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에 공급하는 물건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신용이 제공된 경우에 감사회가 사후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에 반대되는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그 신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6) 회사가 신용기관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 대신에 신용제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0 조 監事會에 대한 報告

(1) 이사회는 감사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영업정책과 장차의 업무집행의 기타의 기본적인 문제;
2. 회사의 수익성, 특히 자기자본의 수익성;
3. 영업경과, 특히 판매 및 회사의 상황;
4. 회사의 수익성 또는 유동성에 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래.

이밖에 감사회의 의장에 대하여는 기타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알게 된 결합기업에서의 영업상의 사건으로서 회사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유로 본다.

(2)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1호에 의한 보고는 적어도 年1回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의 변경 또는 새로운 문제가 지체없는 보고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에 의한 보고는 연도결산서에 관하여 심의하는 감사회의 회의에서 하여야 한다;
3. 제3호에 의한 보고는 정기적으로 하되, 적어도 年4回 하여야 한다;
4. 제4호에 의한 보고는 가급적 거래를 하기 전에 감사회가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3) 감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결합기업에 대한 법률

상 및 영업상의 관계, 회사의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의 사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개의 감사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사회에 대한 보고에 한한다. 이사회가 보고를 거절한 때에는 다른 감사가 그 요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만 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4) 보고는 양심적이고 충실한 설명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각 감사는 보고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보고가 서면으로 된 경우에 감사회가 다른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요구에 따라 그 보고서는 각 감사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감사회 의장은 늦어도 차기 감사회 회의에서 제1항 제2문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각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1 조 帳簿作成

이사회는 필요한 상업장부가 작성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92 조 損失, 債務超過 또는 支給不能의 경우의 理事會의 義務

- (1) 연도대차대조표 또는 중간대차대조표의 작성에서 또는 의무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손실이 자본의 반액이 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유책적인 지체없이 늦어도 지급불능이 생긴 후 3주간동안에 파산절차 또는 재판상의 화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회사재산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성실한 영업지휘자의 주의로써 재판상의 화의절차의 개시를 추진한 때에는 그 신청은 유책적인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 (3) 회사의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또는 채무초과가 생긴 후에는 이사회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시점 이후에도 통상적이고 성실한 영업지휘자의 주의로써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3 조 理事의 注意義務와 責任

- (1) 이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통상의 성실한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의 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사항과 비밀, 특히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에 관하여는 묵비하여야 한다.
- (2) 그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의무를 진다. 통상적인 성실한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하였는가의 여부가 문제된 때에는 이사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3) 이사는 이 법률에 위반하여 특히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1. 주주에게 출자를 반환한 때,
 2. 주주에게 이자 또는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때,
 3. 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인수, 취득, 질취 또는 소각한 때,
 4.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한 때,
 5.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6. 회사의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또는 채무초과가 된 후에 지급을 한 때,
 7. 감사에게 보수가 부여된 때,
 8. 신용이 제공된 때,
 9. 조건부자본증가에서 소정의 목적 이외에 또는 대가의 완전한 급부 이전에 신주가 발행되는 때.
- (4) 행위가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기한 것인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감사회가 그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청구권의 발생후 3년이 지나서 비로소 또 주주총회가 동의하고, 그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만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화해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제한은 배상의무자가 지급불능이 되어 파산절차의 예방 또는 회피를 위

하여 그의 채권자와 화해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회사의 채권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제3항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통상적인 성실한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항 제2문을 이에 준용한다.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회사의 포기 또는 화해에 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은 파산관재인이 이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 (6) 본조의 청구권은 5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 94 조 理事의 代理人

이사에 관한 규정은 그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 2 절 監事會

제 95 조 監事の 數

감사는 3인으로 구성된다. 정관으로 일정한 그 이상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그 수는 3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감사의 최고인원수는 회사의 자본에 따라 다음과 같다.

300만 도이취 마르크까지 9인,

300만 도이취 마르크 이상 15인,

2000만 도이취 마르크 이상 21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1976년 5월 4일의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 광산공동결정법 및 1956년 8월 7일의 광산기업과 철강생산산업의 감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의 보충에 관한 법률(공동결정법보충법)의 이와 상이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96 조 監事會의 構成

- (1) 감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주주의 감사와 근로자의 감사로 구성한다. 광산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주주의 감사와 근로자의 감사 및 기타의 감사로 구성하고, 공동결정보충법 제5조 내지 제13조가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주주의 감사와 근로자의 감사 및 기타의 감사로 구성한다. 1952년의 경영조직법 제76조 제1항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주주의 감사와 근로자의 감사로 구성한다.

기타의 회사에서는 주주의 감사만으로 구성한다.

- (2) 제97조 또는 제9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공고에 또는 판결에 표시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 한하여 감사회는 직전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 97 조 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公告

- (1) 감사회가 준거할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회사공고지에 이를 공고하고, 동시에 회사와 그 큰 체른기업의 모든 영업소에서 게시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이사회의 의견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법률규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8조 제2항에 의한 신청권자가 연방관보에 공고한 후 1월내에 제98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될 것이 지시되어야 한다.
- (2) 연방관보에 공고가 있는 후 1월내에 제98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新감사회는 이사회의 공고에 표시된 법률규정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구성, 감사의 수 및 감사의 선출, 해임과 파견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신청기간의 경과후에 소집된 최초의 주주총회가 종료함으로써 또 늦어도 이 기간이 경과하고 6월 후에는 그것이 금후 적용될 법률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종전의 감사의 직무는 이 때에 소멸한다. 6월의 기간내에 개최되

는 주주총회는 그 효력을 잃은 정관규정에 대신하여 단순다수결로써 새로운 정관규정을 결의할 수 있다.

- (3) 제98조와 제99조에 따른 법원에 의한 절차가 계속하는 동안은 감사회의 구성에 관한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 98 조 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法院의 裁判

- (1) 감사회가 어느 법률규정에 의하여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거나 또는 불확실한 때에는 회사가 주소를 가진 지역의 州法院이 신청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이를 재판한다. 그것이 통일적인 판례의 확보에 필요한 때에는 州政府는 다수의 州法院의 지역을 위하여 법규명령에 의하여 하나의 州法院에 그 재판을 위임할 수 있다. 州政府는 이 수권을 州法務部에 위임할 수 있다.
- (2)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각 감사,
 3. 각 주주,
 4. 회사의 전체경영협의회 또는 회사에 하나의 경영협의회만 있는 경우에는 그 경영협의회,
 5. 그 적용이 문제되거나 불확실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자신 또는 대표자나 선거인을 통하여 회사의 감사의 선출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의 전체경영협의회 또는 다른 기업에 하나의 경영협의회만 있는 경우에는 그 경영협의회,
 6. 그 적용이 문제되거나 불확실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자신 또는 대표자나 선거인을 통하여 회사의 감사의 선출에 참여하는 그 근로자의 적어도 10분의 1 또는 100인,
 7. 그 적용이 문제되거나 불확실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안권을 가질 노동조합의 최고위조직,
 8. 그 적용이 문제되거나 불확실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안권을 가질 노

동조합.

공동결정법의 적용 또는 공동결정법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1문에 의한 신청권자 이외에 선출권한이 있는 노동자, 공동결정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표시된 선출권한이 있는 종업원 또는 공동결정법에서 의미하는 선출권한이 있는 지배적 종업원의 각 10분의 1도 신청권한이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결산검사인이 공동결정보충법 제3조 또는 제16조에 의하여 기준이 되는 판매비율을 정당하게 조사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4) 감사회의 구성이 법원의 재판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에서 표시된 법률규정에 의하여 新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제97조 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은 확정력의 발생과 더불어 진행한다.

제99조 節 次

- (1)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을 이 절차에 적용한다.
- (2) 州法院은 회사공고지에 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각 감사 및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권이 있는 경영협의회와 최고위조직은 심문을 받아야 한다.
- (3) 州法院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률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50조, 제551조, 제561조, 제563조를 준용한다. 항고는 변호사가 서명한 항고장의 제출에 의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에 관하여는 州高等法院이 재판한다.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재항고는 하지 못한다. 州政府는 그것이 통일적인 판례의 확보에 필요한 때에는 수개의 州高等法院의 지역을 위하여 하나의 州高等法院 또는 州最高法院에 법규명령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위탁할 수 있다. 州政府는 그 수권을 州法務部에 위탁할 수 있다.

- (4) 법원은 그 재판을 신청인과 회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또 그 결정을 이유를 생략하고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각 신청권자에게는 항고할 권리가 있다. 항고기간은 연방판보에 재판의 공고를 함으로써 개시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회사를 위하여는 재판의 송달 이전에는 항고기간이 개시하지 아니한다.
- (5) 재판은 확정력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재판은 모든 자를 위하여 또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사회는 확정력이 있는 판결을 지체없이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용규칙을 적용한다. 제1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단위수수료의 4배를 징수한다. 제2심에 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항고가 받아들여진 때에도 같다. 신청 또는 항고가 재판에 이르기 전에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가 반액으로 인하된다. 징수가액은 직권으로 정한다. 그 가액은 비용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하며, 그 가액은 통상의 경우 10만 도이취 마르크로 본다. 비용은 선납하지 아니한다. 비용의 채무자는 회사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평에 부합하는 때에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계인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0 조 監事를 위한 人的 前提條件

- (1) 감사는 자연인이며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만이 될 수 있다.
- (2) 다음의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법률상 감사회를 구성해야 할 10개의 상사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에서 이미 감사로 되어 있는 자,
 2. 회사에 종속된 기업의 법률상의 대표인 자 또는
 3. 회사의 이사가 감사회에 속하는 경우 그 감사회가 있는 다른 자본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의 법률상의 대표인 자.

- 큰체른의 지배기업의 법률상의 대표(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주)가 큰체른에 속하는 상사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광산회사로서 법률상 감사회를 구성하여야 할 회사에서 차지하는 5개의 감사회의 지위까지는 제1문 제1호에 의한 최고수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자의 감사 및 기타의 구성원의 그 밖의 인적 전제조건은 공동결정법, 광산공동결정법, 공동결정보충법 및 1952년의 경영조직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4) 정관은 선출제안의 구속없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감사 또는 정관에 따라서 감사회에 파견되는 감사에 관하여서만 인적 전제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1 조 監事의 選任

- (1)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그러나 그 감사가 감사회에 파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동결정법, 공동결정보충법 또는 1952년의 경영조직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감사로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총회는 광산공동결정법 제6조와 제8조에 의한 경우에만 선출제안의 구속을 받는다.
- (2) 감사회에 감사를 파견할 권리는 정관으로써만 그리고 특정주주 또는 특정주식의 그 당시의 소지인을 위해서만 정할 수 있다. 특정주식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기명식이고 그 양도에 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때에만 파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파견권자의 주식은 특별한 종류로 보지 아니한다. 파견권은 전부 합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주주의 감사수의 최고 3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1960년 7월 21일의 폴크스바겐 유한회사 민영화에 관한 법률(마지막으로 1970년 7월 31일 폴크스바겐 유한회사 민영화에 관한 제2법률에 의하여 개정) 제4조 제1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감사의 대리인은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광산공동결정법 또는 공동결정보충법에 의하여 다른 감사의 제안에 따라서 선출되는 기타의 감

사를 제외하고, 감사가 그 임기의 만료전에 퇴임하는 때에는 각 감사를 위하여 감사가 되는 보결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결감사는 감사와 동시에만 선임할 수 있다. 보결감사의 선임 및 선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감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2 조 監事의 任期

- (1) 감사는 그 임기의 개시후 제4영업년도에 대한 책임해제에 관하여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 이상의 장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임되지 아니한다. 임기가 시작하는 영업년도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보결감사의 직무는 늦어도 퇴임한 감사의 임기 경과로 종료한다.

제 103 조 監事의 解任

- (1)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출제안의 구속없이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만료전에 주주총회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해임결의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결을 요한다. 정관으로 다른 다수결과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2) 정관에 따라서 감사회에 파견되는 감사는 파견권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다른 자로 교체될 수 있다. 정관에 정하여진 파견권의 전제요건이 결여된 때에는 주주총회는 단순다수결로 파견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 (3) 감사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감사회의 청구에 따라 그 구성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감사회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단순다수결로 정한다. 감사가 정관에 따라서 감사회에 파견된 때에는 그 지분이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주주 또는 주식의 액면이 200만도 이취 마르크에 달하는 주주도 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4) 감사가 선출제안의 구속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 정관에 따라서 감사회에 파견된 것도 아닌 때에는 그 해임에 제3항 이외

에 공동결정법, 광산공동결정법, 공동결정보충법 및 1952년의 경영조직법을 적용한다.

- (5) 보결감사의 해임에는 그 자를 위하여 선임된 감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4 조 法院에 의한 選任

- (1) 감사회가 결의능력에 필요한 수의 감사를 결한 때에는 법원은 이사회, 감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서 그 수를 보충하여야 하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기 감사회회의 이전 적용한 시기에 그 보충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회가 종업원의 감사에 의하여서도 성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1. 회사의 각 영업의 경영협의회,
2. 종업원 자신 또는 선거인을 통하여 선임에 참여하는 다른 경영의 경영협의회,
3. 그 자신 또는 선거인을 통하여 선임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적어도 10분의 1 또는 100인,
4. 종업원의 감사를 제안 또는 파견할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의 최고위 조직.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감사회에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보다 작은 수의 감사가 3월 이상 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에 따라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청구에 따라서 감사회를 보충하여야 한다. 청구의 권제는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 제2항은 종업원이 공동결정법 또는 공동결정보충법에 의하여 공동결정권을 가진 감사회에 다음에 따라서 적용된다.

1. 이 법률에 의하여 다른 감사의 제안에 따라서 선임되는 그 이상의 감

사에 관하여는 법원은 감사회를 보충하지 못한다.

2. 제1호의 그 이상의 감사를 제외하고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감사회를 성립하여야 할 전구성원이 감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본다.
- (4) 감사회가 종업원의 감사에 의해서도 성립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원은 그 구성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인원수의 비율이 되도록 감사회를 보충하여야 한다. 감사회가 그 결의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보충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능력에 필요한 감사의 수가 이 비율의 유지를 가능하게 할 때에만 이를 적용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적 특별제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감사를 대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도 이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선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최고조직 또는 경영협의회가 제안권을 가질 감사를 대치(개선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공공의 주요한 이익이 피제안자의 선임에 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러한 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가 선거인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선거인이 선임되어야 할 큰체른기업의 경영협의회의 공동제안에 관하여서도 같다.
- (5) 법원이 선임한 감사의 직무는 그 결원이 없어진 때 즉시 소멸한다.
- (6) 법원이 선임한 감사는 상당한 현금에 의한 채당금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있으며, 회사의 감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활동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감사의 청구에 따라서 채당금과 보수를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은 기관력있는 재판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한다.

제 105 조 理事會와 監事會의 所屬의 不一致

- (1) 감사는 동시에 이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의 계속적인 대리인, 지배인 또는 전영업경계에 관한 권한이 있는 회사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2) 미리 한정된 기간에 관하여, 최장 1년의 기간에 관하여 감사회는 그 구성원의 1인을 결원된 또는 지장이 있는 이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임 또는 임기의 연장은 그로써 임기가 합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이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임기동안은 감사는 감사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88조의 경업금지에는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6 조 監事會에서의 變更의 公告

이사회는 감사의 변경을 지체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7 조 監事會의 內部秩序

- (1) 감사회는 정관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서 그 구성원중에서 1인의 의장과 적어도 1인의 의장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선임된 자를 상업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장대리는 의장이 유고시에만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감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장소와 일자, 참석자, 의사일정의 목적, 의사의 중요한 내용 및 감사회의 결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에 대하여는 청구에 의하여 회의의 의사록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감사회는 그 구성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위원은 특히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고 그 결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1항 제1문, 제59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1문, 제84조 제1항 제1문과 제3문 및 제2항, 제3항 제1문, 제111조 제3항, 제171조, 제31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임무 및 특정종류의 행위를 감사회의 동의로써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의는 그 결의에 관하여 감사회대신에 위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제 108 조 監事會의 決議

- (1) 감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감사회의 결의능력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률과 정관으로 그 결의능력을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할 감사의 적어도 반수가 결의에 참가한 때에만 감사회는 결의능력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어도 3인의 감사가 결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보다 소수의 감사가 감사회에 속하는 것은 그 구성에 관한 기준이 되는 비율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에도 그것으로써 결의능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3) 결석하는 감사는 서면상의 투표를 함으로써 감사회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서면상의 투표는 다른 감사를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서면상의 투표는 그 자가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감사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 (4) 감사회 또는 위원회의 서면상,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한 결의는 감사가 이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제 109 조 監事會와 그 委員會에의 參加

- (1) 감사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는 감사회와 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하지 못한다. 전문가와 보고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에 참석할 수 있다.
- (2)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는 감사회의 의장이 다른 정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 (3) 감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서면에 의한 수권이 있는 때에 지장이 있는 감사 대신으로 감사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상과 다른 법률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0 조 監事會의 召集

- (1) 각 감사 또는 이사회는 목적과 이유를 표시하여 감사회의 의장이 지체 없이 감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소집후 2주간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2) 적어도 2인 이상의 감사 또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었음에도 감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는 사정을 통지하여 그 자신이 감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감사회는 원칙적으로 4분의 1 曆年에 1회 소집되어야 하며, 2분의 1 曆年에 1회 소집되어야 한다.

제 111 조 監事會의 職務와 權利

- (1) 감사회는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2) 감사회는 회사의 장부와 서류 및 재산, 특히 회사의 현금과 유가증권 및 상품의 현재고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다. 감사회는 개개의 감사 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 (3) 감사회는 회사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 결의에 있어서는 단순다수결로 충분하다.
- (4) 업무집행의 조치는 감사회에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감사회는 일정한 종류의 업무는 감사회의 동의로써만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감사회가 동의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그 동의를 결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가 동의하는 결의에는 투표된 표결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결을 요한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다수결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정하지 못한다.
- (5)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른 자를 통하여 행사하게 하지 못한다.

제 112 조 理事에 대한 會社の 代表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제 113 조 監事의 報酬

- (1) 감사는 그의 활동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또는 주주총회가 승인할 수 있다. 보수는 감사의 직무, 회사의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보수를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그것을 감소하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단순다수로서 결의할 수 있다.
- (2) 첫번째 감사의 활동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만이 승인할 수 있다. 이 결의는 첫번째 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하여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 (3) 감사에게 회사의 연도이익의 배당분을 급여하는 때에 그 배당분은 주식의 권면액에 대하여 이행된 출자의 적어도 100분의 4의 금액을 공제한 대차대조표이익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 114 조 監事와의 契約

- (1) 감사가 감사회에서의 그의 활동 이외에 근로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고도의 종류의 활동을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감사회의 동의에 따른다.
- (2) 감사회가 그러한 계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계약에 따라서 감사에게 보수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회가 그 계약을 승인하지 않는 한 감사는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 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인도에 관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 115 조 監事에 대한 信用의 提供

- (1) 회사는 감사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만 감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배회사는 그 회사의 감사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만 종속기업의 감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감사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만 지배기업의 감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동의는 일정한 신용거래 또는 일정한 종류의 신용거래에 관하여 서면 제공할 수 있으며, 3월 이내에 한하여 미리 제공할 수 있다. 동의에 관한 결의에서는 신용의 이자와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감사가 개인상인으로서 상업을 하는 경우에 그 신용이 회사가 그의 상거래에 공급한 상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 때에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은 감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신용과 이들의 계산 또는 감사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신용에도 적용한다.
- (3) 감사가 동시에 다른 법인의 법률상의 대표 또는 인적상사회사의 사원인 때에는 회사는 감사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만 그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제3문과 제4문은 이를 준용한다. 이것은 그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가 그 회사와 결합되어 있는 때 또는 회사가 그 법인 또는 인적상사회사에 공급한 상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을 제공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신용을 제공한 때에는 감사회가 사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반대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신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5) 회사가 신용기관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신하여 신용제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6 조 監事の 注意義務와 責任

감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제 93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會社에 대한 影響力의 利用

제 117 조 損害賠償義務

- (1) 이사 또는 감사로서 회사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배인 또는 상사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 또는 주주의 손해가 되는 행위를 고의로 하게 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가 회사의 손해를 통하여 입은 손해 이외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주주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를 진다.
- (2) 이사와 감사가 그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전항의 책임을 지는 자와 더불어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사와 감사가 통상의 성실한 업무수행의 주의를 다 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때에는 이들이 입증책임을 진다. 그 행위가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기한 것인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또 주주에 대하여서도 배상의무가 없다. 감사회가 그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3) 이밖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가 고의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책임을 지는 자와 더불어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4) 회사에 대한 배상 의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93조 제4항 제3문과 제4문을 준용한다.
- (5)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회사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회사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상 의무가 회사의 포기와 화해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기간에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 (6) 본조의 청구권은 5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7) 본조의 규정은 이사 또는 감사, 지배인 또는 상사대리인이 다음에 의

하여 손해발생행위를 하게 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2. 지배계약에 따른 지휘권행사,
3. 회사가 편입되는 主會社의 지휘권행사.

제 4 절 株主總會

제 1 관 株主總會의 權限

제 118 조 總 則

- (1)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
- (2)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119 조 株主總會의 權限

- (1)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1. 감사의 선임. 이는 감사가 감사회에 파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동결정법이나 공동결정보충법 또는 1952년 경영조직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감사로서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
 3.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4. 결산검사인의 선임;
 5. 정관변경;
 6. 자본조달과 자본감소의 조치;
 7. 설립 또는 업무집행의 경과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8. 회사의 해산.
- (2) 업무집행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요구한 때에만 주주총회가 결

정할 수 있다.

제 120 조 責任解除

- (1) 주주총회는 매년 영업년도의 첫 8월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하여 결의한다. 주주총회가 결의하거나 또는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 또는 2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 각각 표결하여야 한다.
- (2) 주주총회는 책임해제를 통하여 이사와 감사에 의한 회사의 관리를 승인한다. 책임해제는 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책임해제에 관한 議事는 대차대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議事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연도결산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회의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것의 개시 및 등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 관 株主總會의 召集

제 121 조 總 則

- (1)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 및 회사의 복지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어야 한다.
- (2) 주주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되며, 이사회는 이를 단순다수결로써 결의한다. 상업등기부에 이사로서 등기된 자는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타의 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소집은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는 상호, 회사의 주소, 주주총회의 시기와 장소 및 총회에의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소재지

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식이 독일의 거래소에서 상장거래되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는 그 거래소의 소재지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제 122 조 少數株主의 請求에 의한 召集

- (1) 주주총회는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20분의 1에 달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그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청구는 이사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자본에 대한 보다 적은 지분의 소지에 결부시킬 수 있다.
- (2)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주주는 동일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소집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집청구를 한 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목적사항을 공고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은 동시에 집회의 의장을 정할 수 있다. 소집 또는 공고에 있어서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4) 회사는 주주총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 때에는 법원비용을 부담한다.

제 123 조 召集時期

- (1) 주주총회는 총회 회일로부터 적어도 1월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 (2) 정관으로 주식을 총회의 일정기간 이전에 공탁하고 또 주주가 총회 이전에 신고하여야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관이 이러한 정함을 한 때에는 소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총회 회일대신에 그 경과전에 주식을 공탁하여야 할 날 또는 주주가 총회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날로 한다.

- (3) 정관에 의하여 주식을 총회의 일정기간 이전에 공탁하여야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10일전에 공탁하면 된다. 공탁은 공증인 또는 有價證券混藏은행에 하면 된다.
- (4) 정관에 의하여 주식을 총회 이전에 신고하여야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 회일의 3일전에 신고하면 된다.

제 124 조 議事日程의 公告

- (1)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은 소집에 있어서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목적사항의 공고를 요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후 10일내에 그 목적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 (2) 의사일정에 감사의 선거가 있는 때에는 어느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또 주주총회는 선거제안에 구속되는가의 여부를 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결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안된 정관변경의 문언 또는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도 공고하여야 한다.
- (3) 주주총회가 결의하여야 할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와 감사회가 결의를 위한 제안을 의사일정에서 공고하여야 하고, 감사와 검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회만이 그 제안을 의사일정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광산공동결정법 제6조에 따라서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거제안에 구속되는 경우 또는 결의의 목적사항이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 또는 검사인의 선임을 위한 제안에는 그의 성명, 직업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감사회가 근로자의 감사로도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선거를 위한 제안에 관한 감사회의 결의에는 주주의 감사의 의결권다수를 얻으면 된다; 광산공동결정법 제8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4) 적법하게 공고되지 아니한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집회에서 제의된 주주총회소집청구의 결의,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신청된 제의 및 결의가 없는 의사에 관하여는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 125 조 株主를 위한 通知 및 監事會에의 通知

- (1) 이사회는 연방관보에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를 한 후 12일내에 지난 최후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또는 통지를 요구한 신용기관과 주주의 단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 의사일정의 공고 및 주주의 제안과 선거제안이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의 제안과 선거제안에는 그 주주의 성명, 이유 및 경영기관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주주에 대하여 동일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회사에 주식을 공탁한 주주.
 2. 연방관보에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를 한 후에 이를 요구한 주주 또는
 3.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되고, 지난 최종의 주주총회에서 신용기관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
- (3) 각 감사는 이사회가 그에게 동일한 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회사에 주권을 공탁한 각 주주 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된 각 주주 또는 각 감사는 이사회가 그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6 조 株主의 提案

- (1) 주주가 연방관보에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있는 후 1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반대제안을 이유를 붙여서 송부하고, 동시에 총회에서 이사회와 감사회의 제안에 반대하며 다른 주주로 하여금 그의 반대제안에 동의할 것은 종용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에만 그 주주의 제안을 제

125조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

(2) 반대제안과 그 이유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1. 이사회가 그 통지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 반대제안이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3. 그 이유가 중요한 점에서 명백하게 허위 또는 오도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그것이 모욕을 포함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정을 기초로 한 다른 주주의 반대제안이 이미 제125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통지되어 있는 경우,
5.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가진 주주의 동일한 반대제안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회사의 적어도 2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제125조에 의하여 통지되었고, 주주총회에서 대표된 자본의 20분의 1 보다 적은 수가 그 반대제안에 동의한 경우,
6.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케 한 경우 또는
7. 주주가 최근 2년동안에 2회의 주주총회에서 그에 의하여 통지된 반대제안을 제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제의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가 전부 100단어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3) 수인의 주주가 의사의 동일한 목적사항에 관하여 반대제안을 낸 경우에 이사회는 그 반대제안과 이유를 종합할 수 있다.

제 127 조 株主의 選舉提案

감사 또는 결산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주주의 제안에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선거제안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선거제안이 제124조 제3항 제3문의 기재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사회는 그 제안을 공고할 필요가 없다.

제 128 조 信用機關과 株主의 團體에 의한 通知의 傳達

- (1) 신용기관이 주주를 위하여 회사의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신용기관은 제12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체없이 그 주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2) 신용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거나 행사하게 할 의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용기관은 주주에 대하여 이밖에 의사일정의 개개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자기의 제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기관은 그 제안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 신용기관은 또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지시해 줄 것을 주주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주주가 상당한 시기에 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은 제1문에 의하여 통지된 그의 제안에 따라 행사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신용기관은 지시를 요청할 때 그것의 작성에 의하여 주주가 의사일정의 개개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양식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용기관의 이사가 회사의 감사회에 속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사가 신용기관의 감사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용기관은 이것도 통지하여야 한다.
- (3)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후에 신용기관에 대하여 의사일정의 개개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지시를 서면으로 한 때에는 신용기관은 제2항에 의한 자기의 제안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에 대하여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 (4) 제1항과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신용기관의 배상 의무는 사전에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5) 회사의 주주가 주주의 단체에 구성원으로서 속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제12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청구에 따라서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기타의 점에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주주의 단체에 준용한다.
- (6) 연방법무장관은 연방경제장관의 의견을 들어 법규명령으로써 다음을 정할 권한이 있다.
 1. 신용기관 또는 주주의 단체가 제2항 제3문에 의하여 지시요청서에

첨부할 주주에 의한 지시부여를 위한 양식용지의 규정,

2. 회사가 신용기관 또는 주주의 단체에 대하여 통지서의 복제 및 주주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전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 비용의 변제에 관하여는 제1항에 의한 각 서면에 관하여 총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법규명령은 연방회의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3 관 議事錄·解說請求權

제 129 조 出席者의 名簿

- (1)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또는 대리된 주주와 주주의 대리인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는 그의 성명과 주소 및 그에 의하여 대표된 주식의 액면을 그 종류와 더불어 기재하여야 한다.
- (2) 신용기관 또는 제135조 제9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고,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그것이 속하는 자의 명의로 행사한 때에는 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주식의 액면과 종류는 명부에 기재함에 있어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대리권을 부여한 주주의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3)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자기명의로 행사할 권한을 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액면과 종류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명주식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 (4) 명부는 최초의 표결이 있기 전에 모든 출석자의 열람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의장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130 조 議事錄

- (1)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의사록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2문, 제137조 및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소수주주의 요구에 관하여서도 같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장소와 일자, 공증인의 성명 및 표결의 방법과 결과, 결의에 관한 의장의 확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총회에 출석한 자의 명부와 총회소집에 관한 증거서류는 의사록에 부가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소집에 관한 증거서류는 의사록에 그 내용을 표시한 때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4) 의사록에는 공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증인의 입회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5) 이사회는 총회후 지체없이 의사록의 공증된 등본과 그 부속서류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1 조 株主의 解說請求權

- (1)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의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주주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해설을 하여야 한다. 해설의무는 회사의 결합기업에 대한 법률상 및 영업상의 관계에도 미친다. 회사가 상법 제266조 제1항 제2문, 제276조 또는 제288조에 의한 간이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주주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형태로 주주총회에서 연도결산서에 관하여 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해설은 양심적이고 성실한 해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3)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해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인적 판단에 따르면 회사 또는 결합기업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데 적합한 경우,
 2. 해설이 조세상의 가액산정 또는 개개의 조세금액에 관련되는 경우,
 3. 연도대차대조표상의 재산에 기재된 가액과 그 재산의 최고가액의 차이에 관한 것인 경우, 그러나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속서에 기재된 그 방법이 상법 제264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회사의 재산상태, 재정상태 및 수익상태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의 모습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때의 대차대조표작성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사회가 그 해설을 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기타의 이유로서는 해설을 거절하지 못한다.
- (4) 어떤 주주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에 기하여 주주총회외에서 해설을 한 때에는 그것이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의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때에도 주주총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모든 다른 주주에 대하여 해설을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해설을 거절하지 못한다.
- (5) 주주에 대한 해설이 거절된 때에는 그 주주는 해설이 거절된 그의 질문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2 조 解說請求權에 관한 法院의 裁判

- (1) 이사회가 해설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주소가 있는 지역의 州法院이 전속적으로 재판한다. 州法院에 상사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그것이 민사부에 대신하여 재판한다. 州政府는 그것이 통일적인 판례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州法院의 지역을 위하여 1개의 州法院에 그 재판을 위임할 수 있다. 州政府는 이 수권을 州法務部에 위임할 수 있다.
- (2) 해설을 요구하고 그 해설을 받지 못한 주주 및 해설이 관련되는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로서 총회에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자는 신청권이 있다. 신청은 해설이 거절된 주주총회가 있는 후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 (3) 제99조 제1항, 제3항 제1문, 제2문, 제4문 내지 제9문 및 제5항 제1문과 제3문을 이에 준용한다. 즉시항고는 州地方法院이 재판에서 이

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한 때에만 허용된다. 법원은 그에 의하여 원칙적인 중요사항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기대되는 때에만 이를 허용한다.

- (4) 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해설은 주주총회의 밖에서도 하여야 한다. 재판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한다.
- (5) 이 절차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규칙을 적용한다. 제1심절차에 대하여는 기본수수료의 2배가 징수된다. 제2심절차에 대하여는 동액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항고가 성과를 얻은 때에도 같다. 재판 또는 법원에 의하여 증개되는 화해에 이르기 전에 신청 또는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는 반액으로 감한다. 업무가액은 직권으로 정한다. 이는 비용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정하되, 그 가액은 통상 1만 도이취 마르크가 되는 것으로 한다. 절차에 관여한 법원은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어느 관계인에 절차의 비용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다.

제 4 관 議決權

제 133 조 單純多數의 原則

-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이 보다 많은 다수 또는 기타의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사된 투표(의결권)의 다수(단순다수)를 요한다.
- (2) 선거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34 조 議決權

- (1) 의결권은 주식의 권면액에 따라서 행사한다. 1인의 주주에 다수의 주식이 속하는 경우를 위하여 정관으로 최고액면을 정하거나 또는 등급을 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정관으로 이 밖에 주주에 속하는 주식에 그 주주의 계산으로 타인에 속하는 주식을 가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주주가 기업인 경우를 위하여 정관으로 다시 그에게 속

하는 주식에 그에게 종속하거나 또는 그를 지배하는 또는 그와 콘체른적 결합이 있는 기업 또는 이러한 기업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속하는 주식도 가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한은 개개의 주주에 관하여 규정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본다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의결권은 출자의 완전한 이행으로써 시작한다. 정관으로 주식에 대하여 법률상의 최소출자 또는 정관상의 보다 많은 최소출자를 이행한 때 의결권이 시작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소출자의 이행이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보다 많은 출자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비율은 이행된 출자의 금액에 따라서 정한다. 정관으로 의결권이 출자의 완전한 이행이 있기 전에 시작함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하여 아직 출자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의 비율은 이행된 출자의 금액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에는 최소출자의 이행이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의 단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를 위하여 완전한 의결권이 생기는 때에만 고려한다. 정관으로 개개의 주주 또는 개개의 주식의 종류를 위하여 본항에 의한 규정을 정하지 못한다.
- (3)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리권부여에 관하여는 서면방식을 요하며, 이로써 충분하다. 위임장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보관한다.
- (4) 의결권행사의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35 조 信用機關과 營業的 行爲者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 (1) 신용기관은 서면으로 대리권이 수여된 때에만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기명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권이 수여된 신용기관은 자기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의사일정의 개개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한 때에만 그 대리권에 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대리권은 일정한 신용기관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최장 15월을 기간으로 하여서만 수여할 수 있다. 대리권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수여할 때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위임장에는 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문의 기간은 늦어도 발행일자로써 시작한다.
- (3) 대리권이 수여된 신용기관은 그 대리권수여가 명시적으로 복대리를 허용하고, 그 대리권이 수여된 신용기관이 주주총회의 장소에 지점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대리권이 수여된 신용기관에 의한 대리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같다.
- (4) 신용기관은 그 대리권에 따라서 주주를 지명하여 그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권에서 그 뜻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신용기관은 그 의결권이 속하는 자의 명의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기관이 주주를 지명하여 그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장이 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용기관이 의결권이 속하는 자의 명의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한의 증명에 있어서 정관에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주권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증인이나 유가증권혼장은행에 주권을 공탁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분하다.
- (5) 주주가 신용기관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용기관은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통지한 그 자신의 제안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그 사정을 알면 의결권의 그와 다른 행사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정을 신용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의결권행사의 효력은 제1항 제2문,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위반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7) 신용기관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는 기명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서면상의 대리권수여에 따라서만 행

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를 지명하여서만 서면상의 대리권수여에 따라서 그 주주의 명의로 기명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권수여 또는 대리권에 대하여는 제1항 제2문,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고, 대리권에 대하여는 이 밖에 제4항 제3문을 적용한다. 기타에 관하여는 제6항을 적용한다.

(8) 신용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주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주가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 신용기관이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통지한 그 자신의 제안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기관은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9) 제1항 내지 제8항은 다음의 자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1. 주주의 단체,
2. 신용기관의 업무지휘자와 사용인에 속하지 아니한 주식이 신용기관에 보관을 위하여 임치되어 있는 때의 그 신용기관의 업무지휘자와 사용인,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업무상 권장을 하는 자.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주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이거나 또는 그와 4촌내의 친척인 자 또는 인척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신용기관은 그가 주주를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보관하고 또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권장을 한 때에는 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를 위한 주주의 위임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 신용기관이 주주총회의 장소에 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주가 신용기관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한 대리권의 양도 또는 복대리권의 수여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의무가 없다.

(11)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한 신용기관의 업무는 사전에 면제 또는 제

한하지 못한다.

제 136 조 議決權의 排除

- (1) 누구든지 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그의 의무가 면제되는가 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의하는 때에는 그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주가 제1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타인을 통하여서도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2) 주주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회사의 이사회나 감사회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종속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주주가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그때 그때의 제안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제 137 조 株主의 選舉提案에 관한 表決

주주가 제127조에 따라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제안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제안한 자의 선임을 신청한 경우에 지분의 총액이 대표된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요구한 때에는 감사회의 제안에 앞서 그 주주의 신청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 5 관 特別決議

제 138 조 分離集會. 分離表決

본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일정한 주주의 특별결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주주의 분리된 집회에서 또는 분리된 표결에서 하여야 한다. 분리집회의 소집과 그 출석 및 해설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결의에 관한 표결에 출석할 수 있는 주주가 분리집회의 소집 또는 분리표결에 불일 목적사항의 공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결

의에 관한 표결에 출석할 수 있는 그의 지분의 전부가 그 특별결의에 관한 표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 10분의 1에 달하면 충분하다.

제 6 관 議決權없는 優先株

제 139 조 本 質

- (1) 이익배당에 있어서 추가지급의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다 (의결권없는 우선주).
- (2)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다른 주식의 총권면액이 되는 총권면액에 달하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제 140 조 優先株主의 權利

- (1)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외하고 주식으로부터 각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부여된다.
- (2) 어떤 연도의 우선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우선금액 전액과 더불어 그 미지급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미지급금액이 추가지급될 때까지 우선주주는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우선주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본다수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어떤 연도의 우선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배당에 관한 그후의 결의가 조건이 되는 미지급우선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생기지 아니한다.

제 141 조 優先權의 廢止와 制限

- (1) 우선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결의는 우선주주의 동의를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2) 이익 또는 회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의결권없는 우선주보다 우선하

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우선주의 발행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우선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또는 의결권이 후에 배제되는 경우에는 배제함에 있어서 발행이 명백하게 유보되어 있고, 우선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그 동의에 관하여는 우선주주가 분리된 집회에서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 결의는 행사된 의결권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다수 또는 기타의 요건을 정하지 못한다. 이익 또는 회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의결권없는 우선주보다 우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우선주의 발행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이러한 주식의 인수에 관한 우선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는 때에는 그 특별결의에는 제186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4) 우선권이 폐지된 때에는 그 주식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관 特別檢査. 賠償請求權의 行使

제 142 조 特別檢査人의 選任

- (1) 회사의 설립 또는 업무집행, 특히 자본조달 및 자본감소의 조치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단순다수결로써 검사인(특별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검사가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 또는 회사와 이사 또는 감사 사이의 소송의 개시와 관련되는 사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는 그 자신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결의에 투표하지 못한다. 제2문에 의하여 투표할 수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위하여서는 타인에 의하여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2) 주주총회가 설립 또는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업무집행의 경과의 검사를 위한 특별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제의를 거절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불성실 또는 법률이나 정관의 현저한 위반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분총액이 자본의 10분의 1 또는 그 권면액이 200만 도이취 마르크에 달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특별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자는 그 청구에 관한 재판까지 주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총회 회일전 적어도 3월동안 그 주식의 소지인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을 위하여는 공증인 앞에서의 선서에 같은 하는 보증으로 충분하다.

- (3) 제1항과 제2항은 제258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주주총회가 특별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된 특별검사인의 인적사유에서 요청된다고 생각되는 때, 특히 그 선임된 특별검사인이 특별검사의 대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 또는 불공정하다는 의구심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때에는 그 지분의 총액이 자본의 10분의 1 또는 그 권면액이 200만 도이취 마르크에 달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다른 특별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주주총회 회일후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 (5) 법원은 관계인 이외에 감사회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특별검사인도 심문하여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6)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인은 상당한 현금에 의한 체당금 및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이 있다. 체당금과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은 기판력있는 재판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한다.

제 143 조 特別檢査人の 資格

- (1) 특별검사의 목적사항이 다른 지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만을 특별검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부기에 관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그 법률상 대표의 적어도 1인이 부기에 관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검사회사.

- (2) 상법 제319조 제2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는 자 또는 검사할 사건이 발생한 때 동조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특별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상법 제319조 제3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는 검사회사 또는 검사할 사건이 발생한 때 동조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이 될 수 없었던 검사회사는 특별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 (3) (삭제)

제 144 조 特別檢査人の 責任

결산검사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23조를 준용한다.

제 145 조 特別檢査人の 權利

- (1) 이사회는 특별검사인에게 회사의 장부와 서류 및 재산, 특히 회사의 현금, 유가증권과 상품의 현재고를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2) 특별검사인은 이사와 감사로부터 사항의 주의깊은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설명과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특별검사인은 큰기업과 중속기업 또는 지배기업에 대하여서도 제 2항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 (4) 특별검사인은 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인식이 검사할 사항의 판단을 위하여 주주총회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회사 또는 결합기업에 현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도 검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검사인은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사회와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청구에 의하여 각 주주에 대하여 검사보고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그 보고서를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주주총회의 소집에서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으로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6 조 費 用

법원이 특별검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에 귀속되는 배상청구권에 관계없이 법원비용과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 147 조 賠償請求權의 行使

- (1) 주주총회가 단순다수결로써 결의하거나 또는 지분의 총액이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와 제53조에 따라서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설립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청구권 또는 이사나 감사에 대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또는 제117조로 인한 회사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의 요구는 소수를 구성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전 적어도 3월동안 주식의 소지인임을 소명하였을 때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소명을 위하여는 공증인 앞에서의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으로써 충분하다.
- (2) 배상청구권은 주주총회 회일로부터 6월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주주총회는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결의하거나 또는 소수주주가 이를 요구한 경우에 법원은 그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지분의 총액이 자본의 10분의 1 또는 권면액이 200만 도이취 마르크에 달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제78조, 제112조 또는 제1문에 따라서 회사의 대표로서 정하여진 자 이외의 자를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 때에는 회사가 법원비용을 부담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회사로부터 상당한 현금에 의한 체당금과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체당금과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은 기판력있는 재판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한다.
- (4) 소수주주가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였고, 회사가 소에서 전부 또

는 일부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전부 패소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3항 제3문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으로 인하여 회사에 생긴 법원비용 및 특별대리인의 현금에 의한 채당금과 보수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제 5 장 計算·利益處分

제 1 절 年度決算書와 狀態報告書의 作成

제 148 조 삭 제

제 149 조 삭 제

제 150 조 法定準備金·資本準備金

- (1) 상법 제242조, 제264조에 의하여 작성될 연도결산서의 대차대조표에는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2) 법정준비금과 상법 제2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으로 정한 그 이상의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손실이월금을 공제한 연도잉여금의 20분의 1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3) 법정준비금과 상법 제2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으로 정한 그 이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준비금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결손액이 전년도 이익이월금에 의하여 보충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처분에 의하여 전보될 수 없는 경우의 그 연도결손액의 전보를 위한 것인 때,

2. 전년도의 손실이월금이 연도잉여금에 의하여 보충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처분에 의하여 전보될 수 없는 경우의 그 손실이월금의 전보를 위한 것인 때.
- (4) 법정준비금과 상법 제2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합하여 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으로 정한 그 이상의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결손액이 전년도의 이익이월금에 의하여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연도결손액의 전보를 위한 것인 때,
 2. 전년도의 손실이월금이 연도잉여금에 의하여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손실이월금의 전보를 위한 것인 때,
 3. 제207조 내지 제220조에 따라서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기 위한 것인 때.

이익준비금이 동시에 이익배당을 위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제 150a 조 삭 제

제 151 조 삭 제

제 152 조 貸借對照表에 관한 規定

- (1)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자본이 인수된 자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각 종류의 주식의 총권면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조건부 자본은 권면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때에는 인수된 자본에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의결권수와 기타 주식의 총의결권수를 기재해야 한다.
- (2) “자본준비금”항목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서에서 다음의 사항을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년도동안 적립된 금액,
 2. 영업년도에 대하여 감소된 금액.
- (3) 이익준비금의 각 항목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부속서에서 그때 그때 다음의 사항을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가 전년도 대차대조표이익에서 적립한 금액,
 2. 영업년도의 연도잉여금에서 적립된 금액,
 3. 영업년도에 대하여 감소된 금액.

제 153 조 내지 제 157 조 삭제

제 158 조 損益計算書에 관한 規定

- (1) 손익계산서에는 “연도잉여금/연도결손금” 항목 다음에 다음의 항목을 일련번호로 보충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이익이월금/손실이월금
 2. 자본준비금의 감소
 3. 이익준비금의 감소
 - a) 법정준비금의 감소
 - b) 자기주식을 위한 준비금의 감소
 - c) 정관에 의한 준비금의 감소
 - d)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감소
 4. 이익준비금의 적립
 - a) 법정준비금의 적립
 - b) 자기주식을 위한 준비금의 적립
 - c) 정관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
 - d)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5. 대차대조표이익/대차대조표손실.

제1문에 의한 기재는 부속서에 할 수도 있다.
- (2) 이익지급계약 또는 부분이익지급계약으로 인한 수익에서는 局外株主

에 대하여 계약상 지급할 보상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보상액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손실인수로 인한 비용에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제 159 조 삭 제

제 160 조 附屬書에 관한 規定

(1) 부속서에는 다음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가 회사나 종속기업 또는 被多數參加企業의 계산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被多數參加企業이 발기인이나 인수인으로서 또는 조건부 자본증가에서 부여된 전환권 또는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인수한 주식에 대한 현재고 및 증가분; 이러한 주식이 그 영업년도에 매각된 때에는 매각금액을 표시하여 그 매각에 관해서도 보고하고, 그 매각금액의 처분에 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나 종속기업 또는 被多數參加企業 또는 기타의 자가 회사나 종속기업 또는 被多數參加企業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質取한 회사의 자기주식의 현재고; 이때에는 그 주식의 수와 권면액 및 자본에 대한 비율, 또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시기와 취득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이 그 영업년도에 취득되거나 양도된 때에는 그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해서도 그 주식의 수와 권면액, 자본에 대한 비율 및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금액의 처분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않는 각 종류의 주식의 수와 권면액; 그중에서 영업년도에 조건부 자본증가에 있어서 또는 인허자본으로 인수된 주식은 그때 그때 구별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4. 인허자본;
5. 전환사채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수; 그것이 표창하는 권리를 기재한다;

6. 享益權附社債, 更生證書上의 권리 및 이와 유사한 권리; 각 권리의 종류와 수 및 그 영업년도에 새로이 성립된 권리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다;
7. 상호참가의 존재; 각 기업을 표시한다;
8. 제2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회사에 통지된 회사에 대한 자본참가의 존재; 이때에는 그 자본참가가 누구에게 귀속되며, 그것이 회사의 총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는가의 여부 또는 다수참가(제16조 제1항)인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61 조 삭 제

제 2 절 年度決算書의 檢査

제 1 관 決算檢査人에 의한 檢査

제 162 조 내지 제 169 조 삭 제

제 2 관 監事會에 의한 檢査

제 170 조 監事會에 提出할 書類

- (1) 이사회는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이를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의 도착후 지체없이 이 서류도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이익처분안은 다른 항목구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구분을 하여야 한다.

1. 주주에의 배당

2.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이익이월
 4. 대차대조표이익
- (3) 각 감사는 제출된 서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출된 서류는 감사회가 다른 결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서 각 감사에게도 교부되어야 한다.

제 171 조 監事會에 의한 檢査

- (1) 감사회는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의안을 검사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때에는 감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은 이 제출서류의 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2) 감사회는 그 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서면으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회가 당해 영업년도동안 회사의 업무집행을 어떤 방법과 어떤 범위에서 검사하였는가 하는 것도 통지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때에는 감사회는 또 결산검사인에 의한 결산검사서의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회는 보고서의 말미에 그의 검사의 최종적 결과에 의할 때 이의가 제기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이사회가 작성한 연도결산서를 감사회가 승인하는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 (3) 감사회는 제출서류가 그에게 도달한 후 1월내에 그의 보고서를 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내에 이사회에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감사회에 대하여 지체없이 1월을 넘지 아니하는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이 연장기간의 경과전에 이사회에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도결산서는 감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3 절 年度決算書의 確定. 利益處分

제 1 관 年度決算書의 確定

제 172 조 理事會와 監事會에 의한 確定

이사회와 감사회가 연도결산서의 확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결산서는 감사회가 승인한 때에 확정된다. 이사회와 감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회의 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 173 조 株主總會에 의한 確定

- (1) 이사회와 감사회가 연도결산서의 확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할 것을 결의한 경우 또는 감사회가 연도결산서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한다.
- (2) 연도결산서의 확정에는 그 작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주주총회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있어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만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3) 주주총회가 결산검사인이 법률상의 의무에 근거하여 검사한 연도결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16조 제3항에 의한 새로운 검사 이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연도결산서의 확정과 이익처분에 관한 결의는 새로운 검사에 근거하여 그 변경에 관한 무제한의 확인기재를 한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후 2주간내에 그 변경에 관한 무제한의 확인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제 2 관 利益處分

제 174 조

- (1) 주주총회는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한다. 주주총회는 이

경우에 확정된 연도결산서에 구속된다.

- (2) 결의에서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은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이익,
 2.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
 3.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
 4. 이익이월금,
 5. 결의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
- (3) 결의는 확정된 연도결산서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 3 관 定期株主總會

제 175 조 召 集

- (1) 이사회는 감사회의 보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확정된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의 수리 및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당해 영업년도의 최초의 8 월내에 개최해야 한다.
- (2)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감사회의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의안은 소집된 때로부터 회사의 영업장소에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주주에게 지체없이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연도결산서의 확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서류의 게시 및 등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한 심의와 대차대조표의 처분에 관한 심의는 연계되어야 한다.
- (4) 확정된 연도결산서의 수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으로써 또는 주주총회가 연도결산서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으로써 이사회와 감사회는 감사회의 보고

서에 포함된 연도결산서에 관한 설명(제172조, 제173조 제1항)에 구속된다.

제 176 조 提出할 書類. 決算檢査人의 出席

- (1) 이사회는 제175조 제2항에 기재된 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를 개시할 때 이사회는 위의 제출서류를, 감사회의 의장은 감사회의 보고서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회는 연도성과를 상당한 영향을 미친 연도결손액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2)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결산검사인은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주주에게 해설을 할 의무가 없다.

제 4 관 年度決算書의 公告

제 177 조 삭 제

제 178 조 삭 제

제 6 장 定款變更. 資本調達과 資本減少의 措置

제 1 절 定款變更

제 179 조 株主總會의 決議

- (1) 모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주주총회는 표현방식만에 관한 변경의 권한을 감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어도 결의에서 대표된 자본의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자본다수를 정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업의 목적의 변경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자본다수만을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3) 수종의 주식의 종전의 관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발생에는 불이익을 입는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불이익을 입는 주주는 이 동의에 관하여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결의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제 180 조 關係株主의 同意

- (1) 주주에게 종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의는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모든 관계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 (2) 기명주식 또는 假株券의 양도가 회사의 동의에 결부되는 결의에 관하여서도 같다.

제 181 조 定款變更의 登記

- (1) 이사회는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위하여 정관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정관의 완전한 문구가 첨부되어야 한다; 정관의 문구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에 의한 정관의 변경된 규정과 마지막으로 상업등기부에 제출된 정관의 완전한 문구에 의한 변경되지 않은 규정이 일치한다는 공증인의 증명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변경이 국가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변경이 제39조에 의한 기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에 있어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인용으로써 충분하다. 변경이 그 내용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규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도 그 내용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3) 변경은 회사의 주소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다.

제 2 절 資本調達の 措置

제 1 관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제 182 조 前提條件

- (1) 출자에 의한 자본의 증가는 결의에서 대표된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한 다수으로써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으로 다른 자본다수를 정할 수 있으나, 의결권없는 우선주의 발행에 관하여는 보다 많은 자본다수만을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자본증가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서만 실행할 수 있다.
- (2) 수종의株式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각 종류의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에 관하여 각 종류의 주주는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 (3) 신주를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는 발행할 수 없는 최저가액을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4) 종전의 자본에 대한 미납출자가 아직 있는 동안은 자본을 증가하지 못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미납출자가 비교적 경미한 범위인 경우에는 이것이 자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83 조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 (1) 현물출자(제27조 제1항과 제2항)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그 목적물, 회사가 그 목적물을 취득하는 상대방 및 현물출자에서 부여할 주식의 권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의는 현물출자의 제공과 제1문에 의한 결정이 명백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제124조 제1항) 공고된 때에만 할 수 있다.
- (2) 이 결정이 없으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자본증가의 실행이登記된 때에는 자본증

가의 효력은 이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는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자본증가의 실행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에는 정관변경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제 184 조 決議의 申告

- (1) 이사회와 감사회의장은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를 위하여 자본의 증가에 관한 결의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제183조 제3항)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종전의 자본에 대한 어떠한 출자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출자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5 조 新株의 請約

- (1) 신주의 청약은 서면상의 의사표시(청약서)로써 하며, 청약서에는 수, 권면액 및 수종의株式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株式의 종류에 의한 자본참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청약서는 2통 작성되어야 한다. 청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자본증가가 결의된 날;
 2. 株式의 발행가액, 정하여진 납입금액 및 종적 의무의 범위;
 3.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 및 수종의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株式종류의 총권면액;
 4. 그 시기까지 자본증가의 실행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약의 구속력이 없게 되는 그 시기.
- (2) 이러한 기재를 완전하게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항 제4호의 유보를 제외하고 청약자의 의무의 제한을 포함하는 청약서는 무효이다.
- (3) 자본증가의 실행이 등기된 경우에 청약자가 청약서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청약자는 청약

서의 무효 또는 구속력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 186 조 引受權

- (1) 각 주주에 대하여는 그의 청구에 따라서 종전의 자본에 대한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신주의 부분을 배정하여야 한다. 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적어도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발행가액과 동시에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인수권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만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의는 자본증가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요건 이외에 결의에서 대표된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보다 많은 자본다수와 그 이외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4) 인수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결의는 그 배제가 명백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124조 제1항) 공고된 때에만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 배제의 사유에 관한 서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서는 제외되는 발행가액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그 결의에 따르면 신주가 주주에게 인수를 위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신용기관에 의하여 인수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인수권의 배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신용기관의 인수제공을 그 주식에 대하여 급부하여야 할 대가 및 제공의 수락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표시하여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가 주주에게 인수를 위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신용기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인수되어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 187 조 新株의 引受에 대한 權利의 確約

- (1) 신주의 인수에 대한 권리는 주주의 인수권을 유보하여서만 확약할 수

있다.

(2) 자본증가의 결의 이전의 확약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 188 조 實行的 申告와 登記

- (1) 이사회와 감사회의장은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위하여 자본증가의 실행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이 신고에 대하여는 제36조 제2항, 제36a조 및 제3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사회에 의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출자를 이행하지 못한다.
- (3)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지의 법원에 대하여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청약서의 부분과 이사회에 의하여 서명된 청약자 명부로서 그들에게 배정된 주식과 그 주식에 대하여 이행된 출자를 기재한 것;
 2.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제183조에 의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및 감사인의 보고서가 상공회의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증명서;
 3.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계산서;
 4. 자본증가가 국가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 (4) 자본증가의 실행의 신고 및 등기는 증가에 관한 결의의 신고 및 등기와 같이 할 수 있다.
- (5)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법원에 보관된다.

제 189 조 資本增加의 效力發生

자본증가실행의 등기를 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한다.

제 190 조 公 告

등기의 공고(제188조)에 있어서는 그 내용 이외에 주식의 발행가액,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결정된 사항 및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제183조 제3항)의 원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결정의 공고에

있어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인용으로써 충분하다.

제 191 조 株券과 假株券의 發行禁止

자본증가실행의 등기 이전에는 새로운 持分權을 양도하지 못하며, 새로운 주권과 가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등기 이전에 발행된 새로운 주권과 가주권은 효력이 없다.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 2 관 條件附 資本增加

제 192 조 前提條件

- (1) 주주총회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주)에 대하여 부여하는 전환권 또는 인수권이 행사되는 한도에서만 실행될 자본증가를 결의할 수 있다 (조건부 자본증가).
- (2) 조건부 자본증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1. 전환사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전환권 또는 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2. 수개의 기업의 결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3. 회사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이익참가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금전채권의 출자에 대한 신주의 인수를 위하여 회사의 근로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 (3) 조건부 자본의 권면액은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 당시의 자본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5) 인수권에 관한 이하의 규정은 전환권에 준용한다.

제 193 조 決議의 要件

- (1)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는 그 결의에서 대표되는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한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보다 많은 자본다수와 그 이외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82조 제2항과 제187조 제2항을 적용한다.

(2) 결의에서는 다음의 사항도 정하여야 한다.

1. 조건부 자본증가의 목적;
2. 인수권자의 범위;
3. 발행가액 또는 그 금액이 산출되는 근거.

제 194 조 現物出資에 의한 條件附 資本增加

- (1)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그 목적물, 회사가 그 목적물을 취득하는 상대방 및 현물출자에서 부여할 주식의 권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수권주에 대한 전환을 위한 社債의 교부는 현물출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결의는 현물출자의 제공이 명백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124조 제1항) 공고된 때에만 할 수 있다.
- (2) 이 결정이 없으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인수권주가 발행된 때에는 조건부 자본증가의 효력은 이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는 인수권주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인수권주가 발행된 후에는 정관변경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회사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이익참가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금전채권의 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95 조 決議의 申告

- (1) 이사회와 감사회의장은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위하여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의 법원에 대하여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에 의한 조건부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제194조에 의한 결정

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및 현
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 (제194조 제4항);

2. 인수권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계산서;
3. 자본증가가 국가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3)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법원에 보관된다.

제 196 조 登記의 公告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의 등기의 공고에 있어서는 그 내용 이외에
제193조 제2항에 의한 결정과 제194조에 의하여 현물출자의 제공에서 정
한 결정 및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제194조 제4항)의 원용을 표
시하여야 한다. 제194조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인용으로써 충분하다.

제 197 조 株式發行의 禁止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의 등기 이전에는 인수권주를 발행하지 못
한다. 인수권자의 청구권은 이 시기 이전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그 이전에
발행한 인수권주는 무효이다.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 198 조 引受의 意思表示

- (1) 인수권은 서면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한다. 이 의사표시(인수의
의사표시) 서면은 2통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주식의 수, 권면
액 및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에 의한 자본
참가, 제193조 제2항에 의한 결정, 제194조에 의하여 현물출자의 제
공에서 정한 결정사항 및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가 있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인수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인수의 의사

표시는 그 내용이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사표시자의 의무의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3) 인수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권주가 발행된 경우에 의사표시자가 그 인수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4) 인수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한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 199 조 引受權株의 發行

- (1) 이사회는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정하여진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인수권주를 발행할 수 있고, 결의에서 정하여진 대가의 완전한 급부가 있기 전에는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2) 전환을 위하여 제출된 社債의 발행가액과 그에 대하여 부여될 인수권주의 보다 많은 권면액의 차액이 기타의 이익준비금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그 이익준비금에 의하여 전보되거나 또는 전환권자의 추가지급에 의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만 이사회는 전환사채와 상환으로 인수권주를 발행할 수 있다. 社債가 발행된 총액이 인수권주의 총권면액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0 조 條件附 資本增加의 效力發生

인수권주의 발행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다.

제 201 조 引受權株의 發行의 申告

- (1) 이사회는 영업년도의 경과후 1월내에 지난 영업년도에서 인수권주가 발행된 범위를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를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지의 법원에 대하여 인수의 의사표시의 부분과 인수권을 행사한 자의 명부를 이사회가 서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명부에는 각 주주에게 귀속하는 주식과 그 주식에 대하여 하여진 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신고서에서 인수권주가 조건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서 정하여진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발행되고, 그 결의에서 정하여진 대가의 완전한 급부가 있기 전에는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법원에 보관된다.

제 3 관 授權資本

제 202 조 前提條件

- (1) 정관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회사의 등기후 최고 5년간 일정한 권면액(수권자본)까지 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증가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2) 수권은 정관변경의 등기후 최고 5년간 정관변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에서 대표된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보다 많은 자본다수와 그 이외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82조 제2항을 적용한다.
- (3) 수권자본의 권면액은 그 수권당시의 자본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주는 감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 (4) 정관으로 신주가 회사의 근로자에게 발행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203 조 新株의 發行

- (1)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하의 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에 관한 제185조 내지 제191조를 준용한다. 신주의 발행에 관한 정관의 수권이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에 같음한다.

- (2) 수권에서는 이사회가 인수권의 배제에 관하여 결정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하는 수권이 정관변경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제186조 제4항을 준용한다.
- (3) 종전의 자본에 대한 미납입출자가 아직 취득될 수 있는 동안은 신주를 발행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를 위하여는 정관으로 이와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출자가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서 미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신주의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본증가의 실행의 최초의 신고서에는 종전의 자본에 대한 어느 출자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과 그것이 취득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주식을 회사의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문과 제4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4 조 株式發行의 條件

- (1) 주주권의 내용과 주식발행의 조건에 관하여는 수권에서 다른 정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이사회는 결정에는 감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인수권의 배제에 관한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 결정에 관하여서도 같다.
- (2) 의결권없는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 또는 회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그것에 우선하거나 또는 그것과 동등한 우선주는 수권에서 이를 규정하는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 (3) 무제한의 확인기재가 있는 연도결산서에 연도잉여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행될 출자가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와 감사회가 기타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연도잉여금의 부분에서 전보되는 방법으로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18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증가의 실행의 신고서에는 이 밖에 확인기재가 있는 확정된 연도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또한 제210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선언을 해야 한다.

제 205 조 現物出資에 대한 發行

- (1)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수권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현물출자의 목적물, 회사가 그 목적물을 취득할 상대방 및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권면액은 수권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회의 동의로써만 이 결정을 할 수 있다.
- (3)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1인 또는 수인의 검사인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4조 제2항과 제3항, 제35조를 준용한다. 현물출자의 가치가 그에 대하여 부여될 주식의 권면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 (4)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결정이 없으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사회가 결정이 청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자본증가의 실행이 등기된 때에는 자본증가의 효력은 이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는 주식의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자본증가의 실행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에는 정관변경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 (5) 회사에 의하여 회사의 근로자에게 부여된 이익참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의 출자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6 조 會社의 登記前의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수권자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이행할 계약이 회사의 등기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결정사항이 정관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27조 제3항, 제5항,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7조 제4항 제2호, 제4호와 제5호, 제38조 제2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사회가 발기인에 같음하고, 자본증가실행의 신고와 등기가 회사의 신고와 등기에 같음한다.

제 4 관 會社財産에 의한 資本增加

제 207 조 前提條件

- (1) 주주총회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자본을 증가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 (2) 결의와 결의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1문, 제2문과 제4문 및 제18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3)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는 그 결의전에 경과한 최후의 영업년도에 관한 연도결산서(최후의 연도결산서)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다.
- (4) 결의는 대차대조표에 기초해야 한다.

제 208 조 轉入할 수 있는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

- (1) 자본으로 전입하여야 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최후의 연도대차대조표에서, 다른 대차대조표가 그 결의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에서도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연도잉여금이나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최후의 결의에서 그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이익준비금과 그것으로 적립할 금액은 전액을, 자본준비금과 법정준비금 및 그것으로 적립할 금액은 종전의 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으로 정한 그 이상의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 (2)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에 손실이월금을 포함한 손실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및 그것으로 적립할 금액을 전입하지 못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이익준비금과 그것으로 적립할 금액은 그것이 그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입할 수 있다.

제 209 조 基礎가 되는 貸借對照表

- (1) 대차대조표가 검사되고, 확정된 연도대차대조표가 결산검사인의 무제한의 확인기재를 갖추고 있을 때 또 그 기준일이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결의를 신고하기 최고 8월전에 있는 때에 그 최후의 연도 대차대조표는 결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2) 최후의 연도대차대조표가 아닌 것이 결의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는 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상법 제242조 내지 제256조, 제264조 내지 제274조, 제279조 내지 제283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기준일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결의를 신고하기 최고 8월전이면 된다.
- (3) 대차대조표는 그것이 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상법 제242조 내지 제256조, 제264조 내지 제274조, 제279조 내지 제283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1인 또는 수인의 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제한의 확인기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 주주총회가 다른 검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연도결산서의 검사를 위하여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선정된 것으로 본다. 검사위임의 특수성에서 다른 것이 생기지 아니하면 검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18조 제1항 제3문,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0조 제1항, 제2항, 제321조, 제322조 제4항과 제323조를 준용한다.
- (5) 보험회사에서는 감사회가 검사인을 정한다; 제4항 제1문을 준용한다. 검사위임의 특수성에서 다른 것이 생기지 아니하면 검사에 대하여는 보험감독법 제57조 내지 제59조를 적용한다.
- (6) 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게시와 등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10 조 決議의 申告와 登記

- (1) 상업등기부에의 등기를 위한 결의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지의 법

원에 대하여 자본증가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로서 확인기재가 있는 것, 제209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이 밖에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최후의 연도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의 기준일 이후 신고일까지 그것이 신고일에 결의되었더라면 자본증가에 지장을 줄 재산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자본증가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가 신고전 최고 8월에 있는 기준일에 작성되었고, 또 제1항 제2문에 의한 선언이 있는 경우에만 그 결의를 등기할 수 있다.
- (3) 법원은 대차대조표가 법률규정에 부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
- (4) 결의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에 관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법원에 보관된다.

제 211 조 資本增加의 效力發生

- (1)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의 등기를 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한다.
- (2) 신주는 전액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 212 조 資本增加에 의한 權利者

신주는 종전의 자본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이에 반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제 213 조 端株權

- (1) 자본증가가 종전의 자본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1개의 신주의 일부분만이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 단주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 (2) 주권발행청구권을 포함한 신주로 인한 권리는 합하여 완전한 1주로 되는 단주권이 1인의 수중에 모여지거나 또는 그 단주권이 합하여 완전한 1주가 되는 수인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 214 조 株主에 대한 催告

- (1)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의 등기후에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에게 신주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최고는 회사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본이 증가된 금액
 2. 舊주식에 대한 신주의 귀속비율.
- 공고에서는 또 최고의 공고후 1년내에 수령하지 아니하는 주식은 회사가 3회의 최고를 한 후 관계인의 계산으로 매각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최고의 공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는 수령하지 아니한 주식의 매각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고는 회사공고지에 적어도 1월의 간격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최후의 공고는 최고의 공고로부터 18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3) 경고의 최후의 공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는 수령하지 아니한 주식을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중매인의 중개에 의하여 공적인 거래소가격으로 또 거래소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226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에 준용한다.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신주가 배정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 215 조 自己株式. 一部納入株式

- (1) 자기주식은 자본증가에 참가한다.
- (2) 일부납입주식은 그 권면액에 따라서 자본증가에 참가한다. 이 경우에

자본증가는 주식의 권면액의 증가에 의하여서만 실행할 수 있다. 일부 납입주식과 더불어 전액납입주식이 있는 경우에 후자에 있어서의 자본증가는 주식의 권면액의 증가에 의하여 또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본의 증가에 관한 결의는 증가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본증가가 주식의 액면의 증가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권면액의 증가에 의하여 전보될 수 없는 금액이 자본증가에 의하여 어느 주식에도 귀속될 수 없도록 계산하여야 한다.

제 216 조 株主와 第三者의 權利의 保護

- (1) 주식과 결합된 권리 상호간의 관계는 자본증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새로운 복수의결권주의 발행과 제1문에 의한 복수의결권주의 의결권의 증가는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2) 일부납입주식의 개별적인 권리, 특히 이익참가 또는 의결권이 주식에 대하여 이행된 출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는 미납입출자를 이행할 때까지는 이행된 출자의 금액에 의하여서만 주주에게 귀속하며, 자본의 권면액에 따라서 계산한 자본증가의 백분율이 가산된다. 그 이상의 출자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는 그에 따라서 증가한다. 제271조 제3항의 경우에는 증가액이 전액납입된 것으로 본다.
- (3) 회사의 이익배당, 주식 또는 자본의 권면액이나 실제가액 또는 기타 종전의 자본 또는 이익비율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약상의 관계의 경제적인 내용은 자본증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의 종적 의무에 관하여서도 같다.

제 217 조 利益參加의 開始

- (1) 신주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자본증가가 결의된 영업년도 전부의 이익에 참가한다.

(2) 자본증가의 결의에 있어서는 신주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 이전에 경과한 영업년도의 이익에 참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본의 증가는 그 결의 이전에 경과한 영업년도의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하여 결의가 있기 전에 결의되어야 한다.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 이전에 경과한 영업년도의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자본이 증가된 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가 결의후 3월내에 상업등기부에登記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증가의 결의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 이전에 경과한 영업년도의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다. 이 기간의 진행은 취소의 소 또는 무효의 소가 계속중에 있는 동안 또는 자본증가에 관하여 신청한 국가의 인가가 아직 없는 동안은 중지된다.

제 218 조 條件附 資本

조건부 자본은 자본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조건부 자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에게 전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결의된 경우에는 전환권자의 추가납입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 한 社債의 발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인수권주의 보다 많은 총권면액의 차액의 전보를 위하여 특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 219 조 株券과 假株券의 發行禁止

상업등기부에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를 등기하기 전에는 새로운 주권과 가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 220 조 價額評價

자본증가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용이 권면액에 비례하여 그 주식과 그에 귀속하는 신주에 배분되는 경우에 각 주식에 관하여 생기는 금액은 이를 자본증가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용 및 그에 귀속하는 신주의 취득

비용으로 본다. 주식의 증가는 증가로 표시하지 못한다.

제 5 관 轉換社債·利益配當附社債

제 221 조

- (1) 채권자에게 주식으로의 전환권 또는 주식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社債(전환사채) 및 채권자의 권리가 주주의 이익지분과 결합되는 社債(이익배당부사채)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결의는 결의에서 대표된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한 다수를 요한다. 정관으로 다른 자본다수와 그 이외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82조 제2항을 적용한다.
- (2)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는 수권은 최고 5년동안 부여될 수 있다. 이사회와 감사회의장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결의와 그 발행에 관한 선언을 상업등기소에 기탁하여야 한다. 결의와 선언의 지시는 회사 공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은 향익권의 부여에 준용한다.
- (4) 주주는 전환사채, 이익배당부사채 및 향익권에 대한 인수권을 가진다.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資本減少의 措置

제 1 관 通常의 資本減少

제 222 조 要件

- (1) 기본자본의 감소는 최소한 결의시에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에 의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와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2) 여러 종류의 주식의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것이 효

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각 종류의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각 종류의 주주는 동의에 관하여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이 결의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된다.

- (3) 결의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자본감소를 하는지, 특히 기본자본의 일부가 반환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 기본자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소할 수 있다.
 1. 주식의 권면액의 감소에 의하여,
 2. 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주식의 병합은 주식에 대한 최저권면액이 지켜질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의는 감소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제 223 조 決議의 申告

이사회 및 감사회의 의장은 기본자본의 감소에 관한 결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4조 資本減少의 效力發生기본자본의 감소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본이 감소된다.

제 225 조 債權者保護

- (1) 결의의 등기가 공고되기 전에 자신의 채권이 설정된 채권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공고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한도내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의 공고는 채권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지시해야 한다. 파산의 경우에 그 보호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가가 감독하는 填補財團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 (2) 등기의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하고, 적시에 신고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그에게 담보가 제공된 이후에 비로소 기본자본의 감소에 근거하여 주주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 226 조 株券의 失權宣言

- (1) 기본자본의 감소를 실행하기 위하여 교환, 押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주권은 회사가 실권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회사에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주식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수에 미치지 않고, 관계자의 계산으로 환가하기 위하여 회사에 맡겨진 것이 아닌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 주권을 제출하라는 최고에서는 실권선언이 예고되어야 한다. 실권선언은 최고가 제64조 제2항에서 추가기간에 관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실권선언은 회사공고지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공고에서는 어떤 주식이 실권하는 것으로 선언되는지 공고로부터 당연히 알 수 있도록 실권선언되는 주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실권선언되는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될 새로운 주식을 관계인의 계산으로 지체없이 주식중매인의 중개에 의하여 공적인 거래소가격으로, 거래소가격이 없는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회사 주소지에서의 경매에서는 적절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경매의 시간, 장소 및 대상은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관계인에게는 특별히 통지되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와 통지는 최소한 경매 2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금은 관계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공탁해야 한다.

제 227 조 實行的 申告

- (1) 이사회는 기본자본의 감소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기본자본의 감소의 실행의 신고 및 등기는 감소에 관한 결의의 신고 및 등기와 결합될 수 있다.

제 228 조 最低卷面額 以下の 減少

- (1) 제7조에 규정된 최저권면액이 자본감소와 동시에 결의되고, 현물출자가 정해지지 않은 자본증가에 의하여 다시 도달되는 경우에는 기본자본이 그 최저권면액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 (2) 증가에 관한 결의와 증가의 실행이 결의후 6개월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취소의 소 또는 무효의 소가 계속중이거나 자본감소 또는 자본증가를 위하여 신청한 국가의 승인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동안은 기간의 경과가 중지된다. 기본자본의 증가의 결의와 실행은 동시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 2 관 單純化된 資本減少

제 229 조 要件

- (1) 가치감소를 보상하거나, 기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또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기본자본의 감소는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의에서는 감소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해야 한다.
- (2) 합하여 감소 이후에 남는 기본자본의 100분의 10을 넘는 법정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미리 없앤 후에만 단순화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다. 이익이월금이 있는 한 단순화된 자본감소는 할 수 없다.
- (3) 통상의 자본감소에 관한 제222조 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223조, 제224조, 제226조 내지 제228조가 준용된다.

제 230 조 株主에 대한 支給의 禁止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해소에 의하여 또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은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주주로 하여금

출자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금액은 가치감소를 보상하고, 기타의 손실을 전보하고, 자본준비금 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도 그것이 결의에서 감소의 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 231 조 資本準備金과 法定準備金으로의 積立 制限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해소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의 법정준비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감소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의 자본준비금으로의 전입은 자본준비금과 법정준비금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에는 감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액면금액을 기본자본으로 보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7조에 정해진 최저권면액이 기본자본이 된다. 허용되는 한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 이후의 시기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은 그 지급이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결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 232 조 損失을 너무 많이 인정한 경우 그 金額의 資本準備金으로의 積立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영업년도에 대한 또는 계속하는 2 영업년도중의 한 해에 대한 연도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치감소와 기타의 손실이 실제로는 결의시에 인정된 금액만큼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상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차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제 233 조 利益配當·債權者保護

- (1) 법정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100분의 10에 달하기 전에는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이때에는 감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면액이 기본자본으로 간주되지만, 최소한 제7조에 정해진 최저권면액이 기본자본이된다.

- (2) 100분의 4 이상의 이익지분의 지급은 나중에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후 2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영업년도에 대해서 비로소 허용된다. 이것은 그들의 채권이 결의의 등기의 공고전에 설정된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익배당이 결의된 연도결산서의 공고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목적으로 신고한 한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의 경우에 그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가가 감독하는 전보재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자의 담보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에서 상법 제32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지시되어야 한다.
- (3)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해소에 의하여 또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은 이 규정에 의해서도 이익으로서 배당될 수 없다.

제 234 조 資本減少의 遡及效

- (1)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 이전에 경과한 최후의 영업년도에 관한 연도결산서에서는 인수된 자본 및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감소후에 존재하게 될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 (2) 이 경우에 주주총회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하여 결의한다. 이 결의는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3)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가 결의후 3개월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취소의 소 또는 무효의 소가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신청된 국가의 승인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동안은 기간의 경과가 중지된다.

제 235 조 同時的 資本增加의 遡及效

- (1) 제234조의 경우에 자본감소와 동시에 기본자본의 증가가 결의되는 경우에는 연도결산서에서 자본증가도 실행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결의는 새로운 주식인 인수되고, 현물출자가 정해지지 않고, 제188조 제

2항에 의하여 자본증가의 실행의 등기시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각 주식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인수와 납입은 기본자본의 증가에 관한 결의를 인증하는 공증인에게 증명되어야 한다.

- (2) 자본감소와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 및 증가의 실행이 결의후 3개월 이내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결의는 무효이다. 취소의 소 또는 무효의 소가 계속중이거나, 자본감소 또는 자본증가를 위하여 신청된 국가의 승인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동안은 기간의 경과가 중지된다. 기본자본의 증가의 결의와 실행은 함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 236 조 公 示

상법 제325조에 의한 연도결산서의 공시는 제234조의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의 등기후에, 제235조의 경우에는 자본감소 및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와 자본증가의 실행이 등기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3 관 株式의 消却에 의한 資本減少

제 237 조 要 件

- (1) 주식은 강제적으로 또는 회사에 의한 취득후에 소각할 수 있다. 강제소각은 그것이 원시정관에 의하여 또는 주식의 인수나 청약전의 정관 변경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2) 소각에 있어서는 통상의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강제소각을 위한 요건 및 그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한다. 강제소각 또는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주주에게 제공되는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또한 이 주주의 출자이행의무의 면제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이 준용된다.
- (3)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가액이 전액 납입된 주식은

1. 무상으로 회사의 처분에 맡겨진 경우 또는
2. 대차대조표이익 또는 기타의 이익준비금의 부담으로 - 그것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 - 소각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 (4) 제3항의 경우에도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에 의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와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결의에서는 자본감소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회 의장은 그 결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5) 제3항의 경우에는 소각되는 주식의 총권면액과 대등한 금액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 (6) 정관에 의하여 지시되는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없다. 이 경우에는 통상의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한다.

제 238 조 資本減少의 效力發生

결의의 등기에 의하여 또는 소각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소각에 의하여 기본자본이 소각된 주식의 총권면액만큼 감소한다. 정관에 의하여 지시되는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자본감소에 관하여 결의하지 않는 한 강제소각에 의하여 기본자본이 감소한다. 소각을 위해서는 특정한 주식상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회사의 행위가 필요하다.

제 239 조 實行의 申告

- (1) 이사회는 기본자본의 감소의 실행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지시되는 강제소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
- (2) 감소의 실행의 신고 및 등기는 감소에 관한 결의의 신고 및 등기와 결합될 수 있다.

제 4 관 資本減少의 表示

제 240 조

자본감소에 의하여 획득한 금액은 “이익준비금의 전입”항목 뒤에 손익 계산서에서 “자본감소로 인한 수익”으로서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제 229조 제1항과 제232조에 의한 자본준비금으로의 전입은 “단순화된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으로의 적립”으로서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부속서에서는 자본감소 및 이익준비금의 해소에 의하여 획득한 금액이

1. 가치감소의 보상을 위하여
 2. 기타 손실의 전보를 위하여 또는
 3. 자본준비금의 적립을 위하여
-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 7 장 株主總會決議 및 確定된 年度決算書의 無效. 違法한 過小評價로 인한 特別檢査

제 1 절 株主總會決議의 無效

제 1 관 總 說

제 241 조 無效原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제192조 제4항, 제212조, 제217조 제2항, 제228조 제2항, 제234조 제3항, 제235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무효이다.

1. 제121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러나 총주주가 출석하거나 대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은 경우,
3. 주식회사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내용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4. 그 내용에 의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취소의 소에 기초한 판결에 의하여 기판력을 갖고 무효로 선언된 경우,
6. 비송사건절차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하여 기판력 있는 재판에 기하여 무효로서 말소된 경우.

제 242 조 無效의 治癒

- (1)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위반하여 인증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인증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는 그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때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 (2) 주주총회 결의가 제241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고, 그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기간의 만료시에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소에 관하여 기판력있는 재판이 있거나 또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종국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연장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직권에 의한 결의의 말소는 시간경과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 (3) 제2항은 제217조 제2항, 제228조 제2항, 제234조 제3항 및 제235조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등기가 기간내에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준용된다.

제 243 조 取消原因

- (1) 주주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의 위반을 이유로 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2) 취소는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 손해가 되도록 특별이익을 획득하려고 기도하고, 그 결의가 이 목적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그 결의가 다른 주주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취소는 제128조의 위반을 이유로 할 수 없다.
- (4) 정보제공의 거절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의 거절이 그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을 주주총회 또는 주주가 표시한 것 또는 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 244 조 取消할 수 있는 株主總會決議의 追認

주주총회가 취소할 수 있는 결의를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추인하고, 그 새로운 결의가 취소기간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취소가 기판력을 갖고 기각된 경우에는 취소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추인결의를 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무효로 선언될 법률상의 이익을 원고가 갖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시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결의를 무효로 선언할 목적을 갖고 계속하여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제 245 조 取消權限

다음의 자는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1. 주주가 결의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경우에 주주총회에 출석한 그 주주;
2. 주주가 불법하게 주주총회에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결의의 목적사항이 적법하게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 그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 주주;
3. 제243조 제2항의 경우에 각 주주;
4. 이사회;
5. 결의의 실행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처벌받을 행위 또는 질서위

반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들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

제 246 조 取消의 訴

- (1) 訴는 결의후 1월내에 제기해야 한다.
- (2) 訴는 회사에 대하여 제기해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가 대표한다. 이사회 또는 이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감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 (3) 그 지역에 회사가 주소를 갖고 있는 지방법원이 소에 관하여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구두변론은 제1항의 1월의 기간경과전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수개의 취소소송은 동시의 변론 및 재판을 위하여 병합되어야 한다.
- (4) 이사회는 소의 제기 및 구두변론의 기일을 지체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 247 조 訴 價

- (1) 소송법원은 개개의 사건의 모든 사정, 특히 당사자에 대한 사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공정한 재량에 따라 訴價를 정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사안의 의미가 그것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訴價는 자본의 10분의 1 또는 그 10분의 1이 100만 도이취 마르크를 넘는 경우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를 초과할 수 있다.
- (2)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가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그의 경제상황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소송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법원비용 지급의무가 그의 경제상황에 상응하는 소가의 일부에 따라서 산정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은 그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그의 변호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소가의 일부에 따라서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효과를 갖는다. 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또는 그 당사자가 그것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지급한 법원비용 및 그의 변호사 수수료를 그 소가의 일부에 따라서만 배상해야 한다. 재판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수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변호사는 그의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가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신청은 소송법원의 사무소에서 조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본안에 관한 변론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인정되거나 확정된 소가가 소송법원에 의하여 인상된 경우에만 그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에 대한 재판전에 상대방을 신문해야 한다.

제 248 조 判決의 效力

- (1) 결의가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모든 주주 및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이사회는 그 판결을 지체없이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도 등기되어야 한다. 판결의 등기는 결의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 (2) 결의가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했던 경우에는 판결과 함께 판결과 종전의 모든 정관변경을 고려하여 나타나는 정관의 완전한 문구를 이 사안에 관한 공증인의 증명을 첨부하여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9 조 無效의 訴

- (1) 주주, 이사회 또는 이사나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 제3항 제1문, 제4항, 제247조 및 제248조가 준용된다. 그 무효를 소의 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는다.
- (2) 수개의 무효소송은 동시의 변론 및 재판을 위하여 병합되어야 한다.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은 병합될 수 있다.

제 2 관 特定한 株主總會決議의 無效

제 250 조 監事 選出의 無效

- (1)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의 선출은 제241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1. 감사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1문 또는 제98조 제4항에 위반하여 구성된 경우;
 2. 주주총회가 선출의 제안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공동결정법 제6조 및 제8조) 제안되지 않은 자를 선출한 경우;
 3. 선출에 의하여 감사의 법정 최고인원수가 초과된 경우 (제95조);
 4. 선출된 자가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그 임기가 시작할 때 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 (2) 감사의 선출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가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1. 회사의 총경영협의회 또는 회사에 하나의 경영협의회만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협의회 및 회사가 콘체른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콘체른경영협의회,
 2. 그 근로자 자신이 대표자 또는 선거인에 의하여 회사의 감사의 선출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의 총경영협의회 또는 그 다른 기업에 하나의 경영협의회만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협의회,
 3. 회사에서 대표되는 노동조합 또는 그 근로자 자신이 대표자 또는 선거인에 의하여 회사의 감사의 선출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대표되는 노동조합 및 그 최고조직.
- (3) 주주, 이사회, 이사나 감사, 또는 제2항에 표시된 조직 또는 근로자의 대표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의 선출이 무효라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 제3항 제1문, 제4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제2문 및 제249조 제2항이 준용된다. 그 무효를 소의 제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 251 조 監事 選任의 取消

- (1)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의 선출은 법률 또는 정관의 위반을 이유로 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주주총회가 선출제안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선출제안이 법률에 위반하여 성립된 것을 이유로 할 수 있다. 제243조 제4항 및 제244조가 적용된다.
- (2) 취소권한에 관해서는 제245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가 적용된다. 광산공동결정법에 의하여 경영협회의 제안에 따라 선출된 감사의 선출은 회사의 경영의 각 경영협의회, 회사의 경영에서 대표되는 각 노동조합 또는 그 최고조직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다. 광산공동결정법 또는 공동결정보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감사의 제안에 따라 선출된 다른 1인의 감사의 선출은 각 감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다.
- (3) 취소절차에 관해서는 제246조, 제247조 및 제248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제 252 조 判決의 效力

- (1) 주주, 이사회, 이사회나 감사, 제250조에 표시된 조직 또는 근로자의 대표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의 선출이 무효라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의 무효를 기판력을 갖고 확인하는 판결은 모든 주주, 회사의 근로자, 그 근로자 자신이 대표자 또는 선거인에 의하여 회사의 감사의 선출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의 모든 근로자, 이사, 감사 및 제250조 제2항에 표시된 조직과 근로자의 대표를 위하여 또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 (2)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의 선출이 기판력있는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모든 주주 및 이사와 감사를 위하여 또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251조 제2항 제2문의 경우에는 그 판결은 그 규정에 의하여 취소권한을 갖는 경영협의회, 노동조합 및 최고조직을 위하여 또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 253 조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의 無效

- (1)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제173조 제3항, 제217조 제2항 및 제241조의 경우외에 그 기초로 되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인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그 이유로 인한 결의의 무효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의 무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 (2) 회사에 대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249조가 적용된다.

제 254 조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의 取消

- (1) 대차대조표이익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제243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적립 또는 이익이월이 이성적인 상인의 판단에 의하면 경제적 및 재정적 필요와 관련하여 조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의 생존능력 및 저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아직 납입최고되지 않은 출자를 공제하고 기본자본의 최소한 100분의 4의 금액으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에게의 배당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금액을 주주총회가 대차대조표이익으로부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이익으로서 이월하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 (2) 취소에 관해서는 제244조 내지 제248조가 적용된다. 취소기간은 연도결산서가 상법 제316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이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주주는 그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한 취소권한을 갖는다.

제 255 조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의 取消

- (1) 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는 제243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2) 취소는 주주의 인수권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된 경우에는 증가결의에 의하여 생기는 발행가액 또는 그 이하로 신주가 발행될 수 없는 최저가액이 부당하게 낮다는 것도 이유로 할 수 있다. 인수를 위하여 신주를 주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의하여 신주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절 確定된 年度決算書의 無效

제 256 조 無 效

- (1) 확정된 연도결산서는 제173조 제3항, 제234조 제3항 및 제235조 제2항의 경우외에 다음의 경우에 무효이다.
1. 그것이 그 내용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회사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또는 그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2. 그것이 상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되지 않은 경우,
 3. 법률상의 검사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결산검사인으로 임명되지 않은 자 또는 상법 제319조 제1항이나 상법시행법 제25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검사된 경우,
 4. 그것을 확정할 때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의 금액의 적립 또는 또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부터의 금액의 인출에 관한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이 위반된 경우.
- (2) 이사회 및 감사회에 의하여 확정된 연도결산서는 제1항에 의한 경우 외에는 이사회 또는 감사회가 그것을 확정할 때 적법하게 협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이다.
- (3) 주주총회에 의하여 확정된 연도결산서는 제1항에 의한 경우외에 그것의 확정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1.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러나 총주주가 출석하거나 대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제13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은 경우,
 3. 취소의 소에 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기판력을 갖고 무효선언된 경우.
- (4) 연도결산서의 항목구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그것에 의하여 연도결산서가 항목구분되어야 하는 양식의 부준수를 이유로 연도결산서는 그 명료성과 개관성이 그것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 (5) 평가규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연도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무효이다.
1. 항목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또는
 2. 항목이 과소평가되고, 그럼으로써 회사의 재산상태 및 수익상태가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은폐되는 경우.
- 상법 제253조 내지 제256조 및 상법 제279조 내지 제283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보다 적극항목이 높은 가액으로 계상되고, 소극항목이 낮은 금액으로 계상되는 경우에 그 항목은 과대평가된 것이다. 상법 제253조 내지 제256조 및 상법 제279조 내지 제283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보다 적극항목이 낮은 가액으로 계상되고, 소극항목이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는 경우에 그 항목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 (6)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무효는 연방공보에서 상법 제32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항 제1문에 의한 공고로부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월, 그밖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 기간의 만료시에 연도결산서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소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재판이 있거나 또는 소가 다른 방법으로 종국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 (7) 회사에 대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249조가 준용된다.

제 257 조 株主總會에 의한 年度決算書 確定의 取消

- (1) 주주총회에 의한 연도결산서의 확정은 제243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는 연도결산서의 내용이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할 수 없다.
- (2) 취소에 관해서는 제244조 내지 제248조가 적용된다. 취소기간은 연도결산서가 상법 제316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이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제 3 절 違法한 過小評價로 인한 特別檢査

제 258 조 特別檢査人の 選任

- (1)
 1. 확정된 연도결산서에서 정해진 항목이 적지 않게 과소평가되거나 (제256조 제5항 제3문) 또는
 2. 부속서가 규정된 기재를 포함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포함하지 않고, 흠결된 기재에 관하여 질문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그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질문의 수록이 요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특별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인은 그것이 적지 않게 과소평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의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특별검사인은 규정된 기재가 되었는지 또는 완전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 흠결된 기재에 관하여 질문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그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질문의 수록이 요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속서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신청은 연도결산서에 관한 주주총회후 1월내에 하여야 한다. 연도결산서가 상법 제316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이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지분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주주에 의해서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에 관한 재판까지 주식을 공탁하고, 주주총회를 한 날 이전 적어도 3월 이상 주식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앞에서의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으로 충분하다.

- (3) 회계사 및 회계회사만이 제1항에 의한 특별검사인이 될 수 있다. 선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319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회사의 결산검사인 및 선임전의 최후의 3년에 회사의 결산검사인이었던 자는 제1항에 의한 특별검사인이 될 수 없다.
- (4)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인의 상당한 현금체당의 배상 및 보수에 관한 제142조 제6항, 특별검사인의 권리에 관한 제145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별검사인의 비용에 관한 제146조 및 결산검사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23조가 준용된다. 제1항에 의한 특별검사인은 회사의 결산검사인에 대해서도 제145조 제2항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제 259 조 檢査報告書. 終局的 確認

- (1) 특별검사인은 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별검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목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제256조 제5항 제2문), 또는 연도결산서의 항목구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양식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특별검사인은 이에 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관해서는 제145조 제4항이 준용된다.
- (2) 검사의 결과에 의할 때 문제의 항목이 적지 않게 과소평가된 경우에는(제256조 제5항 제3문) 특별검사인은 그 보고서의 말미에 종국적 확인에서 다음의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개개의 적극항목이 최소한 어떤 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는가 또는 개개의 소극항목이 최대한 어떤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가,
 2. 그 가액 또는 금액이 계상되는 경우 얼마의 금액만큼 연도잉여금이 증가될 것인지 또는 연도결손액이 감소될 것인지.

특별검사인은 연도결산서의 기준일에서의 관계를 그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특별검사인은 제1호에 의한 가액 및 금액의 계상을 위하여 평가될 목적물 또는 비교할 만한 목적물을 마지막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회사가 평가한 그 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을 기초로 해야 한다.

- (3) 감사의 결과에 의할 때 문제의 항목이 과소평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과소평가된 경우에는 (제256조 제5항 제3문) 특별검사인은 그 보고서의 말미에 중국적인 확인에서 그의 의무에 따른 검사 및 판단에 의하면 문제의 항목은 위법하게 과소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4) 감사의 결과에 의할 때 부속서가 규정된 기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완전하게 포함하지 않았고, 흠결된 기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그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질문의 수록이 요구된 경우에는 특별검사인은 그 보고서의 말미에 중국적인 확인에서 그 흠결된 기재를 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또는 감가상각방법의 상위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기재가 되지 않은 상위가 없으면 연도 잉여금 또는 연도결손금이 그만큼 많게 또는 적게 될 금액도 중국적 확인에서 기재되어야 한다. 감사의 결과에 의할 때 제1문에 의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특별검사인은 그 의무에 따른 검사 및 판단에 의하면 규정된 기재가 부속서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중국적 확인에서 표시해야 한다.
- (5) 이사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특별검사인의 중국적 확인을 지체 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 260 조 特別檢查人の 終局的 確認에 관한 法院의 裁判

- (1) 제25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검사인의 중국적 확인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지분을 함하여 기본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주주는 연방공보에서의 공고후 1월내에

제132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8조 제2항 제4문 및 제5문이 준용된다. 신청은 신청에 지정될 적극항목이 최소한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 또는 신청에 지정될 소극항목이 최대한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회사의 신청은 연도결산서가 특별검사인의 중국적 확인에서 확정된 과소평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

- (2) 신청에 관해서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재판한다. 제259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이 적용된다. 결정적인 모든 사정의 완전한 해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계상될 가액 또는 금액을 사정해야 한다.
- (3) 제99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 법원은 그 재판을 회사에, 또한 주주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도 송달해야 한다. 그밖에 법원은 이유를 생략하고 그것을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고는 회사 및 그 지분을 합하여 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주주에게 속한다. 제258조 제2항 제4문 및 제5문이 준용된다. 항고기간은 연방공보에 실린 재판의 공고에 의하여 시작된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또한 주주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주주를 위해서도 재판의 송달전에는 시작하지 않는다.
- (4) 절차의 비용에 관해서는 비용규칙이 적용된다. 제1심의 절차에 관해서는 수수료 기준액의 2배가 징수된다. 제2심에 관해서는 동액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항고가 성공한 경우에도 같다. 신청 또는 항고가 재판에 이르기 전에 취하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반액으로 감액된다. 청구의 가액은 직권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그 비용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회사에, 그밖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247조가 준용된다.

제 261 조 過大評價에 基礎한 收益에 관한 裁判

- (1) 특별검사인이 그의 중국적 확인에서 항목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고, 그 확인에 대하여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기간내에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은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작성된 최초의 연도결산서에서 특별검사인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 또는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것은 변화된 사정에 기초하여, 특히 소모되는 목적물의 경우에는 그 소모에 기초하여 상법 제253조 내지 제256조 및 상법 제279조 내지 제283조에 의하여 또는 적법한 부기의 원칙에 의하여 적극항목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또는 소극항목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야 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부속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특별계산서에서 특별검사인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 또는 금액의 제2문에 의하여 계상된 가액 또는 금액으로의 변동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 목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하여, 또한 그 목적물의 감소에 의한 수익의 사용에 관하여 부속서에서 보고해야 한다. 연도대차대조표의 개개의 항목에 관해서는 제1문 및 제2문에 근거한 적극항목은 그것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상되고, 또는 소극항목은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상된 만큼의 그 차액이 기입되어야 한다. 차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손익계산서에서는 “특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과대평가에 기초한 수익”으로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 (2) 항목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제260조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확인한 경우에 법원의 재판의 기판력이 생긴 후에 작성된 최초의 연도결산서에서 항목의 계상에 관해서는 제1항이 준용된다. 차액의 총액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과대평가에 기초한 수익”으로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대평가에 의한 수익은 제58조 및 제86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연도잉여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익에 부과될 조세를 공제한 수익의 사용에 관하여는 연도결산서에서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대차대조표손실이 표시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제 8 장 會社의 解散과 無效宣言

제 1 절 解 散

제 1 관 解散原因과 申告

제 262 조 解散原因

(1)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것은 의결시에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와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4. 절차의 비용에 상당하는 파산재단이 없음을 이유로 파산절차의 개시를 거부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5. 비송사건절차법 제114a조에 의하여 정관의 하자를 확인하는 등기법원의 처분이 확정됨으로써.

(2) 이 절은 주식회사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263 조 解散의 申請과 登記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파산절차의 개시 및 개시의 거부의 경우(제26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법원에 의한 정관의 하자의 확인의 경우(제262조 제1항 제5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해산 및 그 원인을 직권으로 등기해야 한다.

제 2 관 清 算

제 264 조 清算의 必要

- (1)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후에 청산이 이루어진다.
- (2) 이 관에서 또는 청산의 목적에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은 회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계속 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265 조 清算人

- (1) 이사는 청산인으로서 청산을 처리한다.
-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선임에 관해서는 제76조 제3항 제2문과 제3문이 준용된다. 법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
- (3) 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그 지분을 합하여 기본자본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도이취 마르크의 권면액에 달하는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및 해임해야 한다. 주주는 적어도 3월 이상 주식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을 위해서는 법원 또는 공증인 앞에서의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으로 충분하다. 그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4)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상당한 현금체당의 배상청구권과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과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체당 및 보수를 정한다. 그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있는 재판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 (5) 주주총회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은 청산인을 언제라도 해임할 수 있다. 임용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 (6) 노무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광산공동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

는 한도내에서는 노무이사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66 조 清算人의 申告

- (1) 최초의 청산인 및 그 대표권은 이사회가, 청산인의 교체 및 그 대표권의 변경은 청산인이 상업등기부에登記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증서 및 대표권에 관한 증서를 원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회사의 주소의 법원을 위하여 첨부되어야 한다.
- (3) 신고서에는 제265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반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청산인이 법원에 대하여 무제한의 정보 제공의무를 진다는 설명을 받았다는 것을 청산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직권으로登記된다.
- (5) 청산인은 이미 이사로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보관하기 위하여 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 267 조 債權者에 대한 催告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을 지시하여 회사의 채권자에게 그 청구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최고는 회사공고지에 3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8 조 清算人의 義務

- (1) 청산인은 진행중인 업무를 종료하고, 채권을 추심하고, 잔여재산을 금전으로 전환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이 그것을 요구하는 한 청산인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 (2) 그밖의 점에 있어서는 청산인은 그의 업무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청산인은 이사회와 같이 감사회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

- (3) 제88조의 경업금지는 청산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4) 특정한 수령인 앞으로의 모든 영업서류에는 회사의 형태와 주소, 회사가 청산중에 있다는 사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및 모든 청산인과 감사회의 의장의 성과 적어도 하나의 생략되지 아니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자본을 기재해야 하고, 주식에 대하여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출자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존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개개의 경우에 요구되는 특별한 기재가 단순히 부가될 필요가 있는 인쇄지에 사용하는 통지와 보고에는 제1문에 의한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서는 제1문에서 의미하는 영업서류로 본다. 제3문은 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69 조 清算人에 의한 代表

- (1) 청산인은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 (2) 수인의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별단의 다른 정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청산인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청산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3) 정관 또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은 각 청산인이 단독으로 또는 지배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감사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감사회도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2문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 (4)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청산인은 그중의 어떤 청산인에게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그 청산인이 지배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 (5) 청산인의 대표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
- (6) 청산인은 청산을 의미하는 부가어 및 자기의 서명을 상호에 부기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서명한다.

제 270 조 開始貸借對照表. 年度決算書 및 狀態報告書

- (1) 청산인은 청산의 개시를 위하여 대차대조표(개시대차대조표)와 그 개시대차대조표를 설명하는 보고서 및 각 연도의 종료를 위하여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주주총회는 개시대차대조표와 연도결산서의 확정 및 청산인과 감사의 면책에 관하여 의결한다. 개시대차대조표와 그것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관해서는 연도결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정재산의 양도가 가까운 장래로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고정재산이 더 이상 영업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재산은 유동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도결산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3) 법원은 회사의 상태가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분명한 경우에는 결산검사인에 의한 연도결산서와 상태보고서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제 271 조 財産의 分配

- (1) 채무의 변제후에 잔존하는 회사의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된다.
- (2) 회사재산의 분배시에 여러가지 권리를 갖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주식권면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3) 기본자본에 대한 출자가 총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급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급부된 출자가 반환되며, 잉여금은 주식권면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그 재산이 출자의 반환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는 그 손실을 주식권면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미납된 출자는 필요한 한도로 추심되어야 한다.

제 272 조 債權者保護

- (1) 재산은 채권자에 대한 최고가 세번째 공고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분배할 수 있다.
- (2) 알고 있는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한 채무액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 (3) 어떤 채무가 당장 변제될 수 없거나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 273 조 清算의 終了

- (1) 청산이 종료되고, 종결계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산인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청산의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말소되어야 한다.
- (2) 회사의 장부 및 서류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하여 10년간 공탁해야 한다.
- (3) 법원은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 (4) 또다른 청산조치가 필요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종전의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하거나 또는 다른 청산인을 취임시켜야 한다. 제265조 제4항이 적용된다.
-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문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제 274 조 解散된 會社의 繼續

- (1) 주식회사가 시간의 경과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재산의 분배가 시작되지 않은 동안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계속을 의결할 수 있다. 결의는 의결시에 대표되는 자본의 최소한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회사가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해산되었지만, 파산절차가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또는 강제화회의의 기판력 있는 인가에 의하여 폐지된 경우
 2. 회사가 제2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법원에 의한 정관의 하자의 확인에 의하여 해산되었지만, 그 하자를 치유하는 정관변경이 늦어도 회사의 계속과 동시에 결의되는 경우.
- (3) 청산인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회사의 계속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신고서에 주주에 대한 회사의 재산의 분배가 개시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 (4) 계속결의는 그것이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때에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계속결의와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가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한 계속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두 결의는 함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 2 절 會社의 無效宣言

제 275 조 無效宣言을 구하는 訴

- (1) 정관이 기본자본의 액수 또는 기업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의 목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각 주주 및 이사와 감사는 회사가 무효라는 것의 선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그밖의 원인을 이유로 할 수 없다.
- (2) 제276조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소권자가 회사에 그 하자를 제거할 것을 최고하고, 회사가 3월 이내에 그 최고에 응한 후에 비로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이 소는 회사의 등기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한 직권에 의한 회사의 말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 (4) 이 소에 관해서는 제24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47조, 제248조 제1문, 제249조 제2항이 준용된다. 이사회는 소장의 인증된 등본 및 확정판결을 상업등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판결에 기한 회사의 무효는 등기되어야 한다.

제 276 조 瑕疵의 治癒

기업의 목적에 관한 규정과 관련되는 하자는 정관변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치유할 수 있다.

제 277 조 無效의 登記의 效力

- (1) 확정판결 또는 등기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회사의 무효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경우에는 해산할 때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산된다.
- (2) 회사 명의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는 사원은 출자를 급부해야 한다.

제 2 편 株式合資會社

제 1 장 總 則

제 278 조 株式合資會社의 本質

- (1) 주식합자회사는 적어도 1인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지고(무한책임사원), 기타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지 않고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에 참가하는(유한책임주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 (2) 무한책임사원 상호간 및 유한책임주주 전체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의 권한은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 (3) 그밖에 아래의 규정으로부터 또는 이사회 의 결의로부터 다른 특단의 사항이 없는 한 주식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279 조 商 號

- (1) 주식합자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목적으로부터 채택되어야 한다. 그 상호는 “주식합자회사”라는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주식합자회사가 자기에게 이전된 상업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2조) 그 상호에 주식합자회사라는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80 조 定款의 確定·發起人

- (1) 정관은 적어도 5인이 공증인의 인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증서에는 각 관계인이 인수할 주식의 액면가, 발행가액 및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공증인에 의해 인증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 (2)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의 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들 이외에 유한책임주주로서 출자를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자는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관을 확정한 사원은 회사의 발기인이다.

제 281 조 定款의 內容

- (1) 정관에는 제23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직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출자는 그것이 기본자본으로 급부되지 않을 때에는 정관에 그 총액 및 종류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3) (삭제)

제 282 조 無限責任社員의 登記

상업등기부에 회사를 등기할 때에는 이사 대신에 무한책임사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밖에 무한책임사원이 어떠한 대표권을 갖는지 등기하여야 한다.

제 283 조 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해 적용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상업등기부의 신청, 제출, 표시 및 증명과 공고;
2. 설립검사;
3. 주의의무 및 책임;
4. 감사회에 대한 의무;
5. 신용제공의 가능 여부;
6. 총회의 소집;
7. 특별검사;
8. 업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행사;
9. 연도결산서, 상태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이익처분에 관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10. 연도결산서의 검사;
11. 콘체른에서의 계산규정;
12. 조건부자본증가, 인허자본 및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의 경우 주식 발행;
13. 총회결의의 무효 및 취소;
14. 파산절차 또는 재판상의 회회절차의 개시 신청

제 284 조 競業禁止

- (1)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문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다른 동종의 상사회사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도 없다. 동의는 특정한 종류의 거래를 위해서 또는 특정한 상사회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 (2) 무한책임사원이 이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그 사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타인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의해 받은 보수를 인도하거나 보수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그 사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회사의 청구권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행위에 대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知·不知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285 조 總 會

- (1) 총회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주식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갖는다. 무한책임사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 결의할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감사회의 선임 및 해임;
 2.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의 면책;
 3. 특별검사인의 선임;
 4. 배상청구권의 행사;
 5. 배상청구권의 포기;
 6. 결산검사인의 선출;

이 결의에서는 타인에 의해서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총회의 결의에는 그것이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의 일치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관한 것인 한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3)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총회의 결의는 그 동의를 있을 때 비로소 상업등기부에 제출할 수 있다.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할 결의는 그 동의를 의사록 또는 의사록의 부속서에서 인증되어야 한다.

제 286 조 年度決算書·狀態報告書

- (1) 총회는 연도결산서의 확정에 관하여 결의한다. 결의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연도대차대조표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이 “인허자본”항목 뒤에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당해 영업년도에 무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에 속하게 될 손실은 자본지분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손실이 자본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한 그 손실은 차변에 채권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의 납입의무”라는 표시하에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지급의무가 없을 때에는 그 금액은 “재산출자로 전보되지 않는 무한책임사원의 손실지분”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상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가 무한책임사원, 그 배우자, 미성년의 자 또는 이들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에게 부여하는 제89조에 해당하는 신용은 “무한책임사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것”이라는 표시하에 차변의 해당항목에 기재되어야 한다.
- (3) 손익계산서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에 속하게 될 손익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다.
- (4) 상법 제280조 제9호 a 및 b는 무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에 속하는 이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87 조 監事會

- (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유한책임주주의 결의는 감사회가 실행한다.
- (2) 유한책임주주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유

한책임주주 전원을 상대로 수행하는 소송에서 총회가 특별대리인을 선출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회가 유한책임주주를 대리한다. 유한책임주주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주주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 (3) 무한책임사원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제 288 조 無限責任社員에 대한 利益配當. 信用提供

- (1)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자본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이 귀속될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자본지분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무한책임사원은 대차대조표손실, 납입의무, 무한책임사원의 손실지분 및 무한책임사원과 그 가족에 대한 신용으로 인한 채권의 총액이 이월이익,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과 무한책임사원의 자본지분의 총액을 초과하는 한, 그러한 이익지분 및 그 자본지분에 대한 금전을 받을 수 없다.
- (2) 제1항 제2문의 요건이 갖추어진 한, 회사는 제286조 제2항 제4문에 해당하는 신용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신용은 다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3) 이익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의 보수청구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보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 289 조 解 散

- (1) 주식합자회사의 해산의 원인 및 수인의 무한책임사원 중의 1인의 퇴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에 따른다.
- (2) 주식합자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도 해산된다.
1.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파산재단이 없기 때문에 파산절차 개시를 거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비송사건절차법 제144a조에 따라 정관의 흠결을 확정하는 등기법원

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 (3) 회사는 유한책임주주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에 의해서는 해산되지 않는다. 유한책임주주의 채권자는 회사에 해산을 고지할 권리가 없다.
- (4) 유한책임주주에 의한 회사의 해산고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해산에 대한 유한책임주주의 동의에 관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의에는 의결시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적어도 3/4을 포함하는 다수가 필요하다. 정관은 이것보다 다수인 자본과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5) 무한책임사원은 제명에 의하는 외에는 정관에서 퇴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 (6) 회사의 해산 및 무한책임사원의 퇴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의해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상법 제143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 290 조 清算

- (1)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 및 총회에 의해 선출된 1인 또는 수인의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사무를 처리한다.
- (2) 각 무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편 結合企業

제 1 장 企業契約

제 1 절 企業契約의 種類

제 291 조 支配契約·利益提供契約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가 그 회사의 지휘를 다른 기업에 맡기는

계약(지배계약) 또는 그 이익 전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익제공계약)은 기업계약이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가 그 기업을 다른 기업의 계산으로 운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도 이익 전부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 (2) 서로 독립된 기업이 계약에 의하여 통일적 지휘하에 놓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기업중 하나가 다른 계약기업에 종속되지 않을 때에 이 계약은 지배계약이 아니다.
- (3)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에 기초하는 회사의 급부는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 292 조 기타의 企業契約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의한 다음의 계약도 기업계약이다.
 1. 그 이익 또는 각 영업소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른 기업의 이익 또는 다른 기업의 각 영업소 이익을 공동이익의 분배를 위하여 합계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익공동)
 2. 그 이익의 일부 또는 각 영업소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일부이익제공계약)
 3. 그 기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그밖에 위임하는 경우 (경영임대차계약, 경영위임계약)
- (2) 이사 및 감사 또는 회사의 각 종업원과의 이익참가에 관한 계약과 통상의 영업거래의 계약 또는 특허실시계약의 범위내에서의 이익참가에 관한 약정은 일부이익제공계약이 아니다.
- (3) 경영임대차계약 또는 경영위임계약 및 주주총회가 그 계약에 동의한 결의는 그 계약이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1문은 이 위반에 의한 결의의 취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2 절 企業契約의 締結, 變更 및 終了

제 293 조 總會의 同意

- (1) 기업계약은 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유효하다. 이 결의는 의결시 대표되는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와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결의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일 때에는 그 회사의 총회도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결의에는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이 준용된다.
- (3) 이 계약은 서면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계약서는 동의에 관하여 의결해야 할 총회소집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 주주의 열람을 위해 비치해야 한다.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지체없이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총회에는 계약서를 비치해야 한다. 이사회는 심의를 개시할 때 계약서를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계약서가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4) 각 주주에게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에 대한 동의에 관해 의결하는 총회에서 계약체결에 관하여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기업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4 조 登記·效力發生

- (1) 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계약의 성립 및 종류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일부 이익제공계약에서는 기타 제공될 이익의 한도에 관한 합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계약상대방의 총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의사록 및 부속서류가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 (2) 계약은 그 성립이 회사의 소재지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다.

제 295 조 變 更

- (1) 기업계약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변경할 수 있다. 제293조, 제294조가 준용된다.
- (2) 회사의 사외주주에 대한 보상금부의무 또는 주식취득의무를 지우는 계약규정의 변경을 위한 회사의 총회의 동의를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외주주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제293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이 적용된다. 각 사외주주에게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동의에 관해 의결하는 집회에서 계약변경에 관하여 중요한 계약상대방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6 조 廢 止

- (1) 기업계약은 영업년도말 또는 기타 계약에 정해진 결산기간말에만 폐지할 수 있다. 소급효가 있는 폐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폐지는 서면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 (2) 사외주주에 대한 보상금부의무 또는 주식취득의무를 지우는 계약은 사외주주가 특별결의에 의하여 동의할 때에만 폐지할 수 있다. 이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제293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 제295조 제2항 제3문이 준용된다.

제 297 조 解 約

- (1) 기업계약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특히 계약상대방이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2)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주주가 특별결의로 동의할 때에 한하여 중대한 이유없이도 회사의 사외주주에 대한 보상금부의무 또는 주식취득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제293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 제295조 제2항 제3문이 준용된다.
- (3) 해약은 서면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제 298 조 申告와 登記

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계약의 종료, 종료의 사유 및 시점을 지체없이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 299 조 指示의 排除

기업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을 변경, 유지 또는 종료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제 3 절 會社와 債權者의 保護

제 300 조 法定準備金

법정준비금에는 제150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 대신에 다음의 것을 적립해야 한다.

- 이익제공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이익제공이 없다면 존재할 연도잉여금으로부터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손실을 공제한 것 가운데 자본준비금을 포함하여 계약의 존속중에 시작하거나 자본증가의 실행후에 시작되는 최초의 5영업년도내에 균등하게 기본자본의 10분의 1 또는 정관에 정해진 그 이상의 비율에 이를 정도로 법정준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액. 단 적어도 제2호에 정해진 금액;
- 일부이익제공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이익제공이 없다면 존재할 연도잉여금으로부터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손실을 공제한 것 가운데 제150조

- 제2항 제1호에 의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
3. 회사가 그 이익 전부를 제공할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지배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제1호에 의해 법정준비금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금액. 단 적어도 제150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금액 또는 회사가 그 이익의 일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제2호에 정해진 금액

제 301 조 利益提供의 最高額

제공할 이익의 산정에 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가와 관계없이 회사는 이익제공이 없으면 발생하는 연도잉여금에서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손실 및 제300조에 의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이익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금액이 계약의 존속중에 임의준비금으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 금액은 임의준비금으로부터 인출하여 이익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 302 조 損失引受

- (1)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존속중에 임의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임의준비금으로부터 인출됨으로써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그밖의 모든 연도결손액이 보상되지 않는 한 계약 상대방은 계약존속중 발생하는 그 모든 연도결손액을 보상해야 한다.
- (2) 종속회사가 그 기업의 경영을 지배기업에 임대하거나 기타 위임한 때에는 합의된 반대급부가 상당한 대가에 달하지 않는 한 지배기업은 계약존속중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연도결손액을 보상해야 한다.
- (3) 회사는 상업등기부에 한 계약종료의 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해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보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보상에 대해 화해할 수 있다. 이것은 보상의무자가 지급불능이고 파산절차의 회피 또는 제거를 위해 그 채권자와 화해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기 또는 화해는 사외주주가 특별결의에 의해 동의하고, 그 지분을 합하여 의결시 대표되는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303 조 債權者保護

- (1)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상업등기부에 한 계약 종료의 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해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그 채권이 설정된 회사의 채권자가 등기의 공고후 6개월내에 담보확보를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신고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회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의 공고는 채권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지시해야 한다.
- (2) 파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해 설정되고, 국가가 감독하는 전보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 (3) 담보제공에 같음하여 계약상대방은 그 채권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先訴의 抗辯 排除에 관한 제34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절 支配契約과 利益提供契約에서의 社外株主의 保護

제 304 조 相當한 補償

- (1) 이익제공계약은 사외주주를 위하여 주식액면가에 따라 정해지는 반복적 금전급부(보상지급)에 의한 상당한 보상을 정해야 한다. 지배계약은 회사가 그 이익 전부의 제공의무를 지지 않을 때에는 사외주주에게 상당한 보상으로서 보상지급을 위해 정해진 수준에 따라 매년 일정한 이익지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시에 회사가 사외주주를 갖지 않을 때에 한하여 상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2) 보상지급으로서는 적어도 회사의 종래의 수익상황 및 장래의 수익전망에 따라 상당한 감가상각 및 가액수정을 고려하여, 단 임의준비금의

적립없이, 각 주식에 대한 평균적인 이익지분으로서 배당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의 매년의 지급이 약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때에는 보상지급으로서 적어도 대등한 액면가를 가진 상대방회사의 주식에 귀속할 만큼의 금액의 지급을 약속할 수도 있다. 상응하는 액면가는 합병시 상대방회사의 주식이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 부여되어야 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 (3) 제1항에 위반하여 보상을 전혀 정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제243조 제2항을 이유로 또는 계약에 정해진 보상이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는 회사의 총회가 그 계약 또는 제29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 계약에서 정해진 보상이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306조에서 규정한 법원은 신청에 의해 계약상의 의무를 지우는 보상을 정해야 하며, 그때 계약이 제2항 제2문에 의해 산출된 보상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정해야 한다.
- (4) 각 사외주주는 신청권을 갖는다. 이 신청은 상업등기부에서 계약의 성립등기 또는 제29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변경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해서 할 수 있다.
- (5) 법원이 보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재판확정후 2월 이내에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05 조 代 償

- (1) 제304조에 따른 보상의무 외에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은 사외주주의 요구에 의해 계약에서 정해진 상당한 대상을 하여 그 사외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계약상대방의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 (2) 이 계약은 다음의 것을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를 둔 종속적이지 않고, 다수참가를 받지 않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때에는 이들 회사의 자기주식의

부여

2. 계약상대방이 종속적이거나 다수참가를 받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 회사이고, 지배적 기업이 국내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 회사인 때에는 그 지배회사 또는 다수참가를 하는 회사의 주식의 부여 또는 현금대상
 3. 기타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대상.
- (3) 대상으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합병시 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상대방회사의 주식이 부여되어야 할 비율로 그 주식이 부여되고, 이때 端額은 현금의 추가지급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당한 현금대상은 그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시점에서의 회사의 재산 및 수익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주식취득에 대한 의무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이 기간은 상법 제 10조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서 계약의 성립등기가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빨라도 2월이 지나야 종료한다. 제306조에 규정된 법원에 의한 보상 또는 대상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연방공보에 공고된 날 이후 빨라도 2월이 지나야 종료한다.
- (5) 회사의 총회가 계약 또는 제29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결의의 취소는 그 계약이 상당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할 수는 없다. 계약이 전혀 대상을 정하지 않거나 제1항 내지 제3항에 상응하지 않는 대상을 정한 때에는 제306조에 정해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계약상 부여될 대상을 정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계약이 지배회사 또는 다수참가를 하는 회사의 주식의 부여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 주식이 부여되어야 하는 비율을, 계약이 지배회사 또는 다수참가를 하는 회사의 주식의 부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현금대상을 정해야 한다. 제304조 제4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

제 306 조 節 次

- (1) 사외주주가 신청권을 갖는 회사가 그 주소를 갖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32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이 적용된다.
- (2) 제99조 제1항, 제3항 제1문, 제2문, 제4문 내지 제9문, 제5항이 적용된다.
- (3) 지방법원은 그 사외주주가 신청권을 갖는 회사의 회사공고지에 신청을 공고해야 한다. 사외주주는 이 공고 후 2월의 기간내에는 여전히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는 이 권리가 있음을 지시해야 한다.
- (4) 지방법원은 기업계약의 계약당사자를 신문해야 한다. 지방법원은 제304조 제4항 또는 제305조 제5항에 의한 신청인이 아닌 사외주주 또는 제3항 제2문에 의해 자신이 신청을 한 사외주주에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1인의 공동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당한 보상의 결정 및 상당한 대상의 결정이 신청되어진 때에는 법원은 각 신청을 위해 1인의 공동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사외주주의 권리보호가 다른 방법에 의해 확보되어지는 때에는 이 선임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법원은 공동대리인의 선임을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상당한 현금체당의 배상 및 그 활동에 대한 보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체당 및 보수는 지방법원이 정한다. 법원은 대리인의 요구에 의해 회사에 선급금의 지급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행해진다.
- (5) 지방법원은 기업계약의 계약당사자, 제304조 제4항 및 제305조 제5항에 따른 신청인, 제3항 제2문에 따라 자신이 신청을 한 사외주주, 공동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결정을 송달해야 한다.
- (6) 회사의 이사회는 기판력있는 판결을 이유없이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 (7) 이 절차의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규칙이 적용된다. 제1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기준액의 2배가 징수된다. 2심에 대해서는 동액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는 항고가 성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청 또

는 항고가 재판에 이르기 전에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는 반액으로 감액된다. 청구의 가액은 직권으로 정해진다. 그것은 비용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진다. 비용은 예납할 수 없다. 비용의 채무자는 기업계약의 계약당사자이다. 단 그것이 공평한 경우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관계인에게 과할 수 있다.

제 307 조 社外株主의 保護를 위한 契約終了

지배계약 또는 이익제공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시에 회사에 사외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그 계약은 늦어도 1인의 사외주주가 참가한 영업년도의 말에 종료한다.

제 2 장 企業이 從屬된 경우의 指揮權과 責任

제 1 절 支配契約이 있는 경우의 指揮權과 責任

제 308 조 指揮權

- (1) 지배계약이 있을 경우 지배기업은 회사의 이사회에 회사의 지휘에 관하여 지시할 권리가 있다.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그것이 지배기업의 이익 또는 지배기업 및 회사와 콘체른결합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회사에 대해 불리한 지시도 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지배기업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사회는 그 지시가 자기의 견해에 의하면 지배기업의 이익 또는 지배기업 및 회사와 콘체른결합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시에 따를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단 지시가 명백히 이 이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3) 이사회가 회사의 감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받고, 이 동의가 상당한 기간내에 없는 때에는 이사회는 그 뜻을 지배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지배기업이 이 통지후에 지시를 반복한

때에는 감사회의 동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배기업이 감사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시는 그 동의를 얻어야만 반복할 수 있다.

제 309 조 支配企業의 法律上 代表의 責任

- (1) 지배계약이 있을 때에는 지배기업의 법률상의 대표(개인상인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회사에 지시를 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통상의 양심적인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를 진다. 그가 통상의 양심적인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하였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가 입증책임을 진다.
- (3) 회사는 청구권의 발생후 3년이 경과하고, 사외주주가 특별결의에 의해 동의를 하고, 그 지분이 합해서 의결시 대표된 기본자본의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주주가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 한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청구권에 대해 화해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가 지급불능이 되고, 파산절차의 회피 또는 제거를 위하여 그 채권자와 화해하는 때에는 이 시간적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각 주주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한, 배상청구권은 회사의 채권자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회사의 포기 또는 화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회사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계속중에는 회사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를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5) 이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 310 조 會社의 任員의 責任

- (1)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자기의 의무에 위반하여 행위한 때에는 제309

조에 의한 배상의무자와 함께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들이 통상의 양심적인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다하였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입증책임을 진다.

- (2) 감사회가 그 행위를 승인한다고 해서 배상의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3)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제308조 제2항에 의해 따라야 했던 지시에 근거할 때에는 회사의 임원의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4) 제309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된다.

제 2 절 支配契約이 없는 경우의 責任

제 311 조 影響力의 制限

- (1) 지배계약이 없는 때에는 지배기업은 종속적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로 하여금 이들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단 그 불이익이 보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그 영업년도중에 사실상 보상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늦어도 그 종속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진 영업년도의 말에는 그 불이익이 언제 그리고 어떤 이익에 의해 보상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종속회사에는 보상에 해당하는 특정한 이익을 구하는 법적 청구권이 부여된다.

제 312 조 理事會의 結合企業에 대한 關係의 報告

- (1) 지배계약이 없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이사회는 영업년도의 최초의 3월 내에 결합기업에 대한 회사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가 前영업년도내에 지배기업 또는 이와 결합한 기업간에 또는 회사가 이들 기업의 유발에 의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한 모든 법률행위, 그리고 회사가 이들 기업의 유발에 의하거나 이익을 위해 前영업년도내에 하거나 하지 않은 기타 다른 모든 조치가 기입되

어야 한다.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의 이유 및 회사를 위한 이익 및 불이익이 기재되어야 한다. 불이익의 보상의 경우에는 그 영업년도내에 어떻게 그 보상이 사실상 행해졌는가 또는 회사에 어떤 이익을 구하는 법률상의 청구권이 부여되었는가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2) 보고서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석명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 (3) 이사회는 보고서의 말미에 그 법률행위가 행해지거나 조치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시점에 이사회에 알려진 사정에 따라 회사가 각 법률행위에 대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았는가, 조치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불이익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회사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밖에도 이사회는 그 불이익이 보상되었는가를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는 상태보고서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제 313 조 決算檢査人에 의한 檢査

- (1) 결산검사인에 의한 연도결산서의 검사가 행해질 경우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도 연도결산서 및 상태보고서와 동시에 회사의 결산검사인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보고서의 기재가 사실상 정확한가의 여부
2. 보고서에 기입된 법률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시점에 알게 된 상황하에서 회사의 급부가 부당하게 고액이 아닌가의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불이익이 보상되었는가의 여부
3. 보고서에 기입된 조치에 대해 이사회에 의한 판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사정이 있었는가의 여부

상법 제320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이 준용된다. 결산검사인은 큰체른기업 및 종속기업 또는 지배기업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2) 결산검사인은 검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결산검사인이 결산검사서, 상태보고서,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검사함에 있어서 그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결산검사인은 이에 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그 보고서에 서명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의 종국적 결과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결산검사인은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 증명해야 한다.

나/우리의 의무에 따른 검사 및 판단에 의거하여 나/우리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1. 보고서의 기재가 사실상 정확하다
2. 보고서에 기입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급부가 부당하게 고액이 아니었고 또는 불이익이 보상되었다
3. 보고서에 기입된 조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한 판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사정이 없다.

보고서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기입의 제2호, 보고서에 조치가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기입의 제3호는 생략된다. 결산검사인이 보고서에 기입된 어떤 법률행위에서도 회사의 급부가 부당하게 고액이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기입의 제2호는 그 증명으로 한정된다.

(4) 이의가 제기되거나 결산검사인이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의 불완전함을 확인한 때에는 결산검사인은 그 증명을 한정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 불이익이 보상되지 않고 회사가 특정한 법률행위 또는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이사회 자체가 표시한 때에는 그 뜻이 기입되어야 하고, 기입은 기타 법률행위 또는 조치에 한정되어야 한다.

(5) 결산검사인은 장소 및 일자를 기재하여 증명의 기입에 서명하여야 한다. 증명의 기입은 검사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314 조 監事會에 의한 檢査

- (1) 이사회는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 및 연도결산서가 결산 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를 제170조에 규정된 제출서류와 함께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감사는 보고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보고서는 감사회가 달리 의결한 바가 없는 한 요구에 의해 각 감사에게도 교부되어야 한다.
- (2) 감사회는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검사하고, 자기의 보고서에서 검사의 결과에 대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1조 제2항).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 감사회는 이 보고서에서 결산검사인에 의한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의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산검사인에 의한 증명의 기입은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의 거절은 명시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 (3) 감사회는 그 검사의 종국적 결과에 따라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의 말미에 있는 이사회에 표시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자기의 보고서의 말미에 표시해야 한다.
- (4) 연도결산서가 결산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 결산검사인은 요구에 의해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감사회의 심의에 출석해야 한다.

제 315 조 特別檢査

다음의 경우 법원은 주주의 신청에 의해 지배기업 또는 이와 결합된 기업에 대한 회사의 거래상의 관계의 검사를 위해 특별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결산검사인이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증명의 기입을 한정하거나 거절한 경우
2. 감사회가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의 말미에 이사회에 표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3. 이사회 자신이 그 불이익이 보상되지 않고 회사가 특정한 법률행위 또는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음을 표시한 경우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총회가 동일 사항의 검사를 위해 특별검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각 주주는 제142조 제4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16 조 利益提供契約의 경우 結合企業에 대한 關係의 報告 不要

제312조 내지 제315조는 종속회사와 지배기업 사이에 이익제공계약이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17 조 支配企業과 그 法律上 代表의 責任

- (1) 지배기업이 지배계약이 없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종속회사를 위해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고, 지배기업이 영업년도말까지 불이익을 사실상 보상하거나 보상에 해당된 이익을 구하는 법률상의 청구권을 종속회사에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지배기업은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주주가 회사의 손해에 의해 받은 손해 이외에 손해를 본 것이 있는 한, 지배기업은 주주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주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 (2) 독립된 회사의 통상의 양심적인 영업지휘자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 (3) 회사로 하여금 그 법률행위 또는 조치를 하게 한 기업의 법률상의 대표는 지배기업과 함께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4) 제309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

제 318 조 會社의 任員의 責任

- (1) 회사의 이사는 자기의 의무에 위반하여 결합기업에 대한 회사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중에 불이익한 법률행위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기입하

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회사가 법률행위 또는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또 그 불이익이 보상되지 않았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제317조에 의한 배상의무자와 함께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사가 통상의 양심적인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다하였는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가 입증책임을 진다.

- (2) 회사의 감사는 자기가 불이익한 법률행위 또는 불이익한 조치에 관해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검사하고, 총회에 그 검사의 결과에 관해 보고할 의무(제314조)에 위반한 때에는 제317조에 의한 배상의무자와 함께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제1항 제2문이 준용된다.
- (3) 그 행위가 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근거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도 배상의무가 없다.
- (4) 제309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

제3장 編入會社

제319조 編入

- (1) 회사의 주식 전부가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회사(主會社)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를 장래의 주회사에 편입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결의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편입에 관한 결의는 장래의 주회사의 총회가 동의할 때에 한해 유효하다. 동의에 관한 결의는 의결시 대표되는 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와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그 동의에 관해 의결하는 총회에 있어서 각 주주에게는 요구에 의해 편입될 회사의 편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편입될 회사의 이사회는 상업등기부예의 등기를 위해 편입 및 주회사

- 의 상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가 취소기간내에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그 취소가 기판력을 가지고 기각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신고에는 총회결의의 의사록 및 그 부속서류가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 (4)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예의 편입의 등기로써 회사는 주회사에 편입된다.

제 320 조 多數決議에 의한 編入

- (1) 회사의 주식이 기본자본의 100분의 95의 총액으로 장래의 주회사의 수중에 있을 때에도 주주총회는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주식회사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자기주식 및 회사의 계산으로 타인에게 속하는 주식은 기본자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편입에 대해서는 제319조 제1항 제2문,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본조 제2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된다.
- (2) 의사일정의 대상으로서의 편입공고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법하다.
1. 공고가 장래의 주회사의 상호 및 주소를 포함하고,
 2. 장래의 주회사가 퇴사하는 주주에게 그 주식에 대한 대상으로서 자기주식을, 제5항 제3문의 경우에는 그밖에 현금대상을 제공한다는 장래의 주회사의 표시가 공고에 첨부된 경우.
- 제1문 제2호는 장래의 주회사의 공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3) 각 주주에게는 요구에 의해 편입에 대해 의결하는 총회에서 장래의 주회사의 편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4) 상업등기부예의 편입등기로써 주회사의 수중에 있지 않은 모든 주식은 주회사에 이전된다. 이들 주식에 대해 주권이 발행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권은 주회사에의 인도까지는 대상청구권만을 표창한다.
- (5) 퇴사한 주주는 상당한 대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퇴사한 주주에게는 대상으로서 주회사의 자기주식이 부여되어야 한다. 주회사가 종속회사

일 때에는 퇴사한 주주에게는 그의 선택에 따라 주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상당한 현금대상이 부여되어야 한다. 대상으로서 주회사의 주식이 부여될 때에는 합병시 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주회사의 주식이 부여되어야 하는 비율로 그 주식이 부여되며, 이때 端額이 현금추가지급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당한 현금대상은 편입에 관한 회사의 총회의결의 시점에 회사의 재산 및 수익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대상 및 현금추가지급은 편입 등기의 공고로부터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배제되지 않는다.

- (6) 편입회사의 총회가 회사의 편입을 의결한 결의의 취소는 제243조 제2항을 이유로 하거나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회사로부터 제공된 대상이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는 없다. 제공된 대상이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306조에 정해진 법원은 신청에 의해 상당한 대상을 정해야 한다. 주회사가 대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가 취소기간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기판력을 갖고 기각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7) 퇴사한 각 주주는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신청은 상법 제10조에 의해 상업등기부예의 편입등기가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2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306조가 준용된다.

제 321 조 債權者保護

- (1) 상업등기부예의 편입등기가 공고되기 전에 그 채권이 설정된 편입회사의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가 공고후 6월 이내에 담보확보를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채권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기의 공고는 채권자에게 이 권리를 지시해야 한다.
- (2) 파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보호를 위해 설치되고 국가가 감독하는 전보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다.

제 322 조 主會社의 責任

- (1) 주회사는 편입의 시점전에 설정된 편입회사의 채무에 대해 편입의 때 부터 연대채무자로서 편입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주회사는 편입후에 설정된 편입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하는 합의는 제3자에 대해서 무효이다.
- (2) 주회사가 편입회사의 채무로 인하여 청구를 받을 경우 주회사는 편입 회사에 의해 그것이 주장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 (3) 편입회사가 그 채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주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만기가 된 편입 회사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주회사는 마찬가지로의 권한을 갖는다.
- (4) 편입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의해 주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은 행해지지 않는다.

제 323 조 主會社의 指揮權과 理事의 責任

- (1) 주회사는 편입회사의 이사회에 회사의 지휘에 관해 지시를 할 권한이 있다. 제308조 제2항 제1문, 제3항, 제309조, 제310조가 준용된다. 제311조 내지 제3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주회사에 대한 편입회사의 급부는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324 조 法定準備金·利益提供·損失引受

- (1) 법정준비금의 적립, 그 사용 및 법정준비금으로의 금액의 편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편입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2) 편입회사와 주회사 사이의 이익제공계약, 이익공동 또는 일부이익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제293조 내지 제296조, 제298조 내지 제303조가 적

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 그 변경 및 그 폐지는 서면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익제공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대차대조표이익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익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 계약은 늦어도 편입이 종료하는 영업년도의 말에 종료한다.

- (3) 주회사는 편입회사에 발생하는 대차대조표손실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한, 그밖에 편입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대차대조표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진다.

제 325 조 삭 제

제 326 조 主會社 株主의 解說請求權

주회사의 각 주주에게는 주회사의 업무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편입회사의 업무에 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327 조 編入의 終了

- (1) 편입은 다음의 사유로 종료한다.
1. 편입회사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2. 주회사가 국내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가 아니게 된 때,
 3. 편입회사의 주식 전부가 주회사의 수중에 있지 않게 된 때,
 4. 주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 (2) 편입회사의 주식 전부가 주회사의 수중에 없게 된 때에는 주회사는 편입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3) 종전의 편입회사의 이사회는 편입의 종료, 그 이유 및 그 시점을 지체없이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4) 종전의 편입회사의 채무로 인한 종전의 주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종전의 편입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상업등기부에 편입의 종료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한다. 채권자의 청구권이 상

업등기부예의 편입의 종료등기가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에 비로소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만기시에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한다.

제 4 장 相互參加企業

제 328 조 權利의 制限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와 다른 기업이 상호참가기업인 경우에 그중 일방의 기업이 상호참가의 존재를 알거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하여 상대방기업이 제20조 제3항 또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한 때에는 그 기업에게 속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인한 권리는 다른 기업의 지분 전부의 4분의 1의 한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시에 신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제4항이 적용된다.
- (2)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기 전에 또한 그 기업이 상호참가의 존재를 알기 전에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20조 제3항 또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와 다른 기업이 상호참가기업인 경우에 이들 기업은 서로 지체없이 그 참가의 범위와 모든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콘체른에서의 計算

제 329 조 내지 제 336 조 삭 제

제 337 조 콘체른決算書와 콘체른狀態報告書의 提出

- (1) 결산검사인의 검사보고서의 도달후 지체없이 모기업의 이사회는 콘체른결산서, 콘체른상태보고서 및 검사보고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모

업의 감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감사는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감사회가 달리 결의하지 않은 한, 요구에 의하여 그 제출서류는 각 감사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 (2) 콘체른결산서가 모기업의 연도결산서의 기준일에 작성된 경우에는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는 이 연도결산서를 접수하는 총회 또는 확정해야 하는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콘체른결산서의 기준일이 모기업의 연도결산서의 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는 콘체른결산서의 기준일에 이은 다음번 연도결산서를 접수하는 총회 또는 확정해야 하는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3)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의 해석 및 등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175조 제2항이, 총회에의 제출 및 이사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176조 제1항이 준용된다.
- (4) 콘체른결산서와 콘체른상태보고서가 제출되는 총회에서 모기업의 이사회의 정보제공의무는 콘체른과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된 기업의 상태에까지도 미친다.

제 338 조 삭 제

제 4 편 合併·財産讓渡·組織變更

제 1 장 合 併

제 1 절 株式會社의 合併

제 339 조 合併의 本質

- (1) 주식회사는 청산없이 합일(합병)될 수 있다. 합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다른 회사(인수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회사(양도회사)의 재

- 산을 전체로서 다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흡수에 의한 합병);
2. 신회사의 주식의 인수에 대하여 서로 합하는 각 회사의 재산이 전체로서 이전하는 신주식회사의 형성에 의하여 (신설에 의한 합병)
- (2) 합병은 양도회사 또는 서로 합하는 회사가 해산되고, 그 회사의 계속 이 결의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제 1 관 吸收에 의한 合併

제 340 조 合併의 準備

- (1)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초안을 작성한다.
- (2) 계약 또는 그 초안은 최소한 다음의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2. 인수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양도회사의 재산을 전체로서 양도하는 것에 관한 합의;
 3. 주식의 교환비율과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추가지급의 액수;
 4. 인수회사 주식의 양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이 주식에 대차대조표이익에 대한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시점 및 이 청구권에 관한 모든 특수사항;
 6. 양도회사의 행위가 인수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7. 인수회사가 개개의 주주 및 우선주, 다의결권주, 사채권, 향익권의 소지인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예견되는 조치;
 8.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또는 합병검사인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

제 340a 조 合併報告書

합병에 참가하는 각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약 또는 그 초안 및 특히 주

식의 교환비율이 법적·경제적으로 설명되고 근거지워지는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의 특별히 어려운 점이 지시되어야 한다.

제 340b 조 合併의 檢査

- (1) 합병계약과 그 초안은 합병에 참가하는 각 회사를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전무적 검사인(합병검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2) 합병검사인은 각 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다. 1인 또는 수인의 검사인에 의한 모든 참가회사를 위한 검사는 이 검사인이 이사회에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충분하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체당의 보상과 보수에 대해서는 상법 제318조 제5항이 적용된다.
- (3) 결산검사인의 선임과 해설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0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제1문과 제2문은 합병검사인에 대하여 준용된다. 해설청구권은 합병에 참가한 모든 회사과 콘체른기업, 종속 및 지배기업에 대하여 존재한다.
- (4) 합병검사인은 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합병 보고서는 공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제안된 주식의 교환비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표시로 종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제안된 교환비율이 산출되었는지;
 2. 어떤 근거로 이 방법의 적용이 합당한지;
 3. 수개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각각 어떤 교환비율이 도출되는지; 동시에 제안된 교환비율 및 그것에 근거하는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에 어떤 비중이 두어졌고,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나타났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제1문에 의한 보고서에는 그것의 공표가 참가기업중의 하나 또는 결합기업에 경미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기에 적합한 사실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5) 결산검사인, 그 보조자 및 검사에 있어서 협력하는 검사회사의 법률상의 대표의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323조가 준용된다. 그 책임은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존재한다.

제 340c조 株主總會의 決議

- (1) 합병계약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가 그것에 동의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 (2) 결의는 의결시에 대표된 자본의 최소한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3) 수종의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 각 종류의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동의에 관해서 각 종류의 주주는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2항이 적용된다.

제 340d조 株主總會의 準備와 實行

- (1) 합병계약 또는 그 초안은 그 동의에 관하여 의결할 주주총회의 소집전에 상업등기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그 동의에 관하여 의결할 총회의 소집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 또는 그 초안;
 2.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의 최근 3영업년도에 관한 연도결산서 및 상태 보고서;
 3. 합병계약의 체결전 또는 초안의 작성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영업년도에 관한 최후의 연도결산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초안작성에 앞선 3월의 첫날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일에 대한 대처

대조표 (중간대차대조표);

4.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의 이사회 제340a조에 의한 보고서;
 5. 제340b조에 의한 감사보고서.
- (3) 중간대차대조표(제2항 제3호)는 회사의 최후의 연도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적용된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재고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최후의 연도대차대조표의 가액계상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감가상각, 가액수정과 총당금 및 장부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재산의 실질가치의 중요한 변경이 중간대차대조표의 기준일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 (4) 요구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제2항에 표시된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5)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제2항에 표시된 서류가 게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합병계약 또는 그 초안을 심의의 개시를 위하여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의사록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한다.
- (6) 각 주주에게는 요구에 의하여 합병에 관한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참가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중요한 모든 사항에 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341 조 合併契約

- (1) 합병계약은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민법 제310조는 이 계약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2) 합병계약의 효력이 10년 이상 이후에 비로소 발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계약을 10년후에는 반년의 기간을 가지고 해약 고지할 수 있다. 계약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체결되고, 그 조건이 10년 이내에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약고지는 언제나 해약고지의 의사표시를 받는 회사의 영업년도의 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제 342 조 事後設立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인수회사의 상업등기부예의 등기후 최초의 2년내에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후설립에 관한 제52조 제3항,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이 준용된다. 부여될 주식의 권면총액이 인수회사의 기본자본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의 실행을 위해서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 계산에는 증가된 기본자본이 기초로 되어야 한다.

제 343 조 合併의 實行을 위한 基本資本의 增加

- (1) 합병의 실행을 위하여 인수회사가 기본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 182조 제4항, 제184조 제2항,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항, 제 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83조 제3항에 의한 검사는 법원이 현물출자의 가치가 이를 위하여 부여될 주식의 권면액에 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제202조에 의한 수권에 근거하여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기본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그밖에 제203조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 (2) 신고서에는 회사의 주소의 법원을 위하여 제18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있는 서류 이외에 합병계약서 및 합병결의의 의사록이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44 조 合併의 實行

- (1) 인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한 인수회사는 합병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본자본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양도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양도회사가 그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인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수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양도회사가 그 권면

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인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수회사는 기본자본의 증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명의로, 그러나 회사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의 소유는 그 회사에 의한 소유와 동일시된다.

- (2) 인수회사가 현금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에 그 추가지급은 부여된 인수회사 주식의 권면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345 조 合併의 申告

- (1) 각 회사의 이사회는 그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합병을 신고해야 한다. 인수회사의 이사회도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합병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
- (2)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합병결의가 취소기간내에 취소되지 않은 것 또는 취소가 기판력을 갖고 기각된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합병계약서, 합병결의의 의사록 및 합병이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를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해야 한다.
- (3) 또한 각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의 신고서에는 양도회사의 대차대조표(종결대차대조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대차대조표에 관해서는 연도대차대조표에 관한 규정 및 연도대차대조표의 검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것은 공고할 필요가 없다. 등기법원은 신고전 최고 8월내에 있는 기준일에 그 대차대조표가 적성된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등기할 수 있다.

제 346 조 合併의 登記

- (1) 합병은 그것이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비로소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합병의 실행을 위하여 인수회사의 기본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기본자본의 증가의 실행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는 합병을 등기할 수 없다. 각 양도

- 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에는 그 합병이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다는 주기가 기재하여야 한다.
- (2) 각 양도회사는 부여될 주식 및 현금 추가지급의 수령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임해야 한다. 합병은 수탁자가 주식 및 현금 추가지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법원에 통고한 경우에 비로소 등기할 수 있다.
 - (3)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양도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회사로 이전한다. 이때에 합병의 당시에 어느쪽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의하여 구입의무, 공급의무 또는 그것과 유사한 의무가 병존하는데,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그 양자를 이행하는 것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공정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는 모든 관계인의 계약상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평에 따라 정한다.
 - (4) 양도회사는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 양도회사의 특별한 말소는 필요하지 않다.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양도회사의 주주는 인수회사의 주주로 된다; 인수회사 또는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이 회사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가 인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양도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이 회사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한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합병계약의 공증인에 의한 인증의 흠결은 등기에 의하여 치유된다.
 - (6) 인수회사의 주소의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각 양도회사의 주소의 법원에 합병의 등기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착한 후에 각 양도회사의 주소의 법원은 직권으로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합병등기된 일자를 주기고, 그곳에 보관된 증서와 기타 서류를 인수회사의 주소의 법원에 보관하기 위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7) 양도회사의 주식의 교환에 관해서는 제73조가, 주식의 병합의 경우에는 주권의 실효선언에 관한 제226조가 준용된다. 법원의 인가는 필요

하지 않다.

제 347 조 債權者保護

- (1) 합병에 참가하는 회사의 채권자에게는 그들이 이 회사의 주소의 상업 등기부에 합병의 등기의 공고후 6월 이내에 이 목적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들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인수회사의 채권자에게는 그들이 합병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다. 채권자는 등기의 공고에서 이 권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2)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권리는 파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되고 국가에 의하여 감독되는 전보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 347a 조 特別한 權利의 所有者의 保護

인수회사는 양도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전환사채, 이익배당증권, 향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양도회사에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348 조 引受會社の 價額計上

- (1) 양도회사의 종결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액은 인수회사의 연도대차대조표를 위해서는 상법 제25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취득비용으로 간주된다.
- (2) 인수회사의 기본자본이 합병의 실행을 위하여 증가되고, 양도회사의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여되는 주식의 권면총액 또는 그것보다 높은 발행가액에 현금의 추가지급을 더한 것이 개개의 재산의 종결대차대조표에서 계상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고정재산의 항목의 아래로 기입될 수 있다. 그 금액은 영업가액 또는 영업권으로 구

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상법 제255조 제4항 제2문, 제3문, 제285조 제1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 349 조 讓渡會社 任員의 損害賠償義務

- (1) 양도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회사, 그 주주 및 채권자가 합병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의 재산상태의 검사 및 합병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이사 또는 감사는 배상의무를 면한다.
- (2) 이러한 청구권 및 일반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근거하여 양도회사를 위하여 또한 양도회사에 대하여 생기는 그밖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양도회사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과 채무는 그런 한에서는 합병에 의하여 합쳐지지 않는다.
- (3)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예의 합병의 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한다.

제 350 조 損害賠償請求權의 實行

- (1) 제3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은 특별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양도회사의 주소의 법원은 이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기의 주식을 이미 인수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 주주 및 인수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만이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2) 대리인은 그 선임의 목적을 표시하여 제3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을 적어도 1월에 달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하도록 양도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이 최고는 양도회사의 회사공고지에 공고해야 한다.
- (3) 양도회사의 채권자가 인수회사에 의하여 변제받거나 또는 담보를 제

공받지 않는 한 대리인은 양도회사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양도회사의 채권자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잔액은 주주에게 분배된다. 분배에 관하여는 제271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및 주주는 분배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 (4) 특별대리인은 상당한 현금체당의 배상청구권 및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법원은 체당 및 보수를 정한다. 법원은 체당 및 보수가 어떤 범위에서 관계주주 및 채권자에 의하여 부담될 수 있는지를 개개의 경우의 전체적 관점에 따라서 자유로운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있는 재판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제 351 조 引受會社 任員의 損害賠償義務

제93조, 제116조, 제11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7조 및 제318조에 의하여 합병에 근거하여 인수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의 합병의 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서 시작한다.

제 352 조 讓渡會社의 合併決議의 無效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의 합병의 등기후에는 양도회사의 합병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인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

제 352a 조 合併의 效力

합병이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경우에 합병의 하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52b조 特別한 경우에서의 吸收

- (1) 양도회사의 기본자본의 최소한 10분의 9가 인수회사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양도회사의 흡수를 위하여 인수회사 주주총회의 동의(제 340c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지분을 합하여 이 회사 기본자본의 20분의 1에 달하는 인수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결의할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회사의 자기주식과 회사의 계산으로 다른 자에게 속하는 주식은 기본자본으로부터 공제된다. 정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기본자본에 대한 더 작은 지분의 소유에 결부시킬 수 있다. 제340d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인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 (2) 양도회사의 주식 전부가 인수회사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에 관한 기재(제340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합병의 검사(제340b조, 제340d조 제2항 제5호)는 그것이 이 회사의 흡수에만 관련되는 한 필요하지 않다.

제 352c조 交換比率의 法院에 의한 事後檢査

- (1) 양도회사의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에 동의한 결의의 취소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할 수 없다. 교환비율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제306조에 정해진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의 총권면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 현금 추가 지급에 의한 보상을 지시해야 한다.
- (2) 신청권한은 제24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합병결의를 취소할 권한이 있지만,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취소권이 배제되는 양도회사의 각 주주가 갖는다. 신청은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예의 합병의 등기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2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해서는 제30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문, 제5항 내지 제7항이 준용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주주는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도출할 수 없다.

제 2 관 新設에 의한 合併

제 353 조

- (1) 새로운 주식회사의 형성에 의한 주식회사의 합병시에는 제340조 내지 제341조, 제344조 제2항, 제345조 제2항 및 제3항, 제346조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347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 제2항, 제347a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제352c조가 준용된다. 서로 합치는 각 회사는 양도회사로 간주되고, 신회사는 인수회사로 간주된다.
- (2) 합병은 서로 합치는 각 회사가 이미 2년간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의결할 수 있다.
- (3) 신회사의 정관 및 그 감사의 선임은 서로 합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24조 제2항 제2문, 제3항 제1문 및 제3문, 제340c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 (4) 신회사의 형성에 관해서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29조, 제30조 1항 및 제4항, 제31조, 제39조, 제41조의 설립규정이 준용된다. 서로 합치는 회사의 정관에 포함된 특별이익, 설립비용,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관한 정함은 신회사의 정관으로 계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함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한 제26조 제4항 및 제5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5) 서로 합치는 회사의 이사회는 그 지역내에 신회사가 그 주소를 갖고 있는 법원에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회사를 신고해야 한다. 신회사의 등기를 함으로써 서로 합치는 회사의 재산은 그 채무를 포함하여 신회사로 이전한다. 이때에 합병의 당시에 어떤 쪽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의하여 구입의무, 공급의무 또는 그것에 유사한 의무가 병존하는데,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그 양자를 이행하는 것이 인수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불공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범위는 모든 관계인의 계약상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평에 따라 정한다.

- (6) 신회사의 등기를 함으로써 서로 합치는 회사는 소멸한다. 서로 합치는 회사의 특별한 말소는 필요하지 않다. 서로 합치는 회사의 주주는 등기를 함으로써 신회사의 주주로 된다; 그러나 서로 합치는 회사의 일방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이 회사의 재산으로 행위하는 제3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한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 (7) 신회사의 등기의 공고중에는 그 내용 이외에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3조 제3항 제5호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문, 제26조에 의한 정함 및 이사회에 관한 정함의 규정;
 2. 최초의 감사의 성명, 직업 및 주소지;
 3. 신회사가 서로 합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의 수 및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 및 그러한 주식의 할당의 방법 및 시점에 관한 합병계약의 규정.
-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가 법원에서 열람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공고되어야 한다.
- (8) 신회사의 이사회는 서로 합치는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합병을 신고해야 한다. 합병은 신회사가 등기된 경우에 비로소 등기될 수 있다.
- (9) 신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는 경우에는 합병의 하자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 절 株式合資會社의 合併 및 株式合資會社와 株式會社의 合併

제 354 조

- (1) 주식합자회사는 서로 합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식합자회사는

주식회사와 합병하거나 또는 주식회사는 주식합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이 합병에 관해서는 제339조 내지 제353조가 준용된다.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대신한다.

제 3 절 有限會社의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와의 合併

제 355 조 有限會社의 株式會社와의 合併

- (1)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을 전제로서 그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청산없이 그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이 합병에 관해서는 제2문과 제3문 및 제3항과 제4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한 제339조 제2항, 제340조 내지 제341조, 제343조 내지 제347a조, 제351조 내지 제353조가 준용된다. 합병계약서 또는 그 초안의 상업등기부예의 제출(제340d조 제1항) 및 서류의 게시(제340d조 제2항)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합병검사인의 선임(제340b조)은 사원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 유한회사의 이사 및 사원총회가 양도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총회를 대신한다.
- (3) 사원총회의 합병결의는 표결에 참가한 의결권의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회사계약은 그 이상의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결의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 (4) 합병은 주식회사가 이미 2년간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의결할 수 있다.
- (5) 유한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 그 사원 및 채권자가 합병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의 재산상태의 검사 및 합병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통상의 영업지회자의 주의를 한 이사 및 감사는 배상의무를 면

한다. 제349조 제2항 및 제3항, 제350조가 준용된다.

제 356 조 有限會社의 株式合資會社와의 合併

- (1) 유한회사는 주식합자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을 전체로서 그 주식합자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청산없이 그 주식합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이 합병에 대해서는 제355조가 준용된다.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대신한다.

제 4 절 鑛山法上의 鑛山組合의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와의 合併

제 357 조 鑛山法上의 鑛山組合의 株式會社와의 合併

- (1) 고유한 법인격을 갖는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광산조합의 재산을 전체로서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청산없이 그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이 합병에 대해서는 이하의 규정에서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 339조 제2항, 제340조 내지 제347a조, 제351조 내지 제352b조, 제 353조가 준용된다. 광산조합의 법률상의 대표 및 조합원총회가 양도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대신한다.
- (3) 제304c조 제1항에 의한 결의에 관해서 양도광산조합에서는 총광산지분의 적어도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결의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결의는 그 것이 유효하기 위하여 광산법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에 관한 권한이 있는 광산관청에 의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광산관청은 공공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 (4) 광산조합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도 광산조합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다.

- (5) 광산조합의 법률상의 대표 및 감사회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산조합의 감사는 광산조합, 광산조합의 조합원 및 채권자가 합병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무자로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349조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3항, 제350조가 준용된다.

제 358 조 鑛山法上の鑛山組合의 株式合資會社와의 合併

- (1) 고유한 법인격을 갖는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은 주식합자회사의 주식의 부여에 대하여 광산조합의 재산을 전체로서 이 주식합자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청산없이 그 주식합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이 합병에 대하여는 제357조가 준용된다.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대신한다.

제 5 절 여러 가지 形態의 會社의 合併

제 358a 조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대한 재산의 양도에 의한 합병 또는 새로운 주식회사 또는 새로운 주식합자회사의 형성에 의한 합병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고유한 법인격을 갖는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이 동시에 흡수되거나 또는 동시에 참가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2 장 財産讓渡

제 359 조 公法人에의 財産讓渡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그 재산을 전체로서 청산없이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 (2) 양도회사에 대해서는 제339조 제2항, 제340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340a조 내지 제340c조, 제340d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341조, 제345조 제1항 제1문, 제2항 및 제3항, 제346조 제3항 제2문, 제4항 제2문, 제5항, 제347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 제2항, 제348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2c조가 준용되고, 주식합자회사의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제354조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349조, 제352조 및 제352a조의 준용에 대해서는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가 인수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를 대신한다. 양도회사의 주소의 상업등기부에의 재산양도의 등기에 의하여 양도회사가 소멸한다; 그 재산은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자로 이전한다. 반대급부의 종류 및 액수가 주식의 교환비율을 대신한다.

제 360 조 相互保險會社에의 財産讓渡

- (1) 보험영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그 재산을 전체로서 청산없이 상호보험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 (2) 이 재산양도에 대해서는 이하의 규정에서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339조 제2항, 제340조 내지 제341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문과 제2문, 제5항 및 제6항, 제347조, 제348조 내지 제352c조가 준용된다. 대가의 종류 및 액수가 주식의 교환비율을 대신한다.
- (3) 상호보험회사의 최고대표자회의 결의는 표결에 참가한 의결권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4) 양도회사는 대가의 수령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산양도는 수탁자가 대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을 법원에 통고한 경우에 비로소 등기될 수 있다.
- (5) 보험감독법 제14조에 의한 인가에 관한 증서는 재산양도의 상업등기부에의 신고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361 조 그밖의 方法에 의한 財産讓渡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가 회사의 총재산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양도가 제339조 내지 제360조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주주총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 결의는 의결시에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제341조 제1항이 적용된다.
- (2) 이 계약서는 동의에 대하여 의결할 총회의 소집의 시부터 회사의 영업소에 주주의 열람을 위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요구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는 지체없이 등본이 교부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계약서가 게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그 계약서를 심의의 개시를 위하여 설명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계약서가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3) 회사재산의 양도의 기회에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는 경우에는 제264조 내지 제273조가 적용된다. 회사의 해산의 신고서에는 계약서가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 장 組織變更

제 1 절 株式會社の 株式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62 조 要件

- (1) 주식회사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적어도 1인의 무한책임사원의 가입을 필요로 한다. 그 결의는 의결시에 대표되는 기본자본의 적어도 4분의 3을 포함하는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결의에서는 상호 및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에 필요한 정관변경이 정해져야 한다. 무한책임사원의 가입은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이때 무한책임사원은 정관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 (3) 조직변경에 관하여 의결할 총회에는 회사의 재산 및 채무가 대차대조표기준일에 첨부되어야 하는 가액으로 계상된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대차대조표는 그 날부터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손익에 참가할 기준일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 기준일이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는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전에 최고 6월내에 있는 기준일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175조 제2항이 준용된다. 대차대조표는 의사록에 부속서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63 조 株式合資會社의 監事會의 構成

- (1)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조직변경전에 자기의 의견에 의하면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합자회사의 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공고해야 한다. 그 공고는 조직변경에 관한 의결전 적어도 2월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98조, 제99조가 준용된다.
- (2) 제98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이 기간내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합자회사의 감사회는 조직변경에 있어서 본법 제96조 제1항 및 경영조직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감사회가 주주의 감사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근로자의 감사가 아직 선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직변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64 조 組織變更의 申告

조직변경의 결의와 동시에 무한책임사원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 가입에 관한 증서는 회사의 주소의 법원을 위하여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65 조 登記의 效力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주식합자회사로서 존속한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도 회사의 채권자에 무제한으로 책임을 진다.

제 2 절 株式合資會社の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66 조 要件

- (1)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하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결의에서는 상호, 이사회 구성 및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에 필요한 정관변경이 정해져야 한다.
- (3) 조직변경에 관하여 의결할 총회에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과의 청산을 위하여 조직변경에 관한 의결전에 있는 기준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가 기준으로 될 경우에는 이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의결전 최고 6월내에 있는 시점에 또한 무한책임사원과의 청산을 위하여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75조 제2항이 준용된다. 그 대차대조표는 의사록에 부속서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4)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63조가 준용된다.

제 367 조 組織變更의 申告

조직변경의 결의와 동시에 이사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 선임에 관한 증거가 회사의 주소의 법원을 위하여 원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68 조 登記의 申告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서 퇴사한다. 등기할 때까지 성립된 회사의 채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제 3 절 株式會社の 有限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69 조 要 件

- (1)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의 결의에는 총주주가 동의해야 한다. 주주가 주주총회후 3월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동의를 거절하는 뜻을 통지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가 총회의 소집시부터 주식의 소지인이었다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되지 않은 주주의 동의는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意的 거절은 주주총회후 3월이내에만 서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 (3) 조직변경이 적어도 기본자본의 10분의 9를 포함하는 다수로 의결되고 회사가 의결의 시점에 50인 미만의 주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결의는 제2항과 달리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되지 않은 주주가 총회후 3월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그 주주가 총회의 소집시부터 주식의 소지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주주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본다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 및 제71d조 제4문 및 제71b조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도 귀속하지 않는 주식은 기본자본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자본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서 다수결의에 의하여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조직변경의 공고는 의사록에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이의를 표시하는 주주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의하여 생기는 그 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현금대상을 하여 취득할 뜻을 신청하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그 공고에 첨부되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으로서 적법하다.

- (5) 결의에서는 상호 및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에 필요한 정관변경이 정해져야 한다.
- (6) 지분의 권면액은 주식의 권면액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50 도이취 마르크가 되고, 10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권면액을 주식의 권면액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권면총액에 상응하게 참가할 수 없는 각 주주가 그 정함에 동의해야 한다. 그 동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 다른 정함이 제2문에 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370 조 有限會社의 監事會의 構成

- (1)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조직변경전에 그 유한회사를 위하여 감사회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및 자기의 의견에 의하면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공고해야 한다. 그 공고는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전 적어도 2월에 해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98조, 제99조가 준용된다.
- (2) 제98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이 기간내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있어서 유한회사를 위하여 감사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 감사회는 최후에 그 주식회사의 감사회에 적용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감사회가 주주의 감사만으로 구성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근로자의 감사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것은 조직변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71 조 組織變更의 申告

- (1) 조직변경의 결의와 동시에 이사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사원의 성명, 직업과 주소 및 그의 출자를 알 수 있는 신고인에 의하여 서명된 사원명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주주가 알려져 있지 않는 한 그 취지가 주권 및 그 주식에 귀속하는 지

분을 표시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2) 제369조 제2항에 의하여 결의된 조직변경의 신고시에는 이사회는 제369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통지가 기간내에 회사에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회사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밖에 통지가 기간내에 철회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통지가 기간내에 철회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요구된 소지증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사정을 서술해야 한다.
- (3) 제369조 제3항에 의하여 결의된 조직변경의 신고시에는 이사회는 몇명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대리되었는지 및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되지 않은 몇명의 주주가 기간내에 신고하였는지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한에서는 이사회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요구된 소지증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사정을 서술해야 한다.

제 372 조 登記의 效力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존속한다. 기본자본은 원천자본으로, 주식은 지분으로 된다. 주식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주식에 대신하는 지분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 373 조 株式의 交換

주식과 지분의 교환에 대해서는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을 병합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실효선언에 관한 제226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법원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제 374 조 債權者保護

조직변경의 등기가 공고되기 전에 그 채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공고후 6월이내에 이 목적을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한 그 채권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등기의 공고에서 이

권리를 지시받아야 한다.

제 375 조 異議있는 社員

- (1)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각 주주는 2월의 기간 내에 회사가 상당한 현금대상을 하여 그의 지분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금대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320조 제5항 제5문이 준용된다. 그 기간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예의 조직변경의 등기가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써 시작한다. 제306조에 정해진 법원에 의하여 현금대상의 정함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재판이 연방공보에 공고된 날로써 시작한다. 지분의 양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유한회사법 제33조는 제1문에 의한 지분의 취득을 방해하지 않는다.
- (2) 조직변경 결의의 취소는 회사로부터 제시된 현금대상이 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할 수 없다. 신청된 현금대상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6조에 정해진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현금대상을 정해야 한다. 회사가 현금대상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이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가 취소기간내에 제기되지 않았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기판력을 갖고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각 주주는 신청할 권한이 있다. 신청은 상법 제10조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예의 조직변경의 등기가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2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취소의 소의 기판력있는 기각 또는 취하로써 시작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제306조가 준용되는데, 회사가 계약당사자를 대신하고,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주주가 사외주주를 대신한다.
- (4) 그 지분을 다른 방법으로 양도하는 사원의 권리는 제1항에 의하여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정관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제1항에 정해진 기간내의 양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 4 절 有限會社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76 조 要 件

- (1)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회사계약의 변경에 관한 유한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분의 양도가 개개의 사원의 동의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결의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본출자의 급부 이외에 회사에 대한 다른 의무가 사원에게 부과되어 있고, 이 의무가 제55조의 제한적 규정으로 인하여 조직변경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결의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 이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3) 결의에서는 상호 및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에 필요한 회사계약의 변경이 정해져야 한다. 조직변경에 찬성의 표결을 한 사원은 의사록에 지명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4) 주식의 권면액이 50 도이취 마르크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분의 권면액과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의 권면액에 상응하게 참가할 수 없는 각 사원이 이 정함에 동의해야 한다. 그 동의는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지분의 분할의 불허에 관한 유한회사법 제17조 제6항은 이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77 조 株式會社의 監事會의 構成

- (1) 제363조 제1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 (2) 제98조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이 기간내에 신청을 받거나 또는 공고가 없고, 유한회사의 감사회가 근로자의 감사회에 의해서도 성립된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최후에 그 유한회사

의 감사회에 적용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 유한 회사를 위하여 감사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의 감사 없이 감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감사회가 주주의 감사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 378 조 設立檢査 및 社員의 責任

- (1)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이하의 규정에서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 26조, 제27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6조 내지 제53조가 준용된다; 조직변경에 찬성의 표결을 한 사원은 발기인과 동일시된다.
- (2) 제32조에 의한 보고서에는 유한회사의 영업경과 및 상태가 서술되어야 한다.
- (3) 제33조 제2항에 의한 1인 또는 수인의 검사인에 의한 검사는 모든 경우에 행하여져야 한다.
- (4) 제52조 제1항에 의한 2년의 기간은 상업등기부예의 조직변경의 등기부터 계산된다.

제 379 조 組織變更의 申告

조직변경의 결의와 동시에 이사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 선임에 관한 증서는 회사의 주소의 법원을 위하여 원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또다시 감사의 이름, 직업 및 주소지를 기재한 명부, 서면의 자료를 첨부한 이사, 감사 및 검사인의 검사보고서, 또다시 검사인의 보고서가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것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80 조 登記의 公告의 內容

조직변경의 공고에는 그 내용 이외에 감사의 이름, 직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40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381 조 登記의 效力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원천자본은 기본 자본으로, 지분은 주식으로 된다. 지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지분에 대신하는 주식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 382 조 持分の 交換

지분과 주식의 교환에 대해서는 제73조, 지분의 병합에 있어서는 주식의 실효선언에 관한 제226조가 준용된다. 법원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제 383 조 異議있는 社員

- (1) 조직변경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각 사원은 그 주식을 회사의 처분에 맡길 수 있다. 이사회는 이를 위하여 적어도 3월의 제척 기간을 주주에게 설정할 수 있다. 기간의 설정은 조직변경의 등기후에 비로소 허용된다. 그것은 알려진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해야 하고, 그밖에는 회사공고지에 3회공고해야 한다.
- (2) 회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처분에 맡겨진 주식을 주주의 계산으로 공적 거래가격으로 주식중매인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소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해야 한다. 제226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6문이 준용된다.
- (3) 자기의 주식을 스스로 양도하는 주주의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관상의 처분제한은 제1항에 정하여진 기간내의 양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 5 절 鑛山法上的 鑛山組合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4 조 要件

- (1) 고유한 법인격을 갖는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그 결의는 광산지분의 적어도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그 결의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그 결의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 정관의 인증에 관한 권한을 갖는 광산관청에 의한 인증을 필요로 한다. 공공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만 광산관청은 인증을 거절할 수 있다.
- (3) 결의에서는 상호가 정해져야 한다. 그밖에 결의에서는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져야 한다. 조직변경에 찬성을 표결을 한 광산조합원은 의사록에 지명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4) 기본자본의 권면액은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의 채무를 공제한 후에 잔존하는 재산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적어도 10만 도이취 마르크가 되어야 한다.
- (5) 주식의 권면액이 50 도이취 마르크보다 높은 금액으로, 그 정해진 기본자본으로부터 광산지분에 귀속하는 금액과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자기의 광산지분에 귀속하는 총액에 상응하게 참가할 수 없는 각 광산조합원이 그 정함에 동의해야 한다. 그 동의는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6)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77조가 준용된다.

제 385 조 登記의 效力

- (1) 등기시부터 광산조합은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광산지분은 주식으로 된다. 광산지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그 광산지분에 대신하는 주식에 대하여 존속한다.
- (2) 그밖의 점에 대해서는 제378조 내지 제380조, 제382조 및 제383조가 준용된다.

제 6 절 公法上の 團體 또는 營造物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5a 조 要件

- (1)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이 권리능력을 갖고, 이들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이 조직변경을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험기업의 조직변경은 그 기업에 대한 전문적 감독을 수행하는 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3) 주식회사의 정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는가 및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간주되는가 하는 것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른다.
- (4) 본절의 규정으로부터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1편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이 제2조, 제28조 및 제29를 제외하고 준용된다.

제 385b 조 設立檢査

- (1) 제32조에 의한 보고서에서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의 영업경과 및 상태가 서술되어야 한다.
- (2) 제33조 제2항에 의한 1인 또는 다수의 검사인에 의한 검사는 모든 경우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 385c 조 組織變更의 效力發生

상업등기부예의 주식회사의 등기시부터 공법상의 단체 또는 영조물은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제 7 절 相互保險會社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5d 조 要件

- (1) 보험감독법 제53조에서 의미하는 소규모 회사가 아닌 상호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은 제385e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자본에 참가해야 하는 각 사원에 대하여 최소한 5 도이취 마르크를 권면액으로 하는 부분권이 할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2)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의 최고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늦어도 최고대표자회의의 집회의 소집과 함께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사원에게 조직변경결의에 관한 의사일정 및 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서는 제4문 내지 제6문에 의한 결의를 위한 다수 및 이의의 제기의 가능성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지시되어야 한다. 최고대표자회의의 결의는 표결된 의결권의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조직변경은 늦어도 최고대표자회의의 집회 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최소한 100명의 회사 사원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표결된 의결권의 10분의 9의 다수로 의결될 수 있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 및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3) 결의에서는 상호, 기본자본, 주식의 권면액 및 그밖의 조직변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관변경이 정해져야 한다.
- (4) 기본자본의 권면액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최소한 10만 도이취 마르크가 되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주식회사의 법형태를 한 비교할 수 있는 보험기업의 기본자본의 액수로 정해져야 한다. 감독관청이 새로 설립될 보험주식회사에 영업을 위한 허가를 더 많은 기본자본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회사의 재산상태에 의하면 가능한 한 기본자본은 그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본자본을 제3문에서 정해진 금액으

로 정하는 것이 회사의 재산상태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자본은 제385e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자본에 참가해야 하는 각 사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주식 또는 가능한 한 높은 부분권이 할당되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 (5) 주식은 더 높은 권면액을 갖는 완전한 주식이 사원에게 할당하는 한도 내에서만 50 도이취 마르크 이상의 권면액으로 할 수 있다.
- (6)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일정한 권면액까지 새로운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출자와 상환으로 기본자본을 증가할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 이 수권은 이사회가 인수권의 배제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 (7) 결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은 조직변경에 관한 본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다.

제 385e 조 社員의 株式會社에의 參加

- (1) 조직변경결의에서는 회사의 사원이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을 정해야 한다. 회사에 결의일전 3년 미만으로 속해 있는 사원은 참가에서 배제될 수 있다.
- (2) 참가는 모든 사원이 기본자본에 대한 동일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 또는 다수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 1. 보험금의 액수,
 - 2. 부담금의 액수,
 - 3. 생명보험에서 전보충당금의 액수,
 - 4. 정관에 정해진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기준,
 - 5. 정관에 정해진 재산의 분배에 관한 기준,
 - 6. 사원자격의 기간.

참가가 기본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일한 지분으로 정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지분은 5 도이취 마르크를 권면액으로 하는 부분권이어야 한다.

제 385f 조 株式會社の 監事會의 構成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77조가 준용된다.

제 385g 조 設立檢査·組織變更의 申告 및 登記의 公告의 內容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으로부터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7조 내지 제53조, 제378조 제3항 및 제4항,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한 조직변경의 신고 및 등기의 공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79조 및 제380조가 준용된다. 등기의 공고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회사의 사원이 주식회사에 참가하는지 기재되어야 한다.

제 385h 조 登記의 效力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회사의 사원은 조직변경결의의 기준에 따라서 주주로 된다.

제 385i 조 異議있는 社員

조직변경에 대하여 최고대표자회의의 집회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각 사원 및 최고대표자회의에 집회에서 조직변경에 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표시한 최고대표자회의의 각 구성원은 자기의 주식 또는 사원권에 대하여 할당된 부분권을 회사의 처분에 맡길 수 있다. 주식 및 부분권의 회사에 대한 위탁과 주식 및 부분권의 환가에 대해서는 제383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제 385k 조 部分權

(1) 조직변경에 의하여 사원에 대하여 1주의 일부가 할당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권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 (2) 주권의 발행청구를 포함하여 주식으로 인한 권리는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주식이 생기는 부분권이 1인의 수중에 있거나 또는 그들의 부분권을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주식이 생기는 다수의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결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 (3) 주식회사는 부분권의 완전한 주식으로의 결합을 주선하여야 한다.

제 385i조 株主에 대한 催告

- (1) 조직변경의 상업등기부예의 등기후에 주식회사는 지체없이 모든 주주에게 조직변경의 등기에 관한 공고의 내용과 그에게 할당된 주식 및 부분권의 수 및 권면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게 속하는 주식을 가져가도록 주주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서는 회사는 회사공고지에 최고의 공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가져가지 않는 주식을 3회의 경고후에 관계자의 계산으로 매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지시되어야 한다. 그 통지에서는 제385k조의 부분권에 관한 규정이 지시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공고지에서의 공고에 의해서도 그에게 속하는 주식을 가져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1문이 준용된다. 최고의 공고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는 가져가지 않은 주식의 매각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고는 3회에 걸쳐서 최소한 1개월의 간격을 두고 회사공고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최후의 공고는 제1문에 의한 최고의 공고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경고의 최후의 공고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는 가져가지 않은 주식을 관계자의 계산으로 공적인 거래소가격으로 주식중매인의 증개에 의하여, 거래소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226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6문이 준용된다.
- (4) 그 권면액을 합하여 최소한 기본자본의 10분의 6에 달하는 주식을 가져가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제3항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자본다수를 필요로 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동일한 시점까지 이사회는 기본자본의 증가를 위한 수권을 이용할 수 없다. 감독관청은 그것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문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 8 절 協同組合의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5m 조 要 件

- (1) 등기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은 각 조합원에 대하여 최소한 5 도이취 마르크를 권면액으로 하는 부분권이 할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2)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늦어도 조합원총회의 소집과 함께 이사회는 모든 조합원에게 조직변경결의에 관한 의사일정 및 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제 4문, 제5문 및 제7문에 의한 결의를 위한 다수와 이의제기의 가능성 및 거기서 생기는 권리가 지시되어야 한다.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표결된 의결권의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조직변경결의는 늦어도 조합원총회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최소한 100명의 조합원, 1천명 미만의 조합원을 갖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표결된 의결권의 10분의 9의 다수로 의결될 수 있다. 이 결의는 법원에 의하여 또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정관은 그 이상의 다수와 기타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3) 결의전에 검사단체는 조직변경이 조합원 및 채권자의 이익과 일치하는지, 특히 기본자본을 정함에 있어서 제4항 제3문이 준수되었는지에 관하여 청문해야 한다. 검사단체의 평가서는 조직변경이 의결될 조합원총회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검사단체는 조합원총회에 자문역으로 출

석할 권한이 있다.

- (4) 결의에서는 상호, 기본자본, 주식의 권면액 및 그밖에 조직변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변경을 정해야 한다. 기본자본의 권면액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조합의 재산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최소한 10만 도이취 마르크가 되어야 하고, 각 조합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주식 또는 가능한 한 높은 부분권이 할당되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 (5) 다음의 규정으로부터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그밖에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7조 내지 제53조, 제377조, 제378조 제3항 및 제4항, 제385d조 제5항 및 제6항, 제385i조가 준용된다.

제 385n 조 協同組合의 株式會社에의 參加

조직변경결의에서는 각 조합원이 결의전 경과한 최후의 영업년도말에 자기의 영업지분이 조합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영업지분의 총액에 대하여 발생한 비율로 참가할 것이 정해져야 한다. 조직변경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의 일부가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385k조 및 제385l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제1문 및 제2문이 준용된다.

제 385o 조 組織變更의 申告 및 株式會社의 登記

조직변경결의는 협동조합의 이사회에 의하여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식회사는 이사 및 감사 전원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그밖에 제379조 및 제380조가 준용된다.

제 385p 조 登記의 效力

- (1)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조합원은

- 조직변경결의의 기준에 따라서 주주로 된다. 영업지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그것에 대신하는 주식에 대하여 존속한다.
- (2) 조직변경결의의 무효는 주식회사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제 385q 조 債權者保護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상업등기부에의 조직변경의 등기가 상법 제 10조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385p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된 각 조합원은 정관의 범위내에서(협동조합법 제6조 제3호) 그가 자기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협동조합법 제105조 내지 115a조, 제116조 및 제117조가 준용된다.

제 9 절 株式合資會社의 有限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6 조 要件

- (1)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하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에 관하여 결의할 총회에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과의 청산을 위하여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전에 있는 기준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가 기준으로 될 경우에는 이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전 최고 6월내에 있는 시점에, 무한책임사원과의 청산을 위하여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 175조 제2항이 준용된다. 대차대조표는 의사록에 부속서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3) 유한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70조가 준용된다.

제 387 조 登記의 效力

- (1)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존속한다. 기본자본은 원천자본으로, 주식은 지분으로 된다. 주식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주식에 대신하는 지분에 대하여 존속한다.
- (2)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로부터 퇴사한다. 등기할 때까지 성립된 회사의 채무에 대한 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제 388 조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이상의 규정으로부터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10 절 有限會社의 株式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89 조 要件

- (1) 유한회사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및 적어도 1인의 무한책임사원의 가입을 필요로 한다. 가입은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은 정관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 (3) 조직변경에 관하여 의결할 사원총회에는 회사의 재산 및 채무가 대차대조표기준일에 그것에 부여되어야 하는 가액으로 계상된 대차대조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대차대조표는 그날부터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손익에 참가할 기준일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 기준일이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는 조직변경에 관한 결의 전 최고 6월내에 있는 기준일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175조 제2항이 준용된다. 대차대조표는 의사록에 부속서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 (4)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7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6조 내지 제53조가 준용된다. 조직변경에 찬성의 표결을 한 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 발기인을 대신한다. 제52조 제1항에 의한 2년의 기간은 상업등기부예의 조직변경의 등기로부터 계산된다.

(5) 주식합자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63조가 준용된다.

제 390 조 組織變更의 申告

조직변경의 결의와 동시에 무한책임사원은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 가입에 관한 증서는 회사의 주소의 범원을 위하여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 391 조 登記의 效力

조직변경의 등기시부터 회사는 주식합자회사로서 존속한다. 원천자본은 기본자본으로, 지분은 주식으로 된다. 지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지분에 대신하는 주식에 대하여 존속한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92 조 株式會社로의 組織變更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이상의 규정에서 또는 이사회가 없다는 데서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제 11 절 鑛山法上的 鑛山組合의 株式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

제 393 조

- (1) 고유한 법인격을 갖는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은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389조 내지 제391조 및 그러한 규정에서 또는 이사회가 없다는 데서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광산법상의 광산조합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식합자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363조가 준용된다.

제 5 편 特別規定·罰則規定 및 終結規定

제 1 장 地方自治團體가 參加하는 경우의 特別規定

제 394 조 監事會의 報告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감사회로 선출되거나 또는 파견된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보고에 관해서는 묵비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의 지식이 보고의 목적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은밀한 정보 및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95 조 默秘義務

- (1) 지방자치단체의 참가를 관리하는 것 또는 회사, 지방자치단체의 주주로서의 행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선출되거나 또는 파견된 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검사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는 회사의 은밀한 정보 및 비밀에 대해서, 특히 제394조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그가 알게 된 경영 또는 영업의 비밀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직무상의 연락에서의 통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검사결과의 공시에 있어서는 회사의 은밀한 정보 및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의 비밀을 공시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裁判上의 解散

제 396 조 要件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가 그 임원의 법률위반 행위에 의하여 공공복지를 해치고, 감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그 임원의 해임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주소를 갖는 주의 최고관할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이 소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회사가 그 주소를 갖는 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 (2) 해산후에는 제264조 내지 제273조에 의하여 청산이 행하여진다. 제1항 제1문에 정해진 관청도 중대한 이유에 의하여 청산인의 해임 또는 선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97 조 解散할 때의 命令

해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396조 제1항 제1문에 정해진 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398 조 登 記

법원의 재판은 등기법원에 통지되어야 한다. 등기법원은 그 재판이 등기 의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한 그 재판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 3 장 罰則 및 罰金規定·終結規定

제 399 조 虛偽의 記載

- (1)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1. 발기인으로서 또는 이사나 감사로서 회사를 등기할 목적으로 주식의 인수, 주식에의 납입, 납입된 금액의 사용,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특별이익, 설립비용,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관하여,
 2. 발기인으로서 또는 이사나 감사로서 설립보고서, 사후설립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에서,
 3. 제47조 제3호에 의한 공표에서,
 4. 이시 또는 감사로서 기본자본의 증가를 등기하기 위하여 (제182조

- 내지 제206조) 종전의 자본의 납입, 새로운 자본의 인수 또는 납입, 주식의 발행가액, 인수권주식의 발행 또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5. 청산인으로서 회사의 존속을 등기하기 위하여 제274조 제3항에 의하여 할 증명에서 또는
 6. 이사로서 제37조 제2항 제1문 또는 제81조 제3항 제1문에 의하여 할 확인에서 또는 청산인으로서 제266조 제3항 제1문에 의하여 할 확인에서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하는 것.
- (2) 이사 또는 감사로서 기본자본의 증가를 등기하기 위하여 제210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표시를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등기하기 위하여 제371조 제2항 제1문이나 제2문 또는 제3항 제1문에 규정된 표시를 진실에 반하여 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제 400 조 不眞正한 表現

- (1) 이어나 감사 또는 청산인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1. 그 행위가 상법 제331조 제1호에서 형벌로 경고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결합기업에 대한 관계를 포함한 회사의 상황을 재산상태에 관한 표현 또는 개관에서, 총회에서, 진술 또는 해설에서 부진정하게 재현하거나 은폐하는 것,
 2. 그 행위가 상법 제331조 제1호에서 형벌로 경고되지 않는 경우에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또는 결합기업의 검사에 대하여 해야 하는 설명 또는 증명에서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상황을 부진정하게 재현하거나 은폐하는 것.
- (2) 발기인으로서 또는 주주로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검사인 또는 기타의 검사인에 대하여 해야 하는 설명 또는 증명에서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제 401 조 損失, 債務超過 또는 支給不能의 경우의 義務違反

- (1) 다음의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1. 이사로서 제9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자본의 2분의 1의 액수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뜻을 통고하지 않은 자 또는
 2. 이사로서 제9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또는 청산인으로서 제268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경우에 파산절차 또는 재판상의 화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자.
- (2) 행위자가 과실로 행위한 경우에는 형벌은 1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이 된다.

제 402 조 供託證明書의 虛僞發行 또는 變造

- (1) 주권 또는 가주권의 공탁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분리집회에서 의결권의 증명에 이용될 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또는 변조한 자는 그 행위가 문서형벌행위에 관한 다른 규정에서 더 중한 형벌로 경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 (2) 제1항에서 지정된 종류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3) 미수는 처벌된다.

제 403 조 報告義務의 違反

- (1) 검사인으로서 또는 검사인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정을 보고서에서 묵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 (2)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또는 자기나 타인에게 이득을 주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형벌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이 된다.

제 404 조 秘密保持義務의 違反

(1) 회사의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의 비밀중에서,

1. 이사회 감사 또는 청산인,
2. 검사인 또는 검사인의 보조자

로서의 자격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권한없이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상법 제333조에서 형벌로 경고된 경우에 한한다.

(2) 행위자가 대가를 받고 또는 자기나 타인에게 이득을 주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형벌은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이 된다. 제1항에 지정된 종류의 비밀, 특히 경영 또는 영업의 비밀중에서 제1항의 전제요건하에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권한없이 이용한 자는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3) 그 행위는 회사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된다. 이사 또는 청산인이 그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감사회가, 감사가 그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이 고소권을 갖는다.

제 405 조 秩序違反

(1) 이사회 감사 또는 청산인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1. 일부급부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기명주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하여 권면액 또는 그 이상의 발행금액이 전액 급부되기 전에 무기명주권을 발행하는 것,
2. 회사가 등기되기 전에 또는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기본자본증가의 실행이 등기되기 전에 또는 조건부자본증가나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조건부자본증가에 관한 결의나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에 관한 결의가 등기되기 전에 주권 또는 가주권을 발행하는 것,
3. 제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저권면액 이하의 권면액으로 주권 또는

가주권을 발행하는 것 또는

4. a)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71e조 제1항에 의하여 질취하거나,
 - b) 양도할 자기주식(제71c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 c) 자기주식의 소각(제71c조 제3항)에 관한 결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 (2) 주주로서 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제129조에 의하여 명부에 기입될 기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진정한 기재를 한 자도 질서위반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 (3) 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도 질서위반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1. 대리할 권한없이 타인의 주식을 그의 동의없이 주주총회에서 또는 분리집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
 2. 주주총회에서 또는 분리집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이익의 부여 또는 약속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의 주식을 이용하는 것,
 3. 특별이익의 부여 또는 약속을 받고 제2호에 지정된 목적을 위하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4. 그 또는 그에 의하여 대리되는 본인이 제135조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타인의 주식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
 5. 그 또는 그에 의하여 대리되는 본인이 제20조 제7항, 제21조 제4항, 제71b조, 제71d조 제4문,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6조, 제142조 제1항 제2문, 제285조 제1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의결권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게 양도된 주식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
 6. 주주총회 또는 분리집회에서 표결에 있어서 투표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한 의미로 투표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승낙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서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것 또는

7. 누군가가 주주총회 또는 분리집회에서 표결에 있어서 투표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한 의미로 투표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

(4) 질서위반은 5만 도이취 마르크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될 수 있다.

제 406 조 (삭제)

제 407 조 過 料

(1) 제52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 제71c조, 제73조 제3항 제2문, 제80조, 제90조, 제104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45조, 제170조, 제171조 제1항, 제175조, 제214조 제1항, 제246조 제4항, 제259조 제5항, 제268조 제4항, 제270조 제1항, 제273조 제2항, 제293조 제3항 제2문 및 제3문, 제306조 제6항,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0d조 제2항 및 제4항, 제361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을 준수하지 않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동기법원으로부터 과료의 정함에 의하여 그것을 준수하도록 독촉받아야 한다; 상법 제14조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개의 과료는 10만 도이취 마르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제36조, 제45조, 제52조 제181조 제1항, 제184조, 제188조, 제195조, 제210조, 제223조, 제237조 제4항, 제274조, 제294조 제1항, 제319조 제3항, 제345조 제1항, 제353조 제5항, 제364조, 제367조, 제371조, 제379조, 제390조에 의한 상업등기부예의 신고는 과료의 정함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 지점의 수에 상응하는 신고서류의 수의 제출에 대해서는 상법 제14조에 의한다.

제 408 조 株式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의 處罰

제399조 내지 제407조는 주식합자회사에 준용된다. 그 규정이 이사회에 관한 한 주식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09 조 베를린에서의 適用

본법은 1952년 1월 4일 第三移管法(연방법률공보 1권 1면) 제13조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여 베를린에서도 적용된다. 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제3이관법 제14조에 의하여 베를린에서 적용된다.

제 410 조 施 行

본법은 1966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V. 조직 변경법

제1장 인적회사 또는 1인사원에 대한 재산이전에 의한 자본회사 또는 민법상조합의 조직변경

제1조

- (1) 자본회사(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은 본자의 규정에 따라 합병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또는 그의 재산을 청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의 주주(사원, 조합원)에 이전함으로써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2) 그러나 자본회사가 자본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이 조직변경을 한 회사에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적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단일법인인 주주에 대한 조직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당해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2. 당해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기업과 동일한 법형태이거나 국내에 영업소를 둔 주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법인격없는 민법상 조합이 법인조합원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당해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2조

- (1) 자본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이 시간의 경과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때에는, 채무 신고후 주주(사원, 조합원)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개시하는 않은 경우에 한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2) 자본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이 파산의 개시로 해산하는 때에는, 파산이 강제화외에 의해 철회되거나 파산채무자가 訴를 철회하는 경우에 한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3) 자본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이 기타의 사유로 청산을 하는 때에는,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제 1 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1. 합병회사에 대한 재산양도방식의 조직변경

a) 단독사원인 합병회사에 대한 재산양도방식의 조직변경

제 3 조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 당해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기존의 합병회사에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직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 이때별도의 양도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제 4 조

- (1)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관할등기소에 조직변경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의 작성으로하고,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등기법원은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가 신청에 앞서 6월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해 등기할 수 있다.

제 5 조

채무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財産은 登記를 함으로써 合名會社에 이전하고, 동시에 주식회사는 소멸한다. 이때 解散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제 6 조

- (1) 주식회사의 解散과 함께 商號도 소멸한다.
- (2)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商號에 사업의 계속을 나타내는 부가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합명회사가 株式會社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호 대신 주식회사의 商號를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상호에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합명회사는 사업의 계속을 나타내는 부가문자를 기재하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會社의 同意는 필요하지 않다. 합자회사가 새로 상호를 선정하면서 주식회사가 자신의 상호 가운데 사용한 自然人的 성명을 사용하고, 그 결과 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면 登記法院은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제 7 조

- (1) 상업등기소에 組織變更登記의 신청을 한 후 6월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 받은 株式會社의 債權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파산시 채권자보호를 위해 법규정에 따른 만기 이전의 변제를 요구하고, 국가의 감독하에 있는, 담보를 요구할수 있는 債權者는 담보권이 없다.

제 8 조

- (1)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별도로 운영되는 財産은 조직변경의 등기가 공고된 후 6월이 경과하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을 정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통합된다.
- (3) 주식회사의 管轄裁判籍은 제2항의 시한까지 존속한다.

- (4) 株式會社債權者의 합병회사와 그의 나머지 채권자 및 사원의 개인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수한 자산은, 위 시점까지 주식회사의 자산이 된다. 인수자산의 사원에 대한 지급 및 자본지분이나 순수익의 결손을 가져오거나 회사재산의 분할을 가져오는 구매행위도 이 시점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引受會社의 무한책임사원이 조직변경전 영업년도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상업사용인으로서 계속적인 대가를 받아온 때 지급한 대가와 같은 금액은 1월간 1000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를 분리할 수 있다. 인수된 재산을 인수기업의 재산과 통합할 수 있는 시점 까지 어느 정도의 引受權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변경의 결의 시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b) 特別決議에 의한 組織變更

제 9 조

- (1) 주식회사의 株主總會는 기존의 합병회사가 원천자본의 90% 이상을 보유 한 때, 그에 대한 재산의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때 나머지 社員이 조직변경에 찬성하는가에 관계없이 합병회사의 議決權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관에 원천자본의 과반수를 합병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 (2)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회사가 自己株式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은 조직변경의 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가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한다.

제 11 조

決議는 늦어도 조직변경의 통지가 모든 株主에게 문서로 전달되거나 조직변경의 기초가 되는 대차대조표 및 보상액을 會社公報에 公告한 때 할 수 있다.

제 12 조

- (1) 조직변경에서 배제된 株主는 적절한 賠償額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조직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시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조직변경의 등기를 통지한 때로부터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다.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2) 위의 請求權은 조직변경의 등기를 통지한 때로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 13 조

기존의 합병회사에 대한 재산양도의 결의를 취소하는 때에는 주식법 제 243조 제2항을 준용하거나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제공된 補償額이 적절하지 못한 때에는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법원이 적절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이 없거나 보상액이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취소기간 내에 取消의 訴를 제기하지 않거나 却下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 14 조

제6조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株式會社가 조직변경에서 제외된 株主의 성명을 商號에 사용한 때, 합병회사는 조직변경에서 배제된 주주나 그의 相續人이 商號의 續用을 명백히 승인한 경우에 한해 株式會社의 상호를 속용할 수 있다.

제 15 조

- (1) 주식회사의 재산을 一人의 社員에 양도하는 경우에, 회사의 전 주식을 一人社員이 보유하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8조가, 源泉資本의 90% 이상을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가 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만약 支配社員이 종속 회사이고, 支配會社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때에는 현금보상 외에 당해회사의 株式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문의 補償에 대해서는 제13조가 적용된다.
- (2) 商業登記所에 등기를 하지 않은 一人 또는 支配社員은 상법규정에 따라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다.

3. 合名會社設立에 의한 組織變更

a) 既存株主의 참여하의 조직변경

제 16 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모든 株主가 社員으로 참여하는 合資會社의 설립과 주식회사의 전주식을 합병회사에 양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17조와 제18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제 17 조

- (1) 조직변경의 결의는 株主 전원이 동의한 때에만 유효하다. 이때 동시에 결의에 불참한 株主의 同意 및 공증을 한 書面도 요구된다.
- (2) 조직변경을 결의하는 때에는 合名會社가 소재한 場所, 商號 및 회사의 설립과 조직변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商號에 있어서는 合名會社의 상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 (1) 조직변경의 申請은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書面과 합병회사 사원의 성명, 직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합병회사는 조직변경의 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합병회사의 대표사원은 법원의 보관을 목적으로 회사상호 및 서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다수결에 의한 조직변경**제 19 조**

-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合名會社의 설립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결의에서 찬성주주를 社員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재산을 합병회사에 양도한다.
- (2) 조직변경의 決議는 기본자본의 3/4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때 총자본금의 9/10 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社員의 동의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의의 효력이 있다.
- (3) 나아가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14조, 제17조 및 제18조도 함께 적용된다.

4. 合資會社로의 조직변경**제 20 조**

주식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가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결의하는 때에는 동 결의에서는 제17조의 명시사항, 합자회사의 표시 및 각 사원의 출자액을 정하여야 한다.

5. 民法上 組合의 설립에 의한 조직변경

a) 종래주주의 참가로 인한 조직변경

제 21 조

- (1)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이 합명회사 설립요건(상법 제4조 및 제10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株主總會는 민법상 조합의 설립과 그에 대한 주식회사 재산의 양도를 결의할 수 있다.
- (2) 이때 제3조 내지 제8조, 제17조 제18조도 함께 적용된다.

b) 다수결에 의한 조직변경

제 22 조

- (1) 제21조 제1항의 요건하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찬성주주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民法上 組合의 설립과 주식회사 재산의 組合員에 대한 양도를 동시에 결의할 수 있다.
- (2) 이때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도 함께 적용된다.

제 2 절 株式合資會社의 조직변경

제 23 조

주식합자회사의 組織變更에는 제1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한책임사원의 공증을 한 書面形式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3 절 有限會社의 조직변경

제 24 조

- (1)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에는 제1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조직변경은 사원총회만이 할 수 있다. 결의 및 제1절의 규정에 의한 비참가사원의 同意는 공증을 한 서면으로 한다.
- (2) 다수결에 의한 조직변경은 적어도 사원총회일에 앞선 2주 이상
 1. 목적사항이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2. 전 사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연방공보 및 기타 회사관련간행물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a) 조직변경을 위한 대차대조표
 - b) 보상명령

제 4 절 鑛業協同組合의 조직변경

제 25 조

- (1) 광업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는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제1절 및 제24조 제2항이 적용된다.
- (2) 조직변경은 組合員總會만이 결의할 수 있다. 결의 및 제1절에서 정한 비참가조합원의 同意는 이를 문서화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결의의 확인에는 광업법에 정한 機關의 확인이 요구된다.

제 26 조

광업협동조합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 組織變更은 그에 관한 결의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때 효력이 있다.

제 27 조

광업협동조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特別規定이 적용된다.

제 28 조

- (1) 광업감독기관은 상공부와 조합소재지 관할법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광업감독기관은 연방공보 또는 광업협동조합의 비용으로 기타 간행물에 決議의 確認을 공시하여야 한다. 公示事項에는 최소한 광업협동조합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변경의 종류 및 인수한 人的會社에 참가한 조합원 또는 인수한 단독 또는 지배조합원의 성, 이름, 직위 및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시를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 (1)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결의의 확인을 연방공보에 公示한 때 효력이 있다.
- (2) 광업협동조합이 人的會社를 설립하는 경우에 인적회사는 公示를 한때 성립한다.
- (3) 미등기 인적회사 또는 단독 또는 지배조합원은 商法規定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법원관련절차**제 30 조**

적절한 보상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이 결정한다. 당해법원에 商事部가 설치된 때에는 상사부가 民事部를 대신한다. 지방공공단체는

판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行政命令으로 수개의 지방법원 가운데 하나에 보상액결정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地方司法行政權도 이양할 수 있다.

제 31 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본법 제32조 내지 제37조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의재판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32 조

- (1) 訴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사원, 조합원)에 한한다. 訴는 상법 제10조에 따라 상업등기소에 조직변경의 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2) 地方法院은 제소사실을 연방공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사원, 조합원)는 公示日로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3) 지방법원은 인수한 인적회사(지배사원, 지배조합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33 조

- (1) 지방법원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提訴者가 아니거나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사원,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法定代理人으로서 共同代理人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권리보호가 가능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法院은 이를 연방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代理人은 체당비용 및 활동보상비를 인수한 인적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체당비용과 보상비는 최종적으로 法院이 확정하며, 이러한 확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 34 조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決定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항고는 변호사가 서명한 抗告帳의 제출에 의하며, 上級法院이 이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임의재판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再抗告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정부는 항고결정권이 수개의 상급법원에 귀속하는 경우에 통일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의 상급법원 또는 최상급법원에 항고결정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 35 조

決定은 법적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제 36 조

지방법원은 引受人的會社의 결정권을 제32조 제1항에 의한 提訴權者,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決議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주주(사원, 조합원), 공동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공동대리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인수한 人的會社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무조건 聯邦公報에 공시하여야 한다. 決議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사원, 조합원)는 제32조 제1항이나 제32조 제2항에 따라 訴를 제기한 경우에 公示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 6 절 소송비용**제 38 조**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기한 訴에 대한 決定에 있어서 費用은 費用規定에 따라 부과된다.

제 39 조

訴訟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제30조 내지 제37조의 費用規定이 준용된다.

**제 2 장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대한
財産讓渡方式의 인적회사의 조직변경**

제 40 조

- (1) 합명 또는 합자회사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人的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清算節次가 인정되거나 채무를 변제한 후 사원간에 殘餘財産의 분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 (1) 조직변경은 人的會社社員의 결의를 요한다. 조직변경의 결의는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設立에 인적회사의 全社員이 참가하고
 - 2. 人的會社의 財産을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 (2) 다음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주식법 제1권 제1부 및 제2부가, 주식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동법 제278조 내지 제282조가 적용된다.

제 42 조

- (1) 조직변경의 결의는 總社員의 동의를 요한다.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원의 결의와 동의는 공증한 문서로 한다.
- (2) 조직변경의 결의에서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정관을 확정하

여야 한다. 정관은 5인 이하인 경우에도 확정할 수 있다.

- (3) 인적회사사 하던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人的會社의 商號를 함께 사용하거나, 續用關係를 나타내는 附加文字를 표시하거나 주식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에 속용관계를 나타내는 부가문자를 첨가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법 제4조 제2항 및 제279조 제2항도 함께 적용된다.

제 43 조

- (1) 주식법 제32조에 의한 사원의 設立報告에는 인적회사의 사업의 경과 및 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주식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1인 또는 수인의 檢査人의 검사는 개별 사안별로 실행되어야 한다.
- (3) 사원, 이사 및 감사는 상업등기부의 등기를 위해 조직변경의 결의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37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문서와 함께 조직변경의 결의 및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원의 동의서면을 정본으로 제출하고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법원은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가 등기신청일에 앞선 6월 이전에 작성된 경우에 한해 조직변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 44 조

- (1) 조직변경은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등기를 한 때 인적회사의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이전하며, 인적회사 사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때 人的會社는 解散하며, 商號도 소멸한다.
- (2) 인적회사 사원의 持分에 수반하는 제3자의 권리는 사원이 취득하는 株式에 존속한다.

제 45 조

- (1) 회사의 채무로 인해 會社債權者가 인적회사 사원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은 일반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2) 消滅時效는 인적회사의 해산과 상호소멸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청구권의 만기가 등기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 3 장 有限會社에 대한 재산이전으로 인한 人的會社의 조직변경

제 46 조

人的會社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有限會社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제 47 조

- (1) 조직변경을 하는데에는 人的會社社員의 결의를 요한다. 조직변경의 결의는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1. 有限會社의 설립에 인적회사의 전사원이 참가하고,
 2. 인적회사의 재산을 유한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 (2) 다음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유한회사법 제1자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8 조

- (1) 조직변경의 결의는 總社員의 결의를 요한다.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원의 결의나 동의는 공증한 文書로 한다.
- (2) 조직변경의 결의시에 有限會社의 정관을 확정하여야 한다.
- (3) 유한회사가 인적회사가 하던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당해회사는 人的 會社의 商號를 함께 사용하거나 續用關係를 나타내는 附加

文字를 표시하거나 유한회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에 속용관계를 나타내는 부가문자를 첨가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법 제4조 제2항도 함께 적용된다.

제 49 조

- (1) 社員全員과 理事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위해 법원에 조직변경의 결의를 통지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문서와 함께 조직변경의 결의 및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원의 同意書面을 정본으로 제출하고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항이 적용된다.
- (2) 조직변경은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등기를 한 때 인적회사의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유한회사에 이전하며, 인적회사사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때 人的會社는 解散하며, 商號도 소멸한다.
- (3) 인적회사 사원의 持分에 해당하는 제3자의 권리는 사원이 취득하는 지분에 존속한다.
- (4) 회사채무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人的會社社員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제45조가 준용된다.

제 5 장 회사재산의 이전에 의한 單獨商人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제 50 조

단독상인은 그의 상호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기업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組織變更은 다음 사항을 갖춘 때 종결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이전해야 하는 재산이 민법 제419조 제1항의 단독상인의 재산에 해당하거나

2. 단독상인의 債務가 재산을 초과하는 때

제 51 조

- (1) 조직변경에는 單獨商人의 疏明을 요하며, 조직변경의 소명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단독상인이 유일한 社員으로 참가하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를 설립하고,
 2. 조직변경을 위해 정한 企業의 영업재산을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 (2) 이하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주식법 제1권 제1부 및 제2부가, 주식합자회사의 설립에는 주식법 제27조 내지 제282조가 적용된다. 이때 단독사원은 發起人이 된다.

제 52 조

- (1) 조직변경의 疏明은 법원에 대한 通知 또는 공증을 한 文書로 한다.
- (2) 조직변경의 소명시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정관이 확정된다.
- (3) 제4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4) 조직변경의 소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가운데 단독상인이 서명한 公信의 概要書面으로 한다.
 1. 단독상인의 소유이고, 조직변경에 포함되는 企業에 常用하는 재산.
단독상인은 개요서면에 기타의 재산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동 재산은 기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조직변경을 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單獨商人의 채무

제 53 조

- (1) 주식법 제32조에 의한 設立報告書에는 영업의 경과 및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주식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일인 또는 수인이 檢査를 하는 때에는 개별사안별로 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監事와 理事의 검사 및 주식법 제 33조 제2항에 의해 일인 또는 수인이 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52조 제4항 제2호의 개요서면에 단독상인의 채무가 포함되어있는가의 여부 및 제52조 제4항 제1호에 명시한 단독상인의 재산이 민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한 財産에 해당하는가와 단독상인의 채무가 그의 재산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단독상인의 채무가 자신의 재산을 초과하는가를 검사하는 때 단독상인은 검사인에게 자신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한다는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명세서에는 검사에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명세서에 표시한 재산이 과대평가되거나, 채무가 기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 3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 54 조

- (1) 단독상인, 이사 및 감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위해 법원에 조직변경의 소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법 제37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면
 2. 조직변경에 관한 소명서 정본
 3.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개요서면
 4.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항이 준용된다.
- (2) 법원은 設立檢査人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때 등기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52조 제4항의 개요서면의 내용이 불충분한 때
 2. 개요서면에 기재한 單獨商人의 재산이 민법 제4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인 때
 3. 단독상인의 債務가 財産을 초과한 때

제 55 조

- (1) 조직변경은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때부터 유효하다. 단독상인에 귀속하고, 제53조 제4항의 개요서면에 명시한 재산과 채무는 등기한 때로부터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이전한다. 이때 조직변경 이전에 단독상인이 사용하던 상호는 소멸한다. 소멸상호는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대해 債務移轉을 한 경우에도 단독상인은 채무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4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단독상인은 당해 채무에 대해 連帶責任을 진다. 연대채무관계에서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 (3) 후일 개요서면에 명시한 단독상인의 財産이 민법 제419조 제1항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진 때 債權者는 제1항 제2문의 채무 외에도, 당해 채무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등기 당시 당해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19조 제2항 및 제3항도 적용된다.

제 56 조

- (1) 제52조 제4항에 따라 개요서면에 명시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단독상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一般規定에 따른 소멸시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2) 消滅時效는 상호소멸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이 등기 이전에 만료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는 滿期日로부터 기산한다.

제 5 장 有限會社에 대한 재산양도방식에 의한 單獨商人의 조직변경

제 56a 조

단독상인은 그 상호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자신의 영업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제50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56b 조

- (1) 조직변경에는 單獨商人의 그에 대한 疏明이 요구된다. 조직변경의 소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독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有限會社의 설립
 2.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한 영업재산의 유한회사에 대한 이전
- (2) 이하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유한회사법 제1장이 준용된다. 이때 단독사원은 社員이 된다.

제 56c 조

- (1) 조직변경의 疏明은 公證을 한 문서로 한다.
- (2) 조직변경의 소명에 있어서 單獨商人은 사원의 지위를 가진다.
- (3) 商號를 속용하는 경우 제4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산 및 부채에 관한 개요서면의 첨부 의무에 대해서는 제5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제 56d 조

유한회사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現物出資의 보고에는 영업을 경과와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6e 조

- (1) 조직변경의 소명은 단독상인과 업무집행인이 法院에 등기의 신청을

함으로써 한다. 위 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회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면
 2. 조직변경에 관한 소명서 정본
 3. 제56c조 제3항 제2문의 개요서면
 4. 개요서면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항이 준용된다.
- (2) 다음 경우에 法院은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56c조 제3항 제2문의 개요서면의 내용이 불충분한 때
 2. 개요서면에 기재한 單獨商人의 재산이 민법 제4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인 때
 3. 단독상인의 債務가 財産을 초과한 때

제 56f 조

- (1) 조직변경은 유한회사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때부터 유효하다. 단독상인에 귀속하고, 제56c조 제3항 제2문의 개요서면에 명시한 재산과 채무는 등기한 때로부터 유한회사에 이전한다. 이때 조직변경 이전에 단독상인이 사용하던 商號는 소멸한다. 소멸상호는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단독상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과 제3항이, 단독상인의 채권자가 보유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제56조가 각각 적용된다.

제 6 장 기타 회사의 조직변경

제 57 조

- (1) 지역회사 또는 지역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단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株式會社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은 지역회사 또는 지역단체에 대한 적용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3조 제1항과 제2항, 제54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제56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제 58 조

- (1) 공동단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有限會社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은 공동단체에 대한 적용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53조 제1항과 제2항, 제54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제56조는 有限會社의 登記日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3) 이하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유한 회사법 제1장이 준용된다.
- (4) 조직변경의 소명은 全社員과 업무집행인이 法院에 등기의 신청을 함으로써 한다. 위 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회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
 2. 조직변경에 관한 소명서 정본
 3. 제52조 제4항의 개요서면
 4. 조직변경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항이 준용된다.

제 59 조

- (1) 공공 영조물이나 사단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2) 공공영조물이나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그에 대해 연방 또는 란트법이 조직변경을 예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3) 유한회사의 정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지분을 누구에게 취득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공영조물이나 사단에 대한 연방 또는 란트 법을 기준으로 한다.
- (4) 조직변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법 제1장이 준용된다.
- (5)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공공영조물이나 사단은 유한 회사로 존속한다.

제 60 조

- (1) 그의 구성원이 농업과 임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방앗간, 양조장 및 기타 설비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는 부동산 단체 및 유사단체는 (민법 시행법 제164조)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수 있다.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45조가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제2조, 28조, 29조, 32조, 42조를 제외한 가운데 주식법 제1권 제1부 및 제2부가 적용된다. 조직변경의 결의는 구성원 총회에서 정하고 문서로 공증하여야 한다.
- (2) 조직변경의 결의는 의결권의 3/4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이 요건을 부동산단체 총회에서 달리 정할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등기를 한꺼로부터 주주가 된다. 특별한 권리를 폐지로서 조직변경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성원에 대해서 주식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 (3) 조직변경에 대한 서명에 반대한 부동산단체의 개별 구성원은 회사에 대해 자사의 보유주식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산정과 주식매도 절차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 38조 제1항 제3문 및 제4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4) 組織變更決議의 無效는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의 登記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다.

제 61 조

- (1) 식민회사는 株式會社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 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4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주식법 가운데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46조를 제외한 제1권 제1부 및 제2부가 적용된다. 조직변경의 결의는 株主總會에서 정하고, 문서로 공증하여야 한다.
- (2)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해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상당하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持分の 3/4를 초과하여야 한다. 사원은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주주가 된다. 특별한 권리를 폐지함으로써 조직변경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3) 지분을 주식으로 교환하는데 있어서 주식법 제73조가 적용되며, 持分併합에 있어서는 株式의 失效疏明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226조를 적용한다. 이때 法院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4) 조직변경에 대한 서명에 반대한 개별사원은 주식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기간확정과 주식매각절차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38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제5항 조직변경결의의 무효는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다.

제 61a 조

- (1) 식민회사는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제 46조, 제47조, 제49조까지의 제3장이 적용된다. 조직변경의 결의는 전체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공증을 한 문서로 한다.
- (2)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해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상당하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지만 지분의 3/4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직변경에 동의한 사원은 서면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사원은 有限會社의 사원이 된다.

- (3) 식민회사의 전사원은 유한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유한회사의 사원이 된다. 이때 주식법 제373조 내지 제375조도 적용된다. 당해규정에 따라 회사공보에 게재할 통지사항은 연방공보에도 공시하여야 한다.
- (4) 조직변경결의의 무효는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다.

제 62 조

제61조는 민법 시행 이전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의 재산을 양도가능한 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經濟團體의 조직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조직변경은 정관변경 승인기관의 승인을 요한다.

제 7 장 법인격있는 鑛業協同組合의 有限會社로의 조직변경

제 63 조

- (1) 법인격있는 광업협동조합은 組合員總會의 결의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2) 결의는 전체조합원의 3/4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定款은 이러한 특별결의요건을 보통결의나 기타의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결의는 공증을 한 서면으로 하며, 광업법에 따른 정관의 확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 (3) 결의에서는 商號를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결의에서 조직변경을 시행하는데 따른 필요한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제 64 조

- (1) 源泉資本의 권면액은 조직변경 대차대조표에 명시하고, 負債를 차감한 후 민법상 조합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한 2

만 독일 마르크를 상회하여야 한다.

- (2) 지분의 권면액은 개별 조합지분에 귀속하는 원천자본액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500 독일 마르크 이상이고, 100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지분권면액을 개별 조합지분에 귀속하는 원천자본액에 관계없이 정하는 때에는, 자신의 株式에 귀속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에도 참여하지 않은 個別組合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同意는 공증을 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분권면액을 임의로 정하더라도 제2문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同意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 65 조

- (1) 등기를 한 때부터 민법상 조합은 유한회사로 존속한다. 조합지분은 지분으로 전환한다. 조합지분에 귀속하는 제3자의 권리는 전환된 지분위에 존속한다.
- (2) 민법상 조합에 감사회를 둔 경우에 감사는 유한회사가 법규정에 따라 감사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감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해진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 감사직을 계속할 수 있다. 정관에서 임의로 감사회를 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 (3) 이때 주식법 제371조 제1항, 제373조 내지 제375조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규정에 따라 회사공보에 하는 공고는 다시 연방공보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有限會社에 있어서 회사재산에 의한 資本增加와 合併에 관한 법률

제 1 장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

제 1 조

- (1) 유한회사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원천자본을 증가할 수 있다.
- (2) 원천자본의 증가결의 및 결의의 통지에 대해서는 유한회사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이 적용된다.
- (3) 자본증가의 결의는 결의가 있기 직전 영업연도에 대한 年度決算書가 確定되고 利益處分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4) 원천자본의 增加決議는 貸借對照表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2 조

- (1) 원천자본으로 전환할 자본 및 이익준비금은 최종 연도결산서에 결의가 이와 다른 연도결산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결산서에 각각 資本準備金이나 利益準備金으로 표시하거나 年度利益의 처분결의에서 동 준비금의 증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준비금은 대차대조표에 손실계약 등을 포함하여 손실로 표시되는 경우에 한해 資本으로 전입할 수 있다.
- (3) 특정목적에 위한 기타의 준비금은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 3 조

- (1) 최종 연도대차대조표는 검사 및 결산검사인의 적정이라는 확인의 주기가 있고, 결산기준일이 상업등기소의 등기를 위해 결의의 통지를 하기

에 앞서 7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資本轉入의 決議를 기초할 수 있다.

- (2) 상법 제267조 제3항에서 정한 大規模企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선서를 한 帳簿檢査人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결산검사인은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 4 조

- (1) 결의가 최종대차대조표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에 대차대조표는 연도대차대조표의 項目區分과 評價原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차대조표 기준일은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위한 결의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월 이전이어야 한다.
- (2) 원천자본의 증가결의 이전의 대차대조표는 제1항의 해당여부에 대해 일인 또는 수인의 檢査人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檢査人은 사원이 선임한다. 나머지 검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연도결산서의 검사를 위해 社員에 의해 선임되거나 法院이 선임한 검사인이 결산검사인의 자격을 가진다. 더욱이 檢査契約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318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0조 제1항, 제2항, 제321조, 제32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상법 제267조 제3항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 있어서는 선서한 장부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5 조

정관상의 사원에 대한 연도결산서의 事前公示規定은 제4조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 6 조

- (1) 제12조 제2항의 적용을 유보한 가운데 새로운 지분의 형성이나 지분의 권면액을 증가함으로써 자본증가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분과 권

면액이 증가한 지분은 10으로 나눌수 있고, 동시에 적어도 50 독일 마르크 이상이어야 한다.

- (2) 자본증가의 결의를 할 때에는 그 方法도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지분 권면액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자본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권면액이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증가액을 산정한다.

제 7 조

- (1) 등기를 위해 상업등기소에 하는 決議의 신청은 자본증가의 기초가 되고, 검사인이 확인의 주기를 한 貸借對照表로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경우에 이러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수 있다.
- (2) 등기법원은 자본증가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가 통지일로부터 7월 이전에 작성되고, 제1항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자본증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3) 法院은 貸借對照表가 법규에 따라 검사되었는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4) 자본증가의 결의를 登記하는 때에는 회사재산에 기초하여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5) 法院에 제출한 서류는 문서, 정본 또는 公信의 寫本의 형태로 보존된다.

제 8 조

- (1) 源泉資本은 증가결의를 동기함으로써 증가한다.
- (2) 원천자본의 증가부분은 전액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지분의 증가분은 종래 社員의 保有持분에 비례하여 귀속한다.

제 10 조

- (1) 자본증가로 인한 새로운 지분이 독립한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지분은 讓渡 및 相續이 가능하다.
- (2) 持分發行請求權을 포함한 새로운 지분에 따른 諸權利는 독립한 지분권이 1인에게 집중되거나 각자의 지분을 單一持分으로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원이 권리행사를 위해 통합하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삭 제

제 12 조

- (1) 출자사원 고유의 持分은 원천자본의 증가에 참여할 수 있다.
- (2) 일부 납입이 이루어진 持分은 그 권면액의 범위내에서 원천자본의 증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자본증가는 지분권면액의 증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부 납입지분과 전액납입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券面額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증가할 수 있다. 이때 권면액이 증가한 지분은 5로 나눌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 13 조

- (1) 持分과 관련한 權利關係는 資本增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일부 납입지분의 이익 또는 의결권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개별적 권리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는 未出資分을 납입할 때까지 원천자본의 증가분에 대한 원천자본권면액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사원에게 귀속한다. 나머지 출자분이 납입되는데 그에 따라 권리도 증대한다.
- (3)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내용가운데 회사의 利益處分, 원천자본이나 지분의 권면액이나 가치 또는 기타 존재의 자본에 관한 사항은 자본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持分은 원천자본의 증가를 결의한 영업연도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다.
- (2) 원천자본의 증가를 결의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분은 자본증가를 결의하기 이전 영업연도의 利益에도 참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본증가를 결의하기 이전 영업연도의 利益處分이 있기 전에 원천자본의 증가에서 제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자본증가에 대한 결의 이전 영업연도의 이익처분의 결의는 源泉資本이 증가한 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원천자본의 增加決議 및 증가결의 이전 영업연도의 利益處分決議는 자본증가결의가 결의 후 3월 이내에 등기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때 取消 또는 無效의 訴가 제기되어 있거나 자본증가에 따르는 인·허가절차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 15 조 삭 제**제 16 조**

원천자본의 증가결의를 등기하기 전에는 새로운 지분을 발행할 수 없다.

제 17 조

원천자본의 증가이전에 취득한 지분의 조달비용이 권면액에 비례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원천자본의 증가이전에 취득한 지분과 그에 귀속하는 새로운 지분의 조달비용은 개별지분에 대해 발생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제 18 조 삭 제

제2장 합 병

제1절 유한회사의 합병

제 19 조

- (1) 유한회사는 청산절차없이 합병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합병은 완성한다
1. 합병기업이 자신의 지분을 제공한 가운데 피합병기업의 재산을 총체적으로 이전받는 경우(흡수합병)
 2. 개별사원이 신설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신설합병)
- (2) 합병은 피합병기업 또는 사원 각자가 해산을 하고,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제 20 조

- (1) 합병은 사원이 결의에 동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 (2) 決議는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정관은 결의요건을 이보다 완화할 수 없다. 합병기업의 지분에 대해 전액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원출석사원인 피합병기업의 사원의 결의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당해결의는 불참사원의 동의를 한 때에도 효력이 있다.
- (3) 결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은 결의시 증거로 제출하면 한다.
- (4)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지체없이 결의에 관한 공증문서와 합병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는 각 사원에 대해 합병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 (1) 합병계약에는 피합병기업의 각 사원에 대해 합병기업이 부여하는 지분의 권면액을 정해야 한다.
- (2) 자본증가중에 지분을 취득하거나 합병기업의 지분과 다른 내용의 권리의무를 취득한 때에는 합병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피합병기업의 사원이 먼저 합병기업의 기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원과 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권면액을 합병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 (4) 합병계약은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야 한다. 이때 민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합병계약의 효력이 10년 이후에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10년 이 지난 경우에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일방적 조건하에서 체결되거나 10년 이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회사의 영업연도가 종료하는 때 효력이 있다.

제 22 조

- (1) 합병기업이 합병을 실현함으로써 원천자본을 증가한 때에는 유한회사법 제55조 제1항, 제56a조, 제57조 제2항,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새로운 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새로운 개별출자액은 50독일 마르크 이상이고, 10으로 나눌수 있어야 한다.
- (2) 회사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대한 합병의 신고에는 유한회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서면외에도 합병계약서, 합병결의서의 정본 또는 公信의 副本을 첨부해야 한다.

제 23 조

- (1)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의 지분에 귀속하지 않는 한 원천자본을 증가할 수 없으며, 피합병기업이 자기지분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해 출자액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지분이 합병기업에 귀속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피합병기업이 자기지분을 보유하거나 그에 대해 출자액이 전액 납입된 합병기업의 지분이 피합병기업에 귀속하는 경우에 합병기업은 원천자본을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합병기업의 자기지분 또는 피합병기업이 보유하는 합병기업의 지분이 피합병기업의 사원에 대해 합병의 실현수단으로 제공된 경우에, 정관의 규정은 합병을 위해 필요한 지분분할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유한회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위의 지분분할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 개별 지분의 권면액은 적어도 50 독일 마르크 이상이어야 하고, 10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3) 합병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합병기업이 제공하는 총 지분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 (1) 각 회사의 理事는 會社所在地 管轄登記所에 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理事는 합병등기 신청시 취소가능 기간내에 합병결의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 피합병회사의 이사는 모든 사원이 합병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合併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계약의 정본이나 공신의 사본, 합병결의서 사본 및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때에는 허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피합병회사 소재지관할 등기소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의 書面 뿐만아니라 피합병회사의 貸借對照表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병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연도대차대조표와 그에 대한

檢査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법원은 합병대차대조표가 적어도 기준일로부터 8월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등기할 수 있다.

- (4) 합병회사 소재지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사가 서명한 社員名簿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 (1) 合併企業의 소재지관할 등기소에 하는 합병등기는 피합병기업의 소재지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합병기업이 합병을 실현하기 위해 원천자본을 증가하는 때에는 먼저 원천자본증가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 (2) 피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업의 자산 및 부채는 모두 합병기업에 이전한다. 경우에 따라 합병당사기업 모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양자 모두 합병기업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인수·공급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 상호 모순하는 경우에 각자의 義務範圍은 契約法原理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3) 피합병기업은 상업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하며, 별도의 清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한다. 피합병기업의 사원은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기업의 사원이 된다.
- (4) 公證을 하지 않은 合併契約은 登記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 (5) 피합병기업의 소재지법원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합병등기에 따른 각종서류를 합병기업의 소재지법원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 26 조

- (1) 피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合併登記의 신청을 한 후 6월 이내에 위 사실이 합병기업의 채권자에 대해 통지된 경우에 채권자가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는 한 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파산시 채권자보호를 위해 법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국가가 이를 감

시하는 破産財團에 대해 別除權을 가지는 債權者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7 조

- (1) 피합병기업의 合併貸借對照表 작성시에 정한 評價原則은 합병기업의 연도결산서작성에도 준용할 수 있다.
- (2) 合併企業의 원천자본이 합병에 의해 증가하고, 총권면액 또는 피합병기업의 營業讓受를 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總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固定資產計定の 差額은 승계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별도로 표시하고, 5년 이상 減價償却을 할 수 없다.

제 28 조

- (1) 피합병기업의 이사와 (감사회가 있는 경우) 감사는 합병으로 인해 당해 기업과 그의 사원 및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배상의무를 진다. 회사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때 注意義務를 지는 이사와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2) 피합병기업이 일반규정에 따라 합병시에 가지는 請求權에 있어서 피합병기업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청구권은 양도회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법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 29 조

- (1) 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은 별도의 代表者만이 할 수 있다. 피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법원은 당해기업의 사원이나 채권자의 청구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대표자는 선임목적을 고려하여 피합병기업의 사원과 채권자에 대해

최소한 1월 이상의 적절한 기간내에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고는 聯邦公報에 하거나 定款에 다른 수단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3) 피합병기업이 합병기업에 의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는 피합병기업의 채권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피합병기업의 청구권주장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殘餘財産은 사원에 분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회사법 제7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권자와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제외된다.
- (4) 별도의 대표자는 지출비용이나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과 보상액은 法院이 정한다. 이때 참가사원과 채권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개별사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제 30 조

유한회사법 제43조와 주식법 제116조에 따라 합병시 합병기업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10조에 따라 피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 31 조

피합병기업은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합병등기를 한 후 합병기업에 대한 合併決議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1a 조

- (1) 피합병기업의 사원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결의를 취소하는 때에는 持分の 교환비율을 低價로 평가할 수 없다. 交換比率를 저가로 정한 경우에 주식법 제306조에서 정해진 法院이 취득지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산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 (2) 합병결의의 취소권을 보유하는 被合併企業의 個別社員이 제소권을 가지더라도 제1항 제1문에 따라 取消權이 배제될 수 있다. 社員의 提訴는 상법 제10조에 따라 피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合併登記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 節次에 대해서는 주식법 제306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될 수 있다.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원은 法院의 決定으로도 提訴權을 회복할 수 없다.

제 32 조

- (1) 새로이 유한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유한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제31a조가 적용된다. 합병 당사기업 가운데 한편은 피합병기업으로, 다른 한편은 합병기업으로 본다.
- (2) 신설기업의 定款은 피합병기업의 사원이 決議에 의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신설기업의 감사선임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 (3) 有限會社의 설립에 대해서는 유한회사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제11조의 설립관계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기업의 정관 가운데 特別利益, 設立費用 및 現物出資의 확정은 신설기업의 정관에 승계할 수 있다.
- (4) 피합병기업의 理事는 당해기업의 소재지관할법원에 신설기업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기업의 등기를 한 경우에 피합병기업의 자산 및 부채는 신설기업에 이전한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도 합병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때 상충하는 계약으로 인해 인수·공급 또는 이와 유사한 의무가 모순하는 경우에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양자의 義務履行이 合併企業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의무의 범

- 위는 모든 契約者의 權利를 공정하게 고려하여 결정한다.
- (5) 新設企業의 登記를 하는 때 피합병기업은 소멸한다. 이때 피합병기업에 있어서도 별도의 清算節次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登記를 함으로써 피합병기업의 社員은 신설기업의 사원이 된다.
- (6) 新設企業의 登記신청시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定款에 監事會를 두고 있거나 자본회사에 해당하여 감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 監事의 姓名, 職業 및 주소
 2. 會社의 公示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政官의 규정
- (7) 신설기업의 理事는 피합병기업의 상법登記소에 合併登記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때 합병의 登記는 신설기업의 登記를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 2 절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합병

제 33 조

- (1) 株式會社는 有限會社의 持分을 취득하는 대가로 회사재산의 전부를 이전함으로써 유한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2) 合併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9조 제2항, 제20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합병시 주식회사의 理事會와 株主總會는 피합병유한회사의 이사와 사원을 대체한다. 합병신청시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주식과 주식에 대해 제공한 지분을 표시한 가운데 명시하지 않은 주주를 기재하여야 한다. 被合併企業의 합병대차대조표는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3) 주주총회의 합병결의, 監事의 공시에 대한 有限會社理事의 의무, 주식의 교환 및 반대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株式法 제340d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36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370조, 제373조, 제375조를 적용한다.
- (4)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회사, 그의 주주 및 채권자가 합병시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재산을 검사하거나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때 통상의 業務執行人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理事와 監事는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제 34 조

- (1) 株式合資會社는 有限會社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유한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
- (2) 합병에 대해서는 제33조가 적용된다. 무한책임을 지는 주식합자회사의 社員은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대체한다.

제 3 절 鑛山協同組合과 有限會社의 合併

제 35 조

- (1)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광산협동조합은 유한회사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有限會社와 합병할 수 있다.
- (2) 합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19조 제2항, 제20조 내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組合의 법률상의 대표자와 組合員總會가 피합병유한회사의 社員과 理事를 대신한다.
- (3) 제20조 제1항의 決議에서는 피합병조합의 구성원이 보유한 조합주식의 3/4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定款에서 단순다수결이나 기타의 요건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州法에서 정한 해당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부처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한 承認을 거절할 수 없다.
- (4) 광산협동조합이 商業登記簿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는 조합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할 수 없다. 이때 登記의 효력은 합병기업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합병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 (5) 監事會를 둔 경우에 광산협동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와 감사는 조합, 조합원 및 조합원채권자가 합병으로 인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가 적용된다.

제3장 刑罰, 讓渡 및 決算規定

제36조

有限會社의 理事로서 제7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37조

- (1) 제20조 제4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理事 또는 清算人은 등기법원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상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一回의 과태료는 1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한다.
- (2) 회사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의 신청이 문제되는 경우에 제24조 제1항과 제32조 제4항에서 명시한 상업등기소에 대한 등기의 신청과 관련하여 상법 제14조에 의한 과태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a조

1983년 1월 1일 발효한 합병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이날 이후 합병계약을 문서화하거나 소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본법은 1952년 1월4일의 제3자가 舊法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베를린 란트지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제39조

본 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VI. 독일협동조합법

1889.5.1 (최근 1988.7.25 법에 의해서 개정됨)

제1장 협동조합의 설립

제1조

- (1) 공동의 영업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수입과 경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수가 폐쇄적이지 않은 조합(협동조합), 특히
1. 대출단체와 신용단체
 2. 원료단체
 3. 농산물과 공산물의 공동판매단체(판매협동조합, 창고단체)
 4. 공동의 계산으로 목적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단체(생산협동조합)
 5. 생활필수품의 공동대량구입과 소규모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비단체)
 6. 공동의 계산으로 농산물과 공산물의 공급과 그 이용을 위한 단체
 7. 주거의 생산을 위한 단체는 본법에 따라 “등기된 협동조합”의 권리를 취득한다.
- (2) 공법상의 법인을 포함하여 조합과 그 밖의 인적단체에의 참가가 협동조합구성원의 수입과 경제의 촉진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것이 협동조합의 유일한 또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노력에 기여할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된다.

제2조

협동조합의 채무는 채권자에 대해서 협동조합재산만으로 책임진다.

제 3 조

- (1) 협동조합의 상호는 기업의 목적으로부터 引用되어야 한다. 조합원 또는 다른 자의 이름은 상호에 포함될 수 없다.
- (2) 상호는 “등기된 협동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또는 그 약자인 “eG”를 포함해야 한다. 상법 제30조가 준용된다.
- (3) 상호에는 조합원이 填補給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범위에서인지를 나타내는 문구는 부가되어서는 안된다.

제 4 조

조합원의 수는 적어도 6명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조

협동조합의 정관은 서면의 형식을 필요로 한다.

제 6 조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소재지;
2. 기업의 목적;
3. 협동조합의 파산시에 채권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파산재단으로 무제한적으로 填補責任을 지느냐, 일정한 액(책임액)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관한 규정;
4. 조합원총회의 소집과 그 결의의 公證의 形式, 그리고 그 총회에서의 의장에 관한 규정; 조합원총회의 소집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직접 통지 또는 정기간행물상의 公告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官報의 公告로는 충분치 않다;
5. 협동조합이 公告를 하는 形式에 관한 규정과 그 公告가 실리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규정.

제 7 조

이 밖에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개개 조합원이 투자에 참가할 수 있는 금액(영업지분), 개개 조합원이 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지분의 납입; 영업지분에 대한 납입은 적어도 영업지분의 10분의 1의 전체금액까지 금액과 시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대차대조표로부터 나타난 손실의 보상에 기여하는 법정적립금의 형성과 이러한 형성의 방법 특히 이러한 적립금에 포함될 연간잉여액부분과 그 포함범위에 속하는 정도까지의 지난연도들의 최소금액

제 7 조 a

- (1) 정관은 조합원 1인이 하나 이상의 영업지분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정관은 최고액을 확정하고 그 밖의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2) 정관은, 또한 조합원이 다수의 영업지분으로써 참가해야함을 규정할 수 있다(의무참가). 의무참가는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또는 조직의 요구범위 또는 조합원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한 다른 급부에 따르거나 또는 조합원조직의 특정한 경제적 표지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1) 다음과 같은 규정은 정관에 기재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존속기간;
2. 조합원자격의 취득과 존속은 특정한 구역내의 거주지와 관련된다는 것;
3. 영업연도 특히 첫번째 영업연도는 달력연도와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1년보다 짧다는 것;
4.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조합원총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하거나 또는 다른 요건에 의해 결의할 수 있

다는 것;

- 5.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영업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

(2) 삭 제

- (3) 이미 협동조합에의 가입의사표시에 서명했고 협동조합에 의해서 허락된 者와의 거래는 영업의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4) 삭 제

제 9 조

- (1) 협동조합은 이사회와 감사회를 두어야 한다.
- (2) 이사와 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개 등기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다른 협동조합만 일 경우, 그 다른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 (1) 정관과 이사는 그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의 법원에 있는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 (2) 협동조합등기부는 상업등기부운영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운영된다.

제 11 조

- (1) 등기신청은 이사회 의 의무이다.
- (2) 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첨가되어야 한다:
 - 1. 조합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하는 정관과 그 등본;
 - 2. 조합원명단;
 -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임명에 관한 公證書등본;
 - 4. 협동조합이 가입하도록 허락되었다는 감독단체의 증명과, 협동조합의

인적·경제적 상태 특히 재산상태를 볼 때,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염려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감독단체의 감정 의견

- (3) 또한 신청시에 이사가 어떠한 대표권을 갖는지 진술되어야 한다.
- (4) 이사는 동시에 공적으로 증명된 形式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 (5) 정관의 등본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등기가 증명되면 다시 되돌려 준다. 그 밖의 서류는 법원에 보관된다.

제 11 조 a

- (1) 법원은,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등기를 거부해야 한다.
- (2) 협동조합의 인적·경제적 상태 특히 재산상태를 볼 때,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위협됨이 염려될 경우에도, 법원은 등기를 거부해야 한다.

제 12 조

- (1) 등기된 정관은 법원에 의해서 초록으로 공고된다.
- (2) 그 공고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정관의 날짜.
 - 2. 협동조합의 상호와 소재지.
 - 3. 기업의 목적.
 - 4. 이사와 그 대표권.
 - 5. 협동조합의 존속이 일정기간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그 존속기간.

제 13 조

그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하기 前에는 협동조합은 등기된 협동조합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14 조

- (1) 지점의 법원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지점의 설립을 협동조합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에는 公證된 정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소재지의 법원은, 등기가 다른 지점의 상태하고만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즉시 등기의 증명된 등본과 더불어 지점의 법원에 넘겨주어야 한다. 조합원의 명단 등본은 넘겨지지 않는다.
- (2) 이사는 그 서명을 지점의 법원에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公證된 形式으로 소재지의 법원에 그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지배권이 다른 지점의 영업에로만 제한되지 않는 한, 지배인도 마찬가지이다.
- (3) 지점의 법원은 지점의 설립과 상법 제30조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지점을 등기해야 하고, 그 외에, 법원에 보고된 사실이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한,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등기는 제12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지점의 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지점을 위해서 상호에 어떤 부가문이 붙는다면, 그것 또한 등기되어야 한다.
- (4) 지점의 등기는 소재지의 법원에 직권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소재지 법원의 협동조합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지점을 위해서 상호에 어떤 부가문이 붙는다면, 그것 또한 기재되어야 한다.
- (5) 전항의 규정은 지점폐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4 조 a

- (1) 지점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된다면, 협동조합소재지 안에 있는 지점 또는 등기된 지점과 관련된 모든 신청은 소재지의 법원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 (2) 등기가 공고되면, 소재지의 법원은 그 공고內에, 지점에 대해 동일한 등기가 특히 표시된, 지점의 법원에서 일어남을 진술해야 한다. 상호

- 가 지점을 위해서 부가문이 붙는다면, 이것 또한 진술되어야 한다.
- (3) 소재지의 법원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지점의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에는 신청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가 공고되면, 소재지의 법원은, 등기가 공고된 관보의 번호를 지점의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지점의 법원은 그 등기를 후속심사없이 그 협동조합등기부에 받아들여야 한다.
- (4) 신청이 개개 지점의 상태하고만 관련된다면, 소재지 법원에 특정한 자료이외에 지점이 관계된 만큼의 자료만이 제출되면 된다. 소재지의 법원은 그 등기를 그 등기가 관련된 상태에 있는 지점의 법원에만 통지한다.
- (5) 2항부터 4항까지 직권으로 일어나는 등기에도 준용된다. 나아가 1항과 3항과 4항은 서면자료의 제출과 서명의 표시에 준용된다.

제 15 조

- (1) 정관을 협동조합등기부에 신청한 후에, 구성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에 의해서 서명된 무조건적 가입의 의사표시가 필요로 된다.
- (2) 이사회는 가입자를 받아들일 경우 그 가입자를 조합원명단에 등기하기 위해서 그 의사표시를 법원에(제10조)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는 즉시 행해져야 한다.
- (3) 의사표시와 그 제출에 기해서 발생한 등기에 의해서 가입자의 구성원 자격이 생긴다.
- (4) 법원은 그 조합원과 이사회에 등기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조합원은 그 보고를 포기할 수 없다. 가입의 의사표시는 원본으로 법원에 보관된다. 등기가 거부된다면, 법원은 가입신청자에게 가입의사표시를 반환하면서 그리고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a

가입의 의사표시는, 법률과 정관에 의해서 의무지워진, 영업지분에 대한

납입을 해야 할 조합원의 명시적 의무부담을 포함해야 한다. 정관이, 조합원이 무제한적으로 또는 책임금액에 제한되어서 추가지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나아가 가입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지급을 무제한적으로 또는 정관에서 정한 책임금액까지 지급해야 할 명시적 의무부담을 포함해야 한다.

제 15 조 b

- (1) 추가적 영업지분의 참가를 위해서는 서면의 무조건적 가입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그 내용에는 15조 a가 준용된다.
- (2) 최근까지 새로 引受된 영업지분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모든 영업지분이 완전히 납입되기 전까지는 추가적 영업지분의 참가는 의무납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추가적 영업지분참가를 조합원명부에 신청하고 등기하는 것은 제15조 2항 내지 4항이 준용된다. 참가의 신청에 있어 이사회는 書面으로, 최근 새로 引受된 영업지분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모든 영업지분이 완전히 납입되었거나 또는 추가적 영업지분이 의무납입에 의해서 引受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이 참가는 조합원명부에 등기함으로써 效力이 있다.

제 16 조

- (1) 정관의 변경 또는 일정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협동조합의 연장은 오직 조합원총회에 의해서만 결의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정관의 변경은, 적어도 행해진 투표의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1. 기업목적의 변경,
 2. 영업지분의 증가,
 3. 복수지분의 의무참가의 도입 또는 확장,
 4. 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의 도입 또는 확장,

5. 2년보다 긴 기간으로의 해약고지기간의 변경,
 6. 제73조 3항에 의한 수익적립금에의 퇴사한 조합원의 참가의 도입 또는 확장,
 7. 다수투표권의 도입 또는 확장,
 8. 영업지분의 분리정관은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3) 정관의 변경에 의해서 조합원이 설비 또는 협동조합의 다른 급부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급부해야할 의무가 도입되거나 확장될 경우에는, 적어도 행사된 투표의 10분의 9 이상의 다수이어야 한다. 정관은 또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 (4) 그 밖의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정관이 다른 요건을 정하지 않는 한 적어도 행사된 투표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 (5) 결의의 신청과 등기에는 신청에는 2개의 결의등본이 첨부됨과 동시에 제11조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결의가 제12조 제2항의 사항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한 그 결의는 공고된다.
- (6) 결의는 협동조합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기 前에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 2 장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제 17 조

- (1) 등기된 협동조합 그 자체는 독자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등록된 협동조합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 (2) 협동조합은, 본법이 다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상인으로 본다.

제 18 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우선 정관에 의한다. 정관은, 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본법의 규정과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 (1) 연도결산의 확정에 있어서 조합원 몫으로 발생한 영업연도의 이득 또는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될 수 있다. 분배는 첫번째 영업연도에는 영업지분에 대하여 행해진 조합원의 납입상태에 따라 행해지며, 매 다음 영업연도에는 이익의 轉移와 손실의 공제에 의해서 지난 영업연도의 결산시에 조사된 영업자산의 상태에 따라 행해진다. 이익의 轉移는, 영업지분에 미치지 않는 한 발생한다.
- (2) 정관은 이익과 손실의 분배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영업지분에 미치기 前에 어느 정도로 이익이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손실에 의해서 감소된 자산이 재보충될 때까지는 이익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20 조

정관에 의해서, 이익이 분배되지 않고 법정적립금과 다른 수익적립금으로 충당됨을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 (1) 비록 조합원이 의무지워진 금액보다 높은 액수로 납입금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제21조 a를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정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 (2) 또한 의무지워진 납입보다 많은 것을 급부한 조합원은 그것을 이유로, 손실의 경우에 다른 조합원에게 의무이상의 납입만을 급부하고 요구할 수 없다.

제 21 조 a

- (1) 정관은, 영업자산에 이자가 붙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정관이 확정된 이율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의 이율은 확정해야 한다. 이

자는 지난 영업연도말에 영업자산의 상태에 따라 계산된다. 이자는 그것이 수여되는 영업연도의 종료후 늦어도 6개월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2) 일회계연도의 협동조합의 대차대조표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익적립금, 연간잉여와 이익보고에 의해서 메꿔지지 않는 연간결손금액 또는 손실보고가 증명되면, 메꿔지지 않은 금액만큼 이 영업연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제 22 조

- (1) 영업지분 또는 그에 기해서 급부되는 납입금이 감소되거나 또는 납입에 대해서 확정된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 조합원총회결의의 중요한 내용은 협동조합등기부의 등기의 공고時에 법원에 의해서 보고될 수 있다.
- (2) 협동조합의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한 공고 후 6개월내에 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고에는 이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 (3) 협동조합결의의 등기時의 조합원은, 公告가 행해지고 適時에 신청한 채권자가 행해진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받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받을 경우에 비로서 변경을 주장할 수 있다.
- (4) 조합원의 영업자산은 그가 탈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에 의해서 지급되거나 또는 영업上 質取되어서는 안된다. 의무지워진 납입은 면제되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은 영업지분에 대한 납입금부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신용대여도 해주어서는 안된다.
- (5) 조합원의 의무지워진 납입은 상계될 수 없다.

제 22 조 a

- (1) 추가지급금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조합원의 의무가 책임금액으로 제한되거나 또는 무효로 될 경우, 제22조 1항 내지 3항이 준용된다.

- (2) 추가지급금을 급부할 의무의 도입 또는 확장은,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이미 협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제75조, 제76조 4항, 제115조 b)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 22 조 b

- (1) 영업지분은 2이상의 영업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러한 분리와 이에 상응하는 납입금의 감소는 영업지분 또는 납입금의 감소로 보지 않는다.
- (2) 분리로부터 나타난 영업지분의 수를 가진 조합원은 영업지분의 분리에 관한 결의의 등기와 더불어 참가하게 된다. 제15조 b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3 조

- (1)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本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조합에 가입한 者は 그가 가입하기 前에 조합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3) 위의 1항과 2항의 규정에 反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 3 장 代表와 업무집행

제 24 조

- (1) 협동조합은 이사회에 의해서 재판상 재판外로 대표된다.
- (2) 이사회는 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원총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정관에 의해서 더 많은 수의 구성원과 다른 임명방법이 규정될 수 있다.
- (3) 이사회 구성원은 有給 또는 無給일 수 있다. 그들의 임명은 항상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계약상의 補償請求權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5 조

- (1) 이사회(이사)의 구성원(이사)은 오직 共同해서만 협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정관은 이와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경우, 理事 가운데 一人에 대한 의사표시면 족하다.
- (2) 정관은 또한, 개개 이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배인과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항 3문이 준용된다.
- (3) 공동대표할 권한을 가진 이사는 그들 중의 개개인에게 특정한 영업 또는 특정한 종류의 영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개 이사가 지배인과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4) 이사는 협동조합의 상호 또는 이사회(이사)의 명칭에 그의 서명을 첨가함으로써, 협동조합표시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a

- (1) 특정인을 수령자로 하는 모든 영업문서에는, 협동조합의 法形態와 소재지, 협동조합소재지의 등기법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된 번호, 그리고 모든 이사, 그리고 감사회에 의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의장의 姓과 단축되지 않은 이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현재의 거래관계의 범위에서 행해지고, 개개 경우에 필요한 특별한 기재만이 삽입될 필요가 있는 書式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지 또는 보고에는 제1항에 의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
- (3) 注文傳票는 제1항의 영업문서로 본다. 제2항은 注文傳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6 조

- (1) 협동조합은 이사회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 법률행위가 명시적으로 협동조합의

- 이름으로 행해졌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자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행해진 사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 (2) 관청에 대해서 이사회적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나타나는 者들이 이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는 법원의 증명(제10조)으로 족하다.

제 27 조

- (1) 이사회는 협동조합을 자신의 책임하에 이끌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서 정해진 제한을 주의하여야 한다.
- (2)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회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은, 그 대표행위가 일정한 영업 또는 일정한 종류의 영업에만 미치거나, 또는 일정한 상황하에서만 또는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또는 조합원총회, 감사회 또는 협동조합의 다른기관의 동의가 개개 행위를 위해서 요구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제 28 조

- (1) 이사회는 이사회적 모든 변경 또는 이사의 대표권한의 모든 변경을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에는 그 변경에 관한 증서원본 또는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 등기는 법원에 의해서 공고된다.
- (2) 이사는 그 서명의 표시를 公證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 (1) 이사회적 변경 또는 이사의 대표권한의 변경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 공고되지 않는 한, 협동조합은 그 변경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변경을 제3자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2) 그 변경이 등기되고 공고되면, 제3자는 그것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그 변경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한, 공고 후 15일 이내에 행해진 법적행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그 변경이 잘못 공고되면, 제3자는 그 잘못된 변경공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위 규정들에 따라 등기가 문제되는 한, 협동조합등기부에서의 지점의 등기는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된 지점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하다.

제 30 조

이사회는 조합원의 明細를 운영해야 하며, 조합원의 명세를 조합원명부와 일치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삭 제

제 32 조 삭 제

제 33 조

- (1)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필요한 장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야 한다. 연도결산과 상태보고는 즉시 감사회로 넘겨져야 하며, 감사회의 소견과 더불어 조합원총회로 넘겨져야 한다.
-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의 위반과, 書式의 부주의에 의해서 연도결산의 명료성이 오직 비본질적으로만 침해될 경우에는 그것들이 취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제 33 조 a부터 제 33 조 i까지 삭 제

제 34 조

- (1) 이사는 그 업무집행에 있어 정상적이고 성실한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기밀적 사항과 비밀, 특히 이 사회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에게 알려진 경영조직상의 또는 영업상의 비밀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
- (2)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정상적이고 성실한 협동조합의 업무수행자의 주의를 기울인 것이 다투어진다면, 그것의 입증책임은 이사에 있다.
- (3) 이사는 본법 또는 정관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할 때 특히 배상책임이 있다.
1. 영업자산을 지급할 때,
 2. 조합원에게 이사 또는 영업지분이 주어질 때,
 3. 조합재산이 분배될 때,
 4. 협동조합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또는 제98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파산원인인 채무초과가 발생한 후에 지급이 행해질 경우,
 5. 신용이 제공될 경우
- (4) 그 행위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배상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 감사회가 그 행위에 동의함에 의해서는, 배상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 (5) 제3항의 사항들에 있어서 배상청구권은, 협동조합의 채권자들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한, 그들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협동조합의 포기 또는 화해에 의해서 면제되지 못하며 또 그 행위가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못한다. 협동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이 개시되면, 破産管財人이 파산이 계속되는 동안 이사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 (6) 위 규정들상의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 35 조

이사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 36 조

- (1) 감사회는, 정관이 더 높은 수를 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3인의 감사로 구성된다. 결의에 필요한 수는 정관에 의해서 규정된다.
- (2) 감사는 영업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대가(이익배당)를 받아서는 안된다.
- (3) 감사의 임명은 감사선출기간 前에도 조합원총회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철회의 결의는, 적어도 행사된 투표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 37 조

- (1) 감사는 동시에 이사 또는 계속적으로 이사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被用人으로서 협동조합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미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만 감사회는 감사개개인을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이사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종결의 승인때까지 감사로서 활동하지 못한다.
- (2) 이사가 이사회로부터 탈퇴하면, 그 者는 책임종결의 승인前에 감사가 되지 못한다.

제 38 조

- (1) 감사회는 이사회에 업무집행에 있어 회사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이사회를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사무의 진행을 파악해야 한다. 감사회는 항상 협동조합사무에 관해서 이사회로부터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또는 감사회에 의해서 특정된 그 구성원인 감사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장부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금고의 현상태와 유가증권, 상업증권과 상품의 현상태를 조사할 수 있

다. 감사회는 연도결산, 상태보고 그리고 연간잉여액의 사용 또는 연간결손액의 보충을 위한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회는 검토의 결과에 관해서 연도결산의 확정前에 조합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감사회는,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그 밖의 감사회의 의무는 정관에 의해서 규정된다.
- (4) 감사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다른 者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 39 조

- (1) 감사회는,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時에 협동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에 대해서 조합원총회가 결의한 소송을 수행한다.
- (2) 정관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또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에 대한 모든 信用의 供與는 감사회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가 신용공여의 보증인으로서 인정됨에도 마찬가지이다.
- (3) 감사에 대한 訴訟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소송대표자에 의해서 대표된다.

제 40 조

감사회는 그 재량에 따라 이사를 잠정적으로, 지체없이 소집된 조합원총회의 결정 때까지 그의 업무로부터 면직시킬 수 있고, 그 업무의 임시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1 조

감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제34조가 준용된다.

제 42 조

- (1) 협동조합은 상법 제48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지배권을 부여할 수 있

다. 협동조합등기부예의 등기는 상업등기부예의 등기장소에서 일어난다. 제28조 제1항 3문, 제29조가 준용된다.

- (2) 협동조합은 상사대리권도 또한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

제 43 조

- (1) 법률이 다른 것을 규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은 조합원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 (2) 조합원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이 더 높은 다수를 규정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단순결의). 선출에 관해서는 정관은 상이한 규율을 할 수 있다.
- (3) 모든 조합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정관은 복수투표권의 부여를 규정할 수 있다. 복수투표권은, 특히 협동조합의 영업조직을 진흥시키는 조합원을 위해서만 부여되어야 한다. 복수투표권의 부여요건은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어떤 조합원도 3표이상의 복수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법률에 따라 행사투표권의 4분의 3의 다수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고, 정관이 법률상 규정된 다수보다 더 적은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결의에 있어서, 그리고 복수투표권에 관한 정관규정의 폐기 또는 제한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는 비록 복수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그 구성원을 유일하게 또는 비중있게 등기된 협동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에는 3문 내지 6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원인 협동조합의 정관은 그 영업자산의 크기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 자신의 투표권의 등급을 규정할 수 있다. 복수투표권에 관한 정관규정의 폐기 또는 변경에는 관련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 조합원은 그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자연인의 투표권과, 법인의 투표권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인적상사회사의 투표권은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社員에 의해서 행사된다.

- (5) 조합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투표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대리권을 위해서는 書面의 形式이 필요로 된다. 대리인은 2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정관은 대리인의 人的 要件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적으로 투표권의 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者들에 대한 대리권수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 (6) 조합원이 책임종결의 승인을 받는지의 여부 또는 채무를 면제받는지의 여부, 또는 협동조합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의가 행해질 경우, 자기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3 조 a

- (1) 3천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협동조합에서는 전체총회는 조합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다(대표자총회). 구성원의 수가 1천 5백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전체총회는 조합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2) 협동조합의 구성원이면서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행위능력제한자 아닌 모든 자연인은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3) 대표자총회는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된 적어도 50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표자는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될 수 없다. 대표자에게 복수투표권은 수여더가 수 없다.
- (4) 대표자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방식으로 선출된다; 복수투표권은 상관없다.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대리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항과 제5항이 준용된다. 어떤 대표자도, 임기 시작 후 4년째 영업연도에서 이사와 감사의 면책에 관하여 결의하는 대표자총회의 종료시까지 보다 긴 기간 동안 선출될 수 없다. 임기가 시작되는 영업연도는, 산입되지 않는다.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몇명 당 1명의 대표자 있는가;
 2. 대표자의 임기

선출결과와 확정을 비롯한 선출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이사와 감사의 만장일치결의에 의해서 공포되는 선출규정에서 행해진다. 이 선출규정은 전체총회의 주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회의 결의는 만장일치로 행해져야 한다.

- (5) 각각의 대표자에 대해서 한명의 補充員이 선출될 수 있다.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결원되었을 경우, 缺員된 대표자의 보충원이 대표자가 된다. 보충원은 대표자와 오직 동시에 선출될 수 있다. 보충원의 임기는 늦어도 결원된 대표자의 임기가 경과하기 전에 종료한다. 대표자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보충원의 선출에도 적용된다.
- (6) 선출된 대표자와 선출된 보충원의 명단은 조합원에 열람되도록 협동조합의 영업장소에 2주간 비치되어야 한다. 비치사실은 공적 간행물에 공고되어야 한다. 비치기간은 공고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조합원은 요구에 의해서 즉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 44 조

- (1) 전체총회는 정관 또는 본 법률에 따라서 다른 者도 전체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된다.
- (2) 전체총회는 정관 또는 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집될 수 있다.

제 45 조

- (1) 조합원의 10분의 1 또는 정관에서 이를 위하여 정한 더 적은 비율의 조합원들이 목적과 이유를 들어 그들에 의해서 서명된 요구서로 소집을 요청하면, 전체총회는 지체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 (2) 조합원은 마찬가지로, 전체총회의 결의를 위한 사안이 통지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원은(제10조), 요구를 한 조합원에게 전체총회의 소집과 사안의 통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의 授權

은 소집 또는 통지로서 공시될 수 있다.

제 46 조

- (1) 전체총회의 소집은 정관에 의해서 명시된 방법으로 적어도 1주일의 기간으로 행해져야 한다.
- (2) 전체총회의 목적은 항상 소집시에 공고되어야 한다. 정관 또는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적어도 전체총회의 3일전에 통지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결의가 행해질 수 없다; 그러나 총회의 지휘, 임시 전체총회의 소집제외에 관한 결의는 이로부터 제외된다.
- (3) 제안하는 것과, 결의없는 事案은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47 조

- (1) 전체총회의 결정에 관하여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 문서에는 총회의 장소와 날짜, 의장의 성명과 투표의 결과, 결의에 관한 의장의 확정 포함되어야 한다.
- (2) 문서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문서에는 소집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3) 정관이 복수투표권의 부여를 규정하거나 본법 16조 2항 2호내지 5호, 3항에서 열거된 목적중의 하나 또는 기업목적의 본질적인 변경과 관련있는 정관변경이 결의된다면, 출석 조합원 또는 被代理 조합원과 조합원의 대표자의 리스트 외에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각의 출석 또는 被代理 조합원에 있어서 그들의 투표수가 기입되어야 한다.
- (4) 각각의 조합원에게는 문서의 열람이 허용된다. 협동조합은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 조

- (1) 전체총회는 연말결산을 확정한다. 전체총회는 연말잉여금의 사용 또는

연말결손금의 填補 및 이사회와 감사회의 면책에 관하여 결의한다. 전체총회는 영업년도의 처음 6개월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 (2) 연말결산의 제출에 적용되는 규정은 연말결산의 확정에 적용된다. 연말결산의 확정이 변경되고 그 검토가 53조에 의해서 이미 결의된다면, 새로운 검토 이전에 행해진 연말결산확정결의와 수익금사용결의는, 새로운 검토에 근거하여 변경에 관한 무조건적인 확인기재가 행해질 때 비로서 유효하다.
- (3) 연말결산, 상태보고와 감사회의 보고는 적어도 총회 한 週전에 협동조합의 영업장소에서 또는 이사회에 의해서 공고되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조합원의 열람을 위하여 비치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통지되어야 한다. 모든 조합원은 그들의 비용으로 연말결산, 상태보고 및 감사회보고의 寫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9 조

전체총회는 그 채무자에 대한 信用供與에 있어 준수되어야 하는 제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 50 조

정관에 의해서 조합원이 금액과 시기에 관한 정함을 하지 않고 영업지분에 대한 지급의무만이 규정된다면, 그 정함은 전체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51 조

- (1) 전체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 위반을 원인으로 訴로써 취소될 수 있다. 訴는 1月內에 제기되어야 한다.
- (2) 전체총회에 출석한 모든 조합원이 결의에 반대하여 의사록에 이의를 나타내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출석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가 전체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당하게 허용되지 않

을 때, 그가 전체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 대상의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사회와 각 이사와 감사는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각 이사와 감사는, 결의가, 그 실행에 의해서 이사와 감사가 처벌을 받거나 협동조합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처분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 (3) 訴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기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이사회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해서 대표된다. 그리고 감사회에 의해서도 대표된다. 협동조합이 그 소재를 갖고 있는 地區의 지방법원만이 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口頭審理는 제1항에 기재된 기간 이전에 행해져서는 안된다. 복수의 취소소송은 동시의 심리와 재판으로 결합될 수 있다.
- (4) 소의 제기와 구두심리의 期限은, 협동조합의 공고를 위해서 특정된 간행물에 이사회에 의해서 즉시 공고되어야 한다.
- (5) 결의가 판결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결의가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었으면, 이사회는 등기를 위해 법원에(제10조) 판결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된 결의가 공고되었을 경우, 법원등기가 공고된다.

제 52 조

협동조합결의의 이유없는 취소에 의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소제기에 있어 악의적 행동을 한 원고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 4 장 감독과 감독단체

제 53 조

- (1) 경제관계와 업무수행의 적법성의 확정을 목적으로 적어도 2번의 영업연도마다 협동조합의 설비, 재산상태, 업무수행이 검사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금액이 2백만 DM을 넘는 협동조합은 매 영업연도마다 검

사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연말결산은 簿記와 상태보고와 관련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상법 316조 3항, 317조 1항 2문과 3문이 준용된다.

제 54 조

협동조합은 검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감독단체(Prüfungsverband)에 가입되어야 한다.

제 54 조 a

- (1) 협동조합이 감독단체로부터 탈퇴하면, 감독단체는 법원(10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협동조합이 감독단체의 구성원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협동조합이 정해진 기간내에 법원에, 구성원자격을 취득했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사회(監事會)의 聽聞을 들어 직권으로 협동조합의 해산결정을 해야 한다. 80조 2항이 적용된다.

제 55 조

- (1) 협동조합은 그가 속한 감독단체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다. 감독단체는 검사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고용된 검사인을 이용한다. 고용된 검사인은 협동조합의 검사사무에 있어 사전에 교육받은 경험있는 자이어야 한다.
- (2) 검사받는 협동조합의 이사와 감사, 사무원 그리고 구성원은 그 협동조합을 검사해서는 안된다.
- (3) 감독단체는 구체적인 경우에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의해서 고용되지 않은 검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단체는 다른 감독단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한해서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 56 조

- (1) 감독단체의 구성원 또는 감독단체의 특별대리인(민법 제30조)이 이사 또는 감사, 검사받는 협동조합의 청산인 또는 사무원일 경우, 또는 검사기간에 또는 앞선 2개 영업연도에 검사받는 협동조합의 청산인 또는 사무원일 경우, 감독단체의 검사권은 중지된다.
- (2) 감독단체의 검사권이 중지되면, 그 감독단체가 속해있는 중앙통제단체가 협동조합 이사회의 신청에 의해서 다른 감독단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검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중앙통제단체가 검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단체가 어떤 중앙통제단체에도 속해 있는 않은 경우, 법원(제10조)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신청에 기해서 제1문의 검사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즉시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 (3) 제2항에 의해서 임명된 검사인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률상에 있어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검사인은 그의 검사보고의 사본을 감독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7 조

- (1)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검사인에게 협동조합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금고의 殘高와 유가증권과 상품의 殘高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검사인이 주의깊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해명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독단체에 의해서 지시된 임시 검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감독단체는 협동조합 감사회의 의장에게 적정한 시기에 검사의 시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회의 의장은 여타의 감사들에게 검사의 시작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여타 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검사인의 요구에 의해서 여타의 감사들을 검사에 관여시켜야 한다.
- (3) 감사회의 즉각적인 조치가 검사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는, 검사인은 그것을 즉시 감사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검사인은 협동조합 이사회와 감사회의

공동의 회의에서 예측가능한 검사결과를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감사인은,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의장이 그러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인의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인 스스로 事情을 통지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8 조

- (1) 감독단체는 검사결과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말결산과 상태보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상법 321조 1항이 준용된다.
- (2) 상법 267조 3항의 규모를 갖춘 협동조합의 검사에는 확인기재에 관한 상법 322조가 준용된다.
- (3) 검사보고는 감독단체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하고, 감사회 의장에게 보고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감사는 검사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4) 협동조합의 이사회와 감사회는 검사결과가 도착한 후 즉시 공동회의를 열어 검사결과에 관해서 토의해야 한다. 감독단체와 감사인은 위의 회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감독단체에 그 회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9 조

- (1) 감독단체는 검사가 있었다는 감독단체의 증명을 협동조합 등기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장 가까운 전체총회의 소집시에 결의 대상으로 그 검사보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전체총회에서 감사회는 검사의 본질적 확정과 異議의 意思를 표명하여야 한다.
- (3) 감독단체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전체총회의 토의에 참가하거나 또는 전체총회의 결의에 기해서 검사보고가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이 낭독될

수 있다.

제 60 조

- (1) 감독단체가, 검사보고에 관한 결의가 부당하게 지체된다는 확신이 들거나, 또는 전체총회가 결의에 있어 검사보고의 본질적 확정과 異議에 관해서 불충분하게 보고받았다는 확신이 들 경우에는, 감독단체는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협동조합의 임시전체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확정된 하자의 제거를 목적으로 어떠한 대상이 토의되고 결의되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다.
- (2) 감독단체에 의해서 소집된 전체총회에서는 감독단체가 정한 者가 의장을 맡는다.

제 61 조

감독단체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의 상환과 급부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2 조

- (1) 감독단체, 검사인 및 검사법인은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검사를 할 것과 黙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知得한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을 권한없이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의로 또는 과실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로부터 나온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2) 고실있는 행동을 한 者의 보상 의무는, 하나의 檢査 當 20만 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검사에 다수인이 참가했거나 또는 다수인에게 보상 의무를 지우는 행동이 행해진 경우 및 다른 참가자가 고의로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 감독단체는 검사보고의 내용에 관하여, 그 감독단체에 속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중앙영업조직이 검사결과에 관하여 통지받는 것에 대해서 현존하고 근거있는 영업관계에 근거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감독단체는 그가 속해 있는 중앙통제단체에게 검사보고의 사본을 전달할 수 있다; 중앙통제단체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그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

- (4) 검사법인이 검사를 행할 경우, 검사법인의 감사회와 감사에 대해서도 제1항 제1문에 의한 묵비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검사법인의 감사회 의장과 그 대리인은 검사법인에 의해서 보내진 보고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회의 감사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경우에만 여기에서 획득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 (5) 이들 규정에 의한 책임은 계약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검사단체가 검사수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者들에 대해서도 감독단체의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이들 규정으로부터 나온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협동조합에 검사보고가 도착할 때부터 開始된다.

제 63 조

검사권은, 감독단체가 소재해 있는 지역의 권한있는 最高 州官廳에 의해서 감독단체에 부여된다. 감독단체의 구역이 주의 범위를 넘으면, 관련있는 州들과 협조하여 검사권이 부여된다.

제 63 조 a

- (1) 단체가 그에게 맡겨진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만, 검사권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 (2) 단체의 검사활동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특히, 검사권 부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3) 검사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관청은, 검사권의 부여를, 감독단체의 부담의 이행, 특히 감독단체가 검사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로 보험을 들거나 다른 충분한 보장을 증명하는 여부에 따라 행할 수 있다. 63조 2문이 준용된다.

제 63 조 b

- (1) 감독단체는 등기된 사단의 법형식을 취해야 한다.
- (2) 감독단체의 구성원은 오직 등기된 협동조합, 또는 그 법형식에 상관없이 등기된 협동조합의 手中에 전체적으로 또는 비중있게 존재하거나 또는 협동조합제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검사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最高 州官廳(63조)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관청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1문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3) 등기된 협동조합이 아니고, 다른 법률상의 검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감독단체에 소속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검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本法上的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4) 감독단체는 3항 규정과 관계없이 그 구성원의 검사를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해관계, 특히 목적에 대한 상호 영업관련성 維持의 공통적인 認識을 가질 수 있다. 감독단체는 다른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5) 감독단체에는 적어도 한 명의 공인회계사가 속해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감독단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감독단체는 한 명의 공인회계사를 그의 특별대리인(민법 제30조)으로 임명해야 한다. 검사권의 부여권한이 있는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감독단체로부터 제1문과 2문의 遵守의무를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감독단체의 구성원의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권의 부여권한이 있는 관청은 더 긴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6) 감독단체의 구성원총회는 그 감독단체구역내에서만 개최될 수 있다.

제 63 조 c

- (1) 감독단체의 정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단체의 목적;
 2. 명칭; 명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체의 명칭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3. 소재지;
 4. 구역.
- (2) 나아가 정관은 고용될 검사인의 선발과 자격증명에 관해서, 검사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서, 감독단체의 소집, 소재지, 업무, 권한에 관해서 그리고 감독단체의 그 밖의 기관에 관해서 규정해야 한다.
- (3) 목적 또는 구역(1항 1호와 4호)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단체정관의 변경은 검사권의 부여권한이 있는 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63조 2 문과 63조a 2항, 3항이 준용된다.

제 63 조 d

감독단체는 협동조합의 소재지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제10조)에, 검사권 부여증서의 認證謄本과 함께 정관을 제출해야 하고, 매년 1월에 감독단체에 속한 협동조합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 63 조 e

- (1) 등기된 사단의 범형식의 감독단체(소멸된 감독단체)는 동일한 범형식의 다른 단체(흡수 감독단체)와 양 감독단체의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합병될 수 있다. 결의는 참가 구성원의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 가중될 수 있다.
- (2) 합병계약에는 서면 형식이 요구된다; 민법 310조, 311조, 313조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3 조 f

- (1) 합병은 양 감독단체의 이사회에 의해서 공동으로 지체없이 양 감독단체 소재지의 사단등기부에 신고되어야 한다. 양 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원본 또는 공적 인증이 있는 등본의 형태로 그 신고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문과 2문의 규정과 제63조 e의 규정은 遵守가 증명될 때에만, 합병등기될 수 있다.
- (2) 소멸 감독단체는 그 소재지의 사단등기부에의 합병등기로서 소멸되며, 채무를 포함한 그의 재산은 흡수 감독단체에 넘어간다.
- (3) 양 감독단체의 이사회는, 검사권의 부여권한이 있는 最高 州官廳(제 63조)에 즉시 공동으로 등기를 통지해야 한다.

제 63 조 g

- (1) 소멸 감독단체의 청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민법 4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양 감독단체의 이사는 소멸 감독단체와 흡수 감독단체의 채권자가 합병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양 감독단체의 재산상태의 조사에 있어서 그리고 합병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통상적인 營業者의 주의를 기울인 이사는 배상의무를 면한다.

제 63 조 h

- (1) 소멸 감독단체 소재지의 社團登記簿에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소멸 감독단체의 구성원은, 흡수 감독단체 구성원자격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흡수 감독단체구성원이 된다. 이사회는 즉시 구성원에게 등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소멸 감독단체의 구성원은, 解止에 의해서 흡수 감독단체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解止權은 포기될 수 있다. 해지는 늦어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야 한다; 그 기간은 합병등기의 통지(1

항 2문)가 도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해지의 경우에 흡수 감독단체의 구성원 자격은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제 63 조 i

- (1) 국가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감독단체는, 등기된 사단의 법형식을 가진 감독단체와, 후자(흡수 감독단체)가 전자(소멸 감독단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될 수 있다.
- (2) 그 밖에, 제63조 e 내지 제63조 h는, 제63조 f 제2항과 제63조 h 제1항에서 흡수 감독단체 소재지의 사단등기부예의 등기가 소멸 감독단체 소재지의 사단등기부예의 합병등기로 대체됨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다.

제 64 조

감독단체의 소재지가 있는 구역의 관할권 있는 最高 州官廳은, 감독단체가 그 의무적 과업을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감독단체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할 최고 주관청은 명령에 의해서 감독단체의 과업의 수행을 독려할 수 있다.

제 64 조 a

감독단체가 그에게 맡겨진 과업의 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감독단체가 제64조에 의한 관할권있는 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검사활동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감독단체의 검사권은 박탈될 수 있다. 감독단체 이사회의 聽聞 후 검사권부여권한이 있는 관청에 의해서 박탈이 행해질 수 있다. 제63조 제2문이 준용된다. 제63조 d의 법원에 박탈된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64 조 b

협동조합이 어느 감독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법원은(제10조) 법률

에서 감독단체에 맡겨진 과업의 이행하도록 감독단체를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전문적 속성과 소재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 64 조 c

해산한 협동조합도 또한 본 章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장 개개 조합원의 탈퇴

제 65 조

- (1) 모든 조합원은, 解止에 의해서 협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 (2) 해지는 영업연도말에만 발생한다. 해지는 적어도 3개월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관에 의해서 더 긴, 그러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해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2년보다 긴 해지기간이 정해졌다면, 적어도 1 영업연도 동안 협동조합에 속해 있던 조합원은, 그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정관에서 정한 해지기간의 경과시까지 협동조합에 남아있을 것이 요구될 수 없을 경우, 정관상으로는 아직 해지를 할 수 없지만 영업연도말에 3월의 기간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제4문은, 협동조합이 오직 또는 큰 비중으로 동기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협동조합이 제2항의 탈퇴가 일어나는 시기 이전에 해산된다면, 조합원은 탈퇴하지 못한다. 협동조합의 계속이 결의되면, 협동조합의 해산은 조합원의 탈퇴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원이 해산되어 있는 기간은 해지기간의 계산에 있어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원은 빨라도, 협동조합계속의 결의가 협동조합등기부에 동기된 영업연도말에 탈퇴한다.
- (4) 위 규정들에 배치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 66 조

- (1) 지난 6월 이내에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없은 후에, 협동조합과의 소유관계정리에서 귀속되는 동일한 대여금의 압류와 轉付措置를 한 조합원의 채권자는, 채무명의가 잠정적으로만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 그 조합원 대신에 조합원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채무명의의 認證받은 寫本과, 실효를 보지 못한 강제집행에 관한 證書는 전항의 해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67 조

- (1) 구성원자격이 정관에 의해서 특정한 구역내에서의 주소와 관련된다면 (8조 2호), 그 구역에서의 주소를 포기한 조합원은 영업연도말의 그의 탈퇴를 서면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다.
- (2)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원이 영업연도말에 탈퇴해야 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3) 주소의 포기에 관하여 공공관청의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67 조 a

- (1) 제16조 2항 2호 내지 5호, 3항에 열거된 對象 또는 기업목적의 본질적 변경과 관련있는 정관변경이 결의되면, 다음의 者는 해지할 수 있다.
 1. 전체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결의에 대한 이의를 서명으로 의사표시를 했거나 또는 서명에 그 이의를 나타내는 것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 조합원
 2. 전체총회의 출석이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체총회가 전체총회가 적절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결의대상이 적절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전체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

대표자총회가 정관변경을 결의했다면, 모든 조합원은 해지할 수 있다; 대표자에게는 제1문이 적용된다.

- (2) 위 해지는 서면의 의사표시로 행해져야 한다. 위 해지는 영업연도말의 1월내에서만 의사표시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결의한 때로부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결의를 안 때로부터 시작한다. 결의를 안 시기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입증책임을 진다. 해지의 경우 정관변경은 조합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효력이 없다.
- (3) 제16조 2항 2호와 3호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2년 이상의 해지기간이 정해진 때에만 1항과 2항이 적용된다; 2년의 해지기간인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시기에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행해질 수 있다.

제 67 조 b

- (1) 정관 또는 협동조합과의 약정에 의해서 복수의 영업지분참가가 의무 지워져 있지 아니하거나, 복수의 영업지분참가가 조합원에 의해서 청구되는 협동조합급부의 요건이 아닌 한, 복수의 영업지분을 가지고 참가하는 조합원은, 영업연도말에 서면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영업지분 가운데 하나 또는 복수의 영업지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
- (2) 제65조 2항 내지 4항이 준용된다. 남아있는 영업지분의 數 및, 아직 남아있는 영업지분으로 조합원이 참가하게 되는 시기가 조합원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 68 조

- (1) 조합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부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조합의 구성원이 되면 조합의 영업연도 결산시에 제명될 수 있다. 대부조합과 신용조합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제명될 수 있다.
- (2) 정관에서 제명의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할 수 있다.

- (3) 이러한 조합원이 제명이 되면 그 결정은 즉시 이사회가 보통의 등기우편으로 그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이 발송의 시점부터 조합원은 더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구성원도 아니다.

제 69 조

- (1) 이사회는 영업연도 종료 최소한 6주전에 영업연도 종료시 행해질 조합원 또는 채권자의 해지를 조합원의 명부를 제출한 법원(제10조)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는 동시에 해지가 적시에 행해졌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한다. 채권자의 해지는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증서와 압류결과와 전부결정의 공증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2) 동시에 이사회는 제67조의 경우에 조합원의 진술서면 또는 등본이나 제명의 경우에 결정등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은 제1항에 규정된 시점까지 해야하며, 만약 진술 또는 결정이 늦게 행해지면 즉시 효력이 있다.
- (3) 제67조 a의 경우에 조합원의 해지는 그것이 영업연도의 최종 6주 동안에 행해지면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70 조

- (1) 조합원의 제명을 근거지우는 사실과 문서상에 나타난 연말결산은 즉시 명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 (2) 등기에 따라서 명부에 기재된 연말결산과 함께 조합원을 제명하고, 만약 등기가 후반기 영업연도가 경과하여 비로서 이루어졌다면 후자의 종료시 조합에서 제명된다.

제 71 조

- (1) 조합원의 고소, 제66조의 경우 채권자의 고소시 법원은 제명사유가

되는 사실관계, 그리고 연말결산을 요구할 수 있고 지체없이 명부에
가등기해야 한다.

- (2) 이사회는 청구를 공증된 형태로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에 대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것은 가등기의 승인 또는 판결의
제출시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의 날로서 탈퇴 또는 제명은
등기된다.

제 72 조

- (1) 등기 및 가등기 또는 그의 거절을 법원은 이사회와 조합원, 제66조
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합원은 통지를 거절할 수
없다.
- (2) 등기 또는 가등기의 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법원이 보관한다.

제 73 조

- (1) 조합에서 제명된자의 재산분할은 재산상태와 제명시의 조합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 (2) 재산분할은 대차대조표의 근거에 따라 행해진다. 조합원의 조합채권은
제명후 6월 이내에 변제되어야 한다; 그는 제3항을 제외하고는 조합
의 적립금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적립금을 포
함한 자산과 모든 조합채권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족하다면, 만약
제명자가 파산의 경우에 조합에 추가출자를 급부해야 한다면 그는 부
족액에서 그에게 해당되는 지분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지분은 정
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 (3) 정관은 그의 조합지분을 완전히 출자한 조합원에게 제명의 경우에 연
말혹자의 목적을 위해 형성된 혹자적립금에 대한 지분의 지급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정관은 청구를 조합원의 구성원성의 최소기간과 연관
시키거나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청구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2항 제2문 전단은 청구의 지급에 적용한다.

제 74 조

제명조합원의 조합채권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과 제73조 제3항에 따른 후자적립금에 대한 지분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 75 조

조합이 6월 이내에 조합원의 제명에 대해 취소하면 제명은 행해지지 않은 효과가 있다. 조합의 계속이 결정되면 제명은 영업연도 종료에 행해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조합의 계속에 대한 결정은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 76 조

- (1) 조합원은 영업연도 경과후 어느 때고 그의 조합채권을 보통의 서면합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분할없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취득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한 또는 취득자가 이미 조합원인 한에 있어 그에게 서면으로 양도한 총액과 관련한 그의 지급까지의 채권은 조합지분을 넘을 수 없다. 정관은 그러한 양도를 배제하거나 또다른 조건을 댈 수 있다.
- (2) 이사회는 그 합의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하고, 취득자가 이미 조합원인 경우에도 서면으로 양도한 금액에 대한 그의 지금까지의 채권이 조합지분을 넘지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서면상의 보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 (3) 양도는 양도조합원과 같이 명부에 즉시 등기되어야 한다. 탈퇴의 시점은 양도의 시점으로 한다. 취득자가 아직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양도는 그 뒤에 양도등기가 행해져야 한다. 제15조, 제71조, 제7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4) 조합이 6월이내에 조합원의 제명을 취소하고, 파산절차의 개시의 경

우에 추가출자를 한다면, 그는 취득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 (5) 정관에 의해 조합원이 다수의 조합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이 규정은 양도인의 조합채권의 합산에 의해 취득자의 조합채권이 그것으로 취득자가 참여하게 되거나 참여하는 조합지분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있어 조합조합채권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비율에 따라 적용된다.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의 서면상의 보증은 양도인의 조합채권의 합산에 따른 취득자의 조합채권이 취득자의 조합지분의 총액을 넘지않는다는 것을 향하고 있다.

제 77 조

-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구성원성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구성원성은 영업연도 종료로 끝나고, 그에 따라 상속개시가 발생한다. 다수의 상속인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 (2) 정관은 조합원의 사망의 경우에 조합에 있어 구성원성을 그의 상속인을 통해 계속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정관은 구성원성의 계속을 승계인의 인적요건과 연관시킬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이 다수의 상속인을 통하는 경우에 만약 조합원성이 정관에 따른 유예기간내에 공동상속인내에서 한사람에게 양도되지 못하면 조합원성이 종료됨을 결정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조합원의 사망의 통지를 법원(제10조)의 조합원명부에 지체없이 기재해야 한다.
- (4) 상속인의 구성원성의 종료는 제70조 제1항, 제71조 내지 제75조를 준용한다. 1인 또는 다수의 상속인을 통한 구성원성의 계속은 조합원명부에 기입을 위한 이사회 의 통지에 기초한다. 제15조 제4항, 제71조, 제72조, 제76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제 77 조 a

만약 법인 이나 상사회사가 해산 또는 소멸하면, 영업연도 종료와 함께 구성원성이 끝나고, 그 해산 또는 소멸은 유효하게 된다. 포괄승계의 경우에 구성원성은 영업연도 종료시까지 포괄승계자를 통해 계속된다.

제 6 장 조합의 해산과 무효**제 78 조**

- (1) 조합은 총회의 결정으로 언제나 해산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발행의결권의 최소 3/4 이상을 포함한 다수로 해야한다. 정관은 이 다수 이외에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2) 해산은 이사회를 통해 지체없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통지되어야 한다.

제 78 조 a, 제 78 조 b 삭 제**제 79 조**

- (1) 정관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정해진 기간의 경과에 의해 해산은 당연히 발생한다.
- (2) 제78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 79 조 a

- (1) 만약 조합이 총회의 결정이나 기간의 경과에 의해 해산되고, 채무의 변제후에 남은 조합의 재산이 조합원에게 분배없이 시작하는 한, 총회는 조합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발행의결권의 최소한 3/4을 포함한 다수로 해야한다. 만약 제87조 a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환급받으면 계속은 결정될 수 없다.

- (2) 결정전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der Revidionsverband)는 조합의 계속이 조합원의 이익에 일치하는지 등을 청문해야 한다.
- (3) 상급단체의 의견은 모두 조합의 계속에 대해 협의한 총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상급단체에 기회가 주어지면 총회에서 의견이 주장될 수 있다.
- (4) 상급단체의 의견에 따라 조합의 계속이 조합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정에는 정관에서의 가중에 관계없이 최소한 한달의 간격으로 2번의 연속총회에서 조합원의 3/4의 다수가 필요하다.
- (5) 조합의 계속은 이사회에서 지체없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시 총회의 결정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채무의 변제후 남은 조합의 재산이 조합원에게 분배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제 80 조

- (1) 조합원의 수가 7명보다 적으면, 법원(제10조)은 이사회의 신청에 따라 만약 6월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이사회의 청문후에 직권으로 조합의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
- (2) 결정은 조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합에게 즉시 항고가 발생한다. 해산은 결정의 확정력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제 81 조

- (1) 만약 조합 자신이 위법한 행위와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고, 이것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조합이 본 법에서(제1조) 규정한 조합목적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없이 해산될 수 있다.
- (2) 관청의 절차와 관할은 다툼있는 행정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1심결정 관청은 해산에 대해 법원(제10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 82 조

- (1) 조합의 해산은 지체없이 법원의 협동조합등기부에登記되어야 한다.
- (2) 해산은 청산인에 의해 조합의 공고를 위해 정해진 간행물에 공고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고를 통해 채권자는 조합에 신고할 것을 요구받는다.

제 83 조

- (1) 청산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거나 총회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수행한다.
- (2) 법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
- (3) 감사회 또는 조합원의 최소한 10분의 1의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청산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 (4) 청산인의 해임은 법원에 의해 선임과 같은 요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되지 않은 청산인은 기간의 경과전에 그를 선임했던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 84 조

- (1) 최초의 청산인 및 그 대표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청산인의 개인적인 변경과 그들의 대표권한의 변경은 청산인이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선임 또는 해임과 대표권한에 대한 서류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2)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3) 청산인은 그의 서명을 공적으로 확인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 85 조

- (1) 청산인들은 선임시 정해진 형식으로 그들의 의사표사를 통지하고 조

- 합을 위해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와 서명은 모든 청산인이 해야 한다.
- (2) 이 결정은 청산인의 선임과 함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되어야 한다.
- (3) 서명은 종래의 청산인의 서명에 이제부터 그의 서명에 청산회사라는 회사서명을 추가하는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86 조

제3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제29조는 청산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87 조

- (1) 청산의 종료시까지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과 조합원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본 장의 규정과 청산인에 대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조합이 해산시까지 보유했던 재판적은 재산분할이 집행될 때까지 남아있다.

제 87 조 a

- (1) 청산개시대차대조표, 후반기대차대조표, 중간대차대조표의 제출시 또는 의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때, 만기가 되고 아직 납입되지않은 분담금을 고려한 재산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면, 총회에서 아직 자신의 조합지분을 안전히 납입하지 않은 조합원은 부족액의 충당에 필요로 하는 한 조합지분상의 추가출자의무가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정은 정관의 다른 규정에 반하지 못한다.
- (2) 조합지분의 추가출자가 부족액을 충당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면, 총회는 조합원이 그들의 조합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족액을 충당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추가출자를 해야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이 파산

재단에 대한 추가출자를 할 필요가 없는 조합에 있어서도 정관에서 추가출자를 정하고 있으면 유효하다. 조합원은 요구받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추가출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그의 조합지분의 총액에 상당한다. 제1항 제2문이 준용된다. 조합지분과 조합지분총액의 관계에 대한 확인시, 조합원이 의무참가에 대한 정관의 규정에 반해서 아직 인수하지 않은 조합지분도 그의 조합지분으로 취급한다.

- (3) 결정은 발행의결권의 최소한 3/4를 포함하는 다수로 해야 한다. 정관은 가증할 수 있고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4) 추가출자의무를 고려한 재산이 채무를 충당할 수 없다면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제 87 조 b

조합의 해산후에는 조합지분도 채임재산도 증가시킬 수 없다.

제 88 조

청산인은 현재의 사무를 종결시켜야 하고, 해산한 조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조합의 채권을 회수하고 조합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들은 재판상 그리고 재판외에서 조합을 대표한다. 청산인은 미결된 사무를 종료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무도 시작할 수 있다.

제 88 조 a

- (1) 청산인은 조합지분(제7조 제1호)의 미납입에 대한 조합의 청구권과 할당된 부족액(제73조 제2항)에 대한 청구권을 감독단체(Prüfungsverband)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다.
- (2) 감독단체는 조합중앙금고에 대한 청구권과 감독단체를 통해 계속적인 감독하에 있는 기관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는 조합원의 보호받아야 할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면 동의해야 한다.

제 89 조

청산인은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1문, 제34조, 제44조에서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51조, 제57조에서 제59조에 따른 이사회 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감사회의 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청산이 개시될 때 즉시 갖게되며 따라서 매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의 대차대조표는 공고되어야 한다; 공고는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제 90 조

- (1) 조합원사이의 재산의 분배는 채무의 변제 또는 충당 전에 그리고 본 법에서 정한 간행물(제82조 제2항)에 채권자의 최고를 요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 (2) 알고 있는 채권자가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액은 만약 공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채권자를 위해 공탁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재산의 분배는 채권자에게 담보가 제공되는 한 실시될 수 있다.
- (3) 삭 제

제 91 조

- (1) 개별 조합원사이의 재산의 분배는 최초의 청산대차대조표(89조)상의 근거에 따른 조시된 조합자산 총액에서 후반기 청산대차대조표의 비율에 따라 행해진다. 조합원이 제87조 a 제2항에 의해 출자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 환급받을 총액의 비율에 따라 먼저 이 출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조합재산의 조사시 마지막 연말결산(제33조)과 최초의 청산대차대조표 사이에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의 분배는 마지막 연말결산시에 급부된 것으로 한다. 이 시기에 발생한 이익은 이것으로 조합지분이 초과되면 자산으로도 돌려진다.

- (2) 이 자산의 총액을 넘어서 발생하는 잉여는 인원수에 따라 분배된다.
- (3) 정관에서 재산의 분배를 배제할 수 있고 분배에 대해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 92 조

조합의 해산시 분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순자산(제91조 제3항)은 정관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정해진 사용목적으로 위탁되지 않는 한 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간다. 이 자금의 이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93 조

청산이 종료된 후 해산한 조합의 장부와 서류는 10년동안 구조합원 또는 제3가 보존해야 한다.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를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10조)이 정한다. 법원은 조합원과 그 권리승계인 및 조합의 채권자에게 그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3 조 a

- (1) 동일한 책임종류의 조합들은 청산을 배제하고 한 조합(양도조합)의 재산을 전체로써 다른 조합(양수조합)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병될 수 있다.
- (2) 합병은 양도조합이 해산하고 조합원사이에 재산분배가 아직 행해지지 않을 때에만 허용된다.

제 93 조 b

- (1) 합병은 각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발행의결권의 최소한 3/4를 포함한 다수로 해야 한다.
- (2) 총회의 결정전에 감독단체는 합병이 조합원과 조합채권자의 이해와

일치하는 가를 청문해야 한다. 감독단체의 의견은 합병을 논의하는 각 총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감독단체는 의견을 진술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 93 조 c

합병계약에는 문서형태가 필요하며 그것으로 족하다.

제 93 조 d

- (1) 각 조합의 이사회는 그의 조합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해야 한다.
- (2) 통지는 원본 또는 공증받은 사본의 합병계약, 감독단체의 의견, 합병 결정 및 합병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 (3) 양도조합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대한 통지는 여기에 통지전 최고 6월 사이에 일정한 시점에서 작성된 양도조합의 대차대조표(결산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 연말결산대차대조표에 적용되는 규정이 이 대차대조표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공고할 필요는 없다.

제 93 조 e

- (1) 양도조합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을 등기하면 채무를 포함한 이 조합의 재산은 양수조합에게 이전한다. 합병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또는 다른 공적등기가 틀리게 되면 양수조합 이사회의 신청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재산이전의 증명은 합병에 대해 양도조합의 소재지의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으로 족하다.
- (2) 양도조합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을 등기할 때 조합은 소멸한다. 다른 특별한 소멸이 필요없다.
- (3) 합병계약의 체결시 문서형태로 보증하지 않거나 감독단체가 청문하지 않았다면, 이 하자는 등기로써 치유된다.

- (4) 양도조합 소재지의 법원은 직권으로 그들이 보관하는 증서와 서류를 합병등기후에 양수조합 소재지의 법원에 보관을 위해 보내야 한다.

제 93 조 f

양도조합의 채권자는 만약 그들이 양도조합의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의 등기 공고후 6월이내에 양수조합에 채무보증의 목적을 신고하면 채무는 보증되고, 이 경우에 그들은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공고시 그러한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93 조 g

양도조합의 결산대차대조표에 정해진 가액은 상법 제253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구입비용으로써 양수조합의 연말결산대차대조표에 적용된다.

제 93 조 h

- (1) 양도조합의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등기와 함께 조합의 조합원 들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양수조합의 구성원성을 취득한다.
- (2) 양도조합의 조합원은 최소한의 조합지분으로 양수조합에 참가한다. 양수조합의 정관에서 다수의 조합지분으로 참가를 허용하거나 조합원에게 다수의 조합지분의 인수를 의무지운다면, 양도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그 만큼의 다수 조합지분으로 양수조합에 참여하여야 하고 양도조합에 대한 그의 조합채권의 계산만큼 완전히 출자한 것으로 본다; 추가조합지분의 인수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
- (3) 조합원의 양도조합에 대한 조합채권이 조합지분의 총액을 초과한 것으로 그가 양수조합에 참여하면, 초과액은 공고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지급은 제93조 f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가 변제 또는 보증받기 전에는 행해질 수 없다.
- (4) 조합원이 양도조합에 대해 가지는 조합채권의 확정을 위해 결산대차

대조표가 표준이 된다.

제 93 조 i

- (1) 양수조합의 이사회는 양도조합의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을 등기한후에 즉시 양도조합의 조합원을 양수조합 조합원명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해야 한다.
- (2) 법원은 이사회와 조합원에게 즉시 등기를 통지해야 한다. 조합원은 통지를 포기할 수 없다.
- (3) 양수조합의 이사회는 양도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늦어도 법원의 통지 이후 3월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양도조합에 있어서의 조합채권의 총액;
 2. 제97조 h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양수조합에 참여하는 양수조합의 조합지분의 총액과 조합지분의 수;
 3. 조합채권의 계산후에 조합원이 아직 납입할 총액 또는 제93조 h 제3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환급해야할 총액;
 4. 제한적인 책임의무를 가진 조합에 있어 양수조합의 책임액의 총액.
조합원은 통지(보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제 93 조 k

- (1) 합병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성은 다음의 경우 해지될 수 있다.
 1.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합병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의사록에 표시한 경우;
 2.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도 총회에 부당하게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총회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거나 의결의 목적이 정당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해지는 문서상의 의사표시로 양수조합에 대해 하면 된다.
- (2) 대표자회의가 합병을 결정했다면 모든 조합원은 해지할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해서는 제 1항이 적용된다.

- (3) 해지는 이사회(제93조 i 제3항)가 도달한 후 1달 이내에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한 통지(제93조 i 제2항)의 발송이후 최고 6월 이내에 할 수있다.

제 93 조 l

- (1) 이사회는 조합원의 해지를 조합원명부에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해지문서와 해지가 정해진 시간에 행해졌다 는 이사회(제93조 i 제3항)의 문서상의 보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2) 해지가 등기되면 양도조합의 조합원의 구성원성이 양수조합에게 취득 되지 못한다. 조합원 명부에 등기될 때 이것은 표시되어야 한다. 제71 조가 적용된다.

제 93 조 m

- (1) 양수조합은 해지한 조합원과 분할해야 한다. 기준은 양도조합의 결산대차대조표이다. 해지한 조합원은 그의 조합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합병시 양도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권을 계산되는 것으로 했다면, 그는 양도조합의 적립금과 다른 재산에 대해 제73조 제3항을 제외한 어떠한 몫도 가지지 못한다. 청구은 해지후 6월 이내에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변제는 제93조 f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가 변제 또는 보증받기 전 그리고 공고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해질 수 없다.
- (2) 조합채권과 결산대차대조표에 명시된 적립금이 이 대차대조표상에 명시된 손해의 보전에 충분하지 않다면, 해지한 조합원은 만약 그가 파산의 경우에 양도조합에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 한도에서 할당된 부족액을 양수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양도조합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할당된 부족액은 양도조합의 조합원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 (3)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완성된다. 이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만기가 되는 해의 말에 시작한다.

제 93 조 n

- (1) 양도조합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은 이 조합의 조합원과 채무자에 대해 그들이 합병에서 입은 손해를 연대책무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합의 재산상태의 조사와 합병계약 체결시에 그의 주의의무를 다한 구성원은 배상의무에서 면제된다.
- (2) 배상청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조합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 (3) 이 배상청구권은 양도조합 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등기이후 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

제 93 조 o

제34조, 제41조에 따라 합병에 근거하여 양수조합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조합의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등기후 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

제 93 조 p

- (1) 양도조합에 대해 민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계약의 취소와 취소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권의 주장은 계속 유효하다.
- (2) 양도조합은 총회에서 발행의결권의 최소한 3/4을 포함한 다수가 결의할 때에만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3 조 q

양도조합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의 등기후에 이 조합의 합병결정의 취소는 양수조합에 대해서 해야한다.

제 93 조 r

- (1) 양수조합의 책임액이 양도조합의 것보다 적고, 제93조 f에 따라 신고

한 채권자가 그들의 변제 또는 보증의 요구에 반해 아직 조합원의 추가출자를 얻지 못했다면, 이 채권자의 변제를 위해 양도조합의 구성원이었던 조합원은 양도조합의 최고책임액에 이를 때까지 추가출자를 급부해야 한다. 이 추가출자의 납입에는 제105조에서 제115조 a가 적용된다.

- (2) 제1항은 양도조합의 소재지 협동조합등기부에 합병등기후 16개월 이내에 파산절차가 개시될 때에만 적용된다.

제 93 조 s

- (1) 동일한 책임종류의 조합은 청산을 배제시키고 한조합(양도조합)의 재산을 전체로서 다른 조합(양수조합)에 이전시킴으로서 새로운 조합의 신설을 통해 합병할 수 있다(신설합병).
- (2) 합병하는 조합에 의한 새로운 조합의 설립을 위해 제1장의 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1. 신설조합의 정관은 합병하는 조합의 이사회에 모든 구성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2. 합병하는 조합들의 이사회들이 신설조합의 최초 감사회를 구성한다. 신설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에서 선거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이사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최초 이사회의 구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신설조합의 정관 및 최초 이사회와 최초 감사회의 구성은 합병하는 조합의 총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만 최초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합병하는 조합의 이사회에 의해 구성될 때만 그렇다.
- (3) 합병하는 조합들의 이사회는 신설조합을 소재하려고 하는 지역의 법원에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를 위해 통지해야 한다. 신설조합의 등기와 함께 합병하는 조합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신설조합에게 이전한다. 합병하는 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 다른 특별한 소멸은 필요 없다. 합병하는 조합의 조합원들은 등기와 함께 신설조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구성원성을 취득한다. 신설합병의 그 밖의 것에 대해 제93조a 제2항, 제93조 b 에서 제93조d, 제93조e 제1항 제2문과 제3문, 제3항과 제4항, 제93조f 와 제93조g, 제93조h 제2항에서 제4항, 제93조i 에서 제93조n 그리고 제93조p 에서 제93조r이 적용된다.

제 94 조

정관에 중요한 규정이 빠져 있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라면 모든 조합원과 이사회와 감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조합의 무효를 소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제 95 조

- (1) 제94조의 의미상 중요한 것은 제6조, 제7조,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결정의 증명과 의장 및 연말결산의 제출과 검사에 대한 원칙에 대한 예외와 관련된 정관의 규정에 적용된다.
- (2) 정관의 중요한 규정과 관련된 하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응하는 총회의 결정으로 치유된다.
- (3) 만약 소집의 형식에 대한 규정에 하자가 있다면 총회의 소집은 조합소재지의 협동조합등기부에서 등기의 공고를 위해 정한 공개적인 간행물에 공고하는 것으로 행한다.
- (4) 파산재단에 대해 금부해야 하는 추가출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액이 제한되는 조합에 있어, 책임액에 대한 규정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치유에 대해 정한 규정으로서 개별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액의 총액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제 96 조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절차와 판결의 효력은 제51조 제3항에서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97 조

- (1) 조합의 무효가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면 그 관계의 종료목적에 있어 소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 (2) 협동조합의 명의로 제3자와 계획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에 있어 그는 다음 장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위해 요구하는 총액을 급부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파산절차와 조합원의 책임의무

제 98 조

- (1) 조합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는 다음의 경우 행해진다.
 1. 지급불능인 경우;
 2.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책임액까지 급부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재산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고(채무초과) 채무초과가 전조합원의 책임액의 총액의 1/4을 넘는 경우;
 3. 조합원이 어떠한 추가출자도 하지 않는 조합과 소멸조합에 있어서는 채무초과의 경우;
- (2) 조합의 소멸에 따라 절차의 개시는 재산의 분배가 행해지지 않은만큼 연장되는 것이 허용된다.

제 99 조

- (1) 조합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이사회 또는 소멸하는 조합에서는 청산인이 즉시 채무지급불능 등기후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절차의 개시 또는 법원에 의한 화해절차의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연말결산 또는 중

간결산의 작성시 또는 의무적인 평가에서 발생한 채무초과는 조합의 파산원인에 대한 제98조가 적용된다. 이사회가 조합의 통상적이고 성실한 업무관리자의 주의로서 법원의 화해절차의 개시를 행한다면 신청은 귀책성없이 행한 것이다.

- (2) 조합의 파산원인에 대한 제9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지급불능이 되거나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이사회는 더 이상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이 시점 이후에 조합의 통상적이고 성실한 업무관리자의 주의로서 협정한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0 조

- (1) 절차의 개시신청은 파산채권자를 제외하고 이사회와 모든 구성원이 할 수 있다.
- (2) 신청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근거가 되는 사실(제98조)을 확신하는 누구에게도 신청이 허용된다. 법원은 파산법 제105조 제2항,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청문해야 한다.
- (3) 개시신청은 절차의 비용에 상응하는 파산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는다.

제 101 조

조합은 파산절차의 개시를 통해 소멸한다.

제 102 조

파산절차의 개시는 즉시 협동조합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등기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 103 조

절차의 개시시 법원에 의해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채권자총

회는 구성된 위원회의 유지와 다른 구성원의 선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것은 파산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4 조

총회가 지금까지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을 존속시킬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을 선임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해 즉시 소집되어야 한다. (제 44조에서 제46조)

제 105 조

- (1) 파산채권자가 최후배당(파산법 제161조)시 고려되는 그들의 채권이 파산절차의 개시 시점에 현존하는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하면, 정관에서 추가출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파산재단에 추가출자를 급부할 의무를 진다.
- (2) 추가출자는 정관에서 다른 분담관계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수에 따라 할당된다.
- (3) 개별 조합원이 급부하지 못한 분담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할당된다.
- (4) 조합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을 초과하여 급부하는 출자는 채권자의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출자로 대체된다. 제87조 a 제2항에 근거한 조합원의 출자에 대하여 제1문에서 규정된 출자의 환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5) 규정이 있으면 조합원은 추가출자에 대해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그는 채권자로서 채권의 만족을 이유로 추가출자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 (1) 파산관재인은 대차대조표를 영업소에 비치한 후에 즉시 대차재조표상에 표시된 부족액의 충당을 위해 조합원이 선불로 얼마만큼 분담해야

하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

- (2) 계산(선불계산)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명의로 표시되는 것과 그들 사이에 분배되는 분담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분담금의 최고한도는 분담금을 급부해야 하는 개별 조합원의 예견된 무자력에 의해 총액을 충당하는데 부족이 발생안되는 정도로 제한된다.
- (3) 계산은 신청시에 집행력이 있는가의 선언을 위해 파산법원에 첨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등기부가 파산법원에 없다면 정관과 조합원 명부의 공증된 사본을 신청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107 조

- (1) 법원은 계산의 확인을 위해 2주를 넘지않는 기한을 정한다. 계산은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계산에 기입된 조합원은 특히 소환되어야 한다.
- (2) 계산은 늦어도 기한의 3일전에 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영업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고와 소환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제 108 조

- (1) 기한 동안에 조합의 이사회와 감사회 및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위원회 그리고 이의가 제기되면 그밖의 관계인이 청문해야 한다.
- (2) 법원은 제기된 이의에 대해 결정하고, 요구가 있으면 계산을 정정하거나 정정을 명하고 계산이 집행력이 있는가를 선언한다. 결정은 기한내에 또는 1주를 넘지않게 설정된 기한내에 내려야 한다. 집행력이 있다고 선언된 결정과 함께 계산은 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영업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 (3) 결정에 대해서 항소가 행해지지 않는다.

제 108 조 a

- (1) 파산관재인은 조합지분(제7조 제1호)의 미납입, 할당된 부족액(제73

조 제2항) 그리고 추가출자(제106조, 제108조)에 대한 조합의 청구권을 파산법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다.

- (2) 중앙금고에 대한 청구권 또는 감독단체의 계속적인 감독아래에 놓이는 곳에서의 청구권에 대한 동의는 감독단체의 청문후에 하여야 한다.

제 109 조

- (1) 계산이 집행력이 있다고 선언된 후에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조합원의 분담금을 걷어야 한다.
- (2)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결정의 원본과 계산 사본에 근거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해진다.
- (3) 민사소송법 제731조, 제767조, 제768조의 경우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파산절차가 계류중인 지방법원지원(Amtsgericht)이 담당하고, 만약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방법원(Landgericht)의 배타적인 관할에 속하는 소송물은 그 지역의 파산법원(Konkursgericht)의 관할에 속한다.

제 110 조

납입된 금액은 채권자총회에서 정한 장소(파산법 제132조)에 보관해야 한다.

제 111 조

- (1) 모든 조합원은 집행력이 있다고 선언된 계산에 대해 소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소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한다. 소는 결정 이후 6월의 확정기간 이내에 소제기자가 기간(제107조)에 이의 원인을 주장하거나 그의 책임없이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에만 행해질 수 있다.
- (2) 판결의 기판력은 모든 분담의무가 있는 조합원에게 미친다.

제 112 조

- (1) 소는 계산에 대해 집행력이 있음을 선언한 지방법원지원에서 전적으로 수행한다. 구두심리는 명시된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행해지지 않는다. 다수의 이의소송은 하나의 심리와 결정으로 병합된다.
- (2) 소송의 소송물이 지방법원지원의 물적관할에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에서 중요사항의 심리전에 신청하면, 그 지역 관할의 지방법원에 모든 소송사항을 결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행해진다. 확정기간은 결정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 (3)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 소송사항은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된다. 절차에서 지방법원지원 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하나의 심급비용으로 된다.
- (4) 강제집행의 중지와 강제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769조, 제7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12 조 a

- (1) 파산관재인은 조합원이 급부해야 하는 추가출자에 대하여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로 화의를 맺을 수 있다. 화의는 그 효력에 파산법원의 확인을 요한다.
- (2) 화의는 조합원이 그의 이행을 지체하면 무효로 된다.

제 113 조

- (1) 분담금을 급부해야 할 개별조합원의 무자력에 의해 총당할 총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이의소에 대해 내려진 판결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계산이 변경되면 파산관재인은 추가계산을 작성해야 한다. 제106조부터 제112조 a 까지의 규정이 추가계산에 적용된다.
- (2) 추가계산의 작성은 필요한 경우 반복할 수 있다.

제 114 조

- (1) 채무분담(파산법 제161조)의 실행이 시작되면 파산관재인은 납입금의 분배후에 어느 정도의 부족액이 남는지 그리고 그가 이미 급부된 추가출자로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수 있는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법원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 (2)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이 남아있고 조합원에게 또다른 추가출자를 요구하려면 파산관재인은 앞서의 계산에 보충과 정정을 하고 조합원이 제105조에 따라 얼마만큼의 추가출자를 급부해야하는 가를 계산해야 한다.(추가출자계산)
- (3) 추가출자계산은 제106조부터 제109조,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을 기초로하여 작성하고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의 기준에 따라 무자력으로 분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할당되어서는 안된다.

제 115 조

- (1) 관재인은 추가출자계산이 집행력이 있음이 선언된 뒤에 지체없이 제 110조에 따라 현존하는 잔고와 납입된 분담금으로 충분한 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추가분배(파산법 제166조)의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추가출자계산이 필요없게 되면, 관재인은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법원의 사무소에 비치한 후에 지체없이 분배를 실행해야 한다.
- (2) 파산법 제168조에 규정한 청구의 몫을 제외하고 채권조사기간에 이사회에 명시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청구의 몫은 유보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이의를 소에 의해 제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맡겨져있다. 이의가 근거가 있다고 선언되어 법률상 유효하게 되면 그의 몫은 나머지 채권자에게 자유롭게 분배된다.
- (3)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변제에 필요하지 않은 잔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 115 조 a

- (1) 예측가능한 오래전에 청산이 요구되었던 파산에 있어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 및 채권자대표자의 동의로 관련된 총액(제110조)을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점 이전에 이미 파산법 제149조 부터 제160조 규정에 따라 분할변제의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산에 대한 채무의 비율에 따라 관련된 총액의 반환이 조합원(제105조 제4항, 제115조 제3항)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이 받아들여질 때에만 그렇다.
- (2) 그렇지만 채권자의 변제 후에 파산재단에 잉여가 발생하면 과도하게 계산된 총액은 잉여로써 조합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제 115 조 b

제105조 제1항에 명시된 채권자가 조합원의 추가출자의 납입을 통해서도 변제 또는 보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되자마자, 여기에 필요한 분담금은 파산절차 개시전 18개월 이내에 탈퇴하여 제75조 또는 제76조 제4항에 따라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에 의해 제105조의 기준에 따라 파산재단에 급부되어야 한다.

제 115 조 c

- (1)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탈퇴자의 분담의무에 대한 계산을 작성해야 한다.
- (2) 계산에는 분담금의 급부에 대한 개별적인 무자력이 예견되지 않는 한 거명되어 표시되고 그에게 분담금이 할당되어야 한다.
- (3) 그 밖의 것은 제106조 제3항, 제107조에서 제109조, 제111조에서 제113조 그리고 제115조가 준용된다.

제 115 조 d

- (1) 제115조 b, 제115조 c의 규정으로써 조합에 남아있는 조합원의 추가출자의 납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제105조 제1항에 명시된 전체 채권자의 변제 또는 보증이 실현되자마자, 탈퇴자의 추가출자에 의해 납입된 분담금은 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제 115 조 e

- (1) 강제화해(파산법 제173조)의 체결은 일반채권조사기간이 집행되자마자 그리고 추가출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에 있어 허용된다.
- (2) 강제화해에 대한 파산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1. 강제화해의 체결전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는 강제화해가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청문해야 한다…;
 2. 강제화해의 체결을 위해서 조합구성원인 채권자와 조합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는 별도로 파산법 제182조에서 정한 다수로 의결할 것이 요구된다;
 3. 강제화해는 이사회가 불성실 또는 경솔한 조치(파산법 제187조)를 이유로 조합원의 대다수가 이사회를 알게됐을 때만 거부될 수 있다.
 4. 강제화해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수행된다; 제105조 에서 제115조 a, 제141조가 적용된다.
 5. 법률상 유효하게 선언된 강제화해에 근거하여 조합에 대해 검색의 항변의 유보없이 채무를 지고있는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3자가 채무의 선언을 공증된 형태로 법원에 대하여 또는 화해기간 중에 구두로 했을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
 6. 강제화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화해가 기한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했을 때 무효로 된다; 통지가 일부변제 또는 분할변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강제화해가 무효로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통지는 화해에서 정한 변제일 만료후 2주가 지나야 비로서

행해질 수 있다. 강제화해가 무효로 된다면 파산절차가 강제화해에 대한 고려없이 계속된다.

7.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강제화해가 실현됐다는 것을 통지했을 때 비로서 취소된다.

제 116 조

파산절차는 이사회가 신고기간 만료후에 다른 채권자는 알 수 없다는 채권을 신고한 모든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제출하고 증명하는 신청에 따라 종결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동의 또는 보증을 필요로 하는한 그들의 채권은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결정한다.

제 117 조

이사회는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에 명시된 책임으로 파산관재인을 보조할 의무를 진다.

제 118 조 삭 제

제 8 장 책임액

제 119 조

정관에서 조합원이 파산재단에 대해 급부해야 할 추가출자의 책임액을 제한하는 것을 정했다면 정관에서의 책임액이 조합지분보다 적게 정해서는 안된다.

제 120 조

책임액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항에서 제3항이 적용된다.

제 121 조

다수의 조합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책임액이 조합지분의 총액보다 적다면 책임액은 총액까지 증가된다. 정관은 또한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추가조합지분의 참여로 책임액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122 조 에서 제 145 조 삭 제**제 9 장 벌칙규정****제 146 조 삭 제****제 147 조**

- (1)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서류상의 보증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93조 1 제1항 제2문에 따라 구성원성 또는 개별적인 조합지분의 해지에 대한 것.
 2. 제15조 b 제3항 제2문에 따른 추가적인 조합지분의 참여에 대한 것.
 3. 제76조 제2항 또는 제5항 제2문에 따른 양도하는 조합채권의 최고액에 대한 것 또는
 4. 제79조 a 제5문 제2문에 따라 조합의 계속에 대한 결정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침묵한 것.
- (2)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구성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한다.
1. 구성원 이나 책임액등의 재산상황에 대한 진술 또는 개관에 있어 조합의 상태를 총회에서의 설명 또는 보고에 있어 부정확하게 발표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설명 또는 보고

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조합의 상태를 부정확하게 발표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 148 조

- (1) 이사회 의 구성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다음의 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조합자산과 준비금 총액의 반으로 충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제33조 제3항에 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제99조 제1항에 반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또는 법원에 의한 화해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경우.
- (2) 행위자가 과실로 그렇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149 조 삭 제

제 150 조

- (1) 검사인 또는 검사인의 보조자로서 검사 결과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에서 중요한 사정을 은폐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행위자가 댓가를 받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타인을 해할려는 의도로써 그렇게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151 조

- (1) 조합의 비밀, 즉 영업비밀 또는 거래비밀을 다음의 자격으로 알게된 자가 권한없이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구성원 또는 청산인
 2. 검사인 또는 그의 보조자
- (2) 행위자가 댓가를 받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타인을 해할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비밀, 즉 영업비밀 또는 거래비밀을 제1항의 요건하에서 알게된 자가 권한없이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 이 행위는 조합의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 이사회회의 구성원 또는 청산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감사회가, 감사회의 구성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사회 또는 청산인들이 고소권한을 갖는다.

제 152 조

- (1) 다음의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한다.
1. 그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의 투표시 또는 대표자의 선출시 투표하지 않거나 정해진 의미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자.
 2. 누구든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의 투표시 또는 대표자의 선출시 투표하지 않거나 정해진 의미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보증한 자.
- (2) 이러한 질서위반은 2만 DM 이하의 과태료로써 처벌된다.

제 153 조 와 제 154 조 삭 제

제 10 장 종결규정

제 155 조 삭 제

제 156 조

- (1) 상법 제8조 a, 제9조의 규정은 협동조합등기부에 적용된다. 법원에

의한 등기의 공고는 제12조, 제16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3문, 제42조 제1항 제3문, 제51조 제5항 및 제22조 제1항, 제22조 a 제1항, 제82조 제1항, 제97조의 경우와 조합의 소멸과 변경 그리고 연방공보를 토해서만 행해진다. 법원은 이사회의 신청에 따라 연방공보외에 공고를 위해 다른 간행물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동안에 공고를 행할 간행물을 표시해야 한다. 협동조합등기부가 다수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행해지고 간행물의 표시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위심급의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 지방법원의 상사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민사부에서 결정한다.

- (2) 본점과 지점의 협동조합등기부에 행한 등기는 본점의 법원에서 공고한다. 지점의 법원에서의 공고는 이사회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 (3) 다른 것이 결정되지 않는 한, 등기는 완전한 내용 후에 공고된다.
- (4) 공고는 연방공보 또는 제1항 제3문의 경우에 공고를 실은 간행물이 간행된 날의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7 조

- (1) 협동조합등기부에 대한 통지는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모든 청신인이 공증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 (2) 삭 제

제 158 조 와 제 159 조 삭 제

제 160 조

- (1) 이사회의 구성원은 법원(제10조)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로써 제14조, 제25조 a, 제28조, 제30조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 규정의 준수를 요구받는다.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은 상법 제53조와 관련된 제33조 제1항 제2문, 제42조 제1항,

본 법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51조 제4항과 제5항, 제56조 제2항, 제84조, 제85조 제2항, 제89조, 상법 제242조 제1항과 제2항, 제336조 제1항, 제339조 규정의 준수를 요구받고 또한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은 3개월 이상 감사회 또는 결의능력있는 감사회 없이 조합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된다.

- (2) 절차와 관련하여는 상업등기부에 상법에서 정한 통지의 강요가 적용되는 규정이 기준이 된다. 상법 제242조 제1항, 제2항, 제336조 제1항, 제339조의 규정의 준수의 강요에 상법 제335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이 준용된다.

제 161 조

- (1) 협동조합등기부와 통지를 위한 규정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규정은 연방의회에서 정한다.
- (2) 각 연방국가의 관청중에서 국가관청(제47조)과 상급행정관청(제63조 d)이라는 명칭으로 이해되는 관청은 연방국가의 중앙관청에 의해 공고된다.

제 162 조

1989년 12월 31일에 공익주택회사 또는 국가주택정책의 조직으로 승인된 회사로서 등기된 조합이 아닌 것은 이 시점부터 그가 속한 감독단체의 구성원으로 남는다. 이 회사는 1990년 6월 30일부터 감독단체에 대해 그의 탈퇴를 1991년 12월 31일 까지 선언할 수 있다; 감독단체의 규정에 따라 해지권이 계속 존재한다.

빈 면

사 회 통 합 부 문

빈 면

I. 철·강철, 석탄 산업체 공동결정법(MontanMitbestG)

(1951.5.21. 제정되고, 1985.12.19. 최종 개정)

제1부 개 관

제1 조

(1) 피고용자는 다음의 산업체내의 법률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와 감사회에서 이 법률의 규준에 따라 공동결정권을 지닌다:

- a) 광산청의 감독하에 있는 석탄, 갈탄, 철광석 광산과 이 원료로 콕스, 제련, 연탄제조, 건류(乾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체
- b) 1950.5.16. 제정된 점령군 최고위원회 법률 제27호에 표시된 철 및 강철 생산 산업기업체로서 법률 제27호의 의미상 단일 회사로 바꾸었거나 혹은 청산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기업
- c) 상기된 기업 혹은 점령군 최고 위원회 법률 제27호에 따라 청산 기업으로 귀속된 기업중 a)항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혹은 주업종이 철과 강철을 생산하는 기업

압연기제작용, 연철선, 파이프, 압연기, 철도 부속품, 철판, 주물등 철과 강철을 원료로 제작된 제품은 다음 기업의 경우 제1문 b)와 c)의 철과 강철 제조품으로 본다.

1. 1981.7.1.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연합된 기업
 2. 위 제1문에 해당된 기업과 함께 다른 제련회사 혹은 철과 강철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하는 제1문에 해당된 기업에 경영 전체 혹은 경영 일부분이 양도된 회사, 그리고 제1문에 해당된 기업과 채무관계가 있고(주식법 제15조) 타기업의 주업종의 합병 또는 양도 후 기재된 생산품 또는 철과 강철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제2문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2) 이 법률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지닌 독립 법인체로서 광업법에 의한 단체등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 (3) 6년간 연속하여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1천 명이상의 근로자가 채용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결정에 대한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감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콘체른 기업의(주식법 제18조 제1항) 주기업이고 이 콘체른 기업에 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기업에 대하여 제4조, 제6조,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는 주기업의 피고용자가 되며, 콘체른 기업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은 주기업에서도 대표한다. 제1문의 조건이 충족되면 주기업에 대한 제6조와 제11조의 적용을 위하여 경영위원회 대신 콘체른기업 경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제 2 조

제1조에 명시된 기업이 이 법 규정에 충돌하는 경우 주식법 규정, 유한회사에 관한 법규정, 광업법 규정, 경영조직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부 감사회(Aufsichtsrat)

제 3 조

- (1) 유한회사 혹은 독립법인으로서 제3조 광업법에 의한 단체가 제1조의 의미로 운영되면 이 법률 조처에 따라 감사회를 두어야 한다.
- (2) 감사회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주식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 (1) 감사회는 11인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 a) 4인의 주주대표와 (제3자로서) 1인의 감사(ein weiteres Mitglied)
 - b) 4인의 피고용자 대표와 (제3자로서) 1인의 감사

- c) (제3자로서) 1인의 감사
- (2) 제1항의 (제3자로서) 1인의 감사는 다음의 인사는 제외한다:
- a) 노동조합 대표자 혹은 기업연합체 대표 혹은 이 단체의 최고 경영진 그리고 상설 직무 또는 노사관리자
 - b) 선거전 최근 1년간 위 a)항에 관련된 지위에 있었던 자
 - c) 기업내의 경영진 또는 피고용자
 - d) 기업과 관련된 거래업자
- (3) 모든 감사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들은 위임과 명령할 수 없다.

제 5 조

제4조 제1항 a)에 명시된 감사는 감사의 선출에 관한 법률, 정관 혹은 회사계약에 따라 소집된 기구(선거기구, Wahlorgan)에 의하여 정관 또는 회사계약의 기준에 따라 선출된다.

제 6 조

- (1) 제4조 제1항 b)에 명시된 감사는 반드시 한 기업 경영에 근무하는 1인의 노동자와 1인의 사무직 종사자여야 한다. 이 감사들은 선거 기구에 노사의 의견을 들어 경영위원회가 추천한다. 이 추천을 위하여 경영위원회의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감사들은 각각 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선출 위원회는 비밀 투표를 통해 위원후보를 선출한다.
- (2) 제1항에 따라 피선된 감사들은 선출후 2주내에 선거위원회에 추천하기 전에 기업 경영체내에서 대표되는 노동조합이 속한 대위원회에 통보한다. 각각의 대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피추천자가 기업과 전체 국민 경제의 안녕을 책임지는 감사회에서 일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혹이 성립되면 경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가 이 이의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

또는 이의를 제기한 대위원회에서는 노동장관에게 신고한다. 이경우에는 노동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 (3) 제4조 제1항 b)에 명시된 위원중 2인은 대위원회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와 상담한 후 경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대위원회는 경영체내에서 그 대표비율에 따라 추천권이 있다. 대위원회는 추천에 있어서 종업원중 소수집단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 (4) 제4조 제1항 b)에 명시된 (제3자로서의) 1인의 감사는 제3항을 적용한다.
- (5) 기업경영의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추천자들을 일괄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이를 선거위원회에 추천한다. 한 최고위원회가 1인의 후보만을 감독위원으로 추천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에의 추천에는 경영위원회 위원의 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6) 선거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추천에 구속적이다.

제 7 조 삭 제

제 8 조

- (1) 제4조 제1항 c)에 명시된 감사는 선거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다. 추천사항은 이 감사회에 의하여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에는 그러나 제5조와 제6조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중 최소한 3명의 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 (2) 추천사항이 제1항에 의거하여 결론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추천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개위원회를 구성한다. 2명은 제5조에 의하여, 다른 2명은 제6조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로 구성된다.
- (3) 중개위원회는 1개월 내에 3인을 선거위원회에 추천하며, 선거위원회는 이 중에서 감사를 선출한다. 중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선출이 중

요한 이유, 특히 추천자중에서는 기업을 위하여 명예로운 공헌을 보장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취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에 의하여 거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의결(Beschluss)은 반드시 그 이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선출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중개위원회의 신청으로 기업을 관할하는 주고등법원이 판결한다. 거부확증의 경우 중개위원회는 다른 3인의 인사를 추천한다. 이 제2차 추천에는 위 제2문 내지 제4문이 적용된다. 법원에 의하여 선출거부가 부적당하다고 해명되면 선거위원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2차 선출 제안에서의 선출거부가 법원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해명되거나 선출 제안이 성공하지 못하면 선거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위원을 선출한다.

- (4) 제2항에 명시된 중개위원회 위원수가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중개위원회 위원이 사전에 초빙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정족수는 최소한 2명으로서 중개위원회는 활동할 수 있다.

제 9 조

- (1) 액면 자본(Nennkapital) 2억 마르크 이상인 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이나 회사계약에 의하여 감사회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가 적절히 적용되며,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준용으로 2명의 노동자는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노동자 대표 3명이 된다.
- (2) 액면 자본 5억마르크 이상의 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이나 회사계약에 의하여 감사회를 2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8조가 적절히 적용되며,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3인의 노동자는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노동자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감사회는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 결의과정에 참여하면 의결 능력을 가진다. 주식법 제108조 제2항 제4

문이 준용된다.

제 11 조

- (1) 제5조에 명시된 감사에게는 주식법 제103조가 준용된다.
- (2) 선거위원회의 제6조에 명시된 감사의 소환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며, 제3항과 제4항에 명시된 위원의 소환은 경영위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한 최고조직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 (3) 제8조에 명시된 감사의 소환은 감사 3인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주요 사유를 바탕으로 한 판결로 가능하다.

제 3 부 이사회(Vorstand)

제 12 조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의 위원의 임명(Bestellung)과 이 임명의 취소는 감사회에 의하여 주식법 제76조 제3항과 제84조의 규준에 따라 행해진다.

제 13 조

- (1) 법적대표로 소집된 기구의 위원과 동등한 지위의 노동 위원장(Arbeitsdirektor)을 위탁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은 제6조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회의 다수결에 반하여 위탁될 수 없다. 철회의 경우에도 같다.
- (2) 노동위원장은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의 기타 위원과 같이 전체기구의 긴밀한 이해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상세한 사항은 경영규정이 정한다.

제 4 부 종 결

제 14 조

- (1) 이 법률 규정은 다음 업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a) 1951.12.31. 제정된 점령군 최고 위원회 법률 제2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b) 점령군 최고 위원회 법률 제27호의 통제에서 1951.12.31. 이전에 벗어난 기업
 - c) 점령군 최고 위원회 법률 제27호에 따라 1951.12.31.까지 “단일회사”로 변경된 기업
 - d) 점령군 최고 위원회 법률 제27호의 따라 1951.12.31. 까지 “단일회사”로 변경되지 않은 기업
- (2) 삭제

제 14a 조

이 법률은 제3차 경과 법률 제13조 제1항의 조치에 따라 베를린 州에도 적용되며, 이 법률을 기초로 제정된 법령은 제3차 경과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한다.

제 15 조

연방정부는 다음의 규정을 제정한다:

- a) 이 법률 규정에 알맞는 정관과 회사계약의 적용에 관한 내용
- b) 제6조에 명시된 선거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항

Ⅱ. 철·강철, 석탄산업체 공동결정법률의 보충법률

(1956.8.7 제정, 1988.12.20 최종개정)

제 1 관 지배회사에서의 공동결정

제 1 조

주식회사, 유한 회사 혹은 광업법적 조합의 독립 법인체로서 한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의 감사회와 법률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에서의 노동자의 공동참여는 1951.5.21. 제정된 광산, 철 및 강철 생산 산업의 노동자의 공동결정 법률 규정에 따라 공동참여권을 가지며 이 법률 규정이 규칙을 정한다.

제 2 조

지배회사가 독자적으로 주요 경영 목적에 따라 이 법률 적용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배회사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광산, 철 및 강철 산업의 기업체에서의 감사회와 법률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에서의 노동자의 공동결정 법률(이하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지배회사에서 공동결정권이 계속되는 한 이 적용은 변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1)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2조에 따라 광산업 공동결정법 적용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러나 콘체른 기업의 목적이 콘체른 기업과 광산업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관련된 기업의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 지배회사에는 제5조 내지 제13조가 적용된다. 지배회사가 유한 조합 혹은 독립 광산 조합인 경우에는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2) 콘체른 기업의 목적이 광산업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콘체른 기업과 결합기업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콘체른 기업과 결합기업은 다음의 경우이다:

1. 최소한 전체 기업연합과 결합기업의 판매의 5분의 1이 달성되고 판매액에 포함된 외부 관련 원료, 보조 및 경영 원자재와 외부급부 비용을 절감하거나,
2. 원칙적으로 2,000명이상의 피고용자가 취업하는 경우
콘체른 기업과 결합기업이 자체생산품, 가공품 그리고 세공품 매각에 기인되지 않고서도 판매를 달성하면 비절감 판매의 5분의 1로 계산해야 한다.

제 4 조

- (1) 제3조에 따른 표준적 거래관계는 지배회사의 결산감사인이 감사한다. 지배회사의 결산을 법 규정의 제약으로 결산감사인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는 상법 제318조, 제3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위촉된 감사인이 감사한다.
- (2) 감사인은 매 회계년도 경과 5개월전 자신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3) 감사는 자신의 감사에서 필요하면 콘체른 기업과 결합기업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상법 제32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상법 제323조가 준용된다.
- (4) 감사회가 감사인의 확증에 반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감사인은 감사회의 요구로 이미 있는 확증을 재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5) 지배회사의 법적 대표에 의하여 소집된 기구는 확정된 거래 관계와 감사회의 최종 의견서를 즉시 콘체른 기업과 결합기업의 경영 위원회 (중합 경영위원회) 그리고 제7조에 따라 추천권이 있는 노조의 최고 조직에 통보한다(mitteilen).
- (6) 제3조 제2항 제1문 제2번이 충족되면 제1항 내지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1) 감사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즉:

- a) 독자지분 7인
- b) 피고용자 대표 7인
- c) (제3자적 지위의) 1인

5억 마르크의 회사 자본금을 가진 회사는 정관 또는 회사계약으로 감사회 위원수를 2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a)와 b)의 경우 각각 10인씩이다.

(2) 제1항 제2문 a)에 명시된 위원의 위촉은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5조를 적용한다; 위원의 소환은 주식법 제103조를 준용한다.

(3) 제1항 제2문 c)에 명시된 위원은 광산업 공동결정법(MontanMit-BestG)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의 위촉은 광산업 공동참여법 제8조를 준용하며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6조는 이 법 제6조 내지 제10h조가 대신한다. 위원의 소환은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4조 제3항이 준용된다.

(5) 이 법률에서의 피고용자라 함은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경영 조직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자는 이 법률에서의 피고용자가 아니다. 이 법의 노동자(Arbeiter)는 경영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이다. 이 법의 사무직 근로자는 경영조직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이다.

제 6 조

(1) 피고용자의 감사회 위원은 5명의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와 2명의 노조대표로 구성된다. 감사회가 21명으로 구성되면 피고용자의 감사회 위원은 7명의 콘체른 피고용자와 3명의 노조대표로 구성된다.

- (2)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는 반드시 만 18세가 이상이며, 큰체인 기업에서 1년이상 재직해야 하며 경영조직법 제8조의 피선거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제1항에 명시된 노조는 반드시 연합을 대표해야 한다.

제 7 조

- (1) 8,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큰체인 기업의 피고용자 감사회 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피고용자의 직접선거로 의결되지 아니하면 대표단에서 선출한다. 대표단을 통한 피고용자 감사회 위원 선출에는 제8조 내지 제10f조와 제10h조가 적용된다.
- (2) 8,0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큰체인 기업의 피고용자 감사는 선거권이 있는 대표단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고용자 감사회 위원의 직접선거에는 제10g조와 제10h조가 적용된다.
- (3) 대표단에서 선출할 것인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것인지는 큰체인 기업의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의 20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된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선거권을 가진 피고용자 절반이상의 투표참가와 유효투표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8 조

- (1) 제7조에 따라 피고용자 감사회 위원을 대표단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해당 큰체인 기업에서는 노동자와 사무직을 분리, 비밀 및 비례 선출 원칙에 따라 대표단을 선출한다. 산하기업과 자회사는 경영조직법 제4조와 산하기업 및 자회사 부속에 관한 단체협약관련 규칙의 경영조직법 제3조 제1항 제3조를 준용한다.
- (2) 선거권을 지닌 노동자와 사무직이 분리하여 비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는 달리 전체 선거에서 대표단을 선출한다. 제1문에 따른

결정은 선거권을 가진 집단 소속위원의 20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신청되고 반수 이상의 투표참가에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 (3)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로서 만 18세 이상인자에게 있다.
- (4) 대표단 피선 자격은 제3항에 명시된 피고용자로서 경영조직법 제8조의 피선조건을 충족한 자이다.
- (5) 선거 과정을 위하여 단일 제안만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안에 명시된 피고용자 순으로 선출된다.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 9 조

- (1) 한 기업에 피고용자 60명당 1인의 대표가 할당된다. 제1문에 따라 한 기업체내에서 대표단이 구성되면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30명의 대표단이 구성되는 경우 15명으로 하되 1인의 대표는 두개의 투표권을 지닌다.
 - 2. 90명의 대표단이 구성되는 경우 30명으로 하되 1인의 대표는 세개의 투표권을 지닌다.
 - 3. 150명의 대표단이 구성되는 경우 4분의 1로 줄이고 1인의 대표는 네개의 투표권을 지닌다.

대표단 인원수는 사사오입의 원칙으로 정수만을 계산한다.

- (2)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는 한 경영체내에서 해당 수에 적합한 비례의 대표자를 통하여 참여한다. 한 경영체내에서 최소한 9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면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1인의 대표자가 할당된다. 그러나 한 기업체내에서 5인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무직 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노동자 또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제2문에 따라 1인의 대표자가 할당되면 제1항에 따라 경영체 대표 수에는 1인이 증가한다.
- (3) 제2항에 따라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에게 최소한 1인의 대표자가 할당되지 아니하면, 이 의석은 해당 콘체른의 주영업소 피고용자에게 할

당된다. 제2항과 제1문에 따라 주영업소의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에게 최소한 1인의 대표를 할당하지 아니하면, 이 의석은 해당 콘체른의 대기업내에서 가장 큰 경영체 피고용자 대표에 할당된다.

- (4) 한 영업체에 대표자가 할당되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한다.
- (5) 노동자 혹은 사무직 종사자의 대표자가 지닌 대표성은 소속 직종의 변경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한다.

제 10 조

- (1)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는 대표자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모든 대표자 후보 제안은 한 대표자에게
 - 1. 노동자의 10분의 1 또는 100명의 선거권을 지닌 노동자가 서명해야 하며,
 - 2. 사무직 종사자의 10분의 1 또는 100명의 선거권을 지닌 근로자가 서명해야 한다.
- (2) 모든 대표자 후보 제안은 최소한 2배수의 지원자를 포함해야 하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10a 조

- (1) 대표자의 임기는 감사의 임기와 같다. 위원은 이 법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피고용자 감사회 새 선출이 준비될 때까지 수행한다.
- (2) 제7조 제1항중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다:
 - 1.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선거를 의결했을 때;
 - 2. 콘체른 기업이 더이상 제7조 제1항의 적용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가 임기를 제1항의 시점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했을 때에도 같다. 제7조 제3항이 준용된다.
- (3) 제7조 제2항에서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가 직접 선거를 의결했을 때

에는 대표자의 임기는 끝난다. 제7조 제3항이 준용된다.

- (4) 선출 후보의 모든 보충 대표자가 임명된 후 기업의 대표자 총수가 선거시점에 그 기업체에 할당된 대표자 수보다 감축되었을 때에는 제1항과는 달리 대표자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 10b 조

- (1) 다음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가 제10a조에 명시된 시점보다 조기에 종료된다.
1. 대표자의 사직
 2. 영업체내에서 대표자의 취업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3.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 (2) 한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임무수행을) 저지받았을 때에는 그 대신 보충대표가 대표권을 계승한다. 보충대표는 피선되지 아니한 선거제안 명부에 등재된 후보 순위에 따라 계승된다.

제 10c 조

- (1) 대표자들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콘체른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감사를, 법률 또는 정관(회사 약정 내에서, 지위) 내에서 선거기구를 통하여 감사회의 피선된 감사로서의 할당지분에 알맞는 기간을 위하여 비밀, 비례 선거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 (2)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중에는 콘체른 기업내에서 적절한 숫적 비율에 알맞는 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감사회에는 반드시 최소한 1인의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3) 노동자의 감사는 노동자 대표중에서, 사무직 종사자의 감사는 사무직 종사자 대표중에서 선출한다. 제1문과는 달리 노동자 대표와 사무직 종사자 대표들이 이를 분리·비밀 투표로 선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감사는 공동 선거로 선출한다. 제8조 제2항 제2문이 적용된다.

- (4) 선출은 선거 후보자중에서 이루어진다. 한 후보자는
1. 노동자 감사는 반드시 5분의 1 또는 콘체른 기업내의 100명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
 2. 사무직 종사자 감사는 반드시 5분의 1 또는 연합 기업내의 100명의 근로자가 서명해야 한다.
- (5)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 따라 감사회에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1인씩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각각 단일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해야 한다. 제2문에 따라 다수결로 진행되면 노동자 또는 사무직 종사자 감사에 할당되도록 2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어야 한다.

제 10d 조

- (1) 대표자들은 공동 선출, 비밀 및 비례 선거 원칙에 따라 제10c조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위한 제6조 제1항의 노조대표로서의 감사를 선출한다.
- (2) 선거는 콘체른 기업을 대표하는 노조의 선거 제안으로 시작된다. 단일 제안이 상정되면 제1항과는 달리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노조대표를 어떻게 감사로 선출해야 할 것인가를 위하여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 10e 조

- (1) 모든 선거 제안은 후보자와 함께 이 후보를 위한 보충감사를 추천한다. 한 후보자가 노동자일 때에는 그 보충 후보도 노동자를, 사무직 종사자일 때에는 사무직 종사자를 보충감사로 추천해야 한다. 한 후보는 동시에 보충감사로 겸하여 추천될 수 없다.
- (2) 한 후보자가 감사로 선출되면, 그의 보충 후보도 함께 보충감사로 선출된다.

제 10f 조

지배회사의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는 감사회의 감사와 보충감사의 취임을 이들의 이름과 함께 기업체내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동시에 모든 관련 콘체른 기업체내의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가 이 공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0g 조

제7조에 따라 피고용자가 감사로 직접 선거로 피선되면 만 18세이상의 연합 기업의 노동자는 선거권을 지닌다. 선거는 제10c조 내지 제10f조와 다음 규준이 적용된다.

1. 노동자 대표 대신에 콘체른 기업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
2. 사무직 종사자 대표 대신에 콘체른 기업의 선거권이 있는 사무직 종사자

제 10h 조

- (1) 한 기업의 선박 전체는 이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한다.
- (2) 이 법률에서의 선박은 船旗權法에 따라 연방국기를 게양한 商船(Kauffarteschiffe)이다. 출항 후 48시간내에 기항으로 돌아오는 선박은 육지경영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 (3)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의 피고용자는 제7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제의와 결의에 요구되는 피고용자수 산정에도 고려하지 아니한다.
- (4) 피고용자의 감사로 대표단에 의하여 선출되면, 제8조와는 달리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서는 대표자 선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10c조 제1항과는 달리 이 경영체의 피고용자는 피고용자 감사의 선출에 다음과 같은 규준과 함께 직접 참여한다.

1. 이 피고용자 1인의 투표는 한 대표의 투표의 60분의 1로 계산한다.
제9조 제1항 제3문을 적용한다.
 2. 이 피고용자는 피고용자 감사 공동선거에 관한 동의에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지 아니하며, 제의와 결의에 요구되는 노동자 대표와 사무직 종사자 대표자수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 (5) 직접 선거로 피고용자 감사가 선출되면 콘체른의 피고용자의 10분의 1은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피고용자는 피고용자 감사 공동 선거에 관한 동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의와 결의에 요구되는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수에서도 제외한다.

제 10i 조

- (1) 어떤 사람도 제8조, 제10c조, 제10d조 그리고 제10g조에 따른 선거를 방해할 수 없다. 특히 어떤 사람도 수동적·피동적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2) 어떤 사람도 선거에 명령과 협박으로 손해를 주거나 보증과 약속으로 이익을 줄 수 없다.
- (3) 선거비용은 지배회사가 부담한다. 선거권 행사와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활동에 요구되는 근무시간의 지각은 고용주에게 노동임금 감액의 구실을 주지 아니한다.

제 10k 조

- (1) 한 기업의 대표자 선출이 선거법, 피선거권 또는 선거과정에 관한 주요 규정에 충돌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면 청구에 의하여 노동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충돌의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 (2) 취소청구권자는
 1. 최소한 3인의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
 2. 경영위원

3. 기업의 법적으로 소집된 기구

취소 청구는 선거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2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i 조

(1) 피고용자의 감사와 보충감사 선거가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선거과정에 관한 주요규정에 충돌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면 노동법원에 취소청구할 수 있다. 충돌의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2) 취소 청구권자는

1. 콘체른 기업의 선거권을 지닌 노동자 3인 이상
2. 지배회사의 종합 경영위원회 혹은 지배회사에 하나의 경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경영위원 혹은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
3. 다른 한 콘체른 기업의 종합 경영위원회, 다른 콘체른 기업에 하나의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경영위원회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제안권이 있는 노조
5. 지배회사의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취소청구는 연방관보에 공시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m 조

(1) 피고용자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소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 노동자 감사 4분의 3의 선거권을 지닌 노동자
2. 사무직 종사자 감사 4분의 3의 선거권을 지닌 사무직 종사자
3.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조 대표로서의 감사 (노조가 조합원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2) 대표자들이 분리 선거(제10c조 제3항 제1문)를 통하여 선출된 감사는 자신을 추천해 준 집단의 의결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대

표자들이 공동선거(제10c조 제3항 제2문)를 통하여 선출한 감사는 대표자의 의결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의 의결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투표자수의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한 집단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감사는 이 집단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의 의결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피고용자에 의하여 공동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된 감사는 선거권을 가진 피고용자의 의결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의 의결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투표자수의 4분의 3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보충감사의 소환에도 적용된다.

제 10n 조

- (1) 제6조 제1항에 따라 큰체인 기업의 피고용자로서 감사직을 상실하면 자신의 직무는 소멸된다.
- (2) 노동자 또는 사무직 종사자로서 감사인 경우 직종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직무를 소멸당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이 법률이나 정관에 종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감사의 반수 이상이 참여하면 결정의 능력이 있다(beschlussfähig). 주식법 제108조 제2항 제4문이 준용된다.

제 12 조 삭 제

제 13 조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의 위원의 임용과 임용의 취소에는 주식법 제 76조 제3항과 제84조와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13조 제1항 제1문을 준용한

다.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4 조 삭 제

제 15 조

- (1) 광산업 공동결정법 또는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피고용자가 공동결정권을 가진 회사에 할당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관리권자의 해고, 임용, 임용의 취소 그리고 타기업의 변경, 합병, 해산, 해산 후의 계속 운영, 자산의 양도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사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대표권을 위하여 소집된 기구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의결은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5조에 따라 혹은 이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위원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의결은 법적으로 대표권을 위하여 소집된 기구에 구속적이다.
- (2) 제1항은 다른 기업에 대한 경영의 할당이 4분의 1이 되지 못할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1) 제5조 내지 제13조는 지배회사에게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광산업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제3조에 따른 할당이 6년반동안 연속적으로 콘체른 및 결합기업의 총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했거나
 2. 지금까지는 피고용자에게 한가지 공동결정권만 부여했으나 광산업 공동결정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던 이러한 기업
- (2) 제5조 내지 제13조는 지배회사이 6년반 동안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의 조건을 더이상 제시하지 못할때
 2. 광산업 공동결정법에 의하여 피고용자가 한가지 참여권만 부여 받았던 기업중 어느 기업도 지배회사가 못되는 경우

제 17 조

연방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피고용자 감사의 선거 절차와 소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진다.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선거 또는 표결 준비, 선거 참모의 임용과 선거인 명부 작성
2. 감사선거를 직접 선거로 할 것인가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할 것인가의 결정, 공동 선거를 실시할 것인가의 결정
3. 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이의에 대한 정정
4. 감사의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노조 대표의 할당
5. 대표자수의 산출과 이에 대한 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 할당
6. 후보 추천과 그 기간
7. 선거 또는 투표의 공시, 공시기간
8. 제10h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의 선거와 투표에 참여하는 피고용자
9. 투표
10. 선거 혹은 투표결과의 확정 또는 공시기간
11. 선거서류와 투표용지의 보관

제 2 관 자발적인 재판권 행사에 관한 제국법률의 개정과 적용

제 18 조

- (1)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8조 제3항 제4문의 경우 고등법원의 절차에는 자발적 재판권 행사에 관한 제국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 (2) 고등법원의 절차를 위하여 비용규정 제121조에 따라 재판 비용은 기업체가 부담한다. 비용규정(Kostenordnung)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삭 제

제 20 조 삭 제

제 21 조 경과 및 종결 규정

제 22 조 삭 제

제 23 조

이 법률은 1952.1.4. 제정된 제3차 경과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준에 따라 베를린 주에도 적용한다. 이 법률에 따라 제정된 법령은 제3차 경과 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제 23 조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Ⅲ. 피고용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

(1976.5.4. 제정)

제 1 부 적용범위

제 1 조 적용대상 기업(Erfasste Unternehmen)

- (1) 이 법률 규준에 따라 다음의 기업의 피고용자는 공동결정권을 지닌다:
1. 주식회사 법인체, 주식 합자회사, 유한회사, 광산법적 노조로서 독립 법인체 혹은 상업과 경제 동맹체
 2. 2,000명 이상의 피고용자가 고용된 회사
- (2) 이 법률은 다음의 경우 기업의 기구 조직내에서 공동결정을 위하여 피고용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51.5.21. 제정되고, 1965.9.6. 주식법 시행법률에 의하여 최종 개정된 석탄 광산, 철, 강철 생산 산업의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피고용자 공동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결정권을 가진 피고용자
 2. 1956.8.7. 제정되고 1967.4.27. 석탄, 광산, 철, 강철 산업 기업체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피고용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 보충을 위한 개정 법률로 최종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결정권이 부여된 피고용자
- (3) 회사의 감사회내에서 피고용자의 대표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1952년에 제정되고 1972.1.15. 최종 개정된 경영조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4) 이 법률은 다음 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접적이고 중대한 정치적, 연립 정치적, 종교적, 봉사적, 교육적, 학술적 혹은 예술적인 용도
 2.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되는 의사표현 혹은 서신 교환의 목적에 기여하는 기업. 이 법률은 종교단체와 이 단체의 밖에 봉사 및 교육시설과 그 법률적 지위를 침해하도록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지분소유자 (Anteilseigner)

이 법률상의 지분소유자는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기업의 법률형태에 따른 지분 소유자, 사원(Gesellschafter), 노조 또는 조합원들이다.

제 3 조 피고용자

- (1) 이 법률상의 피고용자는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이다. 경영조직법 제 5조 제2항에 명시된 자는 이 법률상의 피고용자가 아니다.
- (2) 이 법률상의 노동자는 경영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이다.
- (3) 이 법률상의 사무직 종사자들은
 1. 경영조직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피고용자로서 경영조직법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는 제외
 2. 경영조직법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

제 4 조 합자회사

- (1)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기업에서 유한 책임사원은 하나의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이며, 이 합자회사에 유한 책임사원으로서의 합자회사가 다수이면, 내적으로 주식 합자회사가 50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지닌 독자적인 경영체를 지니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률은 유한 책임사원(개인)을 주식 합자회사의 피고용자로 간주한다. 이는 또한 합자회사의 거래가 이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도 같다.
- (2) 기업은 이 합자회사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폐쇄될 수 없다.

제 5 조

- (1)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기업이 콘체른(주식법 제18조 제1항) 기업의 지배회사면, 이 법은 지배회사에 대하여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를 지배회사의 피고용자로 간주한다. 이는 또한 제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기업의 피고용자에게도 적용된다. 한 결합기업의(주식법 제

- 18조 제1항) 유한 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법률적 형태로 간주한다.
- (2) 유한 책임사원에게 이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한 책임사원의 피고용자인 콘체른 기업의 지배회사로서의 합자 회사는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에게 이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를 유한 책임사원의 피고용자로 간주한다.
- (3) 한 콘체른 기업에 다른 기업의 통합적 운영 아래에 있는 콘체른 기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기업으로서 그러나 제1항 제2문에 명시된 기업 혹은 다른 많은 기업에 대하여 콘체른 기업운업을 다른 콘체른 기업이 지배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되고 차석에 위치한 기업이 연합 운영하는 기업은, 이 기업의 운영을 타기업이 지배할 때, 이 법률은 이 기업을 지배회사로 간주한다.

제 2 부 감사회

제 1 절 결성 (Bildung) 과 구성 (Zusammensetzung)

제 6 조 원 칙

- (1) 이미 다른 법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는 감사회가 결성된다.
- (2) 감사회의 결성과 구성 및 위원의 임명과 소환은 이 법의 제7조 내지 제24조가 적용되며, 다른 법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식법 제96조 제2항, 제97조 내지 제101조 제1항과 제3항,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다음 규준과 함께 적용한다: 기업의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에 직접 속해있고 이 기구의 업무영역 전체를 위하여 대행하도록 위임한 경우 지배인(Prokurist)의 피선거권은 피고용자 감사으로 제한한다. 감사회 결성과 구성 및 위원의 위촉과 소환에 관한 정관(회사약정, 지위)의 결과, 기타 다른 법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 (3) 영업 및 경제조합은 주식법 제100조, 제101조 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제103조와 제10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용자 감사에게는 이 법 제9조 제2항의 영업 및 경제 조합 관련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사회의 구성

(1) 한 기업의 감사회는

1. 원칙적으로 1,000명미만의 피고용자 고용의 기업에서는 지분 소유자와 피고용자의 감사를 각각 6인
2. 원칙적으로 1,000명이상 2,000명미만의 피고용자 고용의 기업에서는 지분 소유자와 피고용자의 감사를 각각 8인
3. 원칙적으로 2,000명이상의 피고용자 고용의 기업에서는 지분 소유자와 피고용자의 감사는 각각 10인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기업에서는 정관(회사약정, 지위)에서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용자 감사 중에는

1. 6명으로 구성된 감사회는 4명의 피고용자와 2명의 노조대표
2. 8명으로 구성된 감사회는 6명의 피고용자와 2명의 노조대표
3. 10명으로 구성된 감사회는 7명의 피고용자와 2명의 노조대표로 구성

- (3) 제2항에 명시된 기업의 피고용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기업내에 속했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조직법 제8조의 피선거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4) 제2항에 명시된 노동조합은 반드시 기업내 혹은 다른 기업으로서 이 법률에 따라 감사 선거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표하여야 한다.

제 2 절 감사의 선임 (Bestellung)

제 1 소절 지분소유자의 감사

제 8 조

- (1) 지분 소유자의 감사는 법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감사 선출을 위한 법, 정관, 회사약정, 지위에 따라 명령된 기구(선거기구)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관, 회사약정 또는 지위의 규준에 따라 임명한다.
- (2) 주식법 제101조 제2항은 존속한다.

제 2 소절 피고용자 감사, 원칙

제 9 조

- (1) 선거권이 있는 피고용자가 직접 선거를 의결하지 아니하는 한, 8,000 명이상의 피고용자가 종사하는 기업의 피고용자 감사는(제7조 제2항) 선거위원(Wahlmänner)에 의하여 선출된다.
- (2) 선거권이 있는 피고용자가 선거인을 통한 선출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한 8,000명이하의 피고용자가 종사하는 기업의 피고용자 감사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3) 선거위원을 통하여 선출할 것인가 혹은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인가의 투표방식에 대한 선택을 위하여 기업내 종업원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투표는 비밀 투표이다. 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제 3 절 선거단을 통한 감사 선출

제 10 조 선거위원

- (1) 기업경영체에서는 노동자(제3조 제2항)와 사무직 종사자(제3조 제3항)들이 분리, 비밀 및 비례 선출 원칙에 따라 선거위원을 선출한다. 자회사와 계열사에서는 경영조직법 제4조와 경영조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련된 자회사와 계열사의 부속(Zuordnung)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2) 제1항과는 달리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분리·비밀투표로 결정했을 때에는 선거위원을 공동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의결은 종업원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가에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 (3) 선거위원 피선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자이다.
- (4) 선거위원 피선 자격은 제3항에 명시된 피고용자로서 경영조직법 제8조의 피선거권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5) 선거절차상 단일 선거제안이 제출되면 그 목록에 등재된 순서의 피고용자가 선출된다. 제1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 11 조 선거인수 산출

- (1) 경영체 단위로 선거권자 60명당 1인의 선거위원이 할당된다.
제1문에 따라 산출된 선거위원수가
 1. 30명일때 15명으로 감축하고(vermindern), 1인의 선거위원은 두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90명일때 30명으로 감축하고, 1인의 선거위원은 세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3. 150명일때 4분의1로 감축하고, 1인의 선거위원은 네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인원으로 계산한다.

- (2)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회사내 선거위원을 통하여 수량적 비례에 맞게 대표되어야 한다. 사무직 종사자 선거위원 중에는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와 지도적 위치의 사무직 종사자를 대표해야 한다. 한 회사내에 9인의 선거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면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와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각각 1인의 선거위원이 할당된다; 이는 한 회사에 5인 이하의 노동자로서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와 간부 사무직 종사자가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문에 따라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와 간부 사무직 종사자의 선거위원이 할당되면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회사내의 선거위원수는 증가한다.
- (3) 제2항에 따라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및 간부 사무직 종사자에게 최소한 1인씩의 선거위원이 할당되지 아니하면 기업의 주영업소의 선거위원 선출에서도 같이 적용한다. 제2항과 제1문에 따라 사무직과 간부 사무직 종사자에게 주영업소에서도 1인씩의 선거위원을 할당할 수 없으면 선거위원 선출을 위하여 기업 내에서 가장 큰 경영체의 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의 수에 따라 적용한다.
- (4) 한 회사내에서 선거위원이 배정되지 아니하면 제3항이 준용된다.
- (5) 노동자 혹은 사무직 종사자로서 선거위원의 자격은 직종을 변경할 때에도 변하지 아니한다. 제1문은 사무직의 선거위원이 자신의 자격을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혹은 간부 사무직으로 변경했을 때에도 같다.

제 12 조 선거위원 추천

- (1) 선거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권을 지닌 회사내 피고용자는 선거제안을 할 수 있다. 모든 선거 제안은
1. 노동자는 반드시 유권자의 10분의 1 혹은 100명
 2.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은 반드시 유권자의 10분의 1

혹은 100명

3.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반드시 유권자의 10분의 1 혹은 100명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거제안에는 선거과정에서 선거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와 최소한 2배수의 지원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 13 조 선거위원의 임기

- (1) 선거위원은 자신들이 선출한 감사와 동일 임기로 선출된다. 선거위원은 차기 감사 선거가 시작될때까지 이 법규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권능을 수행한다.
- (2)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위원은 다음의 경우 임기가 끝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권자가 직접 선출을 결의했을때;
 2. 유권자가 제1항의 임기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제9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때.
- (3) 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권자가 직접 선출을 했을때 선거위원의 임기는 끝난다. 제9조 제3항이 적용된다.
- (4) 제1항과는 달리 추천된 보충 선거위원이 모두 취임한 후 보충 선거위원수가 선거 당시 기업에 할당된 선거위원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때에는 선거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 14 조

임기의 조기 종료 혹은 선거위원의 직무이행불능(Verhinderung)

- (1) 선거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경우 제13조에 명시된 시기이전에 종료된다:
 1. 사직원 제출
 2. 회사에서 자신이 대표가 되었던 직종의 직무가 종료되었을때
 3. 피선거권을 상실했을때
- (2) 선거인의 임기가 조기에 끝나거나 직무이행 불능인 경우 보충 위원이

그 지위를 계승한다. 보충위원은 동일 직종의 후보추천자중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피고용자 순으로 계승한다.

제 15 조 피고용자 기업 소속 감사의 선출

- (1) 선거위원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속회사 피고용인으로서의 감사를 비밀 및 비례원칙에 따라 임기를 위하여 선출된다. 이 기간은 법률 혹은 정관(회사계약, 지위)에서 지분 소유자의 선거기구를 통하여 선출된 감사와 일치한다.
- (2)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에는 반드시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들이 그 숫적 관계에 알맞도록 포함된다. 사무직 종사자의 감사중에는 반드시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과 간부 사무직 종사자들이 그 숫적 관계에 알맞도록 포함된다. 감사회에는 반드시 1인의 노동자,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및 간부사무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노동자 감사는 노동자 선거위원이, 사무직 감사는 사무직 선거위원이 선출한다. 제1문과는 달리 노동자 선거위원과 사무직 선거위원이 분리, 비밀 투표를 의결했을 경우에는 공동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제2문이 적용된다.
- (4) 선거는 선거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제안은 다음 조건에 의한다:
 1. 노동자 감사는 반드시 5분의 1 또는 100인의 서명;
 2. 사무직 종사자 감사는 반드시 5분의 1 또는 100인의 서명;
 3. 간부 사무직 종사자 감사는 간부 사무직 종사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모든 투표 방법 제안은 20분의 1 또는 50인의 간부 사무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결은 비밀 투표로서 다수결 원칙으로 한다. 이 다수는 제5항 제3문에 기재된 후보자 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투표 제안이 가능하도록 2차 투표에 들어간다. 2차 투표에서도 제5항 제3문에 기재된 후보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거 제안에 할당

된 투표수의 순서에 따라 수용한다. 투표에 있어서 모든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제5항 제3문에 따른 선거 제안을 위하여 자신들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만큼의 투표수를 가진다.

- (5) 제1항과는 달리 감사에 제2항에 따라 1인의 노동자,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1인의 사무직 종사자 혹은 1인의 간부사무직 종사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다수결 선출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출한다:

1. 노동자 감사
2. 사무직 종사자 감사, 제3조 제3항 제1문에 명시된 사무직 할당자
3. 간부 사무직 종사자등이 다만 1인의 선거 제안만 제출된 경우, 제2항에 따라 다수결 선거가 실시되면 반드시 선거 제안은 노동자,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 혹은 간부 사무직 종사자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충분한 지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16 조 감사회에 (파견할) 노조 대표선출

- (1) 선거위원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노조대표로서의 감사를 선출한다. 제15조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위하여 공동, 비밀, 비례선거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 (2) 선거는 해당기업 또는 계열기업을 대표하는 노조의 선거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하나의 선거제안이 제출되면 제1문과는 달리 다수결로 진행된다. 이 경우 감사회에 파견될 노조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할 것인가의 충분한 후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 17 조 보충위원

- (1) 모든 선거제안에는 감사 후보와 예비 후보도 제안되어야 한다. 지원자가 노동자인 경우 노동자,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은 동일한 사무직 종사자,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간부 사무직을 예비감사로 제안되어야 한다. 한 후보가 동시에 예비 후보가 될 수 없다.

(2) 한 후보자가 감사로 선출되면, 제안된 예비감사도 선출된다.

제 4 소절 피고용자 감사의 직접 선거

제 18 조

제9조에 따라 피고용자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기업내 피고용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다음 규준과 함께 준용된다:

1. 노동자 선거위원 대신 유권 노동자
2. 사무직 선거위원 대신 유권 사무직 종사자

제 5 소절 감사의 선출 절차, 위탁, 소환등에 관한 기타 규정

제 19 조 감사의 공고

기업의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는 감사와 예비감사의 이름으로 이들의 위원 임명후 즉시 기업내에 2주간 공고하고 연방 관보에 공시한다. 기업내 감사 선출에 다른 계열 기업의 피고용자가 참여한 경우 이 기업에도 공고한다.

제 20 조 선거보호와 선거비용

- (1) 제10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선거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특히 누구도 수동적·피동적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2) 누구도 지령이나 위협으로 선거에 손해를 입히거나 약속 또는 보증으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3) 선거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선거지휘부에서의 활동과 선거권 행사에 지각하는 것은 기업주가 노동임금을 감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 21 조 선거인의 선거제소

(1) 한 경영체내의 선거인의 선거는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절차에 관한 주요 규정에 충돌한 경우 그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변화되지 아니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소의 자격은

1. 최소한 기업내 3인의 유권자
2. 경영위원회
3. 기업내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등이다.

제소는 선거결과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22 조 피고용자 감사선거의 제소

(1) 피고용자의 감사 또는 그 예비감사 선거는 선거권, 피선거권 혹은 선거절차에 관한 주요 규정에 충돌한 경우 그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변화되지 아니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 제소 자격은

1. 3인의 유권자
2. 종합 경영 위원회, 기업내에 하나의 경영위원회만 있는 경우에는 이 경영위원회, 큰체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엔 큰체른 기업경영 위원회
3. 계열회사 피고용자가 선거에 참여했을 경우 이 계열사의 종합경영 위원회, 또는 계열기업에 단일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
4.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안권이 있는 노동조합
5. 기업내 법적 대표로 소집된 기구

제소는 연방관보 공시후 2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23 조 피고용자 감사 소환

- (1) 감사는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신청권자는
1. 유권 노동자의 4분의 1이상
 2.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유권사무직 종사자의 4분의 1이상
 3. 간부 사무직 종사자의 4분의 1이상
 4.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제안권이 있는 노조 등이다.
- (2)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분리선거(제15조 제3항 제1문)로 선출된 위원은 위원 소속 집단의 선거인의 의결로 소환될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위원 소속집단의 선거인의 의결로 소환될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공동선거(제15조 제3항 제2문)로 선출된 위원은 선거위원의 결의로 소환될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의 의결은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3) 한 피고용자 집단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은 이 집단의 유권자의 의결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피고용자에 의하여 공동선거로 직접 선출된 위원은 유권자의 의결로 소환될 수 있다. 제1문과 제2문의 의결은 비밀, 직접 투표로 결정되며 투표자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4) 제1항내지 제3항은 예비감사의 소환에도 적용된다.

제 24 조 피선거권 상실과 기업 소속 감사의 직종 변경

- (1)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업내 피고용자로서 감사는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 (2) 노동자나 사무직 종사자가 소속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문은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사무직 또는 간부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한 감사의 동등 자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감사회 내부 질서, 권리와 의무

제 25 조 원 칙

- (1) 감사회의 내부질서, 권리와 의무는 이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가 규정한다:
1. 주식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주식 합자회사
 2. 주식법 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문과 제2문, 제107조 내지 제116조 제2항, 제125조 제3항, 제171조, 제268조 제2항에 따라 독립법인체로서 유한회사와 광산법적 조합
 3. 법률에 따라 영업 및 경제동맹에 관련된 영업 및 경제동맹

1960.7.21. 제정되고, 1970.7.31. 제2차 법률로 최종개정된 유한 자본 사단법인체로서 국민차 회사(Volkswagenwerk Gesellschaft)의 지분권 증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존속한다.
- (2) 감사회의 내부질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타 법규정과 정관 규정(회사 약정, 지위) 혹은 감사회의 영업질서에 관한 규정들은 제1항에 반하지 않는한 존속한다.

제 26 조 불이익으로부터의 감사의 보호

피고용자 감사는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방해 받거나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들은 한기업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제4조와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자로서 감사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자신들의 직업적 승진에 있어서도 같다.

제 27 조 감사회의 의장(Vorsitz)

- (1) 감사는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의 지지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 (2) 제1항에 의하여 다수결로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을 실패하면 2차 투표

과정에서는 지분 소유자의 감사를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3) 의장과 부의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면 제31조 제3항 제1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피고용자 감사회 임원중에서 1인, 지분 소유자 감사 중에서 1인을 다수결로 선출하여 의장단을 결성한다.

제 28 조 의결능력

감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 능력을 지닌다.
주식법 제109조 제2항 제4문이 준용된다.

제 29 조 표결 (Abstimmungen)

- (1) 제2항과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가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 (2) 찬반 동수의 표결 결과가 나오면 동일 안전에 대하여 새 표결에 들어간다. 이 경우 의장은 두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2차 투표에는 주식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부의장은 두개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 부 법적 대표기관

제 30 조 원 칙

제31조 내지 제33조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업의 법적 대표권을 지닌 기관의 구성,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위원의 임명은 기업의 법적 형태에 유효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31 조 임명과 소환

- (1)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위원의 임명과 소환은 다음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식법 제84조와 제85

조에 따라 규정한다. 이는 주식 합자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감사회는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위원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 (3) 제2항에 따라 임명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37조 제3항에 명시된 감사회가 제2항에 의하여 임명하지 못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임명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은 다른 제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감사회는 기구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위원을 감사회 임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 (4) 제3항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지 아니하면, 새로운 투표과정에서는 감사회 의장이 두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3항 제2문이 적용된다. 부의장은 두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은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의 위원의 소환에도 적용한다.

제 32 조 자본 참여권 행사

- (1) 이 법에 따라 피고용자가 공동결정권을 가진 회사에서 역시 공동결정권을 가진 계열사의 자본 참여를 바탕으로 주어진 관리위원의 위촉, 위촉의 취소 및 면제, 계열 기업의 합병, 해산 및 개편, 관리위원회와 계열사간의 합의, 해산후의 이 회사의 계속 경영 및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이관에 있어서 주어진 권리는 감사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구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지분 소유 감사의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이 의결은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에 구속적이다.
- (2) 제1항은 계열사에 대한 기업의 자본 참여가 4분의 1이하일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사무장 (Arbeitsdirektor)

- (1) 기업의 법적 대표로 구성된 기관에는 동등 권리를 지닌 위원으로서 사

- 무장을 위촉한다. 이는 합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사무장은 기구내 타 위원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임무를 종합기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 규정에서 정한다.
- (3) 영업 및 경제 동맹의 사무장에는 이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부 해양 선박 항해(Seeschifffahrt)

제 34 조

- (1) 한 기업의 선박 전체는 이 법 준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한다.
- (2) 이 법에서의 선박은 船旗權法에 따라 연방기를 게양한 상선이다. 선박으로서 48시간내에 기항으로 회선할 수 있는 선박은 육지 경영기업의 일부로 간주한다.
- (3) 이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제1항에 명시된 경영체에서는 선장뿐이다.
- (4)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의 피고용자는 제9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피고용자의 의결에 필요한 직원수와 신청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피고용자 감사가 선거인에 의하여 선출되면, 제10조와는 달리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서는 선거인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와는 달리 이 기업의 피고용자는 피고용자 감사선거에 다음의 규준과 함께 직접 참여한다:
1. 이 피고용자중 1인의 투표는 1인의 선거인의 투표권의 60분의 1로 계산한다; 제11조 제1항 제3문이 준용된다;
 2. 이 피고용자들이 한 공동 투표에 선거인을 통하여 참여하지 아니하면 신청서와 의결을 위한 인원과 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의 선거인의 요구 인원에서 제외된다.

- (6) 피고용자 감사가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제1항에 언급된 경영체기업의 피고용자가 전체 종업원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피고용자 감사의 공동선거를 위한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청서와 의결을 위한 인원과 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의 요구되는 수에서도 제외된다.

제5부 경과 및 종결 규정

제35조 삭제

제36조 지시 (Verweisung)

- (1) 다른 규정에서 기업의 감사회의 피고용자 대표에 관한 1952년에 제정된 경영조직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을 위한 징계는 이 법에 의한 징계로 간주한다.
- (2) 1951.5.21. 제정되고 1965.9.6. 주식법 시행령을 통해 최종 개정된 석탄 광산, 철 및 강철 산업의 이사회와 감사회에서 피고용자 공동결정법 규정을 위하여 다른 규정에서 준용한 것은 그것 대신 “광산업 공동 참여법”으로 대체 표시한다.

제37조 법률의 최초 적용 기업

- (1) 주식법 제97조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이 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정관(회사 약정, 지위)은 주식법 제97조 제2항에 명시된 시점에, 혹은 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 제2문에 명시된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시기까지 개최된 정기 총회(Hauptversammlung)(회사 총회, 노조총회, 주주총회)에서는 실효된 정관 규정 대신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새로운 정관 규정을 의결할 수 있다.
- (2)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는 이 법규에 따라 감사회가 결성되면 최초로 적용되어야 한다.
- (3) 이 법이 시효되기 전 법적 대표로 구성된 한기업의 기관의 위원의 임

명은, 이 회사에 이 법이 이미 시효되어 적용되었으면, 다른 이유에 의하여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 시효후 5년이 경과된 후 이 법에 따라 형성된 감사회에 의하여 언제나 소환될 수 있다. 이 소환에는 감사 전원, 지분 소유자 감사 전원, 피고용자 감사 전원 투표의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촉계약에 대한 이의 청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소환때까지 이 감사를 위한 임기에 대한 정관 규정은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유효하다, 이 규정은 한 기업에 대하여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최초로 적용 되었을 때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제3항은 유한 책임 주식 합자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경과규정

- (1)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된 후 이 법의 최초 적용에 있어서는 주식법 제97조에 제2항 제2문의 시점대신에 이 법 시행후 소집된 제2차 정기 총회가 끝난 시점, 늦어도 이법의 시행후 2년이 경과되는 당일까지로 한다. 주식법 제97조 제2항 제2문의 시점이 제1문의 시점보다 늦는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문과는 달리 이 법 시행후 소집된 제1차 정기총회(회사 총회, 노조 총회, 총회)는 조기에 개최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주식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이 이 법률에 따라 감사회 구성을 법률상 유효하도록 확정하면 주식법 제98조 제4항 제2문, 제97조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시점대신 법정시점이 이 법 시행과 총회 소집 기일간에 6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경우 법률 시효후 소집되는 차기 정기 총회(회사 총회, 노조총회, 주주총회) 폐회시점으로 한다; 만약에 6개월이내의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법 제98조 제4항 제2문, 제97조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시점대신에 법률 시효후 소집되는 차차기 총회(회사총회, 노조총회, 주주총회) 폐회시점으로 하되, 늦어도 법률시행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한다.
- (3)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주식법 제97조 혹은 제98조에 따라 이 법규에

다른 감사회가 구성되는 절차가 개시되면 1952년에 제정된 경영조직법 제76조에 따라 선출된 피고용자 감사의 임기는 새로 선출되는 피고용자 감사의 선출과정이 종료된 후 임기가 시작될때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최장, 주식법 제97조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제98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명시된 시점까지로 한다. 법원이 이 법규에 따라 감사회가 결성되는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늦어도 주식법 제98조 제4항 제2문에 명시된 시점에서 임기가 끝난다.

제 39 조 법규 제정의 전권위임

연방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피고용자 감사의 선출과 소환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명확히 해야한다):

1. 선거준비, 표결, 선거지휘부 및 투표집행부의 위촉과 서너인 명부 작성
2. 직접 선출, 선거인을 통한 선출 혹은 공동 선거로 할 것인가의 결정
3.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정정
4. 피고용자 감사 정원 산출과 노동자 및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와 간부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노조 대표의 할당
5. 선거인수 산출과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간부 사무직 종사자의 할당
6. 선거 제안과 제출 기한
7. 선거 혹은 개표의 선언 및 이 선언의 공표
8.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경영체의 피고용자의 선거와 투표에의 참여
9. 투표
10. 선거 또는 개표결과의 확정과 공시시한
11. 선거에 관한 서류와 투표용지의 보관

제 40 조 베를린-조항 (Berlin-Klausel)

이 법률은 1952.1.4. 제정된 제3차 경과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준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이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은 제3차 경과
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제 41 조 효력발생

이 법률은 1976.1.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V. 경영조직법(舊)

(1952.10.11. 제정, 1979.5.21. 개정)

제 76 조

-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감사회는 반드시 피고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3분의 1이 참여해야 한다.
- (2) 피고용자의 대표는 경영조직법 제7조에 따라 기업 경영체의 유권 피고용자의 일반, 비밀, 보통 및 직접 선거로 임기제로 선출된다. 이 임기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결정한 임기와 일치한다.
 피고용자의 대표가 선출되면 이 대표는 반드시 한 기업 경영체에서 피고용자로 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2인 또는 다수의 피고용자 대표들이 선출되면, 최소한 2인은 기업경영체에서 나와야 하고 이중 1인은 노동자, 1인은 사무직 종사자여야 한다. 경영조직법 제10조 제3항이 준용된다. 기업 경영체내에 반수 이상이 여성 근로자인 경우 최소한 여성 1인이 감사회내에 피고용자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 피고용자 대표자에게는 경영조직법 제78조가 준용된다.
- (3) 경영위원회와 피고용자는 선거 제안을 할 수 있다. 피고용자의 선거제안은 기업 경영체내의 피고용 유권자 10분의 1 혹은 최소한 100인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 (4) 큰체른 기업의(주식법 제18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 지배회사의 감사회 피고용자 대표 선출에는 기타 계열사 경영체의 피고용자도 참여한다. 이 경우에는 선거인을 통한 간접 선출도 가능하다.
- (5) 감사회에 감사로 피고용자 대표의 임명은 선거기간 경과전에 경영위원회 혹은 기업 경영체 또는 유권 피고용자의 최소한 5분의 1의 신청에 의하여 유권자의 의결로 소환할 수 있다. 의결에는 최소한 4분의 3이상의 투표 참가에 다수결로 결정된다. 의결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4항이 적용된다.

- (6) 주식회사로서 가족회사가 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감사회에 피고용자 대표참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회사(Familiengesellschaft)로서 주식회사는 그 주주(Aktionaer)가 개별적인 자연인이거나 그 주주가 상하간 조세규정(Abgabenordnung)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와 제2항의 가족 관계이거나 사촌간인 경우이다. 이는 주식합자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제 77 조

- (1) 유한회사 또는 광산법상의 독립법인 노조회사로서 50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감사회를 결성해야 한다. 감사회의 구성과 그 권리 및 의무는 이 법 제76조와 주식법 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문과 제2문, 제95조 내지 제114조, 제116조, 제118조 제2항, 제125조 제3항, 제171조, 제268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
- (2)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상호보험회사(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에는 감사회를 결성하며, 이법 제76조를 준용한다.
- (3)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영업 및 경제 동맹에는 제76조를 적용한다; 주식법 제76조 제2항과 제97조 내지 제99조를 준용한다. 규약(Statut)은 감사를 구분할 수 있는 수의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감사회는 최소한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해야 한다.

제 77a 조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한 지배회사의 감사회에서 피고용자의 참여가 피고용자의 수 또는 현원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한 콘체른 기업의 경영체의 피고용자는 기업간에 계약이 성립되어 있거나 또는 계열기업이 지배회사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피고용자로 간주한다.

제 81 조

- (1) 정치, 노조, 종교, 사회봉사, 교육, 학술, 예술과 그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제76조와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법률은 종교 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단체의 사회봉사와 교육적 시설의 법률적 형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85 조

- (1) 감사회 결성에 관한 조합법 규정과 감사의 선거와 소환에 관한 규정은 이 법규정에 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감사회의 피고용자 대표에 관한 법규는 광산업 공동결정법 제1조와 공동참여 보충법 제1조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제76조와 제77조에 명시된 선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그 주요 내용은...):

- a) 선거준비, 특히 대표자수 산정, 선거인 명부 작성등
- b) 선거인 명부 열람과 오류의 수정
- c) 제안 목록 및 제출 기한
- d) 선거공표 및 그 공시
- e) 투표
- f) 선거결과 확정 및 그 공시
- g) 선거제소
- h) 선거서류 보관
- i) 감사회 피고용자 대표 임명 및 이에 관한 소환

V. 경영조직법(新)

(1988.12.23. 제정, 1989.12.18. 최종개정)

제1부 총 칙

제 1 조 경영위원회 구성

경영체내에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5명의 상주 유권 피고용자가 포함된 경영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그중 3명은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제 2 조 노조의 지위와 경영자 협회(Vereinigung)

- (1) 경영주와 경영위원회는 유효한 단체협약(임용계약)의 고려하에 신뢰가 충만하게, 경영체내에서 대표하는 노조 및 경영자협회와 공동협력으로, 피고용자와 기업이 발전하도록 공동노력한다.
- (2) 이 법률에 명시된 경영체내에서 대표하는 노조의 임무와 권능의 인지를 위하여 노조의 수임자(Beauftragten)는 기업주 또는 그 대리인의 보고(또는 안내, Unterrichtung)에 따라, 경영 과정의 필요 불가결한 이유, 안전 규정의 강요, 경영비밀의 보호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경영을 보호해야 한다.
- (3) 노조와 경영자 협회의 임무, 특히 그 회원의 이익의 인지에 관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합의된 단체협약

- (1) 단체협약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위원회와 피고용자간의 공동노력의 합목적적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단체협상에 의하여 정립된 기업과의 관계를 위하여 정해진 작업 유형과 작업 영역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별도 경영조직법적 대표

2. 한 기업에서 그 특성에 의하여 경영위원회의 설치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피고용자 대표의 설치
 3. 제4조와는 달리 경영 일부와 계열사의 부가에 관한 규칙, 피고용자의 대표 설치가 이로 인하여 용이할때.
- (2)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은 주 최고 노동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단체협약의 적용영역이 다수의 州에 관련될때에는 연방 노동·사회 보장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에 관한 결정에 관련된 노동조합과 당사자인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동의에 관한 결정에 관련된 노동조합과 경영자 협회 그리고 주의 최고 노동 관청에 서면 혹은 구두 또는 청문회등으로 의사를 들어야한다.
-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체협약이 시효됨과 동시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기업의 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러한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된 피고용자 대표는 경영위원회의 의무와 명령권을 갖는다.

제 4 조 경영일부와 계열사

경영일부는 제1조와 아래 조건을 충족했을때 자율 경영체로 간주한다.

1. 위치가 주경영체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2. 임무영역과 조직이 독자적일때

계열사가 제1조의 전체를 충족시키지 못할때에는 주경영체에 편입시킨다.

제 5 조 피고용자

- (1) 이 법률에서의 피고용자는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이 직종의 직업교육을 받고있는 자등이다.
- (2) 이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용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체에서 법인체의 법적 대표로 임명된 위원;
 2. 법령, 정관 혹은 회사 약정에 따라 인사전체의 대표 또는 지배인으로 임명된 타인사 전체 또는 합명회사의 대표로서의 회사인;
 3. 영업을 통하여 1차 수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회봉사 혹은 종교적 유

형의 활동을 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

4. 영업을 통하여 1차 수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치료, 재활, 심리치료 혹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5. 경영인의 배우자, 가족, 친지 등 가계 공동 관계를 가진자
- (3) 이 법은 다르게 자체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간부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부 사무직 종사자는 노동계약 또는 지위에 따라 기업 경영내에서
1. 피고용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임용 또는 면직권이 있는자,
 2. 일반 대리권자 혹은 지배권(Prokura)을 갖고, 그 지배권이 사용자와의 관계상 중요
 3. 기업이나 경영체의 발전과 존립을 위하여 의미가 있는 특별임무를 규칙적으로 받는 자. 자유로 결정하거나 대단한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 임무수행은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전제된다. 이러한 임무는 법규정, 계획서 기본지침 및 다른 간부 사무직 종사자와의 공동작업등 어려움(Vorgabe)을 줄 수 있다.
- (4)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간부 사무직에도 적용한다(im Zweifel):
1. 경영위원회의 최종 선거, 대변인 혹은 피고용자 감사 혹은 법률상 유효한 법원 판결에 따라 간부 사무직을 편승한 자;
 2. 기업내에서 비교적 간부 사무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지도급 차원에 속하는 자;
 3. 기업체내에서 간부사무직이 받는 규칙적인 년봉을 받는자;
 4.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에 따라 받는 금액규모의 3배를 받는자.

제6조 노동자·사무직 종사자

- (1) 이 법률상의 노동자는 피고용자 및 이직업의 피교육자로서 노동자 연금 보험의무 직업을 학습하는 자, 연금 의무가 없는 경우도 같다. 노동자는 가정에서 작업하는 자로서 그 주요작업이 기업을 위한 것일 경

우에도 해당된다.

- (2) 이 법률상의 사무직 종사자는 피고용자로서 사무직 종사자 보험법 제 3조 제1항과 이에 따라 제정된 사무직 종사자의 보험의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무직 종사로 명기된 직업을 학습하는 자이다. 사무직 종사자 보험의무가 없는 경우도 같다. 사무직 종사자로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무직 종사자 직업교육을 받는 자, 가정에서 작업하나 그 주요 작업이 기업의 사무직 활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 2 부 경영위원회, 경영총회, 종합 및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

제 1 절 경영위원회 선거와 구성

제 7 조 선거권

만 18세이상의 모든 피고용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8 조 피선거권

- (1) 6개월 이상 기업내 또는 가사업무로서 기업을 위한 생산사업에 종사한 경우 모든 유권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있다. 6개월의 경력에는 동일 기업내에서 다른 경영체 또는 콘체른 기업내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주식법 제18조 제1항).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과 선거참여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 (2) 기업이 창설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는 달리 경영위원회 선거운영에 참여하였거나 피선거권에 관한 기타 조건을 충족한 피고용자는 피선될 수 있다.

제 9 조 경영위원회 위원의 수

경영체내의 경영위원회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규준에 따른다:

유권자	5인이상	20명인 경우	1인
유권자	21인이상	50명인 경우	3인
유권자	51인이상	150명인 경우	5인
유권자	151인이상	300명인 경우	7인
유권자	301인이상	600명인 경우	9인
유권자	601인이상	1000명인 경우	11인
유권자	1001인이상	2000명인 경우	15인
유권자	2001인이상	3000명인 경우	19인
유권자	3001인이상	4000명인 경우	23인
유권자	4001인이상	5000명인 경우	27인
유권자	5001인이상	7000명인 경우	29인
유권자	7001인이상	9000명인 경우	31인

9000명이상의 피고용자가 고용된 기업에서는 3000명이 초과할때마다 2인씩의 위원을 증가시킨다.

제 10 조 소수 직종의 대표

- (1) 최소한 3인의 경영위원회원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그 수에 알맞는 비례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2) 소수 직종의 대표는 다음 규준에 따른다:

	50인까지	1인의 대표
51인이상	200인까지	2인의 대표
201인이상	600인까지	3인의 대표
601인이상	1000인까지	4인의 대표
1001인이상	3000인까지	5인의 대표
3001인이상	5000인까지	6인의 대표
5001인이상	9000인까지	7인의 대표
9001인이상	15000인까지	8인의 대표
15000인이상		9인의 대표

- (3) 5인 이하의 소수집단으로서 전체종업원수의 20분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대표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경영위원회 위원수의 축소

한 기업에 충분한 수의 피선거권이 있는 피고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크기의 경영체의 경영위원회 수에 기초한다.

제 12 조 경영위원회 의석수의 예외 할당

- (1) 직종(집단)의 경영위원회 위원의 할당은, 두 직종이 선거전에 분리·비밀 투표로 의결했을 경우에는 제10조와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2) 각 직종에서는 다른 직종 소속의 인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선거자는 선출 직종의 대표가 된다. 이는 보충위원의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경영위원회 위원선거의 시기

- (1) 정기 경영위원회 위원선거는 4년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는 대변인 위원회법(Sprecherausschussgesetz)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기선거의 시점에 따른다.
 (2) 이 시기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선거일부터 계산하여 24개월이 경과된후 정규 피고용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소한 50명, 증가하는 경우
 2. 대부분의 보충위원이 전체 경영위원회에 임명된 후 경영위원회 위원이 정수가 감소되는 경우
 3. 경영위원회가 스스로 해산할 것을 결의했을때
 4. 경영위원회 위원 선거가 취소되어 폐소 했을때
 5.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해체 되었을때
 6. 기업내에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때

- (3) 정기적인 경영위원회 선거 기간 이외의 시기에 선거가 실시되면 경영위원회는 차기 정기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다. 그 잔여기간이 1년미만이면 그 다음 선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 14 조 선거규정

- (1) 경영위원은 비밀·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2) 경영위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그들의 대표를 분리선거과정을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전에 두 직종의 유권자들이 분리·비밀 투표에서 공동선거를 결정했을 경우에도 같다.
- (3) 선거는 비례 선거원칙에 의하며; 선거 제안에 의하며;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4) 1인에 의하여 결성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단순 표결·다수결로 선출한다; 이는 경영위원회에 파견하는 1인의 대표를 뽑는 직종에도 적용한다. 제1문의 경우 분리선거 과정에서 1인의 보충위원을 선출한다.
- (5) 경영위원 선출을 위하여 유권자와 경영체 내에서 대표하는 노조는 선거 제안을 할 수 있다.
- (6) 모든 선거 제안에는 유권 직종 소속인의 20분의 1 이상, 최소한 3인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20인까지는 2명의 유권자가, 20인 이상의 유권 직종 소속인의 경우에는 3인의 유권자가 서명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50인의 직종소속인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 (7) 제2항에 따라 공동선거가 의결되면, 모든 선거제안은 최소한 20인의 유권 피고용자의 서명이 요구된다. 제6항 제1문의 앞절과 제2문은 유효하다.
- (8) 노조의 개별 선거 제안은 반드시 2인의 위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15 조 직종과 성(性)에 따른 규정

- (1) 경영위원회는 가능한한 반드시 개별 경영 부서의 피고용자와 종속된 계열사가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에는 경영체내에 고용되어 있도록 근

료자의 다양한 직종 유형의 대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2) 性도 그 숫적인 관계에 알맞게 대표해야 된다.

제 16 조 선거위원회 위촉

- (1) 경영위원회는 임기 종료 10주전에 3인의 유권자로된 선거위원회를 위촉한다, 그중의 1인이 의장이 된다. 경영위원회는 질서 정연한 선거의 실행을 위하여 위원수를 늘릴 수 있다. 선거 위원회는 반드시 홀수의 위원수로 구성한다. 선거위원회의 개별 위원은 자신이 선거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는 보충위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서는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내에서 대표적인 노조는 별도로 경영체에 소속된자를 표결권이 없는 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표권이 없는 선거위원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이다.
- (2) 경영위원회 임기종료 8주전까지 선거위원회가 결성되지 아니하면 3인의 유권자 또는 노조의 신청으로 노동법원에 위촉한다. 제1항이 준용된다. 신청에는 선거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원은 선거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20인이상의 피고용자 또는 회사의 피고용자가 아닌 노조원을 선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7 조 선거위원회 위원 선출

- (1) 제1조의 조건을 충족한 경영체내에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아니하면, 경영총회에서 출석 피고용자의 다수결로 선거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제16조 제1항이 이에 유효하다.
- (2) 이 경영총회에는 경영체의 유권 피고용자 3인 또는 경영체내에서 대표하는 노조에서 1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3) 초청에도 불구하고 경영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경영총회가 선거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노동법원이 최소한 3인의 유권 피고용자 혹은 경영체내에서 대표하는 노조의 신청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16조 제2항이 이에 유효하다.

제 18 조 선거의 준비와 실시

- (1)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선거를 준비하며, 실행하고 선거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위원회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법원은 최소한 3인의 유권 피고용자 또는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다른 선거위원회를 대체한다. 제16조 제2항이 이에 유효하다.
- (2) 계열사 혹은 경영체 일부가 자유키업인지 지배회사에 편입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경영자, 참여하는 모든 경영위원회, 참여하는 모든 선거위원회 혹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는 노동법원에 선거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투표가 끝나면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개적으로 개표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고 이를 기업내 피고용자에게 알린다. 경영자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에는 선거결과 보고서를 발송한다.

제 18a 조 선거에의 간부 사무직 종사자의 부가(Zuordnung)

- (1) 이 법률 제13조 제1항과 대변인 위원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가 개시되면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 작성후 늦어도 선거 2주전에 어떻게 사무직 종사자를 간부 사무직 종사자에 부가시켰는가를 상호 보고해야 한다. 이는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다. 선거위원회간에 부가에 대하여 상호 이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동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토록 노력한다. 합의가 되면 사무직 종사자의 부가는 해당선거인 명부에 등재한다.
- (2)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면 중재자가 선거 개시 늦어도 1주전에 부가에 대하여 선거위원회의 이해를 시도한다. 경영자는 중재자의 요구를 보호하고 특히 필요한 안내를 하며 요구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경영자의 자문에 따라 중재자가 결정한다. 제1항 제3문이 이에 유효하다.

- (3) 중재자에 대해서는 선거위원회가 합의해야 한다. 중재자는 회사의 관리자 혹은 콘체른 기업 또는 다른 기업경영체의 관리자 또는 경영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경영위원회는 1인씩의 후보를 지명하고 그 중에서 추첨으로 중재자를 결정한다.
- (4) 대변인위원회법 제13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른 선거와는 다른 시기에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대변인 위원회에 제1항 제1문 앞절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부가에 대하여 이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변인위원회는 부가과정에 참여한 선거위원회 대신 위원을 임명한다. 대변인위원회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거와는 다른 시기에 이법에 따라 선거가 개시되면 제1문과 제2문은 경영위원회에 유효하다.
- (5) 부가로 인한 소송과정은 개방되어 있다. 대변인 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혹은 경영위원회 선거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가 자체가 불완전하게 결정 되었다는 심증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2문은 부가가 명백하게 불완전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선거 취소청구

- (1) 선거가 선거법의 주요 규정, 피선거권 혹은 선거절차에 충돌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충돌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 (2) 취소청구 소송권은 최소한 3인의 유권자,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 혹은 경영자에게 있다. 선거취소청구 소송은 선거결과와 공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용된다.

제 20 조 선거보호와 비용

- (1) 누구도 경영위원회 선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피고용자의 능동적·피동적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2) 누구도 경영위원회를 명령 혹은 위협으로 손해를 주거나 보증과 약속으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3) 선거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한다. 선거권의 행사, 선거위원회의 활동, 중재자의 활동에 요구되는 근무시간의 지각이 경영자에게 임금 삭감의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제 2 절 경영위원회의 임기

제 21 조 임 기

경영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는 선거결과 공시일로부터 시작되며, 이시점에 경영위원회가 존립하는 경우에는 이 경영위원회의 임기가 경과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늦어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기 경영위원회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31일이다. 제13조 제3항 제2문의 경우 임기는 경영위원회 선거가 있는 해의 5월 31일에 종료된다. 제13조 제2항 제 1호와 제2호의 경우 임기는 새로 선출된 경영위원회의 선거결과 공시와 동시에 종료된다.

제 22 조 경영위원회 업무의 계속 수행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경영위원회는 새로운 경영위원회가 선출되고 선거결과가 공시될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 23 조 법적의무의 침해

- (1) 유권 피고용자의 4분의 1이상의 서명과 경영체 및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는 경영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크게 훼손했을 경우 노동 법원에 경

- 영위원회의 폐쇄 또는 경영위원회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경영위원회의 위원의 후원회도 경영위원회에 의하여 해산 청구될 수 있다.
- (2) 경영위원회가 해체되면 노동법원은 지체없이 새로운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는 제16조 제2항이 유효하다.
- (3) 경영위원회 혹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는 경영자가 사측의 의무에 대한 중대한 충돌에 있어서 노동법원에 이 법률에 따라 신청하여 행동을 취소하거나 행위 착수를 서두르거나 행위를 착수하도록 할 수 있다. 경영자가 유효한 법률적 결정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다시 위반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Ordnungsgeld)부과의 사전 경고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경영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경영위원회 또는 노조에게 있다. 과태료 및 벌금은 최고 20,000마르크이다.

제 24 조 위원자격의 상실

- (1) 경영위원회 의원 자격은
1. 임기의 종료
 2. 경영위원회 위원직의 사퇴
 3. 고용계약의 완료
 4. 피선거권 상실
 5. 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폐쇄(Ausschluss)또는 해산
 6.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피선 불가능의 확정에만 한 법원의 판결, 부족함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같음. 동의 경우에는 상실한다.
- (2) 직종 변경에 있어서는 직종 대표로서의 경영위원회 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보충위원의 경우에도 같다.

제 25 조 보충위원

- (1) 경영위원회 위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보충위원이 승계한다; 이는 시한부로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에도 같다.
- (2) 보충위원은 제안된 피고용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삭제한다. 제안 명부가 소진되면 보충위원은 비례선출 원칙에 따라 차기 위치에 배정되며 본래의 명부에서는 삭제된다. 제명되거나 위촉이 지연되는 위원이 다수결원칙에 따라 선출되면 고득표자순에 따라 제10조와 제12조를 고려하여 보충위원의 서열이 정해진다.
- (3) 제14조 제4항의 경우 제1항의 준용과 함께 선출된 보충위원은 승계하거나 부대표의 직위를 받는다.

제 3 절 경영위원회 업무 집행

제 26 조 의 장

- (1) 경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경영위원회가 두 직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장과 부의장은 한 직종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 (2) 하나의 경영위원회에 각 직종이 최소한 3분의 1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으면 각 직종에서는 의장 후보를 2인씩 제안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제안된 의장 후보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 (3) 경영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유고시 그 부의장은 경영위원회를 대표한다. 경영위원회에 제기되는 해석이나 해명에 대한 방어는 의장 또는 의장 유고시 부의장의 권한이다.

제 27 조 경영협의회 (Betriebsausschuss)

- (1) 9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는 하나의 경영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영협의회는 경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

회에 다음 규준에 협의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9인~15인의 경영위원회에는 3인의 협의회 위원을 추가

19인~23인의 경영위원회에는 5인의 협의회 위원을 추가

27인~35인의 경영위원회에는 7인의 협의회 위원을 추가

37인이상의 경영위원회에는 9인의 협의회 위원을 추가

추가된 협의회 위원은 경영위원회가 비밀 및 비례 선거원리에 따라 선출한다. 하나의 선거 제안만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협의회위원이 비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되면 경영위원회 의결을 통한 소환은 비밀투표로 하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2) 경영협의회는 경영위원회내에서 대표되는 직종 소속위원의 그 대표비율로 구성된다. 각 직종은 최소한 1인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위원회가 분리 선거과정으로 선출되었고 모든 직종이 10분의 1이상의 경영위원회 위원이, 최소한 3인이상, 속해 있다면 이 직종에서는 경영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위원회가 공동선거 과정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그리고 모든 직종이 3분의 1이상의 경영위원회 위원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 한 직종에서 선출한 위원에 대한 소환은 제1항 제5문과는 달리 직종의 결의로 결정된다.
- (3) 경영협의회는 경영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위원회는 경영협의회로 하여금 다수결로 자율처리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경영합의의 종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임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2문과 제3문은 임무 위임의 취소에도 적용된다.
- (4) 9인이하의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의장 또는 다른 경영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8 조 별도 협의회 의 임무 위임

- (1) 경영협의회가 결성되면 경영위원회는 별도 협의회체를 구성하고 정해진 임무를 위임한다. 협의회 위원의 위촉과 소환은 제27조제1항 제3문을

준용한다. 협의회에 정해진 자율적 처리 임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 27조 제3항 제2문 내지 제4문이 적용된다.

- (2) 직종을 통한 협의회 위원의 선출과 소환 및 협의회의 구성은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27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은 협의회에 다만 하나의 직종에 관한 임무만을 위임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경영위원회와 경영자가 임명한 협의회 내에서의 경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자율 결정을 위한 임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29 조 회의소집

- (1) 선거일로부터 1주가 경과하기전 선거위원회는 제26조 제2항과 제2항에 명시된 선거를 위하여 경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선거위원장은 경영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
- (2) 이후의 회의는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심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경영위원회 위원을 의사일정의 통보와 함께 사전에 초청한다. 장애인 대표와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도 경영위원회의 위원중 1인 혹은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지체없이 결석사유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혹은 장애인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자를 대신하여 보충위원을 초청한다.
- (3) 경영자는 자신의 요구가 상정된 회의와 구두로 초청된 회의에 참석한다. 경영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경영자 협회의 대표를 입회시킬 수 있다.

제 30 조 경영위원회 회의

경영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개최한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 회의 일정 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자는 회의 일시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해야 한다. 경영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로 진행한다.

제 31 조 노조의 참석

경영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신청 또는 한 직종의 경영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하여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위탁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일시와 의사 일정을 노조에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장애인 대표의 참석

장애인 대표(장애인법 제24조)는 경영위원회 회의에 조언하기 위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 33 조 경영위원회 의결

- (1) 이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경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의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 (2) 경영위원회는 최소한 위원 총수의 절반이상이 결정과정에 참석해야 의결능력을 가진다. 보충위원의 대리 참석도 허용된다.
- (3)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의결 과정에 참석한 경우 투표권을 주어 다수결 확정에 계상한다.

제 34 조 회의기록

- (1) 경영위원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결 사항과 의결을 결정한 다수표의 결과등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의장과 위원중 1인의 서명한다. 기록은 회의 참석자가 직접 서명한 명부에 첨부한다.
- (2) 경영자와 노조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록의 일부의 사본을 가질 수 있다. 기록에 대한 이의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되고 이는 기록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3) 경영위원회 위원은 언제나 경영위원회 서류와 의결 사항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 35 조 의결의 연기 (Aussetzung)

- (1) 한 직종 또는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다수가 경영위원회의 의결이 피고용자의 주요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의결을 1주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노조등의 협조로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 (2)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의결할 기회를 갖는다. 첫번째 의결이 확인 되면 연기 신청이 반복되지 아니한다. 이는 첫번째 의결 내용 중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 (3) 제1항과 제2항은 장애자 대표가 경영위원회의 의결이 장애자에게 중대한 이익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 했을때에도 같다.

제 36 조 업무질서

업무 질서에 관한 기타 규정은 경영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의한 문서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제 37 조 명예직의 활동, 지각

- (1) 경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명예직(Ehrenamt)으로 수행한다.
- (2) 경영위원회 위원은 경영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신의 임무의 합법적 수행에 요구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를 직업활동으로부터 임금의 감축없이 면제된다.
- (3) 회사내 조건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활동의 보상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는 근무시간내의 근무 면제 요구권을 가진다. 근무면제(Arbeitsbefreiung)는 당해 月이 경과 하기 전에 보상된다. 이것이 경영조건상 불가능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4) 경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금지급은 임기가 끝난 후 1년간을 포함하

여 동일 직급의 다른 피고용자의 임금수준보다 적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영자의 일반 적용에도 유효하다.

- (5) 경영상의 강요가 없는 한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후 1년간을 포함하여 제4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와 같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6) 제2항은 경영위원회 위원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과정에 참여했을때에도 유효하다. 경영위원회는 교육과 연수과정의 참여의 일정 확정에 있어서 경영체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에게 교육 및 연수과정의 일사와 참여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상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당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합의기구(Einigungsstelle)에 보고할 수 있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신한다.
- (7) 제6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영위원회 위원은 정기 임기내에 주 최고 노동관청으로부터 노조와 경영자 협회의 조언에 따라 인정한 바 있는 3주간의 유급 교육 및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제1문에 따른 청구에 있어서 청소년과 경영위원은 물론 피교육자 대표로 피선되어 경영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위원에게는 그기간이 4주까지 연장한다. 제6항 제2문 내지 제5문이 준용된다.

제 38 조 면제 (Freistellung)

- (1) 직업활동에서 면제되는 최소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300인 이상	600인 고용경영체	1인의 위원
600인 이상	1000인 고용경영체	2인의 위원
1001인 이상	2000인 고용경영체	3인의 위원
2001인 이상	3000인 고용경영체	4인의 위원
3001인 이상	4000인 고용경영체	5인의 위원
4001인 이상	5000인 고용경영체	6인의 위원

5001인 이상 6000인 고용경영체 7인의 위원
 6001인 이상 7000인 고용경영체 8인의 위원
 7001인 이상 8000인 고용경영체 9인의 위원
 8001인 이상 9000인 고용경영체 10인의 위원
 9001인 이상 10000인 고용경영체 11인의 위원

10000명이상 고용 경영체에서는 2000명 초과당 1인씩의 위원을 면제한다. 단체협약 또는 회사 약정에 의하여 다른 규칙으로 위원의 면제수를 정할 수 있다.

- (2) 면제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경영자의 자문을 얻어 경영위원회로 하여금 비밀·비례선거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단일 선거제안인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된다. 1인만 면제되는 경우에는 단순 표결 방법으로 선출한다. 각 직종은 적절한 관계로 대표수를 고려한다. 직종이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소속하고 있을 때에는 할당 몫의 면제 위원을 선출한다. 제1문과 제2문이 이에 유효하다. 경영위원회는 면제위원 명부를 경영자에게 제출한다. 경영자가 면제를 실제로 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명부 통과후 2주내에 합의처에 제기할 수 있다. 합의기구의 제기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보전한다. 합의처가 경영자의 의사를 제기하면 합의처는 타 경영위원회의 면제위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제1문 내지 제3문의 의미에서 소수 보호를 고려한다. 경영자가 합의처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목계가 2주가 경과하면 이는 곧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환에는 제27조 제1항 제5문과 제2항 제5문이 유효하다.
- (3) 제37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계속지불과 제37조 제5항에 따른 경력 기간은 3년 연속 면제된 경우 재임기간 경과후 2년을 가산한다.
- (4) 면제된 경영위원회 위원은 사내외적인 직업교육 조치로부터 제외되지 아니한다. 면제기간 종료후 1년내에 면제에 따라 연기된 이러한 직업교육 조치의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 3년간 연속 재임기간중 면제된 위원에게는 제2문에 따라 2년을 가산한다.

제 39 조 상담시간(Sprechstunden)

- (1) 경영위원회는 근무시간에 면담시간을 개설한다. 시간과 장소는 경영자와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결정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보전한다.
- (2) 청소년과 피교육자 대표가 스스로 면담시간을 운영하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는 면담시간에 청소년과 피교육자 대표를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동석시킨다.
- (3) 면담시간의 활용과 기타 경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각한 경우는 피고용자 임금감축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제 40 조 경영위원회의 경비와 소모품 경비

- (1) 경영위원회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비는 경영자가 지불한다.
- (2) 회의·상담시간 그리고 일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영자는 요구되는 공간, 사무비품 및 사무요원을 배치한다.

제 41 조 과세금지(Umlageverbot)

경영위원회를 위한 피고용자의 기금의 급부와 세금부과는 금지한다.

제 4 절 경영총회(Betriebsversammlung)

제 42 조 구성, 분과회의, 부서회의

- (1) 경영총회는 기업내 피고용자로 구성된다. 총회는 경영위원회 의장이 주재한다. 총회는 비공개로 개최한다. 경영체 유형에 의하여 동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2) 조직 및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영체 부서의 피고용자는 중대한 요구의 토론이 필요한 때에는 경영위원회에 의하여 부서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서별 총회는 부서 소속의 경영위원 1인이 주재한다. 제1항 제

2문과 제3문이 유효하다.

제 43 조 정기 경영 및 부서총회

- (1) 경영위원회는 분기마다 경영총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고한다. 제42조 제2항 제1문의 조건이 제기되면, 경영위원회는 1년에 2회씩 제1문의 경영총회로서 부서총회를 개최한다. 부서총회는 가능한 한 동시에 개최한다. 경영위원회는 제42조 제2항 제1문의 조건이 제기되면 1년에 1회의 별도의 경영총회를, 특별한 사유와 목적이 발생하면 1회의 부서총회를 더 개최해야 한다.
- (2) 경영자는 경영총회와 부서총회에 의사일정 통보와 함께 초청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지닌다. 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소한 1년에 1회씩 경영총회에서 인사 및 기업내 사회제도(*직업환경등의 복지 상태)와 경제상태 및 기업발전상을 경영 및 영업 비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해야 한다.
- (3)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의 소원 또는 피고용자의 4분의 1이상의 소원에 따라 경영 총회를 개최하고 제기된 자문대상을 의사일정에 넣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영자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일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 (4) 전해에 경영총회나 부서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신청 접수일 2주내에 경영총회를 제1항 제1문에 따라 소집해야 한다.

제 44 조 일시와 임금 삭제

- (1) 제17조와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와 경영자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경영 유형상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근무시간에 개최된다. 이 총회의 참석시간은 별도의 왕복 교통시간과 함께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총회가 경영유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개최되는 경우도 같다;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는 경영자가 부담한다.

- (2) 기타 경영 및 부서총회는 근무시간외에 개최한다. 이는 경영자의 이해에 따라 예외일 수 있다; 경영자의 이해와 함께 근무시간에 개최된 총회는 경영자에게 임금 삭제의 권리를 주지못한다.

제 45 조 단체의 수입자

- (1) 경영총회와 부서총회에는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수입자가 참석할 수 있다. 경영자가 총회에 참석하면 경영자가 속한 경영자 협회의 수입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 (2) 경영 및 부서총회의 의사일정과 일시는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에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5 절 종합 경영위원회

제 47 조 설치의 조건, 의원수, 투표단위

- (1) 기업체내에 다수의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종합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종합 경영위원회에는 모든 경영위원회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한 경영위원회가 두개의 직종으로 되어 있으면 2명의 대표를, 단일 직종으로 되어있으면 1인의 대표를 파견한다. 2명의 대표를 파견한 경우에는 2인이 동일 직종인이어서는 안된다. 경영위원회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분리 선거과정에서 선출되었고, 각 직종에 경영위원회 위원수가 10분의 1이상, 최소한 3인의 위원이 속해있는 경우 각 직종에서는 할당된 직종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위원회가 선출되었고, 각 직종에 경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속되어 있을때에도 유효하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소환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 (3) 경영위원회는 종합 경영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위하여 최소한 1인의 보충위원을 위촉하고 그 승계의 순위를 결정한다. 제25조 제3항이 유효하다. 위촉에는 제2항이 유효하다.

- (4) 단체협약 혹은 경영 합의에 따라 종합위원회 위원수는 제2항 제1문과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5) 제2항 제1문에 따라 종합경영위원회에 40인이상이 소속되고, 제4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종합경영위원회와 경영자간에는 종합경영위원회의 위원수에 관한 경영합의(Betriebsvereinbarung)를 체결해야 한다. 이 경영합의에서는 지역적 또는 동일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한 기업내의 다수의 경영체가 공동으로 종합경영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다.
- (6) 제5항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종합기업을 위하여 구성된 합의기구에서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경영자와 종합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보전한다.
- (7) 종합경영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직종에 속한 유권자와 같은 수의 투표수를 갖는다. 종합경영위원회에 1인의 대표만을 파견한 경우 그는 자신을 파견한 직종의 유권피고용자 수만큼의 투표수를 지닌다.
- (8) 다수의 경영체를 위하여 종합경영위원회에 1인의 대표만을 파견한 경우 이 대표는 이 경영체에 고용된 유권자수 만큼의 투표수를 지닌다. 하나의 직종에서 다수의 위원을 대표로 파견한 경우에는 제7항 제1문에 따라 할당한다. 제7항 제2문이 유효하다.

제 48 조 종합경영위원회 위원의 제명 (Ausschluss)

4분의 1이상의 기업의 유권 피고용자, 경영자, 종합 경영위원회 혹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회원은 노동법원에 종합경영위원회의 위원을 중대한 법적 의무를 침해한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

제 49 조 위원 자격의 상실

종합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산, 위원사직, 법원판결에 따라 종합위원회로부터 제명 또는 경영위원회에 의한 소환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제 50 조 관 할

- (1) 종합경영위원회는 다수의 경영체 또는 종합기업내의 업무의 취급을 관할한다. 개별경영체내에 개별경영위원회에 의하여 규정된 것은 관할하지 아니한다, 종합경영위원회는 개별 경영위원회의 상급위원회가 아니다.
- (2) 경영위원회는 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업무를 종합경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이경우 결정권을 유보한다. 제27조 제3항 제3문 내지 제4문이 준용된다.

제 51 조 업무수행

- (1) 종합경영위원회에는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28조 제1항 제1문 내지 제3문, 동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와 제41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제1항 제1문 내지 제2문이 다음 기준과 함께 유효하다: 종합경영위원회의 의장, 부의장과 위원을 포함한 종합 경영위원회(Gesamtberriebsausschuss)는
 - 9인 이상 16인의 위원인 경우에는 3인의 추가 위원회 위원으로,
 - 17인 이상 24인의 위원인 경우에는 5인의 추가 위원회 위원으로,
 - 25인 이상 36인의 위원인 경우에는 7인의 추가 위원회 위원으로,
 - 36인 이상의 위원인 경우에는 9인의 추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36인이상의 각 직종의 대표들이 종합경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면 각 직종에서는 1인의 종합경영위원회 의장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종합경영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종합경영위원회는 반드시 종합경영위원회에서 대표하는 직종 소속인의 수에 알맞는 투표수를 지닌다. 각 직종은 반드시 1인의 대표를 지녀야 한다. 제47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파견된 종합경영위원회의 의

- 원이 반수 이상과 각 직종의 대표가 종합경영위원회 투표수의 10분의 1 이상, 각 직종이 최소한 3인이상의 종합위원회 위원을 지냈을 경우, 각 직종은 종합경영위원회 추가위원을 선출한다. 그 밖의 추가위원의 구성과 직종에서의 추가위원 선출은 제3문 내지 제5문이 준용된다. 제3문과 제4문은 하나의 직종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직종에서 1인의 종합위원회 위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제7문에 따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 (3) 종합경영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하면, 기업의 중앙부처의 경영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큰 경영체의 유권 피고용자수에 따라 종합경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에 초빙된다. 초빙된 경영위원회의 의장은 종합경영위원회의 선거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
- (4) 종합경영위원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동수인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석하고 참석자의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석할때 의결 능력이 있다. 보충위원의 대리 참석도 허용된다. 제33조 제3항이 준용된다.
- (5) 종합경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과 기타 소위원회의 의결에는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 (6) 경영위원회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종합경영위원회에도 준용된다.

제 52 조 종합 장애인 대표의 참석

종합 장애인 대표(장애인법 제27조 제1항)는 종합경영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자문을 위해 참석할 수 있다.

제 53 조

- (1) 최소한 1년에 1회씩 종합 경영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한다. 이 총회에

는 그 정족수 이내에서 제1문과는 달리 다른 위원을 파견한다.

(2) 총회에서는

1. 종합위원회의 활동보고
 2. 경영자가 인사 및 사회제도의 보고, 경제상태및 기업의 발전을 기업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한다.
- (3) 제42조 제1항 제1문 후절과 제2문, 제43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 제45조와 제46조가 준용된다.

제 6 절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

제 54 조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의 설치

- (1) 콘체른 기업(주식법 제18조 제1항)에는 개별 종합경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를 결성한다. 설치에는 콘체른 기업 피고용자의 75% 이상이 고용된 콘체른 기업의 종합경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기업 경영위원회에 단일 경영위원회만 결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 경영위원회가 이절의 규정에 따라 종합경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55 조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의 구성, 투표단위

- (1)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에는 모든 종합경영위원회가 두 직종에서 대표를 파견 했을 때에는 2인, 단일 대표를 파견했을 때에는 1인의 소속 위원을 파견한다. 2인의 대표를 파견했을 때에는 2인이 동일 직종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제47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파견된 종합경영위원회의 위원의 절반 이상, 종합경영위원회에서의 모든 투표수의 10분의 1이상을 개별 직종 대표가, 개별 직종에 최소한 3인의 종합위원회 위원이 소속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직종에서는 할당된 직종대표를 선출한다.
- (2) 종합경영위원회는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의 개별 위원을 위하여 최

소한 1인의 보충위원을 위촉하고 그 계승 순위를 확정한다. 위촉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 (3)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의 개별위원은 종합위원회에 자신이 소속된 직종의 위원수 만큼의 투표수를 지닌다. 단일 종합경영위원회가 단일 대표를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에 파견했을 경우에는 이 대표는 종합 경영위원회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 모두를 지닌다.
- (4) 단체협약 또는 경영합의에 따라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제1항 제1문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제47조 제5항 내지 제8항이 준용된다.

제 56 조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 위원의 제명

콘체른 기업의 피고용자의 4분의 1이상의 서명과, 경영자,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는 노동법원에 연합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법적의무를 훼손했을 경우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7 조 위원 자격의 상실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 위원은 종합경영위원회의 해산, 위원사직, 법원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등과 함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8 조 관 할

- (1)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는 콘체른 기업과 다수 콘체른 기업의 관련 업무를 관할하며, 개별 종합경영위원회를 통하여 기업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없다.
- (2) 종합경영위원회는 위원다수의 결의로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에 자체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종합경영위원회는 이 경우 결정권을 유보한다. 제27조 제3항 제3문과 제4문이 준용된다.

제 59 조 업무수행

- (1) 큰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에는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과 제3항, 제27조 제3항과 제4항, 제28조 제1항 제1문과 제3문, 동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1항 제2문, 동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이 준용된다.
- (2) 큰체른 기업이 결성되어야 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종합경영위원회 혹은 이러한 종합경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큰체른 기업의 종합경영위원회가 큰체른 기업 경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초대된다. 초청된 종합경영위원회 의장은 큰체른 기업위원회가 선거위원장을 위촉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한다.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

제 3부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제 1 절 경영체내에서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제 60 조 설치와 임무

- (1) 경영체내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미만의 피고용자 혹은 만 25세 미만으로서 직업교육을 받는 자의 대표 5명을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로 선출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의 요구를 인지해야 한다.

제 61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1) 선거권자는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피고용자이다.
- (2) 피선거권자는 만 25세 미만의 모든 피고용자이다. 제8조 제1항 제3

문이 적용된다.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

제 62 조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수와 구성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
 - 5인이상 20인까지 1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21인이상 50인까지 3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51인이상 200인까지 5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201인이상 300인까지 7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301인이상 600인까지 9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601인이상 1000인까지 11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 1000인이상의 경우 13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로 구성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가능한한 다양한 직종과 직업교육과정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 (3)性に 대한 숫적 비례를 고려하여 대표한다.

제 63 조 선거규정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비밀, 직접, 공동선거로 선출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자 임기 종료 최소한 8주전에 경영위원회는 선거위원회와 그 의장을 위촉한다.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거에는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 동조 제6항 제1문 후절, 동조 제7항과 제8항, 제16조 제1항 제6문, 제18조 제1항 제1문, 동조 제3항,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
- (3) 경영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늦어도 6주전에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선거위원회가 제18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제16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 제18조 제1항 제2문이 준용되며, 청소년 피고용자에 의하여 노동법원에 제소한다.

제 64 조 선거일시, 임기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정기 선거는 2년마다 10월1일부터 11월 30일전에 실시된다. 이 시기 이외의 선거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와 동조 제3항이 준용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선거 결과의 공시일부터 또는 이 시기에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결성되어 있으면 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늦어도 당해년도 11월 30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13조 제3항 제2문의 경우 임기는 늦어도 11월 30일에 종료된다.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새선거 결과의 공시와 동시에 임기는 종료된다.
- (3)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임기중에 만25세가 되는 경우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날때 까지 대표직을 계속된다.

제 65 조 업무수행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에게는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1항과 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와 제41조가 준용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제29조가 준용된다. 이 회의에는 경영위원회 의장 또는 그 수임자가 참석할수 있다.

제 66 조 경영위원회 의결의 연기(Aussetzung)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다수가 경영위원회 결의내용이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의 중요한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인정되면(erachten), 신청하여 이 결의를 1주간 연기 해야 한다. 이기간 동안 가능하면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도움을 얻어 이해 하도록 노력할수 있다.

- (2) 1차 결의가 가결되면 연기 신청은 반복될수 없다. 이는 제1차 결의가 일부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

제 67 조 경영위원회 회의 참석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모든 경영위원회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한다.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면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참여권을 지닌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위원회의 포괄적 의결이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 투표권이 있다.
- (3)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위원회에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 관한 사안과 이에 대한 참고진술을 위하여 다음 의사 일정에 이를 채택하도록 신청할수 있다.

제 68 조 공동대화에 참여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공동대화에 특히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를 출석시킨다.

제 69 조 면담시간 (Sprechstunden)

원칙적으로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근무시간중 면담시간을 설정할수 있다. 일시와 장소는 경영위원회와 경영자간에 합의한다. 제39조 제1항 제3문과 제4문, 동조 제3항이 준용된다.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면담시간에는 경영위원회 회장 혹은 위임된 위원이 조언을 위하여 참석한다.

제 70 조 일반 임무

- (1)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임무를 지닌다:

1.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 관한 조치로서, 특히 직업교육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위원회에 신청할 내용;
 2.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법령, 안전사고 보호규정, 단체협약 및 경영합의에 대한 이행의 감독(zu wachen);
 3.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의 제안(Anregung)을 수용하여, 특히 직업교육 관련문제, 그것이 정당한 경우 경영위원회에 해결을 촉구한다.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관련된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에게 협상의 진행과 상태와 결과를 보고한다.
- (2) 임무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포괄적으로 보고한다(unterrichten).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위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수 있다.

제 71 조 청소년 및 피교육자 총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경영총회 전 또는 후에 경영위원회가 동의하면 청소년 및 피교육자 경영총회를 소집한다. 경영위원회와 경영자의 동의아래 청소년 및 피교육자 경영총회는 다른 시기에도 소집될수 있다. 제43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 제44조 내지 제46조, 제65조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 2 절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제 72 조 설치조건, 위원수, 투표단위

- (1) 한기업내에 다수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가 성립되어 있으면,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를 설치한다.
- (2) 종합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에는 각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에서 1 인씩의 위원을 파견한다.
- (3)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위원을 대체 할 보충위원을 위촉하고 그 승계 순서를 확정한다.

- (4) 단체협약 혹은 경영합의를 통하여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위원 수는 제2항과 달리 규정할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종합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20인 이상의 위원이 소속하고, 제4항에 따른 임을 규칙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종합 경영위원회와 경영자 사이에 종합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위원수에 대한 경영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 합의서에는 한 기업체내의 다수 경영체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들이 지역 또는 동일 유형의 이익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에 위원을 파견 하도록 규정한다. 제1문은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소환과 보충 의원의 위촉에도 적용한다.
- (6) 제5항의 경우 합의가 체결되지 아니하면 종합기업을 위하여 설치된 합의처가 결정한다. 합의처의 요구는 경영자와 종합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 한다.
- (7) 개별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위원은 자신을 파견한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교육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수만큼의 투표수를 지닌다. 다수 경영체를 위하여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1인을 파견한 경우 자신을 파견한 기업체의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교육자수중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수만큼의 투표수를 지닌다. 다수 위원이 파견된 경우에는 제1문에 따라 투표수를 할당한다.

제 73 조 업무수행과 기타규정의 적용

- (1)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종합경영위원회의 동의 아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종합경영위원회 의장 또는 위임된 종합경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 (2)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에는 제25조 제1항과 제3항, 제26조 제1항 제1문과 동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3항, 제4항, 제6호, 제66조 내지 제68조가 준용된다.

제 4 부 피고용자의 공동 참여와 공동 결정

제 1 절 개 관

제 74 조 공동 노력의 기본 원리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씩 대화시간을 갖는다. 양자는 논란의 문제에 대하여 순수한 의지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며 의견상충의 조정(Beilegung)을 위한 제안을 한다.
- (2)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노동 쟁의(Arbeitskampfe)의 조치는 불허한다. 단체 협상 당사자의 노동 쟁의는 이 원리에서 제외된다.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경영체의 평화 또는 생산과정에 영향을 줄 활동을 중단한다. 양자는 각자 경영체내에서 정당, 정치적 활동을 중지한다. 경영체 또는 피고용자에 직접 관련되는 단체협약 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유형의 사안에 대한 취급은 이원리에서 제외된다.
- (3) 이법률에 따라 임무를 부여 받는 피고용자는 이원리를 통한 자신의 노조를 위한 활동을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 75 조 경영 소속인의 취급을 위한 원칙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경영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법률과 정당성의 기본원리에 따라 취급하며, 특히 출신, 종교, 국적, 혈통, 정치적 또는 노조활동 혹은 고용 혹은 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가에 대하여 감시하며, 피고용자가 정해진 연령층을 초과한 것을 이유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경영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 76 조 합의기구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 종합경영위원회 또는 연합 경영위원회간에 의견 상충 조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합의 기구를 구성한다. 경영합의에 의하여 상설 합의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 (2) 합의기구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가 위촉한 동수의 배석원(Beisitzer)으로 구성하며, 양자간에 합의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의 의장을 둔다. 의장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노동법원에 위촉한다. 노동법원은 배석원 수에 관하여 거부한 경우에도 판결한다.
- (3) 합의기구는 구두심리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결(Beschlussfassung)에 있어서 의장은 1차 투표에서는 기권한다(sich enthalten). 다수결에 실패하면 2차 투표에서는 의장이 참여한다. 합의치의 의결은 문서로 작성되며 의장이 서명하며 경영자, 경영위원회에 인도한다.
- (4) 경영 합의를 통하여 합의기구에 제기 되기 전에 다른 개별 사안의 과정도 규칙을 정할수 있다.
- (5) 합의기구의 요구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하는 경우 합의기구는 어느 한쪽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한편에서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편에서 임명한 위원이 사전에 초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때에는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합의기구는 경영체와 공정한 척도에 따른 관련 피고용자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고려하에 의안을 결정한다. 적정선의 초과는 경영자 또는 경영위원회가 의결의 통보후 2주내에 노동법원에 적용토록 한다.
- (6) 기타 양측이 신청하거나 또는 활동할것을 이해한 경우에만 합의기구가 행동한다.
- (7) 다른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소송은 합의기구의 요구를 통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 (8)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명시된 합의기구 대신 단체협약상의 조정

기구를 들수 있다.

제 76a 조 합의기구 비용

- (1) 합의 운영의 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한다.
- (2) 합의기구 배석원은 경영체 소속원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된다. 합의기구는 경영자와 종합경영위원회 혹은 큰체큰 기업경영위원회간의 의견 상충의 조정을 위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제1문은 기업의 경영체 혹은 큰체큰 기업에 소속한 배석원들에게도 적용된다.
- (3) 제2항에 언급된 인사가 아닌 합의기구의 배석원과 의장은 경영자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비용의 규모는 제4항 제3문 내지 제5문에 따른다.
- (4)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법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 비용 규정에는 최고액을 확정해야 한다. 비용에는 소모된 시간, 분쟁의 어려움 및 최고액의 확정에는 합의기구 위원과 경영자의 정당한 이익이 계상되어야 한다.
-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규정은 단체협약에서 허용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경영합의와 다를수 있다.

제 77 조 공동결의와 경영합의 실행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는 합의기구의 청구에 관한한 경영자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는 개별 사안에서 다르게 합의되어도 같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의 운영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 (2) 경영합의는 경영위원회와 경영자간에 체결 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양자가 모두 서명한다. 이는 합의기구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영자는 경영합의서를 정해진 장소에 게시한다.
- (3)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은 임의협상이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규정하였을

경우 이는 경영 합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한 단체협약이 보충 경영합의 체결을 표기하였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경영합의는 직접적이고 강제 적용적이다. 피고용자가 경영합의에 의하여 권리를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포기는 다만 경영위원회의 동의로 가능하다. 이 권리의 상실(Verwirkung)은 제한된다. 제한 실행을 위한 기한은 단체협약 또는 경영합의에서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소멸 시효(Verjährungsfristen)에서도 같다.
- (5) 경영 합의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3개월간 공시한다.
- (6) 경영합의의 경과후 합의기구의 청구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할수 있는 기회에 대한 규칙은 다른 협정이 있을때까지 유효하다.

제 78 조 보호규정

경영위원회, 종합경영위원회, 큰체른 기업 경영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종합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경제위원회, 선생대표, 해상경영대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피고용자 대표, 합의기구, 임울협상 중재기구(제76조 제8항) 그리고 경영체내 고충 처리기구(제86조)의 위원의 활동은 제한 되거나 방해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이들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거나 불리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의 직업적 발전에서도 같다.

제 78a 조 특별경우에 있어서의 피교육자 보호

- (1) 경영자는 피교육자 중에서 청소년및 피교육자 대표, 경영위원회, 선상 또는 해상 경영체의 대표를 지낸 경영위원회 위원을 직업교육과정의 졸업후 평생 고용의 뜻을 갖지 않았다면 수료 3개월 전에 이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피교육자에게 직업교육수료 3개월 내에 문서로 경영자로 부터 계속 취업을 요구하면, 피교육자와 경영자간에는 직업교육

이 끝난후 평생(unbestimmte Zeit) 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지닌다. 이 고용관계에는 특히 제37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직업교육 관계가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경영위원회, 선상대표 혹은 해상 경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난후 1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4) 경영자는 늦어도 직업교육관계 종료 2주전에 노동 법원에 다음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되는가 여부의 확정
 2.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미 성립된 고용관계가 모든 상황에서 고려되어 계속 취업을 짐작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로 해지 하고자 할 때, 경영위원회, 선상대표, 해상 경영,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위원 중 여기에 해당되는자 등이 노동법원에 제소된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은 경영자가 제1항에 자신의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제 79 조 비밀 유지 의무

- (1) 경영위원회 위원과 보충의원은 자신들의 임기중에 공시되었고 경영자로부터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는 경영 위원회 위원직 사퇴후에도 적용된다. 이 의무는 경영위원회, 연합경영위원회, 선상 대표, 해상경영위원회, 감독위원회내의 피고용자 대표, 합의기구의 심사과정, 임울 협상 중재 위원회, 또는 경영체내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은 종합경영위원회, 콘체른 기업경영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상대표, 해상경영위원회,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형성된 피고용자 대표, 합의기구, 임울협상 조정위원회, 경영체내 고충처리위원회, 노조대표, 경영자 협회에도 준용한다.

제 80 조 일반의무

(1) 경영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피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률, 법령, 안전사고 보호규정, 단체협약, 경영합의 사항을 수행하는가의 감독(wachen);
2. 경영체와 종업원(Belegschaft)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경영자에게 신청하는일;
3. 피고용자와 청소년 및 피고용자 대표를 수용하도록 자극하고, 이 자극이 나타나면 경영자와 협상하여 실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일; 경영위원회는 해당 피고용자에게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 중증 장애자와 기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인사의 적응촉진;
5. 청소년 및 피고용자 대표의 선거준비 및 실행과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피고용자의 요구의 촉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일; 경영 위원회는 청소년 및 피고용자 대표로 하여금 제안과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6. 고령 피고용자의 작업을 촉진 하는 일;
7. 외국인 피고용자의 적응과 외국인 피고용자와 내국 인과의 상호 이해력을 촉진 하는일.

(2) 이 법률에 따른 자신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포괄적으로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범위내에서 종합 경영위원회 혹은 제28조에 따라 형성된 위원회가 급여 지급 명세서를 열람할 권한을 갖는다.

(3) 경영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경영자와의 필요한 합의에 따라 감정인을 고용할수 있다. 감정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79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피고용자의 공동작용과 고충처리권

제 81 조 경영자의 해명의무와 보고의무

- (1) 경영자는 피고용자에게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 활동 유형과 작업과정에의 편성등을 학습시킨다. 경영자는 피고용자에게 작업전에 작업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와 건강위험, 이러한 위험의 예방을 위한 시설과 조치에 대하여 교육한다.
- (2) 작업 영역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용자는 사전에 보고 받는다. 제1항이 준용된다.
- (3) 경영자는 피고용자에게 기술시설, 작업과정, 작업진행 또는 작업장의 계획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자신들의 작업장, 환경, 자신의 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관하여 교육시킨다. 피고용자의 임무가 변경되거나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적인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즉시 경영자는 피고용자와 함께 경영체 내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미래의 요구에 적응시킬 것인가를 강구해야 한다. 이 노력에는 피고용자가 경영위원회 위원을 동반할 수 있다.

제 82 조 피고용자의 청취권과 변론권

- (1) 피고용자는 자신들에게 관련되는 사안에 관하여 경영체 조직의 규준에 따라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2) 피고용자는 자신의 임금에 관한 계산과 구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체내에서 직업적 발달의 가능성과 능력 평가를 설명들을 수 있다. 피고용자는 경영위원회 위원을 대동한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피고용자로 부터 개별의 경우 의무를 연관시키지 아니하였어도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제 83 조 인사 서류 열람

- (1) 피고용자는 자신의 인사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용자는 이에 경영위원회 위원을 대동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인사서류 내용에 대하여 피고용자로부터 개별 사안의 경우 이 의무와 연관시키지 아니 하였어도 침묵을 지켜야 한다.
- (2) 인사서류에 대한 내용을 위한 피고용자의 해명서는 피고용자 요구에 따라 첨부되어야 한다.

제 84 조 고충 청구권 (Beschwerderecht)

- (1) 모든 피고용자는 경영체내의 현 위치에서 경영자 혹은 경영위원회에 피고용자로서 손해를 입거나 혹은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침해를 느끼는 경우에는 고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경영자는 고충 처리에 관하여 이 고충이 정당하면 돕기 위하여 피고용자에게 상세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 (3) 고충 청구로 인하여 피고용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제 85 조 경영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

- (1) 경영위원회는 피고용자의 고충이 정당한 경우 경영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대신한다.
- (2) 경영위원회와 경영자간의 고충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성립되면 경영위원회는 합의기구에 위촉한다. 합의기구의 요구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한다. 이는 고충대상이 법률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6 조 보충합의

단체협약 혹은 경영 합의를 통하여 고충처리과정의 개별 사안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는 제85조 제2항의 경우 합의기구 대신 경영고충처리 기구

로 대체할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 절 사회복지 (Soziale Angelegenheiten)

제 87 조 공동결정권 (Mitbestimmungsrechte)

(1) 경영위원회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상 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안을 공동결정한다:

1. 경영체내에서 경영 질서 및 피고용자의 행동에 관한 문제;
2. 일일 작업 시작과 종료 및 휴식시간, 주간의 일일 작업시간 배당;
3. 경영에 요구되는 작업시간의 일시적 연장 혹은 단축;
4. 임금 지급의 장소 및 시간;
5. 휴가의 기본 원리와 계획 수립, 경영자와 관련 피고용자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개별 피고용자의 휴가 일자;
6. 피고용자의 작업상태를 감독해야 하는 기술시설의 사용과 운영;
7. 산재보호에 관한 규칙 및 안전사고 보호규정과 법률규정의 범위에 있는 건강보호;
8. 경영체, 기업체 혹은 콘체른 기업체에 제한된 사회적 시설의 형태, 장비 시설 및 운영;
9. 고용 관계 성립에 따라 고려된 피고용자가 입주하고 있는 사택의 임대관계, 사용조건의 확정등;
10. 임금결정의 문제, 특히 임금지급기준의 설정과 새로운 임금 지급방법의 적용과 시행 및 개정;
11. 도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의 확정, 능력급 수당과 그 재원;
12. 경영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의 원리 등.

(2) 제1항에 따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체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요청은 경영자와 경영 위원회의 합의로 대체한다.

제 88 조 임의 경영 합의

경영합의를 통하여 특별히 규정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산재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2. 경영체 또는 기업 혹은 콘체른 기업에 한정된 사회복지 시설과 그 사용 범위
3. 자산 형성 촉진을 위한 조치

제 89 조 노동보호

- (1) 산재 예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경영위원회는 노동 보호를 위한 관할 관청, 법적사고보험 설립자, 기타 관련 기구들에게 안내, 자극, 조언을 통하여 보호하고 노동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의 실행을 정착시킨다.
- (2) 경영자와 제1항에 명시된 기구들은 경영위원회 혹은 경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노동보호와 사고예방에 관련하여 검증, 질의 및 사고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에 즉시 노동보호와 사고 예방에 관련된 제1항에 명시된 기구들의 임무와 규정을 통보한다.
- (3) 제국보험규정 제719조 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 혹은 안전수입 기구와 경영자간의 회의에는 경영위원회에서 파견한 위원이 참석한다.
- (4) 경영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참가한 회의와 검증과 조사에 관한 문서를 보관한다.
- (5) 경영자는 제국보험규정 제1552조에 따라 경영위원회가 서명한 사고 공시에 관한 사본 1부를 경영위원회에 수교한다.

제 4 절 작업장, 작업과정, 작업환경의 형성

제 90 조 교육권 (Unterrichtungsrechte) 과 조언권 (Beratungsrechte)

- (1)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

육한다(unterrichten);

1. 공장, 사무실 및 기타 경영 시설 공간의 신·개축 및 확장
 2. 기술 설비
 3. 작업과정과 작업진행
 4. 작업장
- (2)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와 함께 피고용자를 위한 계획된 조치와 그 작용, 특히 작업의 유형과 이에 따른 피고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사전에 조언하고 경영위원회의 제안과 건의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경영 위원회는 이에 노동의 인권적 형성에 관한 안전한 노동과학적 지식을 참고해야 한다.

제 91 조 공동결정권

인권적 형성에 관한 안전한 노동 과학적 지식에 증대한 침해가 되는 작업장, 작업과정 및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고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경영위원회는 부담의 보상, 감소 또는 제거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요구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한다.

제 5 절 인사업무

제 1 소절 일반인사업무

제 92 조 인사기획

- (1)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에게 인사기획, 특히 현재와 미래의 인력수요, 이에 따른 인사조치, 직업 교육조치등을 근거 서류를 통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교육한다.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유형, 위험 예방에 대하여 상호조언 한다.
- (2)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에게 인사기획과 그 실행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제 93 조 고용공고 (Ausschreiben von Arbeitsplätzen)

경영위원회는 신규 채용할 인력에 대하여 채용전 경영체 내에서의 인력의 일반적 혹은 특정 유형을 공고 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4 조 개인 질문서, 평점원칙

- (1) 개인 질문서는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 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결정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로 대체한다.
- (2) 제1항은 경영에 참고할 문서화된 노동계약서의 인적 사항을 위하여 적용되며, 일반적인 평점원칙의 진술에 사용된다.

제 95 조 선발기준

- (1) 임용, 전보, 전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인사선발에 관한 기준(Richtlinien)은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기구에서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요청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로 간주한다.
- (2)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영체에서는 경영위원회가 제1항 제1문의 조치에 있어서 주의할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조건과 사회적 관점에 관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할수 있다.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요청은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로 대체한다.
- (3) 이 법률상의 전보는 1개월 이상 타 근무영역으로 옮기거나 혹은 상황의 주요 변경을 의미한다. 피고용자가 자신의 노동 관계의 특성에 따라 고정된 작업위치를 가지지 아니하고 근무할때에는 이 해당 작업장 결정을 전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2 소절 직업교육

제 96 조 직업교육 촉진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경영상의 인사기획의 범위내에서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촉진 관련 관청과 협조하여 피고용자의 직업교육을 촉진한다.
- (2)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경영상 불가피성의 고려하에 피고용자를 경영체내 또는 경영체외의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고령 피고용자의 요구도 고려한다.

제 97 조 직업교육조치와 시설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시설의 장비와 설비, 경영내 직업교육과정의 시행, 경영체외 직업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언한다.

제 98 조 경영체내 교육과정의 실행

- (1) 경영위원회는 경영체내 직업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 공동결정한다.
- (2) 경영위원회는 경영체내 직업교육실행을 위하여 위임된 인사의 임용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성적 또는 전문적 자질, 특히 직업교육 및 노작 교육학적 특징을 직업교육법적 의미내에서 갖추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의 소환을 요구 할 수 있다.
- (3) 경영자가 직업 교육 조치를 실행하거나 혹은 경영체로부터 직업 교육에 참여를 위하여 피고용자를 자유케 하거나 혹은 이러한 조치에 피고용자가 참여 하는데 생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 경영위원회는 피고용자의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를 위하여 제안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제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경영자와 경영 협의회간의 합의를 대체한다.

- (5) 제2항의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는 노동법원에 신청하여 경영자가 임용을 취소하거나 소환을 실행케 한다. 경영자가 유효한 법원 결정에 반하여 임용시키면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의 신청으로 노동법원으로부터 사전 경고성 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최고액은 20,000 마르크이다. 경영자가 유효한 법원 판결에 반하여 소환을 행하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의 신청으로 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경영자는 소환을 위하여 벌금(Zwangsgeld)을 부과 한다; 벌금 최고액은 1일당 500마르크씩 계산한다. 직업교육 질서에 관한 직업 교육법 규정은 침해하지 아니한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은 경영자가 경영체내에서 기타 교육조치를 실행하면 적절히 준용한다.

제 99 조 인사에 관한 개별 조치에 있어서의 공동결정

- (1) 20인 이상의 유권 피고용자를 고용한 경영체의 경영자는 모든 임용, 직종, 직종변경 및 전보에 대하여 경영위원회에 교수하고, 요청되는 지원 양식을 제시하며 관련 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에 필요한 문서와 함께 계획된 조치의 작용에 관하여 제시하며 경영위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용과 전보에 있어서 경영자는 특히 기대되는 작업장과 계획된 직종화를 통보한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공개된 인사관계의 인사조치의 범위 그리고 신뢰로운 행동에 따라 그 내용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피고용자의 사안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79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이 준용된다.
- (2) 경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동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법률, 법령, 사고보호규정, 단체협약 규정, 경영합의, 법원판결 또는 관할청의 훈령에 충돌하는 인사조치의 경우;
 2. 제95조의 기준에 반하는 인사조치;
 3. 경영체내에 근무하는 피고용자를 해고한 결과로 사실적으로 성립된

- 염려 또는 기타 손해로서 경영 또는 인사원리에 어긋나는 인사 조치;
4. 피고용자로서 개인 또는 경영체와 관련된 이유로 정당하지 못한 인사 조치를 당하여 관련 피고용자가 손해를 보았을때;
 5. 제93조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가 경영체내에서 중지되어 있거나;
 6. 인사조치를 위하여 기대하고 인지한 지원자 또는 피고용자가 법률 위반적 행위 혹은 제75조 제1항에 담긴 기본원리를 명백히 위반하여 산업 평화가 깨짐으로서 사실적으로 성립될 염려가 있을때.
- (3) 경영 위원회는 교수후 1주내에 사유와 함께 문서로 통지할 경우 동의를 거부할수 있다. 경영위원회가 경영자에게 동의 거부 의사를 정해진 기간내에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는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제 100 조 임시인사조치

- (1) 경영자는 사안으로보아 긴급을 요할때 제99조 제1항 제1문의 인사조치는 경영위원회가 의사 표시를 하거나 동의를 거부하기전에 임시 인사조치 할수 있다. 경영자는 피고용자에게 법률 관련 조항과 사안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 (2) 경영자는 임시 인사 조치에 대하여 지체없이 경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사안적 이유에서 어떤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경영위원회가 제소하면 경영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경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경영자가 3일내에 노동법원에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보충과 확정을 신청하여 조치가 사안적 특성상 긴급을 요하게 된 사실을 통보하면 임시 인사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 (3) 법원이 유효한 판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보충을 거부하면 임시인사 조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것으로 확정되며 임시조치는 2주내에 유효한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이 시점부터 임시인사조치는 유지될수 없다.

제 101 조 과 료

경영자가 임시인사조치를 제99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경영위원회의 동의없이 실행하거나 또는 제100조 제2항 제3문 또는 제3항에 반하여 임시인사 조치를 행하면 경영위원회는 노동법원에 신청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임시인사조치를 취소토록 한다. 경영자가 유효한 법원 판결에 반하여 임시인사조치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가 노동법원에 신청한 조치 취소를 위한 과료를 지불해야 할것을 인지해야 하다. 과료의 최고금액은 500 마르크이다.

제 102 조 해고에 있어서의 공동결정

- (1) 경영위원회는 모든 해고에 대하여 사전에 청문해야 한다. 경영자는 해고의 사유를 통지한다. 경영위원회의 청문 없이 행해진 해고는 무효이다.
- (2) 경영위원회는 합법적 해고에 반하는 의사가 있으면 사유제시하에 경영자에게 1주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해고 동의는 통보된것으로 간주한다. 경영위원회는 특별 해고에 반하는 의사가 있으면 사유 제시하에 경영자에게 3일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전에 해당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제99조 제1항 제3문이 준용된다.
- (3) 경영위원회는 제2항 제1문의 기한내에 합법적 해고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
 1. 경영자가 해고 당사자의 선택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5조의 기준에 충돌하는 경우,
 3. 해고 당사자가 경영체내 다른 부서 또는 기업내 다른 경영체에서 계속 복무할수 있는 경우,
 4. 해고 당사자가 재교육 또는 전직교육을 통하여 계속 고용이 가능한 경우,

5. 해고 당사자와의 고용계약이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경우,
- (4) 경영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경영자가 해고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한 해고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5) 경영위원회가 합법적 해고에 대하여 사전에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용자는 해고 보호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하여 고용 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면 경영자는 해고 고지 경과후 유효한 법률 투쟁의 종료시까지 변화없는 작업 조건에 따라 계속 고용해야 한다. 경영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당 피고용자를 제1문에 따른 계속 고용을 위한 의무로부터 다음의 경우 가처분에 따라 면제 한다:
1. 피고용자의 고소가 충분한 승소의 가망없이 성공을 희망하거나 고의적으로 보이는 경우
 2. 피고용자의 계속 고용이 경영자에게 불투명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
 3. 경영위원회의 청구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경우.
- (6)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해고가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의견 충돌의 경우 동의를 미제출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합의기구가 결정한다는 것을 합의한다.
- (7) 해고 보호법과 근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영위원회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제 103 조 특별경우의 특별 해고

- (1) 경영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대표, 선상대표와 해상경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별 해고는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경영위원회가 동의하기를 거부하면 경영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정당한 해고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노동 법원에 이를 보전한다. 노동법원에 제기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고용자는 관계자가 된다.

제 104 조 경영교란 피고용자의 격리

한 피고용자가 반법률적 행동 혹은 제75조 제1항에 포함된 기본원리의 중대한 침해로 반복하여 경영체 안정을 교란하면,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에게 해고 혹은 좌천 토록 요구할수 있다. 노동법원이 경영위원회의 신청을 수용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해고나 좌천을 통지하며, 경영자가 유효한 법원 판결에 반하여 해고나 좌천을 명하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법원으로부터 경영자에게 해고나 좌천의 실행을 위하여 과료를 부과한다. 부과료의 규모는 이행할때까지 1일 최고 500마르크이다.

제 105 조 간부사무직종사자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간부사무직종사자의 의도적 임용 혹은 인사 조치는 사전에 경영위원회에 통지한다.

제 6 절 경제적 사안

제 1 소절 경제적 사안에 대한 교육

제 106 조 경제위원회 (Wirtschaftsausschuss)

- (1) 100인 이상 상주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에는 경제 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경제위원회는 경제적 사안에 관하여 경영자와 함께 조언하고 경영위원회를 교육한다.
- (2)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과 영업 비밀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는 범위와 그 결과에 따라 일어난 인사계획에의 작용을 표현한것이 아닌 범위내에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관련 서류를 갖추 경제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이 규정의 의미상 경제적 사안에 속하는 내용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경제 및 재정상태
 2. 생산 및 판매 상태

3. 생산 및 투자 프로그램
4. 경영 합리화 계획
5. 제조 및 작업방법, 특히 새로운 작업방법의 실행
6. 경영체의 운영제한 또는 휴업
7. 경영체의 이전
8. 경영체의 합병
9. 경영조직 또는 경영 목적의 변경
10. 피고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타 계획 또는 절차

제 107 조 경제위원회의 위촉과 구성

- (1) 경제위원회는 기업내 소속인 최소 3인, 최고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경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경제위원회 위원에게는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사무직 종사자도 선출될수 있다. 위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성적 특성을 자녀야 한다.
- (2) 경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경영위원회 임기와 같다. 단일 종합경영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위원의 임기는 이 경우 대다수의 종합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와 같다. 경제위원회 위원은 항상 소환될 수 있다. 소환에는 제1문과 제2문이 준용된다.
- (3) 경영위원회는 위원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경제위원회의 임무의 일부를 하나의 별도의 경영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다. 별도의 경영위원회의 위원수는 경영위원회 위원수보다 많아서는 아니된다. 경영위원회는 제5조 제3항에 언급된 동수의 간부급 사무직 종사자를 포함하여 별도로 피고용자를 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초빙할수 있다. 의결원칙은 제1문과 같다. 제3문에 명시된 별도 위원의 침묵의 의무는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문내지 제2문에 따른 결의의 이의제기와 변경은 제1문내지 제3문에 따른 의결과 같이 다수결이 요구된다. 기업내에 단일 종합 경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이위원회는 경제위원회의 임무의 기타

사안에 결정한다. 제1문 내지 제5문이 준용된다.

제 108 조 회 의

- (1) 경제위원회는 월1회 회의를 개최한다.
- (2) 경제위원회의 회의에는 경영자 또는 그 대표가 참석한다. 경제위원회는 경영체내의 조예가 깊은 피고용자 또는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간부사무직 종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참여자와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침묵의 의무는 제80조 제3항이 준용된다.
- (3) 경제위원회 위원은 제106조 제2항에 제시된 서류를 열람할수 있다.
- (4) 경제위원회는 모든 회의에 대하여 경영위원회에 지체없이 완전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연말결산은 경영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위원회에 설명되어야 한다.
- (6) 경영위원회 또는 종합경영위원회가 경제위원회 임무의 기타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면 이는 제1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된다.

제 109 조 견해차이의 조정 (Beilegung)

제106조의 의미에서 경영체의 경제적 사안에 관한 안내에 대하여 경제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일내에 또는 충분하지 못하게 통보하여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는 결정에 참고 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수 있다. 제80조 제3항 제2문이 준용된다. 경영위원회 혹은 종합경영위원회가 경제위원회의 임무의 기타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면 제1문이 준용된다.

제 110 조 피고용자의 학습

- (1)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는 정기적으로 연말에 사전에 경제 위원회 혹은 제107조 제3항에 명시된 기구와 경영위원회와 합의후 경영체

의 발전과 경제적상태를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2) 제1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최소한 20인 이상을 고용한 경영체는 제1항의 조치가 적용되며 다만 구두로 보고한다. 이 경영체에 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경영위원회와 합의후에 보고한다.

제2 소절 경영 변경

제111 조 경영 변경

원칙적으로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영체에서 경영자는 종업원에게 주요 손해가 가거나 종업원 대부분에게 손해의 결과가 될수 있는 경영 변경 계획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에게 사전에 충분히 보고해야 하며, 계획된 경영 변경을 경영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 제1문에서의 주요 경영 변경이란 다음과 같다:

1. 경영전체 또는 일부분의 운영 정지와 운영 제한
2. 경영전체 또는 일부분의 이전
3. 타 경영체와 통합
4. 경영조직, 경영목적 혹은 경영시설의 기본적 변경5. 새로운 작업방법과 완성과정의 실행

제112 조 경영변경과 사회계획에 관한 이익보상 (Interesseausgleich)

- (1)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에 계획된 경영변경에 관한 이익보상을 체결하면 문서로 작성되고 양자가 서명한다. 이는 경제적 손해에 관한 보상의 합의 혹은 경감에 대해서도 같다(사회계획). 사회계획은 경영 합의의 작용을 지닌다. 제77조 제3항은 사회계획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에 계획된 경영변경에 관한 이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경영자나 경영위원회는 주노동청장에게 중재를 의뢰할수 있다. 중재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결과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경영자나 경영위원회는 합의기구에 의뢰한다. 합의기구 의장의 의뢰로

주노동청장을 합의 협상에 참석시킨다.

- (3)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합의기구에 사회계획과 이익보상에 관한 의견 상충의 조정을 위하여 제안해야 한다. 합의 기구는 당사자간의 일치를 모색해야 한다. 합의가 되면 문서로 작성되고 양자와 의장이 서명한다.
- (4) 사회계획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계약에 대하여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한다.
- (5) 합의기구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해당 피고용자의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야 하며 결정에 있어서 기업을 위한 경제적 대표성 역시 관심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를 정당한 평가에 적용시켜야 한다:
 1. 경제적 손해의 경감 또는 보상에는 특히 수익감소, 특별능력급 삭제, 경영체가 지급하는 노령보조금을 위한 상속권, 이사비용 혹은 인상되는 운송비, 능력등 개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사안.
 2. 관련 피고용자의 노동시장적 관점의 고려. 관련 피고용자의 능력을 보아 기업내 또는 큰체인 기업내 경영체에 계속 고용할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의 판단. 타지역에서 가능한 계속 취업이 피고용자 스스로는 해결할수 없는 경우등의 판단.
 3. 합의기구는 사회계획 급부의 총액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존속 혹은 경영 변경 실시후 가능한 일자리가 손실을 가져오지 아니하는가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제 112a 조 인력감축과 신규설립에 있어서의 강제 사회계획

- (1) 제111조 제2문 제1호의 의미내에서 계획된 경영변경이 피고용자의 해고를 불가피하게 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제112조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1. 원칙적으로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피고용자중 20% 이상이 정규직

- 인 경우, 그러나 최소한 6인 이상,
2. 원칙적으로 60인 이상 250인 이하의 피고용자중 20% 이상이 정규적인 경우, 그러나 최소한 37인 이상,
 3. 원칙적으로 250인 이상 500인 이하의 피고용자중 15% 이상이 정규적인 경우, 그러나 최소한 60이상,
 4. 원칙적으로 500인 이상의 피고용자중 10% 이상이 정규적인 경우, 그러나 최소한 60인 이상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해고는 경영변경의 이유로 고용계약 해약을 바탕으로 경영자에 의하여 피고용자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해당된다.
- (2) 제112조 제4항과 제5항은 기업이 창업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콘체른 기업 또는 기업이 법률적인 구조변경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업의 시점에 대한 기준은 영업을 개시하여 납세법 제138조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한 날로 한다.

제 113 조 불이익 보상

- (1) 경영자가 계획된 경영변경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유없이 회피하면 그로인하여 해고되는 피고용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고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한다.
- (2) 제1항에 따라 위반의 결과로 피고용자가 다른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면 경영자는 이 불이익에 대하여 12개월간 보상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경영자가 제111조에 따라 계획된 경영변경을 시행하여 손해보상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피고용자를 해고 하였거나 혹은 피고용자가 기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5 부 개별 경영 유형에 대한 특별규정

- (1) 해운업체와 그 경영체는 이 절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률이 적용된다.

- (2) 이 법률에서의 해운업체는 상업해운이며 그 소재지를 이법률의 유효영역내에 지닌 업체이다. 해운업체는 또한 선박관리인(Korespondentreeder), 계약선주(Vertragsreeder), 선원배치자(Ausrüster) 혹은 유사한 선박관련 업자로서 선장이 경영자이거나 또는 경영자가 선원이거나 혹은 거의 모든 명령권을 지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 (3) 이 법률에서 해운업은 해운업체와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선박의 전체를 뜻한다.
- (4) 이 법률에서의 선박은 상업선박이며, 선박법에 따라 연방기를 게양한 선박이다. 선박중 기항에서 출항후 24시간내에 회항하는 선박은 해운업체의 육지경영(Landbetrieb)의 일부로 간주한다.
- (5)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는 다만 해운업체의 육지경영을 위해서만 결성된다.
- (6) 선원위원은 선원법 제3조에 명시된 인사이다. 이법 제5조 제3항의 간부사무직 종사자는 선장뿐이다. 노동직과 사무직종을 위한 선원위원의 규정에는 선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와는 달리 이법 제6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 115 조 선상 대표

- (1) 최소한 유권자 5인과 피선거권자 3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에서는 선상대표를 선출한다. 이법과 기타 다른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상대표에게는 경영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지위와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선거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기준과 함께 적용한다.
 1. 선거권은 선원 모두가 가진다.
 2. 피선거권은 연방기를 게양한 선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당일 만 18세가 된 선원이 가진다. 제8조 제1항 제3문은 계속 유효하다.

3. 선상대표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유권선원 승선의 선박에서는 1인, 21인 이상 75인 이하의 유권선원 승선의 선박에서는 3인, 75인 이상의 유권선원 승선의 선박에서는 5인 이다.
 4. 1인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제10조 제2항과는 달리 소수직종의 경우에는 75인까지 1인, 7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인의 대표를 둔다.
 5.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상대표는 임기가 끝나가기전 제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
 6. 유권 선원은 24시간내에 대표선출을 실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할수 있다.
 7. 제16조 제1항 제1문에 명시된 기한은 2주를, 제16조 제2항 제1문에 명시된 기한은 1주를 단축한다.
 8. 선상대표가 사전에 선거위원장을 위촉하지 못하거나 혹은 선상 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면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된다. 합법적 선박경영의 정상화를 이유로 선박총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 선장은 유권자 3인의 신청으로 선거위원회를 위촉할수 있다. 선장이 선거위원회를 결성하지 아니하면 해운경영위원회는 선거위원회 결성권을 가진다. 노동법원에 의한 선거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선원을 위한 선거소송의 기한은 선박이 선거결과를 공시한후 이법을 유효영역내의 항구 혹은 해운국 소재지의 항구에 기항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선거 소송은 해운국에 조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선박대표 선거가 피소되면 해운국은 선박에 있는 모든 선거서류를 회수한다. 소송문서와 관계 선거 서류는 해운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노동법원에 이관된다.
- (3) 선상대표의 임기에는 제21조 내지 제25조가 다음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1. 임기는 1년이다.
 2. 선상대표 위원은 선원으로서의 선박근무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

이는 선박근무가 제1항에 의한 임기 전에 끝난 경우에도 같다.

- (4) 선상대표의 업무 수행에는 제26조내지 제36조,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내지 제41조가 적용된다. 제40조 제2항은 선박업을 위하여 설치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청구할수 있는 조치로 적용할수 있다.
- (5) 경영 총회에 관한 제42조 내지 제46조는 한 선박의 선박총회에도 준용한다. 선상 대표의 청구로 선장은 선박총회에 항해에 대한 보고와 그와 관련된 사안을 보고 해야 한다. 선박경영, 선박항해 및 선박 안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 (6) 종합경영위원회와 콘체른 기업 경영위원회에 관한 제47조내지 제59조는 선박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피고용자의 공동결정과 참여에 관한 제74조내지 제105조는 선박대표에 관련하여 다음규준과 함께 적용한다:
 1. 선상대표는 항상 이법에 따른 경영위원회의 공동결정과 공동 참여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선박의 선원 또는 선박경영 그리고 그 규칙이 선장에게 법규정으로 위임되거나 선박업 규정에 따른 권한에 부여된 사안을 취급할 수 있다.
 2. 선장과 선상 대표간에 선상대표의 공동참여 및 공동결정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안은 선상대표에 의하여 해상경영위원회에 넘겨진다. 해상경영 위원회는 선상대표에게 사안의 계속 취급을 통보한다. 선상 대표와 선장은 다만 해상 경영위원회가 선출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만 노동법원 혹은 합의기구에 위임할수 있다.
 3. 선상대표와 선장은 자신들의 관할 범위내에서 선박합의를 결정할수 있다. 선박 합의 규정은 선박 합의에 적용한다. 선박 합의는 해상 경영위원회와 경영자 사이에 경영합의를 통하여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4. 선상대표의 공동참여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상대표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의 합법적 경영의 기강이 긴급히 요할 때에는 임

- 시 규칙을 행사할수 있다. 명령을 받은 선원에게는 규칙의 임시성을 공고한다. 최종 규칙에 임시 규칙이 적절치 아니하면 해운업체는 임시규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5. 선상대표는 선박경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요구되는 근거 서류는 선상대표에게 제시된다. 선박경영에는 특히 선박안정성, 항해코스, 계획된 출항및 귀항 시각과 필요한 화물등이 속한다.
 6. 선상대표의 요구에 따라 선장은 선박일지를 열람시킬수 있다. 선상대표의 공동결정과 공동 참여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장이 사안에 대한 기재를 하면 선상대표는 이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며, 해명을 향해 일지에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선상대표의 공동참여와 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장과 선상 대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선상 대표은 이를 항해일지에 기입 할것과 그 사본을 요구할수 있다.
 7. 근로 보호법 범위내에서 선상대표의 관할은 공동협조와 선박안전에 관한 관할 관청과 기타 관련 기구에 관련된다.

제 116 조 해상경영위원회

- (1) 해운업체에는 해상경영위원회를 선출한다. 해상 경영위원회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에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경영위원회와 그 위원의 지위,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2) 경영위원회의 임기, 구성, 선거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준과 함께 적용한다.
 1. 해상경영위원회 선거를 위한 선거권은 해운업체에 속하는 모든 선원이 가진다.
 2. 피선거권은 제8조와 다음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 a) 해운업체로서 8척의 선박과 250명의 선원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선될수 있는 선원을 선출한다.
 - b) a)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해운업

체의 육상 경영체에서의 피선거권을 지닌 피고용자를 선출하며, 이는 경영자가 선원의 선출에 합의한 경우이다.

3. 해상경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구성한다: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유권선원 고용업체 1인, 5인 이상 1000인 이하의 유권선원 고용업체 3인, 1000인 이상 유권선원 고용업체 5인4. 소수적종은 제10조 제2항과는 달리 해상경영위원회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500인까지는 1인의 대표를, 500인 이상의 경우는 2인의 대표를 파견한다.
5. 선거 제안은 제4조 제6항 제1문 앞절과 제2문의 경우에는 최소한 3인의 유권 직종소속인 선원, 제14조 제7항의 경우에는 최소한 3인의 유권 선원이 서명하면 유효하다.
6. 제16조 제1항 제1문이 명시된 기간은 3개월, 제16조 제2항 제2문에 명시된 기간은 2개월 연장한다.
7. 선거위원회 위원은 해상업체의 육상 경영체에 근무하는 피고용자도 위촉될수 있다.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운 경영체에 해상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선거위원회는 경영자와 해운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가 위촉한다. 경영자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경영자, 노조, 또는 3인의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법원에 위촉한다. 제16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은 이에 준용된다.
8.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선거 소송기간은 선거결과 공시후 선박이 최초로 이법을 유효 지역내의 항구 또는 해운국이 소재한 항구에 귀항하는 즉시 시작된다. 선거 결과 공시후 3개월이 경과한후에는 선거 소송은 무효이다. 선거 소송은 해운국에 조서로 청구되어야 한다. 소송 청구서는 해운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소송법원에 이관된다.
9. 해상경영위원회 위원은 선원으로 새로운 해상경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와 해상 경영위원회위원이 더이상 선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기가 종결된다. 선원으로서의 특징은 해상경영위원회의 활동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업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3) 경영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제26조 내지 제41조는 해상경영위원회를 위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상경영위원회가 이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상경영위원회는 제33조 제2항과는 달리 위원들이 정당하게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수에 관계없이 출석위원들이 의결할수 있다.
2. 해상경영위원회의 위원이 고유업무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위원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무에 종사한다. 담당 업무는 해상경영위원회 위원의 능력과 지식 및 지금까지의 직업적 직위에 알맞아야 한다. 담당업무는 해상경영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담당 업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경영자와 해상경영위원회간의 합의를 대체 한다.
3. 선원으로서 해상경영위원회 의원에게는 육상 근무의 경우에도 선원급료를 지급한다. 현물급여(Sachbezug)도 적절히 지급한다. 새로운 업무가 높은 가치를 지닐때에는 이업무에 관련된 임금을 지급한다.
4. 지역적 관계에 대하여 해상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선원이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 경영자와 해상경영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양자간에 합의를 대체 한다.
5. 해상 경영위원회는 해상경영체에 속한 모든 선박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115조 제7항 제5호 제1문이 준용된다.
6. 이법률 유효지역내의 항구에 선박이 정박하면 해상경영위원회는 선장의 보고에 따라 선상에서 대화시간을 가지며 선원의 선박총회를 개최한다.
7. 한 선박이 1년내내 이법률 유효지역내의 항구에 귀항하지 아니하면 제5호와 제6호는 유럽의 항구에 적용된다. 북동해협외의 솔로이젠은 항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8.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제6호와 제7호와는 달리, 경영자의 양해로 선상

총회와 대화시간을 다른 항구에서 개최할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합의 기구가 결정한다. 합의기구의 청구는 양자간의 합의를 대체 한다.

- (4) 경영총회에 관한 제42조 내지 제46조는 해상경영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해상경영체를 위하여 해운 경영위원회는 제47조내지 제59조에서 경영위원회에 위임된 임무, 지령 및 의무를 지닌다.
- (6) 피고용자의 공동결정과 공동 참여권에 관한 제74조 내지 제113조는 해상경영위원회에 다음 기준과 함께 적용한다:
1. 해상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공동결정과 공동참여에 관련된 다음 사안에 관하여 이법률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a) 해상경영체의 모든 선상 또는 다수의 선상 또는 해상경영체의 모든 선원 또는 다수의 선원에 관련된 사안,
 - b) 제115조 제7항 제2문에 따라 선상대표에 의하여 제출된 사안,
 - c) 제115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선상대표의 관할이 아닌 사안으로서 제출된 사안.
 2. 해상경영위원회는 해운업체의 선박경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제출되어야 한다.

제2절 항 공

제117조 항공을 위한 적용

- (1) 항공업의 육상업체에 이 법률이 적용된다.
- (2) 항공업의 비행경영체의 근무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대표를 구성할수 있다. 이 대표와 이법률에 따라 설치된 항공기업의 육상경영체의 피고용자의 대표와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단체협약은 이 법률과는 다른 규정을 정할수 있다.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3 절 종교단체와 특수목적 경영체 (Tendenzbetrieb)

제 118 조 특수목적 경영체와 종교단체를 위한 적용

- (1) 다음의 직접적이고 주로 특수목적 기업과 경영체에는 이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적, 연합정당적, 종교적, 사회봉사적, 교육적, 학문적 혹은 예술적 활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업
 2. 경영시설 또는 의사 표현의 목적의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적용을 받는 경영체, 제106조 내지 제1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11조 내지 제113조는 경영변경에 따른 결과로 피고용자에게 생긴 경제적 손실을 감축 또는 보상하는 규칙으로 적용된다.
- (2) 이 법률은 종교 단체와 그 봉사 및 교육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부 벌금 및 규정

제 119 조 경영기본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범죄

- (1) 다음의 경우에는 징역1년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경영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상대표, 해상경영위원회,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에 명시된 피고용자의 대표 선출을 방해 하거나 혹은 명령 또는 위협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보장 및 약속으로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경영위원회, 종합경영위원회, 큰체른 기업경영 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종합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상대표, 해상경영위원회 대표,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표시된 피고용자 대표, 합의기구, 제86조에 명시된 경영 중재위원회 혹은 그 경제 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 하거나 하는 행위.
 3.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또는 대표의 위원 및 대표와 그 보충위원이 자신의 활동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손해 또는 유

리하게 한 행위.

- (2) 행위는 경영위원회, 종합경영 위원회, 큰체른 기업경영위원회, 선박대표, 해운경영위원회, 선거위원회, 경영자 혹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된다.

제 120 조 기밀 침해

- (1) 다음의 자중에서 허가없이 경영자로부터 비밀업무의 필요성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및 영업 비밀을 폭로한자는 1년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경영위원회 또는 제79조 제2항에 명시된 기구의 위원 또는 보충위원,
 2. 노조 또는 경영자 협회 대표
 3. 경영위원회로부터 제80조 제3항에 따라 초빙된 전문가 또는 합의기구로부터 제109조 제3문에 따라 소속된다
 4. 경영위원회로부터 제107조 제3항 제3문 또는 경제위원회로부터 제108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별도로 초빙된 피고용자.
- (2) 피고용자 개인적 삶의 영역에 관한 비밀을 위원 또는 보충 의원으로서 또는 제79조 제2항에 명시된 기구의 위원으로서 필요하여 제공되었고 이법에 따라 비밀유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발설한자도 처벌한다.
- (3) 금품수수와 착복을 목적(Absicht)으로 행동한 범행자는 2년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경영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발설한자도 처벌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은 관련자의 사망후에 발설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5) 범행은 피해자의 청구로 기소된다. 비밀이 개인적 삶의 영역에 관한것일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전 제77조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은 그 가족에게 주어진다. 다른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주어진다. 피해자 사망후에 비밀을 폭로한 범법자에게는 제2문이 적용된다.

제 121 조 벌금 규정

- (1) 제90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92조 제1항 제1문, 제99조 제1항, 제106조 제2항, 제108조 제5항, 제110조 또는 제111조에 명시된 해명 또는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지연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2) 불법성은 20000마르크 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제 7 부 법률 개정**제 122 조 (민법전 개정)****제 123 조 (해고 보호법 개정)****제 124 조 (노동 법원법 개정)****제 8 부 경과 및 종결 규정****제 125 조 이법에 따른 최초의 선거**

- (1) 최초의 경영위원회 위원 선거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1972년 1월에 실시한다.
- (2)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최초 선거는 제64조 제1항 제4문에 따라 1988년에 실시된다. 청소년 대표의 임기는 새로 선출된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의 선거결과 발표와 함께 늦어도 1988.11.30에 종결된다.
- (3) 1988.12.31. 이후 경영위원회가 선출되면 제13조 제1항 제1문과 동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문, 제26조 제2항 제1문,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제3문, 제51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문은 개정된 규정으로 최초로 적용된다.

제 126 조 선거규정 제정에 관한 위임

연방 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제7조 내지 제20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115조, 제116조에 명시된 다음의 선거 규칙을 위하여 법령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1. 선거준비, 특히 선거인 명부작성과 대표수 계산
2.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이에 대한 수정
3. 제안 목록과 이의 제출기한
4. 선거 공고와 공고기간
5. 투표
6. 선거결과 확정과 공고기간
7. 선거서류의 보관

제 127 조 준용 (Verweisung)

다른 규정에서 이 법률로써 폐지 또는 개정되는 규정이 준용되어 있거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본법의 해당규정 또는 용어가 이들을 대체한다.

제 128 조 별도로 성립된 단체협약

1952.10.11. 제정된 경영조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유효한 경영체를 위하여 단체협약에서 경영위원회 설치의 독자성때문에 피고용자의 다른 대표설치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이법률에 의하지 아니한다.

제 129 조 규정의 실효

- (1) (삭제)
- (2) 1952년에 제정된 경영조직법의 폐기되지 않은 규정에 지시된 규정은 그 대신 이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제 130 조 공 무

이 법률은 공법상의 연방, 주, 지방 및 기타 설립체, 기관과 재단의 경영체, 행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1 조 베를린 조항

이 법률은 제3차 경과법률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한다. 이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은 제3차 경과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한다.

제 132 조 (발 효)

제 6 조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 (1) 이 법률에서 노동자라 함은 피고용자와 노동자 연금 보험 의무 부과를 위한 직업교육생을 말한다. 노동자는 가정 노동에 종사하나 그 주종이 경영체를 위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2) 이 법률에서 사무직 종사자라 함은 사회법전 제6권에 의하여 사무직 종사자로 명시된 취업자이다. 사무직 종사자에는 사무직 직업을 위한 피교육생도 포함된다. 가정 노동에 종사하나 그 주종이 경영체를 위한 경우에도 사무직 종사자로 간주한다.

VI. 경영조직법 1차 시행규정(선거규정 1972)

(1972.1.16. 제정, 1989.9.28. 최종개정)

1972.1.15. 경영조직법 제126조에 따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제1부 경영위원회 선거

제1절 일반 규정

제1조 선거위원회

- (1) 선거운영은 선거위원회의 의무이다.
- (2) 선거위원회는 문서 운영규정을 들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유권 피고용자를 선거자원인사로 하여 그의 도움으로 투개표를 실행할수 있다.
- (3) 선거위원회의 결정은 투표권 소유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선거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된다. 회의록은 결정 사항을 포함하며 의장과 선거위원 1인이 서명한다.

제2조 선거인 명부

- (1) 선거위원회는 모든 경영위원회선거를 위하여 유권자 목록(선거인 명부)을 노동자(제6조 제1항)와 사무직 종사자(제6조 제2항)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유권자는 성명, 생년월일별로 직종내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 (2) 경영자는 선거위원회에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경영자는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인사 확정에 있어서 선거위원회를 보호한다.

- (3) 능동적·수동적 선거권은 다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피고용자만이 소유한다.
- (4) 선거인 명부와 이 규정의 사본1부를 선거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사본에는 유권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한다.
- (5) 선거위원회는 독일어를 해독할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경영위원회 위원선거전에 선거과정, 선거인 명부와 선거 제안목록, 선출절차와 투표 방법등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교수해야 한다.

제3조 선거 공고

- (1) 1차 투표일 6주전에 선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이 서명한 선거공고문을 제정한다. 선거 공고와 함께 경영위원회 선거는 개시된다. 1차 투표일은 경영위원회 임기가 끝나기 1주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2) 선거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정일자;
 - 2. 선거인 명부와 관련 규정을 비치하는 장소;
 -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피고용자만이 행사할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 청구는 선거공고후 2주내에 할수 있으며, 청구 시한을 제시한다;
 - 4. 선출되는 경영위원회 위원수(제9조 내지 11조)와 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의 직종별 할당수;
 - 5.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표를 분리선출 할것인가(직종별 선출) 또는 선거공고전에 공동선거를 결정했는가의 여부;
 - 6.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선거 제안은 2인의 위임자가 서명해야 함;
 - 7. 한직종에서 다수의 대표 혹은 공동 선거로 다수의 경영 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제안은 선거 공고후 2주전에 선거 제안 양식에 의거 선거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마감일시를 명시;

8. 투표는 선거제안에 구속되어야 하며, 선거 제안은 기일내에 접수된 것만 고려;
 9. 선거제안을 투표가 끝날때까지 비치할 장소;
 10. 투표실시 장소, 일시 및 경영체 일부 또는 부속업체의 투표 접수처 및 기한 등;
 11. 선거위원회에 접수해야 할 청구, 선거 제안 및 기타 해명서의 접수처.
- (3) 경영체의 피고용자 구성,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알맞는 경우 선거위원회는 선거 공고문 작성에 있어서 제15조에 따라 경영부서, 부속경영체, 다양한 직종, 성별등을 고려한다.
- (4) 선거공고의 사본은 선거 개시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통행하는 지정된 여러 장소에 게시한다.

제 4 조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의의제기

- (1)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선거공고후 2주내에 문서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하여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제18a조에 따른 규정이 결핍성을 증거할 때에는 무효이다. 제2문은 제18a조 제1항 혹은 제4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부가 과정에 관련된 자가 부가를 명백하게 위법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반드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선거위원회의 결정은 지체없이 이의 제기한 피교육자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한다. 결정은 피고용자에게 늦어도 선거전일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 (3) 이의 제기 신청 기한 경과후 선거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정확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기한 경과후 선거인 명부는 다만 오자 및 탈자, 객관적 부정확 또는 제기된 이의에 대한 정정에 한하여 선거 전일까지 정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 5 조 직종별 의석 배분

- (1) 선거위원회는 경영위원회 위원의 배분을 직종의(제10조 내지 제12조 제1항) 비례수 원칙에 따라 할당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거공고 당일 기준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수를 나란히 세우고 일련번호로 구분한다. 확인된 개별수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다수의 순서대로 정렬한다.
- (2) 이렇게 정렬된 개별수에서 많은 최고수를 골라내고 다수의 순서대로 경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할 것인가를 위하여 정렬한다. 개별 직종은 최고수가 몇개인가에 따라 위원수가 배정된다. 최고수가 두 직종에서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정한다.
- (3) 제2항에 따라 소수 직종에 소수의 의석이 배정되면,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바와 같이 대표수를 지닌다. 다수 직종의 의석수는 이에 따라 감소된다.
- (4) 두직종에 동수의 피고용자가 소속되어 있으면 어떤 직종이 다수의석을 차지 할까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2 절 다수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직종대표의 선출

제 1 소절 제안 목록의 접수와 공고

제 6 조 제안 목록

- (1) 한 직종에서 다수대표 선출을 위한 직종선거 또는 다수 경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 선거에 있어서는 제안 목록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제안 목록은 유권 피고용자에 의하여 선거공고후 2주내에 선거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 (2) 선거공고에 따라 두 직종의 유권 피고용자는 제1항 제1문에 명시된 기일 경과전에 공동선거를 결정하면, 선거위원회는 새로운 선거제안을 위하여 1주간 연기하며 이를 재공고한다. 이 경우 이미 접수된 선거제

안은 무효이다.

- (3) 모든 제안 목록은 선거과정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의 최소한 2인 이상의 지원자를 기입한다.
- (4) 모든 제안 목록에는 개별 지원자를 일련 번호 순서대로 성명, 생년 월일, 직종, 근무부서등을 기입한다. 제안목록에는 지원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5) 제안 목록에 다른 서명이 없을때에는 첫번째 서명한자를 목록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목록 대리인은 경영위원회에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해명서를 제출하고 선거위원회의 결정과 해명을 수용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6) 유권자의 서명은 다만 하나의 제안 목록에만 한다. 유권자가 여러 제안 목록에 서명하면 선거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기간내에, 늦어도 3일 이내에 어떤 서명을 유지할것인가를 해명 해야 한다. 기한내에 해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접수된 목록의 서명만을 인정한다. 동시에 접수 되었으면 추천하여 결정한다.
- (7) 한 지원자는 다만 하나의 제안 목록에 추천될수 있다. 자신의 성명과 동의서가 다수의 제안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선거위원회의 요청으로 3일내에 어떤 지원을 유지할것인가를 해명해야 한다. 기일내에 해명이 없으면 모든 지원 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 제안 목록 검사

- (1) 선거위원회는 선거제안목록을 접수한 자에게, 선거제안 목록을 다른 방법으로 접수시켰을 경우에는 목록대리인에게 접수시간을 기입 확인토록 한다.
- (2) 선거위원회는 접수된 선거목록의 표제를 목록이 부표로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2인의 성명중 첫번째 기명된 지원자 이름으로 표시한다.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가능한한 접수후 2일내에 검사하고, 무효 또는 이의가 있을 시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하여 문서로 보고 한다.

제 8 조 무효제안 목록

(1) 무효인 제안 목록은:

1. 기한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목록
2. 지원자를 인식할수 없는 순서로 기입한 경우
3. 접수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명인이 충분치 못한 목록. 접수된 목록에 추가 서명은 무효임. 제6조 제6항은 계속 유효하다.

(2) 무효인 제안 목록은 또한:

1. 제6조 제4항에 정한 방법으로 지원자가 표시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접수서류에 지원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조 제6항에 따라 서명자 요구수가 삭제되어 충분치 못할 때, 이러한 미비사항이 3일내에 수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효이다.

제 9 조 제안 목록 제출의 연기

- (1)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기일내에 선거를 위한 유효한 제안목록이 접수되지 아니하면 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공고를 하며 접수기일을 1주간 연장한다. 공고문에는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제안 목록이 접수되어야 할것을 안내한다.
- (2) 제14조 제2항에 의거 직종선거를 치를경우, 그러나 한 직종에 유효한 선거제안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거위원회는 접수연기를 공고한다. 이 연기된 기한내에 한직종에서 계속 제안이 접수되지 아니하고 다른 한 직종에서만 접수되었으면 선거위원회는 이 직종에서만 대표를 선출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제안이 접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즉시 선거가 진행될수 없음을 공고한다.

제 10 조 제안 목록의 공고

- (1)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8조와 제9조에 명시된 기일의 경과후 선거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 목록에 추첨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부가한다. 목록대리인은 추첨결정에 사전에 초청된다.

- (2) 늦어도 투표일 1주전에 선거위원회는 유효하다고 인정된 제안 목록을 선거공고와 같이 투표가 끝날때까지 공고한다.

제 2 소절 다수제안 선거 목록이 접수된 경우의 선거 절차

제 11 조 투 표

- (1) 투표자는 유효한 제안 목록 하나에만 투표할수 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기록후 정해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완료된다.
- (2) 투표 용지에는 일련번호대로 지원자 성명을 기입한다; 목록에는 표시된 부호를 함께 기록한다. 단일직종을 위한 투표용지 또는 공동선거에 있어서 경영위원회 선거의 투표용지는 반드시 규격, 색, 편집, 글씨체 등이 동일해야 한다. 이는 투표 용지 봉투에서도 같다.
- (3) 투표자는 제안 목록 지정된 곳 X표를 한다.
- (4) 투표 용지의 지정된 란에 X표를 한것 이외는 어떤 표시나 부호를 하거나 지정된 외에 X표를 한것은 모두 무효이다.

제 12 조 선거절차(Wahlvorgang)

- (1) 선거위원회는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몰래 표시하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다수의 투표함을 배치한다. 투표함은 반드시 선거위원회가 봉하며 투합된 투표 용지를 다시 꺼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2) 투표중에는 투표 장소에 최소한 2인의 선거위원회 위원이 배석해야 한다. 보조원(제1조 제2항)이 있을 경우 1인의 위원이 배석해야 한다.
- (3) 투표자는 투표용지가 든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투표봉투를 투표용지 수령을 위탁했던 선거위원회 위원에게 건네준다. 투표봉투는 선거인 명부에 확인 표식을 한후 투표자의 입회하에 투표함에 넣어 진다.

- (4) 공동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면 직종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다.
- (5) 투표 완료후 즉시 개표하지 아니할 경우 투표함은 봉인된다.

제 13 조 공개개표

투표마감후 즉시 선거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개표에 들어가며, 개표 결과에 따라 얻어진 선거 결과를 공고한다.

제 14 조 개표 절차

- (1) 선거위원회는 투표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집계하여 선거인 명부에 표시된 기표자수와 대조한다.
- (2) 하나의 투표봉투에든 투표용지에 여러 기표 표시가 있는 경우 완전하게 유효하면 그 수를 집계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 15 조 직종선거에 있어서의 의석배분

- (1) 직종 선거에 있어서 직종의 개별 선거 제안 목록에 추천된 후보자에게 기표된 득표수를 목록별로 다수득표 순서로 세로로 나열한다. 선거 제안 목록은 가로로 나열한다. 각 목록내에서 다 득표자 순서로 세로로 나열한 뒤 득표수를 1,2,3,4...로 나눈다.
- (2) (1)항과 같이 1,2,3,4,...로 나눈 수중에서 다수 득표자 순서대로 정해진 경영위원회 의원으로 각각 배분된다. 직종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3) 한 선거 제안 목록에 소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그 수보다 많은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안 목록에 있는 후보자중 다수 득표 순서대로 당선된다.

제 16 조 공동선거에 있어서의 의석배분

- (1) 공동선거가 실시되면, 우선 노동자 의석수를, 그 다음에 별도 계산에

따라 사무직 종사자의 의석수를 배분 한다. 모든 개별 제안 목록은 개별 직종의 위원 의석수를 별도 계산에 따라 최고수가 할당되도록 배분 받는다. 제15조 제2항 제3문이 준용된다.

- (2) 노동자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노동직종을, 사무직 종사자의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사무직 종사자의 개별 목록에 속한 지원자를 고려한다.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된다.

제 17 조 선거 기록

(1) 어느 피고용자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는가를 보고한 후 선거 위원회는 선거 기록에 다음 사항을 확정한다:

1. 직종 선거에서 각 노동자 직종에서 투표한 투표봉투와 각 직종에 기표한 유효한 투표수의 종합집계;
2. 공동선거에서 투표한 투표봉투와 유효한 투표수의 종합집계;
3. 개별 목록에 기표한 투표수
4. 집계한 최고수
5. 목록에 기표한 최고수의 배분
6. 무효표수
7.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지원자 명단
8. 경영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기타 결과

(2) 기록은 선거위원회 의장과 위원1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18 조 당선 통보

(1) 선거위원회는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피고용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선출된 것을 통보한다. 당선자가 통보받은 날 부터 3일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당선을 수락한것으로 간주한다.

(2) 당선자가 당선을 거부하면 당선자 대신 당선자가 추천되었던 제안 목록내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명시된자가 대리한다.

제 19 조 당선자 공고

경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위원회는 이를 선거공고를 했던 동일 장소에 2주간 게시한다. 사본 1부씩을 각각 경영자와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에 즉시 송달한다.

제 20 조 선거서류 보관

경영위원회는 선거 서류는 최소한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때 까지 보관한다.

제 3 소절 단일선거 제안 목록이 접수된 경우의 선거절차

제 21 조 투 표

- (1) 선거 과정에서 단일 제안목록이 접수된 경우에는 유권자는 제안 목록에 등재된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 (2) 투표용지에는 제안 목록에 등재된 순서대로 성명, 직종, 근무부서를 기록한다.
- (3) 투표자는 후보자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에게 x표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2문과 제3문, 제4항,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22 조 개 표

선거위원회는 투표함을 연후 투표봉투와 투표용지를 꺼내어 후보자 개개인의 투표수를 집계한다. 제14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이 준용된다.

제 23 조 당선자 통보

- (1)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동수인 경우에는 추첨한다.
- (2) 공동선거인 경우 각 직종은 제10조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영

위원회 대표에 귀속되는 수만큼의 위원을 선출한다.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수가 양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낙선거 중에서 차점자를 직종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보충한다. 마지막 의석을 결정하는 순간 동점자가 다수 있으면 그 중에서 1인을 추첨한다.

제 24 조 선거 기록, 공고

- (1) 어떤 피고용자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었는가를 통보한후 선거 위원회는 기록을 정리한다. 기록에는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라 지원자 개개인의 투표수를 확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
- (2) 당선자가 선출을 거부하면 그 대신 동일직종의 차점자가 당선된다.

제 3 절 단일 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단일 직종대표의 선출

제 25 조 절 차

- (1) 경영위원회 위원1인 또는 직종 선거에서 직종을 위한 단일대표를 선출할 경우 선거제안 목록에 있는 후보자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 제1항 제2문, 제2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 제10조 제2항이 선거 제안에 준용된다.
- (2) 투표자는 제1항에 따라 선거제안내의 후보자를 투표한다.
- (3)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명단을 알파벳 순서로 근무부서와 직종을 함께 기록한다. 투표자는 투표 용지의 해당 지원자에게 x표를 한다. 제21조 제3항과 제22조가 준용된다.
- (4) 다수득표자가 선출된다. 제24조 제1항이 준용된다. 동수의 득표인 경우에는 추첨 한다. 당선자가 선출을 거부하면, 그 대신 차득점자가 당선된다.
- (5) 경영위원회의 보충위원 또는 직종 대표자의 직종 선거에서는 분리 선출과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이 적용된다.

- (6) 선거 제안은 접수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제안은 물론 제5항에 따른 선거제안에 표시할수 있다. 한 지원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는 물론 제5항에 따른 선거에서도 추천받을 수 있다.
- (7) 제1항에 따른 선거에 출마한자는 제5항에 따른 선거에 출마한자와 분리하여 동일 투표용지에 기표될수 있다. 투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와 제5항에 따른 선거에 자신의 표를 동일 지원자에게 기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거에 기표한 것만 유효하다.
- (8) 선거공고는 제3조의 규정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영위원회 보충위원 또는 직종 대표자는 직종선거에서 분리선거과정으로 선출,
 2.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선거를 위한 선거제안 접수에서의 부호표시,
 3. 유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제안과 제5항에 따른 선거제안에 표시할 수 있음,
 4. 한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는 물론 제5항에 따른 선거에서도 추천 받을 수 있음
 5. 투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와 제5항에 따른 선거에서 동일 지원자에게 투표해서는 안되는 점

제 4 절 부재자 투표

제 26 조 전 제

- (1) 선거 시점에 부재중인 경우로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 선거위원회는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한다.
1. 선거 공고
 2. 선거 제안 목록

3. 투표 용지와 봉투
 4. 설명양식
 5. 선거위원회 주소가 적힌 큰 봉투 겹봉에 발신자 성명과 주소를 쓸수 있고 “부재자 투표”라고 주의 표시를 한 봉투. 선거위원회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에 관한 안내사항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선거 위원회는 투표자 목록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자료를 보낸다고 기록 해야 한다.
- (2) 유권자는 개인적인 업무관계로 선거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음을 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가사노동 또는 의청근무등의 이유로) 선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제 27 조 투 표

투표자는 자신의 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한다.

1. 투표용지에 누가 보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 봉투에 넣어 봉한다.
2. 설명 양식에 투표 장소와 날자를 쓰고 서명한다.
3. 투표 용지가 든 봉투와 설명 양식을 주어진 봉투에 넣고 봉한후 기한내에 선거위원회에 도착 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 28 조 투표 절차

- (1) 투표 종결 직전에 선거위원회는 접수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공개 석상에서 개봉하여 봉투와 설명 양식을 꺼낸다. 부재자 투표 봉투가 온전하고 설명양식이 바르게 적혀 있으면 선거인 명부에 표시하고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 (2) 기한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늦게 접수된 부재자 투표는 선거위원회가 접수 일시를 기록하고 개봉하지 아니하고 선거 기록에 첨부한다. 부배자 투표로서 늦게 접수된 봉투는 선거결과 공표후 1개월이 지나 선거에 대한 제소가 없는 경우 개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다.

제 5 절 노조의 선거제안

제 29 조 전제, 절차

- (1) 경영체를 대표하는 노조의 선거 제안에는 제6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 (2) 노조의 선거 제안에 2인의 노조 대리인이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3) 제1란에 서명한 대리인은 목록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노조는 노조원 1인을 목록대리인으로 임명할수 있다.

제 2 부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거

제 30 조 선거위원회, 선거 준비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선거인 명부 및 선거 공고는 공동선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제1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 선거위원회에는 제8조에 따라 최소한 1인의 피선거권이 있는 피고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31 조 선거 실시

- (1) 다수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출은 선거제안 목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 제1항 제2문,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제7조 내지 제9조 제1항과 제3항, 제10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6조 제4항은 모든 선거제안 목록에 개별 지원자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직업이 포함되어야 할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 (2) 다수의 유효한 선거제안 목록이 접수되면 투표자는 그중에서 하나의 목록에만 투표한다. 제11조 제1항 제2문,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로 제1항 제2호 내

지 제8호, 제2항, 제18조 내지 제20조가 준용된다. 제11조 제2항은 투표용지에 개별 지원자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직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제15조는, 의석 배분은 선거 제안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개별 제안 목록은 그 직종이 지닌 최고수의 의석을 배분 받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 (3) 단일 유효 제안 목록만이 접수되면, 투표자는 제안 목록에 있는 지원자를 투표한다.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1항과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제2항은 개별 지원자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직업이 투표용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 (4) 1인의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만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제안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25조 제2항, 제4항내지 제8항, 제29조가 준용된다. 제25조 제1항 제3문은 모든 선거 제안에는 개별 지원자의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할 직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 (5) 서면 투표는 제26조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부 경과 규정, 종결 규정

제 32 조 기한 산정

이 규정에서 확정되는 기한에는 민법전 제186조 내지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 33 조 해운 영역

선상대표와 해상 경영위원회를 위한 선거규칙은 특별법령에 유보 한다.

제 34 조 베를린 조항

이 령은 1952.1.4. 제정된 제3차 경과법을 제14조를 제131조에 구속하여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제 35 조 효력 발생

- (1) 이령은 그 공포하는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령의 효력 발생에는 1953.3.18. 제정되고, 1962.2.7. 개정된 경영조직법 시행을 위한 제1차 법령이 경영조직법 제76조와 제77조에 명시된 선거에만 준용한다.

연방노동·사회 보장 장관

VII. 단체협약법

(1969.8.25. 제정, 1974.10.29. 최종개정)

제 1 조 단체협약 형태와 내용

- (1) 단체협약은 협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노동관계(Arbeitsverhältnis)의 내용, 체결, 종료 그리고 경영과 경영조직법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수 있는 법규범을 지닌다.
- (2) 단체협약은 문서 형태(Schriftform)를 필요로 한다.

제 2 조 단체협약 당사자

- (1) 단체협약 당사자는 노동조합, 개별 경영체, 경영자 협회등이다.
- (2) 노조와 경영자 협회(최고 조직)간의 합의는 경영자 협회가 위임권을 지녔을 경우 가입단체의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최고 조직은 단체협약 체결이 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될수 있다.
- (4)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최고 조직과 가입 단체들은 단체협약 당사자의 상대적 의무를 충족시킬 구속력을 지닌다.

제 3 조 단체협약 구속성

- (1) 계약 당사자와 경영자는 단체협약 구속성을 지닌다.
- (2) 경영과 경영조직법적 문제에 대한 단체협약의 법규범은 구속성을 지닌 경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3) 단체협약 구속성은 단체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성립된다.

제 4 조 법규범의 작용

- (1) 노동관계에 대한 내용, 체결 및 종료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은 단체협약 유효영역에 있는 단체협약 구속성을 지닌 양자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경영 및 경영조직법적 문제에 대한 단체협약의 법규범에 적용된다.
- (2) 단체협약에 협약 당사자가 공동 설치를(보수보상기금, 휴가기금등) 계획하거나 규칙을 정할때에는 이 규칙은 이 설치기구의 정관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기구의 계약 구속 당사자인 경영자와 피고용자에 대한 관계에도 적용된다.
- (3) 예외 계약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허용되거나 피고용자에게 유리한 규칙의 개정에서만 허용된다.
- (4) 기존의 단체협약상 권리의 포기는 한쪽의 협약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상 권리의 상실은 배제된다. 협약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은 단체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다.
- (5) 단체협약 경과후 다른 계약이 체결될때까지 법규범은 유효하다.

제 5 조 일반적 구속성

- (1) 연방 노동·사회 보장 장관은 경영자 최고 조직의 3인 대표와 노동조합의 3인의 대표와 체결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일반적 구속성을 선언할 수 있다:
 1. 단체협약 구속적인 경영자가 단체협약 유효영역내에서 할당된 피고용자의 최소한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2. 일반적 구속성선언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 제1호와 제2호의 전제는 일반적 구속성 선언이 사회적 긴급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 (2) 신청에 대한 결정전에 경영자와 일반적 구속성의 해당 피고용자는 절차의 완결에 관련된 노조와 경영자 협회 그리고 주의 임울관할 상급 노동 관청에게 문서상의 입장의 표명과 구두 및 공개적으로 협상할 기

회를 준다.

- (3) 해당주의 상급 노동관청이 신청된 일반적 구속성 선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연방 노동 사회 보장 장관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동의에 의하여 신청자의 이의를 받아들인다.
- (4) 일반적 구속성 선언은 유효영역내의 단체협약의 범규범을 지금까지 단체협약에 구속적이지 아니하였던 경영자와 피고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5) 연반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양해하에 공공 이익에 보탬이 되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성 선언을 취소할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된다. 그밖에 일반적 구속성 선언은 그 경과로서 소멸된다.
- (6)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은 개별 경우를 위하여 일반적 구속성과 일반적 구속성 해지에 대한 권리를 해당 주의 상급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7) 일반적 구속성 선언과 이의 해지는 공개 및 공표를 필요로 한다.

제 6 조 단체협약 등기

연방노동·사회보장성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와 일반적 구속성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단체협약 등기를 비치한다.

제 7 조 송부 및 통보의무

- (1)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후 1개월내에 협약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1부와 사본 2부, 그리고 변경사항을 연방노동·사회보장장관에게 송부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는 실효된 모든 단체협약을 실효후 1개월내에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또한 주의 상급 노동 관청에게 주내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후 1개월내에 사본 3부와 개정 내용을 송부하며, 협약 실효후 1개월내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한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면 다른쪽의 당사자 역시 의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

- (2) 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든 의도적으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완전하지 아니하게 또는 기한내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 (3) 질서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의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수행의 관할청이 된다.

제 8 조 단체협약의 공고

경영자는 경영체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정해진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법적효력의 확정

단체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협약당사자간의 법률분쟁과정에서 또는 단체협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노동사안에 대한 결정은 협약당사자간 뿐만아니라 협약당사자와 제3자간의 법률분쟁에 있어서 법원과 중재법원을 구속한다.

제 10 조 단체협약과 동 규칙

- (1)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938.6.25. 제정된 임금형성에 관한 규정과 1941.4.23.에 제정된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한 임금규정과 명령은 단체협약에 관련되지 아니한 조항을 제외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 (2)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은 제1항에 명시된 규정들을 폐기할수 있다. 폐기는 공시되어야 한다.

제 11 조 시행규정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은 경영자 및 피고용자 최고 조직과 공동협력하에 이 법률의 시행에 요구되는 령을 제정할수 있다. 특히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을 기록부와 문서실의 운영과 시설;
2. 단체협약과 임율규정과 령의 폐기에 대한 일반적 구속성 선언에 있어서의 과정, 청구 제출에서의 공공적 공시, 일반적 구속성의 선언과 종료, 임율규정과 령 및
3. 제5조에 명시된 위원회

제 12 조 최고기관

이 법률에서 최고 조직이라 함은-제2조의 규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노동조합 또는 경영자 협회의 공동위원회로서 피고용자 또는 경영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연방지역의 노동계에(Arbeitsleben)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고 조직에는 노동조합과 경영자 협회가 동등하게 존재하며, 제1문의 조건이 충족되면 관련성이 없다.

제 12a 조 유사 피고용자

(1) 이 법률은 다음의 유사 피고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경제적 구속과 피고용자에 버금가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사를 위하여 직무 또는 노무 계약을 바탕으로 채무급부와 다른 피고용자와는 별도로 일하는 자, 유사 피고용자,
 - a.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자,
 - b. 자신의 임금의 절반을 타인에게 지불하는자, 이것이 예측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한 최종 6개월간 활동의 단축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수 있다.
2. 제1호에 명시된 인사를 위하여 유사 피고용자로 활동하는자, 유사피고용자와 채권자간에 복무 또는 노무 계약을 통하여 성립된 법률 관계에 있는자.

(2) 유사 피고용자로 활동하는 다수인은 연합의 유형으로 정리할수 있거나 이들 사이에 맺어진 조직공동체 또는 과도기적 노동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로 간주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예술적, 문학적 또는 기자의 급부를 지닌 인사, 이러한 급부의 기술적 형성을 돕는자에게 제1항 제1호 b)의 앞절과는 달리 평균 임금의 3분의 1을 지불하는 인사에게도 적용한다.
- (4) 이 규정은 상법전 제84조의 의미의 통상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b 조 베를린 - 조항

이 법률은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이법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은 1952. 1.4.에 제정된 제3차 경과 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도 유효하다.

제 13 조 효력발생

- (1) 이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법률의 효력발생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VIII. 해고 보호법

(1969.8.25. 제정, 1989.12.8.최종개정)

제 1 절 일반해고보호

제 1 조 사회적으로 부당한 해고

- (1) 동일 경영체 또는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노동관계를 맺어 근무한 피고용자에 대한 노동관계의 해지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다.
- (2)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해고는 그 사유가 개인 또는 피고용자의 행동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경영적 요구에 의하여 경영체내에서 피고용자의 계속 취업이 대립되는 조건인 경우다.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해고는 또한
 1. 私法上 기업체에서
 - a) 경영조직법 제95조에 따라 지침에 反하는 해고
 - b) 피고용자가 경영체내 타 부서에서 일할수 있는 경우의 해고, 경영위원회 혹은 경영조직법에 따라 피고용자의 대표로 경영조직법 제 10조 제2항 제1문의 임기중의 해고에 대한 문서상의 기소가 있는 경우.
 2. 공법상의 행정기관 및 경영체내에서
 - a) 해직에 있어서 인사지침에 反하는 해고,
 - b) 피고용자가 동일 부서의 다른 위치 혹은 다른 부서의 동일 행정분야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수 있는 경우, 관할 인사 대표가 그 이유중의 하나로 기일내의 해고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한 경우, 이는 단계 대표(Stufenvertretung)가 범부서에 대한 조정에서 항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2문은 피고용자의 계속고용이 예측되는 전직교육 또는 보충교육, 혹은 피고용자의 계속고용

이 변화된 작업 조건에서 가능하고 피고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에도 적용된다. 경영자는 해고의 조건을 사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긴급한 경영상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용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그 해고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을 전혀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이다. 피고용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경영자는 피고용자에게 해당 사회적 선택기준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문은 경영기술적, 경제적, 기타 정당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피고용자의 계속 고용이 대치되며 대상 선발에서 사회적 관점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용자는 제1문의 의미에서 해고가 사회적으로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제 2 조 변경해고

경영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해지와 함께 변경된 근로조건에서 노동관계의 계속을 청약하는 경우, 피고용자는 작업조건의 변경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유보에 대하여 피고용자는 경영자에게 해지기한내에, 늦어도 해고 통지후 3주내에 표시해야 한다.

제 3 조 해고 불복

피고용자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1주내에 해고 불복을 경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불복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경영자와 함께 이해를 촉구하도록 노력한다. 경영위원회는 불복에 대한 입장을 피고용자와 경영자에게 요구를 위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제 4 조 노동법원의 소집

피고용자가 자신의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후

3주내에 노동법원에 근로계약이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제2조의 경우 소송은 노동조건 변경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임을 확정짓는 것이 된다. 피고용자가 해고 불복을 경영 위원회에 제출할(제3조)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경영위원회에 첨부한다. 해고가 관할 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면 노동법원의 소집을 위한 기간은 관청의 결정 공시가 있은후 시작된다.

제 5 조 사후 소송의 허가

- (1) 피고용자가 해고된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도 3주내에 해고 무효 소송의 제기를 할수 없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소송은 사후에 허가된다.
- (2) 신청에는 소송제기가 구속적이다. 신청이 이미 접수되면 신청에는 이 소송을 암시한다. 신청에는 사후 허가를 성립시킬 사실과 이를 증명할 방법의 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신청은 장애의 제거후 2주내에 허가된다. 소송 신청 시기가 끝날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더이상 신청할수 없다.
- (4) 신청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이 판결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수 있다.

제 6 조 소집연기

피고용자가 해고 고지후 3주내에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이유로 소송제기를 적용하여 법률 효력적인 해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피고용자는 이 절차에서 제1심의 심리가 끝날때까지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해고를 정지 시킬수 있다. 노동 법원은 반드시 이에 따라 증거해야 한다.

제 7 조 해고의 효력발생

사회적으로 부당한 해고가 적시에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고가 다

른 이유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유보의 표시는 소멸된다.

제 8 조 노동조건의 원상회복

노동법원이 제2조의 경우 노동조건의 변경이 사회적으로 부당함을 확정하면 변경에 따른 해고는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제 9 조 법원판결에 의한 노동관계 종료, 피고용자의 보상

- (1) 법원이 해고에 의하여 노동관계가 해지 되지 않음을 확정 판결해도 피고용자에게 노동관계의 계속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노동관계의 해지와 경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판결한다. 경영자가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경영자와 피고용자가 공동노력을 할수 없음을 제기할 때에 법원은 경영자에게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수 있다. 경영자와 피고용자는 노동관계 해지의 신청을 결심공판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수 있다.
- (2) 법원은 노동관계 해지의 시기를 확정한다.

제 10 조 보상액

- (1) 보상은 보수의 12개월분까지 확정할수 있다.
- (2) 피고용자가 만50세가 되었고 15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개월분의 보수를, 만55세가 되었을때 20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8개월분의 보수를 확정한다. 이는 피고용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동 관계 해지를 확정하는 기간, 제국보험규정 제1248조 제5항, 사무직 근로자 보험법 제25조 제5항 또는 제국광산근로자법 제48조 제5항에 명시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월보수는 월 정기 노동시간의 평균 임금과 이에 따른 보조금의 합계이다.

제 11 조 손실 부수입 계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관계가 계속 성립되는 때에는 피고용자가 경영자로 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보상받을 금액의 계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피고용자가 다른 방법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금액,
2. 강제로 해고 당하지 않았으면 예측되는 노동으로 가능한 수입,
3. 공법적 급부로 계속 일하고 정년후 혜택받을수 있는 사회 보험, 실업 보험, 실업보조금, 사회보조금등이 실업자가 됨으로서 받지 못하는 손실금, 이 금액들은 경영자가 그 수준대로 보상한다.

제 12 조 피고용자의 새로운 노동관계, 구노동관계의 종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동관계가 계속 성립되고, 피고용자가 새로운 노동관계를 체결하면 피고용자는 유효한 법원 판결후 1주내에 구 경영자에게 노동관계의 계속을 거부할 수 있다. 서류 제출에 따라 우체국 접수인이 찍힌날이 기한내에 속하면 이는 유효하다. 이 접수로 노동관계는 해지 된다. 피고용자가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피고용자에게 보상되는 해고 보상금은 해고 날자와 새로운 노동관계에 들어가는 날자간에만 지급된다. 제11 조가 이에 준용된다.

제 13 조 기타 해고 관계

- (1) 노동 관계의 특별 해고를 위한 법규정은 이 법률이 침해할수 없다. 특별해고의 법률 효력은 다만 제4조 제1문과 제5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법원이 특별해고를 이유없다고 판결하면 피고용자에게는 그래도 노동관계의 계속유지를 짐작할수 없고, 그래서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노동관계를 해지시켜주고 경영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제9조 제2항, 제10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해고가 선량한 풍속에 反하는 경우 피고용자는 이법규정에 관계없이

이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피고용자는 해고 고지후 3주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로 인한 노동관계의 소멸을 확정할수 있다. 이에는 제9조 제1항 제1문과 제2항, 제10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후 소송에 관한 제5조의 규정과 소집 기한 연기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은 동일한 경우로 준용한다.

- (3) 기타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해고에 관한 이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간부직 사무직 종사자

- (1) 이절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 경영체에서 조직의 위원을 법인의 법적 대표로 초빙한 인사,
 2. 인력총체기업에서 법률, 정관 또는 회사계약을 통하여 인력총체 대표를 위하여 초빙된 인사,
- (2) 관리대표, 경영반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간부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피고용자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 절의 규정중 제3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제2문은 노동관계 해지를 위한 경영자의 신청에 사유가 필요치 아니하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절 경영조직과 인사대표의 범주내에서의 해고보호

제 15 조 해고 금지

- (1) 경영위원회,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선상대표 또는 해상경영위원회 위원의 해고는 금지한다. 이는 경영자에게 해고 고지기한의 유지없이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고권이 있거나, 경영조직법 제103조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를 제시하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된다. 제1문에 명시된 위원은 임기 종료후 6개월 내에는 물론 제2문의 경우에도 해고할수 없다.
- (2) 인사대표, 청소년 및 피교육자 대표 또는 청소년 대표는 해고할수 없

- 으며 제1항 제2문에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도 해고할수 없다.
- (3) 선거위원회 위원의 해고는 위촉기간내에, 선거입후보자의 해고는 선거 제안 등재 시기부터 선거결과 공포시까지 금지된다. 이는 제1항 제2문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된다. 선거결과 발표후 6개월 내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1항 제2문에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도 해고할수 없다.
- (4) 경영체가 휴업에 들어가면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인사의 해고는 휴업시점에 허용된다. 이시기보다 더 일찍 강요된 경영상의 요구에 의해서해고의 조건이 되어도 이와 같다.
- (5) 제1항 내지 제5항에 명시된 인사가 경영 부서에 근무하고, 경영체가 휴업에 들어가면, 이 인사는 다른 경영 부서가 인수한다. 경영 사정상 이것이 불가능하면 이 해고는 경영체 휴업에 있어서의 해고에 관한 제 4항에 따라 적용한다.

제 16 조 노동신계약, 구계약의 종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인사에 대하여 법원이 해고 무효를 확정 판결하고, 이 인사가 그 사이에 새로운 노동 관계를 체결한 경우 유효 판결후 1주내에 구경영자에게 계속 업무 수행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밖에는 제11조와 제12조 제2문 내지 제4문이 준용된다.

제 3 절 해고의 고지의무

제 17 조 고지의무

- (1) 다음의 경우 경영자는 노동청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20인이상 6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경영체가 5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30일 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
 2. 60인 이상 500인 이하의 피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의 10분의 1 이상을, 25인 이상을,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3. 50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영체가 30인 이상을 30일 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
- (2) 경영자가 제1항에 따라 고지 의무있는 해고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에 사전에 해고의 사유, 해고 피고용자수, 정규직 피고용자수, 해고시기등을 문서로 보고하고 지속적인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는 특히 해고 예방, 제한 및 그 결과를 축소 하는 가능성을 노력해야 한다.
- (3)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에 보내는 서류의 사본 1부를 동시에 노동청에도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고에 관한 경영위원회의 입장을 기술한 문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위원회의 입장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경영자가 고지 2주전에 제2항에 따라 경영위원회에 보고했고 경영위원회가 이에 동조한 고지의 효력이 있다. 고지에는 경영자 명칭, 소재지, 영업유형, 정규직 피고용자수, 해고 피고용자수, 해고의 사유와 해고 계획, 시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지에는 취업 중개를 위하여 해고자의 성, 연령, 직업 및 국적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위원회에 공시 내용의 사본 1부를 송부한다. 경영위원회는 노동청에 지속적인 입장을 제기할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자에게 입장의 사본 1부를 송부한다.
- (4) 즉각 해고권은 침해하지 아니 한다. 즉각 해고는 제1항에 따른 해고 최고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5) 다음의 인력은 이 법규에서 피고용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법인 경영체의 조직 위원으로 법인체의 법적 대표로 초빙된자,
 2. 인력총체 기업에서 법률, 정관 또는 회사약정에 따라 인력총체의 대표로 초빙된자,
 3. 피고용자의 임면권을 지닌 관리자, 경영반장, 이와 유사한 간부사무직 종사자.

제 18 조 해고차단

- (1) 제17조에 따라 고지되어야 할 해고는 노동청에 해고의 고지후 1개월 내에 주 노동청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는 소급하여 신청접수일까지 통보될수 있다.
- (2) 주 노동청은 개별 사한을 노동청에 공시된후 2개월까지 효력정지를결정할수 있다.
- (3) 주 노동청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권에 경영자가 노동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적절히 해고 공시를 했으며, 어떤 사유로 공시해야 하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주 노동청은 이 검증의 결과를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시점부터 1개월내에 해고가 실행되지 아니하면 제17조의 조건하에서 새로운 고지가 필요하다.

제 19 조 단축노동의 허용

- (1) 경영자가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시점까지 피고용자를 고용할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주노동청은 경영자로 하여금 이기간동안에 단축노동을 허가할수 있다.
- (2) 경영자가 단축노동의 실시를 행할수 있으면 이에 따라 임금도 감축된다; 임금의 감축은 통상법 또는 합의된 규칙에 따른 노동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 (3) 단축노동에 관한 임금지급, 수준, 실시에 관한 단체협약 규칙은 제1항과 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주노동청의 결정

- (1)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노동청의 결정은 주노동청장 또는 그 대리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피고용자 및 경영자 대표 각각 2인과 주노동청에서 임명한 공공단체의 2인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결정전에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로부터 청문한다. 위원

회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경영자와 경영위원회로부터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 받는다.
- (3) 위원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특히 경영체가 속해있는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상급 주관청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시 해고가 5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포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2인의 참고인 투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 (4) 주노동청에 제1항에 따라 형성된 위원회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자를 고용한 경영체의 경우에는 그 권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노동청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할 노동청에서 내린다.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된다.

제 21 조 연방노동청 본부의 결정

연방교통 또는 연방 체신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영체로서 500인 이상의 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방노동청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 관할 연방장관은 위원회에 2인의 참고인 투표자를 파견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공시는 연방 노동청 본부에 게시한다. 그밖에 사항은 제20조 제1항내지 제3항이 준용된다.

제 22 조 예외 경영체

- (1) 계절 기업과 영업계절 기업이 그기업 특성상 실시하는 해고에 대하여는 이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노동축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1년내 영업하는 건축기업은 계절기업과 영업계절기업에 속하지 아니한다. 연방노동·사회보장 장관은 법령을 통하여 제1항의 의미에서 어떤 기업이 계절 기업과 영업계절기업에 속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 4 절 종결 규정

제 23 조 적용범위

- (1) 제1절과 제2절의 규정은 사법 및 공법적 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며, 해운, 내수로 해운, 항공 기업에는 제24조를 유보한다. 제1절의 규정은 5인 또는 적은수의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경영체 또는 소수의 직업교육생을 고용하는 경영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문에 따른 피고용자수의 확정은 1주에 정규노동시간 10시간, 1개월에 45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준을 고려한다. 제3문은 1985.5.1. 제정된 경영자의 상대적 권리와 이법 제1절과 관련하여 제2문의 권리를 자신의 경영자를 상대로 연역할수 있는 피고용자의 법적 지위는 침해하지 아니한다.
- (2) 제3절의 규정은 사법적 경영체와 기관은 물론 경제적 목적을 지닌 공공행정 기관에도 적용한다. 선박과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해운과 항공업에 대한 법률적용

- (1) 제1절과 제2절의 규정은 노동관계에 관한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준에 따라 항해 선박, 내수면 선박, 항공기에 적용한다. 이법률의 의미상 항해선박, 해운업의 내수면선박, 항공업의 항공기의 전체성을 경영체로 간주한다.
- (2) 선박업 또는 항공업에 종사하는 승무원 또는 선원의 1차 여행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제1조 제1항의 6개월 기간은 여행 종료후 3일이 연장된다.
- (3) 제4조에 따른 소송은 선원 또는 승무원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다시 승선 또는 탑승후 3주내에 늦어도 해고후 6주내에, 제기한다. 항해 또는 운항 도중에 해고가 발설되면 6주간의 기간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독일 항구나 비행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3주간의 기간대신 제1문과 제2문의 기간이 적용된다.
- (4) 이법률에 따라 선장과 선원법 제2조와 제3조의 의미상의 선원의 소송

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대신에 이 인사들의 노동관계에 대한 쟁송의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선원법 규정내에 노동관계 쟁송을 위한 선원관할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법률에 따른 청구에 대한 쟁소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1절의 해고 보호는 제14조와 달리 선장과 그밖의 제14조의 의미상 간부 사무직 종사자로 간주되는 승무원에 속하는 인사에게 적용한다.

제 25 조 노동 투쟁에서의 해고

이법률 규정은 경영자와 피고용자간에 경제적 투쟁내에서 다만 조치로 취해지는 해고와 파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a 조 베를린 - 조항

이 법률은 제3차 경과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준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한다. 이법률을 기초로 제정되는 법률은 제3차 경과법률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한다.

제 26 조 효력발생

이 법률은 공포되는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資料 94-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